용역보고서 2023-0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246-12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이철선
임성은·정숙희·김영환·민동세·이동희·김대연·김상길·고병수·김준하·정주성·변소연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영환	e-신한 노무법인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이동희	e-신한 노무법인
	김대연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고문
	김상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정보부 차장
	고병수	마켓링크 차장
	김준하	맥시머스 사원
	정주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변소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과 용역계약(2023. 5. 3.)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차

요 약 ····· 1

제1장 서론 ····· 28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30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31

제2장 사회복지사 처우 법률 및 지자체 실태조사·처우개선 현황 ····· 40

제1절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검토 ····· 42

제2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지자체 실태조사 현황 ····· 68

제3절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현황 ····· 87

제3장 실태조사 방법론 ····· 129

제1절 개관 ····· 131

제2절 시스템 기반 행정자료 조사 ····· 132

제3절 인터넷 기반 종사자 근로여건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182

제4장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 206

제1절 보수수준 ····· 208

제2절 지급실태 ····· 235

제3절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57

제5장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수요 ····· 301

제1절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 303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 397

제3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요 ····· 522

제6장 조사결과 및 향후과제 ····· 608

제1절 조사결과 ····· 610

제2절 연구의 향후과제와 한계점 ····· 630

참고문헌 ····· 638

부록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에 관한 종사자 설문조사 ····· 641

표 목차

〈요약 표 1-1〉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동향 ····· 5
〈요약 표 1-2〉 17개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정책 현황 ····· 6
〈요약 표 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급여 지급 항목 적용 현황 ····· 9
〈요약 표 1-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연 보수 수준 분석결과(세전) ····· 9
〈요약 표 1-5〉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 10
〈요약 표 1-6〉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임금 비교(세전) ····· 11
〈요약 표 1-7〉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지급실태 현황(시설 4,739개, 종사자 69,313명 기준) ····· 12
〈요약 표 1-8〉 사회복지시설 시설특성별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13
〈요약 표 1-9〉 국고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 14
〈요약 표 1-10〉 지방이양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 14
〈요약 표 1-1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시설현황 분석 결과(시설 4,739개, 종사자 69,313명 기준) ····· 15
〈요약 표 1-1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근로여건 분석 결과(종사자 69,313명 기준) ····· 17
〈요약 표 1-13〉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근로시간 ····· 18
〈요약 표 1-14〉 2016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 ····· 18
〈요약 표 1-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건강문제 분석 결과(종사자 4,402명 기준) ····· 19
〈요약 표 1-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에 대한 수요조사 주요 분석 결과(종사자 4,402명 기준) ····· 21
〈표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4항 ····· 30
〈표 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방법론 및 주요 연구내용 ····· 33
〈표 1-3〉 기존 실태조사 항목 대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록 정보 현황 ····· 35
〈표 1-4〉 기존 실태조사 항목 대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록 및 미등록 정보 현황 ····· 36
〈표 1-5〉 2023년 3월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분석 대상시설 및 종사자 수 추정 ····· 37
〈표 1-6〉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미팅 내용 및 협의 사항 ····· 38
〈표 1-7〉 기존 종사자 설문조사 방법과 2023년 조사방법간 차이 ····· 39
〈표 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정책 추진 경과 ····· 44
〈표 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 현황 ····· 48
〈표 2-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 ····· 50
〈표 2-4〉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 53
〈표 2-5〉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령」제4조 ····· 53
〈표 2-6〉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 분류 ····· 55
〈표 2-7〉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56
〈표 2-8〉 사회복지이용시설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56
〈표 2-9〉 공무원의 승진 연수(우정직 공무원 제외) ····· 59
〈표 2-10〉 업종별 폭력행위에 대한 사고재해 현황 비교 ····· 61
〈표 2-11〉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제도 내용 ····· 62
〈표 2-12〉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제도 보장사항 ····· 63
〈표 2-13〉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4) ····· 63
〈표 2-14〉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주요 연혁 ····· 65
〈표 2-15〉 17개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 현황 ····· 69

〈표 2-16〉 17개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자사 처우개선 관련 대표 연구 ····· 70
〈표 2-17〉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 72
〈표 2-18〉 대구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 73
〈표 2-19〉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 74
〈표 2-20〉 울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 75
〈표 2-21〉 강원도 및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 77
〈표 2-22〉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 78
〈표 2-23〉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 80
〈표 2-24〉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 81
〈표 2-2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 82
〈표 2-26〉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 현황 ····· 83
〈표 2-27〉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 내용 및 방법 ····· 84
〈표 2-28〉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행정조사표 양식 ····· 88
〈표 2-29〉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제도에 관한 행정조사 결과 요약 ····· 90
〈표 2-30〉 2023년 광역지자체의·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93
〈표 2-31〉 사회복지시설 중 자체사업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95
〈표 2-32〉 202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96
〈표 2-33〉 202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97
〈표 2-34〉 202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 98
〈표 2-3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 직급 기준 ····· 99
〈표 2-36〉 2023년 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100
〈표 2-37〉 2023년 부산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101
〈표 2-38〉 2023년 대구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02
〈표 2-39〉 2023년 대구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03
〈표 2-40〉 2023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04
〈표 2-41〉 2023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05
〈표 2-42〉 2023년 광주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06
〈표 2-43〉 2023년 광주광역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07
〈표 2-44〉 2023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108
〈표 2-45〉 2023년 대전광역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109
〈표 2-46〉 2023년 울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1
〈표 2-47〉 2023년 울산광역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1
〈표 2-48〉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2
〈표 2-49〉 2023년 경기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4
〈표 2-50〉 2023년 경기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4
〈표 2-51〉 2023년 강원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6
〈표 2-52〉 2023년 강원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6
〈표 2-53〉 2023년 충청북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7
〈표 2-54〉 2023년 충청북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8

〈표 2-55〉 2023년 충청남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9
〈표 2-56〉 2023년 충청남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19
〈표 2-57〉 2023년 전라북도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지자체 호봉표-10호봉) ····· 120
〈표 2-58〉 2023년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121
〈표 2-59〉 2023년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121
〈표 2-60〉 2023년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22
〈표 2-61〉 2023년 경상북도 아동복지시설 호봉 기준표 ····· 123
〈표 2-62〉 2023년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24
〈표 2-63〉 2023년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25
〈표 2-6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개편 ····· 127
〈표 2-65〉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 127
〈표 3-1〉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 134
〈표 3-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136
〈표 3-3〉 종사자 채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역할 ····· 138
〈표 3-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결격사유 조회 ····· 138
〈표 3-5〉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 139
〈표 3-6〉 종사자 자격관리 ····· 139
〈표 3-7〉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 140
〈표 3-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호봉관리 ····· 141
〈표 3-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온라인 보고 현황 ····· 142
〈표 3-10〉 기존 시설장 대상 설문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 비교 ····· 144
〈표 3-11〉 기존 시설장 조사와 종사자 조사항목 간 비교 ····· 146
〈표 3-12〉 기존 실태조사 대상 규모 대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분석 규모 사전 비교 ····· 148
〈표 3-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시설 중 인사-급여 정보입력율(2022년 말 기준) ····· 149
〈표 3-14〉 2022년 말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현황 ····· 151
〈표 3-15〉 사회복지시설 중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근거 ····· 154
〈표 3-16〉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현황 관련 간담회 현황 ····· 155
〈표 3-17〉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단체장 및 기관장 간담회 내용 ····· 156
〈표 3-1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시설 관련 정보 항목 ····· 157
〈표 3-19〉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원천에 따른 시설 분류 ····· 158
〈표 3-2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제공 시설 및 종사자 원자료 및 분석가능 수 ····· 160
〈표 3-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인사-급여정보 연계 종사자의 시설 직위별 현황 ····· 161
〈표 3-2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분석대상 연계 추출 ····· 162
〈표 3-23〉 교부금 신청시 75개 시군구 직위와 인건비 신청 건수 ····· 163
〈표 3-24〉 시군구 직위 및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부재한 종사자 직위 사례 ····· 165
〈표 3-25〉 시군구 직위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 매칭 ····· 166
〈표 3-26〉 시군구 직위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 매칭 결과(기준 종사자 69,313명) ····· 167
〈표 3-27〉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별 호봉 분포(기준 종사자 69,313명) ····· 168
〈표 3-28〉 인건비 교부금 사업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제외사업 ····· 169

〈표 3-29〉 인건비 교부금 신청 건수 자료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대상 선정과정 ····· 170
〈표 3-30〉 인건비 교부금 신청 건수 자료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대상 결과 ····· 170
〈표 3-31〉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교부금 신청 주기에 대한 빈도분석 ····· 171
〈표 3-3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교부금 신청 주기의 개월 수 환산(321,303건 기준) ····· 171
〈표 3-33〉 교부금 인건비 자료의 개인별 통합 시, 호봉 및 직위 변경 사항 ····· 172
〈표 3-34〉 국고 지원시설 인건비 준수율 측정 최종 대상 ····· 173
〈표 3-35〉 급여정보 비교 대상 인건비 준수율 측정을 위한 개인별 대상 여부 ····· 174
〈표 3-36〉 복지부 3개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별 교부금 신청 현황 ····· 175
〈표 3-37〉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종사자 임금 지급 및 공제 관련 정보 현황 ····· 178
〈표 3-3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종사자 임금 지급 및 공제 관련 범주화 ····· 179
〈표 3-39〉 인건비 교부금 자료와 급여 정보간의 임금 비교가능성 여부 ····· 180
〈표 3-40〉 시설 및 종사자 관련 분석 항목에 대한 미기입 현황 ····· 181
〈표 3-41〉 기존 종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종사자 실태조사와의 차이 ····· 182
〈표 3-42〉 2023년 종사자 실태조사 세부영역과 항목 ····· 183
〈표 3-43〉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모집단 분포 ····· 184
〈표 3-44〉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표본 분포 ····· 186
〈표 3-45〉 지역별 설문 응답 시설 현황 ····· 188
〈표 3-46〉 지역별 설문 응답 종사자 수 현황 ····· 190
〈표 3-47〉 2023년 종사자 실태조사 회수 현황 ····· 192
〈표 3-48〉 종사자 설문항목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간담회 현황 ····· 193
〈표 3-49〉 종사자 처우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시설 간 차이 ····· 195
〈표 3-50〉 시설장 간담회를 통한 직군별 도출된 주요 설문 내용 ····· 196
〈표 3-5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대상 종사자의 처우 조건에 관한 FGI 내용 ····· 197
〈표 4-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과 실질 연 보수액(세전) ····· 210
〈표 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세부시설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과 실질 연 보수액(세전) ····· 211
〈표 4-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과 실질 연 보수액(세전) ····· 213
〈표 4-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과 실질 월 보수액(세전) ····· 215
〈표 4-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세부시설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과 실질 월 보수액(세전) ····· 216
〈표 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과 실질 월 보수액(세전) ····· 218
〈표 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 현황 ····· 220
〈표 4-8〉 사회복지 세부시설별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 현황 ····· 221
〈표 4-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 현황 ····· 223
〈표 4-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보수 기본급 및 수당과 교부금 기본급 및 수당 비교 ····· 225
〈표 4-11〉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보수 기본급 및 수당과 교부금 기본급 및 수당 비교 ····· 226
〈표 4-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보수 기본급 및 수당과 교부금 기본급 및 수당 비교 ····· 228
〈표 4-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정보 데이터 처리결과와 월 보수수준 ····· 229
〈표 4-14〉 2023년 대비 2022년 전체 조사 대상의 보수수준 ····· 229
〈표 4-15〉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 230
〈표 4-16〉 2019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세부시설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 231

〈표 4-17〉 2019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 233
〈표 4-18〉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임금 비교(세전) ····· 234
〈표 4-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임금 형태 ····· 236
〈표 4-20〉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급여 형태 ····· 237
〈표 4-21〉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종사자의 급여 형태 ····· 239
〈표 4-22〉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 240
〈표 4-23〉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 ····· 242
〈표 4-24〉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 ····· 243
〈표 4-25〉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 ····· 245
〈표 4-26〉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 출처 현황 ····· 246
〈표 4-27〉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특성별 종사자 월 수당 지급률 ····· 248
〈표 4-28〉 사회복지 세부시설의 종사자 월 수당 지급률 ····· 249
〈표 4-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종사자 월 수당 지급률 ····· 251
〈표 4-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퇴직급여 형태 ····· 253
〈표 4-31〉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퇴직급여 형태 ····· 254
〈표 4-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퇴직급여 형태 ····· 256
〈표 4-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설정 시 포함 요인 ····· 258
〈표 4-34〉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 259
〈표 4-35〉 지방이양 및 국고지원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비교 ····· 260
〈표 4-36〉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방법 ····· 261
〈표 4-37〉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연도별 준수율 ····· 261
〈표 4-38〉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측정 대상 기준호봉 ····· 262
〈표 4-39〉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연도별 준수율 ····· 262
〈표 4-40〉 2022년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지역별 준수율 ····· 263
〈표 4-41〉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방법 비교 ····· 264
〈표 4-42〉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66
〈표 4-43〉 사회복지 세부시설 전체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67
〈표 4-44〉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의 직위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69
〈표 4-45〉 사회복지시설 시설특성별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72
〈표 4-46〉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73
〈표 4-47〉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중 특정직위 및 호봉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73
〈표 4-48〉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74
〈표 4-49〉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74
〈표 4-50〉 국고지원 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75
〈표 4-51〉 지방이양 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75
〈표 4-52〉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76
〈표 4-53〉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81
〈표 4-5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82
〈표 4-5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83

〈표 4-5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84
〈표 4-57〉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85
〈표 4-5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86
〈표 4-59〉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87
〈표 4-60〉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88
〈표 4-6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89
〈표 4-6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90
〈표 4-63〉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91
〈표 4-64〉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92
〈표 4-65〉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93
〈표 4-66〉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94
〈표 4-67〉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95
〈표 4-68〉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96
〈표 4-69〉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97
〈표 4-7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298
〈표 4-71〉 국고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 299
〈표 4-72〉 지방이양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 299
〈표 5-1〉 2023년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소관부처별 지역분포 ····· 305
〈표 5-2〉 2023년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세부시설별 지역분포 ····· 306
〈표 5-3〉 2023년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시설유형별(생활/이용시설) 지역분포 ····· 308
〈표 5-4〉 2023년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재원 출처별 지역분포 ····· 309
〈표 5-5〉 20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의 소관부처별 지역분포 ····· 312
〈표 5-6〉 20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의 세부시설별 지역분포 ····· 313
〈표 5-7〉 20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의 시설유형별 지역분포 ····· 315
〈표 5-8〉 20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의 재원출처별 지역분포 ····· 316
〈표 5-9〉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별 지역 분포 ····· 319
〈표 5-10〉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별 지역 분포 ····· 320
〈표 5-11〉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별 지역 분포 ····· 321
〈표 5-12〉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별 지역 분포 ····· 323
〈표 5-13〉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별 지역 분포 ····· 324
〈표 5-14〉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별 운영 주체 ····· 325
〈표 5-15〉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별 운영 주체 ····· 326
〈표 5-16〉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별 운영 주체 현황 ····· 328
〈표 5-17〉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별 운영 주체 현황 ····· 329
〈표 5-18〉 시설유형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 330
〈표 5-19〉 시설유형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 ····· 331
〈표 5-20〉 시설유형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류 현황 ····· 332
〈표 5-21〉 시설유형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 334
〈표 5-22〉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 336

〈표 5-23〉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 ····· 337
〈표 5-24〉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류 현황 ····· 339
〈표 5-25〉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 ····· 341
〈표 5-26〉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 343
〈표 5-27〉 분석대상 생활시설의 입소자 정원 현황 ····· 345
〈표 5-28〉 입소자정원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처별 현황 ····· 346
〈표 5-29〉 입소자정원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 현황 ····· 347
〈표 5-30〉 입소자정원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 출처 현황 ····· 349
〈표 5-31〉 교대제 근무형태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 350
〈표 5-32〉 교대제 근무형태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 ····· 352
〈표 5-33〉 교대제 근무형태와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 ····· 353
〈표 5-34〉 교대제 근무형태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 355
〈표 5-35〉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 356
〈표 5-36〉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처 현황 ····· 357
〈표 5-37〉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 현황 ····· 358
〈표 5-38〉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 ····· 360
〈표 5-39〉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 363
〈표 5-40〉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 364
〈표 5-41〉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 ····· 365
〈표 5-42〉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 ····· 366
〈표 5-43〉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 ····· 368
〈표 5-44〉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 370
〈표 5-4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 특성과 연령대 분포 ····· 373
〈표 5-46〉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연령대 분포 ····· 374
〈표 5-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령대 분포 ····· 376
〈표 5-4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 특성과 성별 분포 ····· 378
〈표 5-49〉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성별 분포 ····· 379
〈표 5-5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성별 분포 ····· 381
〈표 5-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유형 분포 ····· 383
〈표 5-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세부시설 분포 ····· 384
〈표 5-53〉 직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유형별 분포 ····· 386
〈표 5-5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 388
〈표 5-55〉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 389
〈표 5-5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 391
〈표 5-57〉 시설특성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력 현황 ····· 393
〈표 5-58〉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학력 현황 ····· 394
〈표 5-5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학력 현황 ····· 396
〈표 5-6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채용 방식 ····· 398
〈표 5-61〉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채용 방식 ····· 399

〈표 5-6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채용 방식 ····· 401
〈표 5-6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고용 형태 ····· 403
〈표 5-64〉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고용 형태 ····· 404
〈표 5-6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고용 형태 ····· 406
〈표 5-6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고용보험 대상 여부 ····· 408
〈표 5-67〉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고용보험 대상 여부 ····· 409
〈표 5-6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고용보험 대상 여부 ····· 411
〈표 5-69〉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취업규칙 유무 ····· 412
〈표 5-70〉 입직 및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웹조사 기반) ····· 413
〈표 5-71〉 보유한 자격증 중 현재 재직 시설에 입사하면서 필수 채용 요건 1순위 자격증(웹조사 기반) ····· 414
〈표 5-72〉 보유한 자격증 중 현재 재직 시설에 입사하면서 필수 채용 요건 2순위 자격증(웹조사 기반) ····· 415
〈표 5-73〉 2023년 8월 기준 주당 평균 근무 일수(일)(웹조사 기반) ····· 416
〈표 5-74〉 근로계약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 417
〈표 5-75〉 근무 중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 2022년 기준)(웹조사 기반) ····· 418
〈표 5-7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근로일수 ····· 420
〈표 5-77〉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근로일수 ····· 421
〈표 5-7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근로일수 ····· 423
〈표 5-7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평균 총 근로시간 ····· 425
〈표 5-80〉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 ····· 426
〈표 5-8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평균 총 근로시간 ····· 428
〈표 5-8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소정근로 시간 ····· 430
〈표 5-83〉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 431
〈표 5-8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소정근로시간 ····· 423
〈표 5-8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시간외근무 시간 ····· 435
〈표 5-86〉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시간외근무 시간 ····· 436
〈표 5-8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시간외근무 시간 ····· 438
〈표 5-8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연장근로시간 ····· 440
〈표 5-89〉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연장근로시간 ····· 441
〈표 5-9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연장근로시간 ····· 443
〈표 5-9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야간근로시간 ····· 445
〈표 5-92〉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야간근로시간 ····· 446
〈표 5-9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야간근로시간 ····· 448
〈표 5-9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휴일근로 시간 ····· 450
〈표 5-95〉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휴일근로 시간 ····· 451
〈표 5-9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휴일근로 시간 ····· 453
〈표 5-97〉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근로기간 ····· 454
〈표 5-9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연차일 ····· 456
〈표 5-99〉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연차일 ····· 457
〈표 5-1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차일 ····· 459

〈표 5-1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사용 연차일 ····· 461
〈표 5-102〉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사용 연차일 ····· 462
〈표 5-10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작위별 사용 연차일 ····· 464
〈표 5-104〉 사회복지시설 여성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생리휴가 사용 현황 ····· 466
〈표 5-105〉 사회복지 세부시설 여성 종사자의 생리휴가 사용 현황 ····· 467
〈표 5-106〉 사회복지시설 여성 종사자의 직위별 생리휴가 사용 현황 ····· 469
〈표 5-107〉 대체휴가제 운영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시설 수 기준) ····· 470
〈표 5-108〉 대체휴가제 운영 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시설 수 기준) ····· 471
〈표 5-109〉 대체휴가제 운영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 472
〈표 5-110〉 대체휴가제 운영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시설 수 기준) ····· 474
〈표 5-111〉 대체휴가제 운영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 출처 현황(시설 수 기준) ····· 475
〈표 5-112〉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시설 수 기준) ····· 476
〈표 5-113〉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시설 수 기준) ····· 478
〈표 5-114〉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 479
〈표 5-115〉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시설 수 기준) ····· 481
〈표 5-116〉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시설 수 기준) ····· 482
〈표 5-1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최근 3년간 승진 현황(인사급여정보 有 종사자 수 기준) ····· 484
〈표 5-118〉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최근 3년간 승진 현황(인사급여정보 有 종사자 수 기준) ····· 485
〈표 5-1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최근 3년간 승진 현황(인사급여정보 有 종사자 수 기준) ····· 487
〈표 5-120〉 교육훈련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시설 수 기준) ····· 488
〈표 5-121〉 교육훈련 횟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시설 수 기준) ····· 489
〈표 5-122〉 교육훈련 횟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 490
〈표 5-123〉 교육훈련 횟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시설 수 기준) ····· 492
〈표 5-124〉 교육훈련 횟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 출처 현황(시설 수 기준) ····· 493
〈표 5-1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연 교육 횟수(종사자 수 기준) ····· 495
〈표 5-126〉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연 교육 횟수(종사자 수 기준) ····· 496
〈표 5-1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 교육 횟수(종사자 수 기준) ····· 498
〈표 5-1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연 교육 시간(종사자 수 기준) ····· 500
〈표 5-129〉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연 교육 시간(종사자 수 기준) ····· 501
〈표 5-1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 교육 시간(종사자 수 기준) ····· 503
〈표 5-131〉 시설특성별 월평균 총 근로시간 및 일 평균 휴게시간 비교(2016년 대비 2022년) ····· 505
〈표 5-132〉 시설특성별 월 연장근로시간 비교(2016년 대비 2022년) ····· 507
〈표 5-133〉 시설특성별 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2016년 대비 2022년) ····· 508
〈표 5-134〉 현 재직 시설에서의 종사자 인권 보장 정도(웹조사 기반) ····· 509
〈표 5-135〉 현 직장에서 보장받지 못한 인권 분야(중복응답)(웹조사 기반) ····· 510
〈표 5-136〉 지난 1년간(2022년)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위험(폭력 포함) 경험 여부(웹조사 기반) ····· 512
〈표 5-137〉 경험한 위험(폭력 포함) 유형(중복응답)(웹조사 기반) ····· 513
〈표 5-138〉 경험한 신체적 건강 문제(웹조사 기반) ····· 514
〈표 5-139〉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은 경험 여부(웹조사 기반) ····· 515

〈표 5-140〉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시, 관련 비용처리 방법(웹조사 기반) ····· 516
〈표 5-141〉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지 않은 이유(웹조사 기반) ····· 517
〈표 5-142〉 경험한 정신적 건강 문제(웹조사 기반) ····· 518
〈표 5-143〉 정신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은 경험 여부(웹조사 기반) ····· 519
〈표 5-144〉 정신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시, 관련 비용처리 방법 ····· 520
〈표 5-145〉 정신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지 않은 이유 ····· 521
〈표 5-146〉 한달 소정근로시간(174시간: 주당 40시간) 이외에 월평균 시간외근무 여부(웹조사 기반) ····· 522
〈표 5-147〉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웹조사 기반) ····· 523
〈표 5-148〉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인정시간(한달기준)(웹조사 기반) ····· 524
〈표 5-149〉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법 ····· 525
〈표 5-150〉 수당으로 지급 못 받은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웹조사 기반) ····· 526
〈표 5-151〉 2022년 기준 사용 가능한 연차(월차)휴가 일수 및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웹조사 기반) ····· 527
〈표 5-152〉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다중응답)(웹조사 기반) ····· 528
〈표 5-153〉 2022년 기준, 총 67일의 관공서 공휴일 중 사용하지 못한 공휴일 휴가 일수(웹조사 기반) ····· 530
〈표 5-154〉 사용하지 못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보상방법(웹조사 기반) ····· 531
〈표 5-155〉 대체인력 지원사업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사유 및 도움 여부(웹조사 기반) ····· 533
〈표 5-156〉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이용하지 않은 이유(웹조사 기반) ····· 535
〈표 5-157〉 현재 적용받고 있는 임금체계(웹조사 기반) ····· 537
〈표 5-158〉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임금체계(웹조사 기반) ····· 538
〈표 5-159〉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나 업무강도 대비 보수수준의 적당 여부와 적당하지 않을 시, 원하는 보수 수준(웹조사 기반) ····· 539
〈표 5-160〉 재직 중인 시설의 승진에 대한 내부규정(인사 규정) 여부와 입사 후 승진 여부 및 승진 횟수(웹조사 기반) · 541
〈표 5-161〉 현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입사 후 걸린 기간(년)(웹조사 기반) ····· 543
〈표 5-162〉 승진하는 데 가장 중요 요인(웹조사 기반) ····· 544
〈표 5-163〉 현 재직 시설의 업무량 대비 근무 직원 수 부족 여부 및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웹조사 기반) ····· 545
〈표 5-164〉 재직 중인 시설의 60세 법정 정년 보장 현황(웹조사 기반) ····· 547
〈표 5-165〉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서 받는 복리후생 사항 1(중복응답)(웹조사 기반) ····· 548
〈표 5-166〉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서 받는 복리후생 사항 2(중복응답)(웹조사 기반) ····· 550
〈표 5-167〉 희망하는 복리후생 사항 1순위(웹조사 기반) ····· 551
〈표 5-168〉 희망하는 복리후생 사항 2순위(웹조사 기반) ····· 553
〈표 5-169〉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무를 시설규정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현황(웹조사 기반) ····· 554
〈표 5-170〉 임신 여성의 시간외근무를 시설 규정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은 이유(웹조사 기반) ····· 555
〈표 5-171〉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여부(웹조사 기반) ····· 556
〈표 5-172〉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 미수행 이유(웹조사 기반) ····· 557
〈표 5-173〉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제도 실시 현황(웹조사 기반) ····· 558
〈표 5-174〉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 현황 ····· 559
〈표 5-175〉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근무 형태(웹조사 기반) ····· 561
〈표 5-176〉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자 현황(웹조사 기반) ····· 562
〈표 5-177〉 야간 및 주말 당직 보상방법(웹조사 기반) ····· 563

〈표 5-178〉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교대근무제 형태(웹조사 기반) ····· 564
〈표 5-179〉 직원의 자기 계발 및 직무 관련 교육을 위한 규정 또는 지침 여부(웹조사 기반) ····· 565
〈표 5-180〉 2022년도 교육(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자격 관련 보수교육 등) 경험 여부(웹조사 기반) ····· 566
〈표 5-181〉 법정의무교육 관련 현황(웹조사 기반) ····· 567
〈표 5-182〉 직무교육 관련 현황(웹조사 기반) ····· 569
〈표 5-183〉 자격 관련 보수교육 현황 ····· 571
〈표 5-184〉 입사 후 이수 교육실적이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 여부(웹조사 기반) ····· 573
〈표 5-185〉 2022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1순위)(웹조사 기반) ····· 574
〈표 5-186〉 5개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여부(웹조사 기반) ····· 576
〈표 5-187〉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중복응답)(웹조사 기반) ····· 577
〈표 5-188〉 재직 중인 시설의 고충 또는 어려움 처리 방법(웹조사 기반) ····· 578
〈표 5-18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자리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웹조사 기반) ····· 579
〈표 5-190〉 업무(담당업무 및 업무량)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80
〈표 5-191〉 보수 수준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 ····· 581
〈표 5-192〉 상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82
〈표 5-193〉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83
〈표 5-194〉 하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84
〈표 5-195〉 상급자 대상 의사소통 세부항목 만족도 ····· 585
〈표 5-196〉 종사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86
〈표 5-197〉 고용 안정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87
〈표 5-198〉 승진 기회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 ····· 588
〈표 5-199〉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89
〈표 5-200〉 근무하는 현 부서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90
〈표 5-201〉 부대 시설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91
〈표 5-202〉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 592
〈표 5-203〉 자신의 업무에 대한 소신 및 책임성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93
〈표 5-204〉 현 재직 시설의 후생 복지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94
〈표 5-205〉 담당하는 일의 보람에 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95
〈표 5-206〉 여가나 가족생활을 할 시간적 여유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96
〈표 5-207〉 휴일 근무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97
〈표 5-208〉 주 평균 근무 시간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98
〈표 5-209〉 근무 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599
〈표 5-210〉 경력개발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 600
〈표 5-211〉 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웹조사 기반) ····· 601
〈표 5-2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 ····· 602
〈표 5-213〉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이직할 의사 여부(웹조사 기반) ····· 604
〈표 5-214〉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이직할 의향이 있는 이유 ····· 605
〈표 6-1〉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동향 ····· 610
〈표 6-2〉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수준 등에 관한 17개 광역지자체 실태조사 동향 ····· 611

〈표 6-3〉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정책 동향 ····· 613
〈표 6-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급여 지급 항목 적용 현황(종사자 57,521명 기준) ····· 616
〈표 6-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연 보수 수준(종사자 57,521명 기준, 세전) ····· 616
〈표 6-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평균 보수 수준(평균, 세전) ····· 617
〈표 6-7〉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 618
〈표 6-8〉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임금 비교(세전) ····· 619
〈표 6-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지급실태 현황(시설 4,739개, 종사자 69,313명 기준) ····· 620
〈표 6-10〉 사회복지시설 시설특성별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621
〈표 6-11〉 소관부처별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결과 ····· 622
〈표 6-12〉 국고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 623
〈표 6-13〉 지방이양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 623
〈표 6-1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시설현황 분석 결과(시설 4,739개, 종사자 69,313명 기준) ····· 624
〈표 6-1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근로여건 분석 결과(종사자 69,313명 기준) ····· 625
〈표 6-16〉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근로시간 ····· 626
〈표 6-17〉 2016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 ····· 626
〈표 6-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건강문제 분석 결과(종사자 4,402명 기준) ····· 627
〈표 6-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에 대한 수요조사 주요 분석 결과(종사자 4,402명 기준) ····· 628
〈표 6-2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정보 데이터 검증 처리결과와 월 보수수준 ····· 635
〈표 6-21〉 2020년 대비 2023년 전체 조사 대상의 보수 수준 ····· 636

그림 목차

[요약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론 ····· 1
[요약 그림 1-2] 2020년 실태조사 대비 2023년 실태조사 비교 ····· 2
[요약 그림 1-3] 2023년 실태조사 방법론 ····· 3
[그림 1-1] 주요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론 ····· 32
[그림 1-2] 기존 실태조사 대비 2023년 실태조사 비교 ····· 34
[그림 3-1] 2023년 실태조사 방법론 ····· 131
[그림 3-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역사 ····· 133
[그림 3-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성도 ····· 135
[그림 3-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용자 관리 ····· 136
[그림 3-5] 종사자 채용 절차 과정에서의 자격 적격성 확인 ····· 140
[그림 3-6] 시스템 기반 통계데이터 구축 과정과 주요 장애요인 ····· 143
[그림 3-7] 설문조사 세부 추진 절차 ····· 192

요약

1. 서 론

□ (배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 매 3년 주기로 실시해 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2023년도 조사임

□ (목적) 법정 실태조사를 완수하고,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추진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외부에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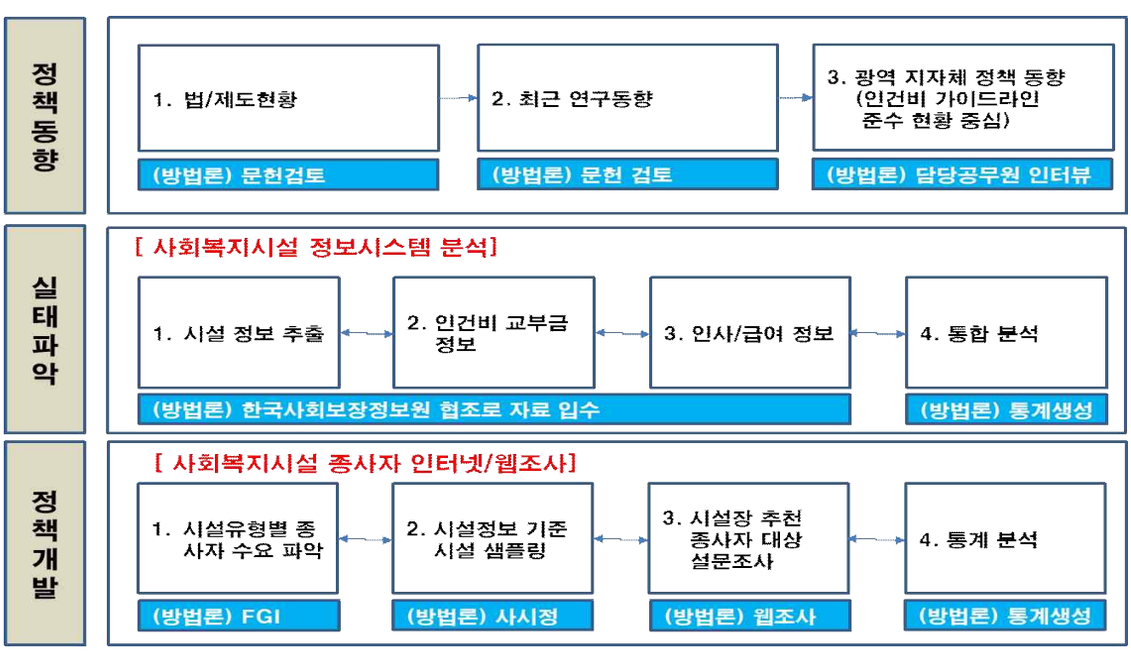
□ (내용) 정책 동향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 기반의 종사자 보수 수준 등 근로여건 실태 파악,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 수요 파악을 통한 정책개발 등 크게 3가지임

○ (정책 동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법제도 개선 및 광역지자체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검토

○ (실태 파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교부금 신청 및 인사급여 정보를 기반으로 종사자 처우 수준 현황을 파악

○ (정책개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인터넷 웹조사를 통하여 시설유형 및 종사자 규모 등 현 근로환경에 따른 처우 수준의 격차를 파악 후 대응 방안을 모색

[요약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과 추진 방법론



□ (기존 조사와 차별점) 2023년 조사부터는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조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표본조사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자료를 추출해 분석하는 방향으로 전환

○ (보수 수준 등 분석대상) 2020년 실태조사는 모집단의 7%인 1,362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나, 2023년 조사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축적된 급여-인사 정보 중 분석 가능한 4,739개 시설, 종사자 69,313명을 분석

○ (조사내용) 기존실태조사에서는 존재하였으나 2023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부재한 조사내용은 별도로 진행된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수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요약 그림 1-2〕 2020년 실태조사 대비 2023년 실태조사 비교

구분	2020년 실태조사		2023년 실태조사(안)
방법	• 설문조사(시설장용, 종사자용)		• 행정자료(시설장용), • 설문조사(종사자용)
대상	• 사회복지시설 61종(장기요양기관 포함)	➡ 조정	• 사회복지시설 56종(장기요양기관 등 제외)
표본 수	• 시설: 1,362개(모집단의 7%) • 종사자: 11,644명(조사시설 종사자 전수)	➡ 확대	• 시설: 4,739개(모집단의 33.5%) • 종사자: 69,313명(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분석가능 대상)
내용	〈설문조사 : 시설장용(119개 문항)〉 • 시설 일반 현황(일반사항, 이용자·종사자 현황, 재무현황 18개 항목) • 종사자 현황 및 보수 수준(종사자 인적사항, 직무현황, 보수 수준 17개 항목) • 보수체계 및 인건비가이드라인 10개 항목 • 근로여건(근로계약, 퇴직금, 휴가, 승진, 시간외근무, 교대제 근무 등 37개 항목) • 역량개발(교육·훈련, 경력개발 11개 항목) • 종사자 안전 실태 및 처우개선 7개 항목 등 〈설문조사 : 종사자용(72개 문항)〉 • 근로환경과 보수지급(근로환경, 시설안전, 보수수준 23개 항목) • 처우수준 및 욕구(보수처우·근무환경·교대제 근무 욕구 18개 항목) • 역량개발(교육·훈련, 경력개발 10개 항목) • 종사자 안전실태(인권, 위험 12개 항목) • 종사자 일반 사항(인적, 직무 등 9개 항목) ※ 시설장과 종사자 중복 문항 40개	➡ 보완	〈행정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일반 현황, 종사자 현황 및 보수 수준(급여·수당), 퇴직금, 승진 여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현황 등 • 행복e음 인건비 교부금 자료 - 종사자별 인건비 교부금 자료(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후생경비 등)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종사자용(78개 문항)〉 • 근로 여건(법정휴가, 복리후생제도, 시간외 근무, 「근로기준법」관련 사항 등) • 종사자 역량개발(교육·훈련, 경력개발 등) • 안전 및 처우개선 욕구(권익 보호, 폭력 경험, 근무 만족도, 이직 의향 등)
비고		➡	• 조사 결과 공표

□ (방법론)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을 위해 〔요약 그림 1-2〕와 같이 시스템 기반 행정자료 분석과 인터넷 기반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음

○ (행정자료 분석) 기존 표본추출 설문조사에서 추출된 연간 인건비 등 조사내용이 이번 조사의 주목적 중 하나인 월 기준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 (조사방법 전환) 시설정보시스템과 행복e음 행정자료를 인건비 준수율 분석 자료로 이용하고, 부재한 종사자 근로여건 자료는 시설장 FGI를 통한 이슈 중심으로 인터넷 조사로 보완

〔요약 그림 1-3〕 2023년 실태조사 방법론

구분	시스템기반 행정자료 조사	인터넷 기반 종사자 근로여건 조사
방법	• 시스템기반 행정자료 추출 및 통계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인터넷 설문조사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사급여 정보 수록 및 행복e음 교부금 신청 데이터 존재 시설	• 2022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종사자 각 1명씩 총 3명
시설 현황	• 시설: 모집단 14,131개 중 4,739개(33.5%) - 복지부 시설 4,514개, 여가부 소관시설 225개	• 시설: 모집단 14,131개 중 1,751개(12.4%), 종사자 4,402명 - 복지부 소관시설 1,417개, 3,542명 여가부 소관시설 334개 860명
종사자 근로 환경	• 표본 4,739개에 근무하는 69,313명('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 총 92,845명의 74.7%) - 복지부 66,875명, 여가부 종사자 2,438명	
종사자 보수 수준	〈종사자 보수지급 분석〉 • 총 69,313명 중 67,054명(주 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2,259명 제외) - 복지부 64,683명, 여가부 종사자 2,371명 〈종사자 인건비-교부금 연계분석〉 • 총 69,313명 중 39,804명(교부금 신청정보 부재 559개 시설의 총 30,845명 제외) - 복지부 38,530명, 여가부 1,274명	
기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전수 분석〉 • 시설 11,315개, 종사자 70,649명(중복 종사자 22,196명 재외) - 복지부 65,740명, 여가부 4,909명 〈지방이양시설 준수율 측정 방법 적용 분석〉 • 종사자 4,813명(생활시설 7개 직위 10개 호봉, 이용시설 직위 12개, 호봉 12개 종사자) - 복지부 4,438명, 여가부 375명	〈 종사자 처우관련 이슈 파악을 위한 시설장 FGI〉 • 아동, 장애인 등 총 10개 유형 시설장 40명 - 복지부 소관시설 26개 시설장 여가부 소관시설 14개 시설장 - 2024년 6월 15~28일 약 2주간 실시

□ (시스템 기반 행정자료 추출) 본연구에서는 총 4단계 분석과정 중 총 15개 세부과제 검토 후 추출된 행정조사 자료를 실태조사 분석 자료로 활용

○ (분석 단계)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시작으로 모집단 추정 → 정보추출 → 데이터 구축 등 총 4단계 과정을 순차적으로 추진

○ (세부 과정) 행정자료 기반 자료 분석을 위해 시스템연계 → 누락된 분석기준 변수 삽입 및 대상 선정 → 데이터값 표준화 → 시설 및 종사자의 미기입 자료 제외 등을 추진

- (데이터 통합) 실태조사 데이터 구축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시설정보, 인건비 교부금정보, 인사정보, 급여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추출
- (통계 분석) 분석 대상시설 선정, 재원 출처 등 정책 분류변수 포함, 종자사 직위 및 급여 지급 항목의 표준화 실시, 미기입된 시설 및 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

□ (분석대상 선정) 시스템 내 4개 자료를 연계·추출한 결과, 2022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분석대상은 시설 4,739개, 종사자 69,313명이었으며, 각 분석에 따라 대상 수가 약간씩 변동

○ (1단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 기준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는 32,513개로 파악

○ (2단계) 발주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재가장기요양시설 그리고 법령개정으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예: 노인휴양소, 아동복지관 등)을 제외하면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모집단은 총 14,131개로 파악

○ (3단계) 모집단 14,131개 시설 중 행복e음 시스템에서 추출된 2022년도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은 11,315개, 종사자는 92,845명이었으나 신청 중복 종사자가 22,196명으로 파악되어 중복 신청자를 제외한 70,649명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대상으로 선정

○ (4단계) 모집단 14,131개 중 종사자 인사-급여정보가 존재하는 시설은 4,739개 시설, 종사자는 총 69,313명으로 파악되어 이를 근로여건 분석대상 집단으로 선정

- 급여정보가 존재하는 종사자 총 69,313명 중 주 15시간 초단기근로 자와 일용직 등 분석에 부적합한 종사자 2,259명을 제외한 67,054명을 인건비 분석대상으로 선정

○ (5단계) 종사자 인건비 실제 지급액과 인건비 교부금 간의 비교를 위해 교부금 신청 종사자와 실제 급여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를 추출한 결과, 총 4,180개 시설에 종사자는 39,804명으로 파악되어 이를 기반으로 분석

3. 주요 연구 결과

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

□ (법/제도) 중앙정부는 법 개정 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 지자체는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 1차 개정 시,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설 및 회원 자격을 규정하고, 2차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종사자 보수수준 차이 감소를 위해 인건비 실태조사를 도입, 3차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4차 개정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보호 관련 법률 등을 추진

○ (기초지자체) 2023년 9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5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지방 조례를 제정(제정률 99.6%)

〈요약 표 1-1〉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동향

구분		내용
중앙정부	법 제정 (2011.3.30.)	-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 - 2012. 1. 1., 시행
	1차 개정 (2012.5.23.)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설 및 회원 자격 등을 규정, 법 4조에 규정(법률 제11442호)
	2차 개정 (2018.12.1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실태 조사 및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법 제3조 제3항 등에서 규정(법률 제15886호)
	3차 개정 (2021.12.21)	-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및 역할 등을 법 제3조의2에 신설(법률 제18617호)
	4차 개정 (2023.3.28.)	-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의 보호관련 내용을 법률 제3조제1항에 포함(법률 제19296호)
광역 지자체	17개 시도	- 17개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률 100%
기초 지자체	7개 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시 지자체 조례 제정률 100% · 인천시 지방 조례 제정률은 90%, 세종은 기초지자체 부재
	10개 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조례 제정률 100% · 제주는 기초지자체 부재

□ (지자체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종사자 처우 관련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시도 및 일부 시군구 지자체에서 실시 중

○ (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소재 시설 및 종자사에 대하여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어온 설문조사 방식의 실태조사 방법을 적용

○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해 온 보수수준 등 근로여건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외 단일임금체계 등 미실현 정책수단에 대한 사례 인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음

□ (지자체의 정책 현황)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에 주력하는 지자체와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추진 중인 지자체, 그리고 가이드라인 미적용 또는 임금이 낮은 국고지원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체 호봉표를 도입하려는 지자체 등 크게 3가지 움직임이 확인

○ (조사 방법) 2023년 8월~9월, 2개월간 17개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세부 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 현황을 문서로 사전 행정조사 후, 방문 인터뷰를 통해 행정조사 내용을 확인

○ (목적)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도 추진에 따른 17개 광역지자체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

○ (주요 특징)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고지원시설 중 가이드라인이 미적용되거나 임금이 낮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낮게 적용(예: 시설장을 과장급으로 적용 등)한 지자체 호봉표 도입

- (개별계획 수립) 서울시, 세종시 등은 국고지원시설 중 가이드라인 미적용되는 시설에 한해 별도 처우개선 수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

〈요약 표 1-2〉 17개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정책 현황

구분	주 적용 인건비 기준
서울	‣ 서울형 단일임금체계(31 호봉제, 1~5급·관리직·기능직)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추진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지급
부산	‣ 다수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시비 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 (국비 지원시설) 호봉제 적용 ‣ 자체 사업 인건비를 준용하되 지방비로 차액을 보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쉼터
대구	‣ (시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2024년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목표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 100% 적용 목표 ‣ 급여수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96% 수준인 시설은 지방비로 차액 보전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여성·가족·청소년복지시설
인천	‣ (국비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권익시설은 인천시 호봉표 적용 - 차액은 시비로 보전하여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他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광주	‣ (시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목표율 설정 2021년 95%, 2022년 97%, 2023년 100%로 설정 ‣ 100% 준수 시 특별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폐지, 복지포인트 지급
대전	‣ 예산 부족 등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합임금체계' 방식을 검토 중

구분	주 적용 인건비 기준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대전시는 처우가 낮은 시설에 대해 별도 법정수당 체계 마련
울산	‣ (시비시설) 호봉제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他 시설은 자체 사업 인건비 기준 준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세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계획 수립
경기	‣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2023년 호봉제 도입)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에 대해 도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통해 일부 보전
강원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자체사업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쉼터 - 인건비 수준이 낮은 국비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임금격차 최소화 노력
충북	‣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10호봉 상한제로 운영 - 근무기간에 따라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근무 기간 3년 미만이면 월 14만 원, 3년 이상 7년 미만은 월 15만 원, 7년 이상은 월 16만 원 지급
충남	‣ (시비시설) 호봉제 적용,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호봉제 도입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지자체 호봉표)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된 여성권익시설은 충남도 호봉제(18호봉)를 적용하여 월정액으로 지급
전북	‣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지자체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과장급) 및 생활복지사(사회복지급) 모두 10호봉 상한으로 적용
전남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된 여성권익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여성권익시설) 자체사업 호봉표 적용
경북	‣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지자체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모두 20호봉 상한의 호봉제 적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목표율 설정(2023년 90%, 2024년 95%, 2025년 100%)
경남	‣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자체사업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가족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지자체 호봉표) 여성권익시설
제주	‣ 제주형 단일임금체계 적용(연봉제) -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이양시설 108개소, 국비지원시설 110개소 ‣ 2015년에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 모두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단일화 - (급여체계) 연봉+2개 수당(가족수당, 시간외수당) - (직급체계) 9개 직급(시설장, 사무국장, 1급~7급)의 단일 직급체계 - (정원책정) 시설별·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인건비 지원

나. 보수 수준

□ (전체)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 보수액은 3,598.6만 원으로 파악되나 시설에 도입된 기타수당 금액을 적용한 실질 연 보수액은 3,789.4만 원으로 추정됨

○ (분석 대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정보에 수록된 4,739개 시설 소속 종사자 69,313명의 종사자 중 주 15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와 일용직 등 분석에 부적합한 2,259명을 제외한 67,054명의 2022년 9월 급여지급 정보를 이용해 산출

□ (수당 도입 현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지급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본급과 퇴직금 외 공식적 지급된 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67.0%로 가장 많았음

○ (공식 수당)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3가지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이 높은 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시설(67.7%), 생활시설(90.7%), 국고지원 시설(77.0%), 종사자 규모 31~40인 시설(80.8%) 등이었음
- 이외 지자체와 시설 자체적으로 종사자에게 지급한 기타수당의 지급률은 전체 64.8%로 명절휴가비 지급률 50.7%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보수 수준) 인건비가이드라인 상의 기본급과 공식 수당 3가지, 그리고 기타수당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은 3,805.8만 원(세전)으로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 3,340.2만 원(세전)보다 약 465.6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 실질 연 보수액에서 생활시설 종사자는 4,318.7만 원인 반면, 이용시설 종사자는 3,385.9만 원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932.8만 원 정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은 4,094.2만 원이었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은 3,604.1만 원으로 국고지원시설이 약 490.1만 원 많았음

○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실질 연 보수액은 약 3,593.4만 원인 반면에 51인 이상 사업장은 연 3,146.5만 원으로 약 446.9만 원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직위) 생활시설 사회복지직 중 종사자가 가장 많은 생활지도원의 연 보수액은 약 4,021.8만 원인 데 반해, 동일 직급인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실질 연 보수액은 2,442.4만 원이었고,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4급 종사자는 3,673.1만 원이었음

〈요약 표 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급여 지급 항목 적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종사자 규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5인 미만	51인 이상
사례수	67,054	64,683	2,371	29,002	38,052	25,345	41,709	5,218	16,416
기본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간외근무수당	67.0	67.7	46.7	90.7	48.8	77.0	60.8	39.8	58.2
명절휴가비	50.7	50.6	51.5	53.3	48.7	50.8	50.6	32.2	49.2
가족수당	46.4	47.0	29.1	56.3	38.9	50.6	43.8	35.8	34.8
기타수당	64.8	64.6	71.7	67.0	63.2	66.8	63.6	62.6	54.5

주: 분석결과의 요약을 위해 종사자 규모 중 5~50인 시설현황 별과는 요약표에서 제외하교 표기

〈요약 표 1-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연 보수수준 분석 결과

(단위: 명, 만 원)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종사자 규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5인 미만	51인 이상
사례수		67,054	64,683	2,371	29,002	38,052	25,345	41,709	5,218	16,416
가이드라인 기준	기본급	2,968.5	2,977.0	2,737.8	3,202.7	2790.1	3,067.4	2,908.5	2,975.6	2,534.9
	시간외근무수당	363.9	372.6	126.0	671.6	129.4	563.3	242.8	155.9	269.5
	명절휴가비	150.5	150.9	137.8	168.3	136.8	155.4	147.5	98.9	126.4
	가족수당	115.7	118.4	41.2	74.2	147.3	76.4	139.5	133.9	80.8
	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	3,598.6	36,18.9	3,042.9	4,116.9	3,203.5	3,862.4	3,486.2	3,364.3	3,011.5
기타 수당(퇴직금 제외)		190.8	186.9	297.3	201.9	182.4	231.7	165.9	229.1	135.0
실질 연 보수액		3,789.4	3,805.8	3,340.2	4,318.7	3,385.9	4,094.2	3,604.1	3,593.4	3,146.5

주: 분석 결과 요약을 위해 종사자 규모 중 5~50인 시설 현황 결과는 요약표에서 제외하고 표기

□ (기존 실태조사 대비 보수수준 비교) 2022년 기준 전체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은 3,789.4만 원으로, 이는 2019년 실태조사 종사자 연 보수액인 3,592.9만 원 대비 약 5.5% 상승한 금액임

○ (보수 수준 비교) 본고에서는 2020년 실태조사 방법을 행정자료 분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시설장 설문조사 응답 내용으로 분석된 보수 수준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 연 보수액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

- (기존 실태조사) 시설장 대상 설문에서 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연 보수액과 연 기본급액, 그리고 내역이 없는 연 수당액과 연 성과급액을 세전금액으로 응답받음
- (2023년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 9월 기준 월 금액(기본급이외 기타수당 내역 합산)을 실질 연 보수액으로 환산

○ (기본급 총액) 67,054명의 연평균 기본급은 2,968.5만 원으로 2019년 종사자 9,392명의 연평균 기본급 2,863.3만 원 대비 3.7% 상승

○ (수당+성과급 총액) 기본급 외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한 총액에서는 2022년 820.9만 원으로 2019년(729.6만 원) 대비 12.5% 상승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2019년 대비 연 보수액에서 4.2% 상승한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8.7% 상승해 약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1-5〉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단위: 만원, %)

구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금액	2013 실태조사 대비 상승분	금액	2016 실태조사 대비 상승분	금액	2019 실태조사 대비 상승분
전체		연 보수액	2,859.3	3,339.2	16.8	3,592.9	7.6	3,789.4	5.5
		연 기본급액	2,040.1	2,538.0	24.4	2,863.3	12.8	2,968.5	3.7
		연 수당+성과급액	840.1	801.2	-4.6	729.6	-8.9	820.9	1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 보수액	2,913.4	3,394.1	16.5	3,653.1	7.6	3,805.8	4.2
		연 기본급액	2,068.6	2,566.8	24.1	2,897.1	12.9	2,977.0	2.8
		연 수당+성과급액	865.2	827.3	-4.4	756.0	-8.6	828.8	9.6
	여성가족부	연 보수액	2,176.9	2,526.1	16.0	3,072.0	21.6	3,340.2	8.7
		연 기본급액	1,685.8	2,111.5	25.3	2,570.1	21.7	2,737.8	6.5
		연 수당+성과급액	503.8	414.6	-17.7	501.9	21.1	602.4	20.0
재정원천	국고지원시설	연 보수액				3,526.0		4,094.2	16.1
		연 기본급액				2,759.2		3,067.4	11.2
		연 수당+성과급액				766.8		1,026.8	33.9
	지방이양시설	연 보수액				3,654.2		3,604.2	-1.4
		연 기본급액				2,958.7		2,908.5	-1.7
		연 수당+성과급액				695.6		695.7	0.0

주: 1.2022년 연보수액은 실질 연보수액을 의미

□ (전산업 대비 월 보수액 비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임금총액은 315.8만 원으로 전산업 평균 352.6만 원 대비 약 10.4% 낮으며, 그 이유는 기본급인 정액 급여가 전체 평균보다 낮기 때문

○ (분석 기준) 월 임금총액=월 급여액+연간 특별급여, 월 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 정액급여=월 기본급, 초과급여=월 시간외수당+ 월 기타수당, 연간 특별급여=월 명절휴가비

○ (연간 특별급여) 성과급 경향의 연간특별급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균 12.5만 원으로 전체 평균 35.5만 원 대비 절반 이하 수준

○ (정액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급은 247.4만 원으로 전산업 평균 299.2만 원보다 약 17% 낮은 편으로 세부 산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초과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각종 수당액이 평균 55.9만 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 18만 원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월 급여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월평균 303.3만 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 급여액 317.2만 원보다 약 5% 정도 낮은 수준이었음

○ (월 임금총액) 하지만 명절휴가비 등 낮은 연간 특별급여액으로 인해 월 임금총액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약 9%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

〈요약 표 1-6〉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임금 비교(세전)

(단위: 천 원)

구분		월 임금 총액	월급여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158	3,033	2,474	559	125
전산업	전체	3,526	3,172	2,992	180	355
	농업, 임업 및 어업	3,113	2,748	2,667	81	364
	광업	4,298	3,917	3,487	430	381
	제조업	4,114	3,550	3,136	414	56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268	4,932	4,604	328	1,33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937	3,621	3,286	335	317
	건설업	3,094	2,977	2,889	89	116
	도매 및 소매업	3,425	3,163	3,086	76	262
	운수 및 창고업	3,583	3,228	2,934	294	356
	숙박 및 음식점업	1,707	1,681	1,615	67	26
	정보통신업	4,624	4,204	4,077	126	421
	금융 및 보험업	6,415	4,769	4,624	145	1,646
	부동산업	2,741	2,585	2,532	53	1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809	4,187	4,084	103	62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58	2,825	2,656	169	233
	교육 서비스업	3,143	2,957	2,909	48	18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23	2,611	2,501	110	1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47	2,418	2,297	121	1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67	2,501	2,434	66	167

주: 전산업 자료는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참조

다. 지급 실태

□ (전체) 임금형태는 총 종사자 69,313명 중 84.2%가 월급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퇴직금에서는 30.9%가 퇴직연금을 적용받고 있었음. 또한 급여기준으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총 4,739개 시설 중 38.9%인 1,845개소였음

○ (임금형태) 월급직 적용 비율은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가 84.8%, 여성가족부 소관 종사자가 80.8%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가 약 4.0%p 높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의 월급직 적용 비율은 88.3%인 반면에 지방이양시설의 월급직 적용비율은 81.8%로 약 6.6%p의 격차가 존재하였음

○ (급여기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이 40.9%였지만 여성가족부의 경우 인건비가이드라인 보다는 인건비 단가 지원이 39.1%로 가장 많았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의 경우 사업 자체 호봉체계를 따른다는 시설 비율이 69.1%인 반면 이용시설에서는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는 비율이 51.0%로 많았음

○ (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 경우 소관부처나 시설유형, 그리고 재원 출처에서 그 차이가 미미한 반면 퇴직연금에서는 시설 구분에 따라 약 2.5p~8%p간의 격차가 존재하였음

- (한계점) 총 종사자 69,313명 중 퇴직급여 형태에 대해 미기입된 경우가 약 46.0%에 달했으나 급여형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기입자들을 포함해 분석함

〈요약 표 1-7〉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지급실태 현황(시설 4,739개, 종사자 69,313명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명/개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임금형태	사례수	69,313	100.0	66,875	2,438	29,403	39,910	25,758	43,555
	시급직	2,287	3.3	3.2	6.0	1.5	4.6	2.1	4.0
	일급직	137	0.2	0.2	0.5	0.1	0.3	0.1	0.3
	월급직	58,386	84.2	84.4	80.8	88.0	81.5	88.3	81.8
	연봉직	8,503	12.3	12.3	12.7	10.5	13.6	9.5	13.9
급여기준	사례수	4,739	100.0	4,514	225	1,633	3,106	1,969	2,770
	사업 자체 호봉체계	1,734	36.3	36.8	33.3	69.1	19.5	38.4	35.3
	인건비가이드라인	1,845	38.9	40.9		16.0	51.0	3.6	64.1
	인건비 단가지원	88	1.9		39.1	5.3	0.1	4.5	
	지자체 호봉표	1,056	22.3	22.0	27.6	9.1	29.2	53.5	0.1
	별도기준 없음	16	0.3	0.4		0.6	0.2		0.6
퇴직급여	사례수	69,313	100.0	66,875	2,438	29,403	39,910	25,758	43,555
	퇴직연금	21,449	30.9	31.1	27.4	35.5	27.6	34.8	28.6
	퇴직적립금	15,979	23.1	23.0	24.0	22.4	23.6	23.0	23.1
	미기입	31,885	46.0	45.9	48.6	42.1	48.9	42.2	48.2

라.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전체) 인건비 교부금 신청 기준, 총 종사자 70,649명 중 기존 행정조사에서 적용된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 준수율 측정 방법을 시스템 자료로 대체하여 총 4,813명의 준수율을 측정한 결과, 101.9%였음

○ (분석 대상)) 준수율 측정 방법의 표준화 차원에서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의 준수율 측정 방법이 미적용되었던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지방이양시설처럼 동일 방법을 적용해 준수율을 측정

□ (유형별 준수율) 보건복지부 시설(101.4%)보다, 여성가족부 시설(107.4%)에서, 생활시설(100.9%)보다는 이용시설(103.3%)에서, 국고지원시설(96.7%)보다는 지방이양시설(107.1%)에서 준수율이 높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의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등 임금이 낮은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의 준수율이 71.6%로 낮았기 때문

〈요약 표 1-8〉 사회복지시설 시설특성별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813	2,631,145	2,643,057	101.9	0.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4,438	2,634,521	2,633,003	101.4	0.21
	여성가족부	375	2,591,195	2,762,037	107.4	0.23
시설 유형	생활시설	2,866	2,612,935	2,611,139	100.9	0.19
	이용시설	1,947	2,657,951	2,690,040	103.3	0.25
재원 출처	국고지원	2,413	2,685,675	2,562,198	96.7	0.20
	지방이양	2,400	2,576,320	2,724,354	107.1	0.22
지역	서울특별시	726	2,563,201	2,777,539	110.3	0.28
	부산광역시	294	2,535,030	2,596,572	104.0	0.23
	대구광역시	247	2,664,551	2,554,647	96.9	0.16
	인천광역시	220	2,548,675	2,552,898	101.3	0.17
	광주광역시	182	2,680,707	2,629,974	99.3	0.18
	대전광역시	178	2,739,712	2,605,841	96.6	0.16
	울산광역시	113	2,642,807	2,579,717	98.6	0.12
	세종특별자치시	31	2,696,613	3,098,317	115.4	0.26
	경기도	930	2,639,378	2,687,180	103.5	0.25
	강원도	228	2,721,143	2,642,723	98.5	0.16
	충청북도	231	2,688,223	2,616,220	98.5	0.18
	충청남도	241	2,642,679	2,584,758	99.4	0.21
	전라북도	240	2,685,984	2,557,093	96.1	0.15
	전라남도	241	2,593,310	2,603,899	101.3	0.16
	경상북도	331	2,583,978	2,530,636	99.0	0.18
	경상남도	286	2,693,301	2,595,339	97.4	0.15
	제주특별자치도	94	2,689,000	2,855,525	107.7	0.26

주: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일부 여성권익시설의 시설장 기본급을 인건비가이드라인 상의 과장급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측정

□ (행정조사와 시스템 기반 준수율 비교) 행정조사 대비 국고지원시설의 시스템 기반 준수율은 약 2.6%p, 지방이양시설은 7.0%p 높은 것으로 파악

○ (국고지원시설 측정) 2023년 국고지원시설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정조사 결과의 전체 준수율은 94.1%이고 지방이양시설 측정에서 설정된 대표 직위 및 호봉 대상자만을 적용한 시스템기반 조사의 준수율은 96.7%로 나타남

- (준수율 차이 원인) 2023년 행정조사에서는 각 직위별 대표 10호봉 또는 인건비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지만, 시스템 기반 조사에서는 각 직위별 특정 호봉 기본급 금액을 측정

○ (지방이양시설 측정) 보건복지부가 2022년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한 행정조사 결과의 전체 준수율은 100.1%였지만 시스템 기반에서는 2023년 측정치로 107.1%로 나타남

- (준수율 차이 원인) 시스템기반 준수율 측정 시설 중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아동전용시설(114.1%), 노숙인종합지원센터(115.9%), 쪽방상담소(111.2%)에서 높게 나타남

〈요약 표 1-9〉 국고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단위: %)

구 분	2023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조사	
		전체 종사자	특정직위 및 호봉 종사자
전 체	94.1	96.6	96.7
장애인거주시설	96.1	94.8	96.1
정신요양시설	92.9	99.5	99.4
지역자활센터	93.6	101.6	100.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00.0	99.3	100.0
노인보호전문기관	93.4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1.1	-	-
아동보호전문기관	95.0	101.6	104.1
학대피해아동쉼터	91.2	-	-
요보호아동그룹홈	93.2	104.5	99.3

주 1. 2023년 시스템 기반 조사의 분석 대상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은 행복e음 인건비 교부금 자료가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요보호아동그룸홈은 시스템 내 별도 구분코드가 없어 아동공동생활 자료를 이용하여 대체

〈요약 표 1-10〉 지방이양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단위: %)

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복지관)			
				사회·노인		장애인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100.1	107.1	99.1	105.8	100.6	110.1	100.5	108.4

주 2023년 시스템기반 조사의 전체 준수율 값인 107.1%는 복지관 중심 이용시설 이외의 기타 이용시설들도 포함한 산출값임

마. 시설 일반현황

□ (전체) 법인 운영률, 설립 기간 등 시설의 투명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설 규모 면에서 5인 미만 종사자 규모 비중이 전체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분석 대상) 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정보에 수록된 4,739개 시설의 행정자료를 분석

○ (법인 운영률) 총 4,739개 시설 중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법인이 운영하는 비중은 86.9%였으며, 특히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법인 운영률이 92.4%로 높았음

- (설치기간) 평균 17.2년으로 설립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중 생활시설(23.6년)과 지방이양시설(18.8년)의 설치기간이 긴 것으로 파악됨

○ (종사자 수) 시설당 평균 17.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고지원시설(14.1명)보다 지방이양시설(19.2명)이 시설당 종사자 수가 약 5명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

- (특성) 여성 종사자 비중이 전체 67.4%에 달하며, 연령대에서는 20대 비중(7.8%)보다는 50대 비중(17.7%)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 종사자 비중은 23.3%였음

○ (종사자 규모) 시설 중 35.3%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반해 51인 이상 시설은 5.7%였음

○ (자격증) 총 69,313명의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는 약 58.3%였으며, 특히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68.0%가 자격증 보유자였음

〈요약 표 1-1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시설현황 분석 결과(시설 4,739개, 종사자 69,313명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법인 운영율(%)			86.9	86.8	88.0	89.3	85.6	79.2	92.4
설치기간(연)			17.2	17.2	16.4	23.6	13.8	14.9	18.8
입소자 정원(명)			35.3	36.2	22.0	35.3		41.9	28.7
종사자 수(명)			17.1	17.3	12.9	18.3	16.4	14.1	19.2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시설(%)		38.4	38.5	36.4	31.8	41.9	49.7	30.4
	51인 이상 시설(%)		5.7	6.0	1.3	5.5	2.2	3.1	7.6
종사자 특성	연령	50대(%)	17.7	17.8	16.4	24.2	12.9	22.5	14.8
		20대(%)	7.8	7.8	7.3	6.9	8.5	6.7	8.4
	여성 종사자 비중(%)		67.4	66.5	91.9	64.4	69.6	65.8	68.4
	소속 비중(%)	생활시설	42.4	43.0	25.9	100.0		77.1	22.9
		이용시설	57.6	57.0	74.1		100.0	22.9	78.1
	대졸 종사자 비중(%)		23.3	23.2	23.8	21.3	24.7	21.9	24.1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			58.3	58.6	50.9	68.0	51.2	66.5	53.5

바. 종사자 근로 실태

□ (전체) 월 근로 현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로조건에서 고용보험 비대상자 등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승진자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대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 급여정보에 수록된 4,739개 시설, 소속 종사자 69,313명의 행정자료를 분석

○ (채용 과정) 채용 방식 중 공개채용 방식을 거친 종사자 비중이 95.6%로 매우 높았으며, 소관부처별, 시설유형별, 재원출처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근로조건) 종사자 지위상 비정규직이 전체의 20.8%, 고용보험 비대상자가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시설 유형) 생활시설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5.2%로 매우 낮은 반면에 이용시설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은 32.2%에 달했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생활시설과 유사하게 8.6%로 낮았지만, 지방이양시설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은 28.0%로 높게 나타남

○ (근로 현황)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 상 월평균 22.434일보다 낮은 19.7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월 시간외근무 시간은 20.5시간으로 많은 편

- (시설 유형) 생활시설의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183.5시간으로 이용시설 160.9시간보다 약 23시간 많았으며, 주된 이유로는 월 시간외근무시간이 36.4시간으로 많기 때문이었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서도 월 총근로시간은 181.1시간으로 지방이양시설 166.0시간보다 약 15시간 많았으며, 주된 이유 또한 과도한 월 시간외 근무시간(35.2)시간 때문으로 추정됨

○ (휴가) 종사자의 평균 연차 일은 15.9일로 파악되며. 소관부처별, 시설유형별, 재원 출처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대체휴가제 운영 시설율) 높은 월 시간외근무시간 대비 대체휴가제 운영시설은 전체시설 중 5.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승진) 총 종사자 69,313명 중 최근 3년간 승진한 종사자는 17.4%(12,061명)로 연간 인원 환산 시 4,020명이며, 이는 1년 중 전체 종사자의 5.7% 정도가 승진한다는 것을 의미

- (소관부처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의 최근 3년간 승진 종사자 수는 6.1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6.6명)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재원출처별) 지방이양시설의 최근 3년간 승진 종사자 수는 7.0명으로 국고지원시설의 승진자 수 5.9명 대비 약 1.1명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시설기준 연 교육횟수는 16.8회, 종사자 기준 교육 시간은 연 91.6시간으로 파악됨

- (교육횟수) 생활시설의 경우 연 19.2회로 이용시설의 연평균 교육횟수 15.0회 대비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교육시간) 이용시설이 연 108.9시간으로 생활시설 76.1시간보다 많았으며, 재원 출처에 소도 지방이양시설은 107.6시간으로 국고지원시설 64.9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1-1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근로여건 분석 결과(종사자 69,313명 기준)

(단위: 시간, 일, 회, %)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근로조건	공개채용 비중(%)		95.6	95.6	96.1	96.2	95.2	95.9	95.5
	종사자 지위	정규직 비중(%)	76.2	76.3	73.2	93.7	63.4	89.0	68.7
		무기계약직(%)	2.6	2.4	8.1	0.9	3.9	2.1	2.9
		비정규직(%)	20.8	20.9	18.1	5.2	32.2	8.6	28.0
	고용보험대상자 비중(%)		80.4	80.6	75.5	83.7	77.9	82.2	79.3
근로현황	월 근로일수(일)		19.7	19.7	18.6	18.5	20.8	18.5	20.4
	월 총 근로시간		171.7	172.1	145.3	183.5	160.9	181.1	166.0
	월 소정 근로시간(시간)		151.2	151.5	137.7	147.1	155.0	145.9	154.5
	월 시간외근무시간(시간)		20.5	20.7	7.6	36.4	5.8	35.2	11.5
	월 연장근로시간(시간)		14.4	14.5	6.1	24.1	5.4	23.0	9.1
	월 야간근로시간(시간)		3.7	3.8	0.0	7.8	0.1	7.8	0.1
	월 휴일근로시간(시간)		2.4	2.4	1.5	4.6	0.3	4.4	1.1
휴가	총연차일(일)		15.9	15.6	15.7	16.3	15.4	16.1	15.7
	여성 생리휴가 비사용율(%)		25.4	26.2	9.1	32.0	20.8	25.9	25.1
	대체휴가제 운용 시설율(%)		5.9	5.8	6.7	7.9	4.8	6.7	5.3
승진	종사자기준 최근 3년간 승진경험자(%)		17.4	17.2	21.5	14.8	19.3	16.3	18.0
	시설기준 최근 3년간 승진 종사자 수(명)		6.6	6.6	6.1	6.7	6.5	5.9	7.0
교육	시설기준 최근 2년간 교육 훈련 횟수(회)		16.8	17.1	10.2	19.2	15.0	15.3	17.8
	종사자 기준 연 교육시간(시간)		91.6	92.2	64.9	76.1	108.9	64.9	107.6

□ (월 총 근로시간에 대한 타 산업 비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총 근로일수는 19.7일로 전산업 전체 평균 19.6일과 수준이 비슷하나 초과 근로시간이 타 산업 대비 많아 총 근로시간은 광업(180시간)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177.0시간), 제조업(174.1시간)과 비슷한 수준

○ (소정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균 151.2시간으로 전산업 평균 147.4시간 대비 약 4시간 정도 많았고, 세부산업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152.4시간)과 운수 및 창고업(152.4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초과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균 20.5시간으로 전산업에서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광업(19.4시간)보다도 많은 수준

○ (휴일근로시간) 평균 2.4시간으로 전체 산업 평균 2.2시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음

〈요약 표 1-13〉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위: 시간, 일)

구분		총근로일수 (일)	총근로시간 (시간)	소정실근로 시간 (시간)	초과근로 시간 (시간)	휴일근로시 간 (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7	171.7	151.2	20.5	2.4
전산업	전체	19.6	154.9	147.4	7.5	2.2
	농업, 임업 및 어업	19.8	153.7	149.2	4.5	2.4
	광업	21.8	180.0	160.6	19.4	8.7
	제조업	20.4	174.1	156.7	17.4	5.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0.3	168.8	160.6	8.1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1	177.0	162.3	14.7	4.6
	건설업	16.1	128.8	125.7	3.2	0.8
	도매 및 소매업	20.1	155.9	152.4	3.5	1.1
	운수 및 창고업	20.3	164.4	152.4	11.9	3.2
	금융 및 보험업	19.8	161.1	156.6	4.5	0.4
	교육 서비스업	17.8	128.5	125.8	2.8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4	145.9	141.4	4.5	1.1

주: 전산업 자료는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참조

□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근로환경) 2022년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7시간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전인 2016년 월평균 근로시간 185.2시간보다 약 13.5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배경)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제외되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됨

○ (근로시간 단축 결과) 2016년 총 184.9시간이었던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의 근로시간은 2022년 172.1시간으로 약 13시간 감소했지만, 생활시설의 경우 동일 기간 단축 근로시간은 5.3시간으로 이용시설(16.6시간) 대비 매우 적었음

〈요약 표 1-14〉 2016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22년					2016년					총근로 시간 차이
		총 근로	소정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총 근로	소정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전체		171.7	151.2	14.4	3.7	2.4	185.2	132.1	18.4	17.5	17.2	-13.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172.1	151.5	14.5	3.7	2.4	184.9	131.3	18.4	17.1	18.1	-12.8
	여성가족부	145.3	137.7	6.1	0.0	1.5	186.2	130.5	17.4	21.8	16.5	-40.9
시설 유형	생활시설	183.5	147.1	24.1	7.8	4.6	188.8	132.3	20.3	19.3	16.9	-5.3
	이용시설	160.9	155.0	5.4	0.1	0.3	177.5	120.9	16.0	19.7	20.9	-16.6

주: 2016년 조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미측정하여 본고에서는 총 근로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산식으로 산출

사. 인권 및 권익보호

□ (전체) 종사자의 인권의 보장정도는 전체 5점 만점에 3.8점으로 양호한 편이나 이용자 등 폭력 경험자가 전체의 19.2%에 달하며, 신체적 건강(3.6%)보다는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자(8.0%)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폭력 등 위험경험 정도) 전체 5점 만점에 2.2점으로 남성 종사자(2.1점)보다는 여성 종사자(2.3점)에서 폭력 등 위험 정도를 더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 (폭력 등 위험 경험자) 낮은 위험경험 정도 대비 폭력 등 위험경험자는 전체 응답자 4,402명 중 19.2%였으며, 특히 보건의료직(21.4%)과 사회복지직(21.0%)에서 위험경험자 비중이 높았음
- (위험 경험 유형) 위험경험자 844명의 경험 위험 유형으로는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신적 직업병(41.9%), 상급자의 부당한 대우(29.3%), 신체적 직업병(18.2%)의 순이었음

○ (건강 문제) 근무 중 발생한 건강 문제에서는 신체적 문제 발생자(3.6%)보다는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자가 8.0%로 많았음

- (병원 치료) 신체적 건강 문제 발생으로 인한 병원 치료는 2.9%인 반면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치료자는 1.6%로 약 1.3%p 낮았음

○ (진료비용) 신체적 건강문제로 진료를 받은 총 126명의 종사자 중 94.4%가, 정신적 건강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총 71명 중 84.5%가 개인 비용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

〈요약 표 1-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건강문제 분석 결과(종사자 4,402명 기준)

(단위: 명, 점, %)

구분		전체	고용형태		직종				종사자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보건의료직	남	여
사례`수		4,402	3,908	182	3,128	740	352	128	1,169	3,233
인권보장	인권보장정도(점)	3.8	3.8	4.0	3.8	4.0	3.8	3.8	3.9	3.8
	폭력 등 위험경험 정도(점)	2.2	2.2	1.9	2.3	2.0	2.0	2.3	2.1	2.3
	폭력 등 위험 경험자(%)	19.2	19.6	9.9	21.0	13.6	13.4	21.4	17.6	19.7
치료	신체적 건강 문제 발생자(%)	3.6	3.4	1.6	3.5	2.7	4.5	4.9	3.2	3.6
	- 병원 치료자(%)	2.9	2.7	1.1	2.8	2.6	3.7	3.8	2.4	3.0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자(%)	8.0	8.1	4.4	9.1	5.4	3.4	8.8	5.9	8.8
	- 병원 치료자(%)	1.6	1.5	1.6	2.0	0.4	1.1	1.1	1.3	1.7

아. 종사자 처우개선 대한 수요 파악

□ (전체) 근로환경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종사자 지위와 종사자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개선 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근로환경)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관공서 공휴일 미사용일, 호봉제 적용률, 입사 후 승진율과 승진 기간 등의 근로환경에서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또는 51인 이상 사업장 대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시간외근로)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 방법인 통상임금 1.5배 수당 지급률은 전체 40.0%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정규직(15시간)과 5인 미만 사업장(17시간)의 월평균 시간외근로시간 대비 인정시간(12.2시간, 15.3시간)이 정규직과 51인 이상 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휴가) 관공서 공휴일 미사용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2.9일로 51인 이상 사업장보다 약 2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19.1%) 등에서 매우 낮음

- (대체인력지원사업 이용률) 전체평균 21.9% 대비 비정규직(18.3%)과 보건의료직(17.0%)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일가정양립제도 미실시율) 전체평균 14.9% 대비 비정규직(27.5%)과 5인 미만 사업장(24.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보수수준 및 처우) 고용형태나 직종, 종사자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수준 향상 시, 호봉제 선호 비중은 전체평균 90.5%로 높으나 현재 호봉제 적용률에서는 비정규직(68.1%)과 기능직(88.6%), 5인 미만 사업장(83.8%)이 전체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적정 보수 수준) 전체 일반 종사자 중 65.5%가 현 보수수준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원하는 임금수준은 사회복지직공무원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8.6%

○ (승진) 평균 입사 후 승진율 45.7% 대비 낮은 종사자는 비정규직(6.6%), 기능직(19.1%),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40.7%)로 나타남

- (기간)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경우 평균 6.61년이 소요되었지만 관리직은 8.08년, 보건의료직은 7.32년이었으며, 51인 이상 사업장은 8.25년으로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파악됨

○ (업무량) 시설운영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체 63.3%였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인력배치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3.5%였고, 51인 이상 사업장의 의견은 97.6%에 달함

○ (세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육아휴직제도 실시율(69.0%), 동일자녀 육아휴직 2년 사용률(45.4%) 등 전반적인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실시율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낮은 것으로 파악

□ (일자리 만족도) 관리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직 종사자들은 현 일자리에 대해 보통 이상 만족(3.5점)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직 의사가 31.6%에 달함

○ (세부 만족도) 21개 세부 만족도 항목에서 보수 수준(2.6점)과 승진 기회(2.9점), 휴게실 등 부대시설(2.9점)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음

- (만족도가 높은 항목) 전체 전반적 만족도 평균인 3.5점 대비 높은 만족도 항목은 동료와의 관계(3.9점), 하급자와의 관계(3.8점), 고용안정(3.8점), 업무에 대한 책임성(3.8점) 담당하는 일에 대한 보람(3.7점) 등 시설 내 인적 관계와 업무 성격인 것으로 나타남

○ (시급 과제) 보수 수준과 관련하여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향상(51.3%)이 1위였으며,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선(11.7%)과 단일임금체계 구축(11.6%) 등 보수 수준에 관한 내용이 약 75%임

○ (이직 의사) 전체 응답자의 31.6%가 이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직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26.7%, 과도한 업무량이 25.4%로 나타남

- (이직의사가 높은 종사자) 종사상 지위에서는 비정규직(39.6%)이,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직(33.4%)이, 종사자 규모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32.1%)에서 그 비중이 많았음
- (이직이유) 비정규직의 경우, 업무량(11.1%)보다는 낮은 보수(31.9%)가, 사회복지직의 경우에는 낮은 보수(23.5%)와 과다한 업무량(25.4%) 모두 때문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28.2%)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1-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에 대한 수요조사 주요 분석 결과(종사자 4,402명 기준)

(단위: 시간, 일, 점, %, %p)

구분		전체	고용형태		직종				종사자 규모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보건의료직	5인 미만	51인 이상
사례수		4,402	3,908	182	3,128	740	352	128	1,170	367
시간외 근로	월평균 시간(시간)	17.4	17.7	15.0	17.2	16.1	22.3	16.2	17.0	15.1
	인정시간(시간)	17.5	17.8	12.2	16.8	17.2	24.0	18.3	15.3	17.0
	통상임금 1.5배 수당 지급율(%)	40.0	40.3	39.1	38.9	45.6	36.8	40.7	35.4	41.9
휴가	관공서 공휴일 미사용(일)	1.9	2.0	1.0	2.3	1.0	1.8	0.5	2.9	0.9
	대체인력 지원사업 인지율(%)	84.0	85.4	65.9	84.4	85.4	79.3	80.8	83.2	86.9.
	일가정양립제도 미실시율(%)	14.9	13.6	27.5	16.9	11.5	9.1	4.9	24.0	0.8
보수 수준 및 처우	현재 호봉제 적용율(%)	90.5	93.2	68.1	89.9	93.4	88.6	93.4	83.8	97.0
	보수 수준 향상시 호봉제 선호율(%)	78.3	78.6	74.7	78.9	77.6	77.0	74.2	81.2	71.7
	보수 수준의 미적정율(%)	65.5	65.3	67.0	66.9	64.3	56.3	63.7	67.4	71.9
	사회복지공무원 임금수준 선호율(%)	68.6	68.7	63.9	68.6	70.0	71.2	58.6	67.0	71.2
승진	입사후 승진율(%)	45.7	47.4	6.6	49.9	42.8	19.1	37.6	40.7	52.3
	입사후 승진기간(년)	6.9	6.98	1.0	6.61	8.08	6.82	7.32	6.42	8.25
업무	인력 부족율(%)	63.3	64.8	39.6	63.9	63.5	58.2	62.1	57.7	70.6

구분		전체	고용형태		직종				종사자 규모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계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보건의료직	5인 미만	51인 이상
량	인력배치기준 부적합(%)	63.5	64.0	65.3	63.4	64.3	63.9	61.1	62.1	97.6
일가정양립	임신여성의 시간외금지율(%)	57.9	57.6	62.6	57.5	52.2	65.1	73.6	59.1	57.2
	육아휴직제도실시율(%)	80.6	81.9	67.6	78.3	84.6	86.4	92.3	69.0	98.4
	동일자녀 육아휴직 2년사용(%)	56.8	57.7	51.6	54.0	61.2	66.8	67.0	45.4	74.9
	육아근로시간단축 실시율(%)	56.7	57.2	53.3	54.9	59.1	63.9	64.8	45.4	76.8
	유연근무제도 실시율(%)	48.9	49.0	48.4	47.5	50.0	56.3	53.3	44.1	54.8
	가족돌봄 휴가,휴직 실시율(%)	56.5	57.0	50.5	54.4	60.5	63.4	61.5	45.1	79.0
일자리만족도(5점 만점)	전반적 만족도(점)	3.5	3.5	3.5	3.4	3.5	3.6	3.6	3.5	3.5
	담당업무 및 업무량(점)	3.3	3.3	3.5	3.3	3.4	3.4	3.5	3.3	3.4
	보수(점)	2.6	2.6	2.7	2.6	2.6	2.7	2.7	2.6	2.6
	상급자와의 관계(점)	3.6	3.6	3.5	3.6	3.6	3.7	3.6	3.6	3.7
	동료와의 관계(점)	3.9	3.9	4.0	3.9	3.9	3.9	3.9	3.9	3.9
	하급자와의 관계(점)	3.8	3.7	3.8	3.8	3.8	3.8	3.7	3.8	3.8
	사업장 중간관리자와 의사소통(점)	3.5	3.5	3.5	3.5	3.5	3.6	3.5	3.6	3.5
	종사자 간 의사소통(점)	3.7	3.7	3.8	3.7	3.7	3.7	3.6	3.8	3.7
	고용안정(점)	3.8	3.8	3.1	3.7	3.9	3.9	4.0	3.6	4.0
	승진 기회(점)	2,9	2.9	2.9	2.9	3.0	2.8	2.9	2.9	3.0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점)	3.5	3.5	3.5	3.6	3.5	3.4	3.4	3.5	3.6
	원하는 부서에 근무 여부(점)	3.5	3.5	3.6	3.5	3.5	3.7	3.7	3.5	3.5
	부대시설(점)	2.9	2.9	2.9	2.8	3.0	3.0	3.0	2.8	3.0
	중요한 결정 영향력(점)	3.3	3.3	3.3	3.3	3.3	3.3	3.3	3.4	3.3
	업무에 대한 책임성(점)	3.8	3.8	3.8	3.7	3.7	3.9	3.9	3.8	3.8
	후생복지(점)	3.0	3.0	3.0	3.0	3.0	3.1	3.0	2.9	3.1
	담당하는 일에 대한 보람(점)	3.7	3.7	3.8	3.7	3.7	3.9	4.0	3.7	3.8
	여가 등 시간적 여유(점)	3.2	3.2	3.3	3.1	3.3	3.4	3.4	3.1	3.3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것(점)	3.0	3.0	3.1	2.9	3.1	3.1	3.1	2.9	3.1
	주 평균 근로시간(점)	3.5	3.5	3.5	3.5	3.6	3.6	3.6	3.5	3.6
	안전한 근로환경(점)	3.4	3.4	3.6	3.4	3.5	3.5	3.4	3.4	3.4
	경력개발등 개인 발전가능성(점)	3.2	3.2	3.3	3.2	3.3	3.2	3.2	3.2	3.2
시급과제	가이드라인 수준상향(%)	51.3	51.6	50.5	52.2	51.2	42.3	53.8	51.1	55.0
	임금체계 개선(%)	11.7	11.5	16.5	10.9	11.4	18.2	14.3	11.7	13.1
	단일급여체계 구축(%)	11.6	11.6	9.9	11.3	11.9	15.1	8.8	12.1	11.4
이직	이직의사 종사자(%)	31.6	30.8	39.6	33.4	31.5	21.0	21.4	32.1	28.6
	- 이직이유(낮은 보수)(%)	26.7	25.5	31.9	23.5	33.9	36.5	51.3	28.2	26.7
	- 이직이유(업무량)(%)	25.4	27.0	11.1	25.4	24.5	29.7	23.1	21.9	26.7

3. 향후과제와 연구의 한계점

가. 향후 정책 방향과 수단

□ (정책 방향: 근로여건 격차 해소) 보수 수준에 초점을 둔 기존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근로조건의 격차 해소로 확대시키기 위해 전체 사업장 중 38.4%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자체)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이양시설 대비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낮은 보수수준을 보전하는 등 시설유형간 보수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 중

○ (중앙정부) 근로여건이 취약한 국고지원시설이 상당 부분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인 종사자 규모 5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을 검토

□ (정책 수단 1: 임금수준 비교 대상 조정 검토)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의 기준 대상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서 일반 근로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종사자 보수 수준 욕구) 4,402명의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종사자들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보수 수준이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가이드라인의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51.3%에 달함

○ (보수 수준 비교대상) ’09년 도입된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며,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에서 종사자 임금이 결정되고, 연도별 임금 상승율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승 폭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정책 수단 2: 인건비가이드라인 내용 수정) 현 인건비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기본급과 기타 근로여건에 대해 개선과제가 존재

○ (기본급 구성 내용 삭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이나 포괄임금적 요소가 적용됨[1]으로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구성 설명에서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에 관한 설명은 삭제 필요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급액 명시)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산정 방법만 명시하였을 뿐 지급금액과 기준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간·시설유형간·직군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 (승진 한계) 인력배치라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 인원이 결정된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기본급에는 어떤 수당도 포함될 수 없음

설간·지역간 승진 적체는 보수 수준의 격차 및 지역 및 시설간 인력이동의 어려움을 유발함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당연승진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

□ (정책수단 3:인력배치기준 재검토)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시간외근무 수당 지출 상승, 당직제 및 교대제 운영 그리고 대체휴가제 형태를 고려해 현 인력배치기준의 개편 또는 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제도의 확대가 요구

○ (기본급 대비 시간외근무수당 비중) 급여정보에 수록된 종사자 기본급 대비 시간외근무수당 비중은 전체 종사자 67,054명 기준, 12.3%이고, 생활시설은 20.9%(월 기본급 3,202.7천원. 시간외근무 수당 671.6천 원)를 차지

○ (당직제 및 교대제 참여근로자 비중) 근로환경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전체 종사자 중 22.7%가 일상 근무 후 당직 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시설 종사자는 그 비중이 36.9%였음

○ (인력 부족) 총 4,042명의 종사자 중 63.3%가 현재 근무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부족 이유 중의 1순위는 사업복지시설 관련 법령이나 사업지침의 직원 정원에 관한 배치기준이 잘못되어서가 63.5%였음

□ (정책수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기존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상 재해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4일 이상의 치료가 동반되는 신체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고, 심리적 치료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적용을 사업 지침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폭력행위 현황)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상 재해율은 2019년 기준, 0.46%로 전 산업 평균 0.63% 대비 낮은 반면, 폭력행위로 인한 재해 유형 수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단일 업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산업안전보건법」 지침 반영) 4일 이상의 업무상 재해 및 정신적 치료·보상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 의무를 사업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단 5: 휴가 미사용 대안 마련)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휴가·휴일은 근로자가 미사용 시 시설에서 별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현재 종사자별 총 연차 중 평균 1.45일을, 2022년도에 주어진 관공서 공휴일 중 평균 1.95일을 미사용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

○ (휴가 미사용 현황) 연차휴가 및 관공서 공휴일 미사용은 60대 이상, 상급관리자, 근속기간에서 10년 이상 근속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미사용 이유는 업무량 때문으로 파악(83.7%)되며. 미사용 휴가는 대체휴가나, 시설 자체 보상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대체휴가나 그 어떤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35.3%를 차지

○ (적정인력 대체 필요) 휴가의 미사용은 전체의 83.7%가 업무량이 많고, 대체인력을 구할 수가 없

다고 응답.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 휴가·휴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 (정책 수단 6: 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방법 수정)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간 다른 측정방식을 이번 실태조사 측정 방법으로 통일시키는 등 정비가 필요

○ (기존 측정방식) 국고지원시설 중, 호봉제 미적용시설은 가이드라인 직위별 평균 호봉과 기본급 확보 예산액 간의 가중평균을 적용

- (국고지원시설 중 호봉제 보유시설) 각 직위별 10호봉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비교
- (지방이양시설) 특정 일부시설, 특정 일부직위, 특정 일부호봉 종사자의 기본급 대비 교부금 기본급 지급율을 지자체에 의뢰하여 행정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내, 개인별 교부금 정보와 인건비가이드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체 사회복지시설과 소속된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준수율 측정이 진행되어 범위와 측정방식의 통일성을 확보함

나. 연구의 한계점과 보완과제

□ (배경)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12.11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4항에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 노력 및 인건비 준수율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임

○ (방법론 변경)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방법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 분석으로 전환함

- (전환 이유) 기존 설문조사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개인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과 국고지원 및 지방이양시설간 준수율 측정 방법의 통일화, 그리고 행정조사 기반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감소 차원 등에서 추진

□ (한계점) 이 과정에서 분석자료의 모집단 대표성 확보와 측정변수 값들의 비표준화, 그리고 행정자료의 적합성 부족과 주요 비교변수들의 측정방식 불일치성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

○ (분석자료의 모집단 대표성 확보) 본 조사에서는 보수수준 분석이 가능한 총 4,739개 시설의 67,054명의 종사자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인 14,131개 시설 종사자의 전체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

- (전수에이터를 이용한 대표성 검증) 2022년 9월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수가제외시설 종사자 64,482명의 98.0%인 67,054명이 급여분석에 포함된 것을 확인

○ (측정변수들의 비표준화)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직위 및 급여내역 정보들이 시설에서 임의적으로 기입하는 등(예: 간병원, 봉급, 월급 등 비표준화) 분석변수의 값 설정이 어려움

○ (행정자료의 적합성 부족) 행복e음시스템의 인건비 교부금 지급 자료가 아닌 신청자료로 종사자 인건비 준수율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준수율 결과의 타당성에 한계가 존재

- (급여정보 활용가능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 급여정보에는 종사자 기본급 등 지급정보가 존재하지만, 지급된 종사자 기본급에는 인건비 교부금 이외, 자체 조달 재원 등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이를 이용한 준수율 측정 시 과다계상되는 결과가 추출
- (인건비 신청자료 사용) 인건비 교부금 정보 중 교부금 신청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정산과 결산 자료의 경우 개인이 아닌 시설별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

○ (주요 비교변수들의 불일치성) 보수수준, 월 총근로시간 등 주요 정책관리 변수에 대해 기존 설문조사 방식에서 측정한 변수와 행정자료 상의 변수가 동일하지 않아 기존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조사결과 간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

□ (보완과제: 시스템 관리) 향후, 행정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입력정보 값에 대한 제도적 표준화가 필요

○ (인건비 항목 표준화) 인건비 항목에 입력값이 월급, 기본급, 봉급 등과 같이 비표준화된 항목 값으로 다수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표준화하는 작업이 시급함

○ (직위 표준화) 종사자 직위 항목 값에서도 특정 종사자의 경우가 직위가 2개 이상(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로 기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해 이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

주요 용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종사자 실태조사,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음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인건비 준수율을 조사해야 함

○ (연혁) 보건복지부는 2014년, 2017년, 2020년 3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음

○ (차별점) 과거 조사 결과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로 활용되어온 것과는 달리 이번 실태조사(2023년)부터는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조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함

〈표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4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법정 실태조사를 추진하되, 인건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추진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 확보와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데 있음

○ (법정 조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4항 준수를 위한 법정 실태조사임

○ (기초자료 확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 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

○ (결과 대외 공표)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국민에게 공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 (개관) 본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연구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함

□ (1. 정책 및 연구 동향)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관련 법제도 및 문헌 연구 검토

○ (법제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 (문헌 연구) 처우개선 실태 파악을 위한 최근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

□ (2. 실태조사) 조사 대상시설 및 종사자 관련 일반 현황, 보수 수준, 근로 여건, 기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요 파악 등 총 4가지 세부 영역을 파악

○ (일반 현황) 서비스대상·재원·생활 및 이용시설·지역·소관 부처 등의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성별·나이·직위·직종·근속연수·고용 형태 등의 종사자 현황

○ (보수 수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을 중심으로 종사자의 보수 수준 파악

- 공무원 대비 인건비가이드라인 보수 수준
- 투입 재원(국고·지방)별 기본급·수당 등 임금 구성 현황과 기본급 준수율
- 종사자 직위·지역별·시설유형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근로 여건) 취업규칙, 퇴직금, 휴가, 승진, 시간외근무 등 「근로기준법」 관련 준수사항

- 취업규칙 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및 법정 휴가제도 현황 등
- 근로일수 및 시간, 내부 승진 규정, 복리 후생제도 등

○ (기타 처우개선 수요) 역량개발 현황, 종사자 권익 보호, 처우개선 욕구 등

- 종사자의 교육·경력관리 현황 및 수요, 근로환경 및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 종사자의 고충 및 권익 보호 정도, 위험(폭력포함) 경험 및 유형

□ (3. 정책개발) 보수, 근로 여건 현황분석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 (근로 여건) 시설유형·종사자 직위·지역 등에 근거한 보수, 근로 여건 등 분석 후, 개선사항 도출

○ (정책대안 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 대안 개발

2. 연구 방법

□ (개관) 앞서 언급한 3가지 연구 내용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연구 내용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구축

○ (방법론 구축 방향) 정책 동향, 실태 파악, 정책개발이라는 3가지 기대효과 달성에 필요한 세부 연구 내용 확보를 위해 각각의 연구방법론을 차별화

- (정책 및 연구 동향) 법제도 및 연구 동향에서는 문헌 검토 방법을 주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추진
- (실태 파악) 조사 대상시설과 종사자 규모가 적었던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정책개선 및 관리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관련 행정자료의 분석을 시도
- (정책 개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요 파악을 위해 전문가 대상 FGI 후 조사 대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대상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그림 1-1] 주요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론



□ (개관)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연구 동향에서는 기존 문헌 검토를, 광역지자체들의 정책 동향에서는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실시

○ (법제도 동향) 문헌 연구를 주 연구방법론으로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관련 법률과 개정 사항 및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정책 동향 관련 제도 변화를 파악

- 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 및 인권 보호의 법 등 연계 가능한 법률들의 적용 가능성 등을 타진

○ (연구 동향) 이번 실태조사 방법론 변경과 연구 내용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을 검토

- 중앙부처 대비 지자체 실태조사의 차이점 파악 및 벤치마킹 시도를 위한 검토

○ (지자체 정책 동향) 복지부의 주요 처우개선 정책인 인건비가이드라인 정책의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의 종사자 처우개선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진행

- 지방이양 및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방문 전 설문지 배포 후,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
- 방문 조사의 주목적 중 하나는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 호봉표 적용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음

〈표 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방법론 및 주요 연구내용

구분	주요 연구방법론	주요 파악 내용
법제도 동향	- 문헌 검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검토와 개정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법률 검토 · 최근 지자체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등 노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검토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변화 중 한계점 등을 분석
최근 연구동향	- 문헌 검토	- 2023년 실태조사의 방법론 변경과 연구 내용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자체 실태조사 내용을 검토 · 중앙부처와 지자체 조사간 중복 가능성 및 차별점 확인 · 지자체 실태조사의 방법론과 내용의 특성을 검토
지자체 정책 동향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인터뷰	-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현황을 파악 · 지방이양시설 및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현황 파악에 초점 · 방문 전, 각 시설유형별 인건비 적용기준을 파악 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 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분석

□ (방법론 변경) 2018년 12.11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4항에 근거(〈표 1-1〉 참조),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 노력 및 준수율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준수율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

○ (준수율 측정 수준) 과거, 표본조사에 의해 채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연간 임금지급 내용을 설문조사로 수집, 분석하였기 때문에 월 수준의 준수율 측정이 불가능하였음

○ (준수율 측정 대상) 현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이 특정 시설에 근무하는 특정 직위·호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표본조사 시 분석 대상자 누락이 예상

○ (방법론 변경)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행정자료를 준수율 측정 등에 활용하고, 행정자료에서 제공이 어려운 근로조건 등은 종사자 대상의 인터넷 조사로 파악하는 것으로 변경

〔그림 1-2〕 기존 실태조사 대비 2023년 실태조사 비교

구분	2020년 실태조사		2023년 실태조사(안)
방법	• 설문조사(시설장용, 종사자용)		• 행정자료(시설장용), • 설문조사(종사자용)
대상	• 사회복지시설 61종(장기요양기관 포함)	➡ 조정	• 사회복지시설 56종(장기요양기관 등 제외)
표본 수	• 시설: 1,362개(모집단의 7%) • 종사자: 11,644명(조사시설 종사자 전수)	➡ 확대	• 시설: 4,739개(모집단의 33.5%) • 종사자: 69,313명(사시정 급여인사 정보 분석가능 대상)
내용	〈설문조사 : 시설장용(119개 문항)〉 • 시설 일반 현황(일반사항, 이용자·종사자 현황, 재무현황 18개 항목) • 종사자 현황 및 보수 수준(종사자 인적사항, 직무현황, 보수 수준 17개 항목) • 보수체계 및 인건비가이드라인 10개 항목 • 근로여건(근로계약, 퇴직금, 휴가, 승진, 시간외근무, 교대제 근무 등 37개 항목) • 역량개발(교육·훈련, 경력개발 11개 항목) • 종사자 안전 실태 및 처우개선 7개 항목 등 〈설문조사 : 종사자용(72개 문항)〉 • 근로환경과 보수지급(근로환경, 시설안전, 보수수준 23개 항목) • 처우수준 및 욕구(보수처우·근무환경·교대제 근무 욕구 18개 항목) • 역량개발(교육·훈련, 경력개발 10개 항목) • 종사자 안전실태(인권, 위험 12개 항목) • 종사자 일반 사항(인적, 직무 등 9개 항목) ※ 시설장과 종사자 중복 문항 40개	➡ 보완	〈행정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일반 현황, 종사자 현황 및 보수 수준 (급여·수당), 퇴직금, 승진 여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현황 등 • 행복e음 인건비 교부금 자료 - 종사자별 인건비 교부금 자료(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후생경비 등)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종사자용(50여개 문항)〉 • 근로 여건(법정휴가, 복리후생제도, 시간외근무, 「근로기준법」관련 사항 등) • 종사자 역량개발(교육·훈련, 경력개발 등) • 안전 및 처우개선 욕구(권익 보호, 폭력 경험, 근무 만족도, 이직 의향 등)
비고		➡	• 조사 결과 공표

□ (기존 시설장 조사) ’20년 기준 전체 모집단, 사회복지시설 61개 종, 총 18,541개소 중 7%인 1,386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시설장과 경영 담당자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방법)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대상으로 우편·방문·인터넷 조사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

○ (조사대상) 여가부 소관 시설을 포함, 총 61개 시설유형에 소속된 시설장과 소속 종사자 전원을 조사대상(장기요양기관, 여가부 소속기관 포함)으로 설정

○ (설문내용) 시설장 대상으로 시설 현황 등 6개 대분류 119개 문항을, 종사자 대상으로는 근로자 환경과 보수지급 등 72개 문항을 조사

○ (정책 반영) 연봉기준의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임금 수준 및 근로환경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수 수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시사점을 제공

○ (한계점) 보건복지부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호봉별·월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이 불가능

- 이외 시설장과 종사자의 중복문항(40개 문항)으로 조사대상의 설문 피로도 상승

□ (2023년 실태조사) 기존 시설장 조사를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 데이터로 대체하고, 종사자 조사는 안전 실태 등 근로환경 이슈에 대해서만 인터넷 웹 조사를 진행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록 정보) 시설장 설문 항목 119개 중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 수록된 정보는 79.8%, 종사자 설문 항목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중복 정보는 54.3%로 파악

○ (인건비 준수율 측정) 특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료 이용 시, 종사자의 시설별, 지역별, 직위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이 가능

○ (측정 방법)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에 신청한 종사자의 개인별 인건비 교부금 정보 중 월 기본급을 산출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직위·호봉별 준수율을 산정

〈표 1-3〉 기존 실태조사 항목 대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록 정보 현황

(단위: 개, %)

시설장 조사		종사자 조사		
총 문항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수록 정보	총 문항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시설장) 중복 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미중복 정보
119개(100.0%)	95개(79.8%)	70개(100.0%)	38개(54.3%)	32개(45.7%)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미등록 정보) 기존 시설장 조사항목에는 취업규칙 유무, 근로계약, 퇴직금, 휴가, 승진 관련 항목 등이 존재하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미등록

- (부재 조사정보 확보 방법) 기존 시설장과 종사자 조사항목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부재한 정보는 종사자 대상 웹조사에 포함하여 확보

〈표 1-4〉 기존 실태조사 항목 대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록 및 미등록 정보 현황

시설장 조사항목 중 사시정 미등록 정보	종사자 조사항목 중 사시정 미등록 정보
1. 최근 3년간 기본급 인상률	20. 총 법정 휴가 일수 및 사용한 법정 휴가 일수
2. 보수 수준 및 지급방식 문제	21. 입사 이후 승진 경험유무
3. 취업규칙 유무	22. 적절한 보수 수준(월평균)
4.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23. 보수의견(직무 및 업무 강도, 다른 직군과의 비교)
5. 매년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변경서) 작성 여부	24. 공무원과 비교시 직위별 비교대상에 대한 동의 정도
6.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지원 현황 및 미지급 이유	25. 공무원과 비교직급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7. 기타 복리후생제도 존재 여부	26.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
8. 임신 중인 여성 시간외근무 금지/제한 여부	27. 직업 항목별 만족도
9.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시간외근무 금지/제한 여부	28.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
10. 안전관리 인력 지정 및 선임 여부	29.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 방식
11. 안전관리 지침 여부	30. 이직 의향 및 사유
12. 대책위원회 및 비상 연락체계 명시 여부	31. 사용한 법정 휴가 제도
13. 직원교육을 위한 규정/지침 마련 여부	32. 희망하였으나 보장받지 못한 법정 휴가제도 및 이유
14. 교육 복무 처리 상황	33. 시행 적용을 희망하는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
15. 교육비용 지원 여부	34. 직무 선택 시 교육 이수 경로
16. 위험(폭력포함) 문제 대응 내부 규정/매뉴얼 유무	35. 보장받지 못한 인권 내용
17. 위험(폭력포함) 관련 개선 과제	36. 최근 1년간 교육받은 장소
18. 종사자 처우의 시급한 과제	37. 인권교육 필요도
19.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문제점 애로사항)	38. 근무시설에서의 위험(폭력포함) 경험 정도 및 유형

○ (분석대상 규모 검토)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8.1%)과 재가노인복지시설 (5.3%) 제외 시, 복지부 소관 시설의 입력률은 31.4%, 여가부 소관 시설은 17.4%로 기존 설문조사 표본 수 7%(1,362개)보다 약 10.4~24.4%p(4,508개) 많은 것으로 파악

- (행정조사) 복지부 7개, 여가부 5개 총 12개 유형의 145개 시설장 대상 추가조사 시, 분석에 포함되는 시설은 전체 31.2%로 예상
- (종사자 조사) 해당 시설당 관리직, 돌봄직, 기능직 직원 각 1명씩 총 3명에 직종별 근로조건 이슈에 대하여 웹조사를 실시

〈표 1-5〉 2023년 3월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분석 대상시설 및 종사자 수 추정

(단위: 개, 명, %)

구분	등록 시설 수	정보입력 시설 수	입력률 (%)	시설장 추가조사	분석대상 시설 수	시설 입력률	종사자 최소 분석 대상 수
	(A)	(B)	(B/A)	(C)	(B+C=D)	(D/A)	(D*3명)
합계	14,431	4,363	30.2	145	4,508	31.2	13,524
복지부 소관시설	13,221	4,153	31.4	92	4,245	32.1	12,735
결핵한센시설	6	5	83.3	·	5	83.3	15
노숙인등생활시설	107	57	53.3	·	57	53.3	171
노숙인등이용시설	37	18	48.6	·	18	48.6	54
노숙인복지시설	4	·	0.0	4	4	100.0	12
노인보호전문기관	42	25	59.5	·	25	59.5	75
노인여가복지시설	523	266	50.9	·	266	50.9	798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11	93	44.1	·	93	44.1	279
노인주거복지시설	365	78	21.4	17	95	26.0	285
복합노인복지시설	21	0	0.0	21	21	100.0	6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6	0	0.0	16	16	100.0	48
아동복지시설	6,528	1,011	15.5	·	1,011	15.5	3,033
일반사회복지시설	502	319	63.5	·	319	63.5	957
장애인거주시설	1,594	892	56.0	·	892	56.0	2,67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9	7	36.8	12	19	100.0	5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0	5	25.0	15	20	100.0	6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709	741	43.4	·	741	43.4	2,2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1	384	47.3	·	384	47.3	1,152
지역자활센터	266	100	37.6	·	100	37.6	300
정신요양시설	61	44	72.1	·	44	72.1	132
정신재활시설	379	108	28.5	7	115	30.3	345
여가부 소관시설	1,210	210	17.4	53	263	21.7	789
청소년복지시설	158	14	8.9	16	30	19.0	90
한부모가족시설	135	58	43.0	·	58	43.0	174
다문화가족복지시설	225	57	25.3	·	57	25.3	171
가족폭력보호시설	334	45	13.5	·	45	13.5	135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02	14	13.7	16	30	29.4	9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4	17	7.9	13	30	14.0	90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0	0.0	1	1	100.0	3
통합상담소	41	5	12.2	7	12	29.3	36

주1: 2023년 6월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 수 및 정보입력 시설수 자료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협조받아 연구진이 추정

□ (행정자료 사전분석 준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실무진과의 3차 사전 미팅을 통해 설문 항목 추출 가능성 검토, 작업반 구축, 작업반 협의 주기 등을 진행

○ (설문항목 추출 가능성 검토) 복지부 담당사무관, 차세대 정보추진단 공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 실무자, 연구진 등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정보에서 실태조사 설문 항목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협의

○ (통계추출팀 구축) 복지부 담당과의 협조하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시설정보부 중간 간부가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실무담당자가 전문가로 참여하는 통계추출팀을 구축

- (연구진과 협의) 통계추출팀은 자료 추출 정기 회의를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시설정보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하기로 협의

○ (미비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축적 정보 중 기존 실태조사 관련 항목들이 존재하나, 인건비와 직위의 경우 대부분 항목들이 비표준화되어 있어, 추가적인 표준화 작업이 요구

〈표 1-6〉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미팅 내용 및 협의 사항

구분	논의 대상	협의 사항
시스템 유형	- (종사자 기준) 보수 및 인사관리 시스템 ◦(종사자 기준) 교부금 신청시스템 내 시설의 종사자별 인건비 신청자료를 추출 - (시설기준) 교부금 신청 및 회계-급여 결산 시스템 ◦(시설기준) 회계급여결산시스템 내 시설별 정산자료 추출 가능 여부	- 3개 시스템별로 자료를 추출하되, 데이터 간 연동성 확보를 위해 시설코드와 종사자 코드를 각각 추출자료에 삽입 - 종사자 보수관리 시스템 자료 40만 건을 1차 추출, 엑셀 작업 후, 데이터 분석 가능성을 확인 - 이후 타 자료를 순차적으로 추출
추출 데이터	- (시설기준 데이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종사자 현황, 직무 현황, 재무 현황, 인건비 지급액 수준 등은 추출 가능성 - (종사자 기준 데이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종사자 인적 현황, 종사자 근무 현황, 근로조건, 시간외근무, 교육 현황 등의 추출 가능성	- (시설기준) 총인건비 예산 출처는 일단 추출 후 활용 가능성여부를 추후 판단하기로 결정 - (종사자 기준) 보수 수준에 관한 특정 급여지급 항목코드 값이 40만 건에 달해 1차 원데이터 추출 후, 연구진이 엑셀 작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협의 ◦교대제 근무 현황은 시설에서 제공한 자료가 불확실해 시설기준으로 추출
작업반	- 행정조사 자료추출을 위한 작업반 구성과 연구진과의 정기 미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정보부 내 중간 간부와 담당실무자 3인이 작업반으로 참여 - 월 2회 매주 수요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 회의를 추진하기로 결정

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개관) 2023년 종사자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 인터넷 조사로 진행하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 전수가 아닌 직종별 종사자 각 1인씩이 참여하도록 설계

○ (기존조사)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 전수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시설장과 종사자 설문간 중복내용이 다수 존재

○ (2023년 조사) 시설장이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등 3 직종의 설문 대상자를 추천하면, 조사 회사가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설문을 진행

- (설문 대상) 사회복지직 외, 기능직, 관리직 등을 포함한 것은 설문 내용 개발을 위한 FGI에서 관리직과 기능직의 이직과 승진 등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
- (설문 내용) 기존 조사항목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미등록된 정보와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관해서는 시설장 FGI 진행 후 설문을 개발

○ (FGI)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14개 시설유형 시설장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표 1-7〉 기존 종사자 설문조사 방법과 2023년 조사방법간 차이

구분	기존 종사자 조사 방법	2023년도 종사자 실태조사 방법
방법	- 자기기입식 설문지 작성 방식	- 자기기입식 인터넷 조사 방식
대상	- 표본 추출된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전수조사	-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데이터 활용 - 종사자는 시설별로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등 대상으로 1명 응답
문항 수	- 101개 항목	- 78개 항목
영역 및 항목	- (일반사항) 시설 전반 사항, 이용자, 종사자, 재무현황 등 18개 항목 - (종사자 현황 및 보수 수준) 인적사항, 직무, 보수 수준 등 17개 항목 - (보수체계 및 인건비가이드라인) 총 10개 항목 - (근로여건) 근로계약, 퇴직금, 휴가, 승진, 시간외근무, 시설안전 사고실태, 교대제 근무 등 35개 항목 - (종사자 역량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 등 11개 항목 - (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종사자 안전 실태, 처우개선 등 10개 항목	- (일반사항) 종사자 인적 사항 등 9개 항목 - (근로조건 및 보수처우) 근로조건, 보수처우 및 욕구 등 24개 항목 - (보수체계 및 인건비가이드라인) 제외 - (근로환경 및 근무실태) 근로환경 및 욕구, 일가정양립, 교대제 근무 등 17개 항목 - (종사자 역량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 등 10개 항목 - (종사자 인권 및 위험) 종사자 인권, 위험 등 11개 항목 - (종사자 만족도 및 이직의사) 6개 항목
방식	- (방법) 보건복지부 공문 발송에 이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수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	- 보건복지부 공문 발송에 이어 시설장으로부터 각 직종별 1명씩 총 3명을 추천받아, 종사자 3인이 모바일로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

제2장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실태조사·처우개선 현황

제1절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검토
제2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지자체 실태조사 현황
제3절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현황

제 2 장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지자체 실태조사·처우개선 현황

제1절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검토

□ (개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근거 기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부의 종사자 처우개선 주요 정책과 이에 기반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법률 및 제도적 변화를 검토 후 한계점을 순차적으로 제안

○ (정부의 정책 변화 과정) 법·제도의 변화가 촉발된 IMF 시설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을 검토

- (정부 정책과 법제도 변화 가능성) 정부 정책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이 법 제정 및 개정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

○ (법·제도 특징) 현 정부의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근거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과 주요 정책 수단인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구성, 정책 활용성 등을 검토

- (실태조사 근거 확보) 본 연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검토
- (준수율 측정 근거 확보) 2023년 실태조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측정방식과 관련된 구성 등 주요 내용 검토가 필요

○ (지자체의 정책 변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와 법제도 개선 후,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관한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과 시사점을 검토

- (지방조례제정 현황) 중앙정부의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어느 정도 파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지자체 조례 현황을 파악
- (조례제정 주요 내용) 각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의 공통 내용과 특징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 추진 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시도

○ (한계점 제시) 마지막으로 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 현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인 인건비가이드라인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

□ (개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의 복지체계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된 처우개선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로서 권리 확보 등 정착은 미진한 상황

○ (기존 인식) 2002년 이전부터 봉사자로 인식되어온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로자로 전환[1]시키기 위한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이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됨

○ (정책 변화) 노무현 정부부터 인건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시작

- (한계점) 사회복지사 인력 확대, 폭력·폭행 등 산업안전 및 인권 보호 등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처우개선 확대가 필요

□ (정권의 출범과 처우개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사회복지 정책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공약으로 발표·추진되어옴. 특히, 1997년 중심으로 IMF 외환위기에 대응한 신자유주의 개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처우개선 정책을 도입하게 하는 등 한국 복지 체제의 변화에 대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

○ (김대중 정부)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와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생산적 사회복지 체제의 출현이, IMF 외환위기와 함께 복지제도로 급속하게 확장되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로 확대

○ (노무현 정부) 복지의 보편성, 국가의 책임 강화, 국민의 참여 강화를 추구하는 참여적 복지정책 아래, 2004년 1월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기 시작

- (바우처사업 추진) 2007년에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바우처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지자체에 이임되었으나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

---

1)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사회 봉사자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옴(「근로기준법」제59조 4호,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동법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018.5.29. 「근로기준법」의 일부 법령개정으로 현재의 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됨.(자료: 국가법령시스템(https://www.law.go.kr 참조)

○ (이명박 정부)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향상과 보편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

○ (박근혜 정부) '맞춤형 고용 복지'를 정책 기조로 삼고, 기초연금과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 확장에 주력

○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를 정책 기조로 삼고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결과로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영화하고, 민간서비스 시설도 동일하게 서비스의 질 강화

- (「근로기준법」개정)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해소하고자 노력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44번, 실천과제 5,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정책 기조로 설정

- (처우개선 정책)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추진,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종사자 근무제도 개선 및 지원 기관 운영 등을 추진

〈표 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정책 추진 경과

1) 2002년 이전부터 연구·공청회·토론회 등 실시
2) 2007년 12월 한나라당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일급여체계를 도입·시행하겠다고 천명
- 2007년 1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추진 당시 처우개선 소요 예산 2천억 원 내외 추정
3) 2008년 2월 복지부 →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 사회복지종사자 단일급여체계 도입 및 처우개선(단기과제): 단일급여체계 방안 마련(2008년) →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2009년~)
- 2008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처우개선 예산 116억 원 신청
- 2008년 7월, 기획재정부의 처우개선 직접경비 예산 반영 불가 입장
- 2008년 10월 복지부, 기재부 입장
·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항목 신설 불가, 그리고 복지부는 '단일 급여체계 개선'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 과제를 '급여체계개선'으로 변경
· 기재부: 지방이양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직접 지원 불가
4)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처우개선 명목 예산 7억 원 반영
5)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관련 복지부 건의
- 급여의 절대 수준 적정화
- 분권 교부세 정비를 통한 처우개선 예산확보
- 처우개선 예산확보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사공제회 및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건의
6)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에 국가와 지자체 노력 의무화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

7) 2012년 1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조사 준비

8) 2012년 5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주된 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9) 2013년 박근혜 정부 공약
- 민간·공공 사회복지인력 확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로 여건 개선
-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10) 2017년 문재인 정부 공약
- 보육·장기요양·치매·장애 재활·공공의료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 민간서비스 제공시설 지원 및 운영을 국·공립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 (근로환경)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하에 최저임금 상승,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변경 등으로 복지종사자 처우 문제가 부각
  · 역대 최고 최저임금 상승('18년)은 돌봄서비스 수가 인상에 반영되었으나 연 차·주휴·퇴직금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정수당을 충당하는데 부족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변경 등「근로기준법」개정(2018년)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및 보상 문제가 부각
    ⇒ 최저임금 상승 등 제도적 변화가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자로서의 권리보장이 제한적
- (대처방안)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인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부문의 핵심
  · 수혜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이 요양, 보육 등 종사자 처우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

11)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17호, 2021.12.2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적정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처우개선위원회」(중앙, 지방) 설립 근거를 마련
  · 인건비 1.4% 인상

12) 2022년 윤석열 정부 공약
- 110대 국정과제(보건복지부) 중 44번, 사회서비스 혁신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주요 정책으로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및 서비스 공급 확대/사회복지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사회복지 계열 종사자 처우개선을 발표
- 실천과제 5,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추진,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등
  ·종사자에 대한 근무제도 개선 및 지원 기관 운영 등 권익 보호 방안 강구
-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296호, 2023. 3. 28)
- 7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4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예산에 반영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중점 추진방안 마련
  - ·건강검진 4년 주기 및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 ·자녀 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양립 지원
  - ·인건비 1.7% 인상하고,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 경력 기준을 적용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채용 기회 확대(10인 이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10년 이상인 자격증 소지자, 10인 미만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7년 이상인 자)하였고, 경력 기준 위반 시, 인건비 시설 부담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은 공개채용이 원칙, 공개채용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부담으로 공개채용이 더욱 확대되어 취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 ·자녀 돌봄 휴가: 미성년 자녀를 둔 사회복지사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3일로 확대
  - ·가족수당 지원은 기존에 부양가족이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완화 개선
  - ·유급 병가적용은 산재보험 우선 적용에서, 별도 보상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소급 지원으로 변경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휴가제도 개선으로, 당해 시설에서 5년 이상 근속하면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지급(5-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의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사용),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 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장기 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관리자들의 솔선수범으로 장기휴가 적극 활용)
  - ·유급병가제도로, 병가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 승인을 얻어 연 60일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

주: 김유경(2020),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에 이어 추가·보완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 검토

□ (개관) 본 연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기반하며, 2018년 12월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인건비 지침인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도입

○ (목적)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그리고 과중한 업무량 등의 문제점에 대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통해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 (내용)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0조로 규정

○ (연혁) 4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해 옴

-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 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금 및 근로조건은 물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가지고 심사 및 개선을 노력

○ (한계점) 실제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의 내용에서 임의규정(...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

□ (제정 의의)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전망

○ (노력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

○ (지원 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법률의 제정 및 시행)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11호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년 1월 1일 시행됨

○ (법률 개정) 1차 개정은 2012.5.23.(법률 제11442호)에, 2차 개정은 2018.12.11.(법률 제15886호)에, 3차 개정은 2021.12.21.(법률 제18617호)에, 4차 개정은, 2023.3.28.(법률 제19296호)에 이루어짐

2)국가법령정보센터(2023.11),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undefined

〈표 2-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 현황

구분	내용
법률 제정	법률 제10511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2012.1.1., 시행
1차 개정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2012.11.24., 시행 제4조의 제목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사 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2차 개정	법률 제15886호, 2018.12.11., 일부개정, 2019.12.12., 시행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를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로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차 개정	법률 제18617호, 2021.12.21., 일부개정, 2022.6.22., 시행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차 개정	법률 제19296호, 2023.3.28., 일부개정, 같은 날 시행 제3조제1항 중 "지위 향상을"을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3.11),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undefined

□ (법률의 주요 내용)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 시행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신분보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을 규정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 등으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공익법인은 적용이 제한

○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해야 하는 의무 부여[3)]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4)]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원) 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 (한계점)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수행 중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폭행, 협박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근로의욕 감소 및 이직률 증가의 원인,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인권침해 내용이 누락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조항 신설) 매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후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

○ (실태조사의 확장) 그동안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의 수준 및 지급 실태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나,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인력 현황 및 근로 실태, 산업재해 및 보상 등의 실태, 이직 현황 등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로 확장 조사·공표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갈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5)]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였고(법 제3조제2항~제4항),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3조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2023.10. 참조)

4)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고(법 제4조), 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6조), 공제사업의 재원은 회원이 납입한 공제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법 제7조), 공제회의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치 등을 규정함(법 제8조 및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3.10 참조)

5)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인력 등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고, 특정 지방으로의 편중 현상과 직무의 이탈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업종의 기피, 질 하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은 시급한 실정임

3.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및 처우개선 노력 검토

□ (개관) 2023년 9월 말 기준,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22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 중으로 파악

○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폭력으로부터 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임금수준 제고를 위한 각종 수당 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요구됨

○ (구속력) 대부분의 처우개선 정책이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정책의 실효성은 미흡

〈표 2-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

(단위: 개, %)

구분	광역		기초		제정률	조례제정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례제정	지자체	조례제정		
특별시	서울	○	25	25	100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중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광역시	부산	○	16	16	100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	9	9	10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	10	9	90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	5	5	100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	5	5	100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	5	5	100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	-	-	100	-
도	경기	○	31	31	100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강원	○	18	18	100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	11	11	100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	15	15	1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	14	14	1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	22	22	1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	22	22	10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	18	18	100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	○	-	-	-	-
합계	243	17	226	225	99.6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참조
주: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지자체가 부재

□ (조례 제정현황)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제외한 22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제정률은 99.6%

○ (공통 항목) 각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목적, 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처우개선 등 사업, 지방자치단체장 책무, 처우개선위원회(협의회 등)설치, 신분보장 및 인권, 시행규칙 등을 조례에 공통으로 담고 있음

○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공통으로 적용해 안정적 일자리 정착을 지향

○ (안전과 인권 보호)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용에 공통으로 포함

- (인권 보호 조항)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

□ (시사점) 조례제정률 99.6%가 의미하듯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는 신분보장, 안전과 인권보호, 처우개선위원회 등이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임의규정인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이 어려워 처우개선의 형식적인 기반만 마련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상존

○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들의 심리 · 정서 지원 강화와 관련된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사업편성을 일부개정 조례에 포함[6)]

○ (조례의 법적 구속력) 조례는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등의 권고 또는 임의조항이 많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에 머무르지 않고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사업 지원이 필요

6) 서울시의회(이병도 의원)는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더디다"는 이유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 · 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2023.8.17,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실)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7] 검토

□ (개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은 2005년에 제시된 후 2009년부터 각종 수당을 기본급하고 공무원 보수와 비교하기 시작함

○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기타 시설) 국고지원 및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 기준은 개별사업지침을 따르며, 각 시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침화

○ (준수 대상) 생활 및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종사자와 기타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급(호봉체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종사자의 승진체계에 대한 소요 연한을 제시

○ (한계점) 지침은 휴가, 휴일, 시간외근무 등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침의 구속력에서 강제성이 없어 시설유형별·지역별·지원방식에 따른 인건비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권고기준)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인 관계로 지자체와 각 시설에서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한 처벌 등이 미존재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법적 근거가 존재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8]

- (적용단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보수 수준 비교를 위해 도입된 후, 지방이양시설 → 국고지원시설로 확대되고 있는 중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은 권고사항[9]이므로 일부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

---

7)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안내 참조

8)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 이양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지방정부가 책임지면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의 처우 수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보건복지부는 200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발표(출처: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9)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법 제3조제3항)

〈표 2-4〉「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표 2-5〉「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

법 제4조(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 (기본 방향)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 및 최저임금을 반영해 지급액을 인상하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의 95% 수준에 맞추도록 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개선

○ (임금가이드라인의 적용)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적용은 사회복지직과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군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에서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없는 직종도 존재

□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

○ (적용 제외 시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세부 기준 지침화) 세부 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며,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화

□ (인건비 적용) 기본급은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체계에 맞추어 기본급화함

○ (기본급 우선 적용) 인건비는 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건 등에 따라 별도 마련이 가능

- (시설별 개별지침 명시) 호봉제 미적용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따라 명시

○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노사분쟁 발생 유의) 법정 근로시간 과다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 수준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을 조치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급여관리'→'급여 현황'→'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참조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인건비가이드라인이 권고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

○ (급여기준 적용 직위 분류) 크게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직위를 설정하되 생활시설은 원장을 비롯한 7개 직위를, 이용시설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에 대한 임금체계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혼란을 유발

- (생활시설) 사회복지직 이외에 의료직 직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 주기 위하여 경력 사항과 관계없이 과장급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이용시설) 생활시설과 달리 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직, 의료직, 사무직에 대한 별도 직급의 호봉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시설은 승진이 가능한 반면, 생활시설의 관리직 및 기능직은 승진이 불가능한 상황
- (직급 혼란 유발) 장애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경우 사무국장이 모두 존재하나 장애인 이용시설의 임금수준이 생활시설과 달리 설정되어 있어 혼란을 유발
- (직위 혼란 유발) 생활시설의 경우, 조리원 등 기능직이 존재하나, 이용시설에서는 취사원으로 설정하여 관리직에 배치
- (직종 혼란 유발) 이용시설의 관리직 업무는 생활시설의 관리인과 직무가 유사하여 임금기준설정에서 혼란을 유발
- (직위 체계 수정 필요) 직종·직위·직급 등의 비 통일화로 종사자 인건비 적용 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이 필요

〈표 2-6〉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 분류

생활시설						생활 및 이용시설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노숙인	
원장	시설장					원장, 관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 전문요원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장애인이용시설 사무국장 생활시설 사무국장, 사회·노인 이용시설 부장, 장애인이용시설 일반직1급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시설 과장·생활복지사 사회·노인 이용시설 과장 장애인이용시설 일반직2급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					사회·노인 선임사회복지사 장애인이용시설 일반직3급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사회·노인 사회복지사 장애인이용시설 일반직4급 장애인이용시설 일반직5급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기능직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 (종사자수당 기준)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휴직 등 장기휴직자 제외)를 대상으로 봉급액의 120%(봉급액의 60%씩 연 2회)를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 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에 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우자는 월 4만 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은 1명당 월 2만 원, 자녀는 첫째 월 3만 원, 둘째 월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 원이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법정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로 산정하여 다음 달 보수 지급일에 지급. 다만, 12월은 당월에 지급함

□ (승진)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직 이외 직종)의 경우,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제시되어 있어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생활시설은 부재

○ (이용시설 최소 소요 연한 경력)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의미

○ (이용시설 근무경력 소급 적용)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는 종전 자격 유지

○ (이용시설 당연승진 요건) 사회복지사가 만3년(4년 차)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표 2-7〉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표 2-8〉 사회복지이용시설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4급으로 만4년(5년차)이상	3급으로 만6년(7년차)이상	2급으로 만8년(9년차)이상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 (시사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성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이나 포괄임금적 요소가 적용됨으로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구성 설명에서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에 관한 설명은 삭제가 필요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금액 명시)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산정 방법만 명시하였을 뿐 지급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간·시설유형간·직군간 격차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구속력 한계) 현행 인건비가이드라인 조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시설의 특정 직위 호봉 근무자에 대한 기본급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어, 전체 종사자에 대한 준수율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조사 형태로 변경하거나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당연승진의 한계)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 인원이 결정된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시설간·지역간 승진적체는 보수 수준의 격차를 유발함으로 ‘20년에 폐기된 전체 시설에 대한 당연승진 제도 재도입 등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인건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적 검토 및 시사점

□ (개관)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기본급은 공무원의 봉급을 기준으로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있다는 명시적 문구에 따라 「최저임금법」과의 문제, 시간외근무,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적 문제, 생활시설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

○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제외시설은 인건비 격차의 원인이 되며, 시설간 사회복지사 등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하므로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의 일원화가 요구

□ (인건비)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은 적용 범위에서,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인건비가이드라인 제시)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통해 종사자 기본급 및 수당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및 개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침화

○ (적용 원칙) 인건비의 적용은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이라고 명시

○ (기본급의 구성항목) 기본급의 각 호봉은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 보조비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고 명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기본급 의미와는 차이가 존재

- (「근로기준법」의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의무

○ (인건비에 대한 시사점) 「근로기준법」상 기본급에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포함된 경우, 최저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통상임금[10]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존재하므로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명시한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11]

---

10)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임금을 말함.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 휴가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로써,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정근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즉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은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③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④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2023.10. 「근로기준법」시행령 참조).

□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제한(「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3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조항(「근로기준법」제59조)에서 배제되어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

○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침화

- (연장근로수당 지급) 초기에는 모든 시설에 10시간 또는 15시간을 명시하여 지급했으나, 2023년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유형별, 시도별 차이가 발생
- (생활시설의 야간·휴일근로수당) 생활시설은 야간·휴일근로(「근로기준법」제56조) 발생이 필수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가산 수당의 편성, 적정 교대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한계 상존[12)]

○ (시사점)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수당편성 또는 대체인력이 필요, 특히 생활시설은 「근로기준법」제56조에 의한 야간·휴일근로에 적정한 교대제를 설계하여 인력을 편성하거나, 적정한 수당편성이 필요

□ (연차유급휴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별도의 명시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시행

○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부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가가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인력의 충원 내지는 대체인력 보강 등 적정 인력지원 체계가 필요

□ (승진체계)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는 직급·직위를 불문하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위·직급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당연승진이 가능하며, 승진경력은 동일시설(법인) 내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하므로 당연승진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상존

○ (시설간·지역간 인력이동의 한계) 승진을 위한 경력산정이 동일 시설(법인) 내 근무경력만을 적용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간·지역간 경력 활용이 불가능한 경직적인 인력 이동시스템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특정 시설이나 지역 편중 현상이 발생

---

11) 「근로기준법」의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성 임금으로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최저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정근수당은 일정 일수만큼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

1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야간·휴일근로 시 가산 수당 지급에서 배제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국가의 재원으로 일원화되므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직급과 직위를 구분하고, 직군별로 일정 소요 연수에 이르면 정원과 무관하게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당연승진 제도 도입을 검토하되, 한편 직위는 당해 직급 내에서 리더십을 갖춘 인력에게 직위를 보하여 직무수당으로 보전

- (공무원 승진제도) 승진 최저소요 연수가 경과해야 하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과 달리, 특별승진(1호, 3호)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도록 설계(「국가공무원법」제40조)됨
- (근속 승진) 최저소요 연수가 아닌 근속 승진 연수를 별도로 적용하여,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부재해도 근속 승진 기간을 초과하는 인원 수 만큼 상위계급에서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공무원임용령」제35조의 4 제1항~3항)하여 승진시키는 제도

〈표 2-9〉 공무원의 승진 연수(우정직 공무원 제외)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승진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	3년 이상	4년 이상	3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근속승진	-	-	-	11년 이상	7년 이상	5년 6개월 이상
※ 6급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 승진						

자료: 공무원 인사제도(승진제도), 전자정부 누리집, 2022.

6. 산업안전 및 인권 보호의 법 제도적 검토 및 시사점

□ (개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 치료·요양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의 의무를 정부와 사업주에게 부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는 공적 보험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이 타당

○ (사업주의 조력 의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질병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당해 시설종사자의 산재보상 청구에 조력할 의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6조)가 존재

- (사업주의 직접보상 및 처벌) 4일 미만의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언어폭력, 단순 타박상, 긁힘 등의 경미한 재해는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보상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제78조부터 제85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여가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함을 목적(「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 (산업안전 책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활동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6조)

○ (시사점)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상 재해율은 2019년 기준, 0.46%로 전 산업 평균 0.63% 대비 낮은 반면, 폭력행위로 인한 재해 유형 수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단일 업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이용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폭력·폭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

〈표 2-10〉 업종별 폭력행위에 대한 사고재해 현황 비교

(단위: 개)

구분	사회복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	운수통신	임업	어업	농업	금융	기타
계	751	180	23,156	92	24,741	3,438	979	52	575	311	68,350
떨어짐	49	35	2,319	13	8,565	669	33	14	172	28	37,290
넘어짐	327	24	2,900	23	4,121	893	153	15	111	101	11,433
부딪힘	53	29	2,263	7	2,156	495	99	5	42	14	2,665
물체에 맞음	12	28	2,138	6	2,959	281	180	5	33	11	1,705
끼임	1	32	7,701	12	2,096	401	22	4	84	14	2,640
절단, 베임, 찔림	35	5	2,768	3	2,856	88	306	5	52	35	4,581
감전	40	2	81	5	141	9	0	1	0	1	47
폭발, 파열	1	6	114	0	55	3	0	0	6	0	60
화재	4	0	98	3	56	0	0	0	0	0	84
깔림, 뒤집힘	31	10	638	5	716	83	174	0	12	9	557
이상온도 물체접촉	98	2	686	3	141	42	0	1	5	2	3,082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1	4	905	3	764	354	9	2	13	19	2,474
화학물질 누출접촉	0	0	132	1	73	7	0	0	0	0	119
사업장외 교통사고	25	1	36	0	0	3	0	0	0	0	16
체육행사	22	1	316	7	7	55	0	0	5	53	1,001
폭력행위	44	1	37	0	20	48	0	0	0	6	268
동물상해	6	0	15	1	10	5	3	0	40	18	305
기타	2	0	9	0	5	2	0	0	0	0	23

자료: 이철선 외 7인(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 등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제도 운영)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시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제도를 운영[13)]

○ (가입 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는 자

○ (가입방식) '현원 기준형' 또는 '명단입력형'을 선택하여 신청함

1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며,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임직원 1인당 年 보험료(2만 원) 중 50%(1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제보험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설자부담 50%(1만 원)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지원 함.

〈표 2-11〉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제도 내용

구분	현원 기준형	명단 입력형
가입 방법	- 직원 수(현원) 입력 - 현원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직원별 인적 사항 명단 입력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담당업무 등
직원 입/퇴사	- 계약 중 직원이 변경되어도 변경처리 없음(절차 생략) ·계약 이후 중도에 입사한 직원(가입 당시 현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단, 공제회에 등록된 동일한 사업장 관리번호 소속 직원에 한함)도 추가 신청 없이(시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 보상신청 가능	- (입사 시) 인원 추가 후 공제료 입금 - (퇴사 시) 인원 해지 후 공제료 환급
주의 사항	- 모든 직원이 가입해야 함 ·증빙서류상 총 인원(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장을 계약 중도에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의 직원은 보상 불가	- 일부 직원만 가입 가능하며 명단을 입력한 직원만 보상 청구 가능하므로 직원 변경 시 입/퇴사 수시 처리 - 계약기간 도중 계약방식 변경하려면 일괄 해지 후 재가입

자료: 한국사회복지공제회(2023. 10),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제도(www.kwcu.or.kr,).

○ (보장사항) 사고 및 치료 내용에 따라 해당 담보에 따른 금액 지급

- (상해 의료지원비 지급) 급박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할 경우,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 원 이상 시, 급수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급

○ 보장담보 중 상해의료지원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하 “산재”라 함) 처리와 중복 청구는 산재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가 가능. 다만,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

- (일상생활 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해보상은 공적 보험으로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제도는 임의보험으로서 업무 외 일상생활 중 발생한 재해도 가능

〈표 2-12〉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제도 보장사항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한도)		보상구분
상해 사망	3,000만 원 (정액)	중복보상
상해 후유장해	3,000만 원*장애율	
상해 입원일당비	입원 일당 2만 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 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20만 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상해 의료지원비	50만 원~500만 원	

자료: 한국사회복지공제회(2023.10), 정부지원단체 상해공제제도, (www.kwcu.or.kr,).

○ (시사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4일 이상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침화가 필요

- 다만,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제도에서는 언어폭력 등 질병에 대한 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리적 지원 등 정신적 치료·보상 등은 별도 추진이 필요

□ (손해배상책임 이행) 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14]에 가입할 의무를 명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표 2-13〉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4)

정기안전점검	▶	수시안전점검	▶	결과보고 (정기·수시)	▶	개·보수 요구
시설장 매반기		시설장(점검자·안전진단전문기관,전문건설업자) 위해 발생 우려시		시설장→지자체→복지부 매반기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조

○ (정기 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반기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

○ (수시 안전점검) 해당 시설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은 안전점검 기관[15]에 수시 안전점검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보수 요구권)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가능(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14)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하며,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10면 참조)

15) 안전점검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를 말하며, 안전점검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따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

○ (지자체)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 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의무를 부여

○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할 의무 부여[16]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제2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함[17]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의무 부여

○ (교육·훈련 의무) 안전관리 교육·훈련으로 소방 훈련 및 교육실시 의무를 부여.[18]

○ (시사점) '202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등은 제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보호)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권보호센터를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폭력 발생 전담 대응체계로 설정하고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작아 전담부서 설치는 무리이므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19]

○ (매뉴얼 마련·비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호[20](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존재

---

16)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는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하고,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교육·훈련을 반복 의무를 부여함(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조).

17)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는,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 및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의 임무를 수행토록 함(보건복지부(202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조).

18)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은 「화재예방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 부여하였고,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조).

19) 서울시는 인권 기본조례에 의한 구제위원회 운영 중, 부산시 등 일부지자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센터 운영 계획 등이 있음

20)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제2항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한국사회복지공제회[21]의 역할 강화

□ (개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의해 설립·운영되어 왔으며, 공제회원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옴

○ (출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제6조(공제급여의 지급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년 3월 20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출범

○ (정보보조금 및 출연금 제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조합원의 자생적 노력에 의한 처우개선 기관으로서 정부 보조금 및 출연금이 제한(법 제7조제2호 참조)

○ (사업) 장기저축급여,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회원대여 등 19개가 있고, 복지급여금 등 10개의 복지서비스를 편성하여 조합원의 복리후생 지원을 실질적으로 구현(2023. 1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사업안내 및 복지서비스 참조)

○ (재정 및 회원) 2022년 10월 말 기준, 자산 1,756억, 누적 당기순이익 44억, 회원 수 3만 8천 명, 상해보험가입자 28만 명으로 순항 중(2023.1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표 2-14〉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주요 연혁

연도	사업 내용
2009	2009. 11., 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을 위한 정책 건의서 보건복지부 제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9. 12., 법안 통과를 위한 1차 지지 서명운동(1만3천여 명)
2010	2010. 01., 사회복지사공제회 추진위원회 출범 및 활동 2010. 07., 법안 통과를 위한 2차지지 서명운동(2만여 명) 2010. 09., 공제회 법안 2010년 정기국회 의결 촉구를 위한 직능단체 공동합의 2010. 11.,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공제회 설립예산 10억 확정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가결 2010. 12.,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대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공제회 설립예산 10억 반영
2011	2011. 0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원안 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원안 가결, 제29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511호 공포 2011.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460호 제정
2012	2012. 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 0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범

2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kwcu.or.kr)참조하여 작성함

연도	사업 내용
2013	2013. 02., 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보험 출시 2013. 04., 사회복지시설종합공제보험 출시 2013. 07.,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 출시 2013. 08., 자금운용위원회 위촉 2013. 12., 재정특별위원회 2기 위촉 회원복지포털 서비스 오픈
2014	2014. 0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기초지자체 단위 지원 시작 (성남시) 2014. 02., 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 출시 2014. 06., 공제사업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2015	2015. 01., 신원보장공제보험 출시 2015. 03., 재정특별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 2015. 04.,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1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 개최(서울) 2015. 0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5. 07., 제1차 복지기관 무료 안전점검 사업 진행 (70여 개소) 2015. 12., 헬스케어 서비스 시작 (전문 의료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2016	2016. 03.,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2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광주) 2016. 04.,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광역지자체 단위 지원 시작(경기도, 강원도) 2016. 07., 제2차 복지기관 무료 안전점검 사업 2차 (120개소) 2016. 10.,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3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대구) 2016. 12., 제1회 사회복지 실천가대상 시상식 진행
2017	2017. 03.,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4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대전) 2017. 05., 공제회 사무실 이전(現 여의도 한국금융IT 빌딩 9층) 사회복지실천가 응원캠페인 The 행복'(크라우드 펀딩)시작 2017. 07., 제3차 복지기관 무료 안전점검 사업 진행 (80여 개소) 2017. 10.,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5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 개최 (강원) 2017. 11., 제2회 사회복지실천가 대상시상식 진행
2018	2018. 02.,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도 순회교육 공동주관 (보건복지부 주최) 2018. 03.,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6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경기) 2018. 10., 공제회 회원을 위한 문화공연(연극) 초청 이벤트 진행 2018. 12., 제3회 사회복지실천가 대상시상식 진행
2019	2019. 02., 제1회 방한천공공복지대상 시상식 진행 2019. 05., 회원 복지급여금(출산축하금, 유족자녀장학금) 제도 시행 공제회 회원을 위한 문화공연(국악뮤지컬) 초청 이벤트 진행 2019. 07., 장기저축급여 3년 만기 상품 출시 2019. 08., 방병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공제회 업무협약(취약계층 무상의료지원서비스) 제2회 방한천 공공복지대상 시상식 진행 2019. 09., 정회원 가입 2만 건 돌파 2019. 10.,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2019. 11., 공제회 회원을 위한 문화공연(가족뮤지컬) 초청 이벤트 진행 2019. 12., 제4회 사회복지실천가 대상시상식 진행
2020	2020. 01., 회원 복지급여금(결혼축하금) 제도 시행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보험' 출시 2020. 06., 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출시 2020. 07.,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진행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비대면 교육 (보건복지부 주최) 진행 2020. 10., 제3회 한국공공복지대상 시상식 (방병원 후원) 2020. 12., 제5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온라인 시상식 진행
2021	2021. 05., 목돈수탁급여 상품 출시 2021. 05.,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자산 1,000억 원 돌파 2021. 08., 제4회 한국공공복지 대상시상식(방병원 후원) 2021. 12., 제6회 사회복지실천가 대상 온라인 시상식
2022	2022. 08.,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2022. 11.,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개관

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kwcu.or.kr)를 참조하여 요약

□ (재원 부담) 회원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허용(법 제7조 참조)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시사점)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닌, 사회복지사 등이 자율적으로 복리후생 지원을 구현하는 사적보험단체임

○ (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 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 후생을 위한 사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그리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음

○ (회원가입 확대 노력) 현재 공제회는 가입된 회원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써 재원의 한계, 인력의 한계 등으로 모든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후생을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홍보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지자체 실태조사 현황

1. 개관

□ (개관) 본연구에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시행에 앞서 지자체 실태조사와의 중복 가능성과 조사 방법의 차별성 및 인건비 준수율 측정이라는 연구 내용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 검토를 실시

○ (지자체 실태조사와의 중복 가능성 유무) 3년마다 실시하는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여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됨

- (중복 가능성)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해당 지자체에 소속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미가 존재하지만, 조사 방법과 내용에 있어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

○ (조사 방법의 차별성 확보)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시설장 중심의 설문조사 대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시설 및 종사자 행정자료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조사 방법론 차원에서 차별성 확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함

- (기존 지자체 조사) 행정자료에 기반한 실태조사가 지자체에서 실시된 경우, 본 연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

○ (조사내용의 차별성 확보) 이번 조사의 주요 핵심 내용인 시설별·종사자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에 대한 사전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 (기존 실태조사) 금번 실태조사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이용해 종사자 보수 수준을 측정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연봉 기준의 평균 보수 수준 파악으로 월 기본급 수준의 준수율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
- (기존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복지부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통해 준수율 측정대상시설에 소속된 특정직위 호봉대의 종사자에게 지자체가 지급한 기본급 액수를 인건비가이드라인 금액과 비교하는 행정조사 방식이었음
- (기존 지자체 실태조사) 기존에 실시된 시설장 설문조사 방식과 달리, 월 지급 기본급을 중심으로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측정한 경우를 검토

□ (검토 과정) 본고에서는 2020년 이후 실시된 총 17개 광역지자체의 실태조사와 8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검토함

○ (검토과정) 각 실태조사의 연구목적 및 방법, 그리고 주요 연구 내용이었음

2. 광역 단위 지자체별 실태조사 검토 결과

□ (조사목적) 광역지자체가 수행하는 실태조사 및 연구는 지자체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과제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음

○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광역지자체가 제정한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연구 방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선행연구, 보건복지부 및 타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정책 현황과 사례 검토 등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설문조사 분석,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및 전문가 인터뷰 등 대체로 유사한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음

- (시설조사) 광역지자체 내 연구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고 행정업무체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설문을 작성하도록 유도
- (종사자 조사) 실태조사 또는 연구대상 사회복지시설별로 설문에 응답할 종사자 수를 지정해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배포한 후, 설문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이었음
  - 제주특별자치도(2017)의 경우, 도내 지방이양시설 8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유형별 관리자급 84명에 대해 심층 면접방식으로 조사 진행

〈표 2-15〉 17개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 현황

구분	시도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구분	시도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1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10	경기도	2020	경기복지재단
2	부산광역시	2020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11	충청북도	2020	충북연구원
3	대구광역시	2021	대구대학교	12	충청남도	2020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4	인천광역시	2022	인천 사회서비스원	13	전라북도	2022	전북연구원
5	광주광역시	2020	광주복지재단	14	전라남도	2017	전남복지재단
6	대전광역시	2022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15	경상북도	2021	경북행복재단
7	울산광역시	2023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16	경상남도	2019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8	세종특별자치시	2020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17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연구원
9	강원도	2022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

□ (검토연구 선정) 17개 광역지자체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된 종사자 실태조사 또는 관련된 연구 결과를 검토

○ (선택 과정) 최근에 지자체에서 발주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과제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지자체마다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발주하는 시기가 다르고 연구목적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등 처우와 근로 실태가 포함된 연구 보고서 17개를 검토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에 종사자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에는 종사자 인권실태 및 욕구 조사로 수행하여 2017년 연구 결과를 검토
-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나 관련 연구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어(전현수 외, 2022), 울산 사회서비스원 자료집[22]에 게재된 자료를 사용

〈표 2-16〉 17개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자사 처우개선 관련 대표 연구

구분	연구명	연구자	연도	연구기관
1	2022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연구	서동명 외	2022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	2020년 부산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반안을 위한 실태조사	김영종 외	2020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이진숙 외	2021	대구대학교
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권혜영 외	2022	인천사회서비스원
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마련 연구	김진희 외	2020	광주복지재단
6	대전광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조사	류주연 외	2022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7	2023년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욕구조사	박상미	2023	울산광역시회서비스원
8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박형존 외	2020	세종시사회서비스원
9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전현수 외	2022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0	202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오민수 외	2020	경기복지재단
11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마련 연구	최은희	2020	충북연구원
12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김선미 외	2020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13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이중섭 외	2022	전북연구원
14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근로여건 실태조사	용태희 외	2017	전남복지재단
15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개선방안	권용신 외	2021	경북행복재단
16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신원식 외	2019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1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연구:지방이양시설을 중심으로	오운정 외	2018	제주연구원

22)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라운드테이블,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023.8.25

□ (서울특별시) 2013년 이후, 3년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 실태조사를 수행, 낮은 보수 수준 만족도, 그리고 높은 업무강도를 호소하였고, 사회복지사의 사직 및 이직 의사,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수 수준 만족도는 2.6점(5점 만점)으로 낮았고, 사직과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 보수 수준과 업무강도가 각각 1·2순위로 조사되었으며, 직장 내 신체적 폭력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 20대에서 보수 수준 만족도, 일-가정양립 지원 만족도, 신체-정신 건강 위협 만족도, 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정도 인식 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가 사직 및 이직 고민, 직장 내 정신적 괴롭힘 경험이 높았고, 거주시설의 경우 직장 내 신체적 폭력 경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완료와 맞춤형 복지포인트·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 지원제도 도입 등을 비롯하여 2022년에는 마음이음 지원사업과 종합건강검진비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급여, 즉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

□ (부산광역시) 재원 주체별(시비지원, 국·시비지원), 시설유형별, 직능별 보수 수준을 분석하고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과 공무원 대비 인건비를 비교

○ 시비지원시설은 항목별 예산지원과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많았고, 국·시비지원시설은 포괄적 예산지원과 각 시설유형 사업안내, 그리고 급여차액보전을 통해 부족분을 지원하는 시설이 많았음

○ 공무원, 복지부 권고 대비 재원주체(시비, 국·시비) 및 시설형태별 인건비를 비교하면 연간 보수총액에서 차이가 있고 직위와 호봉이 오를수록 차이가 확연해졌음

○ 연구 결과,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대한 부산시 단일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가이드라인 미확보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이드라인 마련,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업무 특성에 따른 법정수당 준수,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충(필요 인력충원 및 배치기준 마련) 등을 제안

〈표 2-17〉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연구명	2022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연구	2020년 부산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연도	2022	2020
연구기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연구자	서동명 외 3	김영종 외 2
연구방법	1.문헌연구 2.근로실태 설문조사(종사자 1,053명) 3.FGI(민간/연령대별 8명,공공 4명)	부산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메일링 회수(시설), 온라인 서베이(사회복지사)를 실시
연구내용	1.근로여건 실태조사/연구 현황 2.근로실태/인식분석 3.연령별,민관별근로환경인식	1.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679개소/857개소) 2.사회복지사 인식조사(2,473명/4,648명)
연구결과	1.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2.인권, 근무환경, 처우개선사업 3.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FGI 결과) 4.분석결과 요약, 실천적·정책적 제언	1.사회복지사 인력 및 보수실태(인건비 등) 2.소관부처별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2.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인식 4.결론 및 제언

□ (대구광역시) 보수처우는 시설유형별, 고용형태별 격차가 크게 존재하였고,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보수총액이 계약직 보수총액보다 크게 높았으며, 이용시설에 비해 생활시설의 보수가 많았고, 같은 유형의 시설 간에도 크게 벌어짐

○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경우 시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총액의 86.7% 수준이었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대비 91.5%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89개소(38.4%)로 응답됨

○ 연구결과, 보수처우 향상과 단일임금체계를 통한 개선, 근로환경의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젠더격차 해소, 안전과 인권 및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고 대구형 단일임금체계(안)도입과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함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균형성, 안정성, 전문성을 설정하고 임금체계 개선, 근로여건 개선, 인력지원 강화 3가지를 제안

○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향상 및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로, 인건비가이드라인 조정 및 체계 정비를 요구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할 과제로 보조금 지급방식의 변경을 요구, 특히 국비지원시설의 27.5%가 포괄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포괄보조금제도 개선을 제언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31.5%, 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 13.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개편이 15.3% 등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단계적으로 인건비 기준 통합이 필요
- 포괄보조금 방식은 예산 편성의 자율성과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의 자율성, 적합한 사업의 빠른 추진 등의 장점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욕구가 증가할수록 사업운영비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감소해서 지방정부 혹은 시설 부담으로 전가되어 종사자 처우가 낮아짐

〈표 2-18〉 대구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구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연구명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연도	2021	2022
연구기관	대구대학교	인천 사회서비스원
연구자	이진숙 외 8	권혜영 외 4
연구방법	1.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2.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설문조사 3.전문가 서면조사	1.문헌연구 2.종사자근로현황및실태분석(행정자료,실태조사,476개소/642개소,2,277명/4,468명) 3.현장 전문가 자문
연구내용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처우 실태(보수체계, 근로여건, 처우개선 욕구)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인식조사(근로환경,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 정신건강 등)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념 및 범위를 도출 2.사회복지시설 대상 실태조사(근로계약, 시간외 근무, 승진, 휴가, 교대제 등) 및 분석
연구결과	1.현황분석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보수체계, 근로여건 3.사회복지시설 종자사의 처우인식 실태 4.연구결과와 시사점, 정책제언	1.시설 일반현황, 보수, 근무환경, 노동복지 2.종사자 일반현황, 근로환경, 안전 및 인권보호, 처우개선정책 및 인식 3. 임금체계·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등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중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유형, 재원종류, 대상 영역별 분류, 세부 시설 종류, 직위에 따른 시설종사자의 호봉,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을 확인함

○ 보수총액은 생활시설과 국비지원시설이 높았지만, 기본급은 이용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상 영역별 분류에 따른 시설종사자의 보수 총액은 정신건강증진시설 〉 노숙인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시설 〉 지역자활센터의 순이었음

○ 종사자 규모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보수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종사자 규모가 11명~15명인 집단의 평균 호봉이 12.6호봉으로 가장 높았음

○ 연구 결과, 광주광역시 재정 상황을 반영한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위한 인사 기준 그리고 단일임금체계 실행을 위한 포용적 소통창구 구성과 사회적 합의를 제언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체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수당 도입이 필요

○ 여성가족부 소관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가이드라인 대비 67.8%~113.6%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지원시설은 47.6%~106.7% 수준으로 나타남

○ 신규입사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 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장기근속자들의 건강관리 등을 위한 종합 건강검진 지원을 현실화 시킬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체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

〈표 2-19〉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구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연구명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조사
연구연도	2020	2022
연구기관	광주복지재단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자	김진희 외 1	류주연 외 3
연구방법	1.문헌연구 2.실태조사(203개시설/1,702명, 행정조사) 3.간담회 및 자문회의	1.문헌연구(행정자료 수집과 분석) 2.설문조사(312개 시설/1,352명) 3.면접조사(FGI, 전문가 자문)
연구내용	1.임금체계 공무원 보수체계 비교, 단일임금 사례(서울, 제주, 부산, 인천, 비교) 2.종사자의 보수분포(시설유형, 재원 종류, 서비스 대상 영역별)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사례분석 2.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및 임금분석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안)와 소요예산 추계
연구결과	1.광주광역시 복지환경 분석 2.광주형 단일임금체계(안) 구조(직급체계 통합, 공무원 보수기준 모형제시) 3.단일임금체계(안) 예산추계, 제언	1.사회복지종사자 제도현황 및 보수 분석 2.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3.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 4.보수 수준/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울산광역시)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현재 보수 수준이나 처우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 높은 감정노동과 높은 직무 스트레스에도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남

○ 직무나 업무강도와 비교하면 보수가 적당하다는 인식이 낮고(2.49점/5점),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한 과제로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향상 및 준수(58.3%), 적은 기본급과 다수 수당체계 개선(20.3%)을 선택

○ 현재 이직의사가 있는 종사자는 보수가 낮아서(18.6%)라고 대답하였으며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직무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3.25~3.41점) 나타남

〈표 2-20〉 울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구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연구명	2023년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욕구조사[23]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연도	2023	2020
연구기관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자	박상미	박형존 외 5
연구방법	1.문헌연구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315개소/2,577명) 3.종사자 욕구조사(1,000명) 4.종사자 심층면접	1.행정자료 분석 2.실태조사(기관 114개소/이용자 1,148명) 3.자료포락분석(DEA), 이용의향분석 4.품질과 만족도 분석
연구내용	1.중앙정부 및 타시도 처우개선 관련 자료수집 2.실태분석(보수 수준, 근로조건, 근무환경여건 등) 3.욕구조사(처우전반, 보수 수준, 근로조건 등) 4.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정책방안 도출	1.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역특성 파악 2.시설 및 이용현황 조사결과 분석 3.사회복지시설 효율성, 성과, 품질, 만족도 분석 4.세종시 특수성에 기반한 정책 제언
연구결과	1.보수수준에 대한 인식, 보수수준 개선과제 2.시설유형별 만족도, 개선과제 3.안전 및 인권 4.제언	1.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역현황 2.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3.효율성과 성과, 서비스 품질 분석 4.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언

□ (세종특별차지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초과근무, 예산 부담 주체 및 시설유형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이직과 퇴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전문인력 수급 및 유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비의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의 비율은 약 80%이고, 평균 인건비는 운영비 평균액의 약 70%에 해당, 인건비 중 보조금과 후원금의 비율이 83.4%였음

○ 생활시설에서 보조금 및 후원금 비율은 이용시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시설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비율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

2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라운드테이블(2023.8.25.) 자료집에서 발췌

○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적용에 대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방안 제언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체계는 시설 종류별로 다르며, 인건비 지원 수준, 직위 체계가 상이하여 시설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24]”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및 시설마다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현장 전문가들은 단일임금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격차는 임금체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개별시설이나 지자체의 요인이 아닌 관련 시설운영 지침에 따른 제도적 요인이며, 임금격차의 해소는 개별 시군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임

○ 호봉제를 적용하는 시설 종사자의 중위임금은 연 39,129천 원 수준이나 호봉제 미적용자는 연 26,648천 원 수준으로 약 연 12,481천원 차이가 발생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내 종사자는 약 3,500여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5%에 해당

○ 호봉제가 미적용되는 시설에 호봉제를 적용토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초기부터 상당한 임금인상 효과와 재정부담이 발생하므로 시군 자체적인 추진이 어려움

○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종사자의 임금수준 개선 노력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적극적 지원, 그리고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이용자로부터의 폭언·폭력이 드러남

- 전체 응답자의 39.6%가 이직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낮은 급여’가 22.9%로 가장 높고 ‘근로환경 등 더 나은 곳으로 재취업’ 목적이 19.3%로 사실상 42%가 급여 및 근로환경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음

□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284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보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보수총액은 평균 3,342.2만 원이었고 기본급 총액이 2,881.6만 원, 수당총액이 437.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보수 지원체계 상의 어려움으로는 ‘낮은 보수 수준’이라고 응답

○ 현재 제공되는 수당 유형은 명절휴가비(76.1%), 도·시군지급 복지수당·처우개선 수당(55.2%), 연장근무(초과근무) 수당(5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보수 지원체계 상의 어려움은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 증가(31.9%)’,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제한(11.8%)’ 등의 순이었음

24) 보건복지부, 2019

○ 중장기 정책과제로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강원도 단일임금체계 도입 검토를 제안하고, 단기 정책과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실효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 종사자 일·생활 균형 제고 및 근무환경 조성, 안전한 근로환경 및 여건 조성 등을 제언

〈표 2-21〉 강원도 및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구분	강원도	경기도
연구명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202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23년~25년) 수립 연구
연구연도	2022	2020
연구기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자	전현수 외 2	오민수 외 2
연구방법	1.문헌연구 2.설문조사(시설284개소/종사자1,023명) 3.FGI 4.전문가자문	1.임금실태조사(2,234개소/14,043명) 2.종사자 설문조사(웹설문조사 4,621명) 3.문헌연구 4.초점집단인터뷰(FGI)
연구내용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정책, 사업 파악 2.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3.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정책 욕구 조사 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제시	1.보수 수준 개선(근속기간, 경력, 실질임금 등) 2.지위향상(고충처리,이직의도 등) 3.근무환경 개선(휴가/초과근무/연차 등 보호) 4.개선방안 도출
연구결과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책현황 2.기관조사결과(종사자보수, 근로여건) 3.종사자 자료분석(근로환경, 복지후생 등) 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1.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근로조건, 교육 및 훈련, 안전/고충/인권) 2.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시사점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

□ (충청북도) 조사대상자의 보수총액 평균은 31,299천 원이며 기본급은 24,371천 원으로 보수총액의 77.9%를 차지하였고, 재원과 시설유형별 기본급 격차가 나타남

○ 보건복지국 소관시설(24,930천 원) 기본급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시설(20,426천 원) 기본급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시설유형별 기본급의 격차는 생활시설에서 1,500만 원, 이용시설에서 1,560만 원으로 이용시설 간의 기본급 격차가 더 컸고, 격차가 가장 큰 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과 장애인복지시설(이용)이었음

○ 단일임금(안) 적용을 위한 제언으로 단일임금제 이해, 기초지자체와 협력,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도출을 위한 민관 TF 구성 및 소통과 합의를 제안

- 직급 및 경력 설정, 직급별 정원 및 승진 소요시간, 수당 간소화 등 구체적 기준설정과 2028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단계적 단일임금제를 적용

□ (충청남도) 월평균 보수총액은 268.77만 원, 월평균 기본급은 227.83만 원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보수 수준은 303.88만 원으로 차이가 있고, 보수 수준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향상 및 준수 의무화'로 나타남

○ 현재 보수 수준과 관련하여 '직무나 업무강도에 비해 적당하다(긍정률 16.6%)', '다른 유사 직군 종사자들에 비해 적당하다(긍정률 13.8%)'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높음

- 보수총액은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1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점(29.8%), 2위는 시설유형별 급여 차이(20.4%)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 향상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시설 종류별 다른 임금체계로 인한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들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누어 단일화된 급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

〈표 2-22〉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구분	충청북도	충청남도
연구명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마련 연구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연구연도	2020	2020
연구기관	충북연구원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자	최은희	김선미 외 5
연구방법	1.문헌연구 2.종사자 임금실태조사(550개소/4,245명) 3.간담회 및 자문	1.문헌연구, 행정자료분석 2.실태조사(546개소4,267명) 3.전문가자문회의 4.심층면접조사(FIG)
연구내용	1.종사자 단일임금제 연구동향 및 사례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임금체계 분석 3.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및 단일임금체계 4.충북 단일임금(안) 소요예산 추계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선행연구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분석 3.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결과 분석 4.종사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연구결과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관련 문헌 고찰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실태(보수총액,기본급,수당,성과급/유형별차이) 3.단일임금(안) 소용예산 추계, 적용을 위한 제언	1.인건비가이드라인 보수 수준 비교 2.사회복지시설 실태 결과(유형별, 시군별) 3.종사자 실태 결과(보수 수준, 근로환경) 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안)

□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운영 주체, 운영형태, 이용자 정원과 현원의 규모별로 보수총액, 기본급,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의미는 낮음

○ 보수총액은 생활시설(4,235만 원)이 이용시설(3,460만 원)보다 6백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났고, 운영주체별로는 국립 및 지자체 직영(3,359만 원) 〉 사회복지법인(3,128만 원) 〉 사단법인(3,094만 원) 〉 학교법인(3,051만 원) 순이었음

- 호봉 미적용시설(2,559만 원)과 여가부 소관 시설(2,633만 원)이 호봉적용 시설과 복지부 소관 시설보다 적었음

○ 지역별로 기본급의 연봉액이 3천만 원을 상회하는 지역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고창 등의 지역이었고 3천만 원 이하인 지역은 군산, 정읍, 장수 등의 지역인데 연봉액의 차이는 종사자 호봉의 차이였음

○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으로 단일임금제도 단계적 적용, 복리후생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방식 변경(안정적 인건비 지원 기반 마련), 대체인력제도 확대 운영,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인력충원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일원화,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

□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 보수총액[25]은 평균 2,192만 원이고, 생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총액은 평균 2,495만 원, 이용시설 종사자는 1,743만 원이었음

○ 연 보수총액이 1,001~2,000만 원인 종사자가 856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1~3,000만 원 556명(21.6%), 1,000만 원 이하 526명(20.4%) 순임

○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이 150~200만 원으로 답한 응답자가 287명(43.0%), 100~150만 원 197명(29.5%), 200~250만 원 76명(11.4%)으로 나타남

○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시설유형간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임금제 구축,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 표준화 협의·조정기구 마련, 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 수당체계 개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제시

○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방안으로 대체인력 파견시스템 구축, (가칭)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마련,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및 인권보호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25) 기본급(본봉) 총액과 기본급 이외 수당 및 성과급 등 총액을 합산함

〈표 2-23〉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구분	전라북도	전라남도
연구명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근로여건 실태조사
연구연도	2022	2017
연구기관	전북연구원	전남복지재단
연구자	이중섭 외 2	용태희 외 3
연구방법	1.선행연구 2.행정통계분석 3.급여실태(회계담당자)/복리후생(*종사자)설문조사 (383개소/2,639개소)	1.문헌조사(관련법령, 행정자료, 연구보고서) 2.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설문조사 (사회복지시설 270부/종사자 736부) 3.FGI
연구내용	1.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현황과 쟁점 2.사회복지종사자 급여실태 분석(지역/유형/직급) 3.종사자 인식조사 분석(근무조건, 복리후생) 4.인건비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안 도출	1.전남 사회복지시설현황, 처우개선 정책동향 2.시설 근로여건 분석(시설현황, 보수지급현황) 3.종사자 근로여건 분석(근로환경, 일가정양립 등) 4.초점집단인터뷰 결과 분석
연구결과	1.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쟁점 2.사회복지시설 특성별 급여현황 3.종사자 처우개선 인식조사 현황 4.전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제안	1.전남 사회복지시설현황, 처우개선 정책동향 2.시설차원의 근로여건 실태(준수율, 고용형태) 3.종사자차원의 근로여건 실태(근무형태, 시간) 4.보수체계/근무여건 개선방안

□ (경상북도) 시설종사자들은 조사 결과, 연평균 27,726천 원(월평균 2,310천 원)을 받고 있었고,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었음

○ 기본급은 연평균 23,042천 원(월평균 1,920천 원), 수당은 연평균 5,002천 원(월평균 417천 원)을 받았고, 생활시설 연평균 보수(28,033천 원)가 이용시설(27,173천 원) 연평균 보수보다 다소 높았음

○ 보수 기본급이 인상된 시설은 88.8% 수준으로 약 10%가량은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봉제를 적용하는 시설은 58.4% 수준으로 낮았음

○ 연구 결과, 호봉제 미적용 시설에 대한 호봉제 적용 확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기본급 체계와 수당체계 개선,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지원, 시설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 급여체계 도입 등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지원체계 개선(안)으로 제시

□ (경상남도) 초점집단 인터뷰(FGI) 결과를 분석[26]한 결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다섯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처우개선 대상 단계적 확대와 지방정부 조례제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

○ 정책 결정 기준별 사업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옹호, 단일임금체계 마련 등의 순이었음

○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가 처우개선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남 사회서비스 관련 시설에서의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

〈표 2-24〉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구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연구명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개선방안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연구연도	2021	2019
연구기관	경북행복재단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연구자	권용신 외 3	신원식 외 4
연구방법	1.문헌조사 2.시설/종사자 실태조사(172개소/1,673명) 3.전문가 FGI	1.선행연구검토 2.전문가집단인터뷰(1차11명/ 2차17명) 3.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내용	1.종사자 처우 관련 정책, 경북시설 현황 파악 2.사회복지시설 실태 분석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식 분석 4.현장전문가 FGI 결과 분석	1.경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파악 2.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 요구 분석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분석 4.급여체계 개선 방안, 단일화 방안 도축
연구결과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관련 정책 현황 2.경북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분석 3.경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식 분석결과 4.정책 제언	1.선행연구(보사연, 서울시. 전북, 인천) 2.FGI 결과(처우대상, 임금수준 등) 3.처우개선 사업 타당성 검토 4.향후 사업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지방이양시설 84개소 관리자급의 유형별 양적 업무량, 업무 성격, 업무중요도, 업무난이도를 산출하기 위한 직무분석과 84개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400명(기관별 5명 이내)의 근로환경과 임금수준 등 근로실태를 조사

○ (직무분석 결과) 사회복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들의 일일 업무량을 산정한 결과 모든 시설 유형에서 일일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일일 업무량으로 산정한 경우, 사회복지관(10.3시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9.4시간)-노인여가복지시설(9.1시간)-장애인복지관(8.9시간) 등의 순

26) 타당성 평가를 위해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

- 11개 표준 직무 업무 비중 중, 사회복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는 재무회계 관리 비중이 16.1%로 가장 높았으며, 직원 및 조직 역량 강화(12.3%), 인사관리(11.1%), 외부자원 개발·관리(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근로실태 분석) 주당 근로일수, 평균 근로시간, 주말 근무 횟수, 초과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시설유형과 직급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함

- (근로일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주 6일 이상 근무비중이 높고, 직급별 근로일수에 차이가 있음
- (초과근무시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순으로 높고, 고위 직급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음

○ 단기적으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 매뉴얼 보급 및 교육,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성화 및 유연근무 도입, 근로환경 열악 시설에 대한 인력 증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 장기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 교육 컨설팅, (가칭)사회복지 다목적 서비스센터의 설치·운영, 소규모 인력시설 및 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시설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시설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제안

〈표 2-2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연구 결과

구분	경상북도
연구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지방이양시설을 중심으로
연구연도	2018
연구기관	제주연구원
연구자	오운정•박정훈 외
연구방법	1.문헌연구(사례연구, 현장조사) 2.현장조사 및 심층 설문인터뷰(지방이양시설 84개소, 기관규모별 5명 이내 400명) 3.전문가회의
연구내용	1.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분석 2.제주지역 근로실태조사(유형별주요업무, 투입시간, 지속기간, 투입인원) 3.직무분석(재무회계관리, 인사관리, 역량강화, 자원관리, 기관홍보, 사업기획)
연구결과	1.직무분석 결과 2.근로실태 분석 결과 2.정책제안(단기적차원, 장기적 차원, 향후과제)

3. 시군구 지자체별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검토

□ (조사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실태조사 목적과 거의 동일함

○ (근거)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광역지자체 관련 조례제정, 기초지자체 조례제정이 조사시행의 근거

○ (조사 내용)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 파악 이외에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이용자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 파악 내용이 제시되기도 함

○ (조사 현황)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처우관련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시도되는 추세이나 연구 결과의 활용도는 기초지자체에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 최근 동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표 2-26〉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 현황

구분	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목적
경기도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 보수지급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연구	2023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외 2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임금현황 분석,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2022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외 2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임금 현황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처우수준을 진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수립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2021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외 1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임금 현황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처우수준을 진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수립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9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외 1	성남시 시설 및 종사자의 임금 현황 분석과 종사자 임금의 대외적 형평성 수준을 진단하여 처우개선의 종합계획(안)을 제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2020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외 1	화성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임금실태조사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처우수준을 진단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수립
부산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	2022	한국재정분석연구원	이종우 외 3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 수행,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계획 기초자료 마련
충남	서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2016	충남연구원		충남 서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종사자 처우정책을 추진하는데 근거자료를 구축

□ (선행연구 결과) 8개 기초지자체에서 관할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종사자 실태조사 또는 관련된 연구 결과를 활용

○ 유사한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으로 작성된 경기도 내 5개 기초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는 시군구 종합계획(안) 수립 결과 보고서에 포함됨

○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보고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천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표 2-27〉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 내용 및 방법

구분	연구명	연구방법	연구내용
경기도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 보수지급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마련연구	1.시설임금실태조사(1년이상 만근자 699명) 2.종사자 설문조사 3.FGI(공무원포함 5회) 4.인근지역처우개선비교(조례,위원회,실질임금)	1.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조사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분석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4.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1.시설임금실태조사(70개소/만근자 350명) 2.종사자설문조사 3.FGI(공무원포함7회) 4.인근지역처우개선비교(조례,위원회,실질임금)	1.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2.타 시군 처우개선 관련 비교분석 3.타 지역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4.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1.시설임금실태조사(77개소/만근자 281명) 2.종사자설문조사 3.FGI(공무원포함7회) 4.인근지역처우개선비교(조례, 실질임금)	1.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2.타 시군 처우개선 관련 비교분석 3.타 지역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4.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시설.종사자 실태조사(182개소/1,371명) 2.소포럼	1.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2.유사 시군 처우개선 관련 비교분석 3.유사 지역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4.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1.시설임금실태조사(77개소/만근자 529명) 2.종사자설문조사 3.FGI(공무원포함7회) 4.처우향상위원포럼(1회)	1.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2.타 시군 처우개선 관련 비교분석 3.타 지역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4.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
부산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	1.문헌연구 2.사시정(행복e음)현황분석 3.시설장및종사자실태조사(31명/286명)	1.사회복지시설 현황(행정)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운영주체,형태,생활/이용별차이) 3.처우개선 방안
충북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보고서	1.선행연구 2.실태조사(민간종사자 375명, 공무원 105명) 3.현장전문가 FGI	1.이론적 배경 2.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권실태 3.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인권실태 4.인권영역별 개선 방안
충남	서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1.문헌연구 2.시설조사/종사자설문조사(52개소499명) 3.FGI 4.간담회/토론회	1.종사자 개념과 처우개선 정책 2.종사자 급여 현황, 실태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4. 최근 실태조사에 대한 문헌 검토 결과

□ (연구 방법의 차별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실태조사 방법은 지역 내 시설 선정 후, 시설에 포함된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방법이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에 실시되는 2023년 실태조사간에 방법론에서 큰 차별성이 존재

○ (조사대상)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는 관할지역 내 시설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점에서 범용성이 존재

○ (조사 방법) 최근 광역지자체 실태조사들이 종사자 임금 등 사회복지시설의 근로 실태조사를 설문조사로 해결하는 반면에 본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자료를 분석

-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조사자가 시설관리자를 직접 면접하는 인터뷰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
- 또한, 종사자 인식조사는 연구자의 연구목표 및 계획에 따라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시설유형, 재원 출처, 시설 규모, 종사자 지위 등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하거나, 온라인 기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종사자 대상 웹조사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됨

□ (조사내용의 공통성) 광역지자체의 실태조사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 내용이 광역지자체 조사와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시설조사) 시설 일반 현황과 종사자 현황, 인건비 지급 실태(보수총액,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 등), 보수체계(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지자체 인건비 기준, 사업별 지침, 시설자체 기준 등), 근로여건(고용형태, 근무형태, 노동관계법 의무사항 등), 안전, 교육 및 훈련, 복리후생 등의 내용

○ (종사자 조사) 응답자 정보, 근로조건(근로계약, 보수, 사회보험, 노동시간, 업무량, 일·가정 양립, 업무량, 노동관계법상 권리 내용 등), 이직 및 전직 의사와 결정요인,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안전 및 폭력에 노출 경험, 처우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와 개선과제 등의 내용

□ (인건비 준수율 파악) 광역지자체 조사의 경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복지부 실태조사와 동일하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대전시 실태조사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됨

○ (보수 수준) 광역지자체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재원 주체(국비시설, 국·도·시비시설), 시설유형(생활시설, 이용시설), 소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직위나 호봉제 적용 등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이를 규명하는 이슈

- 광역지자체 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시설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수조사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음
-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연구가 누적된 광역지자체에 따라 독립된 단일임금체계를 개발, 적용하고 있으며 단일임금체계 관련 연구로 주제가 옮겨가는 추세임
  - 단일임금체계 관련 연구를 수행한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있음

○ (분석기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임금 비교를 위해 연봉개념의 인건비 산출이 주된 측정기준이었으며, 반면에 월 기본급을 비교하는 인건비 준수율 측정기준 실태조사는 대전시의 실태조사만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월 기본급 등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측정은 가능하다고 추정
- 특히,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한 종사자 실태조사는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운영법인에 따라 보수체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보수 수준을 조사하는 종사자의 대표성을 특정 호봉으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시설유형과 세분류 시설, 17개 광역지자체 소재 시설을 포함하고, 조사 시점 종사자 개인 호봉을 적용한 임금(기본급) 수준을 비교하여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도출할 필요가 존재

□ (실태조사의 선순환 부족)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가지는 재정 여건의 한계와 법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 결과가 선순환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표준화 필요) 종사자의 보수체계가 소관 부처와 재원 주체, 광역 및 기초지자체, 운영 주체, 시설유형별 사업지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개념 정의, 적용시설 일반화(계획적인 단계별 적용 확대)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와 종사자 인식조사 형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의 대상시설이 지자체 소재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조사 모집단이 작음
- 설문지(시설 실태조사 또는 종사자 인식조사)를 작성하는 조사방식의 한계로 인해 조사시점에서 대표 직위의 평균 호봉을 찾거나 연구자의 판단으로 대표 호봉을 정해서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한계가 있음

제3절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현황

1. 개관

□ (개관)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법 제도 추진에 따른 17개 광역지자체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사 처우 정책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행정조사 및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

○ (주요 결과) 광역지자체에서는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에 주력하면서, 가이드라인 미적용 국고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호봉표 도입 또는 소관 부처의 자체 사업 호봉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으로 파악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금 수준이 낮은 특정 시설에 대해 지방비로 인건비를 보전

□ (목적) 광역 단위 지자체별로 2023년 현재 적용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 조사를 실시

○ (방법) 2023년 8월~9월, 2개월간 17개 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세부 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 (지급기준) 인건비 지급기준 제도는 아래의 총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
- (기준 항목) ①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②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③ 지자체 호봉표, ④ 자체 사업 호봉표(또는 자체사업 인건비), ⑤ 기타
- (기타) 시설별 상이한 인건비 지급, 별도 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급 등이 포함됨.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9개 시설,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시설을 포함해 총 16개 중분류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

○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 (결핵·한센시설) 소속은 질병관리청이나 분석수준 유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포함

○ (여성가족부 소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표 2-28〉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행정조사표 양식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작성 및 자료 제출 요령

1. 세부시설 유형별로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주어진 '입력값' 중에서 선택
2. '기타'로 응답한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내용 작성
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별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제출 (※ 예를 들어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서 동일한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적용한다면 각각 제출하지 말고, 한 개 기준표를 제출하되 적용되는 시설명을 표기할 것)

시설유형	이용형태	세부시설 유형	2023년 적용 중인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이용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유형	이용형태	세부시설 유형	2023년 적용 중인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비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시설	생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이용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시설	다함께돌봄센터		
결핵·한센시설	생활시설	결핵·한센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이용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이용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행정조사표임.

2.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행정조사 종합결과

□ (종합결과)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라드라인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경향이 확대

○ (지방이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多

○ (국고지원시설) 급여 수준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보전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100% 준수되도록 노력

□ (주요 특징)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 구축 노력으로 단일임금체계 구축, 임금이 낮은 국고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체 호봉제 도입 등이 부각

○ (단일임금체계) 서울시는 호봉제 형식의 단일임금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봉제 형식의 단일임금체계를 도입

○ (자체호봉체계) 인천광역시의 경우 국조지원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5개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호봉체계 도입

〈표 2-29〉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제도에 관한 행정조사 결과 요약

구분	주 적용 인건비 기준	추진 근거
서울	‣서울형 단일임금체계(31 호봉제, 1~5급·관리직·기능직)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추진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긴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지급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매년 수립)
부산	‣다수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시비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국비시설) 호봉제 적용 ‣자체사업 인건비를 준용하되 지방비로 차액을 보전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매년 발간)
대구	‣(시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국비시설) 2024년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목표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 100% 적용 목표 ‣급여수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96% 수준인 시설은 지방비로 차액 보전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여성[27]·가족·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매년 발간·공표)
인천	‣(국비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권익시설은 인천시 호봉표 적용 - 차액은 시비로 보전하여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他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세부추진 계획(’21.12 수립)
광주	‣(시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국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목표율 - 2021년 95%, 2022년 97%, 2023년 100%로 설정 ‣100% 준수 시 특별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폐지, 복지포인트 지급	광주시 제2기(2021~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1.6.7 시행)
대전	‣예산 부족 등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한계가 있어 단일임금체계 도입 방법 중에 ‘통합임금체계’ 방식을 검토 중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외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대전시는 처우가 낮은 시설에 대해 별도 법정수당체계 마련	대전시 제4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계획(2024~2026)” 수립 중(’23)

구분	주 적용 인건비 기준	추진 근거
울산	‣ (시비시설) 호봉제 적용,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他 시설은 자체 사업 인건비 기준 준용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년도 가이드라인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매년 발간·공표)
세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특수성을 감안해 개별계획 수립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1년~'23년) 계획" 수립('20.12), 동 계획 추진사업 세부 시행지침(안) 마련('21.6)
경기	‣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2023년 호봉제 도입)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통해 일부 보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매년 발간)
강원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자체사업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쉼터 - 인건비 수준이 낮은 국비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임금격차 최소화 노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매년 발간·공표)
충북	‣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10호봉 상한제로 운영 ‣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 (근무 기간) 3년 미만이면 월 14만 원, 3년 이상 7년 미만은 월 15만 원, 7년 이상은 월 16만 원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매년 발간·공표)
충남	‣ (시비시설) 호봉제 적용,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호봉제 도입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지자체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28]여성권익시설은 충남도 호봉제(18호봉)를 적용하여 월정액으로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매년 발간·공표), 충남도 호봉제(18호봉)
전북	‣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지자체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과장급) 및 생활복지사(사회복지급) 모두 10호봉 상한으로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매년 발간·공표), 다함께돌봄센터는 호봉제 미도입
전남	‣ [29]여성권익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여성권익시설) 자체사업 호봉표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매년 발간·공표),
경북	‣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지자체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모두 20호봉 상한의 호봉제 적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목표율) 2023년 90%, 2024년 95%, 2025년 100%로 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매년 발간·공표),
경남	‣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자체사업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지자체 호봉표) 여성 권익시설[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매년 발간·공표),
제주	‣ 제주형 단일임금체계 적용(연봉제) -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이양시설 108개소, 국비지원시설 110개소 ‣ 2015년에는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 모두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단일화 - (급여체계) 연봉+2개 수당(가족수당, 시간외수당) - (직급체계) 9개 직급(시설장, 사무국장, 1급~7급)의 단일 직급체계 - (정원책정) 시설별·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수시 개정),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수시 개정)

27) 남성관련 시설(부자가족, 가폭 등)이 있으나 대부분 해당지자체 여성권익국 등 여성 대표부서에서 담당

□ (전체 기본급 지급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 인천, 충북, 광주, 세종,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는 소재지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률이 70% 이상으로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표 2-30〉 참조)

○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비중) 특히, 부산(84%), 광주(83%), 세종(100%)의 경우 각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율은 80%이상이었음

○ (지자체 호봉표 적용 비율이 높은 지역) 서울시의 경우, 총 51개 세부 시설유형 모두가, 제주도의 경우 83%가 지자체 호봉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외 단일임금체계가 아닌 일부 시설에 한해 지자체 호봉표를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로는 대구(36%)와 인천(25%), 충남(24%), 경남 (19%) 등이었음

○ (시설 자체사업 호봉표 비율이 높은 지역) 울산이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37%), 전북(33%), 충남(32%), 충북(30%) 등이었음

□ (자체사업 호봉표 또는 인건비 단가 지원기준) 일부 사회복지시설, 특히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자체사업 인건비가이드라인 또는 인건비지원 단가지원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함(〈표 2-30〉 참조)

○ (자체사업 호봉표 적용 이유) 광역지자체에서 시설종사자 임금 기준으로 자체사업 호봉표 또는 인건비 지원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기준이기 때문

-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단일임금체계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표 2-30〉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
-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아닌 사업지침에 의해 자체사업 호봉표가 적용되는 일부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 예산 미확보로 당해 년도가 아닌 전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을 적용받는 사례가 과거에 존재했다는 의견이 시설장 FGI에서 제기
- 한편,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임금 지급 기준으로 22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시설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28) 남성관련 시설(부자가족, 가폭 등)이 있으나 대부분 해당지자체 여성권익국 등 여성 대표부서에서 담당
29) 남성관련 시설(부자가족, 가폭 등)이 있으나 대부분 해당지자체 여성권익국 등 여성 대표부서에서 담당
30) 남성관련 시설(부자가족, 가폭 등)이 있으나 대부분 해당지자체 여성권익국 등 여성 대표부서에서 담당

〈표 2-30〉 2023년 광역지자체의·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시설유형	이용형태	세부시설유형	지급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3	1	1	1	1	1	2	·	1	1	1	·	1	1	1	1	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3	1	1	1	1	1	1	·	5	1	1	1	1	1	1	1	1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3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3
		노인보호전문기관	3	1	1	1	1	1	1	1	5	1	1	1	1	1	1	1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아동일시보호시설	3	1	1	1	1	1	1	·	1	1	·	·	1	1	1	·	3
		아동보호치료시설	3	1	1	·	1	1	·	·	1	·	1	·	1	1	·	1	·
		자립지원시설	3	1	1	1	1	1	1	1	·	1	1	1	1	1	·	·	3
		공동생활가정	3	1	3	3	4	1	4	1	1	4	1	3	3	1	3	4	3
	이용시설	아동상담소	3	·	·	1	·	·	·	·	1	·	·	·	·	·	·	·	5
		아동전용시설	3	·	·	·	1	·	·	·	·	·	1	·	·	·	·	·	·
		지역아동센터	3	1	3	3	4	4	4	1	1	4	1	4	3	1	3	4	3
		아동보호전문기관	3	1	3	1	1	4	1	·	1	1	1	1	4	1	1	1	3
		가정위탁지원센터	3	1	3	1	1	1	1	·	1	1	1	1	1	1	1	1	3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	4	4	1	1	4	4	1	4	1	1	4	1	1	4	4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	4	4	1	1	4	4	1	4	1	·	4	1	1	·	4	1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3	4	4	1	·	4	4	·	4	·	·	·	1	·	4	4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3	1	4	1	1	4	1	·	1	1	1	1	1	1	4	4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	1	4	1	1	4	1	·	1	1	1	1	1	1	4	4	3
		피해장애인쉼터	·	1	4	1	1	4	1	·	1	1	1	4	1	1	1	1	3
		피해장애아동쉼터	·	1	·	·	·	·	·	·	1	·	·	·	·	·	·	1	·
	이용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	·	1	1	1	1	1	1	1	1	1	·	1	1	1	1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	1	1	1	1	4	1	1	1	1	1	·	1	1	1	1	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	1	1	1	·	4	·	·	·	·	1	·	1	·	1	1	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	1	1	1	1	4	1	1	4	1	1	1	1	1	1	1	1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3	4	4	1	4	4	4	1	4	·	1	4	1	1	4	1	3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3	1	1	1	4	1	4	1	1	1	1	1	1	1	1	1	3
	이용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3	1	1	1	4	1	4	·	1	1	1	1	1	1	1	1	3
노숙인시설	생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3	1	1	1	1	1	1	1	1	1	1	1	1	·	5	·	·
		노숙인재활시설	3	1	1	1	1	1	1	·	1	·	1	·	1	1	1	1	5
		노숙인요양시설	3	1	1	·	·	1	·	·	1	1	1	·	1	1	1	1	·
	이용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1	1	·	1	1	·	·	1	·	·	·	·	·	·	·	3
		노숙인일시보호시설	3	·	1	·	·	1	·	·	1	1	·	·	·	·	·	·	·
		노숙인급식시설	·	·	·	·	·	1	·	·	4	·	·	·	·	·	·	·	·

시설유형	이용형태	세부시설유형	지급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노숙인시설	이용시설	노숙인진료시설	3	1	·	·	·	1	·	·	·	·	·	·	·	·	·	·	·
		쪽방상담소	3	1	1	1	·	1	·	·	·	·	·	·	·	·	·	·	·
사회복지관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지역자활센터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3	4	4	1	1	4	4	1	4	4	4	4	4	1	1	4	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3	1	3	3	4	4	4	1	1	4	1	4	4	1	3	4	3
결핵·한센시설	생활시설	결핵·한센시설	·	·	1	·	·	·	·	·	1	·	·	·	·	1	1	1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시설	일반지원시설	·	1	3	3	1	1	4	·	5	5	4	3	4	4	1	3	3
		청소년지원시설	·	·	3	3	1	·	4	·	·	·	4	·	·	4	·	3	3
		외국인지원시설	3	·	·	·	1	·	4	·	·	·	4	·	·	4	·	·	3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3	·	3	·	1	·	4	·	·	·	4	·	4	4	·	3	3
	이용시설	지활지원센터	3	1	3	3	1	·	4	·	·	·	4	·	4	4	·	·	3
		성매매피해상담소	3	1	3	3	1	1	4	·	·	5	4	3	4	4	1	3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1	3	3	1	1	4	·	5	5	4	3	4	4	1	3	3
	이용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3	1	3	3	1	1	4	1	·	5	4	3	4	4	1	3	3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1	3	3	1	1	4	·	5	5	4	3	4	4	1	3	3
	이용시설	가정폭력상담소	3	1	3	3	1	1	4	1	·	5	4	3	4	4	1	3	3
		긴급전화센터	3	1	3	3	3	1	4	·	·	1	4	3	4	4	1	3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3	1	1	1	1	1	1	·	1	1	1	·	1	1	1	1	·
		부자가족복지시설	3	·	·	1	·	·	·	·	1	·	·	·	1	·	·	1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	1	1	1	1	1	1	·	1	1	·	·	1	1	1	1	3
		일시지원복지시설	·	·	1	·	·	1	·	·	1	·	·	·	1	·	·	1	3
	이용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	·	·	·	·	·	·	·	·	·	1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	3	1	4	4	2	1	4	4	4	4	4	1	4	4	3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3	4	3	1	·	4	2	·	4	4	4	4	4	1	4	4	3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시설	청소년쉼터	·	4	3	1	1	4	4	·	4	4	1	4	4	1	1	4	3
		청소년자립지원관	·	·	3	1	·	4	·	·	4	·	·	4	·	·	·	·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	·	·	·	·	·	·	·	·	·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1	·	·	1	4	4	·	4	·	·	·	4	·	·	4	3
2023 가이드라인			0%	84%	49%	75%	83%	63%	43%	100%	65%	68%	70%	44%	63%	76%	74%	54%	10%
2022 가이드라인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지자체 호봉표			100%	0%	36%	25%	2%	0%	0%	0%	0%	0%	0%	24%	4%	0%	7%	19%	83%
자체사업 호봉표			0%	16%	15%	0%	15%	37%	50%	0%	25%	18%	30%	32%	33%	24%	17%	27%	2%
기타			0%	0%	0%	0%	0%	0%	0%	0%	10%	15%	0%	0%	0%	0%	2%	0%	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2.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4. 자체사업 호봉표, 5. 기타.

〈표 2-31〉 사회복지시설 중 자체사업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시설유형	이용형태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I] -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원단가(연간 인건비 총액으로 시설에 교부)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 인건비 지원 편성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II] -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운용 권고안, 인건비 ※ (직원보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사회)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III권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III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III권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수지급기준 참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III권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이용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시설	이용시설	노숙인급식시설	(경기)경로식당 기준 인건비 적용
지역자활센터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인건비 보조금 구성 내역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이용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 가족센터 호봉 기준표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 쉼터·자립지원관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3.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제도 행정조사 세부 결과

가. 서울특별시 정책 동향

□ (기본급) 서울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하여 “서울형 단일임금체계(호봉제)”를 적용 중

○ 2017년 시비 지원시설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처우 개선비에 해당하는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국비 지원시설까지 서울시 자체 단일임금체계를 100% 적용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기본급 지급 기준은 31호봉제로 5개 직급, 관리직,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월 지급액으로 공시

○ 다만, 2023년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시설을 제외하고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 중

- 2024년에 아동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개인 시설도 단일임금체계에 포함할 예정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서울형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추진 예정

〈표 2-32〉 202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구분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자체 호봉표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주: 1)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시설을 제외하고 단일임금체계를 적용 중

〈표 2-33〉 202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단위: 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56,000	2,499,000	2,285,000	2,260,000	2,245,000	2,233,000
2	-	3,020,000	2,555,000	2,300,000	2,278,000	2,258,000	2,243,000
3	-	3,089,000	2,625,000	2,323,000	2,296,000	2,270,000	2,255,000
4	-	3,154,000	2,692,000	2,371,000	2,318,000	2,285,000	2,266,000
5	-	3,212,000	2,754,000	2,436,000	2,340,000	2,300,000	2,288,000
6	-	3,370,000	2,897,000	2,581,000	2,360,000	2,330,000	2,300,000
7	-	3,458,000	2,997,000	2,673,000	2,404,000	2,353,000	2,320,000
8	-	3,552,000	3,090,000	2,748,000	2,479,000	2,438,000	2,340,000
9	-	3,654,000	3,183,000	2,839,000	2,568,000	2,527,000	2,378,000
10	-	3,755,000	3,276,000	2,919,000	2,647,000	2,603,000	2,476,000
11	-	3,846,000	3,366,000	3,018,000	2,739,000	2,692,000	2,553,000
12	-	3,906,000	3,414,000	3,056,000	2,795,000	2,742,000	2,606,000
13	-	3,956,000	3,463,000	3,114,000	2,850,000	2,794,000	2,648,000
14	-	4,013,000	3,524,000	3,188,000	2,917,000	2,841,000	2,708,000
15	-	4,068,000	3,583,000	3,259,000	2,980,000	2,894,000	2,754,000
16	4,496,000	4,121,000	3,656,000	3,329,000	3,046,000	2,944,000	2,836,000
17	4,547,000	4,172,000	3,727,000	3,394,000	3,112,000	2,988,000	2,889,000
18	4,596,000	4,230,000	3,795,000	3,456,000	3,174,000	3,047,000	2,944,000
19	4,664,000	4,281,000	3,855,000	3,515,000	3,231,000	3,100,000	2,994,000
20	4,734,000	4,338,000	3,915,000	3,571,000	3,286,000	3,155,000	3,053,000
21	4,824,000	4,409,000	3,971,000	3,624,000	3,335,000	3,228,000	3,121,000
22	4,884,000	4,467,000	4,025,000	3,673,000	3,385,000	3,281,000	3,177,000
23	4,938,000	4,522,000	4,076,000	3,721,000	3,430,000	3,331,000	3,231,000
24	4,989,000	4,560,000	4,130,000	3,767,000	3,474,000	3,387,000	3,270,000
25	5,039,000	4,623,000	4,180,000	3,812,000	3,517,000	3,403,000	3,321,000
26	5,103,000	4,680,000	4,228,000	3,854,000	3,556,000	3,458,000	3,348,000
27	5,145,000	4,738,000	4,293,000	3,896,000	3,590,000	3,513,000	3,404,000
28	5,181,000	4,797,000	4,305,000	3,922,000	3,617,000	3,567,000	3,460,000
29	5,243,000	4,856,000	4,345,000	3,951,000	3,652,000	3,624,000	3,516,000
30	5,297,000	4,913,000	4,404,000	4,007,000	3,704,000	3,677,000	3,570,000
31	-	4,973,000	4,461,000	4,067,000	3,764,000	3,732,000	3,626,000

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2022). 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9.

□ (수당) 서울시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의하면,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등 5개 수당을 지급

○ (가족수당) 정규직원 대상으로 배우자 월 4만 원, 자녀는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첫째 월 3만 원, 둘째 월 7만 원, 셋째 이상 월 11만 원)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시설장외 정규직원이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지급

○ (명절휴가비)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120%를 설과 추석에 연 2회로 나누어 지급

○ (정액급식비) 정규직원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관리자 수당) 시설장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

〈표 2-34〉 202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 원 기타 20천 원 자녀: 첫째 30천 원 둘째 70천 원 셋째 이후 110천 원	보건복지부 기준 반영
시간외 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 (연장·야간·휴일) 초과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 2회 (설, 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200천원)	매월	200천원	

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2022). 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20.

□ (부가 급여제도) 기본급과 수당 외에도 서울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복지포인트)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가 지급 대상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및 추가 지원대상 연 300포인트 지급(1포인트=1천 원)
- (추가지원대상)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 (종합건강검진비)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 4년마다 1회 선착순 2,900여 명 지원

- 연령대별 차등 지원(50대 40만 원, 40대 30만 원, 30대 20만 원)

○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종사자임

-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백만 원 지원(1회당 10만 원씩 10회 제공)

〈표 2-3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 직급 기준

<table>
<tr><th rowspan="2">공무원
비교 직급</th><th colspan="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th><th colspan="2">비교 직급 설정 기준</th></tr>
<tr><th>직급</th><th>이용시설</th><th>생활시설</th><th>종사자 규모</th><th>경력</th></tr>
<tr><td rowspan="2">5급</td><td rowspan="2">1급</td><td rowspan="2">관장, 원장</td><td rowspan="2">원장</td><td>10인 이상</td><td>15년 이상</td></tr>
<tr><td>10인 미만</td><td>25년 이상</td></tr>
<tr><td rowspan="3">6급</td><td rowspan="3">2급</td><td rowspan="2">관장, 원장</td><td rowspan="2">원장</td><td>10인 이상</td><td>11년 이상 15년 미만</td></tr>
<tr><td>10인 미만</td><td>15년 이상 25년 미만</td></tr>
<tr><td>부장</td><td>사무국장</td><td>10인 이상</td><td>15년 이상</td></tr>
<tr><td rowspan="3">7급</td><td rowspan="3">3급</td><td>관장, 원장</td><td>원장</td><td>10인 미만</td><td>15년 미만</td></tr>
<tr><td>부장</td><td>사무국장</td><td>10인 이상</td><td>15년 미만</td></tr>
<tr><td>과장</td><td>과장</td><td colspan="2">-</td></tr>
<tr><td>8급</td><td>4급</td><td>대리</td><td>선임 생활지도원</td><td colspan="2">-</td></tr>
<tr><td>9급</td><td>5급</td><td>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건강가정사 등</td><td>생활지도원</td><td colspan="2">-</td></tr>
<tr><td>9급(96%)</td><td>관리직</td><td colspan="2">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td><td colspan="2">-</td></tr>
<tr><td>9급(93%)</td><td>기능직</td><td colspan="2">생활보조원, 취사·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 위생원</td><td colspan="2">-</td></tr>
</table>

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2022). 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8.

□ (한계점) 종사자 규모와 경력의 차별 적용을 통해 기본급 지급 직위를 차별화함으로써 동일노동-동일 임금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존재

○ (해당 직위) 과장 이하 직원에는 미적용되나 부장 이상, 사무국장, 원장의 경우, 종사자 규모와 경력에 따라 공무원 비교 직급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기본급도 차별 지급

○ (차별 가능성) 종사자의 직무를 고려할 때 과장 이하 직급의 종사자는 동일한 반면 사무국장 이상의 경우 차별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나. 부산광역시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부산시는 매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제시

○ (시비 시설) 2018년부터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여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 준수

○ (국비 시설)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 지원시설에는 호봉제를 적용하여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대상)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자체사업 호봉표)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쉼터는 자체 사업 호봉표 적용

- (차액 시비 보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과의 차액은 시비로 보전하여 시설 간 임금 격차 해소 노력

〈표 2-36〉 2023년 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1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3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 미지급 시설장은 과장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호봉제를 적용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4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을 따르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차액분을 시비로 보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	2023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따르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차액분을 시비로 보전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4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를 따르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차액분을 시비로 보전
다함께돌봄센터		3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 미지급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4. 자체사업 호봉표

〈표 2-37〉 2023년 부산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3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 미지급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차액분을 시비로 보전 - 시설장: 과장급, 호봉 상한 17호봉 - 종사자: 상한없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3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2023년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적용 팀장 이상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차액분을 시비로 보전(팀장 이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차액분 없음) - 시설장: 과장급, 호봉 상한 16호봉 - 종사자: 호봉 상한 16호봉
건강가정지원센터		3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3	2023년 쉼터·자립지원관 종사자 기본급(호봉제) 가이드라인 적용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차액분을 시비로 보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 미지급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 (수당)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는 수당만을 지급

○ (일부 수당 미지급 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권익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미지급

○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 원,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 자녀는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첫째 월 3만 원, 둘째 월 7만 원, 셋째 이상 월 11만 원) 지급

□ (부가급여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정규직원에 대해 연 10만 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다. 대구광역시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시비 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100% 적용 중이나, 국고 지원시설은 2022년부터 일부 시설에만 적용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목표) 2024년 100%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 100% 적용을 목표로 함.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 생활시설, 장애인복지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여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100% 적용 중

- 아동복지 생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요양시설은 제외

〈표 2-38〉 2023년 대구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1	
	지역아동센터	3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5% 수준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수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4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6% 수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수준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4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3.6% 수준
다함께돌봄센터		3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5% 수준
결핵·한센시설		1	

주: 1)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4. 자체 사업 호봉표
2) 결핵·한센시설은 질병관리청 소관 시설임.

□ (자체 사업 호봉표 적용)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가 적용 중이며,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93.6~96% 수준이어서 차액분을 시비로 지급

○ 장애인복지 생활시설은 보건복지부 2023년 가이드라인의 96% 수준, 정신요양시설은 95% 수준, 지역자활센터는 93.6% 수준을 지급

□ (지자체 호봉표 적용)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 아동복지 이용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중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이 적용 중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95% 수준을 지급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85% 수준으로 가장 낮음.

○ (여성·가족·청소년 시설) 2023년 가이드 라인의 95% 수준이어서 차액분을 시비로 지급

〈표 2-39〉 2023년 대구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3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수준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3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수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3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수준

주: 1)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

□ (부가 급여제도) 장기근속·자녀돌봄·건강검진 휴가제도, 유급병가, 상해보험료 지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 10년 이상~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은 10일

○ (자녀돌봄 휴가제도) 2022년부터 인건비 지원 지방이양시설의 영유아, 초·중·고 자녀를 둔 정규직, 기간제 종사자가 어린이집, 학교 행사 참여, 자녀 건강검진 등 자녀돌봄 발생 시 자녀돌봄 유급휴가 연 2일(16시간) 지원

○ (건강검진 휴가제도) 2022년부터 인건비 지원 지방이양시설의 정규직, 기간제 종사자 대상

○ (유급병가) 2021년부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정원 내 정규직 종사자는 연 60일 범위 내 사용 가능(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상해보험료) 2022년부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대상으로 지원

라. 인천광역시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세부추진 계획(‘21.12)”을 마련

○ 인건비가 낮은 소규모 국비 지원시설에만 인천시 자체 호봉표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 (지자체 호봉표 적용)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권익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발한 인천시 자체 호봉표를 적용

○ (차액 시비 보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과의 차액분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로 차액을 보전하여 시설간 임금격차 해소 노력

○ (센터장 호봉 제한) 센터장 호봉이 31호봉까지 인정될 경우, 센터장과 종사자간 임금격차가 커져 센터장은 18호봉으로 제한

〈표 2-40〉 2023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자립지원시설	1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3	센터장은 18호봉으로 제한
	아동상담소,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쪽방상담소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1	
다함께돌봄센터		3	센터장은 18호봉으로 제한

주: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2.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표 2-41〉 2023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3	센터장은 18호봉으로 제한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3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건강가정지원센터		1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1	

주: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 (수당)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이외에 관리자 수당과 시간외수당, 특수지 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

○ (관리자 수당) 인건비 국비 및 시비 지원시설 상근 시설장에게 월 10만 원 지급

○ (시간외수당) 시설장을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지급

○ (특수지 근무수당) 강화군·옹진군 일부, 서해 5도 근무자 대상으로 지급

- 특지(월 6만 원), 갑지(월 5만 원), 을지(월 4만 원), 병지(월 3만 원)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서해 5도는 월 20만 원 지급

□ (부가 급여제도) 기본급과 수당 외에도 인천시는 정액 급식비,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제도를 도입·운영

○ (정액 급식비) 인건비 국비 및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업 수행 인력으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월 5만 원 지급

○ (복지포인트) 인건비 국비 및 시비 지원시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지급 대상

- 10호봉 미만 연 250점, 10호봉 이상 연 300점(1점=1,000원)

○ (종합건강검진비) 인건비 국비 및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업 수행 인력으로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인당 20만 원 지급(격년제)

마. 광주광역시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광주시는 “제2기(2021~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분 시설에서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중

○ (시비 지원시설)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100% 준수

-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 기존 특별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을 폐지하고 복지포인트 지급

○ (국비 지원시설)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목표율을 2021년 95%, 2022년 97%, 2023년 100%로 설정

○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100% 달성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시비시설 월 5~7만 원, 국비시설 10~15만 원) 및 처우개선 수당 폐지 추진

〈표 2-42〉 2023년 광주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노인여가복지시설	1	광산구 행복나루 노인복지관은 예외적으로 자체 호봉표 적용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1	
	공동생활가정	4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공동생활가정 지침 +시비보존액 지원
	지역아동센터	4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매년 정액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	임금보전수당 지급을 통해 가이드라인 100% 준수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	자체사업 호봉표 =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1	
다함께돌봄센터		4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주: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 사업 호봉표

□ (자체 사업 호봉표 적용) 정신요양시설은 자체 사업 호봉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임금 보전수당 지급을 통해 가이드라인 100% 준수

□ (지자체 호봉표 적용) 가정폭력보호시설 중 긴급전화센터는 공무직으로 지자체 호봉표 적용

〈표 2-43〉 2023년 광주광역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1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성매매피해상담소	1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1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1	
	긴급전화센터	3	공무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2023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 내 가이드라인 준수(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	

주: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4. 자체 사업 호봉표

□ (수당)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의무적인 성격의 수당만을 지급

○ (일부 수당 미지급 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수당 미지급

○ (특별수당)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미준수 상태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는 관련 사업의 인건비 기준을 따르되 특별수당으로 차액분 보전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월 35만 원, 생활복지사 월 30만 원을 특별수당으로 정액 지원

□ (부가급여제도) 2022년부터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한 시설의 정규직원에게만 지급

○ (지급액) 10호봉 미만 연 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200포인트 지급

○ (기타 제도) 자녀돌봄휴가제(2일), 장기근속휴가제(10년 이상 5일~10일), 유급병가제 확대(10일 → 60일), 상해보험료 지원

바. 대전광역시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대전시는 현재 “제4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계획(2024~2026)”을 수립 중이며, 대부분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합임금체계’ 방식을 검토 중

□ (자체 사업 호봉표 적용)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의 95% 수준으로 적용되며, 처우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법정 수당체계를 마련

○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여성가족부 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표 2-44〉 2023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1	명절휴가비: 정액지급 90만 원×2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4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균임금 적용 명절휴가비: 정액지급 90만 원×2회
	가정위탁지원센터	1	명절휴가비: 정액지급 90만 원×2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4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보건복지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4	자체 인건비 지급 기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4	2023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4	보건복지부 2023년 자활사업 안내 봉급월액표 적용
다함께돌봄센터		4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평균임금 적용 명절휴가비: 정액지급 90만 원×2회

주: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 사업 호봉표

〈표 2-45〉 2023년 대전광역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	명절휴가비: 정액지급 70만 원×2회
	성매매피해상담소	1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성폭력피해상담소	1	명절휴가비: 정액지급 70만 원×2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가족센터 호봉 기준표 적용 명절휴가비: 정액지급 90만 원×2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4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쉼터, 자립지원관 종사자 가이드라인 명절휴가비: 정액지급 90만 원×2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여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예산기준 적용 명절휴가비: 정액지급 90만 원×2회

주: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 사업 호봉표

□ (수당)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부가적으로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

○ (일부 시비 보전) 자체 사업 호봉표 적용 국비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시비로 지급

- (명절휴가비) 일부 아동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복지시설은 연간 90만 원씩 2회,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등은 연간 70만 원씩 2회 지급
- (가족수당) 국비 지원시설 등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시설은 시비로 가족수당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생활시설은 인정시간 기준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이용시설은 인정 시간 기준이 없는 시설이 일부 있음.

○ (종사자 특별수당) 시비 지원으로 복지부 소관 이용시설은 월 10만 원, 생활시설은 월 12~18만 원, 여성가족부 소관 이용시설은 월 20만 원, 생활시설은 월 28만 원

□ (부가급여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자녀돌봄휴가, 보육휴가, 유급병가, 심리지원사업, 법률노무전문상담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사업

○ (장기근속 휴가제도)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5일~10일의 휴가 지급

○ (자녀돌봄휴가) 중학교 이하 재학 자녀가 있는 종사자가 연간 2일 이내 사용(3명 이상 자녀는 3일)

○ (보육휴가)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가 연간 5일 이내 휴가 사용

사. 울산광역시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울산시는 시비 지원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100% 적용 중이나, 국비 지원시설은 일부 시설만 100% 준수하고 나머지 시설은 자체 사업 인건비 기준을 따름.

○ (시비 지원시설) 호봉제가 모두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100% 준수

○ (국비 지원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만 가이드라인 100% 준수

- (시비 수당) 보수 수준이 낮은 시설에는 처우개선비, 자격수당을 시비로 정액 지급
- (호봉제 도입)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대부분 자체사업 인건비 기준을 적용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가족센터) 전년도 2022년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중

□ (수당) 국비 지원시설에는 처우개선비, 자격수당, 야간수당, 시간외수당이 시비로 정액 지급

○ (자격 수당) 월 4만 원으로 전체 국비 지원시설에 동일하게 지급되며, 처우개선비, 야간수당, 시간외수당은 일부 시설에만 지급

- (처우개선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월 10만 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보호시설은 월 18만 원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

□ (부가 급여제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급병가, 장기근속 휴가,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보수교육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기관을 확대

○ (유급병가) 60일 범위 내 시행

○ (장기근속 휴가) 5년 이상 장기근속자 3~10일 유급휴가 부여

○ (자녀돌봄 휴가) 연 2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등 자녀를 둔 종사자

○ (보수교육비 지원) 법인·시설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시설

〈표 2-46〉 2023년 울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2	가이드라인 전년도 기준 적용(93% 수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가이드라인 100% 준수
	노인여가복지시설	1	울주군 남부노인복지관은 예외적으로 울산시설관리공단 규정 적용
	노인보호전문기관	1	가이드라인 100% 준수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1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4	보건복지부 내시 의거 총인건비로 편성
	아동보호전문기관	1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가이드라인 100%, 나머지 1개 기관은 81% 수준
	가정위탁지원센터	1	가이드라인 및 법인 인건비 지침 가이드라인 85%~90% 수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4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1	시설장 미준수(지침 관장, 지원 1급)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사회재활교사 기준 지원
	피해장애인쉼터	1	시설장 미준수(지침 원장, 지원 사무국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	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인건비 기준(지침 내),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노숙인재활시설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		4	보건복지부 내시 의거 총인건비로 편성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2.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표 2-47〉 2023년 울산광역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4	여성가족부 개별 사업 호봉 적용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	4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4	
	긴급전화센터	4	여성가족부 개별 사업 호봉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95% 수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전년도 기준 적용
건강가정지원센터		2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여성가족부 쉼터·자립지원관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쉼터는 인건비가이드라인 85% 수준 지원센터는 가이드라인 77% 수준

주: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2.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아. 세종특별자치시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세종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1년~2023년) 계획”을 수립(’20.12)하고 추진사업 세부 시행지침(안)을 마련(2021.6)하여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100% 적용 중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계획 수립

□ (수당) 정규직원 대상으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외 처우개선비를 지급

○ (처우개선비) 현행 시설유형별 근무경력에 따라 월 9만 원~18만 원 차등 지급

□ (부가 급여제도) 정규직원 대상으로 2021년부터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해보험가입비, 장기근속 휴가, 유급병가, 자녀돌봄 휴가, 종합건강검진비 지급

○ (복지포인트) 10호봉 미만 연 150포인트(15만 원), 10호봉 이상 연 200포인트(20만 원)

○ (상해보험 가입비) 자부담분 10만 원 지원

○ (장기근속 휴가) 근속 5~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은 10일(10년 주기로 매 10일)

○ (유급병가) 연 60일 범위 내

○ (자녀돌봄 휴가)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 자녀의 경우 연 2일, 16시간(세 명 이상 자녀는 연 3일, 24시간)

○ (종합건강검진비) 2022년 신설, 국가건강검진 해당연도(2년 1회), 1인당 10만 원

〈표 2-48〉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부처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자. 경기도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2016년부터 매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추진 중

○ (호봉제 도입)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2023년부터 호봉제 도입

-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통합관리운영비는 2023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지침 적용

□ (자체사업 호봉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은 자체사업 호봉표를 적용

○ (청소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에 제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비·사업비·인건비를 포함한 포괄 운영비 지급, 인건비는 자체사업 호봉표를 따르며, 인건비 이외 부족한 운영비는 도비로 추가지원

□ (기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이나 호봉표 적용 없이 관련 사업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는 방식

○ (노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 적용

○ (여성)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은 시설별로 상이하나 지원예산 총액의 7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

□ (수당) 3종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통해 일부 보전

○ (특수근무수당) 시설유형별 근무년수에 따른 수당으로 1인당 월 5만 원~29만 원을 차등 지급

○ (특수지 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부가 급여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월 5만 원 지급, 이밖에 기타 제도 운영

○ (장기근속 휴가) 5년 이상 정규직 장기근속자에게 5~10일 지원

○ (자녀돌봄휴가) 고등학교 재학 이하 자녀가 있는 종사자와 자녀가 장애인, 한부모인 경우 연 2일 이내 사용(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 (유급병가) 연 60일 범위 내

○ (상해보험) 상해사고 의료비 보장, 1인당 월 2만 원 보험료 지원

〈표 2-49〉 2023년 경기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5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 적용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4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자체호봉표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1	
	노숙인급식시설	4	경로식당 기준 인건비 적용(월 136만 원)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4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93.6% 수준
다함께돌봄센터, 결핵·한센시설		1	

주: 1)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5. 기타;
2) 결핵·한센시설은 질병관리청 소관 시설임.

〈표 2-50〉 2023년 경기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5	시설별 상이 (지원예산 총액의 7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건강가정지원센터		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인건비 지급 기준

주: 1.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5. 기타

차. 강원도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미적용되어 인건비 수준이 낮은 일부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임금 격차 최소화에 노력

○ (지자체 호봉표 적용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수당)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의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자체사업 호봉표 시설에도 적용

○ (공동생활가정)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의 총 9개 시·군에서 운영 중

- (명절휴가비) 태백시 미지급
- (가족수당)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정선군, 양구군 미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횡성군, 정선군, 양구군 미지급

○ (지역아동센터)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 존재

- (가족수당)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미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미지급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개인 운영시설로 철원군은 인건비를 지원하나, 강릉시, 속초시, 양구군은 인건비 미지원

□ (부가급여제도) 복지포인트, 복지수당, 처우개선수당 지급

○ (복지포인트) 고성군은 2022년부터 1인당 연 10만 원 전액 군비로 지급, 평창군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1인당 연 2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지급

○ (복지수당) 1995년부터 도입되어 종사자 근속연수에 따라 5년 이상 월 18만 원, 5년 미만 월 15만 원, 1년 미만 월 10만 원 지급하며, 도비 20%, 시·군비 80% 지원

○ (처우 개선수당) 2019년에 도입되어 시·군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상이며,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제외

- 종사자 근속연수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부터는 1년 미만 월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며, 도비 20%, 시·군비 80% 투입

〈표 2-51〉 2023년 강원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	202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지방이양사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	지방이양사업(시·군비 100%)
	아동일시보호시설	1	도비 100%
	자립지원시설	1	도비 100%
	공동생활가정	4	국비 연간 1인 32,235천원+지방비 추가지원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98% 수준 지원(호봉제)
	지역아동센터	4	
	아동보호전문기관	1	연간 1인 35,287천원+지방비 추가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1	도비 100%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4	2023년 자활사업안내 지침 및 자체 호봉표 기준 적용(18개 지역자활센터 중 4개)
다함께돌봄센터		4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연간 센터장 37,068천원 / 종사자(종일제) 34,404천원)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표 2-52〉 2023년 강원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5	단가: 32,517천원/1인(연간), 2023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규모별·유형별 인건비 단가, 2023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성폭력피해상담소	5	유형별 단가(일반, 장애인), 전체 예산 70%~90%범위 내 사용가능, 2023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규모별 단가(입소정원), 전체 예산 70%~90%범위 내 사용가능, 2023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5	상담소 유형별 단가, 전체 예산 70%~90%범위 내 사용가능, 2023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긴급전화센터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가족센터, 가족사업 안내 호봉기준표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4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 준용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5. 기타

카. 충청북도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충청북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미적용된 일부 국고지원시설에 상한제를 적용한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가이드라인 미적용 국고지원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나 10호봉을 상한제로 적용해 운영

○ (자체 사업 호봉표 도입 국고지원시설) 지역자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체 사업 호봉표를 적용

○ (기타) 여성가족부 소관의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은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인건비 기준을 준용

□ (수당)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장기근속 수당 성격의 종사자 대우수당을 지급

○ (대우수당)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월 14만 원, 3년 이상 7년 미만은 월 15만 원, 7년 이상은 월 16만 원 지급

○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7만 원의 장려수당을 별도로 지급

〈표 2-53〉 2023년 충청북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노인여가복지시설	1	제천시 명락복지관은 예외적으로 별도 인건비 지급기준표 적용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1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1	10호봉 상한제로 운영 10호봉 상한제로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1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예외적으로 별도 인건비 지급기준표 적용
	가정위탁지원센터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4	보건복지부 2023년 자활사업안내(지침) 준용
다함께돌봄센터		1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표 2-54〉 2023년 충청북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4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4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2023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타. 충청남도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국고지원시설은 자체 사업 호봉표 또는 인건비 기준 준수, 그리고 인건비 수준이 낮은 일부 시설은 충청북도와 같이 자체 호봉표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 (시비 지원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 지원시설) 호봉제를 도입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 보호전문기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자체사업 호봉표) 지역자활센터,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정신요양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체 사업 지침에 따른 호봉제 적용
- (자체사업 인건비)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체사업 지침에 따라 월정액 지급
- (지자체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은 충청북도와 같이 호봉제(18호봉)를 적용하여 월정액으로 지급

□ (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성격으로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월 9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월 12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

□ (부가 급여제도) 매월 5만 원의 식비와 자녀돌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사용 가능

〈표 2-55〉 2023년 충청남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1	
	공동생활가정	3	
	지역아동센터	4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4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피해장애인쉼터	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		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월정액 지급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4. 자체사업 호봉표

〈표 2-56〉 2023년 충청남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3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차액 보전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4	

주: 3. 지자체 호봉표, 4. 자체사업 호봉표

파. 전라북도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전라북도는 대부분 시설에서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중이며, 최근 국고지원시설인 아동공동생활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지자체 호봉제를 도입

○ (지자체 호봉표) 아동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의 92% 수준이 적용되며, 시설장(과장급) 및 생활복지사(사회복지급) 모두 10호봉 상한으로 적용

- 2024년 95%, 2025년 100% 준수를 목표로 설정

○ (자체사업 호봉표)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권익시설, 가족센터, 청소년복지시설은 각 사업별 인건비 기준을 준용

〈표 2-57〉 2023년 전라북도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지자체 호봉표-10호봉)

(단위: 원, %)

호봉	시설장(과장급)					생활복지사(사회복지급)				
	가이드라인 기본급	기본급+4대 보험종사자 퇴직적립금 (A)	기본급+4대 보험종사자 퇴직적립금 (92% 기준금액)	지급액(B)	가이드대비 지급액 비율(B/A)*100	가이드라인 기본급	기본급+4대 보험종사자 퇴직적립금 (A)	기본급+4대 보험종사자 퇴직적립금 (92% 기준금액)	지급액(B)	가이드대비 지급액 비율(B/A)*100
1호봉	2,267,000	2,704,720	2,488,650	2,704,720	100	2,073,500	2,473,860	2,275,960	2,473,860	100
2호봉	2,323,200	2,771,770	2,550,030	2,771,770	100	2,112,400	2,520,270	2,318,650	2,520,270	100
3호봉	2,385,000	2,845,500	2,617,860	2,845,500	100	2,151,100	2,566,440	2,361,130	2,566,440	100
4호봉	2,482,000	2,961,230	2,724,340	2,961,230	100	2,206,900	2,633,010	2,422,370	2,610,000	99
5호봉	2,574,800	3,083,880	2,837,170	2,976,000	96.50	2,265,300	2,702,690	2,486,480	2,610,000	96.60
6호봉	2,691,000	3,210,580	2,953,740	2,976,000	92.70	2,323,300	2,771,890	2,550,140	2,610,000	94.20
7호봉	2,801,700	3,342,660	3,075,240	3,075,240	92	2,410,000	2,875,330	2,645,300	2,645,300	92
8호봉	2,912,900	3,475,330	3,197,300	3,197,300	92	2,505,300	2,989,030	2,749,910	2,749,910	92
9호봉	3,020,900	3,604,180	3,315,850	3,315,850	92	2,595,000	3,096,050	2,848,360	2,848,360	92
10호봉	3,136,000	3,741,500	3,442,180	3,442,180	92	2,673,300	3,189,470	2,934,310	2,934,310	92

□ (수당) 전라북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수당을 지방비 100%로 지원(도비:시·군비=7:3)하며, 근무기간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

○ 이 밖에도 시·군별로 복지포인트 및 추가수당 지급

□ (부가급여제도)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에게 상해보험 가입 지원(시설별 운영보조금)

○ 김제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전원 가입

〈표 2-58〉 2023년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1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3	2023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기본급(호봉제)의 92% 지원(10호봉 상한), 명절수당 200천원(2회)
	아동보호전문기관	4	보건복지부 사업부서(아동학대대응과) 지원 금액+명절수당 400천원(2회), 초과근무 5시간(월)
	가정위탁지원센터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1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4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시설장 월 3,089천원, 종사자 월 2,867천원)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4. 자체사업 호봉표

〈표 2-59〉 2023년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비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4	2023년 여성가족부 확정 내시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4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건강가정지원센터		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하. 전라남도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권익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중

○ 여성권익시설은 자체사업 호봉표를 적용

□ (수당) 생활시설 12만 원, 이용시설 9만 원의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 장기요양기관은 5만 원 지급

□ (부가급여제도) 2022년부터 시비 및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장기근속휴가제도와 자녀돌봄휴가제도 도입, 유급병가와 상해보험료 지원

○ (장기근속휴가제도)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종사자 대상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

○ (자녀돌봄휴가제도) 연간 2일(16시간) 이내

○ (유급병가) 연 60일 이내

○ (상해보험료) 정규직 및 기간제 종사자 대상으로 상해보험가입비 1인당 1만 원

〈표 2-60〉 2023년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구분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질병관리청	결핵·한센시설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4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주: 1)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 자체사업 호봉표. 2) 결핵·한센시설은 질병관리청 소관 시설임.

거. 경상북도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경상북도는 대부분 시설에서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중

○ (지자체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모두 20호봉 상한의 호봉제 적용

-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목표를 2023년 90%, 2024년 95%, 2025년 100%로 설정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안내에 따른 자체사업 인건비 기준이 있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지자체의 아동복지시설 호봉표를 적용

○ (자체사업 호봉표)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가족센터는 자체사업 호봉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또는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 중 선택할 수 있어 지역자활센터별로 지급기준 상이

○ (노숙인자활시설) 유급 종사자가 아닌 무급 자원봉사자를 통해 운영되어 인건비 미지급

〈표 2-61〉 2023년 경상북도 아동복지시설 호봉 기준표

(단위: 원)

호봉	시설장	생활복지사
1호봉	2,494,140	2,187,100
2호봉	2,494,140	2,187,100
3호봉	2,494,140	2,187,100
4호봉	2,494,140	2,187,100
5호봉	2,494,140	2,187,100
6호봉	2,494,140	2,187,100
7호봉	2,521,530	2,187,100
8호봉	2,621,610	2,254,770
9호봉	2,718,810	2,335,500
10호봉	2,822,400	2,405,970
11호봉	2,918,070	2,468,610
12호봉	3,004,560	2,522,520
13호봉	3,080,070	2,574,180
14호봉	3,153,420	2,627,010
15호봉	3,223,710	2,681,640
16호봉	3,290,130	2,741,040
17호봉	3,353,400	2,800,080
18호봉	3,414,870	2,856,330
19호봉	3,469,140	2,906,910
20호봉	3,523,410	2,956,230

자료: 경상북도 내부자료. (2023). 2023년 경북 아동복지시설 호봉 기준표(지역아동센터, 아동 공동생활가정)

□ (수당)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월 14만 원 지급

○ 경주(1인 10만 원), 구미(1인 10만 원), 안동(1인 24만 원)은 복지포인트 지급

□ (부가급여제도) 포항과 김천에서 상해보험료 지원

〈표 2-62〉 2023년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구분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1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3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1
	다함께돌봄센터		3
질병관리청	결핵·한센시설		1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1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

주: 1)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4. 자체사업 호봉표,
2) 노인여가복지시설: 직영 노인복지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너. 경상남도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경상남도는 대부분 시설에서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중이며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국고지원시설인 여성권익시설의 경우 지자체 호봉표를 운영 중

□ (수당) 종사자수당, 자격수당, 복지포인트, 가계보조수당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

○ (사회복지종사자수당) 경상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명절수당은 연 2회 10만 원씩 지급

○ (자격수당) 시·군·구별로 매월 지급하되,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의령군은 월 3만 원, 진주시와 통영시는 월 4만 원, 함양군과 합천군은 월 5만 원, 창원시는 월 8만 원을 지급

○ (복지포인트) 창원시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년 이상 근무자 연간 5만 원, 10년 이상 근무자 연간 10만 원 지급

○ (가계보조수당) 창원시만 매월 20만 원 지원

□ (부가급여제도) 창원시만 안식휴가제, 시간연가제, 자녀돌봄 휴가제 권고

〈표 2-63〉 2023년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구분	시설유형	세부시설유형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1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4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
	노숙인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1
	사회복지관		1
	지역자활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		4
질병관리청	결핵·한센시설		1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4. 자체사업 호봉표

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동향

□ (인건비 지급 제도)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이양시설 108개소, 국비지원시설 110개소에 대해 '제주형 단일임금체계(연봉제)'를 적용 중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수립

- 국비지원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로 보수 현실화를 추진

○ 2013년부터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비 지원시설과 국비 지원시설에 대해 인건비가이드라인 지침을 명백히 제시

○ 2015년에는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 모두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단일화

- (급여체계) 연봉+2개 수당(가족수당, 시간외수당)
- (직급체계) 9개 직급(시설장, 사무국장, 1급~7급)의 단일 직급체계
- (정원책정) 시설별·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인건비 지원

○ (아동)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용

○ (아동상담소) 자체 예산으로 운영

○ (노숙인재활시설) 2021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대비 3.1% 인상(2022년 1.4% +2023년 1.7%)

□ (복지포인트) 도 보조금(100%)으로 전액 지원하며,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종사자에게 지급 (1포인트=1,000원)

○ 10호봉 미만 : 연 100포인트

○ 10호봉 이상 : 연 200포인트

□ (시간외근무수당)

○ (지원단가) 전년대비 1.7% 인상, 지원상한 초과부분 시설(법인) 부담

○ (지원시간) 지방이양시설은 이용시설(20시간), 생활시설 (20시간), 국비지원시설은 이용시설(20시간), 생활시설(40시간)

〈표 2-6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개편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기존(2015년 이전)</th><th rowspan="2">개편(2015년 이후)</th></tr>
<tr><th>지방이양시설</th><th>국비지원시설</th></tr>
<tr><td>기본급</td><td rowspan="5">연봉</td><td>기본급(본봉)</td><td rowspan="4">연봉</td></tr>
<tr><td>처우개선비</td><td>처우개선비</td></tr>
<tr><td rowspan="3">수당</td><td>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직무(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토요근무수당, 기타 상여금</td></tr>
<tr><td>추가운영비</td></tr>
<tr><td>명절(효도)수당</td></tr>
<tr><td></td><td>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위험수당</td><td>-</td><td>가족수당
시간외수당</td></tr>
<tr><td>계</td><td>연봉+3개 수당</td><td>기본급+15개 수당</td><td>연봉+2개 수당</td></tr>
</tabl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23). 제26차 개정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제21차 개정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표 2-65〉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table>
<tr><th>구분</th><th>시설유형</th><th>세부시설유형</th><th>지급 기준</th></tr>
<tr><td rowspan="17">보건복지부</td><td rowspan="5">노인복지시설</td><td>노인주거복지시설</td><td>3</td></tr>
<tr><td>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td><td>1</td></tr>
<tr><td>노인여가복지시설</td><td>3</td></tr>
<tr><td>노인보호전문기관</td><td>1</td></tr>
<tr><td>노인일자리지원기관</td><td>3</td></tr>
<tr><td rowspan="3">아동복지시설</td><td>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td><td>3</td></tr>
<tr><td>아동상담소</td><td>5</td></tr>
<tr><td>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td><td>3</td></tr>
<tr><td rowspan="3">장애인복지시설</td><td>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td><td>1</td></tr>
<tr><td>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td><td>3</td></tr>
<tr><td>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td><td>1</td></tr>
<tr><td>정신건강증진시설</td><td>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td><td>3</td></tr>
<tr><td rowspan="2">노숙인시설</td><td>노숙인재활시설</td><td>5</td></tr>
<tr><td>노숙인종합지원센터</td><td>3</td></tr>
<tr><td colspan="2">사회복지관</td><td>3</td></tr>
<tr><td colspan="2">지역자활센터</td><td>4</td></tr>
<tr><td colspan="2">다함께돌봄센터</td><td>3</td></tr>
<tr><td rowspan="6">여성가족부</td><td>성매매피해지원시설</td><td>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td><td rowspan="6">3</td></tr>
<tr><td>성폭력피해보호시설</td><td>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td></tr>
<tr><td>가정폭력보호시설</td><td>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td></tr>
<tr><td>한부모가족복지시설</td><td>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td></tr>
<tr><td colspan="2">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td></tr>
<tr><td>청소년복지시설</td><td>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td></tr>
</table>

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3. 지자체 호봉표, 4. 자체사업 호봉표, 5. 기타

제3장

실태조사 방법론

제1절 개관
제2절 시스템 기반 행정자료 조사
제3절 인터넷 기반 종사자 근로여건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제3장 실태조사 방법론

제1절 개관

□ (개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을 위해 〔그림 3-1〕와 같이 시스템 기반 행정자료 분석과 같이 종사자 인터넷 설문조사로 전환하였음

○ (행정자료 분석) 기존 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조사에서 실시한 연간 인건비 조사가 이번 조사에 필요한 월 기준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이 불가하였기 때문

○ (조사방법 전환) 시설정보시스템과 행복e음 행정자료를 인건비 준수율 분석 자료로 이용하고, 부재한 종사자 근로여건 자료는 시설장 FGI를 통한 이슈 중심으로 인터넷 조사로 보완

〔그림 3-1〕 2023년 실태조사 방법론

구분	시스템기반 행정자료 조사	인터넷 기반 종사자 근로여건 조사
방법	• 시스템기반 행정자료 추출 및 통계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인터넷 설문조사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사급여 정보 수록 및 행복e음 교부금 신청 데이터 존재 시설	• 2022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종사자 각 1명씩 총 3명
시설 현황	• 시설: 모집단 14,131개 중 4,739개(33.5%) - 복지부 시설 4,514개, 여가부 소관시설 225개	• 시설: 모집단 14,131개 중 1,751개(12.4%), 종사자 4,402명 - 복지부 소관시설 1,417개, 3,542명 여가부 소관시설 334개 860명
종사자 근로 환경	• 표본 4,,739개에 근무하는 69,313명('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 총 92,845명의 74.7%) - 복지부 66,875명, 여가부 종사자 2,438명	
종사자 보수 수준	〈종사자 보수 지급 분석〉 • 총 69,313명 중 67,054명(주 15시간 초단기 근로자 등 종사자 2,259명 제외) - 복지부 64,683명, 여가부 종사자 2,371명 〈종사자 인건비-교부금 연계분석〉 • 총 69,313명 중 39,804명(교부금 신청 정보 부재 559개 시설 등 총 30,845명 제외) - 복지부 38,530명, 여가부 1,274명	
기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전수 분석〉 • 시설 11,315개, 종사자 70,649명(중복 종사자 22,196명 재외) - 복지부 65,740명, 여가부 4,909명 〈지방이양시설 준수율 측정 방법 적용 분석〉 • 종사자 4,813명(생활시설 7개 직위 10개 호봉 , 이용시설 직위 12개, 호봉 12개 종사자) - 복지부 4,438명, 여가부 375명	〈 종사자 처우관련 이슈 파악을 위한 시설장 FGI〉 • 아동, 장애인 등 총 10개 유형 시설장 40명 - 복지부 소관시설 26개 시설장 여가부 소관시설 14개 시설장 - 2024년 6월 15~28일 약 2주간 실시

제2절 시스템 기반 행정자료 조사

1. 시스템 기반 행정자료 분석 세부 개요

□ (개관) 인건비 준수율 분석과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환경 등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시스템 기반 행정자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행복e음시스템 2가지였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인사·급여·후원금·이력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 관리시스템을 말함

○ (행복e음 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교부금 정보와 관련된 행복 e음 시스템 자료는 인건비 교부금 신청·정산·결산 등 3가지이며, 이중 실태조사에서는 교부금 신청자료만을 활용하였음

-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료) 시설에서 지자체에게 종사자 인건비를 월/분기/년 단위로 신청한 내역으로 시설 단위의 정산 및 결산자료와 달리 종사자 개인별 직위·직종·호봉 자료가 제공되어 인건비 준수율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연구진은 판단함

○ (분석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시설현황·인사관리·급여관리 3개 정보와 행복e음 인건비 교부금 신청정보가 분리·관리되어, 4가지 정보가 시설-종사자별로 연계·통합된 분석자료 추출이 실태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음

□ (자료추출 과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의 데이터가 과거 실태조사 변수와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자료의 존재 여부와 데이터 통합 가능성, 그리고 데이터 추출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

○ (행정자료 존재 여부) 우선,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방법론을 검토, 기존 설문조사 시, 측정되었던 설문 항목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파악

○ (데이터 통합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시설 종사자들의 행정자료가 시설 현황, 교부금, 급여, 인사 등 총 4개 정보로 분산되어 있어, 추출 후 통합하는 방식을 적용

○ (작업반 구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부 실무진 3명과 담당 부서 차장, 그리고 시설 및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연구진 등 총 7명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작업반에 포함됨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

□ (배경) 우선 본 실태조사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기 전,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인사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인사·급여·후원금·이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 관리시스템으로서 현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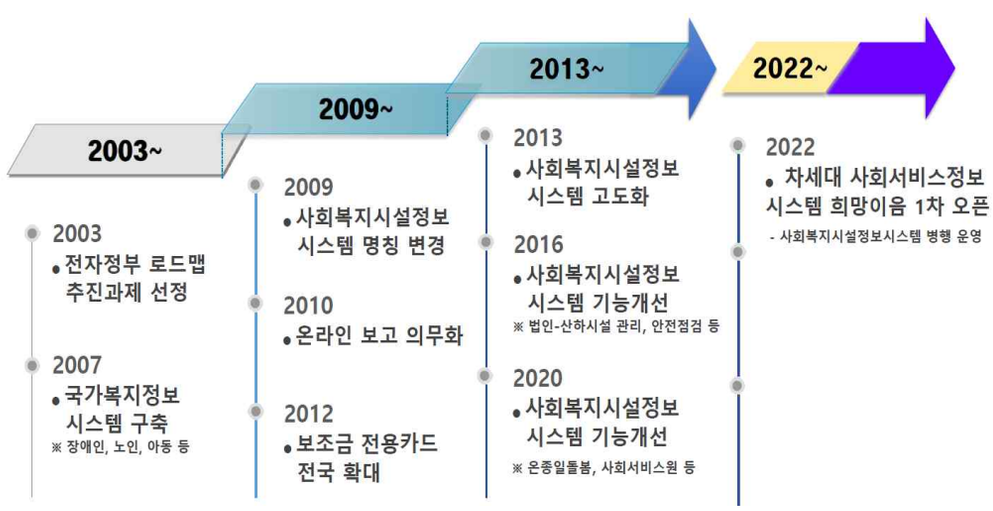
○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재가 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운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와 동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의 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에 의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음

○ (구축 역사) 2002년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제로 선정된 이후, 2010년 온라인 보고 의무화, 그리고 2013년부터 진행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총 3단계로 발전되어 왔음

〔그림 3-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역사



○ (구축 목적) 기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및 복지행정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복지 행정업무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복지의 정보화 요구 충족을 위해 구축되었음

- 복지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정책 역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 유형으로서 역할을 담당

- 사회복지 정보화란 복지서비스 제공 활동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축적·가공하여 생성된 정보의 전달 및 활용 가능한 제반 지식이나 메시지, 자료를 의미

〈표 3-1〉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 명	역할	주요기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 자격이나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지자체 복지 행정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함.	· 개인별·가구별 DB 구축, 중앙에서 통합 관리 · 대외 유관 기관과 공적 자료를 연계 ·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처리 지원 (상담, 신청, 수급자 선정, 결정,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	· 각 부처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 자격정보, 수급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범부처 업무처리 지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사업의 서비스 대상, 내용 등 복지사업 정보관리 · 복지 대상자의 중복, 부적정한 수급 사전 방지 · 범부처 복지사업 제공기관의 담당자 업무 처리를 지원
국민복지포털 (복지로)	·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서 복지제도 및 서비스 정보 제공 · 복지로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등 제공	· 복지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 ·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제공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 신청, 이용 등의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 지원	· 전자 바우처 이용자 및 제공인력 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카드 신규/재발급, 결제, 처리 결과 통보 등 · 사회서비스 예탁금 관리 등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의 표준화, 시설 회계 운영 투명화, 종사자 인사, 급여 등 업무 처리 지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별 회계, 인사, 후원금, 자산, 통합이력 등 관리 · 시군구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종사자 및 입소자 보고 등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의 시군구 온라인 보고, 후원 관리, 서비스 제공 관리를 통한 업무 처리 지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 서비스 제공 등 관리 · 행복e음으로 시군구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종사자 및 입소 보고 등
개인정보보호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	·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의심자를 대상으로 소명 요청, 답변, 판정 등 지원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사업, 복지서비스 등 업무 현황과 실적을 집계하고, 통계, 보고서 등 제공	· 주요 서비스에 대한 통계 제공 · 정형 및 비정형화된 통계 자료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 고위험 대상자 발굴 및 통계 모형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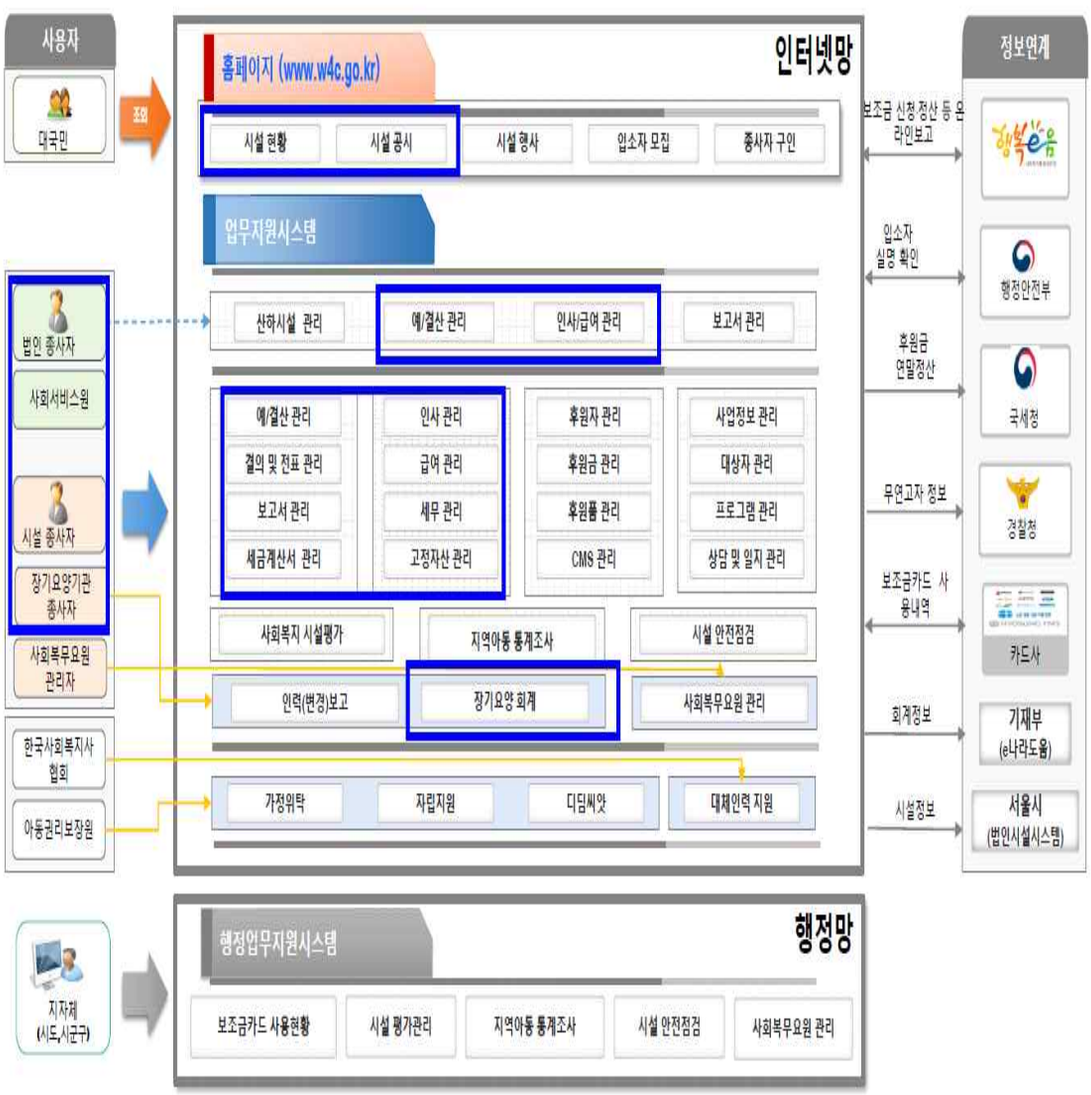
□ (시스템 구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정보, 업무지원시스템 인터넷망, 그리고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행정망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지원

○ (시설정보) 국민 대상으로 시설현황, 시설공시, 시설행사, 종사자 구인 등 정보 제공

○ (업무지원시스템) 법인과 시설 종사자에게는 크게 산하 시설관리, 예결산 관리, 인사급여 관리, 보고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

○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지자체 공무원에게 보조금 사용현황, 자립 지원, 지역 아동 통계조사, 시설 안전점검,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의 정보를 지원

[그림 3-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성도



〈표 3-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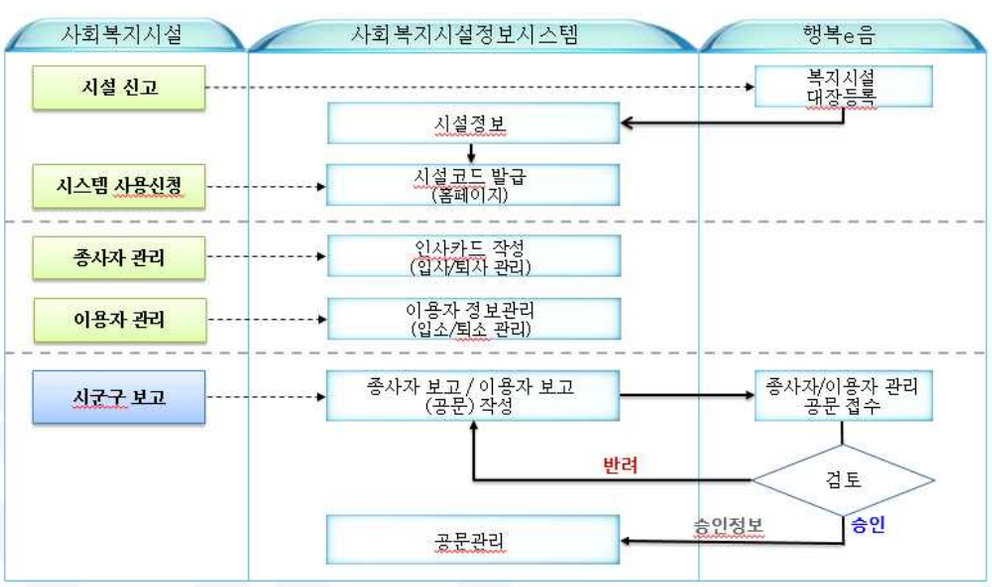
구분	기능
포털	• (대국민 대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소개, 복지시설 현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시자료(예·결산 등) 조회, 시설조회, 복지서비스 조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구인정보 조회 등 • (업무종사자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공지, 교육 일정 조회, 질의응답 및 시스템 개선사항 등록 등
회계관리	• 기관의 회계 기초등록 관리 • 기관 예산 및 결산 정보관리 • 수입/지출 결의관리, 전표 마감 관리 • 세무, 고정자산관리 • 각종 회계 장부 및 보고서 현황
인사급여관리	• 인사 기본정보관리, 인사카드 관리, 근태관리 • 급여관리, 세무관리 • 각종 인사, 급여 현황
공통관리, 장기요양인력 변경	• (공통관리) 시설 기본정보관리, 사용자 관리, 인허가번호관리 • (장기요양인력 변경) 장기요양기관 기본정보관리, 인력변경관리

□ (종사자 정보관리) 사회복지시설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2가지 정보시스템이 시설 자체 종사자 관리와 시군구 보고, 2가지 차원에서 종사자 정보관리를 담당

○ (자체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매월 입사 또는 퇴사하는 종사자들의 관리를 인사카드 작성을 통해 관리

○ (시군구 보고 관리) 입소/퇴소 등 이용자 정보관리와 종사자 입사/퇴소 관리에 대해 보고 공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변동사항을 보고

[그림 3-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용자 관리



□ (인사관리) 종사자 결격사유 등 경력과 자격에 대한 정보관리와 종사자 보수교육, 그리고 기관의 자체 교육 등 교육 이수 관련 정보를 관리

○ (관리대상 종사자의 범위)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을 포함하여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 정부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는 관리대상이 되어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종사자 정보 내용) 성명 등 기본정보를 시작으로, 자격정보, 경력정보, 교육정보, 급여정보 등을 입력해야 함

□ (종사자 채용 지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종사자 채용 시, 채용 공고-채용심사 및 계약, 종사자 등록, 임면 보고 및 승인과정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지원

○ (특징)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입사희망자가 제출하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기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있는 경력환산율 표에 따라 경력산정 및 호봉이 책정

〈표 3-3〉 종사자 채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역할

절차	사회복지시설
1. 채용 공고	- 채용 주체: 설치, 운영자 - 시설 종사자는 공개 모집이 원칙 ※ 채용 관련 사항은 15일 이상 공고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관련된 서류 제출
↓	
2. 채용심사 및 계약	- 설치 운영자는 종사자가 관련 자격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를 심사하여 채용 결정 및 근로계약 체결
↓	
3. 종사자 등록 / 임면 보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종사자 정보를 입력 또는 갱신, -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확정 - 시군구에 임면 보고
↓	
4. 임면 확인(승인)	- 임면 확인 주체: 시군구청장 - 종사자 정보 및 자격 기준 등 검토하여 종사자 임면 승인

○ (종사자 경력관리) 채용 시, 경력관리는 입사희망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증 관리를 포함하여 진행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 등 지자체 담당자는 제공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확인한 종사자 임면 보고를 승인할 때, 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정보 및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직종의 자격·경력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표 3-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결격사유 조회

구분	주요 내용
① 개요	-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자, 시설장,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래 정보를 조회 · 「민법」에 따른 파산선고,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사실 · 범죄경력 정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아동 관련기관·노인 관련기관 운영·취업제한에 관한 정보 ·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포함된 행정처분 중인 정보
② 행안부 결격사유 조회	-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자, 시설장,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대상자의 등록기준지로 조회를 신청 - 결격사유 요청 시 근거 법령, 조회대상자, 조회 사유 등을 포함한 내부 결재 공문서를 첨부
③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 지자체 담당자의 조회 ·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할 경찰관서에 조회를 신청 · 범죄경력 요청 시, 근거 법령, 조회대상자, 조회 사유, 동의서 등을 포함한 내부 결재 공문서를 첨부

〈표 3-5〉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조회 구분	대상기관	조회대상	조회주기	동의서 제출 여부
법죄경력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종사자	수시	×
	바우처제공기관	제공자	수시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수시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수시	×
성범죄경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기관설치 시	○
		기관의 장,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연 1회 이상	×
성범죄경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기관설치 시	○
		기관의 장,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연 1회 이상	×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아동기관)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법인 입양기관	운영자	기관설치 시	○
		기관의 장,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연 1회 이상	×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노인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기관설치 시	○
		기관의 장,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연 1회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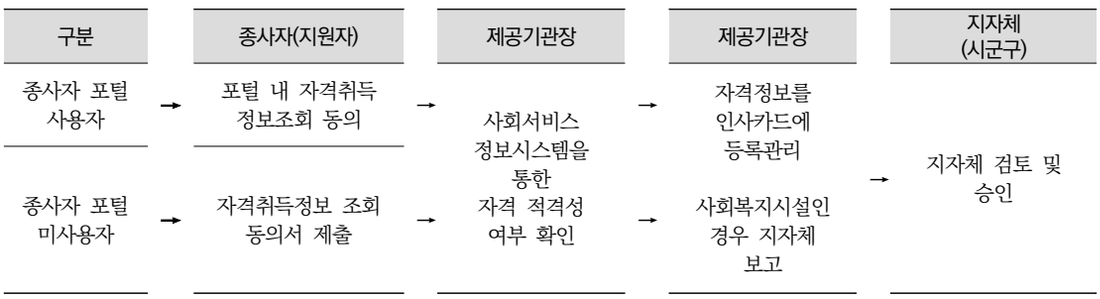
○ (종사자 자격관리) 기본적으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2가지 모두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자격의 적격성 확인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 (자격 확인) 국가기술자격 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며, 기타 자격은 자격과 관련된 증명서 사본 확인
- (자격의 적격성 확인) 입사자의 자격 취득정보 동의, 제공기관장의 자격 적합성 확인, 제공기관장의 자격정보 인사카드 등록,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검토 및 승인 등 총 4단계로 진행

〈표 3-6〉 종사자 자격관리

구분		관련법 및 관할기관	사회서비스 관련 자격 종류
국가자격	전문자격	- 개별법령/개별 시행기관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전문상담교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한국산업인력공단	- 임상심리사, 조리기능사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 「자격기본법」/개별시행기관	- 상담심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전문상담사,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등

[그림 3-5] 종사자 채용 절차 과정에서의 자격 적격성 확인



○ (종사자 경력관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임면보고, 기관근무, 퇴사 보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종사자의 경력정보를 갱신하고 관리

- (부담 경감) 과거 근무한 모든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 (경력증명서 발급)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이전 경력도 시설장이 확인,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하면 저장·관리되어 이직 시 경력증명서 발급 불필요
-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제대군인, 전환 복무, 소집 해제된 방위병, 학도의용군에 대해 실제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해당 경력이 3년이 넘는 경우, 3년까지만 인정

〈표 3-7〉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 경력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조건부 신고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조건부 시설로 신고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종사자로 근무했던 경력(2005.7.31까지 근무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유사경력	80%	-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 관련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돌봄 사업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사례관리사)으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

○ (종사자 급여 및 호봉관리) 종사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가능

〈표 3-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호봉관리

구분	인정대상 경력
급여지급 기능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기관은 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급여지급에 대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종사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 가입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상 기준에 따라 관리 ·단, 채무에 따른 압류 등의 사유로 종사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외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재무회계를 보고하는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종사자의 급여 지급내용을 보고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하여 권고기준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보수를 책정 -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국비 지원시설,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소관 시설이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가능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기 희망하는 경우, 자체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복지부 차세대 추진단으로 제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현재 지급되는 급여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이 가능 - 종사자 직종 및 직위 정보는 종사자가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설이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정보로 활용
호봉관리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에 대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 ·호봉 재획정 시점은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하되,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 ·최고 호봉의 기준은 31호봉을 초과할 수가 없음(원장·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승급관리	- 매달 1일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하되, 호봉의 승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간(승급 기간)이 1년을 경과 하였으며 현재 승급 제한 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호봉을 승급

□ (교부금 신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종사자 관리 이외에 행복e음과 연계하여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과 정산, 그리고 결산이 가능

○ (보조금 신청)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주기로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등 보조금을 시군구 지자체에 신청 가능

○ (보조금 정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주기로 회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보조금 정산이 가능

○ (보조금 결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차년도 3월 31일까지 공문과 결산총괄표외 보고서 보고를 통해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보고

□ (시군구 보고 주기)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부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 이외에 종사자 관련 입·퇴사와 호봉승급보고 정보는 발생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설정

〈표 3-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온라인 보고 현황

구분	제출서 유형		유형			보고 주기
			신청	변경	종결	
사회복지시설공통	보조금 교부신청		○			월/분기/반기/년
			○			월
	보조금 정산보고				○	월/분기/반기/년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			월/분기/반기/년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신고				○	월/분기/반기/년
	입소자 보고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		○	발생 즉시
		입소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		발생 즉시
		병원입퇴원보고	○		○	발생 즉시
	종사자 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		○	발생 즉시
		종사자 호봉승급보고		○		발생 즉시
	예산서		○			년
	추경예산서			○		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	년
	비정형 업무보고					수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보고		○		○	발생 즉시
지역자활	자활사업단 보고		○			수시
	자활사업단 운영보고			○		월
	집수리진행상태 보고				○	수시
장기요양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		발생 즉시
노숙인	노숙인 이용종료 보고				○	발생 즉시
법인	예산서		○			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	년
	사회복지사 입면보고		○		○	발생 즉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사회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계·폐지 신고서				○	

3. 시스템 기반 통계 데이터 구축

□ (개관) 본연구에서는 시스템 기반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행복e음 시스템 행정자료를 총 4단계 과정을 통해 9개 분야 15개 세부 과제를 검토한 후, 통합 데이터를 추출함

○ (추출과정)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시작으로 모집단 추정 → 정보추출 → 데이터 구축 등 총 4단계 과정을 순차적으로 추진

○ (장애요인) 총 9개 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 발생으로 총 15개의 장애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요인 발생 시, 전문가와 연구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함

〔그림 3-6〕 시스템 기반 통계데이터 구축 과정과 주요 장애요인

구분	주요 내용 및 장애요인	
사전 준비 (1단계)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의 실태조사 대체가능성 검토 1.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기존 실태조사 항목간 비교	
모집단 추정 (2단계)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및 종사자 규모 추정	
정보추출 (3단계)	3. 분석대상시설 추출	3.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미사용 시설 포함 여부 3.2 기존 실태조사 포함 사회복지시설 포함여부 3.3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포함 여부
	4.정책 변수 삽입	4.1 재원 출처 등 정책분류변수 포함여부
	5. 모집단 추출	5.1 모집단 시설 추출 및 종사자 분석규모 산출
	6. 교부금 정보 추출	6.1 시군구 직위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 매칭 6.2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대상 선정 6.3 월 인건비 교부금 산출을 위한 지급개월 산정 6.4 인건비 교부금 총합액 산정시 최종직위 결정 6.5 시설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측정기준 차별화
	7. 인건비 정보 추출	7.1 인건비 지급항목 비표준화 및 자료기입 오류 7.2 인건비 교부금과 실 인건비 지급액 비교 항목 선정
	8. 인사관련 정보 추출	8.1 시설 및 인사관련 정보의 미기입
데이터 구축 (4단계)	9. 시설 현황 등 4개 데이터 통계 분석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의 실태조사 대체 가능성

□ (목적) 과제 진행에 앞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자료가 기존 설문 방식의 실태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함

○ (검토 내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관련 항목들이 기존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와, 축적된 시설 및 종사자 수가 기존 실태조사 대상자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는지를 검토

○ (검토 결과) 기존 설문 항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 항목간에 중복가능성이 높고, 자료입력 시설과 종사자 수에서도 이번 실태조사가 기존 설문지 조사 방법보다 많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기로 결정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기존 실태조사 항목 간 비교

□ (시설장 조사항목) 기존 시설장 대상 설문 항목의 개수는 총 95개였으며, 그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추출 가능한 정보는 80개로 파악됨

○ (비교 항목) 시설현황 등 총 12개 범주로 구분 시, 설문조사 항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인사관리 입력 항목을 비교

○ (대체불가 항목) 시설안전사고(8개), 교육/훈련/경력개발(9개), 종사자 안전 실태 (7개) 등 총 24개 문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에서 자료가 부재

○ (세부 분석 가능 항목) 직무 현황 중 시간외근무 현황과 급여 지급항목 중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분석 가능한 것으로 파악

〈표 3-10〉 기존 시설장 대상 설문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 비교

시설장 조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분	조사항목	질문수	구분	질문수	비고
일반 사항	시설명, 운영주체, 시설소재지, 시설연락처, 건립 및 운영 형태, 시설유형, 시설 세부종류	7	시설정보관리	9	사업자 등록번호기부금 단체 여부 추가(2)
이용자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정원 및 현원, 이용시설 정원, 이용시설 이용자 실인원 수, 종사자 정원, 종사자 현원, 종사자 지위별 근로자 수, 당해연도 파견/이직/채용근로자 수, 당해연도 시설간 이동배치 종사자 수	9	주민등록번호 변경/인사카드/채용구분/종사자 변경이력조회	9	-
재무 현황	연간 총수입, 연간 총지출	2	세입/세출결산보고	2	-
종사자 인적 사항	생년월일, 성별, 직위 직종, 자격증, 근속 연월, 사회복지경력, 호봉, 최종학력	8	인사카드	9	채용방법 추가(1)
직무 현황	종사자 지위, 급여 형태, 주 근로일수, 주 근로시간, 사회보험	5	직무현황	10	주 시간외 근무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월 야간근무시간, 휴일 근무일 수, 월 출근근무일 수 등 추가(5)

시설장 조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분	조사항목	질문수	구분	질문수	비고
보수 수준	년 보수총액(세전), 년 기본급 총액, 년 수당 총액, 년 성과급 총액, 총인건비 예산 출처 구성, 최근 3년간 기본급 인상율, 호봉제 실시여부, 종사자 직위/직종별 기본급 체계, 호봉산정시 경력 반영, 법정 및 비법정 근로수당, 수당의 재원출처, 보수체계 문제점, 보수수준 및 지급방식 문제, 보수기준표 기준	14	보수 수준	27	최근 3년간 기본급 인상율, 보수체계문제점, 보수 수준 및 지급방식 문제 등 3개 부재, 급여형태, 월평균 보수액, 기준소득월액, 월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고용(산재)보험대상여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금 처리유형, 소득세/주민세, 식대, 직위수당, 기술수당 등 16개 추가
근로계약, 퇴직금 및 휴가, 승진	취업규칙 유무,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매년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변경서) 작성여부, 퇴직금 지급 방식, 연차유급휴가부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정도 및 미사용 이유,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지원 현황 및 미지급 이유 법정휴가제도 실시, 복리후생제도, 내부 승진 규정 유무, 최근 3년간 승진 인원수, 직급/직위별 승진 소요 기간	12	근로계약, 퇴직금 및 휴가, 승진	6	취업규칙 유무,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매년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변경서) 작성여부,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지원 현황 및 미지급 이유, 복리후생제도 내부 승진규정 유무 등 6개 부재
시간외근무	시간외 근무별 수당 지급여부, 시간외근무별 근무수당 지급방식, 임신 중인 여성 시간외근무 금지/제한 여부,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시간외근무 금지/제한 여부	4	시간외근무	2	임신 중인 여성 시간외근무 금지/제한 여부,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시간외근무 금지/제한 여부 등 2개 부재
시설안전사고 실태	안전사고 발생유무 및 빈도, 안전사고 발생유형, 안전관리인력 지정/선임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지침 여부, 대책위원회 및 비상연락체계 명시 여부, 최근 1년간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실시 및 여부, 안전상태 및 관리정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과제	8	시설안전사고 실태	0	시설안전사고 실태 8개 조사항목 모두 부재
교대제 근무	교대근무제 명시 시설 여부, 교대근무제 실시, 교대제 근무 형태, 주1일 유급휴일 부여여부, 교대제 근무 형태 문제점, 4조 3교대 도입 필요성, 4조 3교대 도입을 위한 시급한 해결과제, 4조3교대 도입이 필요 없는 이유	8	교대제 근무	4	교대제 근무 형태 문제점, 4조 3교대 도입 필요성, 4조 3교대 도입을 위한 시급한 해결과제,4조3교대 도입이 필요 없는 이유 등 4개 부재
교육/훈련/경력개발	직원교육을 위한 규정/지침 마련 여부,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종사자 유무,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현황(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이수자,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 미이수 이유, 복무처리 상황, 교육비용 지원여부, 인사고과 반영정도, 교육 관련 개선과제,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여부, 경력개발 프로그램 유형 경력개발프로그램 필요도	11	교육/훈련/ 경력개발	2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종사자 유무,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현황(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이수자, 교육장소, 교육방법) 외 6개 조사항목 부재
종사자 안전 실태	인권 보장정도, 인권보호증진/처벌/해소를 위한 필요한 방법, 위험(폭력포함) 문제 대응 내부 규정/매뉴얼 유무, 최근 1년간 위험(폭력포함) 관련 교육실시 및 횟수, 위험(폭력포함) 관련 개선과제, 종사자 처우의 시급한 과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문제점 애로사항)	7	종사자 안전실태	0	7개 조사항목 모두 부재
소계		95		80	

□ (종사자 조사항목) 기존 종사자 대상 설문 항목 수는 총 68개였으나. 그중 시설장 조사항목과 중복된 설문 항목 수는 36개였으며, 차별적인 문항은 32개로 파악

○ (비교 항목) 9개 범주로 나누어 시설장과 종사자 설문조사 항목을 비교하여 중복되는 질문을 파악

○ (중복문항) 근로계약, 퇴직금 및 휴가·승진, 교대제 근무, 교육/훈련/경력개발 등 각 범주별 문항의 약 80% 이상이 중복문항으로 파악됨

-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설문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장 응답과 종사자 응답 간 차이를 비교하여 중복문항을 측정한 것으로 추정

○ (비 중복문항) 종사자 인권 관련 안전 실태의 경우, 특히 시설장 설문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가 적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2020년 실태조사의 경우 종사자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3-11〉 기존 시설장 조사와 종사자 조사항목 간 비교

종사자 조사			시설장 조사 중복문항	
구분	조사항목	질문수	조사항목	질문수
종사자 인적 사항	연령, 성별, 직위 직종, 자격증, 재직기간, 호봉, 최종학력, 결혼상태, 전공, 주요 업무내용	10	연령, 성별, 직위직종, 자격증, 재직기간, 호봉, 최종학력	7
직무 현황	고용형태, 주 근로일수, 주 근로시간, 주 1일 휴게시간, 주당 초과근무횟수 및 시간, 총 법정휴가일수 및 사용한 법정휴가일수, 입사이후 승진경험 의무	7	고용형태, 주 근로일수, 주 근로시간	3
근무환경 욕구	직업 항목별 만족도, 전반적인 직업만족도,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 방식, 이직의향 및 사유, 사용한 법정휴가제도, 희망하였으나 보장받지 못한 법정휴가제도 및 이유,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시행 적용을 희망하는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	8	-	0
보수 수준	보수체계 문제점, 적절한 보수 수준(월 평균), 보수의견(직무 및 업무강도, 다른 직군과의 비교), 공무원과 비교시 직위별 비교대상에 대한 동의정도, 공무원과 비교직급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	6	보수체계 문제점	1
근로계약, 퇴직금 및 휴가, 승진	승진 내부 규정 유무, 직급/직위별 승진소요기간	2	승진 내부 규정 유무, 직급/직위별 승진소요기간	2
시설안전 사고실태	안전사고 발생유무 및 빈도, 안전사고 발생유형, 최근 1년간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실시 및 여부, 안전상태 및 관리정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과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여부 및 인지도	6	안전사고 발생 유무 및 빈도, 안전사고 발생유형, 최근 1년간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실시 및 여부, 안전상태 및 관리정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과제	5
교대제 근무	교대근무제 실시, 교대제 근무형태, 주1일 유급휴일 부여여부, 교대제 근무형태 문제점, 4조 3교대 도입 필요성, 4조 3교대 도입을 위한 시급한 해결과제, 4조3교대 도입이 필요 없는 이유	7	교대근무제 실시, 교대제 근무형태, 주1일 유급휴일 부여여부, 교대제 근무형태 문제점, 4조 3교대 도입 필요성, 4조 3교대 도입을 위한 시급한 해결과제, 4조3교대 도입이 필요 없는 이유	7

종사자 조사			시설장 조사 중복문항	
구분	조사항목	질문 수	조사항목	질문 수
교육/훈련/ 경력개발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종사자 유무,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현황(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이수자,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 미이수 이유, 인사고과 반영정도, 교육 관련 개선과제,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여부, 경력개발 프로그램 유형, 경력개발 프로그램 필요도, 최근 2년간 이수한 직무 필수교육 정도 및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직무선택시교육 이수 경로	10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종사자 유무,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현황(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이수자,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 미이수 이유, 인사고과 반영정도, 교육 관련 개선과제,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여부, 경력개발 프로그램 유형, 경력개발프로그램 필요도	8
종사자 안전 실태	인권 보장정도, 인권보호증진/처벌/해소를 위한 필요한 방법, 최근 1년간 위험(폭력포함) 관련 교육 실시 및 횟수, 보장받지 못한 인권 내용, 최근 1년간 교육받은 장소, 인권교육 필요도, 근무시설에서의 위험(폭력포함) 경험정도 및 유형, 최근 3년간 폭력 피해경험 유무 및 유형, 폭력가해자, 폭력피해대처방식 폭력피해 사후관리, 시설내 폭력 대응 방법	12	인권 보장정도, 인권보호증진/처벌/해소를 위한 필요한 방법, 최근 1년간 위험(폭력포함) 관련 교육 실시 및 횟수	3
소계	-	68	-	36

□ (자료수집 방법 잠정 결정) 이번 실태조사 자료수집 방법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대상 설문조사 대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결정함

○ (기존 자료수집) 시설장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에 직접 접촉하여 필요한 정확한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존재

- (단점) 모집단 규모가 큰 경우, 샘플링 시설이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표본오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시설확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됨

○ (자료수집 변경)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비용 절감과 조사자료의 현행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자료항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실태조사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자료를 이용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

- (누락 정보) 기존 시설장 조사에서는 존재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획득 불가능한 조사 문항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포함해 조사
- (종사자 대상 조사) 기존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이었던 종사자 조사 문항 68개 중 36개 문항이 중복인 것으로 나타나,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시설장 조사항목 중 파악이 불가능 15개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하기로 잠정 결정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및 종사자 규모 사전 추정

□ (분석 가능 시설 및 종사자 규모) 기존 실태조사 대비 분석 가능한 시설과 종사자 규모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자료가 약 3~6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

○ (2017년 실태조사) 조사 대상시설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제외한 모집단 18,541개의 약 9%인 1,667개였으며, 종사자는 16,059명이 분석 대상이었음

○ (2020년 실태조사) 시설 19,356개의 약 7%인 1,362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약 14,872명의 종사자 실태조사가 진행됨

〈표 3-12〉 기존 실태조사 대상 규모 대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분석 규모 사전 비교

(단위: 개, 명, %)

2017(설문조사)			2020(설문조사)			2022(행정자료)		
모집단 시설 수	표본시설 수 (샘플비율)	분석 가능 종사자 수	모집단 시설 수 (샘플비율)	표본시설 수 (샘플 비율)	분석 가능 종사자 수	모집단 시설 수 (샘플비율)	표본시설 수 (샘플 비율)	분석 가능 최소 종사자 수
18,541	1,667 (9)	16,059	19,356	1,362 (7)	14,872	14,431	4,363 (30.2)	13,089

주: 2022년 행정자료는 2023년 2월,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자료, 10월 본 분석 시, 조사 샘플 수가 4,739개 소로 중가

○ (2023년 실태 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2024년 2월, 2022년 기준, 종사자 관련 급여 및 인사 관련 자료를 협조받은 결과, 분석 가능한 시설 규모는 약 4,363개로 추정됨

- (등록시설 수) 2023년 사회복지시설 중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장기재가요양시설 등을 제외 시, 조사 모집단 시설 수는 14,431개로 추정
- (인사급여 정보입력 시설 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율 30.2%를 적용 시 4,363개
  ·(복지부 시설) 총 20개 사회복지시설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률은 31.4%
  ·(여가부 시설) 총 8개 사회복지시설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률은 17.4%
- (종사자 수) 4,363개로 추정되는 정보입력 시설당 최소 3명의 종사자가 존재할 경우, 최소 분석 가능 종사자 수는 13,089명으로 추정되었음
  ·(기존 종사자 규모 대비) 추정된 종사자 규모 13,089명은 기존 실태조사 규모 16,059명('17)과 14,872명('20) 대비 약 1,800~3,000명이 부족
  ·(입력 부재 기관) 다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자료 분석에 있어 우려된 문제는 복합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4개 시설유형에서 정보시스템 입력률이 0%이었다는 점

〈표 3-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시설 중 인사-급여 정보입력율(2022년 말 기준)

(단위: 개, %)

구분	등록 시설 수	인사 급여 정보입력 시설 수-사전 검토	입력비율
	(A)	(B)	(B/A)
합계	14,431	4,363	30.2
복지부 소관시설	13,221	4,153	31.4
결핵한센시설	6	5	83.3
노숙인생활시설	107	57	53.3
노숙인이용시설	37	18	43.9
부랑노숙인복지시설	4		0.0
노인보호전문기관	42	25	59.5
노인여가복지시설	523	266	50.9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11	93	44.1
노인주거복지시설	365	78	21.4
복합노인복지시설	21	0	0.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6	0	0.0
아동복지시설	6,528	1,011	15.5
일반사회복지시설	502	319	63.5
장애인거주시설	1,594	892	56.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9	7	36.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0	5	25.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709	741	4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1	384	47.3
재활시설	266	100	37.6
정신요양시설	61	44	72.1
정신재활시설	379	108	28.5
여가부 소관시설	1,209	210	17.4
청소년복지시설	158	14	8.9
한부모가족시설	135	58	43.0
다문화가족복지시설	225	57	25.3
가족폭력피해보호시설	334	45	13.5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02	14	13.7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4	17	7.9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0	0.0
통합상담소	41	5	12.2

주: 2022년 행정자료는 2023년 2월,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자료, 이후 10월 본 분석 시, 샘플 수가 4,739개 소로 증가

□ (보완 방향) 정보입력률이 낮은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지속 여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

○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법 개정 또는 제도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본 분석 시, 정보입력률이 낮은 시설유형에 대해서는 시설장 개별 연락과 시설장 FGI 시 협회 홍보 등을 통해 행정자료를 확보하기로 결정

3. 시스템 기반 분석 대상시설 추출기준 설정

□ (개관) 행정자료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연구에서는 모집단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미사용시설, 장기재가요양시설 및 어린이집은 제외하되,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포함하였음

○ (분석시설 포함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미사용 시설과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분석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미사용 시설 포함 여부

□ (장애요인) 모집단 설정에 있어 급여-인사정보 미사용 사회복지시설을 이번 실태분석 모집단에 포함해야 할지에 관한 여부를 논의

○ (모집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보한 2022년 말 기준, 사회복지시설 수는 총 32,513개였음

- (사회복지시설정보 미활용기관의 포함 여부) 총 32,513개의 시설 중 이번 실태조사의 분석 대상시설을 인사-급여정보 입력시설로 한정할 경우, 분석시설이 전체 사회복지시설 모집단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
- (사회복지시설정보 인사-급여 입력률) 〈표 4-12〉처럼 총 14,431개 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시정) 기반 인사-급여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설들의 시스템 입력률은 전체 30.2%에 해당하는 4,363개였음
- (사회복지시설 제외시설 포함)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휴양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등 현재 사회복지시설 제외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 (기타 필요 분석 정보) 한편, 자체 인사-급여정보 외에 각 운영법인이 정부에게 요청하는 시설인력의 행복e음 인건비 교부금 정보 등도 필요

- (교부금 정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업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설들은 각 지자체에 요구하는 종사자 인건비 교부금 신청 시, 인사카드를 사시정에 등록해 사용 중

□ (해결방안) 급여-인사 정보시스템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 교부금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이 93.1%로 나타나, 이를 반영해 모집단을 규정

○ (모집단 정의) 총 32,513개 등록시설 중, 인사-급여정보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교부금을 신청하는 시설도 모집단에 포함하기로 결정

- (소관 시설별 이용률) 본 분석에 앞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총 32,513개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시설은 93.7%, 여성

가족부 시설은 82.1%로 사회복지시설의 교부금 신청정보 등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판단

〈표 3-14〉 2022년 말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용		미사용	
				빈도	빈도	%	빈도	%
전체				32,513	30,260	93.1	2,253	6.9
보건복지부	합계			30,991	29,047	93.7	1,944	6.3
	노숙인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24	22	91.7	2	8.3
			노숙인자활시설	50	50	100.0		
			노숙인재활시설	34	34	100.0		
		노숙인이용시설	노숙인급식시설	4	4	100.0		
			노숙인일시보호시설	9	8	88.9	1	11.1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3	13	100.0		
			노숙인진료시설	3	1	33.3	2	66.7
			쪽방상담소	11	11	100.0		
	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41	35	85.4	6	14.6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교실	1,216	61	5.0	1,155	95.0
			노인복지관	442	423	95.7	19	4.3
			노인휴양소	8	1	12.5	7	87.5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55	1,844	99.4	11	0.6
			노인요양시설	4,618	4,595	99.5	23	0.5
			노인전문병원	1	1	10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16	211	97.7	5	2.3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93	90	96.8	3	3.2
			노인복지주택	38	34	89.5	4	10.5
			양로시설	184	182	98.9	2	1.1
		복합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11	8	72.7	3	27.3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10,251	9,791	95.5	460	4.5
	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14	10	71.4	4	28.6
			공동생활가정	661	661	100.0		
			다함께돌봄센터	987	983	99.6	4	0.4
			아동보호치료시설	12	12	100.0		
			아동복지관	1	1	100.0		
			아동상담소	21	18	85.7	3	14.3
			아동양육시설	243	243	100.0		
			아동일시보호시설	22	20	90.9	2	9.1
			아동전용시설	14	12	85.7	2	14.3
			아동종합시설	4	4	100.0		
			자립지원시설	18	17	94.4	1	5.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70	66	94.3	4	5.7
			지역아동센터	4,364	4,359	99.9	5	0.1
	일반	일반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490	484	98.8	6	1.2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9	100.0		
			장애유형별거주시설	361	361	10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764	762	99.7	2	0.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69	169	100.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51	250	99.6	1	0.4
			지적장애인시설	1	1	100.0		
			피해장애인쉼터	20	15	75.0	5	25.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9	18	94.7	1	5.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9	19	100.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한국수어 통역센터	208	207	99.5	1	0.5
			장애인복지관	272	260	95.6	12	4.4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68	166	98.8	2	1.2
			장애인수련시설	1	1	100.0		
			장애인재활치료시설	236	76	32.2	160	67.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47	845	99.8	2	0.2
			장애인체육시설	30	28	93.3	2	6.7
			점자도서관	25	23	92.0	2	8.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2	12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69	69	100.0		
			장애인보호작업장	705	702	99.6	3	0.4

구분				전체	사용		미사용	
				빈도	빈도	%	빈도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40	40	100.0		
	저소득	자활시설	지역자활센터	260	257	98.8	3	1.2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기관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20	13	65.0	7	35.0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60	59	98.3	1	1.7
		정신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1	1	100.0		
			생활시설	19	19	100.0		
			재활훈련시설-공동생활가정	210	205	97.6	5	2.4
			재활훈련시설-공동생활가정(구)	3	3	100.0		
			재활훈련시설-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1	11	100.0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	82	82	100.0		
			재활훈련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	4	4	100.0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17	17	100.0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구)	2	2	100.0		
			정신질환자주거시설(구)	1	1	100.0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구)	10	9	90.0	1	10.0
			종합시설	18	18	100.0		
			중독자재활시설	4	4	100.0		
여성가족부	합계			1,387	1,139	82.1	248	17.9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6	221	97.8	5	2.2
	여성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190	172	90.5	18	9.5
			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102	15	14.7	87	85.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0	109	99.1	1	0.9
			긴급전화센터	6	5	83.3	1	16.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34	31	91.2	3	8.8
			외국인지원시설	1	1	100.0		
			일반지원시설	32	31	96.9	1	3.1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5	5	100.0		
			자활지원센터	13	13	100.0		
			청소년지원시설	14	14	10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95	15	15.8	80	84.2
			성폭력피해상담소	162	142	87.7	20	12.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7	36	97.3	1	2.7
		통합상담소	통합상담소	45	42	93.3	3	6.7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48	129	87.2	19	12.8
			청소년자립지원관	16	10	62.5	6	37.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1	20	95.2	1	4.8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2	2	100.0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42	42	100.0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형)	2	2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38	38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23	23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2	2	100.0		
			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	1	100.0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2	2	100.0		
			일시지원복지시설	9	9	10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9	7	77.8	2	22.2
질병관리청	합계			8	6	75.0	2	25.0
	결핵한센인	결핵한센시설	결핵요양시설	2	2	100.0		
			한센요양시설	3	3	100.0		
			한센인주거복지시설	3	1	33.3	2	66.7

나. 기존 실태조사 포함 사회복지시설 포함 여부

□ (장애요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전체 소분류 107개 시설유형을 모집단에 모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이 필요

○ (모집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수집된 2022년 말 기준, 사회복지시설은 3개 소관 부처, 대분류 12개, 중분류 28개, 소분류 107개 유형으로 분류됨

○ (제외유형 1)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시스템 기반 인사급여 및 교부금 정보를 이용하여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종사자별로 측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기본급 미지급 시설유형 제외) 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임금지급 기준이 기본급이 아닌 수가에 의해 연동된 시급제 적용 시설유형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제외유형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최근에 사회복지시설로써 위상이 제외된 시설 또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제외유형 3) 법령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규모가 매우 적어 분석내용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도 제외하기로 결정

○ (검토) 연구진이 총 107개 소분류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 후, 복지부 담당 사업과 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되어야 할 소분류시설을 추출함

□ (해결 방향) 총 107개 소분류 시설유형 중 총 22개 유형을 조사 분석 대상에서 제외

○ (분석대상 시설유형) 총 2개 부처, 12개 대분류-29개 중분류-85개 소분류시설로 결정

- (재가요양시설 제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합시설 등 수가에 의해 인건비가 연동되는 재가요양시설 유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제외)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통합상담소 등 법령 근거가 없는 시설은 제외
- (법령개정) 노인휴양소(「노인복지법」 개정), 아동복지관(「아동복지법」 개정) 등 관련법률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위상을 상실한 경우 제외
- (기존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노인전문병원,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종합시설, 정신건강복지광역센터, 정신건강복지기초센터,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등 기존 실태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시설도 제외
-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수가 적은 노숙인 급식 시설, 노숙인 진료 시설, 노인 교실 등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시정 인사급여지급시스템 입력률 제외시설) 모집단 추정과정에서 사시정 입사급여시스템 입력률이 0%였던 부랑노숙인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여성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등 4개 시설유형은 조사 대상시설에서 제외

〈표 3-15〉 사회복지시설 중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근거

소분류 사회복지시설 유형	법률 근거	기존 조사 포함 여부	최종 사회복지시설 여부	분석 대상 제외 근거
노숙인급식시설	O	X	X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그 수가 적음
노숙인진료시설	O	X	X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그 수가 적음
노인교실	O	X	X	종사자 현황 파악 시 제외되는 시설로 사시정에 1,211개소 등록 대부분 미사용,
노인휴양소	X	X	X	「노인복지법」 제31조 개정으로 삭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O	O	X	장기요양기관으로 실태조사 대상이 아님
노인요양시설	O	O	X	
노인전문병원	X	X	X	「노인복지법」상 규정 없음, 20년 실태조사시에도 없는 유형
복합노인복지시설	O	X	X	20년 실태조사시에도 없는 유형
재가노인복지시설	O	X	X	장기요양기관으로 실태조사 대상이 아님
아동복지관	X	X	X	「아동복지법」 제16조 개정으로 삭제
아동종합시설	X	X	X	「아동복지법」상 규정 없음, 20년 실태조사에도 없는 유형
지적장애인시설	X	X	X	지적장애인 시설은 정식 시설유형 명칭이 아니며, 장애유형에 따른 시설 분류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O	X	X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별도 분류.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정신건강복지 광역센터	O	X	X	실태조사 제외 기관임
정신건강복지 기초센터	O	X	X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O	X	X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구)	X	X	X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삭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구)	X	X	X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명칭 변경
정신질환종합시설	X	X	X	
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X	X	X	법령 근거 없음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X	X	X	법령 근거 없음
통합상담소	X	X	X	별도 법령 없음

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률이 낮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포함 여부

□ (장애요인)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급여 입력률이 17.4%로 낮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여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

○ (급여정보 입력률) 2022년 말 기준,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1,210개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정보 입력률은 17.4%인 210개인 것으로 파악(〈표 1-5〉 참조)

○ (여성가족부와 협의)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실태조사에서 여가부 시설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

- (행정차원에서 입력율이 낮은 이유) 여가부 소관 시설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아닌 e-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금을 신청하도록 지침화
- (시설차원에서 입력율이 낮은 이유) 일부 여성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사 및 급여 정보사용은 입소자 및 종사자 개인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존재해 미사용

○ (시설장 간담회 필요) 사용률이 낮은 시설 협의회 임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타진하여 결정

- (시설장 간담회 개최) 2023년 6월 22~23일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시설장 및 단체장 24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표 3-16〉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현황 관련 간담회 현황

유형	대상	참석자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단체장	-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시설장	- *** 구세군 정다운집 센터 - *** 희망터 센터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단체장	- ***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보호시설협의회 - *** 전국성폭력피해보호시설협의회
	시설장	- *** 청주 모퉁잇돌 센터 - ***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단체장	- ***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 *** 전체이주여성쉼터협의회 -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의회 -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 남양주 한마음가족상담소
	시설장	- *** 1366인천시센터 - *** 햇살나무 센터 - *** 누리봄 센터
청소년 시설	단체장	- ***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시설장	- *** 서울시립 청소년자립지원관 - *** 꽃마리회복지원시설 - *** 의정부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건가다 센터	단체장	- *** 용인시 가족센터 - *** 수원시 가족센터 - *** 인천시 부평구 다가센터 - *** 용산구 가족센터장

□ (해결 방안) 단체장 및 기관장 간담회 결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 (간담회 대상)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족다문화센터 등 총 5개 시설유형, 총 20명의 시설장 및 협회 관련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낮은 입력률 원인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

○ (간담회 내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적극적인 이용 독려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 입소자의 개인신상 공개 시, 입소자에 대한 보호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시설 차원에서 부재하기 때문으로 설명

- (종사자 정보입력) 이번 실태조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관련된 정책개발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종사자 정보입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

○ (간담회 결과) 시설정보 중 종사자 정보입력과 여성가족부 담당과의 공문 발송을 전제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협조

- (종사자 설문 방법 변경) 종사자 대상 웹조사의 경우, 종사자들의 별도 응답 시간을 요구함으로 엑셀 표 등을 이용, 시설에서 응답하도록 변경을 요구

·(연구진 의견) 시설장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시설장 의견을 배제한 처우 관련 수요조사로써 시설장 지시에 의한 조사 참여는 불가능함을 피력

- (공문 발송 시 요청 상황) 실태조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라는 점을 공문 내용에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

〈표 3-17〉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단체장 및 기관장 간담회 내용

대분류	주요 내용
사시정 활용 여부	- 현재 사시정을 회계 관리 및 교부금 신청대상으로 사용, 그러나 급여대장 작성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등을 사용 - 수혜자 정보 유출 등 비공개 시설로 인해 사용 안한 것이 사실이나 금번 실태조사를 위해 종사자 정보 입력요청 시 협조 가능 - 그동안 사시정 사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은 수혜자 정보 유출로 인한 우려 때문이지 종사자 정보 노출 때문은 아님 - 여가부 시설은 대부분 e-나라 시스템으로 사용(건가다, 청소년) - 시스템 복잡성과 평가시기 중복으로 엑셀 자료 설문 방식을 요청(건가다)하였으나 본조사의 취지를 고려 시 어려울 것으로 설명
협조내용	- 7월 중순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정보입력 시 필요한 내용을 매뉴얼화하여 공문과 같이 전국시설에 유포해 줄 것을 요구 - 공문 발송 시 본 실태조사의 특징 즉, 시설장 설문조사 대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실시간 파악, 연간 급여예산 내용 확보 등의 이점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
입력시 주의사항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아 호봉적용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 - 직위, 직종, 직급에 대해 회계담당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요구 - 지자체별로 호봉제 적용이 차별적인 상황인데, 최근 충남, 경남, 서울, 대구, 인천 등지에서 여성인권시설에 호봉제가 적용되어 운영 중

4. 정책 변수 삽입

□ (장애요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에 정책분석과 관련된 시설 관련 변수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변수) 시설 관련 정보를 총 15개 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3-18〉과 같음

- (일반 현황 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 여부와 시설명, 시설 분류, 인허가 번호, 전화 연락처 등 일반적인 시설현황과 관련된 변수로 구성
- (실태조사 관련 변수 추가) 이외 시설 특성과 관련된 시설 운영 주체, 생활 및 이용시설 여부, 입소자 정원수 등 변수를 제출받음

〈표 3-1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시설 관련 정보 항목

SASI	COMP	NAME	LARG	MEDI	SMAL	PENO	ESDAY
사시정 사용 여부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 대분류	시설 중분류	시설 소분류	인허가 번호	설립 일자
SGG_CD	CITY	GUN	TEL1	TEL2	BUNO	EMAIL	
SGG_ 기관근무자 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전화 번호_1	시설전화 번호_2	사업자 번호	메일주소	

○ (추가 실태조사 관련 정책변수 삽입) 시설들의 소관 부처와 재원 원천인 국고지원 및 지방이양시설 여부 등에 관한 정보 등은 부재

- (필요 정책변수)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임으로 인건비 재원 원천 여부와 소관 부처 등에 대한 변수 삽입이 필요

□ (해결 방안) 복지부 담당과로부터 83개 소분류시설의 국고지원시설 여부와 소관 부처를 확인받아 시설유형에 맞추어 삽입

○ (국고지원시설 여부 포함)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시설은 재정이 국고지원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정보 최신화가 필요함

○ (재정지원 변수 삽입)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파악한 결과 총 83개 소분류시설 중 국고지원시설은 40개, 지방이양시설은 43개로 파악

- (복지부 소관시설) 전체 55개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공동생활가정,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2개 시설유형이 국고지원시설이었음

- (여가부 소관시설) 전체 25개 중 25개 시설유형 모두가 국고지원시설이었음
- (질병관리청) 전체 3개 시설 모두가 국고지원시설이었고, 이후 분석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분석

〈표 3-19〉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원천에 따른 시설 분류

구분				재정원천
보건복지부	노숙인등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지방이양
			노숙인자활시설	지방이양
			노숙인재활시설	지방이양
		노숙인이용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지방이양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방이양
			쪽방상담소	지방이양
	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고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지방이양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방이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지방이양
			노인복지주택	지방이양
			양로시설	지방이양
	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지방이양
			공동생활가정	국고지원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지방이양
			아동상담소	지방이양
			아동양육시설	지방이양
			아동일시보호시설	지방이양
			아동전용시설	지방이양
			자립지원시설	지방이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고지원
			지역아동센터	국고지원
	일반	일반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방이양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국고지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국고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방이양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방이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국고지원
			피해장애인쉼터	국고지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국고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지방이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한국수어 통역센터	지방이양
			장애인복지관	지방이양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방이양
			장애인수련시설	지방이양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지방이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방이양
			장애인체육시설	지방이양
			점자도서관	지방이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지방이양
			장애인보호작업장	지방이양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지방이양
	저소득	자활시설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정신보건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국고지원
		정신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지방이양
			생활시설	지방이양
			재활훈련시설-공동생활가정	지방이양

구분				재정원천
			재활훈련시설-공동생활가정(구)	지방이양
			재활훈련시설-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지방이양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	지방이양
			재활훈련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	지방이양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지방이양
			정신질환자주거시설(구)	지방이양
			중독자재활시설	지방이양
여성가족부	다문화	다문화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여성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국고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고지원
			긴급전화센터	국고지원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국고지원
			외국인지원시설	국고지원
			일반지원시설	국고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국고지원
			자활지원센터	국고지원
			청소년지원시설	국고지원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국고지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고지원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국고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국고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국고지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국고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국고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형)	국고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국고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국고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국고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국고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국고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국고지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국고지원
질병관리청	결핵한센인	결핵한센시설	결핵요양시설	국고지원
			한센요양시설	국고지원
			한센인주거복지시설	국고지원

5. 데이터 통합을 통한 분석 대상시설 및 종사자 추출

□ (개요) 데이터 통합을 통해 모집단 14,131개 중 시설은 4,739개, 종사자 근로환경은 4,739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69,313명을, 그리고 종사자 보수 수준에서는 69,313명 중 기본급이 부재한 종사자 11,792명을 제외한 55,432명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

○ (준수율 분석) 인건비 교부금 신청 내용이 존재하는 11,315개 시설의 종사자 70,649명을 전수 분석한 후, 현 지방이양시설 준수율 측정 방법 적용에서는 4,813명을 분석

□ (장애요인)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정보, 교부금 정보, 급여 지급정보, 인사정보로 운영되어 〈표 3-21〉과 같이 시설과 종사자 수를 산출

○ (시설현황시스템) 2022년 12월 기준 총 등록시설은 32,513개이나, 시설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입력률이 약 30%에 불과하고, 누락 정보가 많아 전체 종사자 수 파악은 불가

○ (모집단 시설) 총 32,513개 등록시설 중 이번 실태조사에서 법률 개정 등으로 제외하기로 한 22개 사회복지시설 유형들을 고려 시. 모집단 시설 수는 14,131개로 추출

○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 2022년 1년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인건비 교부금을 신청한 시설은 13,038개였고, 모집단 14,131개 중 동일시설은 총 11,315개였음

○ (사회복지시설 급여정보 입력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과 공제 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정보 시스템 입력시설은 6,324개였으며, 이중 중복시설 제외 시 4,739개였음

○ (사회복지시설 인사정보 입력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인사정보시스템 입력시설은 전체 5,918개였으며, 이중 중복시설 제외 시 4,739개였음

○ (교부금-급여정보 입력시설) 총 4,739개 시설 중 022년 1년 동안 교부금 신청을 한 11,315개 시설 중 사시정 급여정보입력이 존재하는 시설은 4,739개로 파악

〈표 3-2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제공 시설 및 종사자 원자료 및 분석가능 수

(단위: 개, 명)

구분	시설 수		종사자 수
	원자료	분석가능 시설 수 (중복제외)	분석가능 수
1단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시설 수	32,513	-	-
2단계: 모집단 수(재가요양기관 등 유형 제외)	14,131	14,131	-
3단계: 인건비 교부금 신청 수	13,038	11,315	92,845
4단계: 시설정보시스템 급여정보 입력 수	6,324	4,739	107,523
5단계: 시설정보시스템 인사정보 입력 수	5,918	4,739	102,017

□ (의사결정 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시설코드와 종사자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인 모집단-인건비 교부금 신청 시설-급여정보 입력 시설-인사정보입력 시설

을 연계한 통합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분석데이터로 활용

○ (연계) 4개로 분류된 시설별 종사자의 교부금-급여-인사현황을 시설과 연계하기 위해 시설 및 종사자 코드를 이용하여 연계시설 및 종사자 수를 산정

○ (1차 분석대상 종사자 추출) 모집단으로 추정되는 시설 수는 14,131개이지만 1차 인사 및 급여정보 분석이 가능한 시설은 4,739개, 종사자 수는 69,313명으로 파악

- (분석 대상 종사자 1) 인사-급여 연계정보의 종사자 69,313명에는 교부금 직위 정보가 존재하는 종사자가 46,323명이 존재해 분석대상으로 포함
- (분석 대상 종사자 2) 인사-급여 연계정보의 종사자 총 69,313명 중 22,990명은 교부금 신청 직위 정보가 부재하였지만, 시설에서 자체 입력된 직위, 직종, 직급, 호봉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대상으로 포함
- (분석 대상 종사자 3) 총 인사-급여 정보 입력 종사자 총 69,313명 중 종사자 분석에서 제외가능성이 있는 기타 종사자(계약직, 사업단위 전담인력, 촉탁의사, 장애인 근로) 7,994명을 추출 후 분석포함 여부를 검토
- (분석 대상자 검토) 생활 및 이용시설의 기타 직종 종사자 제외시 인건비 분석의 정확성은 상승되지만, 사회복지시설 자체 고용인력 7,994명의 정보 상실이 클 것으로 판단

  ⇒ 준수율 측정에서 본 조사는 지방이양시설 측정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타 직종 종사자의 준수율 측정은 제외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최종 분석 대상 종사자) 인사-급여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설 및 종사자 수는 인사급여 정보에 수록된 4,739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총 69,313명을 대상으로 선정

〈표 3-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인사-급여정보 연계 종사자의 시설 직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생활시설 종사자	이용시설 종사자	총 종사자 수
전체	29,403	39,910	69,313
분석 적용 가능 종사자	28,903	32,416	61,319
분석 제외 가능 종사자	500	7,494	7,994
생활-기타	173		173
생활-기타(계약직)	11		11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316
이용-관리직 기타		790	790
이용-관리직(계약직)		35	35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3
이용-기타		5,008	5,008
이용-기타(계약직)		470	470
이용-기타(미기입)		886	886
이용-기타(보육교사)		44	44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208	208
이용-기타(촉탁의사)		9	9
이용-일반직 기타		31	31

○ (인사-급여-교부금 연계 분석 대상 종사자 추출) 총 4,739개 시설종사자 69,313명 중 실제 시설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지급-공제 금액)과 교부금 인건비 신청금액 간의 비교분석 등 인건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설을 추출

- 분석 결과 시설은 총 4,180개였고, 분석 가능한 종사자 수는 39,804명이었음

〈표 3-2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분석대상 연계 추출

<table>
<tr><th>1.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시설 수</th><th>2. 모집단 규정 (종사자 처우개선 수요파악을 위한 웹조사 등)</th><th>3. 교부금 신청 시설 및 종사자 수 (전체 개인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th><th>4. 인사-급여정보 입력시설 및 종사자 수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분석)</th><th>5: 인사-급여-교부금 입력 시설 및 종사자 수 (지방이양사설 준수율 측정방법 적용 준수율 측정)</th></tr>
<tr><td rowspan="4">시설: 32,513개</td><td rowspan="3">시설: 14,131개</td><td rowspan="2">시설: 11,315개, 종사자: 총 92,845명 중 중복 종사자 22,196명을 제외한 70,649명</td><td rowspan="2">시설: 4,739개, 인사정보 입력종사자 69,313명, 급여정보 입력종사자 67,054명(주 15시간 초단기 근로자 2,259명 제외)</td><td>시설: 4,180개, 종사자: 39,804명</td></tr>
<tr><td>교부금 신청 및 급여정보 입력시설 중 최저임금 미만, 기본급 부재 등 분석 불가능 시설 559개, 종사자 30,845명 제외</td></tr>
<tr><td colspan="2">교부금 신청 11,315개 중 인사-급여정보 미입력시설 6,576개 제외</td></tr>
<tr><td colspan="3">모집단 14,131개 중 2022년 인건비 교부금 미신청 시설 2,816개 제외</td></tr>
<tr><td colspan="4">전체 32,513개 시설 중 장기재가요양시설과 비사회복지시설 18,382개 제외</td></tr>
</table>

주: 분석대상군으로 추출된 시설 및 종사자 정보는 2022년 기준을 적용

○ (최종 분석자료 요약) 시설현황과 종사자 근로환경 분석에는 총 4,739개 시설, 69,313명을,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분석대상으로 결정

- (분석대상 선정이유) 교부금 비교 등 최종 연계분석 대상시설 4,180개 대신 인사/급여정보 연계시설 4,739개를 최종 분석 대상시설로 선정한 이유는 시설 종사자 중 교부금 이외에 법인적립금 등 기타 재원으로 고용된 종사자가 존재하기 때문
- (모집단 대비 분석 대상시설 수) 분석대상인 총 4,739개 사회복지시설은 모집단인 14,131개의 33.5%에 해당

  ·(인사-급여정보-교부금 연계분석 대상시설) 총 4,180개 시설은 모집단인 14,131개 대비 29.6%에 해당
- (원자료 대비 분석 종사자 수) 종사자 총 69,313명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인사정보 총수인 102,017명의 67.9%를 차지

  ·(인사급여-교부금 정보 연계분석 대상시설 및 종사자 수) 총 39,804명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인사 정보가 축적된 총 102,017명의 39.0%

6. 인건비 교부금 정보 추출

□ (개관)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의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을 위해 총 5가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

○ (분석데이터 선정 문제) 인사-지급 자료에서 총 6만 명의 직위 및 호봉 정보가 부정확한 상황에서, 인건비 교부금 신청정보에서는 총 30만 건의 시군구 직위와 호봉이 존재

○ (교부금 데이터 이원화 여부)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료가 개인별 통합금액이 아닌 개인별 개별건수로 추출되어 데이터 통합 또는 이원화에 대한 선택이 필요

- (신청 건수별 데이터) 직위·호봉에 따른 신청 건수별 분석이 바람직하나 종사자 시군구 직위가 비표준화되어 종사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가능성이 존재
- (개인별 통합 데이터) 직위 호봉이 변경된 종사자의 경우, 교부금 총액과 가이드라인 기본급간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가 존재

○ (인건비 준수율 측정 기반 마련) 앞서 언급한 분석데이터 종류 설정 이외에 다음과 같이 인건비 준수율 측정을 위한 3가지 부가적인 의사결정이 요구

가. 시군구 직위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 매칭

□ (장애요인) 교부금 신청 시, 75개로 파악된 시군구 직위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에 필요한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와의 매칭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

○ (직위 매칭) 교부금 직위 빈도분석 결과 75개 직위에 312,496건의 신청 건수가 존재하는 반면, 2022년도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존재하는 직위는 생활시설 29개, 이용시설 28개로 불일치한 것으로 파악

〈표 3-23〉 교부금 신청시 75개 시군구 직위와 인건비 신청 건수

(단위: 개)

시군구 직위 구분	복합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총합계
간병인	-	23	20	3
간호사	-	3,928	539	4,467
간호조무사	-	2,862	659	3,521
경비원	-	145	13	158
계약의사	-	473	12	485
과장	8	633	2,734	3,375
관리인	4	988	355	1,347
관리직	-	76	765	841
관장	3	105	2,126	2,234
근로기사	-	-	46	46
근로시설기사	-	-	85	85
노인일자리담당자	-	-	61	61
농통역사	-	-	366	366
대리	-	22	473	495
대표이사	-	1	6	7
돌봄선생님	-	-	2,544	2,544

시군구 직위 구분	복합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총합계
물리치료사	-	1,663	1,123	2,786
보안요원	-	36	-	36
보육교사	-	219	267	486
보육사	-	10,581	224	10,805
보조원	-	118	217	335
보행훈련사	-	61	-	61
부센터장	-	1	88	89
부장	-	69	1,023	1,092
사무국장	46	4,170	2,183	6,399
사무원	-	3,880	4,493	8,373
사무직	-	85	863	948
사회복지사	6	4,892	25,527	30,425
사회재활교사	1	4,024	3,731	7,756
상담요원	-	921	2,372	3,293
상담지도원	-	1,266	467	1,733
상담평가원	-	755	-	755
상임팀장	-	-	30	30
생산및판매관리기사	-	-	1,685	1,685
생활복지사	196	7,375	21,229	28,800
생활재활교사	-	27,867	44	27,911
생활지도원	229	40,467	966	41,662
선임생활지도원	11	4,156	24	4,191
선임직업훈련교사	-	-	444	444
설비기사	-	27	13	40
센터장	-	22	2,936	2,958
시설관리기사	-	104	749	853
시설장	18	3,068	18,026	21,112
실장	-	47	1,156	1,203
심리치료사	-	180	263	443
안전관리요원	-	260	33	293
언어치료사	-	263	629	892
영양사	4	3,071	1,202	4,277
요양보호사	-	12,536	4,427	16,963
운전원	-	475	1,973	2,448
원장	59	5,404	4,273	9,736
위생원	-	3,145	380	3,525
의료직	-	19	138	157
의사	-	8	22	30
일반직	-	138	1,748	1,886
임상심리상담원	3	606	50	659
자립지원전담요원	-	778	19	797
자활지도원	-	2	22	24
작업지도원	-	228	8	236
작업치료사	-	704	604	1,308
재활활동보조원	41	21	1	63
재활활동요원	30	9	5	44
전담사회복지사	-	1	48	49
정신건강전문요원	189	635	767	1,591
조리원	55	11,551	2,815	14,421
직업훈련교사	-	44	5,021	5,065
차량안내요원	-	-	1	1
청능치료사	-	2	9	11
총괄팀장	-	9	3	12
총무	-	125	334	459
팀장	16	1,071	9,686	10,773
프로그램관리자	-	2	17	19
한국수어통역사	-	4	1,281	1,285
환경미화원	-	-	12	12
회계원	-	10	20	30
(비어 있음)	1	22	42	65
기타	2	249	4,950	5,201
총합계	924	166,925	144,647	312,496

□ (해결 방안) 인건비 교부금 신청 시, 사용한 시군구 직위를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인건비 지급기준과 매칭하여 준수율 측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

○ (매칭 방향) 인건비 교부금 정보는 실질적인 인건비 청구기준이지만,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는 준수율 측정기준임으로 시군구 인건비 교부금 신청 직위를 가이드라인 직위에 매칭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

○ (매칭 방법) 생활 및 이용시설로 구분 후 생활시설은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인건비 적용기준을 적용

- (생활시설) 이용시설과 달리 생활시설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직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인건비 기준은 이용시설 대비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적용
- (이용시설) 시군구 인건비 교부금 신청 직위들을 인건비가이드라인 지급기준에 맞춘 후 팀장, 회계원, 돌봄 선생님 등 기타 직위는 이용시설 기관장 5명의 자문을 받아 직위 매칭의 정확성을 보완

○ (기타 매칭 방법) 교부금 신청 시군구 직위가 없는 경우, 인사-급여정보 입력정보 내 직위와 직종, 직급, 호봉 여부 등을 고려한 후 분석대상 여부를 결정

- (임의 기타 근로자) 특정시설에 참여하는 일자리 참여 근로자, 특정 사업 전담 인력, 촉탁의사, 계약직 근로자 등을 기타 등으로 분류
- (이용시설 기타 근로자) 이용시설의 조리사, 취사원, 기능 교사, 사서, 보육교사 등 이용시설의 기타 직종 근로자들 역시 기타 근로자로 분류

○ (기타 종사자 매칭 시 문제점) 종사자 인건비 교부금 신청과 인사-급여정보 입력 시, 사용한 시군구 직위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과 상관없는 비표준화된 직위나 직종을 시설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비적용 직위) 생활시설은 보육사 등 16개 직위가, 이용시설은 팀원 등 20개 직위가 시군구 인건비 교부금 신청 시 사용되는 직위나,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에서 부재

〈표 3-24〉 시군구 직위 및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부재한 종사자 직위 사례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육사, 상담지도원, 생활재활교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부센터장, 사무직, 설비기사, 안전관리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총괄팀장, 프로그램관리자, 한국수어통역사, 회계원, 재활활동보조원, 재활활동요원	팀원, 대리, 전담인력, 계약의사, 보육사, 상담사, 수어통역사, 간병인, 관리직5급, 취사원, 근로기사, 보조원, 부센터장, 사무직, 상임팀장, 차량안내요원, 환경미화원, 요양보호사, 자활지도원, 전담사회복지사

○ (기타 근로자 분석 여부) 기타 근로자로 분류된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에서는 제외하기로 복지부와 협의

- (복지부 의견)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시설 및 직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외 기타 근로자는 제외

〈표 3-25〉 시군구 직위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 매칭

구분	구분	생활시설 시군구 직위	이용시설 시군구 직위
사회복지직	원장	- 시설장, 원장	- (사회·노인 이용시설) 관장
	사무국장 1		- (장애인 이용시설) 사무국장
	사무국장 2	- 사무국장, 총무, 정신건강전문요원	- (사회·노인 이용시설) 부장 - (장애인 이용시설) 1급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재활교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작업지도원	- (사회·노인 이용시설) 과장 - (장애인 이용시설) 2급
	선임 생활지도원	- 선임생활지도원	- (사회·노인 이용시설) 선임사회복지사 - (장애인 이용시설) 3급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 (사회·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장애인 이용시설) 4급
	5급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관리직		- 관리직, 경비원	- 노무, 운전기사 - 고용직(청소, 취사, 세탁 업무 담당자)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촉탁의사			- 촉탁의사
의료직			- 간호사(3급), 간호조무사(4급), 특수교사(3급), 물리치료사(3급), 직업치료사(3급), 임상심리사(3급)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기타			-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보육교사

○ (매칭 결과) 인사-급여정보 입력 분석 대상 종사자 69,313명 중 생활시설 종사자 총 29,430명은 총 10개 직위로, 이용시설 종사자 총 39,910명은 총 33개 직위로 분류하는 등 총 43개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로 분류

- (전체 종사자)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이 전체 종사자 69,313명 중 1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15.0%, 생활시설의 과장/생활복지사가 14.8% 순이었음
-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직 이외 직종) 생활시설 기능직이 4.2%, 시설장이 2.0%로 다른 직위에 비해 많은 편이었음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이외 직종) 관리직 1~4급 등 관리직이 5.6%로 사회복지직 다음으로 많았고, 사무직(1~4급)이 3.3%, 의료직(1~4급)이 1.4%였음

〈표 3-26〉 시군구 직위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 매칭 결과(기준 종사자 69,313명)

(단위: 명, %)

구 분	생활		이용		총합계	
	명	%	명	%	명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14.8		0.0	10,290	14.8
생활-관리직	629	0.9		0.0	629	0.9
생활-기능직	2,901	4.2		0.0	2,901	4.2
생활-기타	173	0.2		0.0	173	0.2
생활-기타(계약직)	11	0.0		0.0	11	0.0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0.5		0.0	316	0.5
생활-사무국장	989	1.4		0.0	989	1.4
생활-생활지도원	11,989	17.3		0.0	11,989	17.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1.1		0.0	746	1.1
생활-시설장	1,359	2.0		0.0	1,359	2.0
이용-과장		0.0	1,476	2.1	1,476	2.1
이용-관리직 기타		0.0	790	1.1	790	1.1
이용-관리직(계약직)		0.0	35	0.1	35	0.1
이용-관리직(장애인)		0.0	13	0.0	13	0.0
이용-관리직1급		0.0	281	0.4	281	0.4
이용-관리직2급		0.0	26	0.0	26	0.0
이용-관리직3급		0.0	276	0.4	276	0.4
이용-관리직4급		0.0	2,473	3.6	2,473	3.6
이용-관장		0.0	2,616	3.8	2,616	3.8
이용-기타		0.0	5,008	7.2	5,008	7.2
이용-기타(계약직)		0.0	470	0.7	470	0.7
이용-기타(미기입)		0.0	886	1.3	886	1.3
이용-기타(보육교사)		0.0	44	0.1	44	0.1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0.0	208	0.3	208	0.3
이용-기타(촉탁의사)		0.0	9	0.0	9	0.0
이용-부장		0.0	782	1.1	782	1.1
이용-사무국장		0.0	375	0.5	375	0.5
이용-사무직1급		0.0	365	0.5	365	0.5
이용-사무직2급		0.0	37	0.1	37	0.1
이용-사무직3급		0.0	386	0.6	386	0.6
이용-사무직4급		0.0	1,491	2.2	1,491	2.2
이용-사회복지사		0.0	10,396	15.0	10,396	15.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0.0	3,089	4.5	3,089	4.5
이용-의료직1급		0.0	26	0.0	26	0.0
이용-의료직2급		0.0	5	0.0	5	0.0
이용-의료직3급		0.0	860	1.2	860	1.2
이용-의료직4급		0.0	58	0.1	58	0.1
이용-일반직 기타		0.0	31	0.0	31	0.0
이용-일반직1급		0.0	94	0.1	94	0.1
이용-일반직2급		0.0	3,197	4.6	3,197	4.6
이용-일반직3급		0.0	250	0.4	250	0.4
이용-일반직4급		0.0	3,799	5.5	3,799	5.5
이용-일반직5급		0.0	58	0.1	58	0.1
총합계	29,403	42.4	39,910	57.6	69,313	100.0

- (호봉별 분포) 총 43개 직위의 평균 호봉대는 8호봉이였으며, 그중 가장 많은 호봉대는 3호봉 이하가 26.5%, 다음으로 4~9호봉(25.6%), 10~17호봉(22.7%)의 순이었음

〈표 3-27〉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별 호봉 분포(기준 종사자 69,313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호봉	3호봉 이하	4~9호봉	10~17호봉	18호봉 이상	미기입	평균
전체	69,313	12.0	26.5	25.6	22.7	13.2	0.0	8.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0.3	16.7	27.6	33.4	22.1	.	11.4
생활-관리직	629	4.9	26.2	33.2	20.3	15.3	.	8.7
생활-기능직	2,901	1.1	34.2	34.4	24.2	6.2	.	7.2
생활-기타	173	16.8	49.1	16.2	10.4	7.5	.	4.7
생활-기타(계약직)	11	.	.	.	27.3	72.7	.	23.5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19.9	79.4	0.3	.	0.3	.	0.9
생활-사무국장	989	0.2	1.9	8.5	33.0	56.4	.	18.1
생활-생활지도원	11,989	0.9	28.5	32.6	26.0	11.9	.	8.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0.9	1.9	12.6	50.7	33.9	.	15.1
생활-시설장	1,359	1.5	3.8	10.1	29.7	54.9	.	18.2
이용-과장	1,476	10.6	15.9	16.3	44.3	12.8	0.1	10.0
이용-관리직 기타	790	57.8	27.5	8.7	4.8	1.1	.	1.7
이용-관리직(계약직)	35	97.1	.	2.9	.	.	.	0.3
이용-관리직(장애인)	13	.	15.4	46.2	38.5	.	.	7.5
이용-관리직1급	281	6.8	11.0	24.2	48.8	9.3	.	10.1
이용-관리직2급	26	.	.	15.4	38.5	46.2	.	17.1
이용-관리직3급	276	0.4	5.4	25.7	52.9	15.6	.	12.3
이용-관리직4급	2,473	8.0	34.2	29.1	21.5	7.2	0.0	6.6
이용-관장	2,616	3.2	10.1	11.4	29.1	46.3	.	16.1
이용-기타	5,008	49.9	46.5	2.6	0.7	0.4	.	0.8
이용-기타(계약직)	470	94.7	2.8	1.5	0.4	.	0.6	0.2
이용-기타(미기입)	886	17.7	41.9	20.7	14.7	5.1	.	4.8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	0.0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208	43.8	44.7	9.6	1.9	.	.	1.2
이용-기타(촉탁의사)	9	55.6	44.4	.	.	.	.	0.4
이용-부장	782	0.4	2.0	6.3	33.4	57.9	.	18.0
이용-사무국장	375	0.8	3.2	5.3	29.3	61.3	.	18.6
이용-사무직1급	365	.	0.3	3.8	60.5	35.1	0.3	16.2
이용-사무직2급	37	.	2.7	13.5	56.8	27.0	.	14.2
이용-사무직3급	386	0.8	5.4	34.7	42.5	16.6	.	11.7
이용-사무직4급	1,491	4.6	38.8	34.8	18.1	3.6	.	5.8
이용-사회복지사	10,396	31.9	42.0	22.5	3.3	0.3	0.0	2.4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4.5	18.1	44.4	30.8	2.3	.	7.5
이용-의료직1급	26	23.1	69.2	7.7	.	.	.	1.3
이용-의료직2급	5	.	80.0	20.0	.	.	.	2.6
이용-의료직3급	860	12.6	20.3	32.4	26.4	8.3	.	7.6
이용-의료직4급	58	20.7	13.8	24.1	27.6	13.8	.	9.1
이용-일반직 기타	31	6.5	22.6	45.2	19.4	6.5	.	7.0
이용-일반직1급	94	1.1	4.3	11.7	33.0	50.0	.	16.8
이용-일반직2급	3,197	0.4	12.8	33.5	39.2	14.2	.	10.6
이용-일반직3급	250	0.8	3.2	25.6	50.0	20.4	.	12.6
이용-일반직4급	3,799	3.5	27.3	45.2	19.8	4.1	.	6.6
이용-일반직5급	58	3.4	32.8	37.9	20.7	5.2	.	6.4

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대상 선정

□ (장애요인) 총 321,441건의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료 중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 대비 준수율 측정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

○ (인건비 교부금 제공 자료) 총 321,441건의 교부금 인건비 자료에는 전체 등록시설 파악 시, 포함되었던 제외시설 및 사업들의 교부금 자료들이 포함됨

○ (준수율 비측정 대상 자료) 인건비 교부금 중 기본급이 아닌 수당 중심의 기타 후생 경비와 제수당 등에 대해서만 교부금을 신청한 경우도 다수 존재

□ (해결방안) 연구진과 복지부 실무담당자들간 협의를 통해 인건비 준수율 측정을 위한 대상 선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

○ (모집단 설정 변수 적용) 모집단 제외시설 및 복합시설 그리고 바우처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 시설 현황분석 및 종사자 조사에 적용된 기준 적용

- (시설 제외) 법 개정과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장기요양시설 등 제외
- (기타 시설 제외) 교부금 신청 건수자료에는 존재하나 이번 실태조사 대상 목록에 존재하지 않은 폐업 시설과 준수율 조사 대상이 아닌 복합시설은 분석에서 제외
- (사업 제외) 준수율 분석에 포함된 시설유형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준수율 측정에 부적합한 사업유형은 제외

〈표 3-28〉 인건비 교부금 사업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제외사업

소관부처	시설 유형	제외 사업
복지부	노인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복지관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노인일자리 확충자치단체 경상보조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준수율 측정 변수 적용)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적용된 변수 및 규모 수준 등을 적용

- (기본급 측정) 인건비 교부금 신청 내용 중 최저임금에 기반한 최저 기본급과 최대 기본급으로 설정한 월 520만 원 이상 지급된 경우들은 제외

○ (지방이양시설 준수율 측정기준 적용) 〈표 4-42〉처럼 생활 및 이용시설 내 직위별 측정 호봉에 해당하는 신청 건수를 가이드라인 준수율 최종 측정대상으로 적용

○ (최종 측정 대상) 총 12개 제외 대상 요건을 적용한 결과 최종 분석대상 건수는 총 321,441건의 33.8%인 108,534건이었음

〈표 3-29〉 인건비 교부금 신청 건수 자료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대상 선정과정

(단위: 건수)

구분	전체	제외 건수	분석대상 건수
0. 총제출 건수	321,441	-	321,441
1. 사회복지시설 제외시설 및 사업		34,878	286,563
2. 신청 기본급 부재		141,053	145,510
3. 최저임금 미만 월 기본급(190만 원 미만)		18,085	127,425
4. 기본급 지급 월 수가 0개월인 경우		126	127,299
5. 0호봉 적용 대상		4,126	123,173
6. 시설목록 부재 종사자		4,652	118,521
7. 복합시설제외		395	118,126
8. 기본급 연봉 6,200만 원 이상		410	117,716
9. 기본급 월 520만 원 이상 : 1차 측정 대상		5,181	112,535
10. 사회복지시설 제외 사업		1,468	111,067
11.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부재		2,524	108,543
12. 월 지급기본급 부재		9	108,534

○ (시설유형별) 총 108,534건의 자료 중 지방이양시설 관련 분석 가능 건수는 52,153개였으며, 국고지원시설 분석 가능 건수는 56,381개 파악

○ (종사자 전환) 총 108,534건의 신청자료를 종사자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종사자 수는 총 70,649명이었으며, 이중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는 33,467명,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는 37,182명으로 파악됨

〈표 3-30〉 인건비 교부금 신청 건수 자료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대상 결과

(단위: 건수, 명)

구분	전체	지방이양시설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교부금 자료 기준 준수율 측정 가능 건수	108,534	52,153	56,381
인건비 교부금 자료의 종사자 전환	70,649	33,467	37,182

다. 월 인건비 교부금 산출을 위한 지급 개월 산정

□ (의사결정 사항) 인건비 교부금 추출이 연간 총액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준수율 측정을 위해선 월 기본급 기준 산정을 위한 임금 지급 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 (인건비 교부금 제공 자료) 2022년 기준 총 321,441개 교부금 신청자료 중 월 준수율 측정을 위한 신청 개월 수는 부재한 채 인건비 신청 주기 자료만 제공

○ (인건비 교부금 신청 주기) 년, 반기, 분기, 월, 일, 기타 등 총 6개 주기 자료가 존재

- (유효 신청 주기) 월 기본급 기준 인건비 준수율 측정을 위해서는 년, 반기, 분기, 월 등 4개 신청 주기의 정확한 지급 개월 수가 필요
- (유효 신청 개월) 년 단위 신청을 12개월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제공된 자료는 분기·반기·월 기준의 경우 정확한 지급 개월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

〈표 3-31〉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교부금 신청 주기에 대한 빈도분석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월	분기	반기	년	일	기타
건수	321,441	117,254	168,504	19,368	16,177	130	8
%	100.0	36.5	52.4	6.0	5.0	0.0	0.0

□ (의사결정 내용) 인건비 산정에 필요한 신청 주기 중 일과 기타를 138건을 제외한 총 321,303건 수의 지급 월 수에 대한 추가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요청하여 산정

○ (제외 주기) 인건비 신청 건수 중 일과 기타 신청 주기는 준수율 측정이 월 기본급 지급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신청 개월 산정) 1년은 12개월, 반기는 6개월, 분기는 3개월, 월은 1개월로 산정

〈표 3-3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교부금 신청 주기의 개월 수 환산(321,303건 기준)

(단위: 건수, 개월, 회)

구 분	년	반기	분기	월
신청개월 수	12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
신청 주기	1회/연	2회/연	4회/연	12회/연
신청건수 별 빈도	16,177건	상/하반기 모두 7,204건	4분기 모두 34,387건	연 1회 20,063건
				연 2회 14,373건
				연 3회 12,927건
				연 4회 9,900건
				연 5회 8,341건
				연 6회 8,530건
		상/하반기 1회 12,164건	4분기 중 3회 이하 134,117건	연 7회 7,122건
				연 8회 6,341건
				연 9회 6,442건
				연 10회 6,144건
				연 11회 5,814건
				연 12회 11,114건

라. 개인별 교부금 인건비 총합 산정 시 직위 선정 문제

□ (장애요인) 총 321,441건의 교부금 인건비 자료를 개인별 총합으로 산정 시, 최종 직위 및 호봉 결정 문제가 발생

○ (발생원인) 인건비 교부금 자료를 이용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율 대상 추출과 분석 시, 신청 주기의 다양성으로 인해 종사자 직위·호봉 중복 문제가 발생

○ (교부금 인건비 제공 자료) 처음 제공된 총 321,441건의 건수별 교부금 인건비 자료를 개인별로 통합시 종사자 수는 93,738명이었음

○ (직위) 2022년 1년간 교부금 신청 시, 직위가 1~3회까지 변경된 경우는 인건비 신청 종사자의 1.3%인 1,285명으로 파악

○ (호봉) 2022년 1년간 교부금 신청 시, 호봉이 2~5번까지 변경된 경우는 인건비 신청 종사자의 47.9%인 44,904명이었음

○ (변경이 없는 경우) 2022년 기준 교부금 인건비를 신청한 전체 93,738명 중 호봉과 직위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47,549명으로 전체의 50.7%에 불과했음

〈표 3-33〉 교부금 인건비 자료의 개인별 통합 시, 호봉 및 직위 변경 사항

(단위: 명)

구분		호봉 변경 횟수					총합계
		0회	1회	2회	3회	4회	
직위 변경 횟수	0회	47,549	41,160	1,160	44	3	89,916
	1회	1,254	2,334	116	9	1	3,714
	2회	31	71	4	·	·	106
	3회	·	1	1	·	·	2
총합계		48,834	43,566	1,281	53	4	93,738

□ (해결방안) 중복된 직위·호봉 변경내용 중 최신 직위·호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인건비 교부금 자료를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기준으로 결정

○ (자료 정리 1단계) 교부금 신청 시, 시설에서 입력한 직위·호봉 자료 중 내용을 분석하여 가장 높은 임금이 신청된 직위·호봉을 최종 직위·호봉으로 적용

○ (자료 정리 2단계) 교부금 인건비 자료가 존재하는 종사자 중 급여정보 부재 종사자를 분리

○ (자료 정리 3단계) 교부금 신청 직위·호봉 자료가 존재하는 종사자와 교부금 신청자료는 부재하지만, 급여정보가 존재하는 종사자 간의 임금 및 기본급 차이 분석을 위해 시군구 직위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를 매칭

○ (자료 정리 4단계) 인건비가이드라인 측정 대상 중 지방이양시설 준수율 측정방법을 적용해 분석할 측정 대상을 추출

□ (준수율 측정 대상) 준수율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총 108,534 건수 및 종사자 70,649 명 중 지방이양시설 준수율 측정 방법이 적용 가능한 대상은 다음 〈표3-35〉와 같은 것으로 파악됨

○ (지방이양 시설 측정 방법) 생활 및 이용, 그리고 장애인 시설 중 특정 직위 및 호봉에 한정하여 인건비 중 기본급 지급액과 실질 지급액을 비교하는 방법임

○ (인건비 교부금 신청 건수) 총 108,534개 자료 중 지방이양시설 측정방법이 적용가능한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교부금 신청 건수는 56,381건이었음

- (지방이양시설 측정방법 가능 종사자 수) 총 70,649명 중 지방이양시설 측정방법이 적용가능한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수는 37,181명이었음

〈표 3-34〉 국고 지원시설 인건비 준수율 측정 최종 대상

(단위: 건수, 명)

구분	직위	호봉	가이드라인 측정 대상					
			인건비 교부금 신청 건수			인건비 교부금 신청 종사자 수		
			전체	지방이양	국고지원	전체	지방이양	국고지원
전체			108,534	52,153	56,381	70,649	33,467	37,182
준수율 측정 대상			7,555	3,822	3,733	4,813	2,400	2,413
생활시설 (4,234개)	원장	20호봉	146	60	86	88	38	50
		15호봉	184	61	123	111	38	73
	사무국장	15호봉	113	44	69	66	21	45
	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970	184	786	586	115	471
	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124	45	79	72	22	50
		7호봉	71	22	49	47	12	35
	생활지도원	7호봉	1,267	598	669	783	361	422
		5호봉	1,562	770	792	942	439	503
	관리직	10호봉	39	3	36	22	·	22
	기능직	10호봉	245	83	162	149	54	95
	소계		4,721	1,870	2,851	2,866	1,100	1,766
이용시설: 사회/노인 (1,714개)	원장/시설장	15호봉	231	25	206	167	15	152
	부장	15호봉	93	45	48	60	33	27
	과장	10호봉	179	87	92	133	54	79
	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430	207	223	310	148	162
	사회복지사	5호봉	779	467	312	536	310	226
	소계		1,712	831	881	1,206	560	646
이용시설:장애인 (1,122개)	관장	15호봉	102	101	1	63	62	1
	사무국장	15호봉	49	49	·	29	29	·
	1급	10호봉	6	6	·	5	5	·
	2급	7호봉	471	471	·	309	309	·
	3급	7호봉	21	21	·	13	13	·
	4급	5호봉	469	469	·	319	319	·
	5급	5호봉	4	4	·	3	3	·
	소계		1,122	1,121	1	741	740	1

주: 종사자별 교부금 신청건 수가 중복직위인 경우, 종사자 수로 전환시 제외

□ (급여정보 비교 대상) 준수율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총 70,649명의 인건비 교부금 자료 중 약 39,804명만이 급여정보와 인건비가이드라인 비교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비교분석 가능 종사자 추출) 총 321,441개의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료를 가진 93,738명의 종사자 중 시설 및 사업 제외 등 총 12단계의 인건비 준수율 과정을 통해 분석 가능한 자료 수는 108,534개였음

- (분석 가능 종사자 수) 108,534 건수를 중복을 제외한 개인별 자료로 전환하면 분석 가능한 종사자 수는 70,649명이었음

○ (개인별 분석 불가능 종사자) 교부금 자료가 존재하는 총 70,649명 중 약 30,845명(43.7%)은 시설에서 제공한 급여정보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비교분석 가능 종사자) 인건비 교부금과 급여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총 39,804명 중 24,938(62.7%)명은 생활시설, 나머지 14,886명(37.3%)은 이용시설 종사자였음

〈표 3-35〉 급여정보 비교 대상 인건비 준수율 측정을 위한 개인별 대상 여부

(단위: 명)

구분	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급여정보 없음
총합계	70,649	24,938	14,886	30,845
과장/생활복지사	9,273	9,273		
관리직	412	412		
기능직	2,419	2,419		
기타	19	19		
사무국장	882	882		
생활지도원	10,177	10,177		
선임생활지도원	696	696		
시설장	1,060	1,060		
과장	972		972	
관리직 기타	1		1	
관리직4급	1,209		1,209	
관장	1,593		1,593	
기타(미기입)	20		20	
부장	411		411	
사무국장	254		254	
사무직4급	772		772	
사회복지사	2,115		2,115	
선임사회복지사	1,727		1,727	
의료직1급	15		15	
의료직2급	5		5	
의료직3급	508		508	
의료직4급	37		37	
일반직1급	73		73	
일반직2급	2,773		2,773	
일반직3급	131		131	
일반직4급	2,250		2,250	

마. 시설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측정기준 차별 적용

□ (장애요인) 인건비 교부금 신청 자료를 활용한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시, 복지부 가이드라인 비적용 시설 중 지자체 호봉제 도입시설들에 대한 준수율 측정기준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

○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이양시설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준수율을 측정

○ (지자체 호봉표 도입시설)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여가부의 여성권익시설 일부에 대해서 인천,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호봉표를 도입

○ (측정기준 차이) 지자체 호봉표 도입시설 종사자인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임금 기준이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와 달라 선임 및 사회복지사들은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반면에 시설장은 과장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

- (기타 종사자) 인건비 측정기준 대상자인 시설장과 선임 및 사회복지사 이외에 지자체 호봉표 도입시설에서는 타 시설과 동일한 직위의 다양한 종사자들을 고용 중
- (측정 직위 중복) 특히 지지체 호봉 적용 시설장을 과장으로 측정할 경우, 현장의 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과장 등으로 설정된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

〈표 3-36〉 복지부 3개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별 교부금 신청 현황

(단위: 명)

시군구 직위	아동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총 합계
총합계	2,070	1,303	6,905	10,27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282			282
생활-관리직	2			2
생활-기능직				
생활-기타				
생활-기타(계약직)				
생활-기타(촉탁의사)				
생활-사무국장	17			17
생활-생활지도원	1,218			1,21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1			11
생활-시설장	540			540
이용-과장		652		652
이용-관리직 기타				
이용-관리직(계약직)				
이용-관리직(장애인)				
이용-관리직1급				

시군구 직위	아동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총 합계
이용-관리직2급				
이용-관리직3급				
이용-관리직4급		1	2	3
이용-관장		2	2,915	2,917
이용-기타				
이용-기타(계약직)				
이용-기타(미기입)				
이용-기타(보육교사)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이용-기타(촉탁의사)				
이용-부장		24		24
이용-사무국장				
이용-사무직1급				
이용-사무직2급				
이용-사무직3급				
이용-사무직4급			2	2
이용-사회복지사		617	433	1,05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	3,552	3,559
이용-의료직1급				
이용-의료직2급				
이용-의료직3급			1	1

□ (해결방안) 여성가족부의 여성권익시설을 포함한 4개 지자체 호봉표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보다 낮은 별도 준수율 기준을 적용해 측정

○ (지자체 호봉표 미도입시설)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건비 기준직위를 그대로 적용

○ (지자체 호봉표 도입시설) 4개 시설유형의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5개 직위에 한해서는 지자체에서 준용하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

- (5개 직위) 시설장은 과장, 사무국장·과장·선임사회복지사는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지급 수준을 적용
- (기타 직위) 사회복지직 이외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직과 사무직 등은 타 시설유형과의 준수율 비교를 위해 기존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해 분석하기로 결정

7. 종사자 실 인건비 지급-공제정보 추출

□ (개관)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수준 및 항목 분석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임금 지급 및 공제 항목 분석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2개의 장애요인에 직면

○ (분석목적 1) 인건비 교부금 신청 임금과 실제 지급하는 임금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재정 능력을 확인

○ (분석목적 2) 현 임금수준이 기본급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기본급 이외 수당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확인하기 위함

- (임금 항목)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 항목 이외에 적용·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확인하는 것도 부가적인 목적임

○ (장애요인) 급여정보 내 임금 지급 및 공제 항목 각각의 비표준화로 인해 분석과정에서 부가적인 작업이 요구됨

가. 인건비 지급항목의 비표준화와 자료 기입 오등록

□ (장애요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종사자 임금 항목이 비표준화되어 있고, 자료도 지출과 공제 항목이 바뀌어 기입되는 등 오등록이 다수 발견

○ (종사자 임금 관련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종사자 임금 지급 및 공제 관련 자료는 총 22개 항목에 총 1,117,431건이었음

○ (지급항목) 기본급을 비롯한 총 19개 항목에 총 2,942개의 이름으로 자료가 제공되었으며, 그 총수는 398,693건이었음

○ (공제항목) 기본급을 비롯한 총 18개 항목에 총 1,161개 이름으로 총 718,738건이 제공됨

○ (자료 기입 오등록) 지급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급 등의 자료가 공제 항목에 기입되어 있거나 공제 항목에 기입되어야 할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 내용이 지급항목에 기입되는 등 오등록이 다수 발견

○ (발생 이유) 임금 지급 기능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탑재하였으나 각 항목에 대한 표준화 항목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하지 않아 시설의 인사 담당자들이 인위적으로 비표준화된 항목명을 작성해 기입했기 때문으로 추정

- (교육 부족) 인사담당자들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회계지식 부족과 지급항목 금액 및 공제항목 금액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입 방법에 대해 혼동하는 것으로 추정

〈표 3-37〉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종사자 임금 지급 및 공제 관련 정보 현황

(단위: 건수)

구분	공제		지급		합계	
	항목이름	항목개수	항목이름	항목개수	항목이름	항목개수
1.기본급	12	418	235	102,515	247	102,933
2.일용잡급	.	.	5	32	5	32
3.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	30	570	89,114	573	89,144
4.성과금	3	51	52	3,635	55	3,686
5.명절휴가비	18	865	130	42,064	148	42,929
6.가족수당	5	18	73	32,423	78	32,441
7.직무직책수당	5	15	275	12,021	280	12,036
8.자격수당	.	.	64	3,971	64	3,971
9.특수근무수당	6	220	161	8,817	167	9,037
10.당직수당	1	12	57	1,155	58	1,167
11.식대교통비	86	50,660	231	29,441	317	80,101
12.연차수당	.	.	36	2,079	36	2,079
13.주휴수당	.	.	17	3,486	17	3,486
14.근속수당	25	468	99	16,157	124	16,625
15.처우개선비	10	326	121	12,704	131	13,030
16.복지포인트	2	3	14	350	16	353
17.후생경비	9	260	89	5,502	98	5,762
18.기타수당	55	949	657	30,864	712	31,813
19.퇴직금	67	1,951	18	1,675	85	3,626
20.사회보험료	400	403,601	26	515	426	404,116
21.세금	106	212,291	2	4	108	212,295
22.기타공제	348	46,600	10	169	358	46,769
합계	1,161	718,738	2,942	398,693	4,103	1,117,431

□ (해결방안) 시설에서 기입한 임금 지급 및 공제 항목의 표준화 작업 후, 표준화된 항목을 기준으로 총 월 단위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수행

○ (항목명 표준화 작업)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과 노무사 자문을 기반으로 제공 받은 임금 지급-공제 항목 자료를 〈표 3-39〉과 같이 총 22개로 범주화

- (기본급 범주화) 시설에서 기본급, 봉급, 생활임금, 단일임금, 소급분, 호봉 등 총 247개의 항목명으로 기입한 기본급 내용을 기본급으로 범주화

○ (오류 정보 수정) 공제 항목에 없어야 할 기본급부터 퇴직금 자료의 경우, 동일 종사자의 기본급 항목으로 전환하고, 지급항목에 없어야 할 사회보험료, 세금, 기타 공제 등의 항목 값은 공제 항목으로 전환

○ (총지급 금액 산정) 기본급을 비롯한 총 19개 지급항목 금액을 합산

- (실지급액) 총지급액에서 사회보험료 등 3개 항목을 합산한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월 실지급액으로 산정

- (명절휴가비 제외 지급액) 월 인건비 교부금 비교를 위해 지급항목 중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금액도 별도 산정

〈표 3-3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종사자 임금 지급 및 공제 관련 범주화

항목		내용
지급	1. 기본급	기본급, 봉급, 생활임금, 단일임금, 소급분, 호봉
	2. 일용잡급	보조 인력(임시직), 일급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장(시간외, 초과), 야간, 휴일, 포괄
	4. 성과금	기말, 상여, 성과급, 인센티브, 평가
	5.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6. 가족수당	가족수당
	7. 직무직책수당	직무, 직책(보조), 직급, 관리자, 특성화, 사례관리, 치료비
	8. 자격수당	자격, 면허, 전기, 기술, 기능, 기사, 복지사, 전문직, 간호사, 영양사, 현장교사, 응급관리요원
	9. 특수근무수당	특수, 위험, 위기, 응급, 교대, 안전, 소방, 위생, 목욕, 보호, 취사세탁, 조리, 코로나, 코호트, 통역, 수화, 증증, 도서벽지, 파견, 혹서기
	10. 당직수당	당직, 일직, 숙직, 전화, 개방, 토요, 콜, 비상근무, 출동
	11. 식대교통비	식대, 급식, 급량, 중식, 교통비, 차량유지, 자가운전, 출퇴근, 통근
	12. 연차수당	연차, 년차, 연가
	13. 주휴수당	주휴수당
	14. 근속수당	근속, 장기근무, 정근, 만근, 경력
	15. 처우개선비	처우개선, 대우, 조정, 보전, 복지, 특별, 종사자, 비정규직
	16.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랑포인트, 복지점수
	17. 후생경비	가계보조(지원)비, 생계보전, 물가, 출산보육, 건강진단, 보건, 강사, 교육, 능률, 연구, 자기계발, 문화, 생일, 체력증진, 통신, 피복비, 학위, 휴가비(효도, 하계), 활동비, 출장비, 회의비
	18. 기타수당	각종, 격려금, 간주, 근로지원, 근로장려, 보존, 부가, 업무공백, 포상, 기타
	19. 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 퇴직부담, 퇴직연금
공제	20. 사회보험료	사회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부담금, 장기근속(보험료공제)
	21. 세금	소득세, 장기근속공제, 처우개선비공제
	22. 기타공제	가불, 선지급, 감액, 식대(급식비)공제, 연말정산반환, 퇴직정산반환, 공제, 상조회비, 기숙사비, 여행경비, 단체보험료

나. 교부금과 지급 공제액 간의 비교분석 시 비교 항목 선정

□ (장애요인) 기본급 등 인건비 교부금액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인건비 지급액간의 비교 항목에서 차이가 존재

○ (임금 간 비교)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에서 지급받는 종사자 임금 간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 (항목 구성)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교부금 정보 항목과 시설에서 제공하는 지급-공제 금액 정보 사이에 항목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인건비 교부금) 총 항목이 기본급과 후생 경비, 제수당, 사회보험 부담비용, 그리고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5개로 구성됨
- (지급-공제액) 시설에서 제공하는 종사자 인건비 지급-공제액은 기본급을 비롯하여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세금 등은 공제 항목임

〈표 3-39〉 인건비 교부금 자료와 급여 정보간의 임금 비교가능성 여부

구분	기본급	통합 수당	사회보험 부담 비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인건비 교부금 자료	기본급	제수당, 후생경비	사회보험 분담비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급여정보 자료	기본급, 일용잡급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직무직책수당, 자격수당, 특수근무수당, 당직수당, 식대교통비, 연차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후생경비, 기타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비교가능 여부	○	○	×	×
근거	직위 및 호봉에 따라 지급	제수당과 후생경비 구분이 불가능 하나, 통합시 2개 항목이 포함되어 비교 가능	급여정보 자료는 공제금액으로 지급급액이 아님	급여정보 자료는 지급금액으로 적립금이 포함안됨

□ (해결 방안) 2개 종사자 임금 자료 비교를 기본급과 통합수당, 2가지로 요약 후 비교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

○ (통합수당) 인건비 교부금 자료는 제수당과 처우개선비 성격의 후생경비, 2가지가 존재하나 이를 급여정보의 세부 수당으로의 분류는 어려움

○ (사회보험료, 퇴직금 제외) 인건비 교부금 정보에서는 종사자 지급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급여 정보에서는 공제 금액으로 비교 불가능

- (기타) 급여정보 자료 중 세금과 기타 공제 금액은 종사자 인건비 지급액이 아닌, 공제 금액임으로 비교에서 제외

8. 시설 및 인사 관련 정보의 미기재 포함 통계분석 여부

□ (장애요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보수 수준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정보 미기입 상황이 발견되어 분석 시, 제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시설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인건비 교부금 신청과 급여대장 기능 등을 제공하나 시설 담당자의 정보입력과정 상의 지식 부족 등으로 미기입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 (시설정보시스템 항목 필수 입력 여부 정보 부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표준 입력값과 필수 입력정보 등의 가이드가 매뉴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

□ (해결 방안) 통계 전문가와 연구진 협의를 거쳐 미기입 상황을 포함해 통계분석을 시도하기로 방향을 결정

○ (미기입 항목 포함) 향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이용 확대 시, 현 입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기입 항목을 포함해 분석하기로 결정

○ (미기입 값 제외 시 정보 해석의 오류 가능성) 분석시설 수 또는 종사자 수 대비 분석항목의 미기입 상황을 제외할 경우, 독자들이 통계분석 결과 의미를 오해할 가능성이 존재

〈표 3-40〉 시설 및 종사자 관련 분석 항목에 대한 미기입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분석 변수	기입	미기입	구분	분석 변수	기입	미기입
시설 현황 (시설 4,739개 기준)	운영 주체	4,688	51	종사자 근로현황 (69,313명 기준)	종사자 성별	42,854	26,459
	입소자 정원수	1,246	424		학력	31,575	37,738
	교부금 신청여부	4,180	559		채용방법	69,306	7
	정산보고 여부	3,911	828		고용형태	69,055	258
	결산보고 여부	4,030	709		퇴직급여형태	37,428	31,885
	종사자급여형태	69,321	11,611		월 근로일수	13,905	55,408
					월 근로시간	12,828	56,485
					월 시간외근무시간	18,642	50,671
					월 연장근로시간	18,643	50,670
					월 야간근로시간	18,644	50,669
					월 휴일근로시간	18,644	50,669
					총 연차	13,218	56,095
					사용 연차	41,956	27,357
					연 교육 횟수	31,260	38,053
					연 교육 시간	29,111	40,202
					생리휴가 사용일 수	12,221	34,499
					대체휴가 사용일수	1,532	67,781
					기본급 부재	57,521	11,792

제3절 인터넷 기반 종사자 근로여건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1. 인터넷 설문조사 개관

□ (개관)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행정조사에서 파악이 불가능한 시설현황 및 종사자 근로여건 파악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의 웹 설문조사를 실시

○ (기존 조사와의 차이) 기존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시설장 대상으로 시설현황 등을 파악 후 시설 종사자 전원에게 근무 형태 등을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파악

- (2023년 실태조사) 종사자의 보수 수준에 대한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기반의 행정자료 분석 후, 부족한 근로 형태 등 설문 내용은 종사자 3인(시설당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종사자) 조사로 보완

○ (설문 내용) 종사자(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의 근로조건 및 보수 처우 등 총 6개 대분류에 세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78개 문항으로 구성하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와 중복 부분은 제외,

- (세부 내용 구성) 6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78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

〈표 3-41〉 기존 종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종사자 실태조사와의 차이

구분	설문 내용	
	기존 설문지	개선 설문지
방법	- 설문 배포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식	- 자기기입식 웹조사 방식
대상	- 표본추출에 의한 시설장 조사 - 시설내 종사자 전수를 대상으로 근로여건 등 파악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데이터 활용 - 종사자(시설유형별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대상으로 한정
문항	- 101개 항목	- 78개 항목
영역 및 항목	- 일반사항:시설 전반 사항, 이용자, 종사자, 재무 현황 등 18개 항목 - 종사자 현황 및 보수 수준: 인적 사항, 직무, 보수 수준 등 17개 항목 - 보수체계 및 인건비가이드라인 등 10개 항목 - 근로여건: 근로계약, 퇴직금, 휴가, 승진, 시간외근무, 시설안전사고실태, 교대제근무 등 35개 항목 - 종사자 역량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 등 11개 항목 - 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종사자 안전실태, 처우개선 등 10개 항목	- 일반사항: 종사자 인적사항 등 9개 항목 - 근로조건 및 보수 수준: 근로조건, 보수처우 및 욕구 등 25개 항목 - 보수체계 및 인건비가이드라인 제외 - 근로환경 및 근무 실태: 근로환경 및 욕구, 일가정양립, 교대제 근무 등 17개 항목 - 종사자 역량개발: 교육·훈련, 경력개발 등 10개 - 종사자 인권 및 위험: 종사자 인권, 위험 등 11개 항목 - 종사자 만족도 및 이직 의사 등 6개 항목
방식	- 보건복지부 공문발송에 이어 모든 시설에 설문지 배포하여 수거, 분석	- 시범 조사한 후 문제점을 수정하여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표 3-42〉 2023년 종사자 실태조사 세부영역과 항목

조사 영역	세부 영역	항목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9개 항목)	일반사항	① 시설명 ② 성명 ③ 직종 ④ 연락처 ⑤ 나이 ⑥ 성별 ⑦ 근무연수 ⑧ 직종 ⑨ 직위
근로조건 및 보수 처우 (25개 항목)	고용	① 고용형태 ②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③ 취업규칙 유무 ④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⑤ 채용과 자격증 연관
	근로 시간	① 주 근로일수 ② 주 소정근로시간 ③ 월 시간외근무 ④ 월 시간외근무 수당 ⑤ 월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방법 ⑥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 이외의 보상
	휴게·휴가·휴일	① 1일 휴게시간 ② 연차유급휴가일 수(2022) ③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이유 ④ 관공서 공휴일 중 미사용 휴일(2022) ⑤ 미사용 관공서 공휴일 보상 ⑥ 대체인력 지원사업 인식 ⑦ 대체인력 사용 여부 ⑧ 대체인력 사용 이유 ⑨ 대체인 지원사업의 효과성 ⑩ 대체인력의 미이용 또는 도움이 안 되는 이유
	보수처우 및 욕구	① 임금체계 적용 유형 ②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임금체계 유형 욕구 ③ 직무수행 대비 보수 수준의 적정성 ④ 적정 보수 수준 기준
근무 환경 및 근무 실태 (17개 항목)	근무 환경 및 욕구	① 승진 인사 규정 유무 ② 입사 후 승진 경험 ③ 승진 횟수 ④ 현직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린 소요 연수 ⑤ 승진의 중요 요인 ⑥ 인력 부족에 대한 인식 ⑦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이유 ⑧ 60세 법정 정년 보장 여부 ⑨ 적용받는 후생 복지 제도 ⑩ 희망하는 복리후생 제도
	일가정 양립	① 임신 중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 여부(내부규정) ②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 여부 ③ (남녀) 일가정양립 제도 시행 및 사용 경험
	교대제 근무	① 시설에서 시행하는 근무 형태 ②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 인력 ③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 ④ 시설의 교대 근무 형태
종사자 역량개발 (10개 항목)	교육 · 훈련	① 직원 교육을 위한 규정/지침 마련 여부 ② 법정의무 교육 이수 경험 유무 ③ 직무교육 이수 경험 의무 ④ 자격관련 보수교육 이수경험 의무 ⑤ 교육 횟수 ⑥ 교육비 부담 및 교육 복무처리 ⑦ 승진 등 인사고과 반영 경험 ⑧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이유
	경력개발	① 5개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운영 프로그램 ②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경험 여부(2022년)
종사자 인권 및 위험 (11개 항목)	종사자 인권	① 인권 보장 정도 ②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유
	종사자 위험	① 위험(폭력 포함)의 경험(2022년) ② 위험(폭력 포함) 경험의 종류 ③ 신체적 건강 문제 경험의 종류 ④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 경험 ⑤ 신체적 건강 문제의 비용처리 ⑤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⑥ 정신적 건강 문제 경험의 종류 ⑦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 경험 ⑧ 정신적 건강 문제 필요시 비용처리 ⑨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종사자 만족도 및 이직 의사 (6개 항목)		① 고충 처리 방식 ② 일자리 항목별 만족도 ③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④ 처우개선을 위한 시급한 개선 항목 ⑤ 이직 의사 ⑥ 이직 사유

○ (조사 대상) 2022년 말 기준 전체 모집단 시설 14,131개 시설 중 지역 등 비례할당을 통해 표본추출한 1,751개 시설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등 3개 직무 종사자 4,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설문대상자 중 시설장은 제외

- (모집단) 2022년 현재 지방이양 및 국고지원, 생활 및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을 포함하여 총 1,817개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약 5,451명을 대상으로하였으나 설문 수거는 시설 1,751개, 종사자 4,402명이었음
- (표본추출 방법) 소관부처별 소관 여부, 시설유형, 이용/생활 서비스 형태, 지역 등 총 4개 변수를 이용한 비례 할당으로 표본추출
- (시설장 설문) 앞서 설명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설 현황 및 종사자 보수 수준과 근로환경 자료로 기존 실태조사의 시설장 설문조사을 대체

〈표 3-43〉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모집단 분포

(단위:개)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복지부 합계	540	2,671	815	792	622	538	496	712	1,946	64	253	546	816	756	231	622	566	12,986
노숙인요양시설	3	2	1	2	.	1	.	3	5	.	.	3	2	1	.	.	1	24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	.	.	.	1	1	.	5	.	.	.	.	.	.	.	.	9
노숙인자활시설	2	8	1	1	1	4	4	3	20	.	1	1	.	2	.	1	1	50
노숙인재활시설	.	3	3	1	1	1	1	2	9	1	.	1	5	2	2	.	2	3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3	.	.	1	1	1	3	3	.	.	.	.	.	1	.	.	13
쪽방상담소	.	.	.	.	.	1	1	2	6	.	.	1	.	.	.	.	.	11
노인보호전문기관	3	5	3	4	1	3	1	2	5	.	1	2	3	2	2	2	2	41
노인여가복지시설	18	69	20	27	10	23	8	36	85	.	14	24	31	33	3	19	22	44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	26	26	17	5	8	4	16	19	1	5	14	11	18	2	15	12	216
노인주거복지시설	20	106	16	27	3	7	8	6	25	2	2	18	20	18	2	14	21	31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3	1	2	1	1	1	1	.	.	1	1	2	1	1	1	1	19
다함께돌봄센터	35	275	26	58	23	9	26	56	256	7	28	28	30	47	5	45	33	987
사회복지관	18	93	31	15	20	27	21	55	100	2	9	20	14	20	10	22	13	490
가정위탁지원센터	1	3	.	.	1	1	1	1	.	.	2	1	.	.	1	1	1	14
공동생활가정	21	192	35	16	39	14	23	32	75	2	14	24	44	46	8	41	35	661
아동보호치료시설	.	1	1	.	.	2	1	1	3	.	.	.	1	1	.	.	1	12
아동상담소	2	5	.	.	1	1	1	.	3	.	.	4	2	1	1	.	.	21
아동양육시설	9	29	24	17	10	17	10	17	35	1	1	9	22	14	5	13	10	243
아동일시보호시설	3	3	.	1	2	1	.	1	6	.	1	1	1	1	1	.	.	22
아동전용시설	.	1	1	.	1	1	1	2	3	.	.	1	.	.	.	1	2	14
자립지원시설	1	.	.	.	1	2	1	1	4	1	1	.	2	1	1	1	1	18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23	4	5	.	.	3	.	8	1	3	4	1	8	2	4	4	70
지역아동센터	177	839	286	275	307	216	143	220	463	13	60	182	398	300	65	239	181	4,364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1	1	.	.	1	.	2	2	.	.	1	.	1	.	.	.	9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0	92	18	29	19	12	11	18	24	4	2	12	33	36	10	18	24	38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5	149	56	20	54	30	40	36	173	2	10	42	28	21	19	13	46	76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	28	11	11	5	2	20	3	41	.	7	5	5	2	7	7	6	16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	1	1	1	1	1	1	2	1	1	2	1	1	1	1	1	1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1	2	1	.	1	2	1	6	.	.	2	.	.	1	.	1	1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1	350	139	142	55	68	78	99	255	11	57	64	97	98	54	74	77	1,789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	185	64	47	30	41	34	44	141	8	17	41	24	29	10	29	28	81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5	53	15	33	6	9	11	8	24	1	9	11	8	12	6	16	14	251
정신요양시설	.	7	4	5	4	3	4	3	3	1	1	2	4	4	1	10	4	60
정신재활생활시설	2	61	1	14	4	10	24	6	73	2	.	9	2	12	3	20	9	252
정신재활이용시설	1	15	3	1	7	7	5	12	31	1	1	5	.	6	3	1	1	100
지역자활센터	19	36	21	20	9	11	5	18	31	2	5	11	24	18	4	14	12	260
결핵한센시설	.	1	1	1	.	1	.	.	1	.	.	.	3	.	.	.	.	8
여가부 합계	60	187	88	66	50	46	43	58	176	3	29	54	69	64	36	70	46	1,145
가정폭력상담소	7	38	15	11	8	2	5	10	37	.	3	11	12	11	3	12	5	19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7	20	7	5	5	6	2	4	22	.	2	4	7	6	3	6	4	110
긴급전화센터	.	1	.	1	.	.	.	.	.	.	1	1	.	.	.	1	1	6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	29	20	21	5	10	6	9	24	2	5	9	22	15	4	15	11	226
성매매피해상담소	1	5	3	1	1	2	1	3	7	.	1	1	4	1	1	1	1	34
외국인지원시설	.	1	.	.	.	.	.	.	.	.	.	.	.	.	.	.	.	1
일반지원시설	1	2	1	1	2	3	1	4	8	.	1	1	1	2	1	2	1	32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1	1	.	.	.	.	1	1	.	.	.	.	.	.	1	.	5
자활지원센터	.	3	.	.	1	1	1	1	2	.	.	1	1	1	1	.	.	13
청소년지원시설	.	.	3	.	1	1	1	2	5	.	.	.	1	.	.	.	.	14
성폭력피해상담소	6	27	20	8	9	3	5	1	24	1	4	3	10	11	4	17	9	16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5	2	2	3	1	2	3	2	.	2	2	2	2	4	1	3	37
청소년쉼터	13	33	6	8	7	7	6	6	13	.	5	11	4	6	7	9	7	148
청소년자립지원관	1	5	.	.	.	1	4	.	2	.	.	2	.	.	.	1	.	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4	4	.	2	.	2	5	.	.	1	.	.	1	2	.	.	21
모자가족복지시설	1	2	2	6	2	5	1	6	6	.	1	2	2	5	1	2	2	46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2	8	3	2	4	3	4	3	17	.	2	4	3	2	3	2	1	63
부자가족복지시설	.	.	.	.	.	.	.	.	2	.	.	1	.	.	.	.	.	3
일시지원복지시설	.	1	1	.	.	1	1	.	1	.	1	1	.	1	1	.	.	9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	2	.	.	.	.	1	.	3	.	.	.	.	.	1	.	1	9
총계	599	2856	904	859	672	585	539	769	2121	67	282	600	887	820	267	692	612	14,131

〈표 3-44〉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표본 분포

(단위: 개)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복지부 합계	61	280	88	90	55	61	56	85	228	23	36	67	92	86	31	69	75	1,483
노숙인요양시설	1	1	·	2	·	1	·	2	3	·	·	·	·	1	·	·	1	12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	·	·	·	1	1	·	3	·	·	·	·	·	·	·	·	7
노숙인자활시설	1	2	·	·	·	2	2	1	5	·	·	·	·	2	·	1	1	17
노숙인재활시설	·	1	1	·	1	1	1	1	1	1	·	1	2	1	1	·	1	1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2	·	·	·	1	·	2	2	·	·	·	·	·	1	·	·	8
쪽방상담소	·	·	·	·	·	1	1	1	4	·	·	1	·	·	·	·	·	8
노인보호전문기관	1	1	1	1	·	·	1	1	2	·	1	1	1	1	1	1	1	15
노인여가복지시설	2	8	2	2	1	3	1	5	7	·	2	3	4	5	1	3	3	5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	6	3	3	1	3	·	2	4	1	·	3	2	2	·	2	2	37
노인주거복지시설	5	22	5	4	1	3	5	3	5	1	1	3	4	2	1	3	4	7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2	1	2	·	·	1	1	·	·	1	1	·	1	·	·	1	11
다함께돌봄센터	2	14	3	3	2	·	3	5	24	1	3	2	3	5	1	2	4	77
사회복지관	2	8	4	1	2	4	2	5	11	1	1	2	3	3	2	2	2	55
가정위탁지원센터	1	1	·	·	1	1	·	·	·	·	1	1	·	·	1	1	1	9
공동생활가정	5	18	6	4	1	1	1	3	6	1	1	1	6	3	1	3	2	63
아동보호치료시설	·	1	·	·	·	2	1	1	1	·	·	·	·	1	·	·	1	8
아동상담소	1	2	·	·	1	·	·	·	1	·	·	4	1	1	·	·	·	11
아동양육시설	1	5	3	2	2	1	1	1	7	1	·	2	5	3	1	2	2	39
아동일시보호시설	1	1	·	·	1	1	·	1	1	·	1	1	1	1	1	·	·	11
아동전용시설	·	1	1	·	1	·	·	2	1	·	·	1	·	·	·	·	2	9
자립지원시설	·	·	·	·	1	2	1	1	1	·	1	·	1	1	1	·	·	1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10	1	2	·	·	·	·	1	1	1	2	·	·	1	·	1	20
지역아동센터	6	30	12	13	8	6	4	7	21	·	3	9	19	11	1	8	3	161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1	1	·	·	1	·	1	1	·	·	1	·	1	·	·	·	7
장애유형별거주시설	3	12	2	3	2	1	1	3	3	1	1	1	3	4	1	2	4	4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16	4	2	3	2	2	3	17	·	1	4	3	4	1	2	4	6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	6	2	2	2	1	2	1	6	·	1	1	2	·	1	2	2	3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	·	1	1	1	·	1	1	1	1	·	·	1	1	1	·	1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2	1	·	1	1	·	4	·	·	1	·	·	·	·	1	1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	60	19	18	8	8	7	13	32	6	8	10	15	13	4	11	11	252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23	7	5	6	3	4	6	13	2	4	3	4	4	2	5	5	10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	7	3	5	2	2	2	1	3	1	1	2	2	2	1	2	2	40
정신요양시설	.	2	1	2	1	1	1	1	1	1	.	1	1	1	1	2	2	19
정신재활생활시설	1	4		4	2		6	2	6	1		3	1	5	1	8	6	50
정신재활이용시설	1	7	1	3	3	4	3	3	25	1	1		3	6	2	2	4	69
지역자활센터	3	5	2	4	1	1	1	5	4	1	1	2	3	1	1	4	2	41
결핵한센시설		1	1	1		1	-		1				3					8
여가부 합계	15	52	27	12	8	11	12	19	49		18	19	27	16	13	18	18	334
가정폭력상담소	3	8	3	1	.	1	.	1	6	.	1	.	6	1	.	1	2	3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3	3	2	1	1	1	1	3	.	2	1	2	1	1	2	1	26
긴급전화센터	.	1	.	1	.	.	.	.	.	.	1	1	.	.	.	1	1	6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7	4	2	.	2	.	1	7	.	1	1	5	1	1	3	3	43
성매매피해상담소	1	1	1	.	1	1	1	.	2	.	1	1	3	.	.	1	1	15
외국인지원시설	.	1	.	.	.	.	.	.	.	.	.	.	.	.	.	.	.	1
일반지원시설	1	1	1	1	1	1	1	1	2	.	1	.	.	1	.	1	1	1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1	1	.	.	.	.	1	1	.	.	.	.	.	.	1	.	5
자활지원센터	.	1	.	.	1	1	1	1	1	.	.	1	1	1	.	.	.	9
청소년지원시설	.	.	2	.	.	.	.	2	4	.	.	.	1	.	.	.	.	9
성폭력피해상담소	1	6	5	2	.	.	1	1	4	.	1	2	2	4	.	3	.	3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2	1	.	.	1	2	1	.	.	1	2	1	2	1	.	1	16
청소년쉼터	1	7	.	1	1	.	.	.	.	.	4	3	3	.	3	3	5	31
청소년자립지원관	.	3	.	.	.	1	2	.	1	.	.	2	.	.	.	1	.	1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1	3	.	1	.	.	3	.	.	1	.	.	.	2	.	.	11
모자가족복지시설		1		2	1			4	3		1	2	1	3		1	2	2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6	2		1	1	1	2	10		2	1	2	1	3			32
부자가족복지시설									2			1						3
일시지원복지시설	.	1	1	.	.	1	1	.	.	.	1	1	.	1	1	.	.	8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	1	.	.	.	.	1	.	3	.	.	.	.	.	1	.	1	8
총계	76	332	115	102	63	72	68	104	277	23	54	86	119	102	44	87	93	1,817

〈표 3-45〉 지역별 설문 응답 시설 현황

(단위: 개)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복지부 합계	68	278	86	87	50	55	48	95	226	18	26	59	91	63	31	62	74	1,417
노숙인요양시설	3	1	1			1		3	4			1					1	15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					1			3									6
노숙인자활시설	2	2				2	2	2	9			1		1			1	22
노숙인재활시설		2	3		1	1	1	2	2	1		1	5		2		2	23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1	1	3	3						1			12
쪽방상담소						1	1	1	5									8
노인보호전문기관	2	3		4			1	1	4		1	2	1	1	2	1	2	25
노인여가복지시설	4	17	2	3	1	5	2	9	8		3	5	5	3	1	4	3	7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4	5	3	5	1	3		3	4	1		5	3	2		3	5	47
노인주거복지시설	5	16	3	6		1	3	3	3	1		2	5	1		1	2	5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1			1	1	1	1				1	1	1	1	1	1	12
다함께돌봄센터	2	17	3	2	1		3	6	35	1	4	3	3	4	1	1	6	92
사회복지관	2	11	4	1	2	5	2	11	11	1	1	2	4	4	3	2	2	68
가정위탁지원센터	1	2				1	1	1				1			1	1	1	10
공동생활가정	2	22	6	5	1	1		3	11	1	1	1	8	1	1	4	2	70
아동보호치료시설		1				2		1	1				1	1				7
아동상담소		2							1			1						4
아동양육시설	3	4	5	3	5	1	1	5	5				6	4	1	1	3	47
아동일시보호시설	2	3		1	1			1	2			1	1					12
아동전용시설		1				1		1									1	4
자립지원시설					1	2			4	1	1		2		1	1		1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4	3	3					1		1	3		1	2		1	29
지역아동센터	5	39	17	19	13	9	2	4	20		3	3	16	7	1	8	6	172
장애영유아거주시설		1	1					2	2			1		1				8
장애유형별거주시설	4	13	3	4	2	1	2	3	6	1		2	6	7	3	4	5	6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5	1		1	3	2		14		1		2	1		1	1	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	7	1	3	2	1	6	1	4		2		1		1	4	3	3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	1		1	1	1	1	1			1	1	1		1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1		1	3			1			1		1	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8	32	14	11	4	3	3	8	20	3	2	5	8	8	1	8	8	146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	17	7	5	6	1	6	6	11	2	3	4	4	4	1	3	6	89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	8	4	3	1	1	1	1	2	1	1	4	2	2	1	2	3	39
정신요양시설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5
정신재활생활시설	1	5		3	1	2	3	1	12	1		3	1	1	1	6	4	45
정신재활이용시설	1	4			2	1	1	3	7			2		4	1	1	1	28
지역자활센터	4	8	3	3	1	1	1	6	7	1	1	3	4	2	1	2	2	50
결핵한센시설		1	1	1					1				1					5
여가부 합계	15	54	32	16	7	15	11	20	39	1	13	20	30	15	9	19	18	334
가정폭력상담소	4	10	4	1		1		1	5		1	2	7	2	1	3	2	4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3	3	3	1	2		1	2		2	2	2	2		2	3	29
긴급전화센터		1		1							1	1				1	1	6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9	4	3		2	1	2	6		2	1	6	1		4	1	47
성매매피해상담소		3	2	1	1	1	1		1		1	1	3		1	1	1	18
외국인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2	1			3	1	1	3					1		1	1	1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1									3
자활지원센터		3			1	1			2			1	1		1			10
청소년지원시설			3		1	1	1	2	5				1					14
성폭력피해상담소	1	8	5	3	1		1	1	2	1	1	2	1	3	1	2	1	3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2	1			1		3			1	2	1	1			1	14
청소년쉼터	2	8	1	1	2		1				2	2	4		3	3	5	34
청소년자립지원관	1	2				1	3					2						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3			1			1	1			8
모자가족복지시설		1	1	3		1		4	2			1	1	3		1	1	1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	3			1	1	1	7		1	1	3			1		20
부자가족복지시설									2			1						3
일시지원복지시설		1	1				1		1			1		1	1			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	1
총계	83	332	118	103	57	70	59	115	265	19	39	79	121	78	40	81	92	1,751

〈표 3-46〉 지역별 설문 응답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복지부 합계	185	666	208	224	123	137	121	244	553	45	64	140	233	161	88	157	193	3,542
노숙인요양시설	9	3	3			3		6	12			2					1	39
노숙인일시보호시설	6					3			10									19
노숙인자활시설	2	5				5	3	3	30			2		2			2	54
노숙인재활시설		6	9		3	3	3	5	6	3		3	12		6		12	71
노숙인종합지원센터		5				3	3	9	9						3			32
쪽방상담소						3	2	1	16									22
노인보호전문기관	4	9		10			3	3	11		2	8	2	3	11	3	5	74
노인여가복지시설	14	42	6	8	3	13	6	29	21		9	14	13	8	3	11	7	20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1	11	9	15	3	9		9	11	3		14	9	8		6	15	133
노인주거복지시설	15	31	8	17		1	8	7	7	3		6	14	3		3	7	13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3	4			2	3	3	1				1	7	5	1	3	3	36
다함께돌봄센터	5	41	4	4	1		5	11	79	3	9	5	8	5	1	2	8	191
사회복지관	4	28	11	3	5	15	6	32	32	3	1	6	10	10	8	5	5	184
가정위탁지원센터	7	12				3	3	2				3			3	3	6	42
공동생활가정	3	46	14	12	6	2		7	25	1	1	1	19	2	3	10	6	158
아동보호치료시설		3				6		3	3				1	3				19
아동상담소		6							3			1						10
아동양육시설	10	11	9	9	19	3	3	14	14				15	10	3	3	8	131
아동일시보호시설	6	9		3	3			3	4			2	3					33
아동전용시설		3				4		2									4	13
자립지원시설					2	5			7	1	3		4		3	2		27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0	11	15					3		3	5		3	5		3	88
지역아동센터	10	76	31	32	23	15	4	8	42		4	3	28	14	2	18	9	319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	3					6	5			3		3				23
장애유형별거주시설	11	31	8	14	5	3	5	8	15	3		6	17	20	8	13	16	18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5	1		2	4	3		16		1		6	3		2	1	6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	18	4	9	4	3	13	3	9		6		1		2	15	9	10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3	1		2	4	2	3	3			3	3	3		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					1		1	8			2			3		3	2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0	84	34	32	11	7	6	19	55	9	6	13	21	18	3	20	20	378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	48	18	12	16	3	21	15	28	5	10	10	12	9	3	7	16	242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	24	11	8	3	3	3	3	6	2	3	12	12	6	3	5	8	118
정신요양시설		3	3	3	3	3	3	3		4		3	2	3	3	6	3	45
정신재활생활시설	2	10		5	2	6	7	1	23	1		4	3	5	2	8	7	86
정신재활이용시설	2	10			3	2	3	9	17			4		11	2	3	3	69
지역자활센터	12	18	8	8	3	3	3	17	20	1	3	7	11	4	4	6	6	134
결핵한센시설		1	3	2					4				3					13
여가부 합계	42	138	85	38	19	42	29	49	97	1	36	56	72	35	21	52	48	860
가정폭력상담소	11	23	8	3		3		3	18		2	5	20	3	3	8	5	11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8	11	8	3	6		3	4		6	5	5	5		6	7	80
긴급전화센터		3		1							2	3				3	3	15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26	11	9		5	2	5	19		5	1	16	3		12	3	129
성매매피해상담소		9	4	3	3	3	2		3		3	3	6		1	3	3	46
외국인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6	3			6	3	3	7					2		3	2	3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3									5
자활지원센터		5			3	3			6			3	2		2			24
청소년지원시설			9		3	3	3	5	12				3					38
성폭력피해상담소	3	20	13	7	1		2	3	4	1	5	5	3	8	3	4	2	8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6	2			4		7			2	6	1	3			2	36
청소년쉼터	6	21	3	1	6		4				6	6	9		9	9	15	95
청소년자립지원관	4	4				3	6					6						2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5					8			2			2	1			18
모자가족복지시설		3	5	6		3		8	5			2	1	8		1	3	4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2	7			3	3	3	12		3	3	6			3		45
부자가족복지시설									3			3						6
일시지원복지시설		2	3				4		1			5		1	2			18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	3
총계	227	804	293	262	142	179	150	293	650	46	100	196	305	196	109	209	241	4,402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모바일 웹 시스템에 탑재하여 응답자가 직접 설문에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웹조사로 진행

○ (조사 기간) 시범조사 후 본 조사 2차례 진행되었으며 시범 조사는 2023년 8월 7~31일까지 3주간, 본 조사는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12주간 실시

- (시범 조사) 시설장의 정보입력 독려 부탁, 종사자의 설문조사 내용 이해도 점검, 웹조사 시스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사전테스트 (pre-test)를 시행하여 오류를 수정
- (본 조사) 시범 조사 때 발생한 오류를 검토·수정하여 확정된 설문지를 웹 사이트에 업로드,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추천받은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종사자 시설당 3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웹 조사를 시행

〈표 3-47〉 2023년 종사자 실태조사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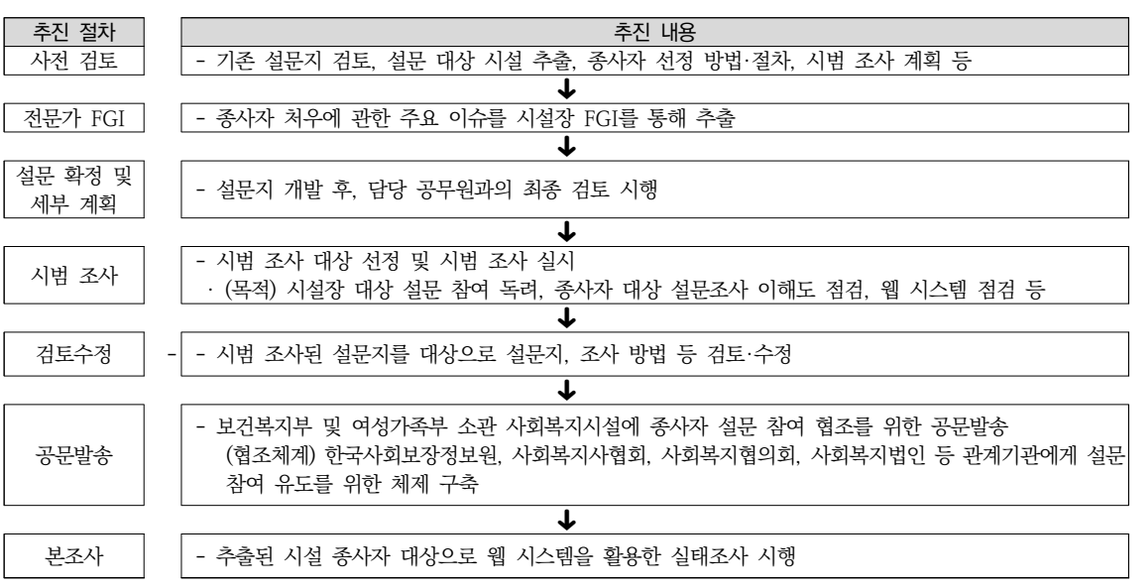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구분	목표	회수 현황	현황(회수율)
표본 시설 수	1,817	1,751	96.4
표본 종사자 수	5,451	4,402	80.8

□ (조사 절차) 설문지 내용을 검토 후, 시설장 대상의 FGI를 통해 종사자들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문지를 확정하는 등 총 7단계로 진행

○ (종사자 설문조사 콜센터 운영) 전담 전화 면접원 10명 구성→ 설문 내용 교육 → 조사 기간 종사자 컨텍 및 설문 유도 → 미응답자 및 설문 오류에 대응

[그림 3-7] 설문조사 세부 추진 절차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이슈 파악을 위한 간담회

가. 시설 유형별 시설장 간담회 개관

□ (목적)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에 대한 이슈 파악과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종사자 대상 웹 조사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시설장 대상의 FGI를 실시

○ (대상)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12개 시설 유형별 약 40명의 기관장

○ (내용) ① 종사자 처우 관련 핵심 이슈 ② 사시정 활용 여부 ③ 시설 규모 ④ 예산지원 방식 ⑤ 직종 ⑥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 ⑦ 시간외근무 ⑧ 휴게·휴가·휴일 ⑨ 자격 및 채용 경력 ⑩ 인건비 ⑪ 최근 동향 등 11개 내용

○ (기간 및 장소)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조사센터에서 실시

〈표 3-48〉 종사자 설문항목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간담회 현황

소관부처	시설유형	시설명	날짜	장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	보라매보육원	06월15일 (목)	보건사회연구원 서울센터 교육장
		강동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오예스지역아동센터		
		상록수마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이룸주간센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군포시노인종합복지관	06월19일 (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센터 중회의실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영락양로원		
		과천시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미소꿈터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경기하남지역자활센터	06월20일 (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센터 교육장
		서울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은혜의집	06월21일 (수)	
		인천쪽방상담소		
		서울시립양평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06월22일 (목)	
		경기의정부 꽃마리회복지원시설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인시 가족센터	06월23일 (금)	보건사회연구원 서울센터 소회의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산구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청주 모퉁잇돌	06월26일 (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센터 교육장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		

소관부처	시설유형	시설명	날짜	장소
		햇살나무		
		누리봄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구세군정다운집		
		희망터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설	목동하늘샘	06월28일 (수)	온라인 ZOOM
		멋진월요일		
		한울림		
		마인드		

나.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핵심이슈 도출

□ (핵심 이슈) 임금이 높은 수도권으로의 종사자 이직 편중, 기능직의 높은 이직률, 비정규직 대체인력 불가,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시설유형에 따른 경력 비적용, 이용자에 의한 폭력·폭행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 미준수 등이 주요 핵심 이슈로 도출

○ (시스템 활용) 보건복지부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 시설은 대부분 e-나라 시스템 활용이 사업 지침으로 명시

○ (예산지원 방식) 총액예산지원 방식은 인건비 및 경력인정, 인력배치, 승진의 어려움을 발생, 이외 「근로기준법」 적용 미흡,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총체적 문제로 부각

- 아동복지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고제와 허가제에서 차이가 존재, 신고제 소규모시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미적용

○ (직종별 차이) 사회복지직과 이외 직군 간 고용 형태, 임금, 승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심하여 관리직과 기능직 채용의 어려움이 상존

○ (고용 형태) 모든 시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며, 비정규직은 관리직과 기능직이 대부분이고, 임금가이드라인 미적용, 특히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

○ (시간외근무) 이용시설은 10~20시간, 생활시설은 40시간이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고, 총액예산지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대체 휴가로 활용하는 경우 다수

○ (휴가·휴일) 예산의 한계로 휴가·휴일의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 없음. 특히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휴가·휴일 사용이 미흡

○ (자격, 경력) 지역자활센터 등 일부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채용 요건이 아니지만, 임금과 승진에 반영되므로 입사 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

○ (인건비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시설에서도 지자체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유형 간 차이가 있음

○ (채용 요건) 총액예산지원 방식으로 경력인력 채용, 적정인력 배치, 각종 법정수당 등의 지급이 어려움

〈표 3-49〉 종사자 처우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시설 간 차이

구분	보건복지부 시설	여성가족부 시설	주요 이슈
시스템 활용	- 예산 교부 시 사시정 입력 의무	- 대부분 e-나라 활용	- 사시정시스템으로 일원화 필요 - 여가부 소관 시설은 별도 입력 필요
예산 지원 방식	- 대부분 총액예산지원 방식으로 인건비 및 경력인력 채용, 인력배치의 어려움, 승진의 어려움 상존 - 총액예산지원 방식은 인력배치 기준 적용의 한계가 발생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 -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고제와 허가제 차이 발생 (신고제는 소규모시설로 대부분 「근로기준법」 미적용) - 예산지원의 비표준화는 「근로기준법」 적용,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사회복지의 총체적인 문제로 부각된다는 의견 제기		- 총액예산지원 방식 개편 필요(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구분하여 예산편성 필요) - 신고제와 허가제, 지정제는 유지하되, 임금가이드 등 근로조건은 동일 적용 (다만, 「근로기준법」적용·미적용에 따른 차이는 발생)
직종별 차이	- 대부분 사회복지사와 이외 직종(관리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 - 사회복지사와 관리직 및 기능직 간 고용 형태, 임금, 승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심화 - 관리직, 기능직은 인력 채용이 어렵고, 대체인력 부재 - 실재 필요한 인력 부족 등 현 인력배치 기준의 이행에 대한 비합리성으로 이직률 증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 초래		- 사회복지사는 행정업무로 연장근로 발생. 기능직은 연장근로 미발생 - 직종별 근로조건 및 인력배치, 임금 차이 개선 필요
고용 형태	-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 채용 - 비정규직은 관리직, 기능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간호사, 영양사, 통번역사도 비정규직으로 채용 -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각종 수당 미지급, 승진제도 부재,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정규직 전환 불가능 등		- 비정규직은 가이드라인 미적용, 정규직 전환 어렵고, 대체인력 활용 불가 → 근로조건 열악 - 지역에서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대우 개선 필요
시간 외 근로	- 일반적으로 이용시설은 10~20시간, 생활시설은 40시간이지만, 지자체마다 상이(없음부터 최대 40시간까지) - 총액예산지원방식으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대체휴가로 활용이 대부분 - 5인이상 시설은 가산지급(0.5배 가산)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 시간외근무는 통일된 기준이 없고, 지역별, 유형별로 자율적 지원 - 5인 이상과 5인 미만으로 구분하여 가산금 적용하고, 5인 미만도 시간외 근무는 상존
휴가, 휴일	- 총액예산지원 방식으로 휴가, 휴일 미사용 수당 지급 제한적 - 대체인력 활용 어려워 휴가, 휴일 사용 미흡. 특히, 관리직과 기능직은 대체인력 부재하고, 시설 특성상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움(전문직 등)		- 휴가, 휴일 사용이 어려운데, 시간외 근무를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워 대체 휴가로 활용한다는 오류 발생
자격/경력	-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입직 요건이나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성폭력피해·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은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적용 시 하향 적용되지만, 승진 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해 입직 후 자격증 취득 경향이 나타남 -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 등 특수 자격증 보유 인센티브는 부재 -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인정, 이외 시설 경력은 80% 인정, 예산 부족으로 경력인정 낮춤(청소년시설 50%)		-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의 입직 요건과 승진 요건 동일화 필요 - 자격증 보유와 시설직종 명확화 필요 - 자격증 보유 유형별 수당신설 또는 경력산정의 합리화 필요
인건비/ 채용 요건	-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시설에서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음. - 서울시 인건비가이드라인(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이 높고, 지방간 임금 차이로 이직 원인으로 작용 - 총액예산 지원 방식으로 경력인력 채용, 적정인력 배치, 각종 법정수당 지급 등의 어려움 상존 - 지역별, 시설별 임금 차이가 상존 - 성폭력피해보호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진입이 쉬워(100시간 이상 교육이수) 인건비도 낮음		- 대부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 총액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 지역별, 시설별로 차이 개선 필요

구분	보건복지부 시설	여성가족부 시설	주요 이슈
핵심 이슈	- 지역 대비 임금이 높은 수도권으로 이직 증가 - 기능직 이직률 높음(임금, 근로조건, 비정규직, 대체인력 불가 등 근로조건 열악) - 동일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비적용 사례가 존재하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입직 필수요건 필요 - 이용자 등에 의한 폭력, 폭행 등이 상존. 매뉴얼 있지만, 준수되지 않고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수준		- 지역 간 근로조건 균등 필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리적 차별 기준 마련하고 대체인력 활용분야 등 인력배치 기준의 적정화 -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자격증 입직 요건으로 적정화 마련 - 폭력, 폭행 매뉴얼은 복지부에서 개발하여 전 사업장으로 배치 - 산업재해 적극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치유시설 마련 등

□ (설문구성) 직종별 공통설문과 더불어 사회복지직 등 3개 직종별 주요 설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직종별 공통 설문) 고용 형태, 지역·유형별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 등

○ (사회복지직) 채용 조건과 대체인력 활용, 이용자의 폭행·폭력 유형 및 대응 등

○ (관리직) 승진 및 기준 적용 가능성, 이직 및 타 부서로의 전직 가능성 등

○ (기능직) 승진 및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성, 이직 시 경력인정 등

〈표 3-50〉 시설장 간담회를 통한 직군별 도출된 주요 설문 내용

구분	주요 설문 내용	주요 이슈
사회복지직	- 고용형태, 지역·유형별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 -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 이직 원인 및 이직률 등 지역 이동 현황 및 이동 시 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채용 요건, - 대체인력 구비 및 활용, 폭력, 폭행 유형 및 대응	-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구분 - 승진 시 퇴사 후 재입사 이유 - 이직, 이직률, 이동 시 경력인정 현황 - 성폭력피해보호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자격증과 임금산정 과정에서 차이 존재(입직 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불필요하지만 급여산정에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추가적으로 자격을 확보) - 폭력, 폭행 유형, 산재 적용 및 사후 치유 등
관리직	- 고용형태,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 실태 - 사무원, 간호조무사 등 이직 원인 및 이직률 등 지역 이동 현황 및 이동 시 경력인정 - 대체인력 구비 및 활용 현황 - 다른 부서로 전직 가능성 - 가이드라인에 의한 승진 가능성	- 가이드라인 적용 및 정규직 전환 여부, 승진, 휴가, 휴일 사용 현황 - 정규직 대비 복리후생 제도 적용 -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구분, 지역 유형 간 구분 - 폭력, 폭행 유형, 산재 적용 및 사후 치유 등
기능직	- 고용 형태,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 실태 - 기능직(조리원,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통·번역사, 간호사 등)별 이직 원인 및 이직률 등 이동 현황 - 이동 시 경력인정 - 대체인력 구비 및 활용 현황 - 자격증 실태 및 활용성 - 폭력, 폭행 유형 및 대응	- 임금가이드 적용 및 정규직 전환 여부, 승진, 휴가 사용 등 - 정규직 대비 복리후생 제도 적용 -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구분, 지역·,유형 간 구분 - 폭력, 폭행의 산업재해 적용 및 사후 치유 등

〈표 3-5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대상 종사자의 처우 조건에 관한 FGI 내용

구분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정센터	성폭력피해·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주요 내용	- 시설규모에 따른 사업 허가 방식의 차이가 인건비 적용 기준에 영향을 미침 -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외 기능직, 관리직 인력의 이탈 방지정책 시급	- 종사자 처우 격차가 지역·직종 간 세분화되는 현상 발생	- 교부금 신청 시, 사시정 의무 사용 - 정규직은 승급(승진)적체가 이직의 주원인, 사무원 및 기능직은 임금수준이 낮아 채용이 어렵고, 대체인력 활용도 어려움. - 처우개선은 지역 간 격차 발생	- 교부금 신청 시, 사시정 의무 사용 - 정규직은 승급(승진)적체가 이직의 주원인, 사무원 및 기능직은 임금수준이 낮아 채용이 어렵고, 대체인력 활용도 어려움. - 우개선은 지역 간 격차 발생	-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승진적체가 이직의 주원인, - 특히 계약직은 지자체 수당 미지급으로 종사자 간 급여의 차별	- 최근 인천시가 기능직 및 관리직 당연 승진제 도입. - 하지만 종사자 10인 이상 규모 여부에 따라 승진, 배치 기준, 기능직 및 관리직의 차별 발생	- 소규모시설이 대부분으로 배치 기준 설정됨 - 야간(당직)·연장근무로 인한 휴가 사용 미흡 등 인력 보충 문제 심각	- 총액예산 지원 방식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낮은 호봉제를 적용하여 낮은 종사자 처우 초래	- 비공개시설로 정보 제공 기피, 총액예산지원 방식, 자체 호봉표 없음. - 지역별 차이 발생, 상담원 대체인력 적용 불가, 상담원은 자격 없는(교육 이수) 이유로 낮은 임금 적용	- 소규모 시설과 서비스의 지속 제공이라는 특징으로 병가 등 휴가 사용이 거의 어려운 상황
사시정 활용	- 시군구 보조금 신청으로 전 시설 이용	- 전 시설 이용	- 교부금 신청 시, 의무 사용(유료시설 제외) - 다만, 맞춤 돌봄 사업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나라 도움' 사용	- 교부금 신청 시, 의무 사용	- 교부금 신청 시 의무 사용, 급여 대장 관련 정보는 별도 사용. - 독려 시, 구체적인 항목 지정만 제시하면 입력은 가능	- 교부금 신청과 정산은 모두 사용. - 다만, 급여대장 용도로써 사용은 시설마다 차이가 존재	- 대부분 e-나라 사용. - 급여대장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수이지만 1달 정도 수치 입력은 가능 - 서울시 직속기관은 인건비 지침 등이 별도 존재	- 사시정은 회계관리 목적으로 사용(인사관리 사용). - 급여 대장 작성은 자체 프로그램 사용 - 여가부 시설은 e-나라도움 사용. - 시스템 복잡성과 평가 시기로 엑셀 자료 설문 방식은 가능	- 사시정은 교부금 신청 종사자 임면 보고 목적 사용. - 호봉표 없이 예산에 맞추어 사시정 인사 급여를 사용 않음. - 비공개시설 특성상 사시정 인사 급여 시스템 사용 한계 - 시설은 정보 오픈에 대한 거부감 높음	- 타 시설과 같이 교부금 신청 및 정산 대부분 사용. - 급여 항목 사용 시 수당 등은 포함하나 자세하게 입력하지 않음
규모	-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그룹홈(그룹당 4~5인)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		- 배치 기준이 최소 7명.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사회복지관 배치 기준이 특별시 19명, 광역시 13명 이상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서울과 광역시간 정원	- 배치 기준 약 10명.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비영리법인	- 10인 기준으로 종사자 처우 차별 - 10인 이상은 당연직 승진제도	- 청소년 회복지원시설는 3명 수준 -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6	- 평균 25명 이상, 법인 지위로 위탁. - 「근로기준법」 적용	- 비공개시설(피해자, 입소자 노출 금지) - 평균 5-10인 이하 소규모 시설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시설 이 70%, 기타 10인 미만 - 정신건강요

구분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정센터	성폭력피해·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기준법」미적용, 시간외근무 수당 등 미적용			차이 발생 - 결핵·한센 시설은 전국 3개소로 대부분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	대 상 으 로 허가제보다 높은 지정제 기관	- 현원 50인 100인 이상은 조리사, 영양사 등 기능직과 간호조무사 등 관리직 배치 가능	명 기준 - 청소년 단기쉼터 8명으로 대부분 소규모 시설 - 대부분 신고제(민간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 인력배치기준 있음 - 법인(비영리), 개인	원 인력배치기준 1인당 6명, - 주간 재활시설은 1인당 15명 선 - 인력배치기준에 기능직은 제외
예산 지원 방식	- (신고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신고제로 운영. 정부 재정지원 차별적 - (허가제) 다함께 돌봄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법인 진입이 허가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 준수		- (총액지원방식) 인건비가 사업비와 별개로 지원되지 않음 - 분기별로 교부금 신청·정산	- (총액지원방식) 지자체별 인건비가 사업비와 분리되지 않음 - (광주)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되어 실제 호봉방식 적용	- (총액지원 방식) 인건비가 사업비와 별개로 지원 안 됨 - 사시정 교부금 신청 시, 인건비를 총액예산에 맞추어 별도 작성·신청	- 인건비/생계비/운영관리비/기능보강비(프로그램비) 등 구분 - 인건비는 별도로 제공되어 가이드라인 별로 제공	- (총액지원 방식) 인건비 지원은 호봉제 적용 -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복지부, 서울시, 청소년자립 지원 형식 적용	- (총액지원 방식) 인건비를 신청 당시 호봉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입력	- (총액지원 방식) 다만 성남은 분리 적용(인건비+운영비) - 인건비 항목 중 시간외수당은 없음(서울은 있음) - 인건비 정산은 통으로 정산 (개별 종사자 임금수준 파악 불가)	- 인건비가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원
직종	- (종사자 특성) 사회복지사 외 사무원 등 관리직과 기능직에 대한 승진 체계 및 낮은 임금으로 이직 및 인력확보 어려움 - (승진 체계) 대	- (종사자 특성) 시간외근무, 휴게시간 확보, 기간제 인력 채용 등 표준화 방안 부재. 노동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이외 직종으로 구성, 사회복지사 외 직종은 요양보호사(생활시설), 사무원(회계), 물리치료사, 조리원, 관리원, 기능직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외 직종으로 구성 - 사무원(회계)의 업무량, 승급, 임금수준이 낮아 채용어려움 - 채용 시, 호봉 제한, 퇴직자에 준해서 채용 가능	- 사회복지사와 이외 직종으로 구성. - 사회복지사 이외 직종은 회계, 행정 등을,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 등	- 사회복지직/관리직/기능직으로 구분 - 10인 이하 시설은 사회복지직과 관리직의 직무 차별 없음 - 10인 이상 시	- 사회복지사/관리직(행정원/사무직)/기능직(조리원) - 보호요원 등 자립 지원 요원은 청소년 상담	-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지자체 제공 수당 차별적 지원 - 수당은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등 4개 수당	- 사회복지직/기능직/관리직 구분 - 사회복지직은 상담원, 생활지도원 - 기능직은 조리원(생활시설) - 관리직은 시설관리(10인 이상) 쉼터(생활시설), 상	- 사회복지직/기능직(간호원)/기능직으로 구성 - 기능직에 사무직이 포함 안 됨 - 별도로 임시

구분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정센터	성폭력피해·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분 지자체에서 기능직 및 관리직의 승진 체계 부재. 인천시가 당연직 승진 체계 도입 - (사회복지사 외) 간호사, 조리원, 버스 기사 등 기능직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외 업종 대비 인건비가 최저로 이직 - (인력배치 기준)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은 5인 미만으로 1인당 3~4명 담당으로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 (사회복지사) 5호봉 인력 이직 시, 인건비 예산이 당해연도 교부금 신청 기준에 맞추므로 경력직 인력 채용 불가 - (종사자 안전		(버스 기사, 미화원) 임 - 전 직종 호봉 적용 - 사회복지사는 승급이 가능하나, 이외 직종은 승급 제외 - 사회복지사가 사무원 업무(회계) 담당하는 경우 임금은 사무원 임금 적용으로 회계사무 기피 - 조리원, 버스 기사는 기능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 채용이 어렵고 위험수당 등으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 이직률 높음	- 관리직, 기능직은 1호봉부터 시작, 채용이 매우 어려움 - 시설장 근로자성 인정 문제(고용보험 혜택 적용 등) - 시설장 직급은 시설규모 10인 이상과 10인 미만으로 차등(기준은 없음) - 결핵시설은 소규모, 생활시설, 교대 근무 등 기피 요인이 많아 채용이 어려움 - 결핵시설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간병인, 조리원 직종 구성	자활사업 담당 - 시설은 임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등 관리직 부재	설은 현원에 상관없이 1인의 사무직이 배치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소규모 시설에서는 배치하지 않음	사(4년제 졸업 3급, 교원,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직/비사회복지직으로 구분	담소(이용시설)의 예산이 다름	직(대체인력)이 존재하나 일용직으로 관리 - 10인 미만으로 복지시설 직공중 4급 TO가 없어 승진이 안 되는 경우 발생

구분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정센터	성폭력피해·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산재 및 상해 등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경력으로 타 시설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할 것을 고려, 종사자 스스로 처리									
고용형태 (정규/비정규)	- 비정규직 없음.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야간근무 시간을 취침으로 간주, 근로시간 미산정 - 아동양육시설은 3교대제 실시	- (비정규직 문제) 관리직, 기능직 인력은, 정규직 전환보다는 비정규직 계약을 독려, 승진제도 미적용 등 - (임금 격차) 경기도 및 서울시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금액이 높아 경력직 직원들의 이직 심화. 신규 인력 채용 비중이 높아져 서비스 질 담보가 어려움. - (인력 충원) 낮은 임금으로 신규직원의 질 및 양 감소. - (지역 간 격차) 경기도 및 서울시의 높은 인건	- (비정규직) 노인일자리사업은 대부분 계약직. 승진, 승급이 부재,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 계약직에서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거의 불가 - (정규직) 동일시설 경력만 인정. - 퇴직자(호봉)에 준해서 신규 채용 가능. - 총예산 범위 내에서 승급(승진) 가능 - 선임은 만 3년 승진 최저연한은 권고사항 - 승진이 어려워 이직률 높음	- (비정규직) 사업별 사회복지사, 영양사, 기능직(환경미화원 등) 직종별 기간제 채용 - 승진, 승급이 부재.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 계약직 2년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종료 - (정규직) 평균 근속연수 5년, 승급(승진) 불만족 - 결핵시설은 평균 근속기간 3년 미만	- (비정규직) 자활사업 외 한시적 사업 진행으로 계약직 종사자가 50%차지 - 계약직으로 인해 승진, 승급이 부재,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수당이 미제공. 정규직과 임금 등의 차별 발생 - 계약직에서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 거의 불가 - (정규직) 인력배치 기준 미적용(총액지원	- (비정규직) 관리직 및 기능직은 승진제도 부재. 인천시는 금번 당연직 승진제도 도입 - 사회복지직 생활지도원은 6급에서 5급으로 당연승진 적용, 그러나 생활지도원과 유사한 업무인 관리직 간호조무사는 미적용으로 차별성 논란 - (정규직) 관리직 및 기능직에서도 비정규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 (비정규직) 사회복지직: 인력배치 기준에서 TO가 있으면 승진 가능 - 급수에 맞추어 인건비 예산이 결정되어 일반 승진 가능 - 조리원 등 기능직 인력 승진 어려운 상황 - 야간당직 요원을 지방비 지원으로 고용(시간제 고용) - (정규직) 배치 기준에	- (비정규직) 지침은 존재하나, 예산 규모에 따라 승진 결정 - 비 사회복지직은 승진 불가. - 인천시는 자체 시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정규직) 인천시 중 다문화가족센터 인건비 수준 차별 - 병가의 유급 적용은 정규직만 적용	- (비정규직) 없음 (예산부재) - (정규직) 승진제도 없음 - 기관장의 직급 매칭 하향 적용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전문인력임에도 승진의 어려움으로 이직률 증가 - 국고 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처우 차이 (지방이양 >국고지원) -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불가 - 경력인정 어려움 - 이용자 폭력 발생, 매뉴얼 없음, - 산재 및 상해보험 적용, 복지사회 프로그램 이용	-(비정규직) 승진, 승급이 부재,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수당 미제공되어 정규직과 임금 등의 차별 - 계약직은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거의 불가능 - (정규직) 대체인력은 자부담 또는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 - 대체인력은 수당과 4대 보험 미적용 - 서울시는 비

구분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정센터	성폭력피해·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비가이드라인으로 인천시 인력이 경기도 및 서울시로 이탈			방식 때문). - 평균 근속연수가 7년(원인은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소규모시설은 사업비로 비정규직 고용이 다수 존재	준하는 인력만 정규직으로 인용			정규직도 보조금 적용, - 대체 근무 일수 130일에서 180일로 연장
시간외 근무		- 시간외근무 시간 인정은 지역별로 차별적	- 지자체마다 시간외근무 기준상이, - 이용시설은 월 10~20시간, 생활시설은 월 40시간 적용(24시간 근로 체계) - 지침상 시간외근무 허용. 총액지원 방식으로 지원 어려움(대체휴무 활용) - 사회복지사는 소정근로시간(서비스 제공), 행정업무(연장근로) - 기능직은 연장근로 없으므로 총액 임금수준이 사회복지사 대비 낮음	- 지역별 차이 발생. 서울은 월 10시간 총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월 15시간까지 가능. - 광주는 월 7시간 인정. - 결핵시설은 시설 재량 가능, 다만 수당 예산이 부족하여 조리원만 지급, 나머지 직종은 수당 대신 대체 휴가 활용	- 지침상 시간외근무는 허용. 총액지원 방식이므로 지원 어려움(대체 휴가 활용)	- 조리원과 생활지도원, 관리직 등 월 한도가 적용.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단 시간한도는 불만 - 기능직 조리원의 인력 부족으로 시간외 근무 증가	- 국비 지원 시설은 부재, 지자체 시설은 차별적 - 사회복지직과 이외 직종 간에 차별은 없으나,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 한정 한도내 임금 지급, 그 이상은 대체휴가로 대체 - 당직제 근무 일반적 적용. 일반직원의 연장근무 문제 발생	- 주 40시간, 시간외근무 시간 12시간 - 예산 내에서 시간외근무 시간 적용. 한도 조정 - 1.5배 가산, 한도 시간 외 대체 휴가 활용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예산 한정으로 미지급	- 시간 외 근무수당 없음. 단, 서울은 월 15시간 인정 - 2022년부터 휴일근로 수당(관공서 공휴일) 17일분 예산에 반영 - 주휴일 등 휴일근로는 대체 휴무 활용 - 교대 근무 불가피. 야간수당 미지급(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 대체 근무자는 주휴수당 미지급 - 시간외근무는 월 15시간으로 한정
휴게 휴가 휴일		- (휴게시간 확보) 주간보호시설은 휴게시간 부여 및 조기 퇴근	- 「근로기준법」 준수 (연차휴가 등 법정 휴가) - 장기근속휴가는	- 「근로기준법」 준수 (법정화가)	- 병가, 장기휴가 등이 존재하나 대체인력 지원	- 병가, 연가, 휴가 사용 등은 제공되며 대체인력 제	- 병가, 연차 등은 제공, 시설에 따라 유급/무급으로	- 병가(인천시는 유급휴가, 정규직), 연가 - 대체인력에 특	- 법정 휴가(연차휴가) 적용 - 병가 규정이 있으나, 비공개시설	- 병가(진단서) 제공 시 대체 인력 요청가능하

구분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정센터	성폭력피해·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시 휴게 시간 미실시 조항 등에 대한 논의 필요	대체인력 부족으로 사용 불가 - 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은 늘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조리원은 업무 특성(식사 조리, 보건증 발급 등)상 자원봉사자 활용도 어려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직원들이 해당 휴가자 업무를 분담해 처리	공은 가능 - 단, 기능직 조리원은 대체인력 부족	차별화 - 생활시설 인력 부재 시 대체인력센터를 통해 인력 지원 가능. - 신규인력 교육 중복으로 활용 안 함 - 기능직 인력 부족으로 대체인력 활용 부족	수 인력(통번역)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	특성상 상담원은 대체인력 불가	나 직접 서비스(기존 인력에 대한 친숙성)의 중단으로 거의 활용 불가 - 소규모시설로 인한 대체 근무로 대체 휴가 부재(대체인력 충원 어려움)
자격 및 채용/경력			- (자격 및 채용) 사회복지사 1·2급, 요양보호사	- (자격 및 채용) 사회복지사	- (자격/채용)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입직 필수 아니며, 입직 시 인센티브 부재, 승진을 위해 입직 후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자만 경력 100%, 비경력자는 80% 적용	- (자격 및 채용)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입직 요건 아니며, 승진을 위해 입사 후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 단, 승진이 어려워 기존인력이 퇴사 후 다시 입사하는 과정 거침 - (경력)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기존에 재활시설 경력 부정(최	- (자격 및 채용) 사회복지사 자격 입사 기준 - 평균 근속기간은 3년 - (경력) 예산부족으로 청소년 쉼터는 경력을 50% 적용	- (자격 및 채용) 사회복지사, 건강가족사 자격증 보유 입직 필수. -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100%, 여가부 유관사업 100% - 특성화 사업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이외는 80% - 아이돌봄사업 80% 지원	- (자격 및 채용) 사회복지사 등 자격 필수요건 아니지만, 여성학 박사도 사회복지사 자격 부재 이유로 5급 적용. - 성폭,가폭,성매매 전문상담원 자격, 최소 100시간 교육 이수 필수(민간 수료증) - 진입이 쉬우니, 낮은 처우가 당연하다는 인식 - 지자체별 상담원 자격 차이 발생 - (경력) 서울, 인천은	- (자격 및 채용) 사회복지직은 정신요양전문요원 자격 요함 -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자만 경력 100%, 비경력자는 80%

구분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정센터	성폭력피해·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근, 인정) - 인건비가 높은 시설에서 채용 지원 존재			경력산정 시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 총액예산방식 상 경력인정 어려워 신규채용 1호봉 적용 - 낮은 급여로 조리원 채용 어려움 - 사회복지직은 생활시설 특성상 당직 근무 기피, 구인난 발생 - 평균 근속연수는 3년 미만, 경력인정을 받아 이직 기회 활용	
인건비	- (호봉제 탑재 여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한해 서울시,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호봉제를 탑재, 급여 수준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대비 4, 5급에 해당(약 80% 수준) - (지역아동센터) 1인당 인건비 단가 2,677만원 - (가이드라인) 각	- (호봉제 예산) 사회복지사 5호봉 이직 시, 인건비 예산이 당해연도 교부금 신청 기준에 맞추어져 높은 경력직 인력 채용 불가 - (기능직, 관리직) 신규직원 채용 시, 타업종 경력 인정률 80%로 설정, 인력구인 어려움. - (지원조건) 종사	-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외 자체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외 자체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지방은 서울의 단일 임금제 선호	-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이외 자체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자체 가이드라인이 복지부 대비 낮은 수준				- 지역별 차이 발생. 낮은 인건비 지자체에서 임의 수당으로 보전 - 경기도는 호봉표 협의 중, 직급 매칭 불가로 이견 - 경기도는 시설장을 과장급 제시 (경기도 85개 시설은 모두 반대)	- 서울시는 별도 가이드라인(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구분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정센터	성폭력피해·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지자체가 별도의 인건비 적용으로 시설 간 격차가 발생. - 가이드라인 전체 적용 추진 요구	자 포함 50인 이상만 영양사 채용 가능, 1식 제공 시, 4시간 고용 가능 - (가이드라인) 지역별 격차로 인력이동 발생 - (인건비 지급 기준) 직업 재활 시설장 직급이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아닌 1급으로 설정, 사회복지관 부설 시설장 역시 1급으로 설정								
최근 이슈			- 지자체별(서울은 자치구별)로 처우 차이 발생(처우개선비는 정규직만 적용) - 낮은 기본급을 임의 수당으로 보전하는 것은 임시방안에 불과 - 처우개선은 지자체별 사회복지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복지관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임 - 사회복지사 자격의 공급 과잉에 대한 개선 논의	- 지자체의 처우 개선비 등의 차별지원으로 종사자 지역 이동 발생	- 일반교육 이외 맞춤형 교육 예산에 대한 직원 요구 존재	- 입소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종사자 인권 문제 발생(폭력, 폭행 등) -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 내 대응 체제 필요	- 근무연수가 약 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28개월 정도로 근속연수 매우 낮음	- 사회복지사 자격 필수 아님, 그럼에도 25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으면 5급 적용. - 여폭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도록 필요성 절감	- 기능직의 탄력근무형태 요구가 많으나 실제 적용은 어려운 상황

제4장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제1절 보수수준
제2절 지급실태
제3절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제 4 장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제1절 보수 수준

1. 개관

□ (목적)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지급 보수 수준 파악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보수지급 현황을 분석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정보) 실제 각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 및 보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입한 정보로 인건비 교부금 정보나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과는 차이가 존재

□ (분석 내용) 2022년 9월 기준 월 급여정보에 한정하여 지급 항목, 지급 금액, 인건비 교부금 신청 금액과의 차이 등 크게 3가지 분석을 시도

○ (지급 항목 분석) 인사 급여정보에 수록된 급여정보를 기반으로 시설 유형별, 종사자별 지급 항목 등을 이용, 사회복지시설에 도입된 임금 구성 지급 항목 등을 파악

○ (보수수준 정보) 시설 특성별 월 평균 보수 현황과 세부시설별 평균 보수, 종사자 직위별 월평균 보수 등 급여정보에 기반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보수 수준을 분석

○ (재원 비중 분석) 인건비와 관련된 정부 교부금 신청 금액 대비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지급액과의 비교를 통해 실제 지급액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파악

□ (분석 기준) 지급 일시, 보수 수준, 재원비중 등을 고려하여 분석자료의 기준을 차별화함

○ (지급 일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자료 중 2022년 9월 급여정보를 선택한 이유는 해당 시기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 지급 월이기 때문

○ (보수수준 분석) 4,237개 시설 종사자 69,313명 중 지급 항목에 주 15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월 급여 59만원), 일용직, 기본급 부재자 등 2,259명을 제외한 67,054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

- 자료의 신뢰성을 고려, 기본급은 부재하나 타 수당이 존재하는 종사자도 분석에서 제외

○ (재원 비중 분석) 급여 지급 분석 대상 종사자와 교부금 신청 종사자 간 동일성 확보 파원에서 2개의 기본급 및 수당 내용이 존재하는 39,804명을 분석

- 급여정보시스템에 인건비 분석 대상 종사자는 67,054명이었지만 이중 2022년도 인건비 교부금 신청 내용이 존재하는 종사자는 39,804명이었음

2. 보수 수준

가. 2022년 기준 연평균 보수액 및 월평균 보수액

□ (종사자 연 보수액) 총 종사자 67,054명 기준 연 보수액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3,598.6만 원이었으며, 기타 수당을 포함한 실질 연 보수액은 3,789.4만 원으로 파악됨

○ (분석 기준)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임금구성을 고려한 연 보수액은 기본급(12개월)과 시간외근무 수당(12개월), 명절휴가비(연 2회), 가족수당(12개월)을 더하여 산정

- 실질 연 보수액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총액에 퇴직금을 제외한 기타수당 항목들을 더해 총액을 구한 후 '년 기타수당(12개월)'으로 환산
- 퇴직금은 근속 중인 종사자들의 미실현 보수이기 때문에 연보수액 산정에서 제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은 3,618.9만 원, 실질 연보수액은 3,805.8만 원인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은 3,042.9만 원, 실질 연 보수액은 3,340.2만 원으로 분석됨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은 4,116.9만 원, 실질 연 보수액은 4,318.7만 원인 데 반해,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은 3,203.5만 원, 실질 연보수액은 연 3,385.9만 원으로 파악됨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은 3,862.4만원, 실질 연보수액은 연 4,094.2만 원이었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는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이 3,438.2만 원, 실질 연 보수액은 3,604.1만 원이었음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은 3,364.3만 원, 실질 연 보수액은 3,593.4만 원으로 타 시설 규모 대비 임금이 가장 적었음

○ (지역) 17개 광역지자체 중 종사자당 실질 연 보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4,410.2만 원이었으며, 반면에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3,434.2만 원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종사자당 실질 연 보수액이 가장 많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내 자립지원시설로 연 5,162.1만 원이었고, 반면에 가장 적은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로 연 2,593.5만 원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실질 연 보수액에서 모자가족복지시설이 4,824.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가 3,054.1만 원으로 가장 적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시설장이 6,056.7만 원, 이용시설에서는 사무국장이 6,256.7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과 실질 연 보수액(세전)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 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					기타 수당	실질 연 보수액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소계		
전체		67,054	2,968.5	363.9	150.5	115.7	3,598.6	190.8	3,789.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4,683	2,977.0	372.6	150.9	118.4	3,618.9	186.9	3,805.8
	여성가족부	2,371	2,737.8	126.0	137.8	41.2	3,042.9	297.3	3,340.2
시설유형	생활시설	29,002	3,202.7	671.6	168.3	74.2	4,116.9	201.9	4,318.7
	이용시설	38,052	2,790.1	129.4	136.8	147.3	3,203.5	182.4	3,385.9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345	3,067.4	563.3	155.4	76.4	3,862.4	231.7	4,094.2
	지방이양	41,709	2,908.5	242.8	147.5	139.5	3,438.2	165.9	3,604.1
종사자규모	5인 미만	5,218	2,975.6	155.9	98.9	133.9	3,364.3	229.1	3,593.4
	6~10인	5,818	3,231.1	304.5	151.0	186.3	3,872.9	236.0	4,108.9
	11~20인 이하	9,125	3,125.1	309.3	163.6	177.1	3,775.1	216.7	3,991.8
	21~30인 이하	13,789	3,096.5	428.4	167.8	99.3	3,791.9	205.0	3,996.9
	31~40인 이하	10,337	3,122.2	523.1	163.3	94.9	3,903.5	191.0	4,094.5
	41~50인 이하	6,351	3,090.3	512.6	177.2	107.3	3,887.4	193.7	4,081.1
	51인 이상	16,416	2,534.9	269.5	126.4	80.8	3,011.5	135.0	3,146.5
지역	서울특별시	11,616	3,041.5	319.9	184.1	86.6	3,632.0	211.5	3,843.5
	부산광역시	4,676	2,854.5	258.4	105.0	110.8	3,328.8	105.3	3,434.2
	대구광역시	2,621	3,058.5	431.0	175.6	174.6	3,839.8	77.0	3,916.8
	인천광역시	3,025	3,052.0	314.7	135.7	64.2	3,566.5	221.5	3,788.0
	광주광역시	1,790	3,167.4	418.2	173.0	106.6	3,865.2	152.0	4,017.2
	대전광역시	1,679	3,228.0	538.8	147.6	198.7	4,113.1	297.1	4,410.2
	울산광역시	1,245	2,894.4	354.4	137.8	175.3	3,561.8	110.3	3,672.1
	세종특별자치시	382	3,162.7	489.2	206.2	48.6	3,906.8	372.4	4,279.2
	경기도	14,684	2,847.8	306.6	156.3	137.7	3,448.4	151.8	3,600.3
	강원도	2,750	2,981.3	359.5	150.9	95.9	3,587.6	296.6	3,884.2
	충청북도	3,701	2,872.9	400.1	135.5	124.8	3,533.4	187.6	3,721.0
	충청남도	3,571	2,822.3	474.2	126.2	147.4	3,570.2	257.2	3,827.4
	전라북도	3,304	2,975.1	395.8	114.8	122.0	3,607.7	190.4	3,798.0
	전라남도	3,506	2,918.0	347.2	142.0	72.7	3,479.9	158.4	3,638.3
	경상북도	3,792	3,104.2	525.3	185.2	96.8	3,911.4	98.5	4,009.9
	경상남도	3,388	3,040.2	406.8	129.4	124.4	3,700.7	399.6	4,100.3
	제주특별자치도	1,324	3,297.6	418.5	75.7	75.0	3,866.9	265.5	4,132.4

〈표 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세부시설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과 실질 연 보수액(세전)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 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					기타 수당	실질 연 보수액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소계		
전체		67,054	2,968.5	363.9	150.5	115.7	3,598.6	190.8	3,789.4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05	3,260.9	558.1	158.8	45.3	4,023.2	117.7	4,140.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2,489.7	431.9	85.9	131.8	3,139.3	126.7	3,266.0
	노인여가복지시설	8,755	2,342.3	65.9	113.4	72.3	2,594.0	119.5	2,713.5
	노인보호전문기관	249	3,101.7	109.3	174.4	230.7	3,616.1	238.2	3,854.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673	2,783.7	41.4	119.1	75.0	3,019.2	300.4	3,319.6
	소계	11,727	2,500.7	106.9	119.3	74.0	2,800.9	147.7	2,948.6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07	3,209.4	653.5	159.8	60.1	4,082.7	117.7	4,200.5
	아동일시보호시설	160	3,125.4	433.7	197.7	43.7	3,800.5	46.9	3,847.4
	아동보호치료시설	291	3,235.5	579.2	125.8	44.5	3,984.9	162.9	4,147.8
	자립지원시설	22	3,975.8	327.8	142.1	73.1	4,518.8	643.2	5,162.1
	공동생활가정	543	2,809.3	126.2	69.2	7.9	3,012.6	257.4	3,270.0
	아동상담소	31	3,576.9	196.1	72.2	50.3	3,895.6	40.6	3,936.3
	아동전용시설	25	3,033.2	198.9	156.7	26.9	3,415.6	110.4	3,526.0
	지역아동센터	1,725	2,487.3	38.0	36.2	15.0	2,576.6	248.9	2,825.5
	아동보호전문기관	404	2,897.1	212.3	139.4	21.0	3,269.7	286.0	3,555.8
	가정위탁지원센터	22	3,293.8	0.0	161.1	40.4	3,495.3	226.4	3,721.7
	소계	8,430	3,023.3	460.1	126.8	44.6	3,654.9	163.2	3,818.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102	3,156.0	762.1	179.1	67.5	4,164.7	223.9	4,388.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01	3,166.8	755.9	186.7	66.4	4,175.8	221.9	4,397.7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18	3,162.9	698.1	151.7	35.8	4,048.5	181.5	4,230.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75	2,993.9	523.9	119.5	334.4	3,971.6	270.5	4,242.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05	3,244.5	408.1	140.7	230.4	4,023.8	202.8	4,226.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374	3,115.3	154.3	164.9	267.9	3,702.4	209.6	3,91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515	3,248.2	402.4	156.7	97.7	3,904.9	193.2	4,098.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72	3,181.7	215.4	19.0	275.6	3,691.6	175.9	3,867.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3,607.7	484.8	163.1	43.9	4,299.5	536.5	4,836.0
	소계	30,616	3,154.4	517.4	170.7	142.6	3,985.1	216.4	4,201.5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1	3,651.8	734.9	120.6	110.1	4,617.4	228.4	4,845.8
	정신재활생활시설	206	3,924.2	430.5	170.3	49.8	4,574.7	254.8	4,829.5
	정신재활이용시설	245	3,851.4	222.3	214.9	47.6	4,336.2	199.4	4,535.6
	소계	2,132	3,701.0	646.6	136.2	97.1	4,580.9	227.6	4,808.6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1	3,313.0	395.4	206.3	47.2	3,961.9	317.3	4,279.2
	노숙인재활시설	531	3,408.7	563.3	239.9	53.6	4,265.5	166.5	4,432.0
	노숙인요양시설	566	3,247.5	528.4	199.4	46.6	4,021.9	274.9	4,296.7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21	3,122.8	205.4	184.5	39.9	3,552.6	89.0	3,641.6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3,298.5	402.0	240.1	52.2	3,992.8	60.0	4,052.8

구분		사례 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					기타 수당	실질 연 보수액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소계		
	쪽방상담소	25	3,406.6	549.3	166.9	56.6	4,179.5	156.0	4,335.5
	소계	1,517	3,295.7	478.8	212.2	48.4	4,035.0	208.9	4,243.8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3,167.4	329.8	184.3	61.2	3,742.7	87.0	3,829.7
	사회복지관	8,209	2,742.8	105.7	148.0	157.8	3,154.3	140.1	3,294.4
	소계	8,282	2,746.5	107.6	148.4	157.0	3,159.5	139.7	3,299.1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30	3,100.8	84.3	135.3	361.6	3,682.0	234.5	3,916.5
	소계	1,230	3,100.8	84.3	135.3	361.6	3,682.0	234.5	3,916.5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49	2,300.0	37.6	80.4	30.9	2,448.9	144.6	2,593.5
	소계	749	2,300.0	37.6	80.4	30.9	2,448.9	144.6	2,593.5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3,082.9	374.2	296.2	20.3	3,773.6	105.2	3,878.8
	청소년지원시설	38	3,144.9	268.3	154.3	8.8	3,576.3	207.7	3,784.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3,124.9	239.2	0.0	0.0	3,364.2	456.0	3,820.2
	자활지원센터	7	2,599.5	0.0	0.0	0.0	2,599.5	1,577.2	4,176.7
	성매매피해상담소	44	2,817.0	51.4	65.5	20.2	2,954.1	462.8	3,416.9
	소계	103	2,959.7	170.5	122.3	14.4	3,267.0	399.3	3,666.2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3	2,710.1	73.3	50.2	15.1	2,848.6	270.7	3,119.3
	성폭력피해상담소	60	2,949.8	45.8	92.4	12.0	3,100.0	568.4	3,668.4
	소계	103	2,849.7	57.3	74.7	13.3	2,995.0	444.2	3,439.2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0	2,978.2	134.7	132.1	12.4	3,257.4	316.3	3,573.7
	가정폭력상담소	156	2,814.7	22.4	129.5	16.9	2,983.5	368.5	3,352.0
	긴급전화센터	37	2,609.3	266.5	113.1	37.6	3,026.6	205.9	3,232.5
	소계	313	2,853.1	94.3	128.5	17.6	3,093.6	329.3	3,422.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3,871.8	389.4	142.2	180.7	4,584.1	240.6	4,824.7
	부자가족복지시설	16	3,512.6	432.5	0.0	51.0	3,996.1	130.5	4,126.6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57	3,551.9	365.3	147.1	43.2	4,107.5	188.5	4,296.1
	일시지원복지시설	28	3,484.9	467.4	178.6	43.7	4,174.5	154.7	4,329.3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2,784.2	0.0	0.0	986.2	3,770.4	217.7	3,988.2
	소계	296	3,620.4	377.1	137.2	106.9	4,241.6	198.4	4,439.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44	2,492.3	74.3	147.4	38.2	2,752.2	301.9	3,054.1
	소계	1,444	2,492.3	74.3	147.4	38.2	2,752.2	301.9	3,054.1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98	2,966.4	239.1	102.6	21.6	3,329.6	186.1	3,515.8
	청소년자립지원관	6	2,798.2	126.9	261.3	52.0	3,238.4	187.3	3,425.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	2,745.2	342.8	133.9	18.0	3,239.9	117.0	3,356.9
	소계	112	2,941.6	240.5	113.4	22.9	3,318.3	181.2	3,499.6

〈표 4-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과 실질 연 보수액(세전)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 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					기타 수당	실질 연 보수액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소계		
전체	67,054	2,968.5	363.9	150.5	115.7	3,598.6	190.8	3,789.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176	3,330.6	713.7	184.0	85.4	4,313.6	218.2	4,531.9
생활-관리직	624	2,929.8	331.4	146.4	67.7	3,475.3	166.9	3,642.3
생활-기능직	2,863	2,602.7	609.4	137.1	62.6	3,411.8	181.5	3,593.4
생활-기타	156	2,424.9	289.6	106.5	23.8	2,844.9	101.3	2,946.2
생활-기타(계약직)	11	4,192.9	538.0	309.2	54.5	5,094.7	367.3	5,462.0
생활-기타(촉탁의사)	314	3,132.3	0.0	0.0	0.0	3,132.3	0.2	3,132.5
생활-사무국장	978	4,620.7	631.2	230.5	104.2	5,586.6	273.8	5,860.4
생활-생활지도원	11,818	2,925.9	706.7	154.7	61.5	3,848.8	173.0	4,021.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4	3,671.0	929.0	197.7	116.8	4,914.5	230.4	5,144.9
생활-시설장	1,318	4,913.2	419.4	231.6	108.2	5,672.4	384.3	6,056.7
이용-과장	1,450	3,347.2	128.6	194.8	143.1	3,813.6	203.3	4,016.8
이용-관리직 기타	683	2,050.7	72.4	67.7	28.0	2,218.8	113.2	2,332.1
이용-관리직(계약직)	34	2,300.4	41.6	42.2	11.3	2,395.4	23.0	2,418.4
이용-관리직(장애인)	1	1,099.2	0.0	0.0	0.0	1,099.2	0.0	1,099.2
이용-관리직1급	275	3,315.0	146.0	218.0	199.1	3,878.0	223.9	4,101.9
이용-관리직2급	26	4,013.0	216.3	236.2	72.9	4,538.4	136.9	4,675.3
이용-관리직3급	275	3,417.0	203.2	225.2	212.3	4,057.7	252.6	4,310.3
이용-관리직4급	2,422	2,584.8	118.7	129.3	174.1	3,006.9	148.6	3,155.5
이용-관장	2,533	4,590.5	130.3	232.8	258.5	5,212.1	434.9	5,647.0
이용-기타	3,888	1,812.4	29.8	30.3	25.5	1,898.0	97.9	1,995.9
이용-기타(계약직)	356	1,693.5	34.1	20.3	24.4	1,772.3	41.1	1,813.4
이용-기타(미기입)	863	2,506.5	105.0	151.5	59.3	2,822.4	186.9	3,009.3
이용-기타(보육교사)	44	855.4	0.0	0.0	0.0	855.4	0.0	855.4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207	2,536.0	97.9	61.0	13.1	2,707.9	172.4	2,880.3
이용-기타(촉탁의사)	6	2,799.7	0.0	0.0	0.0	2,799.7	0.0	2,799.7
이용-부장	781	4,648.2	224.0	292.9	332.7	5,497.9	298.4	5,796.3
이용-사무국장	373	4,857.0	465.5	265.1	346.2	5,933.8	322.8	6,256.7
이용-사무직1급	363	4,162.0	203.0	281.4	377.7	5,024.1	256.5	5,280.6
이용-사무직2급	37	3,872.8	229.9	237.1	445.2	4,785.0	294.6	5,079.7
이용-사무직3급	384	3,478.0	162.6	219.1	206.6	4,066.3	243.2	4,309.5
이용-사무직4급	1,430	2,714.7	180.9	149.7	126.4	3,171.6	191.2	3,362.9
이용-사회복지사	10,308	2,107.9	64.8	88.3	58.6	2,319.5	122.8	2,442.4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57	3,015.2	122.9	164.4	184.9	3,487.4	213.5	3,700.9
이용-의료직1급	26	2,534.3	66.7	168.3	78.2	2,847.4	217.5	3,064.9
이용-의료직2급	5	2,538.2	59.4	97.0	28.8	2,723.5	779.4	3,502.9
이용-의료직3급	843	3,019.7	121.6	166.0	198.2	3,505.6	162.6	3,668.1
이용-의료직4급	58	3,048.0	122.4	168.5	109.0	3,447.9	120.5	3,568.5
이용-일반직 기타	31	2,928.5	263.2	135.0	40.3	3,366.9	217.5	3,584.4
이용-일반직1급	94	4,270.8	233.1	202.3	453.8	5,160.1	278.7	5,438.8
이용-일반직2급	3,169	3,504.5	333.5	187.6	263.1	4,288.8	239.2	4,528.0
이용-일반직3급	250	3,560.1	156.6	159.4	554.1	4,430.2	210.7	4,640.9
이용-일반직4급	3,722	2,925.5	185.2	164.8	228.7	3,504.2	168.9	3,673.1
이용-일반직5급	58	2,792.3	68.7	49.3	147.0	3,057.3	147.9	3,205.2

□ (종사자 월 보수액) 총 종사자 67,054명 기준, 월 보수액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299.9만 원이었으며, 기타 수당을 포함한 실질 월 보수액은 315.8만 원으로 파악됨

○ (분석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기준 연보수액과 실질 연 보수액을 각각 12개월로 나누어 산출

- 실질 월 보수액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총액에 기타 수당을 더해 산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은 301.6만 원, 실질 월 보수액은 317.2만 원인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은 253.6만 원, 실질 월 보수액은 278.3만 원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은 343.1만 원, 실질 월 보수액은 359.9만 원인 데 반해,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은 267.0만 원, 실질 월보수액은 282.2만 원으로 파악됨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은 321.9만, 실질 월 보수액은 341.2만 원이었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는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이 286.5만 원, 실질 월 보수액은 300.3만 원이었음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은 280.4만 원, 실질 월 보수액은 299.4만 원이었음

○ (지역) 17개 광역지자체 중 종사자당 실질 월 보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367.5만 원이었으며, 반면에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310만 원이었음

- 한편 실질 월 보수액에서 대전광역시가 37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광역시(286.28만 원)였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종사자당 실질 월 보수액이 가장 많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내 자립지원시설로 430.2만 원이었고, 반면에 가장 적은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로 월 216.1만 원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실질 월 보수액에서 모자가족복지시설이 402.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254.5만 원으로 가장 적었음

○ (사회복지직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시설장이 실질 월 보수액이 504.7만 원, 이용시설에서는 사무국장이 521.4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사회복지직 중 생활시설에서는 생활지도원(335.14만 원)이, 이용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203.5만 원)가 가장 낮았음

〈표 4-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과 실질 월 보수액(세전)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 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					기타 수당	실질 월 보수액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소계		
전체		67,054	247.4	30.3	12.5	9.6	299.9	15.9	315.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4,683	248.1	31.1	12.6	9.9	301.6	15.6	317.2
	여성가족부	2,371	228.2	10.5	11.5	3.4	253.6	24.8	278.3
시설유형	생활시설	29,002	266.9	56.0	14.0	6.2	343.1	16.8	359.9
	이용시설	38,052	232.5	10.8	11.4	12.3	267.0	15.2	282.2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345	255.6	46.9	12.9	6.4	321.9	19.3	341.2
	지방이양	41,709	242.4	20.2	12.3	11.6	286.5	13.8	300.3
종사자규모	5인 미만	5,218	248.0	13.0	8.2	11.2	280.4	19.1	299.4
	6~10인	5,818	269.3	25.4	12.6	15.5	322.7	19.7	342.4
	11~20인 이하	9,125	260.4	25.8	13.6	14.8	314.6	18.1	332.7
	21~30인 이하	13,789	258.0	35.7	14.0	8.3	316.0	17.1	333.1
	31~40인 이하	10,337	260.2	43.6	13.6	7.9	325.3	15.9	341.2
	41~50인 이하	6,351	257.5	42.7	14.8	8.9	324.0	16.1	340.1
	51인 이상	16,416	211.2	22.5	10.5	6.7	251.0	11.3	262.2
지역	서울특별시	11,616	253.5	26.7	15.3	7.2	302.7	17.6	320.3
	부산광역시	4,676	237.9	21.5	8.8	9.2	277.4	8.8	286.2
	대구광역시	2,621	254.9	35.9	14.6	14.5	320.0	6.4	326.4
	인천광역시	3,025	254.3	26.2	11.3	5.3	297.2	18.5	315.7
	광주광역시	1,790	264.0	34.9	14.4	8.9	322.1	12.7	334.8
	대전광역시	1,679	269.0	44.9	12.3	16.6	342.8	24.8	367.5
	울산광역시	1,245	241.2	29.5	11.5	14.6	296.8	9.2	306.0
	세종특별자치시	382	263.6	40.8	17.2	4.1	325.6	31.0	356.6
	경기도	14,684	237.3	25.6	13.0	11.5	287.4	12.7	300.0
	강원도	2,750	248.4	30.0	12.6	8.0	299.0	24.7	323.7
	충청북도	3,701	239.4	33.3	11.3	10.4	294.4	15.6	310.1
	충청남도	3,571	235.2	39.5	10.5	12.3	297.5	21.4	318.9
	전라북도	3,304	247.9	33.0	9.6	10.2	300.6	15.9	316.5
	전라남도	3,506	243.2	28.9	11.8	6.1	290.0	13.2	303.2
	경상북도	3,792	258.7	43.8	15.4	8.1	326.0	8.2	334.2
	경상남도	3,388	253.4	33.9	10.8	10.4	308.4	33.3	341.7
	제주특별자치도	1,324	274.8	34.9	6.3	6.2	322.2	22.1	344.4

〈표 4-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세부시설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과 실질 월 보수액(세전)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 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					기타 수당	실질 월 보수액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소계		
전체		67,054	247.4	30.3	12.5	9.6	299.9	15.9	315.8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05	271.7	46.5	13.2	3.8	335.3	9.8	345.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207.5	36.0	7.2	11.0	261.6	10.6	272.2
	노인여가복지시설	8,755	195.2	5.5	9.4	6.0	216.2	10.0	226.1
	노인보호전문기관	249	258.5	9.1	14.5	19.2	301.3	19.9	321.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673	232.0	3.4	9.9	6.3	251.6	25.0	276.6
	소계	11,727	208.4	8.9	9.9	6.2	233.4	12.3	245.7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07	267.4	54.5	13.3	5.0	340.2	9.8	350.0
	아동일시보호시설	160	260.4	36.1	16.5	3.6	316.7	3.9	320.6
	아동보호치료시설	291	269.6	48.3	10.5	3.7	332.1	13.6	345.6
	자립지원시설	22	331.3	27.3	11.8	6.1	376.6	53.6	430.2
	공동생활가정	543	234.1	10.5	5.8	0.7	251.1	21.5	272.5
	아동상담소	31	298.1	16.3	6.0	4.2	324.6	3.4	328.0
	아동전용시설	25	252.8	16.6	13.1	2.2	284.6	9.2	293.8
	지역아동센터	1,725	207.3	3.2	3.0	1.3	214.7	20.7	235.5
	아동보호전문기관	404	241.4	17.7	11.6	1.7	272.5	23.8	296.3
	가정위탁지원센터	22	274.5	0.0	13.4	3.4	291.3	18.9	310.1
	소계	8,430	251.9	38.3	10.6	3.7	304.6	13.6	318.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102	263.0	63.5	14.9	5.6	347.1	18.7	365.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01	263.9	63.0	15.6	5.5	348.0	18.5	366.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18	263.6	58.2	12.6	3.0	337.4	15.1	352.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75	249.5	43.7	10.0	27.9	331.0	22.5	353.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05	270.4	34.0	11.7	19.2	335.3	16.9	352.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374	259.6	12.9	13.7	22.3	308.5	17.5	32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515	270.7	33.5	13.1	8.1	325.4	16.1	341.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72	265.1	17.9	1.6	23.0	307.6	14.7	322.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300.6	40.4	13.6	3.7	358.3	44.7	403.0
	소계	30,616	262.9	43.1	14.2	11.9	332.1	18.0	350.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1	304.3	61.2	10.0	9.2	384.8	19.0	403.8
	정신재활생활시설	206	327.0	35.9	14.2	4.1	381.2	21.2	402.5
	정신재활이용시설	245	321.0	18.5	17.9	4.0	361.3	16.6	378.0
	소계	2,132	308.4	53.9	11.4	8.1	381.7	19.0	400.7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1	276.1	32.9	17.2	3.9	330.2	26.4	356.6
	노숙인재활시설	531	284.1	46.9	20.0	4.5	355.5	13.9	369.3
	노숙인요양시설	566	270.6	44.0	16.6	3.9	335.2	22.9	358.1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21	260.2	17.1	15.4	3.3	296.1	7.4	303.5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274.9	33.5	20.0	4.3	332.7	5.0	337.7

구분		사례 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					기타 수당	실질 월 보수액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소계		
	쪽방상담소	25	283.9	45.8	13.9	4.7	348.3	13.0	361.3
	소계	1,517	274.6	39.9	17.7	4.0	336.2	17.4	353.7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264.0	27.5	15.4	5.1	311.9	7.2	319.1
	사회복지관	8,209	228.6	8.8	12.3	13.2	262.9	11.7	274.5
	소계	8,282	228.9	9.0	12.4	13.1	263.3	11.6	274.9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30	258.4	7.0	11.3	30.1	306.8	19.5	326.4
	소계	1,230	258.4	7.0	11.3	30.1	306.8	19.5	326.4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49	191.7	3.1	6.7	2.6	204.1	12.1	216.1
	소계	749	191.7	3.1	6.7	2.6	204.1	12.1	216.1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256.9	31.2	24.7	1.7	314.5	8.8	323.2
	청소년지원시설	38	262.1	22.4	12.9	0.7	298.0	17.3	315.3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260.4	19.9	0.0	0.0	280.3	38.0	318.3
	자활지원센터	7	216.6	0.0	0.0	0.0	216.6	131.4	348.1
	성매매피해상담소	44	234.7	4.3	5.5	1.7	246.2	38.6	284.7
	소계	103	246.6	14.2	10.2	1.2	272.2	33.3	305.5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3	225.8	6.1	4.2	1.3	237.4	22.6	259.9
	성폭력피해상담소	60	245.8	3.8	7.7	1.0	258.3	47.4	305.7
	소계	103	237.5	4.8	6.2	1.1	249.6	37.0	286.6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0	248.2	11.2	11.0	1.0	271.5	26.4	297.8
	가정폭력상담소	156	234.6	1.9	10.8	1.4	248.6	30.7	279.3
	긴급전화센터	37	217.4	22.2	9.4	3.1	252.2	17.2	269.4
	소계	313	237.8	7.9	10.7	1.5	257.8	27.4	285.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322.6	32.5	11.8	15.1	382.0	20.1	402.1
	부자가족복지시설	16	292.7	36.0	0.0	4.3	333.0	10.9	343.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57	296.0	30.4	12.3	3.6	342.3	15.7	358.0
	일시지원복지시설	28	290.4	38.9	14.9	3.6	347.9	12.9	360.8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232.0	0.0	0.0	82.2	314.2	18.1	332.3
	소계	296	301.7	31.4	11.4	8.9	353.5	16.5	370.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44	207.7	6.2	12.3	3.2	229.4	25.2	254.5
	소계	1,444	207.7	6.2	12.3	3.2	229.4	25.2	254.5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98	247.2	19.9	8.6	1.8	277.5	15.5	293.0
	청소년자립지원관	6	233.2	10.6	21.8	4.3	269.9	15.6	285.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	228.8	28.6	11.2	1.5	270.0	9.8	279.7
	소계	112	245.1	20.0	9.4	1.9	276.5	15.1	291.6

〈표 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과 실질 월 보수액(세전)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 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월 보수액					기타 수당	실질 월 보수액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소계		
전체	67,054	247.4	30.3	12.5	9.6	299.9	15.9	315.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176	277.5	59.5	15.3	7.1	359.5	18.2	377.7
생활-관리직	624	244.2	27.6	12.2	5.6	289.6	13.9	303.5
생활-기능직	2,863	216.9	50.8	11.4	5.2	284.3	15.1	299.4
생활-기타	156	202.1	24.1	8.9	2.0	237.1	8.4	245.5
생활-기타(계약직)	11	349.4	44.8	25.8	4.5	424.6	30.6	455.2
생활-기타(촉탁의사)	314	261.0	0.0	0.0	0.0	261.0	0.0	261.0
생활-사무국장	978	385.1	52.6	19.2	8.7	465.5	22.8	488.4
생활-생활지도원	11,818	243.8	58.9	12.9	5.1	320.7	14.4	335.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4	305.9	77.4	16.5	9.7	409.5	19.2	428.7
생활-시설장	1,318	409.4	34.9	19.3	9.0	472.7	32.0	504.7
이용-과장	1,450	278.9	10.7	16.2	11.9	317.8	16.9	334.7
이용-관리직 기타	683	170.9	6.0	5.6	2.3	184.9	9.4	194.3
이용-관리직(계약직)	34	191.7	3.5	3.5	0.9	199.6	1.9	201.5
이용-관리직(장애인)	1	91.6	0.0	0.0	0.0	91.6	0.0	91.6
이용-관리직1급	275	276.2	12.2	18.2	16.6	323.2	18.7	341.8
이용-관리직2급	26	334.4	18.0	19.7	6.1	378.2	11.4	389.6
이용-관리직3급	275	284.8	16.9	18.8	17.7	338.1	21.0	359.2
이용-관리직4급	2,422	215.4	9.9	10.8	14.5	250.6	12.4	263.0
이용-관장	2,533	382.5	10.9	19.4	21.5	434.3	36.2	470.6
이용-기타	3,888	151.0	2.5	2.5	2.1	158.2	8.2	166.3
이용-기타(계약직)	356	141.1	2.8	1.7	2.0	147.7	3.4	151.1
이용-기타(미기입)	863	208.9	8.8	12.6	4.9	235.2	15.6	250.8
이용-기타(보육교사)	44	71.3	0.0	0.0	0.0	71.3	0.0	71.3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207	211.3	8.2	5.1	1.1	225.7	14.4	240.0
이용-기타(촉탁의사)	6	233.3	0.0	0.0	0.0	233.3	0.0	233.3
이용-부장	781	387.4	18.7	24.4	27.7	458.2	24.9	483.0
이용-사무국장	373	404.8	38.8	22.1	28.8	494.5	26.9	521.4
이용-사무직1급	363	346.8	16.9	23.4	31.5	418.7	21.4	440.0
이용-사무직2급	37	322.7	19.2	19.8	37.1	398.8	24.6	423.3
이용-사무직3급	384	289.8	13.6	18.3	17.2	338.9	20.3	359.1
이용-사무직4급	1,430	226.2	15.1	12.5	10.5	264.3	15.9	280.2
이용-사회복지사	10,308	175.7	5.4	7.4	4.9	193.3	10.2	203.5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57	251.3	10.2	13.7	15.4	290.6	17.8	308.4
이용-의료직1급	26	211.2	5.6	14.0	6.5	237.3	18.1	255.4
이용-의료직2급	5	211.5	5.0	8.1	2.4	227.0	65.0	291.9
이용-의료직3급	843	251.6	10.1	13.8	16.5	292.1	13.5	305.7
이용-의료직4급	58	254.0	10.2	14.0	9.1	287.3	10.0	297.4
이용-일반직 기타	31	244.0	21.9	11.2	3.4	280.6	18.1	298.7
이용-일반직1급	94	355.9	19.4	16.9	37.8	430.0	23.2	453.2
이용-일반직2급	3,169	292.0	27.8	15.6	21.9	357.4	19.9	377.3
이용-일반직3급	250	296.7	13.1	13.3	46.2	369.2	17.6	386.7
이용-일반직4급	3,722	243.8	15.4	13.7	19.1	292.0	14.1	306.1
이용-일반직5급	58	232.7	5.7	4.1	12.3	254.8	12.3	267.1

나. 인건비 교부금 신청액

□ (월평균 교부금 인건비 신청액) 총 종사자 39,804명은 종사자당 기본급 (1,901천 원), 기타 후생 경비(10천 원), 제수당(416천 원), 사회보험 부담 비용(234천 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195천 원) 등 총 2,756천 원을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됨

○ (분석 기준) 분석 대상 39,804명은 급여정보에 축적된 총 69,313명의 종사자 중 22년도에 각 소속 시설에서 인건비 교부금을 신청한 종사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 종사자의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액은 2,760천 원이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 종사자는 2,630천 원이었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액은 2,652천 원이었고, 이용시설 종사자는 2,930천 원으로 생활시설이 278천 원 정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액은 2,602천 원인 반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는 2,914천 원으로 약 31만 원 정도 많았음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시설은 종사자당 월평균 2,656천 원, 21~30인 이하 시설은 2,691천 원, 31~40인 이하 시설은 2,727천 원으로 전체 평균 대비 낮았지만, 6~10인 이하 시설은 2,844천 원, 11~20인 이하 시설은 2,833천 원으로 높았음

○ (지역) 전체 17개 광역지자체 중 종사자당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월평균 3,018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2,989천 원), 경기도(2,940천 원)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종사자당 인건비 교부금 신청액이 가장 많은 시설은 자립지원시설로 3,444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전용시설 (3,416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3,231천 원)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청소년지원시설이 월평균 3,569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모자가족복지시설(3,423천 원), 일시지원복지시설 (3,364천 원)의 순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의 시설장이 3,872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국장 (3,673천 원), 선임생활지도원(2,788천 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2,687천 원), 생활지도원(2,481천 원)의 순이었음

- 반면에 이용시설에서는 사무국장이 4,079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장(3,681천 원), 부장(3,644천 원), 과장(3,149천 원), 선임사회복지사 (2,614천 원), 사회복지사 (2,469천 원)의 순이었음

〈표 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사례 수	교부금기본급	기타후생경비	제수당	사회보험부담비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	교부금합계
전체		39,804	1,901.4	10.0	415.7	234.2	194.9	2,756.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38,530	1,898.0	9.9	422.2	234.8	195.5	2,760.4
	여성가족부	1,274	2,003.9	13.3	220.9	216.5	175.2	2,629.8
시설유형	생활시설	24,938	1,755.0	7.5	477.9	223.6	188.3	2,652.3
	이용시설	14,866	2,147.0	14.2	311.5	251.9	205.8	2,930.5
재원 출처	국고지원	20,088	1,755.0	6.7	440.7	216.4	182.9	2,601.6
	지방이양	19,716	2,050.6	13.4	390.4	252.4	207.0	2,913.7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3,544	2,040.7	10.0	226.1	211.0	167.7	2,655.6
	6~10인	4,111	2,046.3	12.1	346.3	242.1	197.2	2,843.9
	11~20인 이하	4,982	1,993.2	14.4	385.8	238.1	201.8	2,833.2
	21~30인 이하	8,675	1,829.0	10.1	430.7	231.2	190.2	2,691.1
	31~40인 이하	7,639	1,826.5	4.9	466.7	232.6	196.1	2,726.8
	41~50인 이하	4,417	1,845.7	10.3	475.6	236.7	203.1	2,771.4
	51인 이상	6,436	1,885.8	11.1	466.0	243.2	202.1	2,808.1
지역	서울특별시	5,530	1,986.4	16.9	457.6	229.6	195.1	2,885.6
	부산광역시	2,548	1,811.2	5.5	302.4	212.1	175.9	2,507.1
	대구광역시	1,706	1,768.6	15.9	417.5	242.7	192.7	2,637.4
	인천광역시	1,836	1,807.1	2.4	327.4	212.4	183.2	2,532.4
	광주광역시	1,283	1,762.4	5.8	381.6	217.0	179.2	2,546.1
	대전광역시	1,141	1,783.8	15.6	441.4	231.3	194.8	2,667.0
	울산광역시	809	1,786.7	13.4	385.9	220.9	180.6	2,587.5
	세종특별자치시	263	2,303.7	15.2	342.3	182.1	146.1	2,989.4
	경기도	8,155	2,032.0	5.8	437.9	256.3	208.6	2,940.6
	강원도	1,874	1,892.4	5.8	398.3	233.0	188.7	2,718.2
	충청북도	2,298	1,884.9	16.7	437.6	251.4	195.9	2,786.5
	충청남도	1,921	1,892.3	9.5	538.8	257.5	213.3	2,911.4
	전라북도	2,059	1,791.5	13.9	424.9	224.8	191.5	2,646.7
	전라남도	2,284	1,915.5	18.3	360.0	223.1	188.6	2,705.5
	경상북도	2,882	1,774.5	5.3	439.8	217.8	190.9	2,628.3
	경상남도	2,437	1,831.1	3.2	380.9	220.9	191.1	2,627.2
	제주특별자치도	778	2,155.9	13.6	369.7	258.5	220.5	3,018.2

〈표 4-8〉 사회복지 세부시설별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사례 수	교부금 기본급	기타후 생경비	제수당	사회보험 부담비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	교부금 합계
전체		39,804	1,901.4	10.0	415.7	234.2	194.9	2,756.2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809	1,881.2	15.6	459.6	232.0	199.8	2,788.2
	노인여가복지시설	2,772	2,230.8	15.6	326.5	256.7	218.9	3,048.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474	2,340.4	15.7	284.5	264.5	218.8	3,123.9
	소계	4,055	2,173.9	15.6	348.2	252.7	215.1	3,005.4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4,522	1,780.3	10.0	458.8	223.5	187.8	2,660.4
	아동일시보호시설	77	1,527.8	20.6	425.7	192.6	164.6	2,331.4
	아동보호치료시설	257	1,644.3	6.5	345.4	199.6	171.9	2,367.6
	자립지원시설	16	2,549.9	0.6	367.4	293.0	232.8	3,443.7
	공동생활가정	404	1,973.0	4.0	109.9	143.6	113.0	2,343.6
	아동상담소	27	1,989.5	0.0	182.1	212.2	195.4	2,579.3
	아동전용시설	15	2,459.5	6.4	374.0	331.3	245.2	3,416.4
	지역아동센터	1,022	1,897.8	4.9	32.1	162.3	121.7	2,218.8
	아동보호전문기관	186	2,053.5	6.5	108.3	192.9	174.1	2,535.2
	소계	6,526	1,814.4	8.6	354.0	207.1	171.8	2,556.0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7,233	1,677.6	6.3	507.2	218.8	189.0	2,599.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067	1,667.0	5.8	514.9	221.4	183.5	2,592.7
	장애영유아거주시설	297	1,618.7	6.6	524.5	215.0	183.6	2,548.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685	1,839.7	14.9	474.9	241.5	196.0	2,767.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64	2,212.2	13.9	443.5	249.5	215.3	3,134.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478	2,154.3	14.8	328.2	263.9	213.1	2,97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70	2,202.7	16.7	498.4	284.3	229.2	3,231.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6	2,179.7	2.5	115.8	139.8	108.2	2,545.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1,286.6	0.0	13.6	0.0	0.0	1,300.1
	소계	23,337	1,848.1	9.5	464.5	237.4	197.2	2,756.6
정신건강증진 시설	정신요양시설	1,498	1,951.2	4.2	521.0	244.5	214.4	2,935.3
	정신재활생활시설	151	2,228.7	9.9	378.8	245.8	192.5	3,055.8
	정신재활이용시설	224	2,347.5	7.2	288.9	273.5	213.7	3,130.8
	소계	1,873	2,021.0	5.0	481.8	248.1	212.6	2,968.4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07	2,038.2	10.4	270.2	319.3	194.9	2,832.9
	노숙인재활시설	416	2,039.2	7.5	429.8	281.6	204.2	2,962.3
	노숙인요양시설	397	1,788.3	0.5	397.5	244.3	195.5	2,626.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68	2,156.1	125.1	187.6	278.8	207.5	2,955.0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0	2,132.8	10.2	514.7	266.3	226.7	3,150.7

구분		사례 수	교부금 기본급	기타후 생경비	제수당	사회보험 부담비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	교부금 합계
	쪽방상담소	26	2,109.1	6.7	359.3	292.9	167.1	2,935.2
	소계	1,034	1,954.0	12.9	384.8	271.0	199.6	2,822.3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62	1,852.8	4.3	342.9	217.7	198.1	2,615.8
	사회복지관	605	2,124.8	4.4	291.2	252.3	206.2	2,878.9
	소계	667	2,099.5	4.4	296.0	249.1	205.5	2,854.5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682	2,125.1	16.7	218.4	209.6	199.4	2,769.2
	소계	682	2,125.1	16.7	218.4	209.6	199.4	2,769.2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56	1,938.9	7.9	165.7	214.2	171.5	2,498.0
	소계	356	1,938.9	7.9	165.7	214.2	171.5	2,498.0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2	1,868.9	0.0	278.0	151.5	115.8	2,414.2
	청소년지원시설	27	2,376.8	39.3	670.5	246.1	236.2	3,568.8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310.7	0.0	65.8	125.5	125.3	1,627.2
	자활지원센터	5	1,978.6	0.0	50.0	247.7	263.7	2,540.0
	성매매피해상담소	22	1,391.5	2.1	40.4	91.7	70.8	1,596.5
	소계	67	1,916.7	16.5	338.0	176.8	160.7	2,608.6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5	1,780.4	0.1	32.5	131.7	114.9	2,059.7
	성폭력피해상담소	42	2,037.3	1.2	73.6	203.4	144.1	2,459.6
	소계	77	1,920.5	0.7	55.0	170.8	130.9	2,277.8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75	2,051.7	14.9	86.8	156.3	165.2	2,474.9
	가정폭력상담소	120	1,965.1	3.3	131.5	155.9	120.5	2,376.3
	소계	195	1,998.4	7.7	114.3	156.1	137.7	2,414.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4	2,456.4	2.0	444.8	275.7	244.5	3,423.4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758.5	81.8	353.4	197.5	182.1	2,573.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44	2,169.4	16.7	390.0	275.1	213.6	3,064.8
	일시지원복지시설	25	2,348.8	36.8	450.2	280.2	247.4	3,363.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1,611.8	0.0	7.5	200.6	143.8	1,963.7
	소계	271	2,246.5	17.7	407.6	270.6	223.9	3,166.4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93	1,931.6	15.5	188.6	235.5	181.7	2,553.0
	소계	593	1,931.6	15.5	188.6	235.5	181.7	2,553.0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68	1,872.9	3.4	135.7	100.7	97.6	2,210.3
	청소년자립지원관	3	1,782.9	0.0	260.7	183.9	150.1	2,377.6
	소계	71	1,869.1	3.3	141.0	104.2	99.8	2,217.4

〈표 4-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평균 인건비 교부금 신청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사례 수	교부금 기본급	기타후생경비	제수당	사회보험부담비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	교부금 합계
전체	39,804	1,901.4	10.0	415.7	234.2	194.9	2,756.2
생활-과장/생활복지사	9,273	1,771.6	6.3	487.7	229.6	191.9	2,687.1
생활-관리직	412	1,675.8	6.5	329.1	192.9	158.7	2,362.9
생활-기능직	2,419	1,520.7	6.9	441.7	199.6	168.0	2,336.9
생활-기타	19	2,109.3	1.5	492.5	228.3	234.7	3,066.3
생활-사무국장	882	2,558.5	12.3	527.8	311.4	263.1	3,673.1
생활-생활지도원	10,177	1,611.6	7.8	479.6	207.6	175.1	2,481.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696	1,808.9	6.9	543.8	231.9	196.4	2,787.8
생활-시설장	1,060	2,841.0	13.2	431.4	313.4	273.9	3,872.9
이용-과장	972	2,337.6	17.5	301.8	267.7	225.1	3,149.6
이용-관리직 기타	1	3,005.0	0.0	561.6	460.0	326.9	4,353.5
이용-관리직4급	1,209	1,987.2	12.8	322.1	243.8	199.6	2,765.4
이용-관장	1,593	2,827.7	15.9	306.1	291.9	239.9	3,681.5
이용-기타(미기입)	20	2,404.8	0.0	532.5	293.2	227.6	3,458.1
이용-부장	411	2,707.4	19.7	355.2	301.2	260.3	3,643.9
이용-사무국장	254	2,853.5	16.1	558.7	357.9	292.4	4,078.6
이용-사무직4급	772	1,853.4	10.9	324.5	231.4	186.5	2,606.8
이용-사회복지사	2,115	1,847.6	13.5	222.3	212.3	173.1	2,468.9
이용-선임사회복지사	1,727	2,005.8	8.5	203.3	214.9	181.1	2,613.6
이용-의료직1급	15	2,030.8	0.0	204.9	236.7	199.9	2,672.3
이용-의료직2급	5	1,955.5	81.8	146.6	214.9	171.2	2,570.0
이용-의료직3급	508	2,168.5	9.9	327.5	257.7	213.4	2,977.0
이용-의료직4급	37	2,125.2	1.9	380.0	261.2	211.2	2,979.4
이용-일반직1급	73	2,462.3	8.4	344.2	293.8	230.8	3,339.4
이용-일반직2급	2,773	2,142.9	15.3	391.6	266.9	213.5	3,030.2
이용-일반직3급	131	2,207.5	11.6	338.3	277.0	220.8	3,055.1
이용-일반직4급	2,248	1,962.4	17.7	333.1	250.0	200.1	2,763.3
이용-일반직5급	2	251.8	0.0	262.0	249.3	201.1	2,864.2

□ (월 보수액 대비 교부금 신청액) 총 39,804명을 대상으로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수당액을 교부금 신청금과 비교한 결과, 기본급은 69.3%를 수당은 26.0%가 교부금 신청액 비중으로 파악됨

○ (분석 기준) 실제 지급된 사회보험료에는 종사자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금에는 퇴직적립금 등 비 지출분이 포함되어 있어 교부금 신청 항목 비교 시 기본급과 수당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지급 대비 교부금 비율은 69.0%인데 반해,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76.5%로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가 약 7.5%p 높았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지급 대비 교부금 비율은 64.6%인데 반해, 이용시설 종사자는 76.8%로 이용시설이 12.2%p 높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지급 대비 교부금 비율은 65.5%인데 반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는 72.9%로 약 7.4%p 높았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기본급 지급 대비 교부금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파악됨

- 5인 이하 시설은 75.2%로 타 시설과 비교하여 기본급 지급 대비 교부금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51인 이상 시설은 68.6%에 불과했음

○ (지역) 전체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본급 지급 대비 교부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86.6%였으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75.5%), 경기도(75.0%), 서울특별시(72.3%)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기본급 지급 대비 교부금 비율이 가장 높은 세부시설은 아동전용시설로 86.7%였으며,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83.4%), 지역아동센터(82.9%) 등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자활지원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청소년지원시설(88.8%)과 가정폭력보호시설 내 가정폭력상담소(79.1%) 등의 순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의 시설장의 기본급 지급 대비 교부금 비율이 6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국장 (65.8%), 생활지도원(65.1%), 과장 및 생활복지사 (62.9%), 선임생활지도원(58.4%)의 순이었음

- 반면에 이용시설에서는 의료직과 관리직, 사무직이 매우 높은 가운데 사회복지직에서는 사회복지사가 8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선임 사회복지사 (78.9%), 과장(75.3%), 관장(75.1%), 부장(72.2%), 사무국장 (69.6%)의 순이었음

〈표 4-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보수 기본급 및 수당과 교부금 기본급 및 수당 비교

(단위: 명, 천원, %)

구분		사례 수	교부금 기본급	지급 기본급	교부금 수당	지급 수당	지급 대비 교부금 기본급 비율	지급 대비 교부금 수당비율
전체		39,804	1,901.4	2,745.2	425.8	1,634.9	69.3	26.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38,530	1,898.0	2,749.4	432.1	1,646.1	69.0	26.2
	여성가족부	1,274	2,003.9	2,619.0	234.2	1,285.8	76.5	18.2
시설유형	생활시설	24,938	1,755.0	2,715.8	485.4	1,692.8	64.6	28.7
	이용시설	14,866	2,147.0	2,794.6	325.7	1,534.1	76.8	21.2
재원 출처	국고지원	20,088	1,755.0	2,678.7	447.3	1,702.3	65.5	26.3
	지방이양	19,716	2,050.6	2,813.0	403.8	1,567.8	72.9	25.8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3,544	2,040.7	2,713.2	236.1	1,238.0	75.2	19.1
	6~10인	4,111	2,046.3	2,819.8	358.4	1,482.2	72.6	24.2
	11~20인 이하	4,982	1,993.2	2,760.7	400.2	1,608.6	72.2%	24.9
	21~30인 이하	8,675	1,829.0	2,720.9	440.8	1,629.4	67.2	27.1
	31~40인 이하	7,639	1,826.5	2,734.3	471.6	1,675.6	66.8	28.1
	41~50인 이하	4,417	1,845.7	2,744.4	485.8	1,800.8	67.3	27.0
	51인 이상	6,436	1,885.8	2,749.8	477.1	1,785.3	68.6	26.7
지역	서울특별시	5,530	1,986.4	2,746.3	474.5	1,741.2	72.3	27.3
	부산광역시	2,548	1,811.2	2,766.3	307.9	1,271.3	65.5	24.2
	대구광역시	1,706	1,768.6	2,796.9	433.4	1,751.8	63.2	24.7
	인천광역시	1,836	1,807.1	2,791.1	329.8	1,376.7	64.7	24.0
	광주광역시	1,283	1,762.4	2,775.5	387.4	1,629.4	63.5	23.8
	대전광역시	1,141	1,783.8	2,736.4	457.0	1,657.7	65.2	27.6
	울산광역시	809	1,786.7	2,679.3	399.3	1,648.9	66.7	24.2
	세종특별자치시	263	2,303.7	2,660.3	357.5	2,052.7	86.6	17.4
	경기도	8,155	2,032.0	2,709.3	443.7	1,674.6	75.0	26.5
	강원도	1,874	1,892.4	2,733.7	404.1	1,713.6	69.2	23.6
	충청북도	2,298	1,884.9	2,799.3	454.3	1,717.5	67.3	26.4
	충청남도	1,921	1,892.3	2,777.8	548.3	1,835.1	68.1	29.9
	전라북도	2,059	1,791.5	2,787.9	438.9	1,452.1	64.3	30.2
	전라남도	2,284	1,915.5	2,742.1	378.3	1,509.9	69.9	25.1
	경상북도	2,882	1,774.5	2,699.4	445.1	1,759.4	65.7	25.3
	경상남도	2,437	1,831.1	2,708.2	384.1	1,690.2	67.6	22.7
	제주특별자치도	778	2,155.9	2,853.7	383.3	1,110.6	75.5	34.5

〈표 4-11〉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보수 기본급 및 수당과 교부금 기본급 및 수당 비교

(단위: 명, 천원, %)

구분		사례 수	교부금기본급	지급 기본급	교부금 수당	지급 수당	지급 대비 교부금 기본급 비율	지급 대비 교부금 수당비율
전체		39,804	1,901.4	2,745.2	425.8	1,634.9	69.3	26.0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809	1,881.2	2,837.0	475.1	1,487.7	66.3	31.9
	노인여가복지시설	2,772	2,230.8	2,808.7	342.1	1,624.7	79.4	21.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474	2,340.4	2,910.3	300.2	1,639.0	80.4	18.3
	소계	4,055	2,173.9	2,826.1	363.8	1,598.7	76.9	22.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4,522	1,780.3	2,682.8	468.8	1,469.3	66.4	31.9
	아동일시보호시설	77	1,527.8	2,634.2	446.3	1,394.6	58.0	32.0
	아동보호치료시설	257	1,644.3	2,695.8	351.8	1,200.8	61.0	29.3
	자립지원시설	16	2,549.9	3,517.9	367.9	1,376.9	72.5	26.7
	공동생활가정	404	1,973.0	2,503.1	113.9	936.5	78.8	12.2
	아동상담소	27	1,989.5	3,100.4	182.1	587.3	64.2	31.0
	아동전용시설	15	2,459.5	2,835.9	380.5	1,680.6	86.7	22.6
	지역아동센터	1,022	1,897.8	2,288.4	37.0	744.7	82.9	5.0
	아동보호전문기관	186	2,053.5	2,461.8	114.8	1,139.6	83.4	10.1
	소계	6,526	1,814.4	2,608.2	362.6	1,338.7	69.6	27.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7,233	1,677.6	2,677.6	513.5	1,830.1	62.7	28.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067	1,667.0	2,672.4	520.8	1,870.0	62.4	27.8
	장애영유아거주시설	297	1,618.7	2,687.4	531.1	1,574.1	60.2	33.7
	장애인단기거주시설	685	1,839.7	2,543.4	489.9	1,582.0	72.3	31.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64	2,212.2	2,967.8	457.4	1,762.9	74.5	25.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478	2,154.3	2,773.3	343.0	1,533.1	77.7	2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70	2,202.7	3,105.8	515.2	1,719.1	70.9	3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6	2,179.7	3,418.3	118.2	889.0	63.8	13.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1,286.6	2,974.0	13.6	2,188.0	43.3	0.6
	소계	23,337	1,848.1	2,741.0	474.0	1,749.6	67.4	27.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498	1,951.2	3,077.2	525.2	1,509.0	63.4	34.8
	정신재활생활시설	151	2,228.7	3,353.3	388.7	1,573.2	66.5	24.7
	정신재활이용시설	224	2,347.5	3,266.0	296.1	1,600.8	71.9	18.5
	소계	1,873	2,021.0	3,121.8	486.8	1,524.9	64.7	31.9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07	2,038.2	2,836.0	280.6	1,661.8	71.9	16.9
	노숙인재활시설	416	2,039.2	2,890.2	437.3	1,896.5	70.6	23.1
	노숙인요양시설	397	1,788.3	2,757.9	398.1	1,704.8	64.8	23.3
	노숙인종합지원센터	68	2,156.1	3,040.7	312.7	1,771.8	70.9	17.6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0	2,132.8	2,905.8	524.9	1,873.5	73.4	28.0

구분		사례 수	교부금기본급	지급기본급	교부금수당	지급수당	지급 대비 교부금 기본급 비율	지급 대비 교부금 수당비율
	쪽방상담소	26	2,109.1	2,838.8	366.0	1,556.2	74.3	23.5
	소계	1,034	1,954.0	2,842.7	397.7	1,781.5	68.7	22.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62	1,852.8	2,669.6	347.1	1,296.5	69.4	26.8
	사회복지관	605	2,124.8	2,839.8	295.7	1,625.3	74.8	18.2
	소계	667	2,099.5	2,823.8	300.4	1,594.2	74.4	18.8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682	2,125.1	2,836.8	235.1	1,594.1	74.9	14.7
	소계	682	2,125.1	2,836.8	235.1	1,594.1	74.9	14.7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56	1,938.9	2,453.6	173.5	980.8	79.0	17.7
	소계	356	1,938.9	2,453.6	173.5	980.8	79.0	17.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2	1,868.9	2,623.6	278.0	2,028.7	71.2	13.7
	청소년지원시설	27	2,376.8	2,675.9	709.8	1,620.0	88.8	43.8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310.7	2,604.1	65.8	579.4	50.3	11.4
	자활지원센터	5	1,978.6	1,978.6	50.0	1,832.8	100.0	2.7
	성매매피해상담소	22	1,391.5	2,380.7	42.5	1,076.0	58.4	4.0
	소계	67	1,916.7	2,516.5	354.5	1,514.9	76.2	23.4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5	1,780.4	2,321.5	32.7	807.1	76.7	4.0
	성폭력피해상담소	42	2,037.3	2,678.9	74.8	1,121.3	76.1	6.7
	소계	77	1,920.5	2,519.0	55.7	996.5	76.2	5.6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75	2,051.7	2,641.7	101.7	932.0	77.7	10.9
	가정폭력상담소	120	1,965.1	2,485.4	134.8	1,109.7	79.1	12.1
	소계	195	1,998.4	2,544.5	122.0	1,042.8	78.5	1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4	2,456.4	3,392.5	446.8	1,397.3	72.4	32.0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758.5	2,927.2	435.2	511.7	60.1	85.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44	2,169.4	3,009.0	406.7	1,243.5	72.1	32.7
	일시지원복지시설	25	2,348.8	3,063.8	487.1	1,557.3	76.7	31.3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1,611.8	2,654.4	7.5	1,842.6	60.7	0.4
	소계	271	2,246.5	3,120.5	425.3	1,281.1	72.0	33.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93	1,931.6	2,444.8	204.1	1,418.5	79.0	14.4
	소계	593	1,931.6	2,444.8	204.1	1,418.5	79.0	14.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68	1,872.9	2,570.3	139.1	893.0	72.9	15.6
	청소년자립지원관	3	1,782.9	2,828.4	260.7	2,023.9	63.0	12.9
	소계	71	1,869.1	2,581.4	144.3	941.4	72.4	15.3

〈표 4-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보수 기본급 및 수당과 교부금 기본급 및 수당 비교

(단위: 명, 천원, %)

구분	사례 수	교부금 기본급	지급 기본급	교부금 수당	지급 수당	지급 대비 교부금 기본급 비율	지급 대비 교부금 수당비율
전체	39,804	1,901.4	2,745.2	425.8	1,634.9	69.3	26.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9,273	1,771.6	2,817.0	494.0	1,788.0	62.9	27.6
생활-관리직	412	1,675.8	2,447.1	335.6	1,325.1	68.5	25.3
생활-기능직	2,419	1,520.7	2,217.7	448.6	1,429.4	68.6	31.4
생활-기타	19	2,109.3	2,687.0	494.0	2,018.2	78.5	24.5
생활-사무국장	882	2,558.5	3,888.5	540.1	2,006.1	65.8	26.9
생활-생활지도원	10,177	1,611.6	2,476.0	487.4	1,594.1	65.1	30.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696	1,808.9	3,095.8	550.6	2,093.4	58.4	26.3
생활-시설장	1,060	2,841.0	4,138.7	444.6	2,027.3	68.6	21.9
이용-과장	972	2,337.6	3,103.0	319.3	1,712.6	75.3	18.6
이용-관리직 기타	1	3,005.0	3,005.0	561.6	2,357.3	100.0	23.8
이용-관리직4급	1,209	1,987.2	2,432.4	334.8	1,295.1	81.7	25.9
이용-관장	1,593	2,827.7	3,766.3	322.0	1,992.2	75.1	16.2
이용-기타(미기입)	20	2,404.8	2,442.3	532.5	1,736.5	98.5	30.7
이용-부장	411	2,707.4	3,750.9	374.9	2,062.3	72.2	18.2
이용-사무국장	254	2,853.5	4,099.0	574.8	2,388.7	69.6	24.1
이용-사무직4급	772	1,853.4	2,360.4	335.5	1,267.6	78.5	26.5
이용-사회복지사	2,115	1,847.6	2,261.0	235.8	1,253.6	81.7	18.8
이용-선임사회복지사	1,727	2,005.8	2,541.8	211.8	1,393.2	78.9	15.2
이용-의료직1급	15	2,030.8	2,124.9	204.9	1,285.8	95.6	15.9
이용-의료직2급	5	1,955.5	2,115.2	228.4	1,208.1	92.5	18.9
이용-의료직3급	508	2,168.5	2,622.4	337.4	1,458.7	82.7	23.1
이용-의료직4급	37	2,125.2	2,746.2	381.9	1,363.9	77.4	28.0
이용-일반직1급	73	2,462.3	3,514.0	352.5	1,864.1	70.1	18.9
이용-일반직2급	2,773	2,142.9	2,950.5	406.9	1,658.7	72.6	24.5
이용-일반직3급	131	2,207.5	2,907.0	349.9	1,555.9	75.9	22.5
이용-일반직4급	2,248	1,962.4	2,505.9	350.8	1,395.3	78.3	25.1
이용-일반직5급	2	2,151.8	2,151.8	262.0	308.9	100.0	84.8

다. 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 분석

□ (급여 데이터의 대표성 검증) 앞서 분석된 총 67,045명의 급여 데이터가 2022년 9월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총 101,179명의 급여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지와 2020년 급여 정보와의 비교분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 급여 데이터를 재분석

○ (분석 데이터와의 차이) 전체 시설 중 수가시설과 법 개정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을 제거 후, 교부금 신청이 이루어진 4,739개 69,313명의 급여자료 중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와 일용직을 제외한 67,054명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분석함

- (실태조사의 연속성 확보)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수가 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급여 수준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가 시설을 제외한 후 급여를 분석

□ (데이터 처리결과) 2022년 9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내 수가제외 시설 종사자 68,482명의 98.0%인 67,054명이 급여분석 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

○ (보수 수준) 수가 제외시설 68,482명의 월평균 보수액은 315.7만 원으로 급여분석 시설 종사자 월평균 보수액인 315.8만 원과 약 1천 원 정도의 차이만이 존재

○ (2020년 조사 대비) 2023년 조사대상 전체 시설의 연평균 보수액은 3,46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6.7% 하였고, 이중 급여분석 수가 시설은 5.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표 4-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정보 데이터 처리결과와 월 보수수준

(단위: 명, 원)

구분	종사자수	기본급	일용 잡급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기타수당	월 보수액
전체	98,908	2,293,327	11	262,588	67,945	548,752	168,480	2,883,809
수가 제외 시설	68,482	2,474,312	15	301,332	95,661	750,015	160,914	3,157,236
수가시설	30,426	1,885,971	3	175,384	5,563	95,754	185,508	2,268,389
급여분석 시설	67,054	2,476,974	0	302,979	96,451	753,666	158,994	3,157,791

주: 전체 종사자 101,179명에서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와 일용직 2,271명을 제외한 98,908명을 분석

〈표 4-14〉 2023년 대비 2022년 전체 조사 대상의 보수수준

(단위: 명, 원)

구분	'23년 조사		'20년 조사	
	월 평균보수액(만원)	연평균보수액(만원)	연평균보수액(만원)	증가율(%)
전체 시설	288.3	3,460	3,243	6.7[31]
급여분석시설(수가제외시설)	315.7	3,789	3,593	5.5

31) (유의사항) '20년 조사의 모집단 구성과 '23년 조사의 모집단 구성 차이로 인해 1%p.의 보수금액 증가 발생 (수가제외시설 비

□ (기존 실태조사 대비 급여 비교) 2022년 기준 전체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은 3,789.4만 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2019년 실태조사 종사자 연 보수액인 3,592.9만 원 대비 약 5.5% 상승한 금액임

○ (보수수준 비교) 본고에서는 기존 실태조사 방법을 행정자료 분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시설장 설문조사 응답으로 분석된 보수 수준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보수수준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 연 보수액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

- (기존 실태조사) 시설장 대상 설문에서 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연 보수액과 연 기본급액, 그리고 내역이 없는 연 수당액과 연 성과급액을 세전금액으로 응답받음
- (2023년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 9월 기준 월 금액(기본급이외 기타 수당 내역 합산)을 실질 연 보수액으로 환산

○ (기본급 총액) 2020년 종사자 67,054명의 연평균 기본급은 2,968.5만 원으로 2019년 종사자 9,392명의 연평균 기본급 2,863.3만 원 대비 3.7% 상승

○ (수당+성과급 총액) 기본급 외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더한 금액은 2022년 820.9만 원으로 2019년(729.6만 원) 대비 12.5%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2019년 대비 연 보수액이 4.2% 상승한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8.7% 상승해 약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5〉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단위: 만원, %)

구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금액	2013 실태조사 대비 상승분	금액	2016 실태조사 대비 상승분	금액	2019 실태조사 대비 상승분
전체		연 보수액	2,859.3	3,339.2	16.8	3,592.9	7.6	3,789.4	5.5%
		연 기본급액	2,040.1	2,538.0	24.4	2,863.3	12.8	2,968.5	3.7%
		연 수당+성과급액	840.1	801.2	-4.6	729.6	-8.9	820.9	1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 보수액	2,913.4	3,394.1	16.5	3,653.1	7.6	3,805.8	4.2%
		연 기본급액	2,068.6	2,566.8	24.1	2,897.1	12.9	2,977.0	2.8%
		연 수당+성과급액	865.2	827.3	-4.4	756.0	-8.6	828.8	9.6%
	여성가족부	연 보수액	2,176.9	2,526.1	16.0	3,072.0	21.6	3,340.2	8.7%
		연 기본급액	1,685.8	2,111.5	25.3	2,570.1	21.7	2,737.8	6.5%
		연 수당+성과급액	503.8	414.6	-17.7	501.9	21.1	602.4	20.0%
재정원천	국고지원시설	연 보수액				3,526.0		4,094.2	16.1%
		연 기본급액				2,759.2		3,067.4	11.2%
		연 수당+성과급액				766.8		1,026.8	33.9%
	지방이양시설	연 보수액				3,654.2		3,604.2	-1.4%
		연 기본급액				2,958.7		2,908.5	-1.7%
		연 수당+성과급액				695.6		695.7	0.0%

주: 1.2022년 연보수액은 실질 연보수액을 의미

중 '20년 66% → '23년 69%). 이를 제외한 전체시설의 보수수준 실제 증가율은 5.7%로 계산됨

○ (세부시설별) 2019년 대비 2022년 실질 연 보수액이 전체 평균 5.5% 대비 크게 상승한 시설들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31.3%), 아동공동생활가정(29.6%), 다함께돌봄센터(65.9%), 청소년회복지원시설(66.3%) 등이었음

- (호봉제 도입시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인건비 단가지원 방식을 지자체 호봉제로 전환하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29.6%), 지역아동센터(22.0%), 그리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및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연 보수총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표 4-16〉 2019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세부시설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단위: 만 원, 명, %)

구분		2019년		2022년		
		분석대상 수	연 보수액	분석대상 수	실질 연 보수액	2019년 대비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9	3,501.7	1,005	4,140.8	18.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1	2,487.2	45	3,266.0	31.3
	노인여가복지시설	541	3,220.4	8,755	2,713.5	-15.7
	노인보호전문기관	37	3,298.2	249	3,854.3	16.9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11	2,701.4	1,673	3,319.6	22.9
	소계	3994	2,685.8	11,727	2,948.6	9.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308	4,020.6	5,207	4,200.5	4.5
	아동일시보호시설	39	3,847.9	160	3,847.4	0.0
	아동보호치료시설	81	4,054.8	291	4,147.8	2.3
	자립지원시설	12	4,947.0	22	5,162.1	4.3
	공동생활가정	36	2,524.0	543	3,270.0	29.6
	아동상담소	16	3,704.8	31	3,936.3	6.2
	아동전용시설	12	3,972.3	25	3,526.0	-11.2
	지역아동센터	432	2,315.3	1,725	2,825.5	22.0
	아동보호전문기관	74	3,414.9	404	3,555.8	4.1
	가정위탁지원센터	50	3,426.3	22	3,721.7	8.6
	소계	1,071	3,205.8	8,430	3,818.1	19.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531	4,085.5	8,102	4,388.6	7.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510	4,112.0	7,801	4,397.7	6.9
	장애영유아거주시설	106	4,048.0	318	4,230.0	4.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1	3,519.2	875	4,242.1	20.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4	3,453.6	405	4,226.5	22.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833	3,534.8	9,374	3,912.0	1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01	4,303.6	3,515	4,098.2	-4.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6	4,909.3	172	3,867.5	-21.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8	4,215.0	54	4,836.0	14.7
	소계	2,410	3,921.1	30,616	4,201.5	7.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207	4,611.7	1,681	4,845.8	5.1
	정신재활생활시설	28	4,404.8	206	4,829.5	9.6
	정신재활이용시설	46	4,172.1	245	4,535.6	8.7

구분		2019년		2022년		
		분석대상 수	연 보수액	분석대상 수	실질 연 보수액	2019년 대비
	소계	281	4,519.1	2,132	4,808.6	6.4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5	3,753.9	151	4,279.2	14.0
	노숙인재활시설	104	4,116.3	531	4,432.0	7.7
	노숙인요양시설	32	4,156.2	566	4,296.7	3.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55	3,814.1	221	3,641.6	-4.5
	노숙인일시보호시설	31	3,772.4	23	4,052.8	7.4
	쪽방상담소	40	4,051.9	25	4,335.5	7.0
	소계	287	3,985.1	1,517	4,243.8	6.5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28	3,896.3	73	3,829.7	-1.7
	사회복지관	531	3,554.7	8,209	3,294.4	-7.3
	소계	559	3,571.9	8,282	3,299.1	-7.6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8	3,355.3	1,230	3,916.5	16.7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9	1,563.4	749	2,593.5	65.9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5	3,338.6	13	3,878.8	16.2
	청소년지원시설	21	3,111.0	38	3,784.0	21.6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5	2,690.1	1	3,820.2	42.0
	자활지원센터	9	2,999.1	7	4,176.7	39.3
	성매매피해상담소	11	3,155.9	44	3,416.9	8.3
	소계	65	3,111.1	103	3,666.2	17.8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1	2,604.1	43	3,119.3	19.8
	성폭력피해상담소	25	2,882.5	60	3,668.4	27.3
	소계	46	2,755.4	103	3,439.2	24.8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5	3,232.0	120	3,573.7	10.6
	가정폭력상담소	35	2,715.3	156	3,352.0	23.4
	긴급전화센터	74	3,060.2	37	3,232.5	5.6
	소계	134	3,002.2	313	3,422.9	14.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20	4,307.5	88	4,824.7	12.0
	부자가족복지시설	12	3,803.2	16	4,126.6	8.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4	4,608.8	157	4,296.1	-6.8
	일시지원복지시설	15	4,196.0	28	4,329.3	3.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5	2,581.4	7	3,988.2	54.5
	소계	66	4,123.6	296	4,439.9	7.7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8	2,722.5	1,444	3,054.1	12.2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48	3,062.9	98	3,515.8	14.8
	청소년자립지원관	13	2,822.7	6	3,425.6	21.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	1,260.5	8	3,356.9	166.3
	소계	124	3,270.9	112	3,499.6	7.0

주 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일부 시설의 2019년 자료는 분석 대상자가 적거나, 응답기입 오류로 나타난 분석 결과라고 판단됨

○ (직위별) 2019년 대비 2022년에 연 보수총액이 약 20% 이상 상승한 종사자는 생활 및 이용시설 모두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직 보다 관리자 등 고위 직위가 높게 상승함

- (생활시설) 2019년 대비 2022년 3년간 생활지도원의 연 보수 상승분은 3.9%에 불과한 반면, 사무국장은 29.8%, 시설장은 24.3%로 높게 나타남
- (이용시설) 동시간 사회복지사의 연 보수 상승분은 -11.2%, 선임사회복지사는 9.4%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무직1급은 59.2%, 일반직1급은 27.6%, 관장은 25.5% 였음

〈표 4-17〉 2019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단위: 만 원, 명, %)

구분	2019			2022			보수수준 변화	
	분석 대상수	연보수액	기본급	분석 대상수	실질 연보수액	기본급	연 보수액 상승분	기본급 상승분
생활-과장/생활복지사	470	3,718.3	2,927.3	10,176	4,531.9	3,330.6	21.9	13.8
생활-관리직	203	3,065.6	2,466.2	624	3,642.3	2,929.8	18.8	18.8
생활-기능직	468	2,917.1	2,285.6	2,863	3,593.4	2,602.7	23.2	13.9
생활-사무국장	182	4,513.5	3,660.7	978	5,860.4	4,620.7	29.8	26.2
생활-생활지도원	965	3,872.2	2,788.3	11,818	4,021.8	2,925.9	3.9	4.9
생활-시설장	247	4,871.7	4,068.6	1,318	6,056.7	4,913.2	24.3	20.8
이용-과장	474	4,037.0	3,316.0	1,450	4,016.8	3,347.2	-0.5	0.9
이용-관리직1급	24	3,565.5	2,984.8	275	4,101.9	3,315.0	15.0	11.1
이용-관리직2급	30	3,792.5	3,027.9	26	4,675.3	4,013.0	23.3	32.5
이용-관리직3급	49	3,369.9	2,660.3	275	4,310.3	3,417.0	27.9	28.4
이용-관리직4급	75	2,548.7	2,138.6	2,422	3,155.5	2,584.8	23.8	20.9
이용-관장	392	4,498.0	3,822.7	2,533	5,647.0	4,590.5	25.5	20.1
이용-부장	148	4,924.2	4,022.4	781	5,796.3	4,648.2	17.7	15.6
이용-사무국장	20	5,419.6	4,451.4	373	6,256.7	4,857.0	15.4	9.1
이용-사무직1급	28	3,317.8	2,636.5	363	5,280.6	4,162.0	59.2	57.9
이용-사무직2급	12	3,515.7	2,908.9	37	5,079.7	3,872.8	44.5	33.1
이용-사무직3급	26	3,283.5	2,598.4	384	4,309.5	3,478.0	31.2	33.9
이용-사무직4급	70	2,792.8	2,264.0	1,430	3,362.9	2,714.7	20.4	19.9
이용-사회복지사	1065	2,751.9	2,352.5	10,308	2,442.4	2,107.9	-11.2	-10.4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16	3,383.8	2,785.2	3,057	3,700.9	3,015.2	9.4	8.3
이용-의료직1급	34	2,597.9	2,246.8	26	3,064.9	2,534.3	18.0	12.8
이용-의료직2급	14	3,842.4	2,931.5	5	3,502.9	2,538.2	-8.8	-13.4
이용-의료직3급	53	3,352.5	2,691.0	843	3,668.1	3,019.7	9.4	12.2
이용-의료직4급	50	3,056.1	2,604.4	58	3,568.5	3,048.0	16.8	17.0
이용-일반직1급	13	4,263.1	3,467.7	94	5,438.8	4,270.8	27.6	23.2
이용-일반직2급	42	4,742.8	3,707.1	3,169	4,528.0	3,504.5	-4.5	-5.5
이용-일반직3급	79	3,947.7	3,234.1	250	4,640.9	3,560.1	17.6	10.1
이용-일반직4급	193	3,299.8	2,687.9	3,722	3,673.1	2,925.5	11.3	8.8
이용-일반직5급	32	3,152.6	2,704.5	58	3,205.2	2,792.3	1.7	3.2

주 1. 2019년 대비 2022년 비교대상은 동일시설 동일직급하에서만 분석, 2019년 실태조사에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 직위별 비교직급 이외에 간호사, 상담지도원 등 개별 자격증 소유여부로 종사자를 분류하여 22년 실태조사와 비교가 불가능한 직위가 존재

□ (전산업 대비 월 보수액 비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임금총액은 315.8만 원으로 전산업 평균 352.6만 원 대비 약 10.4% 낮은 수준이며, 그 이유는 기본급인 정액급여가 전체 평균보다 낮기 때문

○ (분석 기준) 월 임금 총액=월 급여액+연간 특별급여, 월 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 정액급여=월 기본급, 초과급여=월 시간외수당+ 월 기타수당, 연간 특별급여=월 명절휴가비

○ (연간 특별급여) 성과급 경향의 연간특별급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균 12.5만 원으로 전체 평균 35.5만 원 대비 절반 이하 수준

○ (정액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급은 247.4만 원으로 전산업 평균 299.2만 원 보다 약 17% 낮은 편으로 세부산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초과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각종 수당액이 평균 55.9만 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 18만 원 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월 급여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월 평균 303.3만 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 급여액 317.2만 원보다 약 5% 정도 낮은 수준이었음

○ (월 임금총액) 하지만 명절휴가비 등 낮은 연간 특별급여액으로 인해 월 임금총액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약 9%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4-18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임금 비교(세전)

(단위: 천 원)

구분		월 임금 총액	월급여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158	3,033	2,474	559	125
전산업	전체	3,526	3,172	2,992	180	355
	농업, 임업 및 어업	3,113	2,748	2,667	81	364
	광업	4,298	3,917	3,487	430	381
	제조업	4,114	3,550	3,136	414	56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268	4,932	4,604	328	1,33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937	3,621	3,286	335	317
	건설업	3,094	2,977	2,889	89	116
	도매 및 소매업	3,425	3,163	3,086	76	262
	운수 및 창고업	3,583	3,228	2,934	294	356
	숙박 및 음식점업	1,707	1,681	1,615	67	26
	정보통신업	4,624	4,204	4,077	126	421
	금융 및 보험업	6,415	4,769	4,624	145	1,646
	부동산업	2,741	2,585	2,532	53	1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809	4,187	4,084	103	62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58	2,825	2,656	169	233
	교육 서비스업	3,143	2,957	2,909	48	18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23	2,611	2,501	110	1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47	2,418	2,297	121	1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67	2,501	2,434	66	167

주: 전산업 자료는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참조

제2절 지급 실태

가. 종사자 기준 급여 형태

□ (종사자 급여 형태) 총 4,739개 시설 69, 313명 종사자의 급여 형태는 시급직, 일급직, 월급직, 연봉직으로 구분되며, 그중 월급직이 8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봉직 12.3%, 시급직 3.3% 순이었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총 66,875명 중 12.3%가,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총 2,438명 중 12.7%가 연봉직임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 중 10.5%, 이용시설 13.6%가 연봉직으로 이용시설 종사자가 3.1%p 높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중 연봉직은 9.5%에 불과하였지만 지방이양시설은 13.9%임

○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사업장은 연봉직 비중이 10%대를 상회함.

- 6~10인 이하(16.2%), 11~20인 이하(14.7%), 41~50인 이하(13.8%) 사업장은 연봉직 비율이 10%대 이상이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 연봉직 비율이 전체 평균 12.3%보다 큰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39.8%), 울산광역시(25.7%), 대구광역시(21.7%) 등이었음

- 한편 시급직 종사자가 많은 지역으로는 울산광역시(12.5%), 전라북도(8.5%)에서 전체 평균 3.3%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연봉직 적용 평균(12.3%)보다 높은 시설로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50.6%), 가정위탁지원센터(50.0%), 아동일시보호시설 (48.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42.2%) 등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중에 연봉직이 많은 시설은 성매매피해지원시설(25.2%) 내 성매매피해상담소(40.9%), 성폭력피해보호시설(22.6%) 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52.2%), 청소년복지시설(21.7%) 내 청소년쉼터(25.0%)에서 연봉제 비율이 높았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 연봉직 비중이 높은 직위는 관리직으로(12.2%) 전체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음

- 이용시설에서는 관리직2급(38.5%), 일반직5급(48.3%), 의료직2급(60.0%), 촉탁의사(44.4%) 등에서 타 직위 대비 높게 나타남

〈표 4-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임금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시급직		일급직		월급직		연봉직	
			명	%	명	%	명	%	명	%
전체		69,313	2,287	3.3	137	0.2	58,386	84.2	8,503	1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2,141	3.2	125	0.2	56,415	84.4	8,194	12.3
	여성가족부	2,438	146	6.0	12	0.5	1,971	80.8	309	12.7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438	1.5	15	0.1	25,862	88.0	3,088	10.5
	이용시설	39,910	1,849	4.6	122	0.3	32,524	81.5	5,415	13.6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529	2.1	28	0.1	22,748	88.3	2,453	9.5
	지방이양	43,555	1,758	4.0	109	0.3	35,638	81.8	6,050	13.9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43	0.8	1	0.0	4,772	89.8	497	9.4
	6~10인	5,929	45	0.8	10	0.2	4,916	82.9	958	16.2
	11~20인 이하	9,441	153	1.6	19	0.2	7,883	83.5	1,386	14.7
	21~30인 이하	14,183	319	2.2	9	0.1	12,354	87.1	1,501	10.6
	31~40인 이하	10,729	372	3.5	13	0.1	9,064	84.5	1,280	11.9
	41~50인 이하	6,563	160	2.4	21	0.3	5,476	83.4	906	13.8
	51인 이상	17,155	1,195	7.0	64	0.4	13,921	81.1	1,975	11.5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155	1.3	12	0.1	10,487	88.1	1,255	10.5
	부산광역시	4,802	230	4.8	·	·	4,083	85.0	489	10.2
	대구광역시	2,711	119	4.4	4	0.1	2,000	73.8	588	21.7
	인천광역시	3,114	28	0.9	9	0.3	2,813	90.3	264	8.5
	광주광역시	1,820	48	2.6	·	·	1,442	79.2	330	18.1
	대전광역시	1,718	44	2.6	3	0.2	1,554	90.5	117	6.8
	울산광역시	1,321	165	12.5	·	·	816	61.8	340	25.7
	세종특별자치시	409	15	3.7	·	·	367	89.7	27	6.6
	경기도	15,203	535	3.5	19	0.1	12,255	80.6	2,394	15.7
	강원도	2,907	99	3.4	·	·	2,632	90.5	176	6.1
	충청북도	3,969	151	3.8	70	1.8	3,287	82.8	461	11.6
	충청남도	3,640	80	2.2	2	0.1	3,335	91.6	223	6.1
	전라북도	3,406	288	8.5	4	0.1	2,799	82.2	315	9.2
	전라남도	3,684	155	4.2	11	0.3	3,088	83.8	430	11.7
	경상북도	3,863	25	0.6	·	·	3,630	94.0	208	5.4
	경상남도	3,489	140	4.0	2	0.1	2,998	85.9	349	10.0
	제주특별자치도	1,348	10	0.7	1	0.1	800	59.3	537	39.8

〈표 4-20〉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급여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시급직		일급직		월급직		연봉직	
			명	%	명	%	명	%	명	%
전체		69,313	2,287	3.3	137	0.2	58,386	84.2	8,503	12.3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32	3.1	1	0.1	810	79.6	174	17.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45	·	·	·	·	26	57.8	19	42.2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215	2.4	61	0.7	7,647	86.4	932	10.5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	·	·	·	210	83.0	43	17.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3	0.2	7	0.4	1,561	90.9	146	8.5
	소계	11,887	250	2.1	69	0.6	10,254	86.3	1,314	11.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1	0.0	·	·	4,571	86.8	694	13.2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	·	·	·	83	51.6	78	48.4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	·	3	1.0	285	96.3	8	2.7
	자립지원시설	22	·	·	·	·	15	68.2	7	31.8
	공동생활가정	558	13	2.3	2	0.4	471	84.4	72	12.9
	아동상담소	37	6	16.2	·	·	24	64.9	7	18.9
	아동전용시설	25	·	·	·	·	24	96.0	1	4.0
	지역아동센터	1,779	27	1.5	5	0.3	1,678	94.3	69	3.9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10	2.3	·	·	313	72.6	108	25.1
	가정위탁지원센터	22	·	·	·	·	11	50.0	11	50.0
	소계	8,597	57	0.7	10	0.1	7,475	86.9	1,055	12.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8,213	176	2.1	4	0.0	7,273	88.6	760	9.3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94	1.2	3	0.0	7,119	90.2	677	8.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	·	·	·	323	100.0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9	1.0	·	·	772	86.5	111	12.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17	4.0	·	·	357	84.2	50	11.8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9,900	706	7.1	12	0.1	7,378	74.5	1,804	18.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357	8.4	17	0.4	3,231	75.8	655	15.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	·	·	·	89	49.4	91	50.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54	·	·	·	·	54	100.0	·	·
	소계	32,139	1,359	4.2	36	0.1	26,596	82.8	4,148	12.9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62	3.7	·	·	1,495	88.5	132	7.8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1	0.5	·	·	186	88.2	24	11.4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4	1.6	1	0.4	195	78.3	49	19.7
	소계	2,149	67	3.1	1	0.0	1,876	87.3	205	9.5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	·	·	·	148	96.1	6	3.9
	노숙인재활시설	535	21	3.9	·	·	474	88.6	40	7.5
	노숙인요양시설	568	2	0.4	·	·	546	96.1	20	3.5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240	22	9.2	·	·	176	73.3	42	17.5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	·	·	·	23	100.0	·	·
	쪽방상담소	26	·	·	·	·	26	100.0	·	·
	소계	1,546	45	2.9	·	·	1,393	90.1	108	7.0

구분		사례 수	시급직		일급직		월급직		연봉직	
			명	%	명	%	명	%	명	%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	.	2	2.7	60	82.2	11	15.1
	사회복지관	8,475	362	4.3	7	0.1	7,006	82.7	1,100	13.0
	소계	8,548	362	4.2	9	0.1	7,066	82.7	1,111	13.0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	.	.	.	1,056	85.0	187	15.0
	소계	1,243	.	.	.	.	1,056	85.0	187	15.0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1	0.1	.	.	699	91.3	66	8.6
	소계	766	1	0.1	.	.	699	91.3	66	8.6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	.	.	.	12	92.3	1	7.7
	청소년지원시설	38	.	.	.	.	32	84.2	6	15.8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	.	.	.	1	100.0
	자활지원센터	7	.	.	.	.	7	100.0	.	.
	성매매피해상담소	44	.	.	.	.	26	59.1	18	40.9
	소계	103	.	.	.	.	77	74.8	26	25.2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	.	.	.	22	47.8	24	52.2
	성폭력피해상담소	60	.	.	.	.	60	100.0	.	.
	소계	106	.	.	.	.	82	77.4	24	22.6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	.	.	.	125	100.0	.	.
	가정폭력상담소	161	5	3.1	.	.	142	88.2	14	8.7
	긴급전화센터	39	1	2.6	.	.	38	97.4	.	.
	소계	325	6	1.8	.	.	305	93.8	14	4.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	.	.	.	63	71.6	25	28.4
	부자가족복지시설	16	.	.	.	.	16	100.0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	.	.	.	154	95.7	7	4.3
	일시지원복지시설	29	.	.	.	.	21	72.4	8	27.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	.	.	.	7	100.0	.	.
	소계	301	.	.	.	.	261	86.7	40	13.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88	140	9.4	12	0.8	1,156	77.7	180	12.1
	소계	1,488	140	9.4	12	0.8	1,156	77.7	180	12.1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	.	.	.	75	75.0	25	25.0
	청소년자립지원관	6	.	.	.	.	6	100.0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	.	.	.	9	100.0	.	.
	소계	115	.	.	.	.	90	78.3	25	21.7

〈표 4-21〉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종사자의 급여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시급직		일급직		월급직		연봉직	
		명	%	명	%	명	%	명	%
전체	69,313	2,287	3.3	137	0.2	58,386	84.2	8,503	12.3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149	1.4	1	0.0	9,128	88.7	1,012	9.8
생활-관리직	629	4	0.6	1	0.2	547	87.0	77	12.2
생활-기능직	2,901	51	1.8	6	0.2	2,559	88.2	285	9.8
생활-기타	173	26	15.0	3	1.7	133	76.9	11	6.4
생활-기타(계약직)	11	.	.	.	.	11	100.0	.	.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2	0.6	.	.	285	90.2	29	9.2
생활-사무국장	989	14	1.4	.	.	876	88.6	99	10.0
생활-생활지도원	11,989	171	1.4	3	0.0	10,474	87.4	1,341	11.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11	1.5	.	.	662	88.7	73	9.8
생활-시설장	1,359	10	0.7	1	0.1	1,187	87.3	161	11.8
이용-과장	1,476	6	0.4	1	0.1	1,256	85.1	213	14.4
이용-관리직 기타	790	72	9.1	.	.	596	75.4	122	15.4
이용-관리직(계약직)	35	1	2.9	.	.	28	80.0	6	17.1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3	100.0	.	.	.	.	.	.
이용-관리직1급	281	2	0.7	.	.	227	80.8	52	18.5
이용-관리직2급	26	.	.	.	.	16	61.5	10	38.5
이용-관리직3급	276	.	.	.	.	232	84.1	44	15.9
이용-관리직4급	2,473	40	1.6	4	0.2	2,028	82.0	401	16.2
이용-관장	2,616	2	0.1	.	.	2,269	86.7	345	13.2
이용-기타	5,008	1,327	26.5	50	1.0	3,325	66.4	306	6.1
이용-기타(계약직)	470	26	5.5	2	0.4	406	86.4	36	7.7
이용-기타(미기입)	886	44	5.0	4	0.5	656	74.0	182	20.5
이용-기타(보육교사)	44	44	100.0	.	.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	.	.	.	178	85.6	30	14.4
이용-기타(촉탁의사)	9	.	.	.	.	5	55.6	4	44.4
이용-부장	782	.	.	.	.	668	85.4	114	14.6
이용-사무국장	375	.	.	.	.	293	78.1	82	21.9
이용-사무직1급	365	1	0.3	.	.	294	80.5	70	19.2
이용-사무직2급	37	.	.	.	.	30	81.1	7	18.9
이용-사무직3급	386	.	.	.	.	330	85.5	56	14.5
이용-사무직4급	1,491	45	3.0	.	.	1,263	84.7	183	12.3
이용-사회복지사	10,396	182	1.8	56	0.5	9,023	86.8	1,135	10.9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	.	.	.	2,752	89.1	337	10.9
이용-의료직1급	26	.	.	.	.	24	92.3	2	7.7
이용-의료직2급	5	.	.	.	.	2	40.0	3	60.0
이용-의료직3급	860	24	2.8	5	0.6	649	75.5	182	21.2
이용-의료직4급	58	5	8.6	.	.	42	72.4	11	19.0
이용-일반직 기타	31	.	.	.	.	23	74.2	8	25.8
이용-일반직1급	94	1	1.1	.	.	71	75.5	22	23.4
이용-일반직2급	3,197	6	0.2	.	.	2,607	81.5	584	18.3
이용-일반직3급	250	.	.	.	.	229	91.6	21	8.4
이용-일반직4급	3,799	4	0.1	.	.	2,976	78.3	819	21.6
이용-일반직5급	58	4	6.9	.	.	26	44.8	28	48.3

나. 시설기반 급여지급 기준

□ (전체) 총 4,739개 시설의 주된 임금 지급기준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시설이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 자체 호봉체계(36.6%), 지자체 호봉표(22.3%), 인건비 단가 지원(1.9%), 별도 기준 없음(0.3%)의 순이었음

□ (지역분포)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종사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가 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47.9%), 제주특별자치도(45.8%), 대구광역시(43.9%)의 순이었음

○ (사업 자체 호봉표 적용) 전체 평균 36.6%보다 높은 지역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충청북도(45.7%), 강원도(43.6%)의 순이었음

○ (지자체 호봉표 사용) 전체 평균 22.3%보다 높은 지역으로는 전라남도가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경상남도(25.3%), 경기도(24.4%)의 순이었음

〈표 4-22〉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사업 자체 호봉체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 단가 지원	지자체 호봉표	별도 기준 없음
전체	4,739	36.6	38.9	1.9	22.3	0.3
서울특별시	821	31.8	41.4	2.6	24.1	0.1
부산광역시	303	32.0	47.9	3.0	17.2	-
대구광역시	164	39.0	43.9	1.2	15.9	-
인천광역시	218	33.0	48.6	1.8	16.1	0.5
광주광역시	151	43.0	33.1	1.3	22.5	-
대전광역시	138	45.7	37.0	0.7	15.9	0.7
울산광역시	103	35.9	36.9	4.9	21.4	1.0
세종특별자치시	28	46.4	35.7	-	14.3	3.6
경기도	958	35.3	38.2	1.3	24.4	0.8
강원도	202	43.6	35.6	1.0	19.8	-
충청북도	245	45.7	37.6	1.2	15.1	0.4
충청남도	221	39.8	39.4	0.9	19.5	0.5
전라북도	223	34.1	38.6	1.8	25.6	-
전라남도	304	32.9	31.9	2.0	32.9	0.3
경상북도	289	39.1	34.3	1.4	25.3	-
경상남도	288	38.5	33.3	2.8	25.3	-
제주특별자치도	83	43.4	45.8	3.6	7.2	-

□ (소관부처) 임금 지급기준이 인건비가이드라인인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4,514개 시설 중 40.9%였고,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225개 중 존재하지 않았음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률이 높은 시설은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83.6%), 정신건강증진시설(70.1%)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인건비 단가 지원이 전체 평균 3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업자체 호봉체계(33.3%), 지자체 호봉표(27.6%)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시설 중 사업자체 호봉체계를 따르는 시설로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장애영유아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직업재활시설(100%)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숙인시설(100.0%), 지역자활센터(100.0%)였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사업자체 호봉체계를 따르는 세부시설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00.0%)가 있었으며 그 이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은 인건비 단가지원 기준(100.0%)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됨

□ (시설유형) 전체 생활시설은 임금 지급기준으로 인건비가이드라인(16.0%)보다는 자체 사업 호봉체계 적용 비율이 69.1%로 높은 반면에, 이용시설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51.0%)이 사업자체 호봉체계(19.5%) 적용보다 높았음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생활시설 중 사업자체 호봉체계 적용률이 높은 시설로는 노숙인시설(100.0%)과 지역자활센터(100.0%), 장애인복지시설(99.5%)등이었으며, 이용시설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률이 높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100.0%)과 사회복지관(100.0%)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등 생활시설의 경우 인건비 단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성매매피해지원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들은 지자체호봉표를 적용하는 경우가 100%였음

□ (재원 출처) 국고 지원시설은 지자체 호봉표를 적용하는 경우가 53.5%인 반면에 지방이양시설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율이 64.1%였음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국고지원 시설 중 아동복지시설(97.0%), 다함께돌봄센터(100.0%) 등에서 지자체 호봉표 적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이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사회복지관(100.0%)에서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률이 높았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국고지원시설 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00.0%)가 자체사업 호봉표를 적용받고 있었음

〈표 4-23〉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사업 자체 호봉체계		인건비가이드라인		인건비 단가 지원		지자체 호봉표		별도 기준 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1,734	36.6	1,845	38.9	88	1.9	1,056	22.3	16	0.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81	70	14.6	402	83.6	·	·	·	·	9	1.9
	아동복지시설	995	·	·	230	23.1	·	·	765	76.9	·	·
	장애인복지시설	2,139	1,358	63.5	774	36.2	·	·	·	·	7	0.3
	정신건강증진시설	147	44	29.9	103	70.1	·	·	·	·	·	·
	노숙인시설	77	77	100.0	·	·	·	·	·	·	·	·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36	·	·	336	100.0	·	·	·	·	·	·
	지역자활센터	110	110	100.0	·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229	·	·	·	·	·	·	229	100.0	·	·
	계	4,514	1,659	36.8	1,845	40.9	·	·	994	22.0	16	0.4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5	·	·	·	·	9	60.0	6	40.0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	·	·	·	·	·	·	21	100.0	·	·
	가정폭력보호시설	52	·	·	·	·	17	32.7	35	67.3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0	·	·	·	·	60	100.0	·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61	100.0	·	·	·	·	·	·	·	·
	청소년복지시설	16	14	87.5	·	·	2	12.5	·	·	·	·
	계	225	75	33.3	·	·	88	39.1	62	27.6	·	·

〈표 4-24〉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사업 자체 호봉체계		인건비가이드라인		인건비 단가 지원		지자체 호봉표		별도 기준 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1,734	36.6	1,845	38.9	88	1.9	1,056	22.3	16	0.3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70	88.6	·	·	·	·	·	·	9	11.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	·	9	100.0	·	·	·	·	·	·
	노인여가복지시설	268	·	·	268	100.0	·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27	·	·	27	100.0	·	·	·	·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8	·	·	98	100.0	·	·	·	·	·	·
	계	481	70	14.6	402	83.6	·	·	·	·	9	1.9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	·	171	100.0	·	·	·	·	·	·
	아동일시보호시설	8	·	·	8	100.0	·	·	·	·	·	·
	아동보호치료시설	11	·	·	11	100.0	·	·	·	·	·	·
	자립지원시설	5	·	·	5	100.0	·	·	·	·	·	·
	공동생활가정	142	·	·	·	·	·	·	142	100.0	·	·
	아동상담소	5	·	·	5	100.0	·	·	·	·	·	·
	아동전용시설	6	·	·	6	100.0	·	·	·	·	·	·
	지역아동센터	621	·	·	·	·	·	·	621	100.0	·	·
	아동보호전문기관	24	·	·	24	100.0	·	·	·	·	·	·
	가정위탁지원센터	2	·	·	·	·	·	·	2	100.0	·	·
	계	995	·	·	230	23.1	·	·	765	76.9	·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286	98.3	5	1.7	·	·	·	·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226	100.0	·	·	·	·	·	·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9	100.0	·	·	·	·	·	·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110	100.0	·	·	·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309	100.0	·	·	·	·	·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71	·	·	764	99.1	·	·	·	·	7	0.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1	411	100.0	·	·	·	·	·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	·	·	5	100.0	·	·	·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7	100.0	·	·	·	·	·	·	·	·
	계	2,139	1,358	63.5	774	36.2	·	·	·	·	7	0.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4	44	100.0	·	·	·	·	·	·	·	·
	정신재활생활시설	61	·	·	61	100.0	·	·	·	·	·	·
	정신재활이용시설	42	·	·	42	100.0	·	·	·	·	·	·
	계	147	44	29.9	103	70.1	·	·	·	·	·	·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4	24	100.0	·	·	·	·	·	·	·	·
	노숙인재활시설	21	21	100.0	·	·	·	·	·	·	·	·
	노숙인요양시설	15	15	100.0	·	·	·	·	·	·	·	·

구분		사례수	사업 자체 호봉체계		인건비가이드라인		인건비 단가 지원		지자체 호봉표		별도 기준 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	9	100.0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4	100.0								
	쪽방상담소	4	4	100.0								
	계	77	77	100.0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5	100.0						
	사회복지관	331			331	100.0						
	계	336			336	100.0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10	110	100.0								
	계	110	110	100.0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9							229	100.0		
	계	229							229	100.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					3	100.0				
	청소년지원시설	5					5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100.0				
	자활지원센터	1							1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5							5	100.0		
	계	15					9	60.0	6	4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6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15							15	100.0		
	계	21							21	100.0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17	100.0				
	가정폭력상담소	33							33	100.0		
	긴급전화센터	2							2	100.0		
	계	52					17	32.7	35	67.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19	100.0				
	부자가족복지시설	2					2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33	100.0				
	일시지원복지시설	4					4	10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2	100.0				
	계	60					60	10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 · 다문화가족센터	61	61	100.0								
	계	61	61	100.0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3	13	100.0								
	청소년자립지원관	1	1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2	100.0				
	계	16	14	87.5			2	12.5				

〈표 4-25〉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사업 자체 호봉체계		인건비가이드라인		인건비 단가 지원		지자체 호봉표		별도 기준 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1,734	36.6	1,845	38.9	88	1.9	1,056	22.3	16	0.3
생활		1,633	1,128	69.1	262	16.0	86	5.3	148	9.1	9	0.6
이용		3,106	606	19.5	1,583	51.0	2	0.1	908	29.2	7	0.2
노인복지시설	생활	88	70	79.5	9	10.2	.	.	.	.	9	10.2
	이용	393	.	.	393	100.0	.	.	.	.	.	.
	계	481	70	14.6	402	83.6	.	.	.	.	9	1.9
아동복지시설	생활	337	.	.	195	57.9	.	.	142	42.1	.	.
	이용	658	.	.	35	5.3	.	.	623	94.7	.	.
	계	995	.	.	230	23.1	.	.	765	76.9	.	.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945	940	99.5	5	0.5	.	.	.	.	.	.
	이용	1,194	418	35.0	769	64.4	.	.	.	.	7	0.6
	계	2,139	1358	63.5	774	36.2	.	.	.	.	7	0.3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92	44	47.8	48	52.2	.	.	.	.	.	.
	이용	55	.	.	55	100.0	.	.	.	.	.	.
	계	147	44	29.9	103	70.1	.	.	.	.	.	.
노숙인시설	생활	60	60	100.0	.	.	.	.	.	.	.	.
	이용	17	17	100.0	.	.	.	.	.	.	.	.
	계	77	77	100.0	.	.	.	.	.	.	.	.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5	.	.	5	100.0	.	.	.	.	.	.
	이용	331	.	.	331	100.0	.	.	.	.	.	.
	계	336	.	.	336	100.0	.	.	.	.	.	.
지역자활센터	이용	110	110	100.0	.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229	.	.	.	.	.	.	229	100.0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	9	.	.	.	.	9	100.0	.	.	.	.
	이용	6	.	.	.	.	.	.	6	100.0	.	.
	계	15	.	.	.	.	9	60.0	6	40.0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6	.	.	.	.	.	.	6	100.0	.	.
	이용	15	.	.	.	.	.	.	15	100.0	.	.
	계	21	.	.	.	.	.	.	21	100.0	.	.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	17	.	.	.	.	17	100.0	.	.	.	.
	이용	35	.	.	.	.	.	.	35	100.0	.	.
	계	52	.	.	.	.	17	32.7	35	67.3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58	.	.	.	.	58	100.0	.	.	.	.
	이용	2	.	.	.	.	2	100.0	.	.	.	.
	계	60	.	.	.	.	60	100.0	.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61	61	100.0	.	.	.	.	.	.	.	.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16	14	87.5	.	.	2	12.5	.	.	.	.

〈표 4-26〉 급여 지급기준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 출처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사업 자체 호봉체계		인건비가이드라인		인건비 단가 지원		지자체 호봉표		별도 기준 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1,734	36.6	1,845	38.9	88	1.9	1,056	22.3	16	0.3
국고지원		1,969	757	38.4	70	3.6	88	4.5	1,054	53.5	.	.
지방이양		2,770	977	35.3	1,775	64.1	.	.	2	0.1	16	0.6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6	.	.	36	100.0	.	.	.	.	.	.
	지방이양	445	70	15.7	366	82.2	.	.	.	.	9	2.0
	계	481	70	14.6	402	83.6	.	.	.	.	9	1.9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787	.	.	24	3.0	.	.	763	97.0	.	.
	지방이양	208	.	.	206	99.0	.	.	2	1.0	.	.
	계	995	.	.	230	23.1	.	.	765	76.9	.	.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533	528	99.1	5	0.9	.	.	.	.	.	.
	지방이양	1,606	830	51.7	769	47.9	.	.	.	.	7	0.4
	계	2,139	1,358	63.5	774	36.2	.	.	.	.	7	0.3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4	44	100.0	.	.	.	.	.	.	.	.
	지방이양	103	.	.	103	100.0	.	.	.	.	.	.
	계	147	44	29.9	103	70.1	.	.	.	.	.	.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77	77	100.0	.	.	.	.	.	.	.	.
	계	77	77	100.0	.	.	.	.	.	.	.	.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	.	5	100.0	.	.	.	.	.	.
	지방이양	331	.	.	331	100.0	.	.	.	.	.	.
	계	336	.	.	336	100.0	.	.	.	.	.	.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10	110	100.0	.	.	.	.	.	.	.	.
	계	110	110	100.0	.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229	.	.	.	.	.	.	229	100.0	.	.
	계	229	.	.	.	.	.	.	229	100.0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15	.	.	.	.	9	60.0	6	40.0	.	.
	계	15	.	.	.	.	9	60.0	6	40.0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21	.	.	.	.	.	.	21	100.0	.	.
	계	21	.	.	.	.	.	.	21	100.0	.	.
가정폭력피보호시설	국고지원	52	.	.	.	.	17	32.7	35	67.3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60	.	.	.	.	60	100.0	.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61	61	100.0	.	.	.	.	.	.	.	.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6	14	87.5	.	.	2	12.5	.	.	.	.

다. 수당 지급률

□ (수당 지급률)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이 6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수당(64.8%), 명절휴가비(50.7%), 가족수당(46.4%) 등의 순이었음

○ (분석 기준) 22년 9월 기준 총 종사자 69,313명 중 기본급을 포함한 월 급여 정보가 존재하는 67,054명의 자료를 분석

○ (수당 유형) 시간외근무수당과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은 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수당이며, 이외 기타 수당은 지자체와 시설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임의 수당으로 판단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67.7%), 가족수당 (47.0%)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지급률 보다 높았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명절휴가비(51.5%)과 기타 수당(71.7%)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보다 지급율이 높았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은 90.7%로 이용시설(48.8%) 대비 약 42.9%p 높게 나타남

○ (재원 출처)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들은 제공 수당 중 명절휴가비(50.6%)와를 제외한 시간외근무수당(60.8%), 가족수당(43.8%), 기타수당(63.6%) 모두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지급율이 낮았음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시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39.8%로 타 시설 대비 최고 40%p 이상 적은 것으로 파악됨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은 6~11인 이하 시설은 67.3%, 11~20인 이하 시설은 64.0%, 21~30인 이하 시설은 74.2%, 31~40인 이하 시설은 80.8%, 41~50인 이하 시설은 77.4%, 그리고 51인 이상 시설은 58.2%였음

○ (지역) 시간외근무수당의 전체 평균 지급률 67.0% 대비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81.1%였고,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79.8%)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이 가장 낮은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지역아동센터(14.3%)였으며,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18.5%), 다함께돌봄센터(18.8%) 등의 순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직 선임생활지도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이 9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장 및 생활복지사(94.7%), 생활지도원(93.9%)의 순이었음

- 반면에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지급률이 44.4%, 55.0%인데 반해, 사무직1~4급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은 61.6~70.3%로 높았음

〈표 4-27〉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특성별 종사자 월 수당 지급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지급				
			기본급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기타수당
전체		67,054	100.0	67.0	50.7	46.4	64.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4,683	100.0	67.7	50.6	47.0	64.6
	여성가족부	2,371	100.0	46.7	51.5	29.1	71.7
시설유형	생활	29,002	100.0	90.7	53.3	56.3	67.0
	이용	38,052	100.0	48.8	48.7	38.9	63.2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345	100.0	77.0	50.8	50.6	66.8
	지방이양	41,709	100.0	60.8	50.6	43.8	63.6
종사자규모	5인 이하	5,218	100.0	39.8	32.2	35.8	62.6
	6~10인 이하	5,818	100.0	67.3	47.0	52.4	69.6
	11~20인 이하	9,125	100.0	64.0	53.6	51.8	63.0
	21~30인 이하	13,789	100.0	74.2	55.0	50.6	67.5
	31~40인 이하	10,337	100.0	80.8	52.8	52.1	72.6
	41~50인 이하	6,351	100.0	77.4	55.9	53.6	72.8
	51인 이상	16,416	100.0	58.2	49.2	34.8	54.5
지역	서울특별시	11,616	100.0	71.4	58.3	47.6	88.9
	부산광역시	4,676	100.0	62.7	43.3	42.0	43.5
	대구광역시	2,621	100.0	72.2	56.4	50.1	15.0
	인천광역시	3,025	100.0	67.8	45.9	49.3	90.6
	광주광역시	1,790	100.0	76.4	52.3	48.8	65.5
	대전광역시	1,679	100.0	81.1	47.7	51.9	90.5
	울산광역시	1,245	100.0	77.5	45.1	45.2	85.1
	세종특별자치시	382	100.0	79.8	64.4	52.1	91.4
	경기도	14,684	100.0	65.8	55.8	43.3	51.1
	강원도	2,750	100.0	59.1	50.8	44.0	40.8
	충청북도	3,701	100.0	62.8	43.4	43.3	69.4
	충청남도	3,571	100.0	64.3	41.5	46.2	81.0
	전라북도	3,304	100.0	55.7	38.9	46.9	79.2
	전라남도	3,506	100.0	52.4	46.6	43.2	75.0
	경상북도	3,792	100.0	74.6	59.1	51.3	20.1
	경상남도	3,388	100.0	67.6	45.9	51.1	83.3
	제주특별자치도	1,324	100.0	77.2	27.6	57.6	71.1

〈표 4-28〉 사회복지 세부시설의 종사자 월 수당 지급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지급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전체		67,054	100.0	67.0	50.7	46.4	64.8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05	100.0	87.2	47.6	59.6	45.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100.0	93.3	40.0	17.8	82.2
	노인여가복지시설	8,755	100.0	40.1	50.1	26.7	54.6
	노인보호전문기관	249	100.0	45.4	55.8	44.6	92.8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673	100.0	18.5	52.8	25.5	63.7
	소계	11,727	100.0	41.4	50.3	29.7	56.0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07	100.0	93.8	50.0	54.7	66.8
	아동일시보호시설	160	100.0	77.5	62.5	48.8	38.8
	아동보호치료시설	291	100.0	93.5	39.9	52.6	68.4
	자립지원시설	22	100.0	86.4	31.8	59.1	54.5
	공동생활가정	543	100.0	33.3	31.5	10.9	64.3
	아동상담소	31	100.0	77.4	22.6	64.5	48.4
	아동전용시설	25	100.0	68.0	56.0	40.0	72.0
	지역아동센터	1,725	100.0	14.3	16.2	12.3	51.8
	아동보호전문기관	404	100.0	76.5	57.4	22.0	80.4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50.0	40.9	100.0
	소계	8,430	100.0	72.1	42.0	41.4	63.7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102	100.0	94.2	56.8	59.2	66.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01	100.0	93.9	60.0	58.7	65.0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18	100.0	92.5	47.8	45.0	70.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75	100.0	88.2	41.0	56.1	71.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05	100.0	72.3	41.0	42.5	57.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374	100.0	63.1	53.1	54.7	7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515	100.0	68.5	47.2	49.0	54.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72	100.0	61.6	19.2	36.0	65.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100.0	96.3	48.1	59.3	81.5
	소계	30,616	100.0	81.0	54.4	55.9	67.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1	100.0	93.4	33.8	67.2	81.3
	정신재활생활시설	206	100.0	68.9	44.2	55.8	93.7
	정신재활이용시설	245	100.0	70.6	54.7	57.6	90.2
	소계	2,132	100.0	88.4	37.2	65.0	83.5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1	100.0	86.1	61.6	57.0	84.1
	노숙인재활시설	531	100.0	88.9	68.9	60.6	72.3
	노숙인요양시설	566	100.0	85.2	61.7	60.1	77.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21	100.0	58.8	53.4	43.0	53.4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100.0	78.3	69.6	69.6	43.5
	쪽방상담소	25	100.0	96.0	48.0	60.0	100.0
	소계	1,517	100.0	82.8	62.9	57.6	72.8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100.0	78.1	54.8	68.5	65.8

구분		사례 수	지급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사회복지관	8,209	100.0	51.9	50.1	37.6	61.3
	소계	8,282	100.0	52.1	50.2	37.9	61.3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30	100.0	36.9	42.7	56.5	63.3
	소계	1,230	100.0	36.9	42.7	56.5	63.3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49	100.0	18.8	30.4	32.7	67.6
	소계	749	100.0	18.8	30.4	32.7	67.6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76.9	92.3	15.4	53.8
	청소년지원시설	38	100.0	73.7	73.7	15.8	89.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00.0	100.0	-	-	100.0
	자활지원센터	7	100.0	-	-	-	85.7
	성매매피해상담소	44	100.0	25.0	25.0	27.3	75.0
	소계	103	100.0	48.5	49.5	19.4	78.6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3	100.0	34.9	30.2	27.9	65.1
	성폭력피해상담소	60	100.0	16.7	40.0	10.0	76.7
	소계	103	100.0	24.3	35.9	17.5	71.8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0	100.0	46.7	40.0	15.8	76.7
	가정폭력상담소	156	100.0	9.6	51.3	21.8	67.9
	긴급전화센터	37	100.0	81.1	40.5	45.9	100.0
	소계	313	100.0	32.3	45.7	22.4	75.1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100.0	85.2	36.4	70.5	56.8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93.8	-	68.8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57	100.0	81.5	42.0	52.9	65.0
	일시지원복지시설	28	100.0	96.4	46.4	42.9	64.3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100.0	-	-	57.1	100.0
	소계	296	100.0	82.8	37.5	58.1	65.2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44	100.0	42.7	57.8	25.8	71.3
	소계	1,444	100.0	42.7	57.8	25.8	71.3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98	100.0	64.3	35.7	32.7	76.5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66.7	83.3	66.7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	100.0	50.0	50.0	25.0	87.5
	소계	112	100.0	63.4	39.3	33.9	78.6

〈표 4-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종사자 월 수당 지급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지급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기타수당
사례수	67,054	100.0	67.0	50.7	46.4	64.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176	100.0	94.7	56.4	59.1	69.3
생활-관리직	624	100.0	76.4	50.2	51.0	66.0
생활-기능직	2,863	100.0	92.5	52.8	65.4	64.7
생활-기타	156	100.0	48.7	36.5	28.2	36.5
생활-기타(계약직)	11	100.0	100.0	72.7	72.7	100.0
생활-기타(촉탁의사)	314	100.0	.	.	.	1.3
생활-사무국장	978	100.0	93.1	50.7	68.3	74.1
생활-생활지도원	11,818	100.0	93.9	53.4	52.4	66.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4	100.0	95.4	54.0	66.1	71.8
생활-시설장	1,318	100.0	56.1	46.6	53.2	69.7
이용-과장	1,450	100.0	49.7	55.1	53.1	73.2
이용-관리직 기타	683	100.0	33.5	50.5	12.6	48.9
이용-관리직(계약직)	34	100.0	8.8	38.2	5.9	35.3
이용-관리직(장애인)	1	100.0	.	.	.	.
이용-관리직1급	275	100.0	54.2	66.5	56.4	84.7
이용-관리직2급	26	100.0	84.6	73.1	69.2	76.9
이용-관리직3급	275	100.0	70.9	65.8	64.0	86.5
이용-관리직4급	2,422	100.0	45.1	51.4	55.1	61.8
이용-관장	2,533	100.0	24.7	47.7	55.6	76.3
이용-기타	3,888	100.0	14.4	24.3	6.7	34.6
이용-기타(계약직)	356	100.0	10.1	27.5	9.0	36.8
이용-기타(미기입)	863	100.0	49.1	57.5	33.0	79.7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207	100.0	49.3	42.0	8.2	51.2
이용-기타(촉탁의사)	6	100.0	.	.	.	.
이용-부장	781	100.0	65.4	62.0	71.6	81.2
이용-사무국장	373	100.0	74.8	56.3	74.3	79.9
이용-사무직1급	363	100.0	68.6	68.3	77.4	83.7
이용-사무직2급	37	100.0	70.3	62.2	59.5	81.1
이용-사무직3급	384	100.0	63.5	66.4	63.5	89.8
이용-사무직4급	1,430	100.0	61.6	56.0	45.3	66.4
이용-사회복지사	10,308	100.0	44.4	45.7	19.3	54.9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57	100.0	55.0	52.6	50.5	70.3
이용-의료직1급	26	100.0	30.8	69.2	34.6	73.1
이용-의료직2급	5	100.0	40.0	40.0	20.0	80.0
이용-의료직3급	843	100.0	55.8	55.6	47.8	70.5
이용-의료직4급	58	100.0	50.0	53.4	55.2	62.1
이용-일반직 기타	31	100.0	67.7	45.2	38.7	51.6
이용-일반직1급	94	100.0	63.8	50.0	73.4	85.1
이용-일반직2급	3,169	100.0	81.3	53.9	65.0	74.2
이용-일반직3급	250	100.0	66.8	44.8	75.2	86.4
이용-일반직4급	3,722	100.0	70.6	57.7	51.1	72.8
이용-일반직5급	58	100.0	37.9	34.5	41.4	72.4

라. 퇴직 급여

□ (퇴직 급여) 퇴직연금과 퇴직적립금으로 구분되는 종사자의 퇴직 급여 형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30.9%는 퇴직연금을, 23.1%는 퇴직적립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총 66,875명 중 31.1%가,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총 2,438명 중 27.4%가 퇴직연금을 적용받고 있었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 중 35.5%가, 이용시설 종사자 중 27.6%가 퇴직연금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이용시설 대비 생활시설 종사자가 7.9%p 높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중 퇴직연금 적용 종사자는 35.5%,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는 28.6%가 퇴직연금을 적용받고 있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적용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됨

- 6~1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연금 적용 종사자는 37.7%로 타 사업장 대비 적용률이 가장 높지만, 11~20인 이하(36.4%), 21~30인 이하 (34.5%), 31인~40인 이하(32.4%), 41~50인 이하(32.8%) 등 규모가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적용자 비중이 감소

○ (지역) 퇴직연금 적용 종사자 전체 평균 비율 30.9%보다 큰 지역은 강원도(42.2%), 세종특별자치시(35.2%), 부산광역시(33.0%) 등이었음

- 한편 퇴직적립금 채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는 전라북도(34.0%), 경상북도(28.9%), 울산광역시(29.2%)에서 높았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퇴직연금 적용 종사자가 평균 31.1%보다 높은 시설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정신요양시설(37.6%)과 아동복지시설(36.2%) 내 아동보호치료시설(52.0%), 가정위탁지원센터(59.1%) 등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중 퇴직연금 적용 종사자가 많은 시설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22.3%) 내 청소년지원시설(36.8%)과 성폭력피해보호시설(20.8%) 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38.5%),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38.9%) 내 일시지원회복지시설(69.0%) 등이 있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 퇴직연금 적용 비중이 높은 직위는 선임생활지도원 (42.1%), 사무국장 (41.8%), 등이었음

- 한편, 이용시설에서는 관리직2급(42.3%), 일반직1급(50.0%), 일반직3급 (40.0%), 의료직2급 (40.0%) 등에서 타 퇴직연금 적용 종사자 비중이 높았음

〈표 4-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퇴직급여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퇴직연금		퇴직적립금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21,449	30.9	15,979	23.1	31,885	46.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20,782	31.1	15,394	23.0	30,699	45.9
	여성가족부	2,438	667	27.4	585	24.0	1,186	48.6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10,436	35.5	6,580	22.4	12,387	42.1
	이용시설	39,910	11,013	27.6	9,399	23.6	19,498	48.9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8,972	34.8	5,912	23.0	10,874	42.2
	지방이양	43,555	12,477	28.6	10,067	23.1	21,011	48.2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1,940	36.5	1,491	28.1	1,882	35.4
	6~10인	5,929	2,236	37.7	1,557	26.3	2,136	36.0
	11~20인 이하	9,441	3,437	36.4	2,038	21.6	3,966	42.0
	21~30인 이하	14,183	4,892	34.5	3,157	22.3	6,134	43.2
	31~40인 이하	10,729	3,471	32.4	2,356	22.0	4,902	45.7
	41~50인 이하	6,563	1,897	28.9	1,532	23.3	3,134	47.8
	51인 이상	17,155	3,576	20.8	3,848	22.4	9,731	56.7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3,615	30.4	2,454	20.6	5,840	49.0
	부산광역시	4,802	1,585	33.0	771	16.1	2,446	50.9
	대구광역시	2,711	709	26.2	398	14.7	1,604	59.2
	인천광역시	3,114	903	29.0	814	26.1	1,397	44.9
	광주광역시	1,820	575	31.6	473	26.0	772	42.4
	대전광역시	1,718	577	33.6	474	27.6	667	38.8
	울산광역시	1,321	407	30.8	386	29.2	528	40.0
	세종특별자치시	409	144	35.2	61	14.9	204	49.9
	경기도	15,203	4,666	30.7	3,776	24.8	6,761	44.5
	강원도	2,907	1,228	42.2	710	24.4	969	33.3
	충청북도	3,969	1,256	31.6	713	18.0	2,000	50.4
	충청남도	3,640	963	26.5	625	17.2	2,052	56.4
	전라북도	3,406	1,063	31.2	843	24.8	1,500	44.0
	전라남도	3,684	1,007	27.3	1,251	34.0	1,426	38.7
	경상북도	3,863	1,293	33.5	1,118	28.9	1,452	37.6
	경상남도	3,489	1,069	30.6	806	23.1	1,614	46.3
	제주특별자치도	1,348	389	28.9	306	22.7	653	48.4

〈표 4-31〉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퇴직급여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퇴직연금		퇴직적립금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21,449	30.9	15,979	23.1	31,885	46.0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433	42.6	204	20.1	380	37.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15	33.3	9	20.0	21	46.7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1,727	19.5	2,067	23.3	5,061	57.2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97	38.3	53	20.9	103	40.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508	29.6	296	17.2	913	53.2
	소계	11,887	2,780	23.4	2,629	22.1	6,478	54.5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1,838	34.9	1,130	21.5	2,298	43.6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56	34.8	22	13.7	83	51.6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154	52.0	58	19.6	84	28.4
	자립지원시설	22	5	22.7	15	68.2	2	9.1
	공동생활가정	558	173	31.0	164	29.4	221	39.6
	아동상담소	37	12	32.4	5	13.5	20	54.1
	아동전용시설	25	6	24.0	12	48.0	7	28.0
	지역아동센터	1,779	768	43.2	424	23.8	587	33.0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88	20.4	86	20.0	257	59.6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3	59.1	1	4.5	8	36.4
	소계	8,597	3,113	36.2	1,917	22.3	3,567	41.5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2,769	33.7	1,777	21.6	3,667	44.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2,770	35.1	2,008	25.4	3,115	39.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137	42.4	21	6.5	165	51.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317	35.5	238	26.7	337	37.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114	26.9	108	25.5	202	47.6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9,900	2,932	29.6	2,592	26.2	4,376	4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1,358	31.9	986	23.1	1,916	45.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48	26.7	7	3.9	125	69.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18	33.3	1	1.9	35	64.8
	소계	32,139	10,463	32.6	7,738	24.1	13,938	43.4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635	37.6	294	17.4	760	45.0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71	33.6	70	33.2	70	33.2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77	30.9	90	36.1	82	32.9
	소계	2,149	783	36.4	454	21.1	912	42.4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84	54.5	28	18.2	42	27.3
	노숙인재활시설	535	190	35.5	129	24.1	216	40.4
	노숙인요양시설	568	310	54.6	33	5.8	225	39.6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74	30.8	23	9.6	143	59.6

구분		사례 수	퇴직연금		퇴직적립금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2	8.7	20	87.0	1	4.3
	쪽방상담소	26	7	26.9	12	46.2	7	26.9
	소계	1,546	667	43.1	245	15.8	634	41.0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36	49.3	22	30.1	15	20.5
	사회복지관	8,475	2,141	25.3	1,921	22.7	4,413	52.1
	소계	8,548	2,177	25.5	1,943	22.7	4,428	51.8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537	43.2	207	16.7	499	40.1
	소계	1,243	537	43.2	207	16.7	499	40.1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262	34.2	261	34.1	243	31.7
	소계	766	262	34.2	261	34.1	243	31.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	7.7	11	84.6	1	7.7
	청소년지원시설	38	14	36.8	13	34.2	11	28.9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100.0	.	.	.	.
	자활지원센터	7	.	.	6	85.7	1	14.3
	성매매피해상담소	44	7	15.9	1	2.3	36	81.8
	소계	103	23	22.3	31	30.1	49	47.6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17	37.0	9	19.6	20	43.5
	성폭력피해상담소	60	5	8.3	21	35.0	34	56.7
	소계	106	22	20.8	30	28.3	54	50.9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64	51.2	34	27.2	27	21.6
	가정폭력상담소	161	62	38.5	45	28.0	54	33.5
	긴급전화센터	39	1	2.6	10	25.6	28	71.8
	소계	325	127	39.1	89	27.4	109	33.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38	43.2	21	23.9	29	33.0
	부자가족복지시설	16	2	12.5	2	12.5	12	75.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56	34.8	35	21.7	70	43.5
	일시지원복지시설	29	20	69.0	3	10.3	6	20.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1	14.3	3	42.9	3	42.9
	소계	301	117	38.9	64	21.3	120	39.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350	23.5	335	22.5	803	54.0
	소계	1,488	350	23.5	335	22.5	803	54.0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25	25.0	30	30.0	45	45.0
	청소년자립지원관	6	.	.	6	100.0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3	33.3	.	.	6	66.7
	소계	115	28	24.3	36	31.3	51	44.3

〈표 4-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퇴직급여 형태

(단위: 명, %)

	사례 수	퇴직연금		퇴직적립금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21,449	30.9	15,979	23.1	31,885	46.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3,522	34.2	2,314	22.5	4,454	43.3
생활-관리직	629	251	39.9	102	16.2	276	43.9
생활-기능직	2,901	1,072	37.0	618	21.3	1,211	41.7
생활-기타	173	34	19.7	29	16.8	110	63.6
생활-기타(계약직)	11	3	27.3	3	27.3	5	45.5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9	2.8	6	1.9	301	95.3
생활-사무국장	989	413	41.8	259	26.2	317	32.1
생활-생활지도원	11,989	4,306	35.9	2,678	22.3	5,005	41.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314	42.1	197	26.4	235	31.5
생활-시설장	1,359	512	37.7	374	27.5	473	34.8
이용-과장	1,476	523	35.4	457	31.0	496	33.6
이용-관리직 기타	790	186	23.5	164	20.8	440	55.7
이용-관리직(계약직)	35	5	14.3	1	2.9	29	82.9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2	92.3	.	.	1	7.7
이용-관리직1급	281	75	26.7	53	18.9	153	54.4
이용-관리직2급	26	11	42.3	3	11.5	12	46.2
이용-관리직3급	276	97	35.1	71	25.7	108	39.1
이용-관리직4급	2,473	763	30.9	611	24.7	1,099	44.4
이용-관장	2,616	1,006	38.5	687	26.3	923	35.3
이용-기타	5,008	887	17.7	779	15.6	3,342	66.7
이용-기타(계약직)	470	87	18.5	71	15.1	312	66.4
이용-기타(미기입)	886	196	22.1	183	20.7	507	57.2
이용-기타(보육교사)	44	.	.	.	.	44	100.0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44	21.2	36	17.3	128	61.5
이용-기타(촉탁의사)	9	1	11.1	1	11.1	7	77.8
이용-부장	782	311	39.8	211	27.0	260	33.2
이용-사무국장	375	145	38.7	101	26.9	129	34.4
이용-사무직1급	365	136	37.3	98	26.8	131	35.9
이용-사무직2급	37	12	32.4	6	16.2	19	51.4
이용-사무직3급	386	109	28.2	89	23.1	188	48.7
이용-사무직4급	1,491	431	28.9	378	25.4	682	45.7
이용-사회복지사	10,396	2,071	19.9	2,370	22.8	5,955	57.3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1,237	40.0	738	23.9	1,114	36.1
이용-의료직1급	26	6	23.1	11	42.3	9	34.6
이용-의료직2급	5	2	40.0	2	40.0	1	20.0
이용-의료직3급	860	252	29.3	236	27.4	372	43.3
이용-의료직4급	58	18	31.0	16	27.6	24	41.4
이용-일반직 기타	31	9	29.0	11	35.5	11	35.5
이용-일반직1급	94	47	50.0	19	20.2	28	29.8
이용-일반직2급	3,197	1,227	38.4	857	26.8	1,113	34.8
이용-일반직3급	250	100	40.0	84	33.6	66	26.4
이용-일반직4급	3,799	987	26.0	1,043	27.5	1,769	46.6
이용-일반직5급	58	20	34.5	12	20.7	26	44.8

제3절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1. 개관

□ (목적)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을 시도함

○ (인건비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직, 의료직, 관리직 등 직종에 따라 종사자 직위와 호봉에 맞추어 월 기본급을 책정한 임금체계를 의미함

○ (준수율 측정)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제의 인건비 지급 현황을 특정 사회복지시설 내 특정 직종 및 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을 가이드라인과 대비하여 준수율을 측정해 옴

□ (분석 방법) 2022년 각 사회복지시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제에서 신청한 인건비 교부금 중 월 기본급과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기본급 비율을 측정

○ (기본급 분석) 매년 각 시설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제에 신청하는 인건비 교부금에는 기본급과 제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적립금, 후생 경비 등 5가지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 내 동일한 항목은 기본급만이 존재

○ (종자사 기준 분석) 현재 인건비 교부금은 일, 월, 분기, 반기, 년 등 신청 주기가 다양하여 개인당 다수의 신청 건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월평균 기본급으로 설정된 가이드라인과 비교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개인당 건수를 총합하여 월평균으로 산출한 기본급과 비교

□ (분석 기준) 개인별 인건비 교부금 신청 종사자 중 모집단에 부합하는 종사자 전수와 현 지방이양시설 준수율 측정대상인 특정 직위별 호봉 대상 종사자, 2개를 대상으로 분석

○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 전수 분석) 지역 내 준수율 측정대상 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측정이 누락된 종사자가 존재한다는 한계점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 분석이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교부금 신청자 70,649명 전수를 측정 대상으로 선정

○ (지방이양시설 준수율 측정 방법) 특정 직위별 호봉 수준의 종사자 대상으로 준수율을 측정하는 기존 방법 적용을 위해 이에 부합하는 종사자 4,813명의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금액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과 비교

- 단, 분석 대상 시설은 기존 측정 대상인 사회복지관 등 일부 시설이 아닌 전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해 준수율 측정의 범용성 확보를 추진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임금체계

□ (임금체계) 인건비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과 이용시설의 관리직·사무직·의료직 등 5개 직종별 월 기본급을 총 31개월 호봉으로 구성

○ (생활시설 사회복지직) 노인·장애인·아동·정신·노숙인 등 5대 서비스 대상에 원장, 사무국장, 과장/생활복지사, 선임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등 5개 직위

○ (사회·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원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5개 직위가 존재

○ (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원장, 부장, 1급, 2급, 3급, 4급, 5급 등 7개 직위가 존재

○ (기타 직종) 생활시설은 관리직과 기능직이 사회복지직 임금체계와 연동된 반면, 이용시설은 관리직, 의료직, 사무직 3개 직종에 각각 1~4급까지의 별도의 호봉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준수율 측정기준) 수당을 제외한 직위별 월 기본급을 준수율 측정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법적 근거에 의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이 측정 목표가 됨

○ (기본급 산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9급 기본급 기준설정 후, 최저임금 수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지급 관련 일부 수당을 포함하여 산출

- (기본급 포함) 2009년 공무원 수당(정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산출

○ (산출 과정) 사회복지직 공무원 기본급 산정을 시작으로 총 3단계로 추정

- (1단계) 직종별/호봉별 공무원 보수총액 계산: (봉급월액×12월) + (정근수당 5~20%×2월) + (정액급식비×12월) + (직급보조비×12월) + (명절휴가비_월봉급액의 120%)
- (2단계) 공무원보수대비 비율 결정 : ① × 95%
- (3단계) 종사자 월 기본급 결정 : ② ÷ 13.2개월(명절휴가비 별도 명시)

〈표 4-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설정 시 포함 요인

·정근수당: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기본급의 5%,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 5년 미만 20%, 6년 미만 25%, 7년 미만 30%, 8년 미만 35%, 9년 미만 40%, 10년 미만 45%, 10년 이상 50% ·직급보조비: 5급 250,000원, 5.5급 217,500원, 6급 185,000원, 7급 180,000원, 8·9급 175,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120%),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23) 내부자료

〈표 4-34〉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생활복지사	선임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사회노인) 이용시설	관장	-	부장	과장	선임복지사	사회복지사	-	-	-
(장애인) 이용시설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	-
1호봉	2,727,800	2,575,500	2,455,500	2,267,000	2,159,800	2,073,500	2,042,900	2,032,100	2,010,600
2호봉	2,820,800	2,659,900	2,534,600	2,323,200	2,211,400	2,112,400	2,091,800	2,068,500	2,033,500
3호봉	2,916,400	2,755,700	2,627,000	2,385,000	2,274,100	2,151,100	2,127,100	2,109,500	2,069,200
4호봉	3,024,800	2,849,500	2,721,600	2,482,000	2,336,500	2,206,900	2,178,500	2,148,600	2,107,400
5호봉	3,148,900	2,956,700	2,823,500	2,584,800	2,399,500	2,265,300	2,232,000	2,190,300	2,144,600
6호봉	3,278,800	3,073,400	2,938,000	2,691,000	2,487,200	2,323,300	2,296,400	2,230,000	2,192,800
7호봉	3,408,500	3,189,700	3,052,200	2,801,700	2,576,600	2,410,000	2,385,400	2,307,500	2,229,100
8호봉	3,542,700	3,323,700	3,168,700	2,912,900	2,671,000	2,505,300	2,472,700	2,390,200	2,288,000
9호봉	3,677,900	3,457,800	3,301,600	3,020,900	2,770,100	2,595,000	2,546,200	2,457,600	2,360,400
10호봉	3,806,400	3,588,500	3,433,200	3,136,000	2,861,500	2,673,300	2,627,400	2,543,800	2,441,300
11호봉	3,934,800	3,708,000	3,556,100	3,242,300	2,952,800	2,742,900	2,690,600	2,606,200	2,503,900
12호봉	4,061,000	3,816,400	3,663,300	3,338,400	3,034,300	2,802,800	2,754,000	2,676,800	2,564,900
13호봉	4,169,400	3,912,700	3,757,400	3,422,300	3,112,600	2,860,200	2,803,800	2,742,300	2,629,000
14호봉	4,258,000	4,003,100	3,850,900	3,503,800	3,187,400	2,918,900	2,848,200	2,778,000	2,677,600
15호봉	4,347,300	4,089,100	3,944,900	3,581,900	3,259,100	2,979,600	2,902,400	2,809,500	2,719,900
16호봉	4,431,800	4,171,600	4,028,700	3,655,700	3,328,100	3,045,600	2,952,600	2,864,200	2,762,000
17호봉	4,511,000	4,241,200	4,101,300	3,726,000	3,393,000	3,111,200	3,000,700	2,917,800	2,815,100
18호봉	4,585,900	4,312,800	4,174,200	3,794,300	3,455,600	3,173,700	3,057,700	2,971,500	2,866,700
19호봉	4,656,000	4,381,100	4,239,100	3,854,600	3,513,600	3,229,900	3,113,700	3,016,800	2,921,300
20호봉	4,718,600	4,445,900	4,301,900	3,914,900	3,570,200	3,284,700	3,170,200	3,060,500	2,967,400
21호봉	4,780,100	4,504,100	4,363,400	3,970,600	3,622,800	3,334,000	3,220,400	3,112,800	3,019,200
22호봉	4,839,200	4,559,000	4,420,000	4,024,500	3,672,700	3,383,700	3,266,000	3,172,000	3,078,800
23호봉	4,894,400	4,613,800	4,474,000	4,075,700	3,720,600	3,429,100	3,318,300	3,233,400	3,137,700
24호봉	4,946,400	4,666,300	4,524,400	4,120,800	3,766,500	3,473,900	3,362,700	3,290,400	3,195,800
25호봉	4,997,100	4,714,400	4,574,700	4,165,700	3,810,500	3,516,400	3,409,300	3,342,900	3,254,200
26호봉	5,038,700	4,761,200	4,618,500	4,209,400	3,853,700	3,555,500	3,450,900	3,388,800	3,308,300
27호봉	5,081,000	4,801,600	4,659,800	4,246,300	3,888,800	3,589,000	3,484,500	3,434,100	3,353,400
28호봉	5,117,900	4,833,100	4,696,700	4,278,800	3,920,800	3,617,200	3,507,800	3,465,200	3,387,100
29호봉	5,146,200	4,862,400	4,727,900	4,309,200	3,950,400	3,644,200	3,526,700	3,500,100	3,422,200
30호봉	5,170,000	4,892,800	4,760,700	4,337,400	3,976,500	3,669,600	3,545,800	3,521,600	3,453,300
31호봉		4,905,100	4,781,300	4,365,300	4,006,900	3,699,000	3,567,300	3,557,800	3,477,400

자료: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주: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적용, 사회 및 노인이용시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1·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은 2,989,600원

3. 기존 행정조사방식에 의한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방식

□ (전체 요약) 기존 국고지원 및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은 공무원 보수 수준 95%를 적용한 기본급을 측정지표로 사용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나, 기본급 비교 수단과 대상, 그리고 조사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표 3-47〉 참조)

〈표 4-35〉 지방이양 및 국고지원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비교

<table>
<tr><th>항목</th><th>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준수율 조사</th><th>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준수율 조사</th></tr>
<tr><td>조사대상</td><td>-(조사대상) 생활시설 10개 유형, 이용시설 3개 유형 등 총 13개 시설 유형을 조사
-(생활시설)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인, 노숙인 등 5대 사회서비스 시설에 10개 시설
·(아동)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4개 시설
·(장애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2개 시설
·(정신보건)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등 1개 시설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1개 시설
·(노숙인)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2개 시설
-(이용시설)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 등 3대 복지관</td><td>-(조사대상) 생활시설 14개 유형, 이용시설 14개 유형 등 총 28개 시설유형을 조사
-(생활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인, 결핵·한센, 자활, 여성인권, 청소년 등 9대 사회서비스 시설에 14개 시설
-(이용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 자활, 여성인권 등 5대 서비스 대상에 14개 시설 포함</td></tr>
<tr><td>측정항목</td><td>-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본급으로 설정 후 종사자 실제 지급 임금액을 비교
·공무원 보수총액 항목: 직종별/호봉별 봉급 월액(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포함), 명절휴가비</td><td>- 호봉제 유무별 측정기준을 차별화하여 측정
·(호봉제 보유시설) 호봉제 자체 보유시설에 한해 기준이 되는 대표호봉 및 대표호봉의 산술 평균 금액을 산정 후 자체호봉표 등 예산기준 지급액을 비교
·기준액: 가이드라인 평균 10호봉 기본급액(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포함)
·종사자 지급액: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체 호봉제 종사자 예산 지급액을 구한 후 기준액과 예산 지급액간의 비율을 측정
·(호봉제 자체 미 보유시설) 행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설별 기준호봉을 설정</td></tr>
<tr><td>측정대상</td><td>-'13년 1회 조사에는 대표호봉 10호봉 기준 조사, '17년 이후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등 근무연수를 고려해, 직위별로 기준호봉을 달리 선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직위명(기준호봉)</th></tr>
<tr><td colspan="2">생활시설</td><td>원장
(20, 15)</td><td>사무국장
(15)</td><td>과장 및 생활복지사
(10)</td><td>선임생활지도원
(10, 7)</td><td>생활지도원
(7, 5)</td></tr>
<tr><td rowspan="2">이용시설</td><td>사회·노인</td><td>관장
(15)</td><td>부장
(15)</td><td>과장
(10)</td><td>선임사회복지사(7)</td><td>사회복지사
(5)</td></tr>
<tr><td>장애인</td><td>관장
(15)</td><td>사무국장
(15)</td><td>1급
(10)</td><td>2급
(7)</td><td>3급
(7)</td></tr>
</table></td><td>- (호봉제 자체보유시설) 각 직위별 10호봉을 대표 호봉으로 선정해 비교
- (호봉제 자체 미보유 시설) 가이드라인 직위별 평균 호봉과 확보예산의 기본급 가중평균 비교
·(복지부 아동그룹홈) 시설장은 과장 9호봉, 종사자는 생활지도원 4호봉
·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선임사회복지사 9호봉, 종사자는 생활복지사 4호봉
·(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은 선임사회복지사 12호봉,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7호봉</td></tr>
<tr><td>조사방법</td><td>- (기초 지자체별 행정조사) 직위별 대표 호봉에 대한 당해연도 실기본급 지급현황을 행정조사
·복지부에서 작성양식을 지자체에 전달 후 조사대상 시설별 직위의 대표호봉 실지급액을 지자체가 조사해 분석하는 방법
·조사대상 직위별 호봉이 시설별로 상이한 경우, 조사된 직위의 임금을 각 시설의 해당 호봉 기본급을 산술평균</td><td>- (사업부서별 행정조사) 각 사업 담당부서에 가이드라인 기본급 권고기준 중 평균 10호봉에 해당 종사자의 기본급 단가를 산정
·직위별 비교가 아닌 평균 10호봉 내 각 직위 기본급을 산술평균해 기준호봉으로 산정
·각 직위내 기본급이 예산지출을 위한 행정상 단가로 실지급액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td></tr>
</table>

자료: 보건복지부 (2023), 내부자료 요약

가. 기존 국고지원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방법

□ (측정방법) 국고지원시설이 사업관련 자체 호봉표 보유여부에 따라 측정방식의 차이가 존재

○ (호봉표 보유시설) 가이드라인 기본급과 직위별 10호봉 지급 기본급액간에 비교를 실시

○ (호봉표 미보유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정직위 호봉 측정대상에 대하여 당해연도 확보된 인건비의 가중평균을 구해 비교하는 방식

〈표 4-36〉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방법

구 분	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방법	자체 호봉표 유무
장애인거주시설	- 가이드라인과 시설 봉급표의 직위별(8개) 10호봉 기본급 평균 비교	○
정신요양시설	- 가이드라인과 시설 봉급표의 직위별(5개) 10호봉 기본급 평균 비교	○
지역자활센터	- 가이드라인과 시설 봉급표의 직위별(5개) 10호봉 기본급 평균 비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가이드라인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 비교, 부족분은 판매수입금으로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 가이드라인과 확보 예산 기본급 가중 평균 비교 · 관장(15호봉 1명), 부장·과장(10호봉 1명), 선임·사회복지사(10호봉 3명)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가이드라인과 확보 예산 기본급 가중 평균 비교 · 사회복지사 (5호봉 1명), 생활지도원(5호봉 4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이드라인과 확보 예산 기본급 가중 평균 비교 · 관장(18호봉 1명), 과장(10호봉 2명), 선임사회복지사 (4호봉 14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 가이드라인과 확보 예산 기본급 가중 평균 비교 · 과장(9호봉 1명), 생활지도원 4호봉	×
요보호아동그룹홈	- 가이드라인과 확보 예산 기본급 가중 평균 비교 · 과장(9호봉 1명), 생활지도원(4호봉 2.7명)	×
지역아동센터	- 가이드라인과 확보 예산 기본급 가중 평균 비교 · 선임사회복지사(9호봉 1명), 생활지도원(4호봉 1.3명)	×
다함께돌봄센터	- 가이드라인과 확보 예산 기본급 가중 평균 비교 · 선임사회복지사(12호봉 1명), 사회복지사(7호봉 1.1명)	×

자료: 보건복지부(2023), 내부자료

□ (준수율 산출 결과) 2023년 국고지원시설(9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전년 대비 0.7% 상승한 94.1%로 나타남

〈표 4-37〉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연도별 준수율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 균	87.5	88.8	88.8	90.2	93.4	94.1
장애인거주시설	94.4	95.0	94.1	94.1	95.2	96.1
정신요양시설	92.2	93.2	93.1	94.0	94.7	92.9
지역자활센터	90.4	90.4	90.4	90.7	94.4	93.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인보호전문기관	83.0	82.4	82.4	83.8	88.6	93.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84.3	86.6	83.3	84.6	89.5	91.1
아동보호전문기관	81.3	86.9	87.4	90.5	94.2	95.0
학대피해아동쉼터	80.9	82.5	84.3	87.2	91.1	91.2
요보호아동그룹홈	80.9	82.5	84.3	87.2	92.5	93.2

자료: 보건복지부(2023), 내부자료
주: 지역아동센터(95.5%), 다함께돌봄센터(91.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3년부터는 인건비·운영비 분리 편성으로 준수율 산출

나. 기존 지방이양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방법

□ (측정방법) 시설별로 배정된 대상 직위 대표호봉 기본급에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를 비교

○ (대상 시설) 지방이양 생활시설 및 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

-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자립지원 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10개 시설

○ (대상 직위) 생활시설 모든 직위,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일반직

○ (대표 호봉)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 근무연수를 고려한 각 직위별 대표 호봉

〈표 4-38〉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측정 대상 기준호봉

구분		직위명(기준호봉)						
생활시설		원장 (20, 15)	사무국장 (15)	과장, 생활복지사 (10)	선임 생활지도원 (10, 7)	생활지도원 (7, 5)	관리직 (10)	기능직 (10)
이용 시설 (복지관)	사회·노인	관장 (15)	부장 (15)	과장 (10)	선임 사회복지사 (7)	사회복지사 (5)	-	-
	장애인	관장 (15)	사무국장 (15)	1급 (10)	2급 (7)	3급 (7)	4급 (5)	5급 (5)

자료: 보건복지부(2023), 내부자료

□ (준수율 산출 결과) 2022년 지방이양시설(생활시설 10종, 사회 · 노인 · 장애인 복지관)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1년 대비 0.5% 상승한 100.1%

○ (시설별) 생활시설(0.7%p),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0.4%p) 모두 소폭 상승

〈표 4-39〉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연도별 준수율

(단위: %)

평균		생활시설		이용시설(복지관)			
				사회·노인		장애인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99.6	100.1	98.4	99.1	100.2	100.6	100.1	100.5

자료: 보건복지부(2023), 내부자료

○ (광역지자체별) 17개 광역지자체 중 6개 시도는 가이드라인 대비 100% 준수, 그 외 시도는 평균 99.4% 준수 중

- (가이드라인 100% 준수 광역지자체) 서울 108.2%, 인천 100.0%, 광주 100.1%, 대전 100.0%, 세종 100.0%, 전남 100.0%

〈표 4-40〉 2022년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지역별 준수율

(단위: %)

지역	평균	생활시설	이용시설(복지관)	
			사회·노인	장애인
평균	100.1	99.1	100.6	100.5
서울	108.2	105.4	107.9	111.2
부산	99.8	99.3	100.2	100.0
대구	99.7	99.1	100.0	99.9
인천	100.0	100.0	100.0	100.0
광주	100.1	100.4	100.0	100.0
대전	100.0	100.0	100.0	100.0
울산	98.0	94.4	100.8	98.7
세종	100.0	100.0	100.0	100.0
경기	98.9	96.8	100.0	100.0
강원	99.7	98.5	100.9	99.7
충북	98.6	95.6	100.2	100.0
충남	99.6	99.1	99.7	100.0
전북	100.4	99.6	100.8	100.7
전남	100.0	100.0	100.0	100.0
경북	100.0	99.1	100.9	100.0
경남	99.3	97.7	99.6	100.6
제주	99.9	99.8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23), 내부자료

○ (광역지자체 생활시설) 생활시설 중 6개 시도 시설은 가이드라인 준수, 그 외 시도는 평균 97.9% 준수 중

- 서울 105.4%, 인천 100.0%, 광주 100.4%, 대전 100.0%, 세종 100.0%, 전남 100.0%

○ (광역지자체 이용(사회·노인복지관)시설) 이용시설 중 사회 · 노인복지관은 2개 시도를 제외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 충남 99.7%, 경남 99.6%

○ (광역지자체 이용(장애인복지관)시설) 이용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은 3개 시도를 제외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 대구 99.9%, 울산 98.7%, 강원 99.7%

다. 시스템 기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방법

□ (차이점) 이번에 실시한 시스템 기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방식은 준수율 측정대상과 조사방식, 그리고 분석자료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점이 존재

○ (측정대상) 기존 국고지원 및 지방이양시설 측정방법은 측정대상이 특정시설, 특정직위, 특정 호봉에게만 적용된 반면, 시스템기반 측정은 모든 시설·직위·호봉에 대한 측정이 가능

- (기존 측정 방법 한계 보완) 시스템기반 측정방법은 기존의 지방이양시설 각 직위별 특정 호봉 종사자 측정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시설의 미호봉 사업대상도 측정이 가능

○ (조사방식) 기존 조사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측정대상의 준수율을 기초지자체 및 사업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현장 공무원들이 결과치를 산출해 제출하는 방법이나, 시스템 기반 측정방법은 행복e음 교부금 인건비 신청데이터를 연구진이 직접 분석하는 방법임

- (기존 측정 방법 한계 보완) 기존 준수율 조사가 기초지자체 및 국고지원사업 담당자들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방법은 매년 시스템 자료만 확보된다면 짧은 시간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

○ (분석자료) 기존 준수율 측정자료가 실제 기본급 지급액 또는 예산 확보액이었으나 시스템 기반 측정자료는 행복e음 종사자별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 (교부금 인건비 신청자료) 행복e음 교부금 인건비 자료에는 종사자별 인건비 신청 자료가 존재하나 정산 및 결산자료는 개인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

〈표 4-41〉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방법 비교

구분	기존 준수율 조사		시스템기반 준수율조사
	지방이양 시설	국고지원 시설	
조사 대상	- 생활시설 10개 유형, 이용시설 3개 유형 등 총 13개 시설 유형	- (조사대상) 생활시설 14개 유형, 이용시설 14개 유형 등 총 28개 시설유형	- 행복e음 인건비 교부금 신청 전수 시설, 본 조사에서는 54개 시설
측정 방식	-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대비 종사자 실제 지급액 비교	- (호봉제 보유시설) 대표호봉과 가이드라인 기본급간 비교 - (호봉제 미보유시설) 가이드라인과 확보 예산 기본급 가중평균 비교	-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료 중 기본급 신청 급액과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간 비교
측정 대상	-시설별 특정 직위, 특정 호봉 종사자 ·(이용시설) 관장 15호봉, 부장·사무국장 10호봉, 과장 및 1급 10호봉 등 ·(생활시설) 원장 20·15호봉, 과장 및 생활복지사 10호봉 등	- (호봉제 보유시설) 각 직위별 10호봉 - (호봉제 미보유 시설) 시설별 차이 존재 ·아동그룹홈 시설장은 과장 9호봉,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선임사회복지사 9호봉 등	- (전체 준수율 측정) 대표 호봉이 아닌 전체 개별호봉을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분석 - (특정 시설·직위·호봉 준수율 측정) 호봉제 미적용 국고지원 시설도 분석 가능
조사 방법	- (행정조사) 측정대상에 대해 기초지자체의 협조를 언어 자료를 수집	- (사업부서별 행정조사) 각 사업 담당 부서에 협조를 얻어 산출	- 기초자자체가 아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교부금 인건비 자료로 통계 분석
산출 자료	- 지자체별 특정시설·직위·호봉 종사자의 준수율 산출	- 특정 국고지원시설의 전반적인 종사자 준수율 산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 준수율 및 특정 직위·호봉 종사자의 준수율 측정 결과가 산출

3. 인건비 교부금 신청 전체 기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산출 결과

□ (전체 준수율) 2022년 기준 인건비 교부금 신청자, 70,649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01.6%로 파악

○ (분석 제외 시설) 분석대상인 총 56개 사회복지 세부 시설 중 54개 시설은 준수율 측정이 가능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전용쉼터는 준수율 측정이 불가능하였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사급여 자료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시설 253개, 종사자 73명)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시설 45개, 종사자 21명) 자료가 존재했으나, 교부금 신청자료에서는 2개 기관의 신청자료가 부재해 준수율 측정이 불가능하였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65,740명의 준수율은 101.1%인 반면에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준수율은 108.8%로 약 7.7%p 높았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준수율은 99.8%인데 반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준수율은 103.6%로 이용시설이 약 3.6%p 높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준수율은 97.5%인데 반해, 지방이양시설의 준수율은 106.2%로 지방이양시설이 8.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전체 평균 준수율 101.6%보다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11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108.1%), 경기도(102.9%)의 순이었음

- 반면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97.4%였으며, 다음으로 대구광역시(97.7%), 전라북도(97.8%)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가장 낮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로 88.2%였으며,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91.0%) 등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 인건비 준수율이 가장 낮은 시설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 95.7%였으며, 다음으로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99.0%) 등의 순이었음

○ (직위별)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가장 낮았던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직의 경우, 생활시설에서는 원장(95.8%)이 가장 낮았고, 이용시설에서는 관장(87.9%), 선임사회복지사(92.4%), 부장(95.6%) 등의 순이었음

- 반면에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가장 낮았던 성폭력피해보호시설에서는 생활시설의 경우, 사무국장(92.2%)이 그리고 이용시설에서는 관장이 93.3%로 가장 낮았음

〈표 4-42〉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0,649	2,769,059	2,773,946	101.6	0.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5,740	2,789,398	2,781,190	101.1	0.20
	여성가족부	4,909	2,496,689	2,676,938	108.8	0.25
시설유형	생활시설	36,871	2,808,399	2,766,785	99.8	0.18
	이용시설	33,778	2,726,116	2,781,764	103.6	0.22
재원 출처	국고지원	37,182	2,733,413	2,622,035	97.5	0.19
	지방이양	33,467	2,808,662	2,942,721	106.2	0.20
지역	서울특별시	9,899	2,762,582	2,923,017	108.1	0.25
	부산광역시	4,169	2,763,786	2,828,339	103.7	0.21
	대구광역시	3,352	2,859,134	2,767,494	97.7	0.16
	인천광역시	2,988	2,786,234	2,802,880	101.7	0.17
	광주광역시	2,896	2,765,298	2,751,603	100.7	0.19
	대전광역시	2,521	2,856,324	2,774,032	98.6	0.21
	울산광역시	1,562	2,712,343	2,663,405	99.3	0.16
	세종특별자치시	417	2,710,451	3,050,525	113.6	0.26
	경기도	13,976	2,719,977	2,757,711	102.9	0.22
	강원도	3,180	2,804,610	2,729,811	98.5	0.16
	충청북도	3,433	2,796,555	2,755,159	99.8	0.18
	충청남도	3,443	2,821,442	2,705,961	97.4	0.20
	전라북도	3,889	2,832,175	2,740,427	97.8	0.18
	전라남도	4,099	2,707,603	2,681,920	100.1	0.15
	경상북도	4,969	2,757,160	2,715,828	99.5	0.18
	경상남도	4,523	2,745,853	2,676,719	98.5	0.15
	제주특별자치도	1,333	2,848,191	2,966,400	105.8	0.24

〈표 4-43〉 사회복지 세부시설 전체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 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0,649	2,769,059	2,773,946	101.6	0.20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342	2,800,478	2,904,349	104.6	0.16
	노인여가복지시설	3,961	2,731,129	2,963,835	110.2	0.2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019	2,866,860	2,990,752	105.7	0.19
	소계	6,322	2,767,728	2,955,546	1.08	0.2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6,857	2,635,586	2,774,689	106.0	0.18
	아동일시보호시설	160	2,522,794	2,657,903	105.8	0.09
	아동보호치료시설	295	2,653,959	2,844,804	108.1	0.14
	자립지원시설	46	3,407,754	3,456,711	102.4	0.16
	공동생활가정	2,070	2,435,511	2,483,128	104.5	0.23
	아동상담소	43	2,988,612	2,935,719	97.9	0.14
	아동전용시설	50	2,582,666	2,660,732	103.7	0.09
	지역아동센터	6,905	2,467,373	2,187,197	91.0	0.17
	아동보호전문기관	350	2,470,667	2,454,286	101.9	0.23
	가정위탁지원센터	5	2,926,880	2,547,217	88.2	0.10
	소계	16,781	2,540,448	2,492,295	1.00	0.20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937	2,892,786	2,712,970	94.8	0.1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8,371	2,891,912	2,714,975	94.9	0.1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38	2,913,476	2,650,931	91.5	0.0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53	2,630,364	2,640,316	101.5	0.2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65	3,217,442	2,987,711	95.1	0.2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884	2,812,515	2,950,545	106.8	0.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394	3,002,882	3,143,949	106.1	0.1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31	2,909,266	3,127,036	109.8	0.2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1	3,356,124	3,245,082	99.3	0.25
	소계	33,894	2,881,434	2,842,848	1.00	0.20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2,262	3,168,362	3,129,600	99.5	0.13
	정신재활생활시설	454	3,337,403	3,457,227	105.5	0.17
	정신재활이용시설	579	3,198,186	3,357,820	106.4	0.17
	소계	3,295	3,196,894	3,214,845	1.02	0.15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39	2,746,756	3,001,688	111.0	0.22
	노숙인재활시설	606	2,931,596	3,084,244	106.7	0.22
	노숙인요양시설	479	2,806,564	2,807,598	100.9	0.0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17	2,990,744	3,343,548	113.6	0.2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33	2,849,336	2,983,213	106.8	0.17
	쪽방상담소	73	3,003,685	3,219,158	107.9	0.19
	소계	1,547	2,870,446	3,009,654	1.06	0.19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72	2,665,663	2,637,264	99.5	0.06

구 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882	2,786,300	2,822,445	101.7	0.09
	소계	954	2,777,196	2,808,469	1.02	0.08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644	2,951,118	2,945,749	101.6	0.22
	소계	1,644	2,951,118	2,945,749	1.02	0.22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303	2,384,808	2,456,535	104.2	0.24
	소계	1,303	2,384,808	2,456,535	1.04	0.2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23	2,503,172	2,704,295	108.0	0.22
	청소년지원시설	94	2,498,338	2,775,133	113.2	0.33
	외국인지원시설	4	2,387,700	3,594,494	149.7	0.21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6	2,654,950	2,514,017	95.7	0.10
	자활지원센터	67	2,466,034	2,486,256	101.1	0.14
	성매매피해상담소	159	2,426,326	2,580,705	107.4	0.24
	소계	453	2,470,694	2,648,707	1.08	0.25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80	2,419,144	2,366,656	99.0	0.21
	성폭력피해상담소	367	2,480,429	2,524,602	103.7	0.26
	소계	547	2,460,262	2,472,627	1.02	0.25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47	2,459,265	2,499,188	102.7	0.22
	가정폭력상담소	525	2,486,633	2,457,286	100.7	0.21
	소계	1,072	2,472,668	2,478,667	1.02	0.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220	2,922,261	3,303,701	112.1	0.14
	부자가족복지시설	19	2,744,558	3,014,208	108.9	0.0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09	2,763,487	3,191,612	115.3	0.18
	일시지원복지시설	58	2,768,083	3,099,029	110.8	0.14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2,507,600	2,618,233	104.7	0.07
	소계	608	2,819,943	3,215,909	1.13	0.16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30	2,410,609	2,701,236	114.2	0.28
	소계	1,630	2,410,609	2,701,236	1.14	0.28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541	2,513,925	2,612,180	107.1	0.20
	청소년자립지원관	27	2,438,096	2,822,359	120.2	0.3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1	2,286,435	2,706,013	118.4	0.25
	소계	599	2,498,734	2,626,510	1.08	0.21

〈표 4-44〉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의 직위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0,649	2,769,059	2,773,946	101.6	0.20
노인복지시설	생활-원장	88	4,359,882	4,303,486	99.2	0.13
	생활-사무국장	92	3,930,284	3,925,152	100.1	0.09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84	3,428,696	3,402,276	99.4	0.14
	생활-선임생활지도원	22	3,121,827	3,165,397	101.4	0.08
	생활-생활지도원	667	2,490,376	2,659,491	107.0	0.18
	생활-관리직	14	2,365,479	2,544,719	106.5	0.13
	생활-기능직	275	2,251,736	2,373,280	105.6	0.16
	이용-관장	360	4,438,717	4,360,609	98.6	0.12
	이용-부장	291	3,991,345	3,922,769	98.2	0.11
	이용-과장	653	3,309,162	3,378,869	102.1	0.18
	이용-선임사회복지사	1,082	2,759,023	2,973,357	108.0	0.19
	이용-사회복지사	1,478	2,197,593	2,513,869	114.5	0.26
	이용-관리직4급	583	2,224,611	2,552,999	115.1	0.22
	이용-사무직4급	300	2,264,368	2,590,532	114.9	0.27
	이용-의료직3급	221	2,612,483	2,875,015	110.5	0.19
	이용-의료직4급	12	2,675,658	2,997,695	115.0	0.40
아동복지시설	생활-원장	769	3,528,774	3,321,950	95.8	0.21
	생활-사무국장	229	3,944,736	3,966,404	100.9	0.12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396	3,001,935	3,029,892	101.4	0.1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249	3,103,190	3,255,088	105.0	0.15
	생활-생활지도원	6,394	2,357,825	2,528,417	107.7	0.20
	생활-관리직	92	2,507,542	2,674,079	107.3	0.17
	생활-기능직	649	2,210,755	2,361,722	107.1	0.18
	이용-관장	2,923	2,770,561	2,345,047	87.9	0.21
	이용-부장	4	4,048,900	3,866,875	95.6	0.07
	이용-과장	31	2,999,868	2,973,812	98.6	0.15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566	2,266,492	2,073,983	92.4	0.13
	이용-사회복지사	457	2,127,723	2,115,526	99.9	0.12
	이용-관리직4급	3	1,929,900	2,344,089	121.5	0.08
	이용-사무직4급	15	2,104,007	2,184,174	103.9	0.06
	이용-의료직3급	4	2,477,975	2,489,770	99.8	0.18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원장	810	4,374,192	3,954,436	90.3	0.11
	생활-사무국장	555	4,022,694	3,783,452	94.0	0.11
	생활-과장/생활복지사	8,796	3,074,170	2,741,109	89.6	0.1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673	3,220,295	3,089,042	96.0	0.09
	생활-생활지도원	6,629	2,521,886	2,524,528	100.6	0.15
	생활-관리직	209	2,472,689	2,710,411	109.8	0.27
	생활-기능직	1,792	2,232,402	2,291,179	103.1	0.18
	이용-일반직 관장	1,444	4,246,876	4,098,758	96.5	0.11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464	4,221,277	4,046,405	95.9	0.11
	이용-과장	162	2,961,355	2,921,526	99.3	0.21
	이용-사회복지사	626	2,448,091	2,902,863	118.6	0.16
	이용-일반직1급	149	3,880,944	3,597,565	92.7	0.14
	이용-일반직2급	5,040	3,031,948	3,006,408	99.4	0.16
	이용-일반직3급	228	2,858,255	3,169,923	111.0	0.24
	이용-일반직4급	3,303	2,345,463	2,695,688	115.3	0.26
	이용-일반직5급	32	1,988,166	1,988,166	100.0	0.00
	이용-관리직4급	1,402	2,343,064	2,687,844	115.0	0.25
	이용-사무직4급	916	2,255,524	2,490,544	110.6	0.22
	이용-의료직3급	603	2,509,747	2,904,207	116.5	0.28
	이용-의료직4급	61	2,552,256	3,104,575	123.1	0.25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원장	194	4,466,620	4,405,080	98.9	0.07
	생활-사무국장	235	4,042,095	3,929,020	97.5	0.1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368	3,396,030	3,339,659	98.9	0.1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27	3,160,389	3,264,889	103.5	0.16
	생활-생활지도원	407	2,584,944	2,773,050	107.5	0.19
	생활-관리직	127	2,335,171	2,322,005	99.9	0.13
	생활-기능직	374	2,218,482	2,270,423	102.8	0.17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이용-관장	80	4,651,595	4,550,515	98.0	0.09
	이용-부장	153	3,569,487	3,675,567	103.2	0.15
	이용-과장	181	2,939,957	3,079,232	105.1	0.16
	이용-선임사회복지사	16	3,109,656	3,502,535	112.8	0.11
	이용-사회복지사	128	2,315,148	2,611,941	113.1	0.18
	이용-관리직4급	1	2,205,800	2,205,800	100.0	.
	이용-사무직4급	3	2,282,867	2,307,233	102.2	0.13
	이용-의료직3급	1	2,357,300	2,297,333	97.5	.
노숙인시설	생활-원장	68	4,418,031	4,261,348	96.8	0.11
	생활-사무국장	83	4,058,692	4,057,292	100.2	0.13
	생활-과장/생활복지사	323	3,450,013	3,445,233	100.1	0.1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9	2,971,963	2,987,226	100.6	0.02
	생활-생활지도원	522	2,443,404	2,656,686	109.1	0.20
	생활-관리직	65	2,320,406	2,457,030	106.7	0.25
	생활-기능직	244	2,225,263	2,412,719	108.7	0.21
	이용-관장	9	4,616,478	4,549,251	98.5	0.08
	이용-부장	22	4,085,555	4,127,804	101.2	0.11
	이용-과장	60	3,283,578	3,424,192	103.8	0.11
	이용-선임사회복지사	17	3,067,918	3,276,450	106.6	0.09
	이용-사회복지사	85	2,449,980	2,949,205	120.5	0.25
	이용-관리직4급	15	2,405,400	2,745,629	114.6	0.20
	이용-사무직4급	2	2,051,050	2,301,000	112.4	0.06
	이용-의료직3급	10	2,757,320	2,802,041	101.5	0.15
	이용-의료직4급	3	2,203,233	2,414,789	109.6	0.06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생활-원장	4	4,101,175	3,999,975	97.8	0.04
	생활-사무국장	2	3,660,250	3,620,850	98.6	0.02
	생활-과장/생활복지사	9	3,607,800	3,323,833	92.9	0.1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2	3,128,050	3,317,600	106.4	0.09
	생활-생활지도원	36	2,498,108	2,516,573	100.7	0.04
	생활-관리직	6	2,194,167	2,189,644	99.9	0.01
	생활-기능직	13	2,029,177	2,027,477	99.9	0.00
	이용-관장	54	4,680,309	4,653,628	99.4	0.04
	이용-부장	46	4,140,626	4,108,836	98.8	0.06
	이용-과장	118	3,475,345	3,443,660	99.2	0.11
	이용-선임사회복지사	255	2,794,899	2,825,041	101.2	0.08
	이용-사회복지사	325	2,143,431	2,207,279	102.9	0.08
	이용-관리직4급	46	2,249,746	2,399,131	106.8	0.10
	이용-사무직4급	33	2,409,785	2,501,276	103.9	0.10
	이용-의료직3급	1	2,136,600	2,171,867	101.7	.
	이용-의료직4급	4	2,439,675	2,479,283	101.7	0.02
지역자활센터	이용-관장	195	4,684,406	4,339,787	92.8	0.12
	이용-부장	242	3,889,805	3,611,562	92.8	0.13
	이용-과장	69	3,335,742	3,161,834	94.9	0.12
	이용-사회복지사	367	2,205,542	2,446,716	110.6	0.26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23	2,565,325	2,623,765	102.6	0.23
	이용-관리직4급	5	2,035,420	2,073,052	101.8	0.03
	이용-사무직4급	43	2,147,442	2,304,572	107.4	0.16
다함께돌봄센터	이용-관장	2	3,291,900	4,203,583	130.1	0.25
	이용-부장	24	2,761,696	2,968,444	107.9	0.22
	이용-과장	652	2,601,011	2,574,459	100.0	0.26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	2,438,657	2,355,493	96.2	0.08
	이용-사회복지사	617	2,138,664	2,307,876	108.5	0.21
	이용-관리직4급	1	2,055,400	2,219,333	108.0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사무국장	39	3,082,821	3,604,974	119.1	0.2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69	2,531,542	2,690,623	107.4	0.2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41	2,443,990	2,588,024	106.6	0.25
	생활-생활지도원	47	2,285,804	2,437,848	107.5	0.26
	생활-관리직	5	2,148,260	2,698,666	127.0	0.47
	생활-기능직	26	2,112,704	2,404,797	114.8	0.30
	이용-관장	38	3,197,313	3,306,571	104.8	0.24
	이용-부장	4	2,690,925	2,713,207	101.6	0.13
	이용-과장	23	2,675,239	2,706,262	102.5	0.25
	이용-선임사회복지사	19	2,350,411	2,314,489	98.3	0.24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이용-사회복지사	119	2,219,400	2,389,606	108.1	0.21
	이용-사무직4급	23	2,106,596	2,166,362	103.1	0.1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원장	30	3,072,390	2,952,325	97.8	0.24
	생활-사무국장	1	2,082,200	1,920,000	92.2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98	2,354,766	2,264,135	97.3	0.2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2	2,657,550	3,396,050	124.8	0.35
	생활-생활지도원	38	2,188,492	2,194,551	100.6	0.16
	생활-관리직	4	1,987,350	2,171,275	109.5	0.17
	생활-기능직	7	1,999,671	2,107,557	105.6	0.14
	이용-관장	85	3,316,212	3,069,839	93.3	0.21
	이용-부장	20	2,776,685	3,072,967	113.0	0.39
	이용-과장	18	2,703,633	2,628,133	101.2	0.34
	이용-선임사회복지사	40	2,264,630	2,163,590	96.2	0.17
	이용-사회복지사	196	2,124,931	2,310,145	109.0	0.27
	이용-사무직4급	7	2,029,143	2,070,713	102.3	0.12
	이용-의료직3급	1	2,964,700	2,999,667	101.2	.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원장	95	3,282,819	3,269,083	100.8	0.22
	생활-사무국장	21	2,611,143	2,460,270	95.0	0.1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98	2,371,063	2,378,254	101.5	0.2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7	2,305,608	2,272,346	99.2	0.25
	생활-생활지도원	143	2,141,413	2,328,077	108.7	0.20
	생활-관리직	3	2,007,400	2,047,667	101.8	0.05
	생활-기능직	10	1,926,940	1,990,438	103.3	0.06
	이용-관장	112	3,350,892	3,069,463	93.1	0.22
	이용-부장	34	2,718,418	2,568,462	96.1	0.29
	이용-과장	30	2,666,163	2,329,912	88.0	0.16
	이용-선임사회복지사	46	2,330,659	2,201,316	94.6	0.10
	이용-사회복지사	279	2,154,179	2,281,789	106.5	0.20
	이용-관리직4급	2	1,984,950	2,441,108	122.2	0.31
	이용-사무직4급	19	2,067,126	2,090,271	101.2	0.08
	이용-의료직1급	3	2,100,000	2,197,667	104.7	0.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원장	104	3,680,035	4,392,893	119.5	0.07
	생활-사무국장	81	3,264,188	3,950,537	121.3	0.13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69	2,835,096	3,167,822	111.8	0.1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	2,910,620	3,268,936	112.4	0.25
	생활-생활지도원	160	2,280,916	2,492,228	109.5	0.17
	생활-관리직	54	2,313,317	2,486,705	107.9	0.23
	생활-기능직	28	2,295,875	2,574,708	113.0	0.22
	이용-부장	1	2,331,500	2,552,767	109.5	.
	이용-사회복지사	1	2,683,700	2,683,700	100.0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관장	105	4,068,098	3,716,475	92.0	0.13
	이용-과장	281	3,016,142	3,149,002	105.2	0.2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90	2,442,689	2,599,010	106.7	0.20
	이용-사회복지사	967	2,108,299	2,505,070	119.0	0.30
	이용-관리직4급	2	2,307,150	3,175,564	136.9	0.06
	이용-사무직4급	132	2,109,839	2,521,621	119.7	0.28
	이용-의료직1급	46	2,131,293	2,483,686	116.7	0.31
	이용-의료직2급	7	2,126,671	2,592,310	122.7	0.41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원장	87	3,881,511	3,369,799	88.8	0.18
	생활-사무국장	3	2,213,233	3,572,167	161.0	0.5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59	2,593,617	2,616,027	101.7	0.14
	생활-선임생활지도원	2	2,168,450	2,442,211	112.4	0.26
	생활-생활지도원	287	2,118,217	2,441,543	115.6	0.20
	생활-관리직	40	2,146,083	2,492,506	116.6	0.18
	생활-기능직	21	1,996,029	2,292,131	114.8	0.17

4. 특정 직위·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산출 결과

□ (전체 준수율) 기존 행정조사 기반으로 수집되었던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 준수율 측정방법을 시스템 기반 자료로 대체하여 총 4,813명의 준수율을 측정한 결과, 101.9%였음

○ (측정 대상) 준수율 측정 방법의 표준화 차원에서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의 준수율 측정 방법이 미적용되었던 국고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준수율을 측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4,438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01.4%인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준수율은 107.4%로 약간 높았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 2,866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00.9%인데 반해, 이용시설 종사자 1,947명의 준수율은 103.3%였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6.7%로 낮지만,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07.1%로 약 10.4%p 높았음

○ (지역) 전체 평균 준수율 101.9%보다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11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110.3%), 제주특별자치도(107.7%), 부산광역시(104.0%)의 순이었음

〈표 4-45〉 사회복지시설 시설특성별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813	2,631,145	2,643,057	101.9	0.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4,438	2,634,521	2,633,003	101.4	0.21
	여성가족부	375	2,591,195	2,762,037	107.4	0.23
시설유형	생활시설	2,866	2,612,935	2,611,139	100.9	0.19
	이용시설	1,947	2,657,951	2,690,040	103.3	0.25
재원출처	국고지원	2,413	2,685,675	2,562,198	96.7	0.20
	지방이양	2,400	2,576,320	2,724,354	107.1	0.22
지역	서울특별시	726	2,563,201	2,777,539	110.3	0.28
	부산광역시	294	2,535,030	2,596,572	104.0	0.23
	대구광역시	247	2,664,551	2,554,647	96.9	0.16
	인천광역시	220	2,548,675	2,552,898	101.3	0.17
	광주광역시	182	2,680,707	2,629,974	99.3	0.18
	대전광역시	178	2,739,712	2,605,841	96.6	0.16
	울산광역시	113	2,642,807	2,579,717	98.6	0.12
	세종특별자치시	31	2,696,613	3,098,317	115.4	0.26
	경기도	930	2,639,378	2,687,180	103.5	0.25
	강원도	228	2,721,143	2,642,723	98.5	0.16
	충청북도	231	2,688,223	2,616,220	98.5	0.18
	충청남도	241	2,642,679	2,584,758	99.4	0.21
	전라북도	240	2,685,984	2,557,093	96.1	0.15
	전라남도	241	2,593,310	2,603,899	101.3	0.16
	경상북도	331	2,583,978	2,530,636	99.0	0.18
	경상남도	286	2,693,301	2,595,339	97.4	0.15
	제주특별자치도	94	2,689,000	2,855,525	107.7	0.26

□ (소관부처) 소관시설별 종사자 중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이용시설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으로 준수율은 71.6%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이용시설 부장 15호봉이 62.4%로 가장 낮았음

〈표 4-46〉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438	2,634,521	2,633,003	101.4	0.21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81	4,512,962	4,202,409	92.9	0.13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93	3,967,186	3,652,033	91.7	0.15
생활-사무국장 15호봉	59	3,879,000	3,746,550	96.6	0.12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558	3,083,600	2,814,414	91.3	0.1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69	2,808,100	2,764,362	98.4	0.1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36	2,513,500	2,594,768	103.2	0.24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747	2,332,500	2,424,688	104.0	0.18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901	2,183,800	2,296,070	105.1	0.19
생활-관리직 10호봉	17	2,440,400	2,521,529	103.3	0.08
생활-기능직 10호봉	147	2,362,800	2,395,194	101.4	0.15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49	3,638,273	2,633,110	71.6	0.15
이용-부장 15호봉	59	3,867,571	3,728,942	96.4	0.11
이용-과장 10호봉	87	2,985,433	2,865,152	95.9	0.2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87	2,513,500	2,488,646	99.0	0.21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407	2,183,800	2,456,081	112.5	0.24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63	4,274,700	4,055,254	94.9	0.11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29	4,020,800	3,849,367	95.7	0.13
이용-일반직 1급 10호봉	5	3,375,900	2,937,194	87.0	0.13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309	2,738,500	2,658,185	97.1	0.13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13	2,513,500	2,736,981	108.9	0.17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319	2,183,800	2,614,240	119.7	0.31
이용-일반직 5급 5호봉	3	2,151,800	2,151,800	100.0	0.00

〈표 4-47〉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중 특정직위 및 호봉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5	2,591,195	2,762,037	107.4	0.23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7	3,849,500	4,022,067	104.5	0.23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8	3,605,722	3,642,282	101.1	0.24
생활-사무국장 15호봉	7	3,204,700	3,710,104	115.8	0.2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8	2,886,814	2,909,104	100.8	0.1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3	2,808,100	3,362,122	119.7	0.4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1	2,513,500	2,659,399	105.8	0.37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6	2,332,500	2,541,373	109.0	0.17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1	2,183,800	2,463,684	112.8	0.20
생활-관리직 10호봉	5	2,440,400	3,036,091	124.4	0.46
생활-기능직 10호봉	2	2,362,800	2,362,800	100.0	0.00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8	3,731,156	3,588,014	96.3	0.19
이용-부장 15호봉	1	3,204,700	2,000,000	62.4	
이용-과장 10호봉	46	3,047,665	3,137,261	102.7	0.2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3	2,513,500	2,508,807	99.8	0.19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29	2,183,800	2,436,246	111.6	0.25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 중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 10호봉(91.7%)이었으며, 이용시설에서는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4.2%)으로 나타남

○ (생활시설) 과장 및 생활복지사 10호봉의 준수율은 91.7%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직위는 원장 및 센터장 15호봉(93.2%)이었음

○ (이용시설)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의 준수율은 74.2%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직위는 일반직 1급 10호봉이었음(87.0%)이었음

〈표 4-48〉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66	2,612,935	2,611,139	100.9	0.19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88	4,460,186	4,188,064	93.8	0.15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11	3,908,570	3,650,452	93.2	0.17
생활-사무국장 15호봉	66	3,807,483	3,742,685	98.6	0.1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586	3,074,197	2,818,938	91.7	0.1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72	2,808,100	2,789,269	99.3	0.1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47	2,513,500	2,609,894	103.8	0.27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783	2,332,500	2,430,052	104.2	0.18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942	2,183,800	2,303,366	105.5	0.19
생활-관리직 10호봉	22	2,440,400	2,638,475	108.1	0.23
생활-기능직 10호봉	149	2,362,800	2,394,760	101.4	0.15

〈표 4-49〉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947	2,657,951	2,690,040	103.3	0.25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67	3,648,284	2,736,034	74.2	0.17
이용-부장 15호봉	60	3,856,523	3,700,126	95.9	0.11
이용-과장 10호봉	133	3,006,957	2,959,265	98.2	0.2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310	2,513,500	2,490,142	99.1	0.21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536	2,183,800	2,451,307	112.2	0.24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63	4,274,700	4,055,254	94.9	0.11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29	4,020,800	3,849,367	95.7	0.13
이용-일반직 1급 10호봉	5	3,375,900	2,937,194	87.0	0.13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309	2,738,500	2,658,185	97.1	0.13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13	2,513,500	2,736,981	108.9	0.17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319	2,183,800	2,614,240	119.7	0.31
이용-일반직 5급 5호봉	3	2,151,800	2,151,800	100.0	0.00

□ (재원 출처) 종사자 중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이용시설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2.0%)이었으며, 지방이양시설은 일반직 1급 10호봉(87.0%)이었음

〈표 4-50〉 국고지원 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13	2,685,675	2,562,198	96.7	0.20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50	4,323,680	4,053,476	93.6	0.15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73	3,717,982	3,425,773	92.1	0.20
생활-사무국장 15호봉	45	3,774,109	3,639,942	97.0	0.15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471	3,071,901	2,754,121	89.7	0.1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50	2,808,100	2,770,494	98.7	0.1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35	2,513,500	2,483,694	98.8	0.22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422	2,332,500	2,404,557	103.1	0.19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503	2,183,800	2,224,217	101.9	0.13
생활-관리직 10호봉	22	2,440,400	2,638,475	108.1	0.23
생활-기능직 10호봉	95	2,362,800	2,354,164	99.6	0.14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52	3,586,467	2,598,519	72.0	0.16
이용-부장 15호봉	27	3,829,052	3,507,439	91.5	0.11
이용-과장 10호봉	79	2,954,568	2,918,948	98.4	0.2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62	2,513,500	2,264,268	90.1	0.17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26	2,183,800	2,375,357	108.8	0.24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1	4,274,700	4,274,700	100.0	

〈표 4-51〉 지방이양 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00	2,576,320	2,724,354	107.1	0.22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38	4,639,800	4,365,153	94.1	0.14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38	4,274,700	4,082,071	95.5	0.09
생활-사무국장 15호봉	21	3,879,000	3,962,849	102.2	0.1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15	3,083,600	3,084,408	100.0	0.14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22	2,808,100	2,831,938	100.8	0.0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2	2,513,500	2,977,978	118.5	0.36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61	2,332,500	2,459,856	105.5	0.17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39	2,183,800	2,394,053	109.6	0.23
생활-기능직 10호봉	54	2,362,800	2,466,177	104.4	0.17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5	4,274,700	4,129,515	96.6	0.09
이용-부장 15호봉	33	3,879,000	3,857,779	99.5	0.10
이용-과장 10호봉	54	3,083,600	3,018,248	97.9	0.2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48	2,513,500	2,737,382	108.9	0.20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310	2,183,800	2,506,677	114.8	0.24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62	4,274,700	4,051,715	94.8	0.11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29	4,020,800	3,849,367	95.7	0.13
이용-일반직 1급 10호봉	5	3,375,900	2,937,194	87.0	0.13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309	2,738,500	2,658,185	97.1	0.13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13	2,513,500	2,736,981	108.9	0.17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319	2,183,800	2,614,240	119.7	0.31
이용-일반직 5급 5호봉	3	2,151,800	2,151,800	100.0	0.00

주: 생활시설 관리직 10호봉은 교부금 신청자료 부재로 준수율 분석 미실시

□ (세부시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으로 준수율은 66.9%였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이용시설) 부장 15호봉으로 준수율은 62.4%였음

〈표 4-52〉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노인주거복지시설	전체	89	2,645,310	2,753,113	105.1	0.18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5	4,639,800	4,855,013	104.6	0.04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4	4,274,700	4,021,610	94.1	0.06
	생활-사무국장 15호봉	6	3,879,000	3,754,264	96.8	0.0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	3,083,600	2,898,233	94.0	0.0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2	2,808,100	2,839,050	101.1	0.02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28	2,332,500	2,409,232	103.3	0.18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29	2,183,800	2,483,600	113.7	0.24
	생활-기능직 10호봉	12	2,362,800	2,357,025	99.8	0.04
노인여가복지시설	전체	253	2,441,658	2,715,009	112.1	0.26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5	4,274,700	3,864,215	90.4	0.10
	이용-부장 15호봉	6	3,879,000	3,553,908	91.6	0.11
	이용-과장 10호봉	21	3,083,600	3,223,828	104.5	0.27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78	2,513,500	2,839,794	113.0	0.24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43	2,183,800	2,496,842	114.3	0.2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전체	111	2,635,518	2,811,857	107.9	0.20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6	4,274,700	4,197,232	98.2	0.06
	이용-부장 15호봉	13	3,879,000	3,822,071	98.5	0.07
	이용-과장 10호봉	3	3,083,600	3,439,636	111.5	0.27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39	2,513,500	2,629,800	104.6	0.13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50	2,183,800	2,487,294	113.9	0.26
아동양육시설	전체	672	2,397,241	2,558,691	107.1	0.21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6	4,639,800	4,586,785	98.9	0.03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7	4,274,700	4,215,229	98.6	0.06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1	3,879,000	4,080,155	105.2	0.1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47	3,083,600	3,131,727	101.6	0.1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12	2,808,100	2,885,678	102.8	0.0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9	2,513,500	3,142,237	125.0	0.39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252	2,332,500	2,449,015	105.0	0.17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299	2,183,800	2,401,434	110.0	0.24
	생활-기능직 10호봉	29	2,362,800	2,491,431	105.4	0.20
아동일시보호시설	전체	9	2,366,389	2,602,447	109.8	0.1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	3,083,600	3,565,305	115.6	.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5	2,332,500	2,506,934	107.5	0.10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3	2,183,800	2,440,682	111.8	0.11
아동보호치료시설	전체	25	2,672,616	2,748,804	103.2	0.07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2	4,639,800	4,655,000	100.3	0.00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	3,879,000	3,870,833	99.8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	3,083,600	3,189,292	103.4	0.0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3	2,808,100	2,808,100	100.0	0.00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7	2,332,500	2,412,643	103.4	0.05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9	2,183,800	2,295,400	105.1	0.10
자립지원시설	전체	3	3,480,633	3,372,532	97.5	0.04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	4,274,700	3,950,396	92.4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	3,083,600	3,083,600	100.0	0.00
공동생활가정	전체	189	2,655,993	2,588,358	99.3	0.21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3	3,849,500	3,234,710	84.0	0.18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38	3,522,100	3,069,415	87.1	0.2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8	2,808,100	2,897,312	103.2	0.32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 편차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9	2,513,500	2,307,632	91.8	0.07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59	2,332,500	2,410,183	103.3	0.23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62	2,183,800	2,328,430	106.6	0.13
아동상담소	전체	1	2,513,500	2,527,228	100.5	.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	2,513,500	2,527,228	100.5	.
아동전용시설	전체	3	2,293,700	2,613,494	114.1	0.04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	2,513,500	2,767,100	110.1	.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	2,183,800	2,536,692	116.2	0.01
지역아동센터	전체	238	3,019,759	2,231,920	75.6	0.14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26	3,522,100	2,357,561	66.9	0.1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92	2,513,500	2,103,395	83.7	0.12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0	2,183,800	2,031,598	93.0	0.0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체	54	2,299,517	2,393,581	104.1	0.17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	3,083,600	2,964,778	96.1	0.0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4	2,513,500	2,646,485	105.3	0.21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5	2,332,500	2,567,147	110.1	0.28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32	2,183,800	2,227,059	102.0	0.09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전체	632	2,671,227	2,534,793	95.9	0.16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3	4,639,800	4,462,503	96.2	0.07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8	4,274,700	3,748,328	87.7	0.16
	생활-사무국장 15호봉	20	3,879,000	3,552,028	91.6	0.15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03	3,083,600	2,686,544	87.1	0.1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17	2,808,100	2,628,861	93.6	0.0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2	2,513,500	2,439,500	97.1	0.03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56	2,332,500	2,382,588	102.1	0.18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68	2,183,800	2,189,328	100.3	0.12
	생활-관리직 10호봉	4	2,440,400	2,596,250	106.4	0.09
	생활-기능직 10호봉	41	2,362,800	2,393,547	101.3	0.1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전체	603	2,658,968	2,541,554	96.3	0.16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4	4,639,800	4,356,925	93.9	0.08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8	4,274,700	4,228,246	98.9	0.07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1	3,879,000	3,682,751	94.9	0.0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93	3,083,600	2,738,030	88.8	0.19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20	2,808,100	2,761,161	98.3	0.1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8	2,513,500	2,382,760	94.8	0.01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30	2,332,500	2,388,167	102.4	0.17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75	2,183,800	2,173,068	99.5	0.12
	생활-관리직 10호봉	10	2,440,400	2,550,619	104.5	0.08
	생활-기능직 10호봉	34	2,362,800	2,301,292	97.4	0.0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전체	30	2,624,877	2,502,224	95.7	0.09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	4,639,800	4,417,000	95.2	.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	4,274,700	4,070,000	95.2	.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	3,879,000	3,693,000	95.2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4	3,083,600	2,755,750	89.4	0.0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2	2,808,100	2,673,000	95.2	0.00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2	2,332,500	2,203,670	94.5	0.03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7	2,183,800	2,225,095	101.9	0.15
	생활-기능직 10호봉	2	2,362,800	2,249,000	95.2	0.0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전체	110	2,608,971	2,663,047	103.5	0.21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3	4,639,800	3,565,667	76.8	0.29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7	4,274,700	4,170,673	97.6	0.09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	3,879,000	3,419,667	88.2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8	3,083,600	3,021,560	98.0	0.1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3	2,808,100	2,620,171	93.3	0.0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	2,513,500	2,234,000	88.9	.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29	2,332,500	2,487,779	106.7	0.21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6	2,183,800	2,358,644	108.0	0.24
	생활-기능직 10호봉	2	2,362,800	2,249,000	95.2	0.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전체	41	3,437,790	3,089,824	91.8	0.18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6	4,639,800	3,401,831	73.3	0.12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7	4,274,700	3,546,167	83.0	0.08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4	3,083,600	3,013,762	97.7	0.18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	2,332,500	2,329,444	99.9	0.14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	2,183,800	2,130,000	97.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전체	570	2,569,961	2,728,937	108.4	0.28
	이용-과장 10호봉	9	3,083,600	2,769,027	89.8	0.14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38	4,274,700	3,985,519	93.2	0.13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15	4,020,800	3,829,360	95.2	0.14
	이용-일반직 1급 10호봉	5	3,375,900	2,937,194	87.0	0.13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71	2,738,500	2,561,421	93.5	0.12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13	2,513,500	2,736,981	108.9	0.17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316	2,183,800	2,616,954	119.8	0.31
	이용-일반직 5급 5호봉	3	2,151,800	2,151,800	100.0	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250	2,807,990	2,927,065	105.7	0.17
	이용-과장 10호봉	4	3,083,600	2,798,391	90.8	0.15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67	2,183,800	2,630,801	120.5	0.19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24	4,274,700	4,156,525	97.2	0.07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14	4,020,800	3,870,803	96.3	0.12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38	2,738,500	2,778,088	101.4	0.12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3	2,183,800	2,328,374	106.6	0.0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체	1	4,274,700	4,274,700	100.0	.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1	4,274,700	4,274,700	100.0	.
정신요양시설	전체	96	2,748,575	2,727,118	99.4	0.14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	4,639,800	4,401,800	94.9	.
	생활-사무국장 15호봉	6	3,879,000	3,763,804	97.0	0.0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40	3,083,600	3,050,261	98.9	0.1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	2,513,500	2,380,200	94.7	.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1	2,332,500	2,448,964	105.0	0.26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8	2,183,800	2,137,331	97.9	0.07
	생활-관리직 10호봉	3	2,440,400	2,324,933	95.3	0.02
	생활-기능직 10호봉	16	2,362,800	2,377,668	100.6	0.15
정신재활생활시설	전체	38	3,572,571	3,655,131	103.6	0.13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3	4,639,800	4,601,343	99.2	0.07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6	4,274,700	4,185,039	97.9	0.0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8	3,083,600	3,362,460	109.0	0.14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5	2,332,500	2,427,700	104.1	0.06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	2,183,800	2,549,259	116.7	0.26
	생활-기능직 10호봉	2	2,362,800	2,366,036	100.1	0.00
정신재활이용시설	전체	37	3,130,908	3,273,600	105.4	0.16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3	4,274,700	4,510,391	105.5	0.06
	이용-부장 15호봉	12	3,879,000	4,071,535	105.0	0.09
	이용-과장 10호봉	9	3,083,600	2,875,911	93.3	0.19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	2,513,500	3,190,787	126.9	.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2	2,183,800	2,471,634	113.2	0.15
노숙인자활시설	전체	24	2,638,638	3,102,977	120.0	0.26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2	4,639,800	4,602,400	99.2	0.01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2	4,274,700	4,711,531	110.2	0.05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	3,083,600	3,092,317	100.3	.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5	2,332,500	3,188,370	136.7	0.26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3	2,183,800	2,626,365	120.3	0.29
	생활-기능직 10호봉	1	2,362,800	2,666,667	112.9	.
노숙인재활시설	전체	51	2,492,837	2,600,914	104.6	0.12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	4,639,800	4,639,800	100.0	.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2	4,274,700	4,274,700	100.0	0.00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	3,879,000	3,879,000	100.0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	3,083,600	3,083,600	100.0	0.0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2	2,808,100	2,855,800	101.7	0.0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2	2,513,500	2,610,800	103.9	0.00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9	2,332,500	2,494,455	106.9	0.15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7	2,183,800	2,209,104	101.2	0.03
	생활-기능직 10호봉	5	2,362,800	2,705,722	114.5	0.24
노숙인요양시설	전체	38	2,525,968	2,546,632	101.2	0.09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 편차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2	4,274,700	4,237,350	99.1	0.01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	3,879,000	4,643,033	119.7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6	3,083,600	2,773,847	90.0	0.07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8	2,332,500	2,420,700	103.8	0.10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8	2,183,800	2,246,287	102.9	0.06
	생활-기능직 10호봉	3	2,362,800	2,404,139	101.7	0.0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체	10	2,922,330	3,244,560	115.9	0.42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	4,274,700	3,907,080	91.4	.
	이용-부장 15호봉	1	3,879,000	4,266,900	110.0	.
	이용-과장 10호봉	4	3,083,600	2,887,628	93.6	0.09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4	2,183,800	3,180,278	145.6	0.55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전체	1	3,083,600	2,603,000	84.4	.
	이용-과장 10호봉	1	3,083,600	2,603,000	84.4	.
쪽방상담소	전체	3	2,183,800	2,427,344	111.2	0.06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3	2,183,800	2,427,344	111.2	0.06
결핵/한센시설	전체	4	2,909,325	2,909,325	100.0	0.00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	4,639,800	4,639,800	100.0	.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	2,332,500	2,332,500	100.0	0.00
사회복지관	전체	61	2,407,180	2,446,294	101.9	0.08
	이용-부장 15호봉	1	3,879,000	3,171,011	81.7	.
	이용-과장 10호봉	3	3,083,600	2,938,189	95.3	0.1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8	2,513,500	2,592,191	103.1	0.09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9	2,183,800	2,229,552	102.1	0.07
지역자활센터	전체	130	2,771,513	2,745,233	100.3	0.20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8	4,274,700	4,167,251	97.5	0.08
	이용-부장 15호봉	25	3,879,000	3,579,834	92.3	0.10
	이용-과장 10호봉	2	3,083,600	2,902,647	94.1	0.03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47	2,513,500	2,459,502	97.9	0.18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48	2,183,800	2,346,762	107.5	0.25
다함께돌봄센터	전체	61	2,517,803	2,507,557	100.6	0.25
	이용-부장 15호봉	1	3,204,700	3,205,000	100.0	.
	이용-과장 10호봉	31	2,808,100	2,596,052	92.4	0.24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9	2,183,800	2,388,911	109.4	0.23
일반지원시설	전체	13	2,573,346	2,752,284	106.6	0.24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	3,204,700	3,879,000	121.0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4	2,808,100	2,625,200	93.5	0.14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2	2,808,100	3,709,850	132.1	0.56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2	2,332,500	2,256,875	96.8	0.05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	2,183,800	2,366,611	108.4	0.18
청소년지원시설	전체	10	2,546,090	2,625,940	104.0	0.26
	생활-사무국장 15호봉	2	3,204,700	3,405,815	106.3	0.4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	2,808,100	2,204,683	78.5	.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2	2,513,500	2,316,843	92.2	0.03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2	2,332,500	2,276,900	97.6	0.01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3	2,183,800	2,685,200	123.0	0.30
외국인지원시설	전체	1	2,513,500	4,292,453	170.8	.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	2,513,500	4,292,453	170.8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전체	1	2,808,100	2,666,667	95.0	.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1	2,808,100	2,666,667	95.0	.
자활지원센터	전체	5	2,909,920	2,927,219	98.0	0.24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2	3,522,100	4,166,850	118.3	0.27
	이용-과장 10호봉	1	2,808,100	2,256,728	80.4	.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	2,513,500	2,000,000	79.6	.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	2,183,800	2,045,668	93.7	.
성매매피해상담소	전체	17	2,439,365	2,679,060	110.7	0.21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3	3,522,100	3,479,159	98.8	0.16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	2,513,500	3,775,667	150.2	.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3	2,183,800	2,410,067	110.4	0.1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체	7	2,978,214	2,809,859	94.6	0.27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3	3,522,100	3,366,567	95.6	0.4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	2,808,100	2,420,000	86.2	0.00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2	2,332,500	2,364,655	101.4	0.06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성폭력피해상담소	전체	18	2,478,167	2,501,688	102.1	0.28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3	3,522,100	3,356,823	95.3	0.24
	이용-과장 10호봉	1	2,808,100	2,240,060	79.8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	2,513,500	2,137,222	85.0	0.03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2	2,183,800	2,370,452	108.5	0.3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체	34	2,797,491	2,730,508	99.0	0.25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4	3,849,500	3,652,467	94.9	0.28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6	3,522,100	2,985,484	84.8	0.12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5	2,808,100	2,632,389	93.7	0.1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7	2,513,500	2,540,188	101.1	0.38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5	2,332,500	2,872,262	123.1	0.32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7	2,183,800	2,144,274	98.2	0.08
가정폭력상담소	전체	36	2,513,192	2,327,642	93.8	0.15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5	3,522,100	3,104,890	88.2	0.24
	이용-부장 15호봉	1	3,204,700	2,000,000	62.4	.
	이용-과장 10호봉	4	2,808,100	2,280,177	81.2	0.07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5	2,513,500	2,248,606	89.5	0.09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1	2,183,800	2,186,044	100.1	0.11
모자가족복지시설	전체	17	2,643,047	3,056,643	114.5	0.26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2	3,522,100	4,251,706	120.7	0.01
	생활-사무국장 15호봉	2	3,204,700	3,939,500	122.9	0.03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	2,808,100	3,384,004	120.5	0.12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	2,332,500	2,373,394	101.8	0.05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	2,183,800	2,169,964	99.4	0.02
	생활-관리직 10호봉	3	2,440,400	3,209,489	131.5	0.6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전체	24	2,745,704	3,120,292	112.9	0.11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3	3,849,500	4,514,867	117.3	0.06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3	3,522,100	4,183,133	118.8	0.05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	3,204,700	3,522,100	109.9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	2,808,100	3,360,550	119.7	0.1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	2,513,500	2,545,933	101.3	.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6	2,332,500	2,661,898	114.1	0.14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5	2,183,800	2,389,265	109.4	0.11
	생활-기능직 10호봉	2	2,362,800	2,362,800	100.0	0.00
일시지원복지시설	전체	4	3,085,750	3,710,179	119.3	0.12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	3,522,100	4,759,650	135.1	.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	3,204,700	3,879,000	121.0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	2,808,100	3,101,033	110.4	0.0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체	141	2,545,944	2,793,411	110.8	0.24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5	4,274,700	4,043,632	94.6	0.10
	이용-과장 10호봉	40	3,083,600	3,267,412	106.0	0.19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4	2,513,500	2,600,672	103.5	0.16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82	2,183,800	2,518,864	115.3	0.27
청소년쉼터	전체	41	2,521,032	2,732,583	109.8	0.18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2	4,274,700	4,100,172	95.9	0.17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8	3,083,600	3,038,971	98.6	0.13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3	2,332,500	2,465,255	105.7	0.09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6	2,183,800	2,620,217	120.0	0.21
	생활-관리직 10호봉	2	2,440,400	2,775,995	113.8	0.25
청소년자립지원관	전체	5	2,273,020	2,824,156	124.5	0.29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	2,332,500	2,730,458	117.1	0.29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2	2,183,800	2,964,703	135.8	0.3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전체	1	3,522,100	3,535,670	100.4	.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	3,522,100	3,535,670	100.4	.

5. 광역지자체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전국)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 측정방식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용시설의 일반직 4급 5호봉이 가장 높았고,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의 준수율이 가장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101.9%보다 준수율 분석치가 가장 높았던 직위는 이용시설의 일반직 4급 5호봉으로 119.7%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5호봉(112.2%)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101.9%보다 준수율 분석치가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으로 74.2%였으며, 다음이 이용시설 일반직 1급 10호봉(87.0%)의 순이었음

〈표 4-53〉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813	2,631,145	2,643,057	101.9	0.22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88	4,460,186	4,188,064	93.8	0.15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11	3,908,570	3,650,452	93.2	0.17
생활-사무국장 15호봉	66	3,807,483	3,742,685	98.6	0.1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586	3,074,197	2,818,938	91.7	0.1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72	2,808,100	2,789,269	99.3	0.1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47	2,513,500	2,609,894	103.8	0.27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783	2,332,500	2,430,052	104.2	0.18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942	2,183,800	2,303,366	105.5	0.19
생활-관리직 10호봉	22	2,440,400	2,638,475	108.1	0.23
생활-기능직 10호봉	149	2,362,800	2,394,760	101.4	0.15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67	3,648,284	2,736,034	74.2	0.17
이용-부장 15호봉	60	3,856,523	3,700,126	95.9	0.11
이용-과장 10호봉	133	3,006,957	2,959,265	98.2	0.2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310	2,513,500	2,490,142	99.1	0.21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536	2,183,800	2,451,307	112.2	0.24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63	4,274,700	4,055,254	94.9	0.11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29	4,020,800	3,849,367	95.7	0.13
이용-일반직 1급 10호봉	5	3,375,900	2,937,194	87.0	0.13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309	2,738,500	2,658,185	97.1	0.13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13	2,513,500	2,736,981	108.9	0.17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319	2,183,800	2,614,240	119.7	0.31
이용-일반직 5급 5호봉	3	2,151,800	2,151,800	100.0	0.00

□ (서울) 서울특별시 소재 시설 종사자 726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10.3%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8.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110.3%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았던 직위는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 7호봉(128.0%)이었으며, 다음이 이용시설 일반직 4급 5호봉(124.8%) 등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110.3%보다 준수율이 매우 낮은 직위는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 (69.6%)이었으며, 다음이 이용시설 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84.6%) 등이었음

〈표 4-5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26	2,563,201	2,777,539	110.3	0.28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8	4,464,178	4,330,500	97.4	0.10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7	3,876,265	3,784,132	98.2	0.24
생활-사무국장 15호봉	5	3,609,280	3,932,089	110.5	0.2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69	3,071,622	2,981,189	97.1	0.2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9	2,808,100	3,300,236	117.5	0.3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8	2,513,500	3,217,283	128.0	0.41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05	2,332,500	2,595,736	111.3	0.28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12	2,183,800	2,696,614	123.5	0.35
생활-관리직 10호봉	5	2,440,400	2,574,791	105.5	0.09
생활-기능직 10호봉	17	2,362,800	2,654,272	112.3	0.30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5	3,622,447	2,547,390	69.6	0.20
이용-부장 15호봉	11	3,817,700	3,809,216	99.8	0.10
이용-과장 10호봉	30	2,945,850	3,096,155	105.2	0.15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31	2,513,500	2,727,353	108.5	0.27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51	2,183,800	2,432,938	111.4	0.19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4	4,274,700	3,785,292	88.6	0.11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5	4,020,800	3,403,117	84.6	0.14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34	2,738,500	2,519,745	92.0	0.10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80	2,183,800	2,726,192	124.8	0.31

□ (부산) 부산광역시 소재 시설 종사자 294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04.0%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2.1%p 높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104.0%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이용시설의 일반직 4급 5호봉(119.3%)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 사회복지사(111.6%) 등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104.0%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66.8%), 생활시설의 원장 및 센터장 20호봉(73.4%) 순이었음

〈표 4-5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94	2,535,030	2,596,572	104.0	0.23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2	4,639,800	3,407,617	73.4	0.18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7	3,844,643	3,140,978	81.1	0.10
생활-사무국장 15호봉	2	3,879,000	3,678,185	94.8	0.09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0	3,074,417	3,033,454	98.7	0.19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4	2,808,100	2,508,167	89.3	0.1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	2,513,500	2,114,000	84.1	.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5	2,332,500	2,479,913	106.3	0.22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5	2,183,800	2,344,399	107.4	0.19
생활-기능직 10호봉	10	2,362,800	2,298,834	97.3	0.05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5	3,672,620	2,485,447	66.8	0.13
이용-부장 15호봉	3	3,879,000	3,299,163	85.1	0.08
이용-과장 10호봉	10	3,056,050	2,945,828	96.1	0.3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34	2,513,500	2,568,419	102.2	0.20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55	2,183,800	2,436,861	111.6	0.22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1	4,274,700	3,482,967	81.5	.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1	4,020,800	3,879,000	96.5	.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4	2,738,500	2,577,305	94.1	0.09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8	2,513,500	2,735,718	108.8	0.20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27	2,183,800	2,604,952	119.3	0.34

□ (대구) 대구광역시 소재 시설 종사자 247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6.9%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5.0%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6.9%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생활시설의 관리직 10호봉(148.8%)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 일반직 4급 5호봉(121.3%)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6.9%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81.2%)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 사무국장 15호봉(84.9%)의 순이었음

〈표 4-5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7	2,664,551	2,554,647	96.9	0.16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4	4,442,225	4,121,903	92.4	0.11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0	3,672,620	3,474,640	94.5	0.10
생활-사무국장 15호봉	2	3,879,000	3,291,752	84.9	0.15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4	3,067,394	2,621,992	85.5	0.1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7	2,808,100	2,766,100	98.5	0.0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4	2,513,500	2,453,875	97.6	0.08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41	2,332,500	2,285,456	98.0	0.05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2	2,183,800	2,184,157	100.0	0.09
생활-관리직 10호봉	2	2,440,400	3,632,533	148.8	0.76
생활-기능직 10호봉	6	2,362,800	2,532,364	107.2	0.18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7	3,737,129	3,075,841	81.2	0.20
이용-부장 15호봉	2	3,879,000	4,089,072	105.4	0.07
이용-과장 10호봉	6	2,991,767	2,920,777	96.9	0.2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4	2,513,500	2,367,144	94.2	0.13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3	2,183,800	2,259,540	103.5	0.12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5	4,274,700	3,672,712	85.9	0.08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9	2,738,500	2,565,082	93.7	0.13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9	2,183,800	2,649,130	121.3	0.33

□ (인천) 인천광역시 소재 시설 종사자 220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01.3%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0.6%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101.3%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5호봉(111.3%)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105.7%)과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5호봉(105.7%)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101.3%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66.7%)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 원장 및 센터장 15호봉(85.9%)의 순이었음

〈표 4-57〉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0	2,548,675	2,552,898	101.3	0.17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	3,849,500	3,663,800	95.2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3	4,023,833	3,503,018	85.9	0.20
생활-사무국장 15호봉	5	3,744,140	3,764,531	101.3	0.1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0	3,056,050	2,754,826	90.3	0.1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3	2,808,100	2,968,527	105.7	0.1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3	2,513,500	2,403,644	95.6	0.05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46	2,332,500	2,445,403	104.8	0.16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51	2,183,800	2,307,942	105.7	0.17
생활-기능직 10호봉	13	2,362,800	2,369,842	100.3	0.11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5	3,672,620	2,508,033	66.7	0.22
이용-부장 15호봉	4	3,879,000	3,950,790	101.9	0.05
이용-과장 10호봉	7	2,965,529	2,795,243	93.3	0.29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5	2,513,500	2,550,304	101.5	0.12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6	2,183,800	2,430,152	111.3	0.16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4	4,274,700	4,183,842	97.9	0.14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1	2,738,500	2,423,413	88.5	0.04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13	2,183,800	2,245,309	102.8	0.06

□ (광주) 광주광역시 소재 시설 종사자 182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9.3%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2.6%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9.3%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5호봉(110.1%)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07.6%) 등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9.3%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과장 10호봉(66.7%)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0.4%)의 순이었음

〈표 4-5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82	2,680,707	2,629,974	99.3	0.18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2	4,639,800	4,788,622	103.2	0.12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	3,522,100	2,593,920	73.6	
생활-사무국장 15호봉	2	3,541,850	2,986,093	83.4	0.13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2	3,083,600	2,858,271	92.7	0.2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3	2,808,100	2,635,268	93.8	0.0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5	2,513,500	2,705,667	107.6	0.44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3	2,332,500	2,449,481	105.0	0.16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36	2,183,800	2,346,172	107.4	0.14
생활-기능직 10호봉	2	2,362,800	2,305,900	97.6	0.03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6	3,522,100	2,480,000	70.4	0.09
이용-부장 15호봉	2	3,879,000	3,719,800	95.9	0.05
이용-과장 10호봉	1	3,083,600	2,055,733	66.7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2	2,513,500	2,210,773	88.0	0.10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0	2,183,800	2,403,724	110.1	0.26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5	4,274,700	4,278,607	100.1	0.00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3	4,020,800	3,671,895	91.3	0.10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21	2,738,500	2,701,520	98.6	0.06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6	2,183,800	2,270,633	104.0	0.03

□ (대전) 대전광역시 소재 시설 종사자 178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6.6%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5.3%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6.6%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5호봉(125.5%)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7호봉(102.1%) 등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6.6%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부장 15호봉(62.9%)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2.1%) 등의 순이었음

〈표 4-59〉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8	2,739,712	2,605,841	96.6	0.16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6	4,508,083	4,280,172	95.7	0.16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9	4,107,456	3,956,371	96.8	0.18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	3,879,000	3,879,000	100.0	.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9	3,083,600	2,725,963	88.4	0.1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4	2,808,100	2,808,100	100.0	0.0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2	2,513,500	2,182,875	86.8	0.05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6	2,332,500	2,382,021	102.1	0.11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38	2,183,800	2,203,949	100.9	0.10
생활-기능직 10호봉	7	2,362,800	2,333,991	98.8	0.07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4	3,522,100	2,541,086	72.1	0.10
이용-부장 15호봉	1	3,879,000	2,441,333	62.9	.
이용-과장 10호봉	5	2,918,300	2,623,729	89.6	0.1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0	2,513,500	2,208,352	87.9	0.19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9	2,183,800	2,741,042	125.5	0.26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2	4,274,700	4,271,672	99.9	0.00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2	4,020,800	3,887,700	96.7	0.00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7	2,738,500	2,552,000	93.2	0.06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6	2,183,800	2,228,233	102.0	0.06

□ (울산) 울산광역시 소재 시설 종사자 113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8.6%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3.3%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8.6%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일반직 4급 5호봉(105.8%)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7호봉 (103.5%) 등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8.6%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2.5%)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 사무국장 15호봉(88.0%) 등의 순이었음

〈표 4-60〉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3	2,642,807	2,579,717	98.6	0.12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3	3,522,100	3,608,886	102.5	0.33
생활-사무국장 15호봉	4	3,879,000	3,517,611	90.7	0.03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1	3,083,600	2,782,142	90.2	0.14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2	2,808,100	2,673,000	95.2	0.0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2	2,513,500	2,393,000	95.2	0.00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4	2,332,500	2,414,667	103.5	0.15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29	2,183,800	2,253,445	103.2	0.11
생활-기능직 10호봉	3	2,362,800	2,249,000	95.2	0.00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3	3,772,967	2,774,998	72.5	0.14
이용-부장 15호봉	1	3,879,000	3,522,100	90.8	.
이용-과장 10호봉	2	3,083,600	2,906,953	94.3	0.0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7	2,513,500	2,486,102	98.9	0.05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1	2,183,800	2,210,383	101.2	0.03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4	4,274,700	4,105,275	96.0	0.09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1	4,020,800	3,537,580	88.0	.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0	2,738,500	2,656,933	97.0	0.10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1	2,513,500	2,513,500	100.0	.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5	2,183,800	2,310,744	105.8	0.03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시설 종사자 31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15.4%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13.5%p 높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115.4%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생활시설의 기능직 10호봉(157.8%)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 7호봉(138.0%) 등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115.4%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과장 10호봉(68.9%)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 부장 15호봉(89.2%) 등의 순이었음

〈표 4-6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	2,696,613	3,098,317	115.4	0.2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7	3,083,600	4,036,403	130.9	0.21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4	2,332,500	3,217,878	138.0	0.36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6	2,183,800	2,242,790	102.7	0.04
생활-기능직 10호봉	1	2,362,800	3,729,208	157.8	.
이용-부장 15호봉	1	3,879,000	3,458,500	89.2	.
이용-과장 10호봉	1	2,808,100	1,935,000	68.9	.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	2,513,500	2,529,717	100.6	0.01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3	2,183,800	2,472,816	113.2	0.19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2	4,274,700	4,167,850	97.5	0.04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3	2,738,500	3,065,654	111.9	0.33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1	2,183,800	2,331,500	106.8	.

□ (경기도) 경기도 소재 시설 종사자 930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03.5%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1.6%p 높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103.5%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일반직 4급 5호봉(126.2%)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일반직 3급 7호봉(125.2%)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103.5%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9.6%)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 과장 및 생활복지사 10호봉 (89.9%) 등의 순이었음

〈표 4-6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30	2,639,378	2,687,180	103.5	0.25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7	4,546,824	4,244,432	93.4	0.19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6	3,898,400	3,612,019	92.2	0.16
생활-사무국장 15호봉	7	3,782,671	3,761,004	100.0	0.1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23	3,081,360	2,769,395	89.9	0.1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14	2,808,100	2,734,495	97.4	0.1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0	2,513,500	2,686,736	106.9	0.26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123	2,332,500	2,455,384	105.3	0.20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161	2,183,800	2,257,983	103.4	0.13
생활-관리직 10호봉	10	2,440,400	2,534,932	103.9	0.08
생활-기능직 10호봉	31	2,362,800	2,419,455	102.4	0.14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43	3,644,616	2,926,637	79.6	0.18
이용-부장 15호봉	9	3,879,000	3,999,488	103.1	0.11
이용-과장 10호봉	28	3,014,725	2,975,405	98.5	0.21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66	2,513,500	2,669,257	106.2	0.25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97	2,183,800	2,582,386	118.3	0.34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8	4,274,700	3,993,431	93.4	0.14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6	4,020,800	3,879,225	96.5	0.14
이용-일반직 1급 10호봉	2	3,375,900	3,095,118	91.7	0.21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76	2,738,500	2,740,603	100.1	0.16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2	2,513,500	3,145,856	125.2	0.01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81	2,183,800	2,756,937	126.2	0.37

□ (강원도) 강원도 소재 시설 종사자 228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8.5%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3.4%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8.5%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과장 10호봉(118.1%)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일반직 4급 5호봉(115.1%)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8.5%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1.1%)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72.4%) 등의 순이었음

〈표 4-63〉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8	2,721,143	2,642,723	98.5	0.16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7	4,414,000	4,006,844	90.4	0.11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8	3,898,400	3,553,033	91.0	0.09
생활-사무국장 15호봉	3	3,879,000	3,758,094	96.9	0.0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1	3,083,600	2,827,264	91.7	0.1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3	2,808,100	2,708,857	96.5	0.0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2	2,513,500	2,383,035	94.8	0.00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1	2,332,500	2,375,141	101.8	0.09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2	2,183,800	2,214,833	101.4	0.07
생활-기능직 10호봉	7	2,362,800	2,309,119	97.7	0.05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4	3,683,371	2,650,521	71.1	0.14
이용-부장 15호봉	6	3,879,000	3,683,007	94.9	0.07
이용-과장 10호봉	7	3,083,600	3,641,059	118.1	0.27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9	2,513,500	2,465,828	98.1	0.12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3	2,183,800	2,387,399	109.3	0.22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2	4,274,700	4,274,700	100.0	0.00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1	4,020,800	2,912,733	72.4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4	2,738,500	2,645,258	96.6	0.10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8	2,183,800	2,513,183	115.1	0.25

□ (충청북도) 충청북도 소재 시설 종사자 231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8.5%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3.4%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8.5%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일반직 4급 5호봉(125.4%)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5호봉(113.0%)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8.5%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68.9%)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1급 10호봉(86.3%) 등의 순이었음

〈표 4-64〉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1	2,688,223	2,616,220	98.5	0.18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8	4,244,650	4,004,595	93.9	0.12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4	3,898,400	3,882,054	99.7	0.23
생활-사무국장 15호봉	5	3,879,000	3,507,990	90.4	0.21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2	3,066,381	2,799,516	91.4	0.1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4	2,808,100	2,740,550	97.6	0.0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3	2,513,500	2,350,652	93.5	0.07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7	2,332,500	2,345,831	100.6	0.10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8	2,183,800	2,146,610	98.3	0.07
생활-관리직 10호봉	2	2,440,400	2,748,900	112.6	0.26
생활-기능직 10호봉	6	2,362,800	2,275,764	96.3	0.03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8	3,710,250	2,590,782	68.9	0.13
이용-부장 15호봉	2	3,879,000	3,423,229	88.3	0.17
이용-과장 10호봉	8	3,014,725	2,715,561	89.6	0.15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8	2,513,500	2,279,423	90.7	0.13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5	2,183,800	2,467,991	113.0	0.29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4	4,274,700	4,600,298	107.6	0.09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2	4,020,800	3,918,617	97.5	0.03
이용-일반직 1급 10호봉	1	3,375,900	2,912,367	86.3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4	2,738,500	2,634,486	96.2	0.08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10	2,183,800	2,739,183	125.4	0.30

□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재 시설 종사자 241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9.4%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2.5%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9.4%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일반직 4급 5호봉(129.1%)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 7호봉(105.6%)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9.4%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54.4%)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과장 10호봉 (77.0%) 등의 순이었음

〈표 4-65〉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1	2,642,679	2,584,758	99.4	0.21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4	4,442,225	3,767,639	83.6	0.19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8	3,898,400	3,659,616	92.6	0.18
생활-사무국장 15호봉	7	3,879,000	3,770,214	97.2	0.03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6	3,068,294	2,847,267	93.0	0.1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2	2,808,100	2,868,866	102.2	0.0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	2,513,500	2,380,200	94.7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48	2,332,500	2,462,950	105.6	0.15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58	2,183,800	2,271,855	104.0	0.13
생활-기능직 10호봉	6	2,362,800	2,277,467	96.4	0.13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8	3,522,100	1,914,938	54.4	0.00
이용-과장 10호봉	3	2,991,767	2,300,122	77.0	0.13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2	2,513,500	2,341,837	93.2	0.27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2	2,183,800	2,261,730	103.6	0.09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2	4,274,700	3,588,654	84.0	0.10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2	4,020,800	3,909,852	97.2	0.08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1	2,738,500	2,819,392	103.0	0.18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11	2,183,800	2,820,245	129.1	0.42

□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재 시설 종사자 240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6.1%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5.8%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6.1%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5호봉(112.0%)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106.3%)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6.1%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0.0%)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과장 및 생활복지사 10호봉 (87.1%) 등의 순이었음

〈표 4-66〉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0	2,685,984	2,557,093	96.1	0.15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4	4,639,800	4,417,632	95.2	0.00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3	4,023,833	3,768,787	92.1	0.22
생활-사무국장 15호봉	7	3,782,671	3,792,631	100.8	0.1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34	3,059,291	2,663,226	87.1	0.1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4	2,808,100	2,643,493	94.1	0.0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2	2,513,500	2,399,167	95.5	0.05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46	2,332,500	2,301,083	98.7	0.07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8	2,183,800	2,186,208	100.1	0.10
생활-기능직 10호봉	10	2,362,800	2,363,180	100.0	0.09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9	3,522,100	2,466,406	70.0	0.09
이용-부장 15호봉	7	3,879,000	3,681,375	94.9	0.08
이용-과장 10호봉	9	3,052,989	2,983,620	97.5	0.31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8	2,513,500	2,256,280	89.8	0.11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3	2,183,800	2,446,842	112.0	0.35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3	4,274,700	4,149,222	97.1	0.05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1	4,020,800	4,274,700	106.3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2	2,738,500	2,605,866	95.2	0.06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10	2,183,800	2,260,089	103.5	0.06

□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재 시설 종사자 241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01.3%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0.6%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101.3%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생활시설의 사무국장 15호봉(118.9%)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5호봉(111.3%)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101.3%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9.0%)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선임사회복지사 7호봉(88.0%) 등의 순이었음

〈표 4-67〉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1	2,593,310	2,603,899	101.3	0.16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3	4,639,800	4,578,422	98.7	0.02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8	3,898,400	3,831,822	98.2	0.13
생활-사무국장 15호봉	2	3,879,000	4,612,221	118.9	0.2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3	3,083,600	2,816,827	91.3	0.1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4	2,808,100	2,777,496	98.9	0.0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	2,513,500	2,355,100	93.7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46	2,332,500	2,416,459	103.6	0.16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63	2,183,800	2,308,132	105.7	0.18
생활-관리직 10호봉	2	2,440,400	2,338,500	95.8	0.02
생활-기능직 10호봉	7	2,362,800	2,304,725	97.5	0.06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8	3,710,250	2,952,508	79.0	0.12
이용-부장 15호봉	1	3,879,000	3,825,500	98.6	
이용-과장 10호봉	2	3,083,600	2,935,173	95.2	0.14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0	2,513,500	2,212,007	88.0	0.09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3	2,183,800	2,431,049	111.3	0.18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6	4,274,700	4,328,018	101.2	0.10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9	2,738,500	2,732,234	99.8	0.07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13	2,183,800	2,235,630	102.4	0.04

□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재 시설 종사자 331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9.0%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2.9%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9.0%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126.3%)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직 4급 5호봉 (119.5%) 등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9.0%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76.1%)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일반직 1급 10호봉(82.7%) 등의 순이었음

〈표 4-68〉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1	2,583,978	2,530,636	99.0	0.18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3	4,639,800	4,883,786	105.3	0.05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6	4,149,267	3,862,519	92.5	0.11
생활-사무국장 15호봉	4	3,879,000	3,838,420	99.0	0.03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42	3,077,040	2,740,035	89.1	0.1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7	2,808,100	2,623,227	93.4	0.0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2	2,513,500	2,454,750	97.7	0.03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63	2,332,500	2,355,943	101.0	0.15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92	2,183,800	2,207,023	101.1	0.15
생활-기능직 10호봉	14	2,362,800	2,334,166	98.8	0.06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1	3,658,936	2,813,380	76.1	0.22
이용-부장 15호봉	2	3,879,000	3,637,800	93.8	0.10
이용-과장 10호봉	3	2,991,767	2,492,589	82.9	0.13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2	2,513,500	2,614,071	104.0	0.17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1	2,183,800	2,341,986	107.2	0.15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6	4,274,700	3,759,661	88.0	0.14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1	4,020,800	5,080,000	126.3	
이용-일반직 1급 10호봉	2	3,375,900	2,791,683	82.7	0.12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7	2,738,500	2,577,437	94.1	0.19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20	2,183,800	2,610,690	119.5	0.32
이용-일반직 5급 5호봉	3	2,151,800	2,151,800	100.0	0.00

□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재 시설 종사자 286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7.4%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4.5%p 낮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97.4%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5호봉(111.6%)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직 4급 5호봉(109.9%) 등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97.4%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15호봉(83.9%)이었고,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원장 및 센터장 15호봉(85.7%) 등의 순이었음

〈표 4-69〉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6	2,693,301	2,595,339	97.4	0.15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8	4,244,650	3,844,704	89.9	0.21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5	4,274,700	3,661,562	85.7	0.19
생활-사무국장 15호봉	10	3,811,570	3,801,330	99.9	0.0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42	3,070,481	2,681,573	87.4	0.1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2	2,808,100	2,592,050	92.3	0.11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53	2,332,500	2,292,587	98.3	0.07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50	2,183,800	2,168,518	99.3	0.07
생활-관리직 10호봉	1	2,440,400	2,383,300	97.7	
생활-기능직 10호봉	9	2,362,800	2,261,180	95.7	0.06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8	3,898,400	3,321,523	83.9	0.15
이용-부장 15호봉	6	3,766,617	3,335,333	87.8	0.14
이용-과장 10호봉	9	3,083,600	3,097,157	100.4	0.16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17	2,513,500	2,325,413	92.5	0.06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28	2,183,800	2,437,432	111.6	0.22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4	4,274,700	3,933,425	92.0	0.16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5	2,738,500	2,737,430	100.0	0.14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2	2,513,500	2,444,900	97.3	0.02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17	2,183,800	2,399,256	109.9	0.24

□ (제주도) 제주도 소재 시설 종사자 94명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07.7%로 전국 평균(101.9%) 대비 약 5.8%p 높았음

○ (준수율 상위 직위) 전체 평균 107.7%보다 준수율이 가장 높은 직위는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5호봉(133.7%)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직 4급 5호봉(116.9%) 등의 순이었음

○ (준수율 하위 직위) 전체 평균 107.7%보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직위는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 7호봉(78.7%)이었고,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원장 및 센터장 15호봉(89.1%) 등의 순이었음

〈표 4-7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 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4	2,689,000	2,855,525	107.7	0.26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1	4,639,800	4,250,333	91.6	.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3	3,772,967	3,378,047	89.1	0.15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11	3,058,555	3,063,002	100.0	0.3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	2,513,500	1,977,733	78.7	.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22	2,332,500	2,560,450	109.8	0.22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21	2,183,800	2,505,129	114.7	0.29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3	3,772,967	3,697,574	97.0	0.16
이용-부장 15호봉	2	3,879,000	3,771,617	97.2	0.18
이용-과장 10호봉	2	3,083,600	2,862,985	92.8	0.0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3	2,513,500	2,787,381	110.9	0.36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6	2,183,800	2,918,655	133.7	0.44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봉	1	4,274,700	4,282,007	100.2	.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4	4,020,800	4,302,170	107.0	0.02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12	2,738,500	2,716,086	99.2	0.07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2	2,183,800	2,553,380	116.9	0.11

6. 행정조사 기반 준수율 결과와 시스템 기반 준수율 결과 비교

□ (전체 결과) 기존에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에 대한 준수율 측정이 별도로 이루어진 반면 시스템기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은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확인

○ (국고지원시설 측정) 2023년 국고지원시설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정조사 결과의 전체 준수율은 94.1%였으나 시스템 기반 전체 종사자 대상 준수율은 96.6%, 지방이양시설에 설정된 대표직위 및 호봉 대상자 준수율은 평균 96.7%로 파악됨

- (준수율 차이 원인) 2023년 행정조사에서는 각 직위별 대표 10호봉 또는 인건비 가중 평균액을 이용하지만, 시스템기반 조사에서는 각 직위별 실제 호봉을 적용하기 때문

○ (지방이양시설 측정) 2022년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들로부터 확보된 행정조사 결과의 전체 준수율은 100.1%였지만 이번에 실시한 시스템 조사는 2023년 측정치로 107.1%였음

- (준수율 차이 원인) 시스템기반 준수율 측정 시설 중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아동전용시설(114.1%), 노숙인종합지원센터(115.9%), 쪽방상담소(111.2%)에서 높게 나타남

〈표 4-71〉 국고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단위: %)

구 분	2023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조사	
		전체 종사자	특정직위 및 호봉 종사자
전 체	94.1	96.6	96.7
장애인거주시설	96.1	94.8	96.1
정신요양시설	92.9	99.5	99.4
지역자활센터	93.6	101.6	100.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00	99.3	100.0
노인보호전문기관	93.4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1.1	-	-
아동보호전문기관	95	101.6	104.1
학대피해아동쉼터	91.2	-	-
요보호아동그룹홈	93.2	104.5	99.3

주 1. 2023년 시스템 기반 조사의 분석 대상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은 행복e음 인건비 교부금 자료가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요보호아동그룹홈은 시스템 내 별도 구분코드가 없어 아동공동생활 자료를 이용하여 대체

〈표 4-72〉 지방이양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단위: %)

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복지관)			
				사회·노인		장애인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100.1	107.1	99.1	105.8	100.6	110.1	100.5	108.4

주 2023년 시스템기반 조사의 전체 준수율 값인 107.1%는 복지관 중심 이용시설 이외 기타 이용시설들도 포함된 산출값임

제5장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수요

제1절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제3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요

제 5 장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수요

제1절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1.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분석 기준

□ (분석 대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32](이후 사시정)의 수록된 시설 모집단 14,131개 중,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33]에서 2023년도 교부금 인건비을 신청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종사자 인사급여정보가 존재하는 시설 4,739개를 분석 대상 시설로 설정

○ (소관 부처) 시설 중 질병관리청 소관 결핵/한센시설은 2013년, 2016년, 2019년 진행된 기존 실태조사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본고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시설로 분류하여 분석함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모집단 현황

□ (모집단 현황) 사시정에 등록된 14,131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34] 12,986개소(91.9%), 여성가족부 소관시설[35]은 1,145개소(8.1%) 로 파악(〈표 5-1〉~〈표 5-4〉)

○ (복지부 소관시설) 아동복지시설(5,439개소, 38.5%), 장애인복지시설(4,216개소, 29.8%), 노인복지시설(1,033개소, 7.3%), 다함께돌봄센터(987개소, 7.0%),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498개소, 3.5%), 정신건강증진시설(412개소, 2.9%), 지역자활센터(260개소, 1.8%), 노숙인시설(141개소, 1.0%)의 순

- 지역분포에서는 경기(2,669개소), 서울(1,945개소), 전남(819개소), 경남(816개소) 순

○ (여가부 소관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306개소, 2.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26개소, 1.6%), 성폭력피해보호시설(199개소, 1.4%), 청소년복지시설(185개소, 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130개소, 0.9%),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99개소, 0.7%)의 순임

- 지역분포에서는 경기(187개소), 서울(176개소), 경남(88개소), 충남(70개소) 순이었음

---

3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 인사, 급여, 후원금 관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행복e음과 연계하여 각종 온라인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www.w4c.go.kr

33)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

34)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및 결핵·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포함됨.

35)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에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포함됨.

□ (지역별 분포) 사회복지시설은 경기(2,856개소, 20.2%)와 서울(2,121개소, 15.0%) 지역에 많았고, 그 외 경남(904개소, 6.4%), 전남(888개소, 6.3%), 경북(859개소, 6.1%)의 순이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경기-서울-경북-전북 순, 아동복지시설은 경기-서울-전남-전북 순, 장애인복지시설은 경기-서울-부산-경남 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서울-경기-대전-충남 순, 노숙인 시설은 서울-경기-부산-대구 순,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은 서울-경기-부산-경남 순,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서울-경북-부산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 서울-경기-대구 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경기-서울-경남 순, 가정폭력보호시설은 서울/경기-경남 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서울-경기-부산/대구 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기-서울-전남 순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은 경기-서울-강원 순으로 나타남

□ (생활 및 이용시설) 총 시설 중 생활시설은 3,695개소(26.1%), 이용시설은 10,018개소(70.9%)였음

○ (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1,564개소), 아동복지시설(946개소), 노인복지시설(321개소), 정신건강증진시설(276개소), 청소년복지시설(159개소) 순으로 많았고 경기(806개소), 서울(576개소), 경남(216개소)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음

○ (이용시설) 아동복지시설(4,433개소), 장애인복지시설(2,450개소), 다함께돌봄센터(974개소), 노인복지시설(669개소),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483개소) 순으로 수가 많고, 경기(1,931개소), 서울(1,494개소), 전남(677개소), 전북(658개소), 전북(593개소)의 순이었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36]은 8,275개소(58.6%), 지방이양시설[37]은 5,856개소(41.4%)를 대상으로 하고 수가시설[38]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국고지원시설) 경기(1,715개소)-서울(1,070개소)-전남(620개소)-전북(540개소)-경북(515개소)의 순이었음

○ (지방이양시설) 지역분포는 경기(1,141개소)-서울(1,051개소)-경남(400개소)-부산(350개소)-경북(344개소)의 순이었음

---

36) 국고지원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양로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6개종,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개종, 가정폭력보호시설 3개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설 4개종 등이 포함됨.

37) 지방이양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개종 등이 포함됨.

38) 수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됨.

〈표 5-1〉 2023년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소관부처별 지역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14,131	2,121	769	585	600	538	672	282	67	2,856	599	612	692	859	904	820	888	267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1,033	134	61	42	59	22	20	23	3	209	59	58	51	77	66	72	67	10
	아동복지시설	5,439	600	275	255	226	184	362	82	18	1,096	214	235	300	314	351	372	471	84
	장애인복지시설	4,216	668	212	165	180	196	170	103	27	860	184	197	158	284	307	200	197	108
	정신건강증진시설	412	107	21	20	16	33	15	2	4	83	3	14	31	20	8	22	6	7
	노숙인시설	141	48	13	9	6	8	3	1	1	16	7	4	1	4	5	5	7	3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498	101	55	28	20	21	20	9	2	94	18	13	22	16	32	20	17	10
	지역자활센터	260	31	18	11	11	5	9	5	2	36	19	12	14	20	21	18	24	4
	다함께돌봄센터	987	256	56	9	28	26	23	28	7	275	35	33	45	58	26	47	30	5
	계	12,986	1,945	711	539	546	495	622	253	64	2,669	539	566	622	793	816	756	819	231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99	23	11	7	3	4	5	2	·	12	2	2	4	2	8	4	7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199	26	4	4	5	7	12	6	1	32	7	12	18	10	22	13	12	8
	가정폭력보호시설	306	59	14	8	16	7	13	6	·	59	14	10	19	17	22	17	19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30	29	9	9	8	7	6	4	·	13	4	4	4	8	6	8	5	6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6	24	9	10	9	6	5	5	2	29	19	11	15	21	20	15	22	4
	청소년복지시설	185	15	11	8	13	12	9	6	·	42	14	7	10	8	10	7	4	9
	계	1,145	176	58	46	54	43	50	29	3	187	60	46	70	66	88	64	69	36

주: 질병관리청 소속인 결핵한센시설은 기존 실태조사와의 비교 편의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포함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함

〈표 5-2〉 2023년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세부시설별 지역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14,131	2,121	769	585	600	538	672	282	67	2,856	599	612	692	859	904	820	888	267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315	25	6	7	18	8	3	2	2	106	20	21	14	27	16	18	20	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9	·	1	1	1	1	1	1	·	3	1	1	1	2	1	1	2	1
	노인여가복지시설	442	85	36	23	24	8	10	14	·	69	18	22	19	27	20	33	31	3
	노인보호전문기관	41	5	2	3	2	1	1	1	·	5	3	2	2	4	3	2	3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16	19	16	8	14	4	5	5	1	26	17	12	15	17	26	18	11	2
	계	1,033	134	61	42	59	22	20	23	3	209	59	58	51	77	66	72	67	10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243	35	17	17	9	10	10	1	1	29	9	10	13	17	24	14	22	5
	아동일시보호시설	22	6	1	1	1	·	2	1	·	3	3	·	·	1	·	1	1	1
	아동보호치료시설	12	3	1	2	·	1	·	·	·	1	·	1	·	·	1	1	1	·
	자립지원시설	18	4	1	2	·	1	1	1	1	·	1	1	1	·	·	1	2	1
	공동생활가정	661	75	32	14	24	23	39	14	2	192	21	35	41	16	35	46	44	8
	아동상담소	21	3	·	1	4	1	1	·	·	5	2	·	·	·	·	1	2	1
	아동전용시설	14	3	2	1	1	1	1	·	·	1	·	2	1	·	1	·	·	·
	지역아동센터	4,364	463	220	216	182	143	307	60	13	839	177	181	239	275	286	300	398	65
	아동보호전문기관	70	8	·	·	4	3	·	3	1	23	·	4	4	5	4	8	1	2
	가정위탁지원센터	14	·	1	1	1	1	1	2	·	3	1	1	1	·	·	·	·	1
	계	5,439	600	275	255	226	184	362	82	18	1,096	214	235	300	314	351	372	471	8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381	24	18	12	12	10	19	2	4	92	20	24	18	29	18	36	33	1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51	24	8	9	11	11	6	9	1	53	15	14	16	33	15	12	8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2	2	1	1	·	·	·	·	1	·	·	·	·	1	1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69	41	3	2	5	20	5	7	·	28	9	6	7	11	11	2	5	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764	173	36	30	42	40	54	10	2	149	25	46	13	20	56	21	28	1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790	255	99	68	64	78	55	57	11	350	71	77	74	142	139	98	98	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4	141	44	41	41	34	30	17	8	185	42	28	29	47	64	29	24	1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9	6	1	1	2	2	·	·	·	1	1	1	·	1	2	·	·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9	2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계	4,216	668	212	165	180	196	170	103	27	860	184	197	158	284	307	200	197	108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60	3	3	3	2	4	4	1	1	7	·	4	10	5	4	4	4	1
	정신재활생활시설	252	73	6	10	9	24	4	·	2	61	2	9	20	14	1	12	2	3
	정신재활이용시설	100	31	12	7	5	5	7	1	1	15	1	1	1	1	3	6	·	3
	계	412	107	21	20	16	33	15	2	4	83	3	14	31	20	8	22	6	7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50	20	3	4	1	4	1	1	·	8	2	1	1	1	1	2	·	·
	노숙인재활시설	34	9	2	1	1	1	1	·	1	3	·	2	·	1	3	2	5	2
	노숙인요양시설	24	5	3	1	3	·	·	·	·	2	3	1	·	2	1	1	2	·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3	3	3	1	·	1	1	·	·	3	·	·	·	·	·	·	·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9	5	·	1	·	1	·	·	·	·	2	·	·	·	·	·	·	·
	쪽방상담소	11	6	2	1	1	1	·	·	·	·	·	·	·	·	·	·	·	·
	계	141	48	13	9	6	8	3	1	1	16	7	4	1	4	5	5	7	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8	1	·	1	·	·	·	·	·	1	·	·	·	1	1	·	3	·
	사회복지관	490	100	55	27	20	21	20	9	2	93	18	13	22	15	31	20	14	10
	계	498	101	55	28	20	21	20	9	2	94	18	13	22	16	32	20	17	10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260	31	18	11	11	5	9	5	2	36	19	12	14	20	21	18	24	4
	계	260	31	18	11	11	5	9	5	2	36	19	12	14	20	21	18	24	4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87	256	56	9	28	26	23	28	7	275	35	33	45	58	26	47	30	5
	계	987	256	56	9	28	26	23	28	7	275	35	33	45	58	26	47	30	5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2	8	4	3	1	1	2	1	·	2	1	1	2	1	1	2	1	1
	청소년지원시설	14	5	2	1	·	1	1	·	·	·	·	·	·	·	3	·	1	·
	외국인지원시설	1	·	·	·	·	·	·	·	·	1	·	·	·	·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5	1	1	·	·	·	·	·	·	1	·	·	1	·	1	·	·	·
	자활지원센터	13	2	1	1	1	1	1	·	·	3	·	·	·	·	·	1	1	1
	성매매피해상담소	34	7	3	2	1	1	1	1	·	5	1	1	1	1	3	1	4	1
	계	99	23	11	7	3	4	5	2	·	12	2	2	4	2	8	4	7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7	2	3	1	2	2	3	2	·	5	1	3	1	2	2	2	2	4
	성폭력피해상담소	162	24	1	3	3	5	9	4	1	27	6	9	17	8	20	11	10	4
	계	199	26	4	4	5	7	12	6	1	32	7	12	18	10	22	13	12	8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0	22	4	6	4	2	5	2	·	20	7	4	6	5	7	6	7	3
	가정폭력상담소	190	37	10	2	11	5	8	3	·	38	7	5	12	11	15	11	12	3
	긴급전화센터	6	·	·	·	1	·	·	1	·	1	·	1	1	1	·	·	·	·
	계	306	59	14	8	16	7	13	6	·	59	14	10	19	17	22	17	19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46	6	6	5	2	1	2	1	·	2	1	2	2	6	2	5	2	1
	부자가족복지시설	3	2	·	·	1	·	·	·	·	·	·	·	·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63	17	3	3	4	4	4	2	·	8	2	1	2	2	3	2	3	3
	일시지원복지시설	9	1	·	1	1	1	·	1	·	1	·	·	·	·	1	1	·	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9	3	·	·	·	1	·	·	·	2	1	1	·	·	·	·	·	1
	계	130	29	9	9	8	7	6	4	·	13	4	4	4	8	6	8	5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6	24	9	10	9	6	5	5	2	29	19	11	15	21	20	15	22	4
	계	226	24	9	10	9	6	5	5	2	29	19	11	15	21	20	15	22	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48	13	6	7	11	6	7	5	·	33	13	7	9	8	6	6	4	7
	청소년자립지원관	16	2	·	1	2	4	·	·	·	5	1	·	1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1	·	5	·	·	2	2	1	·	4	·	·	·	·	4	1	·	2
	계	185	15	11	8	13	12	9	6	·	42	14	7	10	8	10	7	4	9

〈표 5-3〉 2023년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시설유형별(생활/이용시설) 지역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14,131	2,121	769	585	600	538	672	282	67	2,856	599	612	692	859	904	820	888	267
생활		3,695	576	175	141	168	178	174	64	15	806	149	191	171	199	216	194	194	84
이용		10,018	1,494	585	430	423	342	488	213	48	1,931	427	402	506	633	658	593	677	168
노인복지시설	생활	321	22	7	7	19	9	4	3	2	107	20	22	14	29	16	17	20	3
	이용	669	109	53	32	38	13	16	20	1	98	35	35	36	41	47	48	41	6
	계	1,033	134	61	42	59	22	20	23	3	209	59	58	51	77	66	72	67	10
아동복지시설	생활	946	121	52	36	34	35	52	17	3	222	33	46	55	34	59	63	69	15
	이용	4,433	471	222	216	191	143	309	65	14	855	177	185	244	279	289	306	400	67
	계	5,439	600	275	255	226	184	362	82	18	1,096	214	235	300	314	351	372	471	84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1,564	264	67	52	71	81	84	28	7	320	68	90	54	93	101	71	72	41
	이용	2,450	392	141	108	104	108	80	74	17	469	109	94	97	177	188	117	119	56
	계	4,216	668	212	165	180	196	170	103	27	860	184	197	158	284	307	200	197	108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276	65	8	12	11	26	7	1	2	65	1	11	26	15	5	14	5	2
	이용	129	38	13	8	5	7	8	1	2	17	2	3	5	4	2	8	1	5
	계	412	107	21	20	16	33	15	2	4	83	3	14	31	20	8	22	6	7
노숙인시설	생활	106	34	7	6	5	5	2	1	1	12	5	4	1	4	5	5	7	2
	이용	32	13	5	3	1	3	1	.	.	3	2	.	.	.	.	.	.	1
	계	141	48	13	9	6	8	3	1	1	16	7	4	1	4	5	5	7	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6	1	.	1	.	.	.	.	.	1	.	.	.	1	1	.	1	.
	이용	483	100	54	27	20	21	20	9	2	89	18	13	22	15	30	19	14	10
	계	498	101	55	28	20	21	20	9	2	94	18	13	22	16	32	20	17	10
지역자활센터	이용	257	31	18	11	11	5	9	5	2	33	19	12	14	20	21	18	24	4
	계	260	31	18	11	11	5	9	5	2	36	19	12	14	20	21	18	24	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974	254	56	9	27	25	22	27	7	271	35	33	45	56	26	46	30	5
	계	987	256	56	9	28	26	23	28	7	275	35	33	45	58	26	47	30	5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	51	14	7	4	1	2	3	1	.	4	1	1	2	1	5	2	2	1
	이용	44	8	4	2	2	2	2	1	.	8	1	1	1	1	3	2	4	2
	계	99	23	11	7	3	4	5	2	.	12	2	2	4	2	8	4	7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36	2	3	1	2	2	3	1	.	5	1	3	1	2	2	2	2	4
	이용	142	19	1	3	3	5	9	2	1	25	5	8	15	8	18	6	10	4
	계	199	26	4	4	5	7	12	6	1	32	7	12	18	10	22	13	12	8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	109	21	4	6	4	2	5	2	.	20	7	4	6	5	7	6	7	3
	이용	177	32	9	2	12	4	7	4	.	33	7	6	12	11	14	9	12	3
	계	306	59	14	8	16	7	13	6	.	59	14	10	19	17	22	17	19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121	26	9	9	8	6	6	4	.	11	3	3	4	8	6	8	5	5
	이용	7	3	.	.	.	1	.	.	.	1	.	1	.	.	.	.	.	1
	계	130	29	9	9	8	7	6	4	.	13	4	4	4	8	6	8	5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221	24	9	9	9	5	5	5	2	29	17	11	15	21	20	14	22	4
	계	226	24	9	10	9	6	5	5	2	29	19	11	15	21	20	15	22	4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159	6	11	7	13	10	8	6	.	39	10	7	8	7	9	6	4	8
	계	185	15	11	8	13	12	9	6	.	42	14	7	10	8	10	7	4	9

〈표 5-4〉 2023년 실태조사 모집단 시설 재원 출처별 지역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14,131	2,121	769	585	600	538	672	282	67	2,856	599	612	692	859	904	820	888	267
국고지원		8,275	1,070	419	327	334	271	460	154	35	1,715	352	357	461	515	504	540	620	141
지방이양		5,856	1,051	350	258	266	267	212	128	32	1,141	247	255	231	344	400	280	268	126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60	5	3	4	3	2	2	2	·	8	4	3	3	6	4	3	5	3
	지방이양	973	129	58	38	56	20	18	21	3	201	55	55	48	71	62	69	62	7
	계	1,033	134	61	42	59	22	20	23	3	209	59	58	51	77	66	72	67	10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5,095	546	252	230	210	169	346	77	16	1,054	198	220	284	296	325	354	443	75
	지방이양	344	54	23	25	16	15	16	5	2	42	16	15	16	18	26	18	28	9
	계	5,439	600	275	255	226	184	362	82	18	1,096	214	235	300	314	351	372	471	84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660	52	29	23	26	22	26	12	6	147	36	39	35	63	35	50	42	17
	지방이양	3,556	616	183	142	154	174	144	91	21	713	148	158	123	221	272	150	155	91
	계	4,216	668	212	165	180	196	170	103	27	860	184	197	158	284	307	200	197	108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60	3	3	3	2	4	4	1	1	7	·	4	10	5	4	4	4	1
	지방이양	352	104	18	17	14	29	11	1	3	76	3	10	21	15	4	18	2	6
	계	412	107	21	20	16	33	15	2	4	83	3	14	31	20	8	22	6	7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141	48	13	9	6	8	3	1	1	16	7	4	1	4	5	5	7	3
	계	141	48	13	9	6	8	3	1	1	16	7	4	1	4	5	5	7	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8	1	·	1	·	·	·	·	·	1	·	·	·	1	1	·	3	·
	지방이양	490	100	55	27	20	21	20	9	2	93	18	13	22	15	31	20	14	10
	계	498	101	55	28	20	21	20	9	2	94	18	13	22	16	32	20	17	10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260	31	18	11	11	5	9	5	2	36	19	12	14	20	21	18	24	4
	계	260	31	18	11	11	5	9	5	2	36	19	12	14	20	21	18	24	4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987	256	56	9	28	26	23	28	7	275	35	33	45	58	26	47	30	5
	계	987	256	56	9	28	26	23	28	7	275	35	33	45	58	26	47	30	5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99	23	11	7	3	4	5	2	·	12	2	2	4	2	8	4	7	3
	계	99	23	11	7	3	4	5	2	·	12	2	2	4	2	8	4	7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199	26	4	4	5	7	12	6	1	32	7	12	18	10	22	13	12	8
	계	199	26	4	4	5	7	12	6	1	32	7	12	18	10	22	13	12	8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306	59	14	8	16	7	13	6	·	59	14	10	19	17	22	17	19	6
	계	306	59	14	8	16	7	13	6	·	59	14	10	19	17	22	17	19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130	29	9	9	8	7	6	4	·	13	4	4	4	8	6	8	5	6
	계	130	29	9	9	8	7	6	4	·	13	4	4	4	8	6	8	5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226	24	9	10	9	6	5	5	2	29	19	11	15	21	20	15	22	4
	계	226	24	9	10	9	6	5	5	2	29	19	11	15	21	20	15	22	4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85	15	11	8	13	12	9	6	·	42	14	7	10	8	10	7	4	9
	계	185	15	11	8	13	12	9	6	·	42	14	7	10	8	10	7	4	9

나. 사회보장시스템 제공 20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 시설

□ (개관) 모집단 14,131개 중 2022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인건비 등 교부금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은 11,315개소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10,506개소(92.9%),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809개소(7.1%)였음(〈표 5-5〉~〈표 5-8〉)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아동복지시설(4,909개소, 43.4%), 장애인복지시설(3,471개소, 30.7%), 다함께돌봄센터(751개소, 6.6%), 노인복지시설(623개소, 5.5%), 정신건강증진시설(334개소, 3.0%), 지역자활센터(236개소, 2.1%), 노숙인시설(105개소, 0.9%), 사회복지관(77개소, 0.7%)였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220개소, 1.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시설(161개소, 1.4%), 성폭력피해보호시설(128개소, 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118개소, 1.0%), 청소년복지시설(99개소, 0.9%), 성매매피해지원시설(83개소, 0.7%)의 순이었음

□ (지역별 분포) 교부금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은 경기(2,256개소, 19.9%)와 서울(1,605개소, 14.2%)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그 외 경남/전남(736개소, 6.5%), 경북(699개소, 6.1%), 전북(672개소, 5.9%)의 순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지역분포는 경기(2,123개소), 서울(1,492개소), 전남(677개소), 경남(669개소), 경북(654개소) 순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지역분포는 경기(133개소), 서울(113개소), 경남(67개소), 전남(59개소) 순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유형별 분포) 노인복지시설은 경기-서울-부산-인천-경북 순으로, 아동복지시설은 경기-서울-전남-광주-전북 순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경기-서울-경남-경북-부산 순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서울-경기-부산/전북 순으로, 노숙인시설은 서울-경기-대구-부산/대전 순으로,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은 부산-경기-서울-경남-전북 순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서울-부산-전북-경북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유형별 분포)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 서울-경기-경남 순으로 분포하고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은 경기-서울-경남 순으로, 가정폭력보호시설은 경기-서울-경남 순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서울-경기-부산/대구 순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기-서울-전남/강원 순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은 경기-인천-충남 순으로 분포됨

□ (생활 및 이용시설) 11,315개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 중 생활시설은 3,085개소(27.3%), 이용시설은 8,227개소(72.7%)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1,405개소, 12.4%), 아동복지시설(862개소, 7.6%), 정신건강증진시설(218개소 1.9%), 노인복지시설(127개소, 1.1%)로 수가 많았음

○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아동복지시설(4,045개소, 35.7%), 장애인복지시설(2,065개소, 18.3%), 다함께돌봄센터(751개소, 6.6%), 노인복지시설(496개소, 4.4%), 지역자활센터(236개소, 2.1%)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117개소, 1.0%), 청소년복지시설(99개소, 0.9%), 가정폭력보호시설(98개소, 0.9%)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이용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61개소, 1.4%), 가정폭력보호시설(122개소, 1.1%), 성폭력피해보호시설(97개소, 0.9%)의 순이었음

○ (생활시설 지역분포) 경기(650개소), 서울(464개소), 경남(189개소), 전북(166개소), 전남(163개소)의 순이었음

○ (이용시설 지역분포) 경기(1,606개소), 서울(1,141개소), 전남(573개소), 경남(547개소), 전북(506개소)의 순이었음

□ (재원출처) 교부금을 신청한 11,315개 시설 중 국고지원시설은 7,095개소(62.7%), 지방이양시설은 4,220개소(37.3%)로 나타남

○ (국고지원시설) 경기(1,466개소)-서울(879개소)-전남(546개소)-전북(477개소)-경북(441개소)의 순이었음

○ (지방이양시설) 경기(790개소)-서울(726개소)-경남(298개소)-부산(279개소)-경북(258개소)의 순이었음

〈표 5-5〉 20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의 소관부처별 지역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11,315	1,605	636	489	504	427	589	238	55	2,256	477	504	496	699	736	672	736	19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623	93	50	33	42	14	11	18	2	117	30	39	18	41	40	37	35	3
	아동복지시설	4,909	532	243	230	208	167	350	73	17	959	200	214	257	295	319	348	421	76
	장애인복지시설	3,471	511	197	148	155	158	150	88	20	711	155	158	116	253	255	164	158	74
	정신건강증진시설	334	90	18	15	13	31	15	2	3	54	3	11	29	14	6	18	6	6
	노숙인시설	105	26	8	9	6	8	2	·	1	14	7	4	1	2	4	5	6	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77	7	15	10	3	·	1	1	2	12	2	2	3	1	6	5	4	3
	지역자활센터	236	27	18	10	10	5	8	5	2	33	18	10	12	19	20	14	21	4
	다함께돌봄센터	751	206	52	3	20	17	20	26	6	223	20	28	15	29	19	37	26	4
	계	10,506	1,492	601	458	457	400	557	213	53	2,123	435	466	451	654	669	628	677	172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83	19	2	6	3	4	5	2	·	12	2	2	3	2	8	4	6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128	15	4	2	5	4	7	3	1	20	5	10	8	6	14	8	11	5
	가정폭력보호시설	220	32	10	6	12	5	8	5	·	38	13	9	14	13	20	13	17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8	25	9	9	8	6	6	4	·	10	3	3	4	8	6	8	5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1	22	6	8	9	3	1	5	1	23	16	8	8	11	13	9	16	2
	청소년복지시설	99	·	4	·	10	5	5	6	·	30	3	6	8	5	6	2	4	5
	계	809	113	35	31	47	27	32	25	2	133	42	38	45	45	67	44	59	24

〈표 5-6〉 20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의 세부시설별 지역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11,315	1,605	636	489	504	427	589	238	55	2,256	477	504	496	699	736	672	736	196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27	6	4	6	7	5	2	2	2	33	7	8	1	17	8	6	11	2
	노인여가복지시설	334	71	30	19	24	7	4	11	·	64	13	19	13	11	12	20	16	·
	노인보호전문기관	1	·	·	·	·	·	·	·	·	·	·	·	·	·	·	·	·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61	16	16	8	11	2	5	5	·	20	10	12	4	13	20	11	8	·
	계	623	93	50	33	42	14	11	18	2	117	30	39	18	41	40	37	35	3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230	32	17	17	9	10	10	1	1	25	8	10	11	14	24	14	22	5
	아동일시보호시설	9	1	1	1	1	·	2	1	·	·	1	·	·	·	·	1	·	·
	아동보호치료시설	12	3	1	2	·	1	·	·	·	1	·	1	·	·	1	1	1	·
	자립지원시설	14	3	1	2	·	1	1	1	·	·	·	1	1	·	·	1	1	1
	공동생활가정	597	66	32	13	21	21	38	12	2	176	21	28	36	13	31	42	37	8
	아동상담소	7	1	·	·	4	·	·	·	·	2	·	·	·	·	·	·	·	·
	아동전용시설	8	1	2	·	·	·	1	·	·	1	·	2	1	·	·	·	·	·
	지역아동센터	4,000	425	189	195	173	134	298	57	13	736	170	172	208	264	259	286	360	61
	아동보호전문기관	31	·	·	·	·	·	·	·	1	18	·	·	·	4	4	3	·	1
	가정위탁지원센터	1	·	·	·	·	·	·	1	·	·	·	·	·	·	·	·	·	·
	계	4,909	532	243	230	208	167	350	73	17	959	200	214	257	295	319	348	421	76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353	20	17	10	11	9	18	2	4	88	18	20	18	29	17	34	30	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39	19	8	9	11	10	6	9	1	51	15	13	15	31	15	12	8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2	2	1	1	·	·	·	·	1	·	·	·	·	1	1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54	35	3	2	4	19	4	6	·	26	8	6	7	10	11	2	5	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50	146	35	30	38	33	48	10	1	133	19	40	5	18	46	18	16	1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375	183	90	58	54	59	45	46	7	256	60	51	51	121	111	73	81	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71	101	41	36	35	26	28	15	6	156	35	26	20	42	52	24	18	1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3	5	·	1	1	1	·	·	·	·	·	1	·	1	2	·	·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	1	1	·	1	1	·	1	·	·	1	·	1	·	·	·	·
	계	3,471	511	197	148	155	158	150	88	20	711	155	158	116	253	255	164	158	74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57	1	3	3	2	4	4	1	1	6	·	4	10	5	4	4	4	1
	정신재활생활시설	186	60	4	5	7	22	4	·	2	36	2	6	18	8	·	8	2	2
	정신재활이용시설	91	29	11	7	4	5	7	1	·	12	1	1	1	1	2	6	·	3
	계	334	90	18	15	13	31	15	2	3	54	3	11	29	14	6	18	6	6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36	11	2	4	1	4	1	·	·	7	2	1	1	·	·	2	·	·
	노숙인재활시설	26	2	2	1	1	1	1	·	1	3	·	2	·	1	3	2	5	1
	노숙인요양시설	17	3	1	1	3	·	·	·	·	1	3	1	·	1	1	1	1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	3	1	1	·	1	·	·	·	3	·	·	·	·	·	·	·	1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6	2	.	1	.	1	.	.	.	.	2	.	.	.	.	.	.	.
	쪽방상담소	10	5	2	1	1	1	.	.	.	.	.	.	.	.	.	.	.	.
	계	105	26	8	9	6	8	2	.	1	14	7	4	1	2	4	5	6	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	.	1	.	.	.	.	.	1	.	.	.	1	1	.	1	.
	사회복지관	72	7	15	9	3	.	1	1	2	11	2	2	3	.	5	5	3	3
	계	77	7	15	10	3	.	1	1	2	12	2	2	3	1	6	5	4	3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236	27	18	10	10	5	8	5	2	33	18	10	12	19	20	14	21	4
	계	236	27	18	10	10	5	8	5	2	33	18	10	12	19	20	14	21	4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51	206	52	3	20	17	20	26	6	223	20	28	15	29	19	37	26	4
	계	751	206	52	3	20	17	20	26	6	223	20	28	15	29	19	37	26	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26	6	1	3	1	1	2	1	.	2	1	1	1	1	1	2	1	1
	청소년지원시설	12	5	.	1	.	1	1	.	.	.	.	.	.	.	3	.	1	.
	외국인지원시설	1	.	.	.	.	.	.	.	.	1	.	.	.	.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5	1	1	.	.	.	.	.	.	1	.	.	1	.	1	.	.	.
	자활지원센터	12	2	.	1	1	1	1	.	.	3	.	.	.	.	.	1	1	1
	성매매피해상담소	27	5	.	1	1	1	1	1	.	5	1	1	1	1	3	1	3	1
	계	83	19	2	6	3	4	5	2	.	12	2	2	3	2	8	4	6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1	2	3	1	2	2	3	1	.	4	1	3	1	.	2	2	2	2
	성폭력피해상담소	97	13	1	1	3	2	4	2	1	16	4	7	7	6	12	6	9	3
	계	128	15	4	2	5	4	7	3	1	20	5	10	8	6	14	8	11	5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98	20	4	4	3	2	5	2	.	15	6	4	6	5	7	5	7	3
	가정폭력상담소	120	12	6	2	8	3	3	2	.	23	7	5	8	8	13	8	10	2
	긴급전화센터	2	.	.	.	1	.	.	1	.	.	.	.	.	.	.	.	.	.
	계	220	32	10	6	12	5	8	5	.	38	13	9	14	13	20	13	17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45	6	6	5	2	1	2	1	.	2	1	2	2	6	2	5	2	.
	부자가족복지시설	3	2	.	.	1	.	.	.	.	.	.	.	.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60	16	3	3	4	4	4	2	.	7	2	.	2	2	3	2	3	3
	일시지원복지시설	9	1	.	1	1	1	.	1	.	1	.	.	.	.	1	1	.	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	.	.	.	.	.	.	.	.	.	.	1	.	.	.	.	.	.
	계	118	25	9	9	8	6	6	4	.	10	3	3	4	8	6	8	5	4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61	22	6	8	9	3	1	5	1	23	16	8	8	11	13	9	16	2
	계	161	22	6	8	9	3	1	5	1	23	16	8	8	11	13	9	16	2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82	.	.	.	8	5	5	5	.	27	3	6	7	5	2	2	4	3
	청소년자립지원관	4	.	.	.	2	.	.	.	.	1	.	.	1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3	.	4	.	.	.	.	1	.	2	.	.	.	.	4	.	.	2
	계	99	.	4	.	10	5	5	6	.	30	3	6	8	5	6	2	4	5

〈표 5-7〉 20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의 시설유형별 지역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11,315	1,605	636	489	504	427	589	238	55	2,256	477	504	496	699	736	672	736	196
생활		3,085	464	154	126	141	155	160	59	14	650	117	155	140	164	189	166	163	68
이용		8,227	1,141	482	362	363	272	429	179	41	1,606	360	348	356	534	547	506	573	128
노인복지시설	생활	127	6	4	6	7	5	2	2	2	33	7	8	1	17	8	6	11	2
	이용	496	87	46	27	35	9	9	16	.	84	23	31	17	24	32	31	24	1
	계	623	93	50	33	42	14	11	18	2	117	30	39	18	41	40	37	35	3
아동복지시설	생활	862	105	52	35	31	33	51	15	3	202	30	40	48	27	56	59	61	14
	이용	4,045	427	191	194	177	134	299	58	14	757	170	173	209	268	263	289	360	62
	계	4,909	532	243	230	208	167	350	73	17	959	200	214	257	295	319	348	421	76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1,405	222	65	52	65	71	76	27	6	299	60	79	45	88	90	67	59	34
	이용	2,065	289	132	96	90	87	74	61	14	412	95	79	71	164	165	97	99	40
	계	3,471	511	197	148	155	158	150	88	20	711	155	158	116	253	255	164	158	74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218	56	6	8	9	24	7	1	2	41	1	8	24	10	4	10	5	2
	이용	116	34	12	7	4	7	8	1	1	13	2	3	5	4	2	8	1	4
	계	334	90	18	15	13	31	15	2	3	54	3	11	29	14	6	18	6	6
노숙인시설	생활	79	16	5	6	5	5	2	.	1	11	5	4	1	2	4	5	6	1
	이용	26	10	3	3	1	3	.	.	.	3	2	.	.	.	.	.	.	1
	계	105	26	8	9	6	8	2	.	1	14	7	4	1	2	4	5	6	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5	.	.	1	.	.	.	.	.	1	.	.	.	1	1	.	1	.
	이용	72	7	15	9	3	.	1	1	2	11	2	2	3	.	5	5	3	3
	계	77	7	15	10	3	.	1	1	2	12	2	2	3	1	6	5	4	3
지역자활센터	이용	236	27	18	10	10	5	8	5	2	33	18	10	12	19	20	14	21	4
	계	236	27	18	10	10	5	8	5	2	33	18	10	12	19	20	14	21	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751	206	52	3	20	17	20	26	6	223	20	28	15	29	19	37	26	4
	계	751	206	52	3	20	17	20	26	6	223	20	28	15	29	19	37	26	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	44	12	2	4	1	2	3	1	.	4	1	1	2	1	5	2	2	1
	이용	39	7	.	2	2	2	2	1	.	8	1	1	1	1	3	2	4	2
	계	83	19	2	6	3	4	5	2	.	12	2	2	3	2	8	4	6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31	2	3	1	2	2	3	1	.	4	1	3	1	.	2	2	2	2
	이용	97	13	1	1	3	2	4	2	1	16	4	7	7	6	12	6	9	3
	계	128	15	4	2	5	4	7	3	1	20	5	10	8	6	14	8	11	5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	98	20	4	4	3	2	5	2	.	15	6	4	6	5	7	5	7	3
	이용	122	12	6	2	9	3	3	3	.	23	7	5	8	8	13	8	10	2
	계	220	32	10	6	12	5	8	5	.	38	13	9	14	13	20	13	17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117	25	9	9	8	6	6	4	.	10	3	2	4	8	6	8	5	4
	이용	1	.	.	.	.	.	.	.	.	.	.	1	.	.	.	.	.	.
	계	118	25	9	9	8	6	6	4	.	10	3	3	4	8	6	8	5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161	22	6	8	9	3	1	5	1	23	16	8	8	11	13	9	16	2
	계	161	22	6	8	9	3	1	5	1	23	16	8	8	11	13	9	16	2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99	.	4	.	10	5	5	6	.	30	3	6	8	5	6	2	4	5
	계	99	.	4	.	10	5	5	6	.	30	3	6	8	5	6	2	4	5

〈표 5-8〉 2022년 인건비 교부금 신청시설의 재원출처별 지역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11,315	1,605	636	489	504	427	589	238	55	2,256	477	504	496	699	736	672	736	196
국고지원		7,095	879	357	277	296	228	425	137	33	1,466	304	314	359	441	438	477	546	118
지방이양		4,220	726	279	212	208	199	164	101	22	790	173	190	137	258	298	195	190	78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1	·	·	·	·	·	·	·	·	·	·	·	·	·	·	·	·	1
	지방이양	622	93	50	33	42	14	11	18	2	117	30	39	18	41	40	37	35	2
	계	623	93	50	33	42	14	11	18	2	117	30	39	18	41	40	37	35	3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4,628	491	221	208	194	155	336	69	16	930	191	200	244	281	294	331	397	70
	지방이양	281	41	22	22	14	12	14	4	1	29	9	14	13	14	25	17	24	6
	계	4,909	532	243	230	208	167	350	73	17	959	200	214	257	295	319	348	421	76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608	41	28	21	23	20	25	11	6	140	33	34	33	61	33	47	38	14
	지방이양	2,863	470	169	127	132	138	125	77	14	571	122	124	83	192	222	117	120	60
	계	3,471	511	197	148	155	158	150	88	20	711	155	158	116	253	255	164	158	74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57	1	3	3	2	4	4	1	1	6	·	4	10	5	4	4	4	1
	지방이양	277	89	15	12	11	27	11	1	2	48	3	7	19	9	2	14	2	5
	계	334	90	18	15	13	31	15	2	3	54	3	11	29	14	6	18	6	6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105	26	8	9	6	8	2	·	1	14	7	4	1	2	4	5	6	2
	계	105	26	8	9	6	8	2	·	1	14	7	4	1	2	4	5	6	2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	·	1	·	·	·	·	·	1	·	·	·	1	1	·	1	·
	지방이양	72	7	15	9	3	·	1	1	2	11	2	2	3	·	5	5	3	3
	계	77	7	15	10	3	·	1	1	2	12	2	2	3	1	6	5	4	3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236	27	18	10	10	5	8	5	2	33	18	10	12	19	20	14	21	4
	계	236	27	18	10	10	5	8	5	2	33	18	10	12	19	20	14	21	4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751	206	52	3	20	17	20	26	6	223	20	28	15	29	19	37	26	4
	계	751	206	52	3	20	17	20	26	6	223	20	28	15	29	19	37	26	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83	19	2	6	3	4	5	2	·	12	2	2	3	2	8	4	6	3
	계	83	19	2	6	3	4	5	2	·	12	2	2	3	2	8	4	6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128	15	4	2	5	4	7	3	1	20	5	10	8	6	14	8	11	5
	계	128	15	4	2	5	4	7	3	1	20	5	10	8	6	14	8	11	5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220	32	10	6	12	5	8	5	·	38	13	9	14	13	20	13	17	5
	계	220	32	10	6	12	5	8	5	·	38	13	9	14	13	20	13	17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118	25	9	9	8	6	6	4	·	10	3	3	4	8	6	8	5	4
	계	118	25	9	9	8	6	6	4	·	10	3	3	4	8	6	8	5	4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161	22	6	8	9	3	1	5	1	23	16	8	8	11	13	9	16	2
	계	161	22	6	8	9	3	1	5	1	23	16	8	8	11	13	9	16	2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99	·	4	·	10	5	5	6	·	30	3	6	8	5	6	2	4	5
	계	99	·	4	·	10	5	5	6	·	30	3	6	8	5	6	2	4	5

다. 2022년 실태조사 분석대상 시설

□ (개관) 사회복지시설 모집단과 인건비 교부금 신청 중복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인사·급여정보가 포함된 4,739개 시설을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실태조사의 분석 대상 시설로 설정

○ (소관부처 시설현황) 총 4,739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4,514개소(95.3%)이고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225개소(4.7%) 였음 (〈표 5-9〉~〈표 5-12〉)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장애인복지시설(2,139개소, 45.1%), 아동복지시설(995개소, 21.0%), 노인복지시설(481개소, 10.1%),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336개소, 7.1%), 다함께돌봄센터(297개소, 4.8%), 정신건강증진시설(147개소, 3.1%), 지역자활센터(110개소, 2.3%), 노숙인시설(77개소, 1.6%)임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시설(61개소, 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60개소, 1.3%), 가정폭력보호시설(52개소, 1.1%), 성폭력피해보호시설(21개소, 0.4%), 청소년복지시설(16개소, 0.3%), 성매매피해지원시설(15개소, 0.3%)였음

□ (지역분포) 총 4,739개 시설은 경기(958개소, 20.2%)와 서울(821개소, 17.3%)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그 외 전남(304개소, 6.4%), 부산(303개소, 6.4%), 경북(289개소, 6.1%)의 순이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경기(920개소), 서울(781개소), 부산(291개소), 전남(278개소), 경북(277개소) 순으로 나타남

- (시설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경기(100)-서울(82)-부산(38)-인천(32) 순으로 나타나고 아동복지시설은 경기(213)-서울(138)-전남(104)-경남(81)-경북(79) 순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경기(464)-서울(322)-경북/경남(140)-부산(119) 순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서울(31)-충남(19)-경기/전북(14) 순으로, 노숙인시설은 서울(24)-부산(8)-대구(7) 순으로,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은 서울(81)-경기(64)-부산(34)-대구(22) 순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서울(87)-경기(43)-부산(15)-충북(13)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서울(40개소), 경기(38개소), 전남(26개소), 경남(17개소) 순으로 나타남

- (시설 종류)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 서울(5)-전남(4) 순으로 분포하고, 가정폭력보호시설은 경기(12)-서울(8)-경남(6) 순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서울(15)-경기(8)-부산(6) 순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울/경기(9)-강원/전남(8) 순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은 경기(6)-인천(4)-충남북(3) 순으로 나타남

□ (생활 및 이용시설) 총 4,739개 시설 중 생활시설은 1,670개소(35.2%), 이용시설은 3,069개소(64.8%)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945개소), 아동복지시설(361개소), 정신건강증진시설(105개소), 노인복지시설(88개)로 수가 많았음

○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1,194개소), 아동복지시설(634개소), 노인복지시설(393개소),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331개소), 다함께돌봄센터(229개소), 지역자활센터(110개소) 순으로 수가 많았음

○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58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17개소), 청소년복지시설(16개소)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이용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1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35개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15개소)의 순이었음

○ (생활시설 지역분포) 생활시설은 경기(325개소), 서울(261개소), 경북(110개소), 경남/전남(107개소), 부산(86개소)의 순으로 나타났고,

○ (이용시설 지역분포) 경기(633개소), 서울(560개소), 부산(217개소), 전남(197개소), 경북(182개소)의 순이었음

□ (재원 출처) 총 4,739개 시설 중 국고지원시설은 1,969개소(41.5%), 지방이양시설은 2,770개소(58.5%)로 나타남

○ (국고지원시설 지역분포) 경기(389개소)-서울(296개소)-전남(161개소)-경북(151개소)-경남(131개소)의 순이었음

○ (지방이양시설 지역분포) 경기(569개소)-서울(525개소)-부산(196개소)-경남(157개소)-충북(147개소)-전남(143개소)의 순이었음

〈표 5-9〉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별 지역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4,739	821	303	164	218	138	151	103	28	958	202	245	221	289	288	223	304	8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81	82	38	22	32	7	4	11	1	100	22	30	25	34	19	25	24	5
	아동복지시설	995	138	55	38	44	14	36	13	4	213	38	34	40	79	81	55	104	9
	장애인복지시설	2,139	322	119	63	93	73	82	57	16	464	96	123	101	140	140	89	115	46
	정신건강증진시설	147	31	8	4	8	13	10	·	2	14	2	10	19	3	3	14	2	4
	노숙인시설	77	24	8	7	1	4	1	·	1	6	6	4	1	2	2	4	3	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36	81	34	22	19	12	12	4	1	64	11	9	13	9	12	14	13	6
	지역자활센터	110	16	14	3	5	2	1	1	1	16	8	8	7	5	7	4	11	1
	다함께돌봄센터	229	87	15	·	6	10	2	9	2	43	5	13	5	5	7	12	6	2
	계	4,514	781	291	159	208	135	148	95	28	920	188	231	211	277	271	217	278	76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5	5	1	·	·	·	·	1	·	·	2	·	·	·	2	·	4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	3	·	·	1	2	1	·	·	3	·	2	2	2	1	·	2	2
	가정폭력보호시설	52	8	2	·	·	·	·	2	·	12	4	3	2	4	6	1	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0	15	6	2	4	1	2	3	·	8	·	2	1	2	3	4	4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9	2	3	1	·	·	2	·	9	8	4	5	3	5	1	8	1
	청소년복지시설	16	·	1	·	4	·	·	·	·	6	·	3	·	1	·	·	·	1
	계	225	40	12	5	10	3	3	8	·	38	14	14	10	12	17	6	26	7

〈표 5-10〉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별 지역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4,739	821	303	164	218	138	151	103	28	958	202	245	221	289	288	223	304	83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5	3	5	2	2	1	1	·	23	5	3	3	11	5	2	7	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	·	·	1	1	·	1	·	2	·	1	·	2	·	1	·	·
	노인여가복지시설	268	58	28	12	19	3	2	8	·	55	9	16	13	9	6	16	12	2
	노인보호전문기관	27	5	1	·	2	1	·	1	·	3	2	2	1	4	1	1	1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8	14	6	5	8	·	1	·	1	17	6	8	8	8	7	5	4	·
	계	481	82	38	22	32	7	4	11	1	100	22	30	25	34	19	25	24	5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30	15	9	8	3	5	·	1	19	6	9	5	12	16	9	20	4
	아동일시보호시설	8	1	1	1	1	·	·	·	·	1	1	·	·	·	·	·	1	1
	아동보호치료시설	11	3	1	2	·	1	·	·	·	1	·	1	·	·	1	1	·	·
	자립지원시설	5	1	1	·	·	·	·	·	·	·	·	·	·	·	·	1	1	1
	공동생활가정	142	20	7	2	2	2	2	3	2	49	10	5	6	6	11	2	12	1
	아동상담소	5	·	·	·	3	·	·	·	·	2	·	·	·	·	·	·	·	·
	아동전용시설	6	1	1	·	1	·	·	·	·	·	·	2	·	·	1	·	·	·
	지역아동센터	621	81	29	24	26	8	29	9	·	129	21	14	29	58	51	42	70	1
	아동보호전문기관	24	1	·	·	3	·	·	1	1	11	·	2	·	3	1	·	·	1
	가정위탁지원센터	2	·	·	·	·	·	·	·	·	1	·	1	·	·	·	·	·	·
	계	995	138	55	38	44	14	36	13	4	213	38	34	40	79	81	55	104	9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19	17	9	9	9	18	2	3	50	16	21	16	25	18	26	25	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21	8	9	10	9	6	9	1	43	14	14	15	28	13	12	8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2	2	1	1	·	·	·	·	1	·	·	·	·	1	1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21	2	1	2	11	2	5	·	22	7	5	7	6	10	·	4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81	12	8	20	9	13	5	·	71	6	27	6	7	17	7	17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71	114	50	19	36	20	23	24	6	182	35	37	37	51	48	28	44	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1	63	27	14	15	15	20	11	6	95	17	19	19	22	31	14	17	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	1	·	1	·	·	·	·	·	·	·	·	·	1	2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	1	1	·	·	·	1	·	·	1	·	1	·	·	1	·	1
	계	2,139	322	119	63	93	73	82	57	16	464	96	123	101	140	140	89	115	46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4	3	1	3	2	3	3	·	1	3	·	4	9	3	3	4	1	1
	정신재활생활시설	61	14	2	·	4	8	2	·	1	6	1	5	9	·	·	6	1	2
	정신재활이용시설	42	14	5	1	2	2	5	·	·	5	1	1	1	·	·	4	·	1
	계	147	31	8	4	8	13	10	·	2	14	2	10	19	3	3	14	2	4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4	11	1	3	·	2	·	·	·	2	1	1	1	·	·	2	·	·
	노숙인재활시설	21	3	2	1	1	1	1	·	1	1	·	2	·	·	2	1	3	2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노숙인요양시설	15	4	2	1	·	·	·	·	·	1	3	1	·	2	·	1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	2	3	1	·	·	·	·	·	2	·	·	·	·	·	·	·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1	·	1	·	·	·	·	·	·	2	·	·	·	·	·	·	·
	쪽방상담소	4	3	·	·	·	1	·	·	·	·	·	·	·	·	·	·	·	·
	계	77	24	8	7	1	4	1	·	1	6	6	4	1	2	2	4	3	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1	·	1	·	·	·	·	·	1	·	·	·	·	1	·	1	·
	사회복지관	331	80	34	21	19	12	12	4	1	63	11	9	13	9	11	14	12	6
	계	336	81	34	22	19	12	12	4	1	64	11	9	13	9	12	14	13	6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10	16	14	3	5	2	1	1	1	16	8	8	7	5	7	4	11	1
	계	110	16	14	3	5	2	1	1	1	16	8	8	7	5	7	4	11	1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9	87	15	·	6	10	2	9	2	43	5	13	5	5	7	12	6	2
	계	229	87	15	·	6	10	2	9	2	43	5	13	5	5	7	12	6	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	1	·	·	·	·	·	1	·	·	1	·	·	·	·	·	·	·
	청소년지원시설	5	3	1	·	·	·	·	·	·	·	·	·	·	·	1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	·	·	·	·	·	·	·	·	·	·	1	·	·	·
	자활지원센터	1	·	·	·	·	·	·	·	·	·	·	·	·	·	·	·	1	·
	성매매피해상담소	5	1	·	·	·	·	·	·	·	·	1	·	·	·	·	·	3	·
	계	15	5	1	·	·	·	·	1	·	·	2	·	·	·	2	·	4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	·	·	1	2	·	·	·	1	·	1	·	·	·	·	·	1
	성폭력피해상담소	15	3	·	·	·	·	1	·	·	2	·	1	2	2	1	·	2	1
	계	21	3	·	·	1	2	1	·	·	3	·	2	2	2	1	·	2	2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2	1	·	·	·	·	1	·	3	1	1	1	2	3	·	2	·
	가정폭력상담소	33	6	1	·	·	·	·	1	·	8	3	2	1	1	3	1	6	·
	긴급전화센터	2	·	·	·	·	·	·	·	·	1	·	·	·	1	·	·	·	·
	계	52	8	2	·	·	·	·	2	·	12	4	3	2	4	6	1	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3	4	·	2	·	1	1	·	1	·	1	1	2	·	2	1	·
	부자가족복지시설	2	1	·	·	1	·	·	·	·	·	·	·	·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10	2	1	1	1	1	2	·	6	·	·	·	·	2	1	3	3
	일시지원복지시설	4	·	·	1	·	·	·	·	·	1	·	·	·	·	1	1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1	·	·	·	·	·	·	·	·	·	1	·	·	·	·	·	·
	계	60	15	6	2	4	1	2	3	·	8	·	2	1	2	3	4	4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9	2	3	1	·	·	2	·	9	8	4	5	3	5	1	8	1
	계	61	9	2	3	1	·	·	2	·	9	8	4	5	3	5	1	8	1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3	·	·	·	3	·	·	·	·	5	·	3	·	1	·	·	·	1
	청소년자립지원관	1	·	·	·	1	·	·	·	·	·	·	·	·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	1	·	·	·	·	·	·	1	·	·	·	·	·	·	·	·
	계	16	·	1	·	4	·	·	·	·	6	·	3	·	1	·	·	·	1

〈표 5-11〉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별 지역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4,739	821	303	164	218	138	151	103	28	958	202	245	221	289	288	223	304	83
생활		1,670	261	86	58	75	64	55	32	11	325	72	107	79	110	107	80	107	41
이용		3,069	560	217	106	143	74	96	71	17	633	130	138	142	179	181	143	197	42
노인복지시설	생활	88	5	3	5	3	3	1	2	·	25	5	4	3	13	5	3	7	1
	이용	393	77	35	17	29	4	3	9	1	75	17	26	22	21	14	22	17	4
	계	481	82	38	22	32	7	4	11	1	100	22	30	25	34	19	25	24	5
아동복지시설	생활	361	56	25	14	14	6	7	4	4	81	17	17	11	21	29	13	34	8
	이용	634	82	30	24	30	8	29	9	·	132	21	17	29	58	52	42	70	1
	계	995	138	55	38	44	14	36	13	4	213	38	34	40	79	81	55	104	9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945	144	41	28	42	38	39	21	4	187	43	67	44	66	59	46	54	22
	이용	1,194	178	78	35	51	35	43	36	12	277	53	56	57	74	81	43	61	24
	계	2,139	322	119	63	93	73	82	57	16	464	96	123	101	140	140	89	115	46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105	17	3	3	6	11	5	·	2	9	1	9	18	3	3	10	2	3
	이용	42	14	5	1	2	2	5	·	·	5	1	1	1	·	·	4	·	1
	계	147	31	8	4	8	13	10	·	2	14	2	10	19	3	3	14	2	4
노숙인시설	생활	60	18	5	5	1	3	1	·	1	4	4	4	1	2	2	4	3	2
	이용	17	6	3	2	·	1	·	·	·	2	2	·	·	·	·	·	·	1
	계	77	24	8	7	1	4	1	·	1	6	6	4	1	2	2	4	3	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5	1	·	1	·	·	·	·	·	1	·	·	·	·	1	·	1	·
	이용	331	80	34	21	19	12	12	4	1	63	11	9	13	9	11	14	12	6
	계	336	81	34	22	19	12	12	4	1	64	11	9	13	9	12	14	13	6
지역자활센터	이용	110	16	14	3	5	2	1	1	1	16	8	8	7	5	7	4	11	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229	87	15	·	6	10	2	9	2	43	5	13	5	5	7	12	6	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	9	4	1	·	·	·	·	1	·	·	1	·	·	·	2	·	·	·
	이용	6	1	·	·	·	·	·	·	·	·	1	·	·	·	·	·	4	·
	계	15	5	1	·	·	·	·	1	·	·	2	·	·	·	2	·	4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6	·	·	·	1	2	·	·	·	1	·	1	·	·	·	·	·	1
	이용	15	3	·	·	·	·	1	·	·	2	·	1	2	2	1	·	2	1
	계	21	3	·	·	1	2	1	·	·	3	·	2	2	2	1	·	2	2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	17	2	1	·	·	·	·	1	·	3	1	1	1	2	3	·	2	·
	이용	35	6	1	·	·	·	·	1	·	9	3	2	1	2	3	1	6	·
	계	52	8	2	·	·	·	·	2	·	12	4	3	2	4	6	1	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58	14	6	2	4	1	2	3	·	8	·	1	1	2	3	4	4	3
	이용	2	1	·	·	·	·	·	·	·	·	·	1	·	·	·	·	·	·
	계	60	15	6	2	4	1	2	3	·	8	·	2	1	2	3	4	4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61	9	2	3	1	·	·	2	·	9	8	4	5	3	5	1	8	1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16	·	1	·	4	·	·	·	·	6	·	3	·	1	·	·	·	1

〈표 5-12〉 2023년 실태조사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별 지역 분포

(단위: 개소)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		4,739	821	303	164	218	138	151	103	28	958	202	245	221	289	288	223	304	83
국고지원		1,969	296	107	58	77	48	64	45	11	389	91	98	99	151	131	112	161	31
지방이양		2,770	525	196	106	141	90	87	58	17	569	111	147	122	138	157	111	143	52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6	5	1	·	3	2	·	2	·	5	2	3	1	6	1	2	1	2
	지방이양	445	77	37	22	29	5	4	9	1	95	20	27	24	28	18	23	23	3
	계	481	82	38	22	32	7	4	11	1	100	22	30	25	34	19	25	24	5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787	102	36	26	31	10	31	13	3	189	31	21	35	67	63	44	82	3
	지방이양	208	36	19	12	13	4	5	·	1	24	7	13	5	12	18	11	22	6
	계	995	138	55	38	44	14	36	13	4	213	38	34	40	79	81	55	104	9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533	42	28	20	20	18	24	12	4	94	31	35	32	53	32	40	33	15
	지방이양	1,606	280	91	43	73	55	58	45	12	370	65	88	69	87	108	49	82	31
	계	2,139	322	119	63	93	73	82	57	16	464	96	123	101	140	140	89	115	46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4	3	1	3	2	3	3	·	1	3	·	4	9	3	3	4	1	1
	지방이양	103	28	7	1	6	10	7	·	1	11	2	6	10	·	·	10	1	3
	계	147	31	8	4	8	13	10	·	2	14	2	10	19	3	3	14	2	4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77	24	8	7	1	4	1	·	1	6	6	4	1	2	2	4	3	3
	계	77	24	8	7	1	4	1	·	1	6	6	4	1	2	2	4	3	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1	·	1	·	·	·	·	·	1	·	·	·	·	1	·	1	·
	지방이양	331	80	34	21	19	12	12	4	1	63	11	9	13	9	11	14	12	6
	계	336	81	34	22	19	12	12	4	1	64	11	9	13	9	12	14	13	6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10	16	14	3	5	2	1	1	1	16	8	8	7	5	7	4	11	1
	계	110	16	14	3	5	2	1	1	1	16	8	8	7	5	7	4	11	1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229	87	15	·	6	10	2	9	2	43	5	13	5	5	7	12	6	2
	계	229	87	15	·	6	10	2	9	2	43	5	13	5	5	7	12	6	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15	5	1	·	·	·	·	1	·	·	2	·	·	·	2	·	4	·
	계	15	5	1	·	·	·	·	1	·	·	2	·	·	·	2	·	4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21	3	·	·	1	2	1	·	·	3	·	2	2	2	1	·	2	2
	계	21	3	·	·	1	2	1	·	·	3	·	2	2	2	1	·	2	2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52	8	2	·	·	·	·	2	·	12	4	3	2	4	6	1	8	·
	계	52	8	2	·	·	·	·	2	·	12	4	3	2	4	6	1	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60	15	6	2	4	1	2	3	·	8	·	2	1	2	3	4	4	3
	계	60	15	6	2	4	1	2	3	·	8	·	2	1	2	3	4	4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61	9	2	3	1	·	·	2	·	9	8	4	5	3	5	1	8	1
	계	61	9	2	3	1	·	·	2	·	9	8	4	5	3	5	1	8	1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6	·	1	·	4	·	·	·	·	6	·	3	·	1	·	·	·	1
	계	16	·	1	·	4	·	·	·	·	6	·	3	·	1	·	·	·	1

2. 분석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가. 시설운영 주체

□ (전체) 총 4,739개 시설 중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전체 86.9%(4,118개소)였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570개소(12.0%)로 나타남

○ (미기입) 약 51개 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 주체에 관한 정보가 미기입

□ (지역분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98.8%), 세종(96.4%), 강원(95.0%), 서울(94.4%), 울산(92.2%)이였음

○ (개인 운영시설) 타 광역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30.4%), 광주(25.8%), 전남(20.7%), 경남(17.0%), 충남(16.3%)이었음

〈표 5-13〉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별 지역 분포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법인	개인	미기입
전체	4,739	86.9	12.0	1.1
서울특별시	821	94.4	4.6	1.0
부산광역시	303	89.4	9.9	0.7
대구광역시	164	87.8	11.6	0.6
인천광역시	218	86.7	12.8	0.5
광주광역시	151	74.2	25.8	
대전광역시	138	69.6	30.4	
울산광역시	103	92.2	6.8	1.0
세종특별자치시	28	96.4	3.6	
경기도	958	85.3	12.4	2.3
강원도	202	95.0	5.0	
충청북도	245	89.8	9.4	0.8
충청남도	221	82.8	16.3	0.9
전라북도	223	85.7	12.6	1.8
전라남도	304	78.9	20.7	0.3
경상북도	289	85.5	12.8	1.7
경상남도	288	82.3	17.0	0.7
제주특별자치도	83	98.8	1.2	

□ (소관부처별)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의 86.8%인 3,920개 시설을 법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88.0%인 198개 시설도 법인이 운영 중이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법인 운영률이 높은 시설은 지역자활센터(100.0%), 다함께돌봄센터(97.8%), 노인복지시설(96.5%),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94.6%), 장애인복지시설(92.6%)이였음

- (개인 운영 비율이 높은 시설) 아동복지시설(34.4%), 정신건강증진시설(29.9%), 노숙인시설(11.7%) 등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법인 운영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3.4%), 성매매피해지원시설(86.7%)로 나타남

- (개인 운영 비율이 높은 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33.3%), 가정폭력보호시설(21.2%), 청소년복지시설(18.8%)이였음

〈표 5-14〉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별 운영 주체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법인		개인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4,118	86.9	570	12.0	51	1.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81	464	96.5	10	2.1	7	1.5
	아동복지시설	995	653	65.6	342	34.4	.	.
	장애인복지시설	2,139	1,980	92.6	131	6.1	28	1.3
	정신건강증진시설	147	103	70.1	44	29.9	.	.
	노숙인시설	77	68	88.3	9	11.7	.	.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36	318	94.6	2	.6	16	4.8
	지역자활센터	110	110	100.0	.	.	.	.
	다함께돌봄센터	229	224	97.8	5	2.2	.	.
	계	4,514	3,920	86.8	543	12.0	51	1.1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5	13	86.7	2	13.3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	14	66.7	7	33.3	.	.
	가정폭력보호시설	52	41	78.8	11	21.2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0	60	100.0	.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57	93.4	4	6.6	.	.
	청소년복지시설	16	13	81.3	3	18.8	.	.
	계	225	198	88.0	27	12.0	.	.

□ (세부 시설) 총 37개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에서 개인 운영비율이 가장 높은 세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아동센터로 46.9%였으며, 총 19개의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중 개인 운영비율이 높은 시설은 청소년자립지원관(100%)이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개인 운영 비율이 평균인 12.0% 이상인 세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동복지시설) 개인운영률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34.5%,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6.9%였음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재활생활시설(45.9%)과 정신재활이용시설(38.1%)에서 개인 운영비율이 높게 나타남
-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29.2%)에서 개인운영률이 높게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개인 운영 비율이 평균인 12.0% 이상인 세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개인운영률이 40.0%로 높았음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40.0%)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16.7%) 모두 개인 운영비율이 높았음
-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30.3%)의 개인운영비율이 높았음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총 1개소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음

〈표 5-15〉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별 운영 주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법인		개인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4,118	86.9	570	12.0	51	1.1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75	94.9	4	5.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9	100.0				
	노인여가복지시설	268	256	95.5	5	1.9	7	2.6
	노인보호전문기관	27	27	10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8	97	99.0	1	1.0		
	계	481	464	96.5	10	2.1	7	1.5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169	98.8	2	1.2		
	아동일시보호시설	8	8	100.0				
	아동보호치료시설	11	11	100.0				
	자립지원시설	5	5	100.0				
	공동생활가정	142	93	65.5	49	34.5		
	아동상담소	5	5	100.0				
	아동전용시설	6	6	100.0				
	지역아동센터	621	330	53.1	291	46.9		
	아동보호전문기관	24	24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	2	2	100.0				
	계	995	653	65.6	342	34.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258	88.7	31	10.7	2	0.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221	97.8	5	2.2		

구분		사례수	법인		개인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9	100.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96	87.3	13	11.8	1	0.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278	90.0	31	10.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71	705	91.4	42	5.4	24	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1	401	97.6	9	2.2	1	0.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	5	100.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7	100.0				
	계	2,139	1,980	92.6	131	6.1	28	1.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4	44	100.0				
	정신재활생활시설	61	33	54.1	28	45.9		
	정신재활이용시설	42	26	61.9	16	38.1		
	계	147	103	70.1	44	29.9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4	17	70.8	7	29.2		
	노숙인재활시설	21	21	100.0				
	노숙인요양시설	15	14	93.3	1	6.7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	8	88.9	1	11.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4	100.0				
	쪽방상담소	4	4	100.0				
	계	77	68	88.3	9	11.7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5	100.0				
	사회복지관	331	313	94.6	2	0.6	16	4.8
	계	336	318	94.6	2	0.6	16	4.8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10	110	100.0				
	계	110	111	100.0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9	224	97.8	5	2.2		
	계	229	224	97.8	5	2.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	3	100.0				
	청소년지원시설	5	5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100.0				
	자활지원센터	1	1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5	3	60.0	2	40.0		
	계	15	13	86.7	2	13.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5	83.3	1	16.7		
	성폭력피해상담소	15	9	60.0	6	40.0		
	계	21	14	66.7	7	33.3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16	94.1	1	5.9		
	가정폭력상담소	33	23	69.7	10	30.3		
	긴급전화센터	2	2	100.0				
	계	52	41	78.8	11	2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19	100.0				
	부자가족복지시설	2	2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33	100.0				
	일시지원복지시설	4	4	10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2	100.0				
	계	60	60	100.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61	57	93.4	4	6.6		
	계	61	57	93.4	4	6.6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3	12	92.3	1	7.7		
	청소년자립지원관	1			1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1	50.0	1	50.0		
	계	16	13	81.3	3	18.8		

□ (생활 및 이용시설 여부) 생활시설의 법인 운영비율은 89.3%로 전체 시설의 법인 운영비율 86.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이용시설의 법인 운영비율은 85.6%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남(〈표 5-16〉)

○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 이용시설) 개인 운영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 45.9%였으며, 다음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로 38.1%였음

○ (여성가족부 소관 세부 이용시설) 개인운영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로는 성폭력피해보호시설로 40.0%였고, 다음으로 성매매피해지원시설(33.3%) 등의 순이었음

〈표 5-16〉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별 운영 주체 현황

(단위: 개소, %)

		사례수	법인		개인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4,118	86.9	570	12.0	51	1.1
생활		1,670	1,491	89.3	176	10.5	3	.2
이용		3,069	2,627	85.6	394	12.8	48	1.6
노인복지시설	생활	88	84	95.5	4	4.5	.	.
	이용	393	380	96.7	6	1.5	7	1.8
	계	481	464	96.5	10	2.1	7	1.5
아동복지시설	생활	361	310	85.9	51	14.1	.	.
	이용	654	343	54.1	291	45.9	.	.
	계	995	653	65.6	342	34.4	.	.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945	862	91.2	80	8.5	3	.3
	이용	1,194	1,118	93.6	51	4.3	25	2.1
	계	2,139	1,980	92.6	131	6.1	28	1.3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105	77	73.3	28	26.7	.	.
	이용	55	26	61.9	16	38.1	.	.
	계	147	103	70.1	44	29.9	.	.
노숙인시설	생활	60	52	86.7	8	13.3	.	.
	이용	17	16	94.1	1	5.9	.	.
	계	77	68	88.3	9	11.7	.	.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5	5	100.0	.	.	.	.
	이용	331	313	94.6	2	.6	16	4.8
	계	336	318	94.6	2	.6	16	4.8
지역자활센터	이용	110	110	100.0	.	.	.	.
	계	110	110	100.0	.	.	.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229	224	97.8	5	2.2	.	.
	계	229	224	97.8	5	2.2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	9	9	100.0	.	.	.	.
	이용	6	4	66.7	2	33.3	.	.
	계	15	13	86.7	2	13.3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6	5	83.3	1	16.7	.	.
	이용	15	9	60.0	6	40.0	.	.
	계	21	14	66.7	7	33.3	.	.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	17	16	94.1	1	5.9	.	.
	이용	35	25	71.4	10	28.6	.	.
	계	52	41	78.8	11	21.2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58	58	100.0	.	.	.	.
	이용	2	2	100.0	.	.	.	.
	계	60	60	100.0	.	.	.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61	57	93.4	4	6.6	.	.
	계	61	57	93.4	4	6.6	.	.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16	13	81.3	3	18.8	.	.
	계	16	13	81.3	3	18.8	.	.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의 법인 운영비율은 79.2%로 전체 시설의 법인 운영비율 86.9%보다 7.7%p 낮았고, 지방이양시설의 법인 운영비율은 92.4%로 전체 평균보다 5.5%p 높게 나타남(〈표 5-17〉)

○ (국고지원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 개인 운영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로는 아동복지시설(43.2%)이었고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중에는 성폭력피해보호시설(33.3%)이었음

〈표 5-17〉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별 운영 주체 현황

(단위: 개소, %)

		사례수	법인		개인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4,118	86.9	570	12.0	51	1.1
국고지원		1,969	1,559	79.2	408	20.7	2	.1
지방이양		2,770	2,559	92.4	162	5.8	49	1.8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6	36	100.0	·	·	·	·
	지방이양	445	428	96.2	10	2.2	7	1.6
	계	481	464	96.5	10	2.1	7	1.5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787	447	56.8	340	43.2	·	·
	지방이양	208	206	99.0	2	1.0	·	·
	계	995	653	65.6	342	34.4	·	·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533	495	92.9	36	6.8	2	.4
	지방이양	1,606	1,485	92.5	95	5.9	26	1.6
	계	2,139	1,980	92.6	131	6.1	28	1.3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4	44	100.0	·	·	·	·
	지방이양	103	59	57.3	44	42.7	·	·
	계	147	103	70.1	44	29.9	·	·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77	68	88.3	9	11.7	·	·
	계	77	68	88.3	9	11.7	·	·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5	100.0	·	·	·	·
	지방이양	331	313	94.6	2	.6	16	4.8
	계	336	318	94.6	2	.6	16	4.8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10	110	100.0	·	·	·	·
	계	110	110	100.0	·	·	·	·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229	224	97.8	5	2.2	·	·
	계	229	224	97.8	5	2.2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15	13	86.7	2	13.3	·	·
	계	15	13	86.7	2	13.3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21	14	66.7	7	33.3	·	·
	계	21	14	66.7	7	33.3	·	·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52	41	78.8	11	21.2	·	·
	계	52	41	78.8	11	21.2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60	60	100.0	·	·	·	·
	계	60	60	100.0	·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61	57	93.4	4	6.6	·	·
	계	61	57	93.4	4	6.6	·	·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6	13	81.3	3	18.8	·	·
	계	16	13	81.3	3	18.8	·	·

나. 시설 유형

□ (개관) 총 4,739개 분석 대상 시설 중 생활시설은 35.2%(1,670개소)를 차지하고 이용시설은 64.8%(3,069개소)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비율은 각각 34.6%, 65.4%이고,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비율은 각각 47.1%와 52.9%였음

□ (지역분포)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생활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49.4%)이고 대전(46.4%), 충북(43.7%), 세종(39.3%), 경북(38.1%), 경남(37.2%) 순이었음

○ 한편 생활시설이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많은 지역은 제주(49.4%), 대전(46.4%), 충북(43.7%) 등의 순이었음

〈표 5-18〉 시설유형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생활	이용
전체	4,739	35.2	64.8
서울특별시	821	31.8	68.2
부산광역시	303	28.4	71.6
대구광역시	164	35.4	64.6
인천광역시	218	34.4	65.6
광주광역시	151	36.4	63.6
대전광역시	138	46.4	53.6
울산광역시	103	31.1	68.9
세종특별자치시	28	39.3	60.7
경기도	958	33.9	66.1
강원도	202	35.6	64.4
충청북도	245	43.7	56.3
충청남도	221	35.7	64.3
전라북도	223	35.9	64.1
전라남도	304	35.2	64.8
경상북도	289	38.1	61.9
경상남도	288	37.2	62.8
제주특별자치도	83	49.4	50.6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이 95.3%(4,514개소)를 차지하고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4.7%(225개소)에 불과, 복지부 소관시설 중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비율은 34.6%(1,564개소)와 65.4%(2,950개소)였고,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은 47.1%(106개소), 이용시설은 52.9%(119개소)였음

○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노숙인시설이 7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71.4%), 장애인복지시설(44.2%), 아동복지시설(36.3%) 순

○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100% 이용시설이었고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98.5%), 노인복지시설(81.7%), 아동복지시설(63.7%), 장애인복지시설(55.8%)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이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96.7%), 성매매피해지원시설(60.0%)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이용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0%이었고, 이어서 성폭력피해보호시설(71.4%), 가정폭력보호시설(67.3%)의 순으로 나타남

〈표 5-19〉 시설유형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생활		이용	
			빈도	%	빈도	%
전체		4,739	1,670	35.2	3,069	64.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81	88	18.3	393	81.7
	아동복지시설	995	361	36.3	634	63.7
	장애인복지시설	2,139	945	44.2	1,194	55.8
	정신건강증진시설	147	105	71.4	42	28.6
	노숙인시설	77	60	77.9	17	22.1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36	5	1.5	331	98.5
	지역자활센터	110	·	·	110	100.0
	다함께돌봄센터	229	·	·	229	100.0
	계	4,514	1,564	34.6	2,950	65.4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5	9	60.0	6	4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	6	28.6	15	71.4
	가정폭력보호시설	52	17	32.7	35	67.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0	58	96.7	2	3.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	·	61	100.0
	청소년복지시설	16	16	100.0	·	·
	계	225	106	47.1	119	52.9

□ (세부시설) 생활시설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945개, 56.6%)이었고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21.6%), 정신건강증진시설(6.3%), 노인복지시설(5.3%)의 순이었으며, 이용시설 중에서 수가 많은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1,194개 38.9%)이였고,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20.7%), 노인복지시설(12.8%),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10.8%) 순이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19.8%, 309개소), 장애유형별거주시설(18.6%, 291개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14.5%, 226개소), 아동양육시설(10.9%, 171개소), 공동생활가정(9.1%, 142개소) 순으로 수가 많음

○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26.1%, 771개소), 지역아동센터(21.1%, 621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13.9%, 411개소), 사회복지관(11.2%, 331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9.1%, 268개소), 다함께돌봄센터(7.8%, 229개소) 순으로 많이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31.1%, 33개소), 모자가족복지시설(17.9%, 19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16.0%, 17개소), 청소년쉼터(12.3%, 13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5.7%, 6개소)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이용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51.3%, 61개소), 가정폭력상담소(27.7%, 33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12.6%, 15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4.2%, 5개소) 순으로 수가 많았음

〈표 5-20〉 시설유형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류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생활		이용	
			빈도	%	빈도	%
전체		4,739	1670	35.2	3,069	64.8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79	100.0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9	100.0	·	·
	노인여가복지시설	268	·	·	268	100.0
	노인보호전문기관	27	·	·	27	10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8	·	·	98	100.0
	계	481	88	18.3	393	81.7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171	100.0	·	·
	아동일시보호시설	8	8	100.0	·	·
	아동보호치료시설	11	11	100.0	·	·
	자립지원시설	5	5	100.0	·	·
	공동생활가정	142	142	100.0	·	·
	아동상담소	5	·	·	5	100.0
	아동전용시설	6	·	·	6	100.0
	지역아동센터	621	·	·	621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24	24	100.0	·	·
	가정위탁지원센터	2	·	·	2	100.0
	계	995	361	36.3	634	63.7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291	100.0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226	100.0	·	·

구 분		사례수	생활		이용	
			빈도	%	빈도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9	100.0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110	100.0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309	100.0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71	·	·	771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1	·	·	411	10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	·	·	5	100.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	·	7	100.0
	계	2,139	945	44.2	1,194	55.8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4	44	100.0	·	·
	정신재활생활시설	61	61	100.0	·	·
	정신재활이용시설	42	·	·	42	100.0
	계	147	105	71.4	42	28.6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4	24	100.0	·	·
	노숙인재활시설	21	21	100.0	·	·
	노숙인요양시설	15	15	100.0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	·	·	9	100.0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	·	4	100.0
	쪽방상담소	4	·	·	4	100.0
	계	77	60	77.9	17	22.1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5	100.0	·	·
	사회복지관	331	·	·	331	100.0
	계	336	5	1.5	331	98.5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10	·	·	110	100.0
	계	110	·	·	110	100.0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9	·	·	229	100.0
	계	229	·	·	229	100.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	3	100.0	·	·
	청소년지원시설	5	5	100.0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100.0	·	·
	자활지원센터	1	·	·	1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5	·	·	5	100.0
	계	15	9	60.0	6	4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6	100.0	·	·
	성폭력피해상담소	15	·	·	15	100.0
	계	21	6	28.6	15	71.4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17	100.0	·	·
	가정폭력상담소	33	·	·	33	100.0
	긴급전화센터	2	·	·	2	100.0
	계	52	17	32.7	35	67.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19	100.0	·	·
	부자가족복지시설	2	2	100.0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33	100.0	·	·
	일시지원복지시설	4	4	100.0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	·	2	100.0
	계	60	58	96.7	2	3.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61	·	·	61	100.0
	계	61	·	·	61	100.0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3	13	100.0	·	·
	청소년자립지원관	1	1	100.0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2	100.0	·	·
	계	16	16	100.0	·	·

□ (재원출처) 국고지원시설의 생활 및 이용시설 비율은 43.5%와 56.5%였고, 지방이양시설의 생활 및 이용시설 비율은 29.4%와 70.6%로 국고지원시설이 지방이양시설보다 생활시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1〉)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지원시설) 국고지원시설 중 생활시설 비율이 높은 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결핵한센시설(100%), 장애인복지시설(98.7%), 노인복지시설(25.0%)이고, 이용시설의 비율이 높은 시설은 지역자활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100%), 아동복지시설(78.9%), 노인복지시설(75.0%)이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이양시설) 생활시설의 비율이 높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93.8%), 노숙인시설(77.9%), 정신건강증진시설(59.2%)이고, 이용시설 비율이 높은 지방이양시설은 사회복지관(100%), 노인복지시설(82.2%), 장애인복지시설(73.9%)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국고지원시설) 생활시설의 비율이 높은 시설은 청소년복지시설(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96.7%), 성매매피해지원시설(60.0%), 가정폭력보호시설(32.7%)이고, 이용시설 비율이 높은 시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71.4%), 가정폭력보호시설(67.3%), 성매매피해지원시설(40.0%)의 순이었음

〈표 5-21〉 시설유형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생활		이용	
			빈도	%	빈도	%
전체		4,739	1,670	35.2	3,069	64.8
국고지원		1,969	856	43.5	1,113	56.5
지방이양		2,770	814	29.4	1,956	70.6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6	9	25.0	27	75.0
	지방이양	445	79	17.8	366	82.2
	계	481	88	18.3	393	81.7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787	166	21.1	621	78.9
	지방이양	208	195	93.8	13	6.3
	계	995	361	36.3	634	63.7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533	526	98.7	7	1.3
	지방이양	1,606	419	26.1	1,187	73.9
	계	2,139	945	44.2	1,194	55.8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4	44	100.0		
	지방이양	103	61	59.2	42	40.8
	계	147	105	71.4	42	28.6

구 분		사례수	생활		이용	
			빈도	%	빈도	%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77	60	77.9	17	22.1
	계	77	60	77.9	17	22.1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5	100.0	.	.
	지방이양	331	.	.	331	100.0
	계	336	5	1.5	331	98.5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10	.	.	110	100.0
	계	110	.	.	110	100.0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229	.	.	229	100.0
	계	229	.	.	229	100.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15	9	60.0	6	40.0
	계	15	9	60.0	6	4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21	6	28.6	15	71.4
	계	21	6	28.6	15	71.4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52	17	32.7	35	67.3
	계	52	17	32.7	35	67.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60	58	96.7	2	3.3
	계	60	58	96.7	2	3.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61	.	.	61	100.0
	계	61	.	.	61	100.0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6	16	100.0	.	.
	계	16	16	100.0	.	.

다. 시설설치 기간

□ (전체) 총 4,739개 시설의 평균 설치연도는 약 17.2년으로, 그 중 약 11~20년된 시설이 39.3%로 가장 많았고, 6년에서 30년 사이에 설치된 시설이 80.0%를 차지하고 있었음

□ (지역분포)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설치 기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세종(12.8년)이었고 이어서 울산(13.2년), 경기(14.7년), 대전(16.2년)의 순이었으며, 가장 오래된 지역은 대구(22.5년), 부산(20.8년), 강원(18.4년)이었음

○ 설치연도가 5년 이하인 시설이 많은 지역은 세종(35.7%), 제주(25.3%), 울산(24.3%), 경기(23.0%), 전북(22.9%), 서울(21.2%)로 나타남

- 설치연도가 역사적으로 30년을 초과하는 오래된 시설의 비율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대구(21.3%), (부산(16.8%), 전남(12.8%), 서울(12.7%) 순으로 나타남

〈표 5-22〉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단위: 개소, 년, %)

구분	사례수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0년 초과	평균
전체	4,739	19.1	14.1	39.3	16.5	11.0	17.2
서울특별시	821	21.2	11.2	33.1	21.8	12.7	17.9
부산광역시	303	16.2	11.2	35.0	20.8	16.8	20.8
대구광역시	164	6.1	14.6	37.8	20.1	21.3	22.5
인천광역시	218	16.5	11.9	42.7	17.0	11.9	18.2
광주광역시	151	14.6	21.2	34.4	15.9	13.9	17.1
대전광역시	138	18.1	15.9	39.1	15.2	11.6	16.2
울산광역시	103	24.3	16.5	45.6	10.7	2.9	13.2
세종특별자치시	28	35.7	25.0	21.4	10.7	7.1	12.8
경기도	958	23.0	16.8	38.6	15.2	6.4	14.7
강원도	202	14.4	13.9	42.6	19.3	9.9	18.4
충청북도	245	18.8	18.8	38.8	12.2	11.4	16.7
충청남도	221	15.8	14.5	43.0	17.2	9.5	16.8
전라북도	223	22.9	8.5	43.5	12.6	12.6	17.2
전라남도	304	18.8	13.2	41.8	13.5	12.8	18.2
경상북도	289	16.3	14.9	45.3	14.9	8.7	16.6
경상남도	288	16.3	12.8	47.6	12.5	10.8	17.8
제주특별자치도	83	25.3	12.0	37.3	14.5	10.8	16.6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의 평균 설치 기간은 17.2년이었고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시설의 설치 기간은 평균 16.4년으로 근소한 차이가 있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설치기간이 오래된 시설을 살펴보면 노숙인시설(24.7년),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24.2년), 아동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19.7년), 지역자활센터(19.5년)의 순으로 나타남

- 5년 이하 시설비율이 높은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99.6%), 아동복지시설(25.3%)이었고 30년 이상된 시설은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27.7%), 노숙인시설(26.0%), 정신건강증진시설(24.5%), 아동복지시설(16.9%) 순이었음
- 아동복지시설은 30년 초과 시설 비율이 16.9%를 차지하고 있었은 반면, 5년 이하 시설 비율도 25.3%를 차지하고 있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5년 이하로 설치된 시설이 99.6%를 차지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설치연도가 오래된 시설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26.6년), 성매매피해지원시설(16.9년)의 순으로 나타남

- 5년 이하인 시설의 비율이 높은 시설은 성폭력피해보호시설(33.3%), 가정폭력보호시설(26.9%), 청소년복지시설(25.0%)의 순이었고, 한편 30년 이상 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26.7%)에만 존재하였음

〈표 5-23〉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

(단위: 개소, 년, %)

구 분		사례수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0년 초과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904	19.1	670	14.1	1,861	39.3	784	16.5	520	11.0	17.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81	87	18.1	111	23.1	178	37.0	76	15.8	29	6.0	15.0
	아동복지시설	995	252	25.3	128	12.9	410	41.2	37	3.7	168	16.9	19.7
	장애인복지시설	2139	261	12.2	337	15.8	985	46.0	398	18.6	158	7.4	16.5
	정신건강증진시설	147	15	10.2	25	17.0	55	37.4	16	10.9	36	24.5	19.7
	노숙인시설	77	4	5.2	11	14.3	27	35.1	15	19.5	20	26.0	24.7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36	15	4.5	29	8.6	53	15.8	146	43.5	93	27.7	24.2
	지역자활센터	110	5	4.5	3	2.7	35	31.8	67	60.9	.	.	19.5
	다함께돌봄센터	229	228	99.6	1	0.4	.	.	.	.	.	.	2.7
	계	4,514	867	19.2	645	14.3	1,743	38.6	755	16.7	504	11.2	17.2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5	2	13.3	.	.	8	53.3	5	33.3	.	.	16.9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	7	33.3	4	19.0	9	42.9	1	4.8	.	.	10.1
	가정폭력보호시설	52	14	26.9	6	11.5	18	34.6	14	26.9	.	.	13.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0	3	5.0	8	13.3	27	45.0	6	10.0	16	26.7	26.6
	건강가정문화가족지원센터	61	7	11.5	4	6.6	50	82.0	.	.	.	.	12.2
	청소년복지시설	16	4	25.0	3	18.8	6	37.5	3	18.8	.	.	12.4
	계	225	37	16.4	25	11.1	118	52.4	29	12.9	16	7.1	16.4

□ (세부 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에서 설치연도가 오래된 시설은 노숙인시설(24.7년),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24.2년), 아동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19.7년), 지역자활센터(19.5년)이며,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에서 설치연도가 오래된 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26.6년), 성매매피해지원시설(16.9년), 가정폭력보호시설(13.0년)으로 나타남(〈표 5-24〉)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노숙인시설의 설치기간은 11~20년 이하 35.1%, 30년 초과 26.0%, 21~30년 이하 19.5%이고 5년 이하 시설은 5.2%에 불과, 특히 노숙인재활시설의 평균 설치연도는 35.7년, 노숙인요양시설은 평균 33.5년으로 매우 오래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설치연도가 24.2년인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의 경우 21~30년 이하 시설이 43.5%를 차지하고 30년 초과 시설 27.7%, 11~20년 이하 시설이 15.8% 차지
- 평균 설치연도가 19.7년인 아동복지시설은 11~20년 이하 시설이 41.2%로 가장 많고 이어서 5년 이하 시설 25.3%, 30년 초과 시설 16.9% 순임
- 평균 설치연도가 19.7년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11~20년 이하 시설이 37.4%로 가장 많고, 30년 초과 시설 24.5%, 6~10년 이하 시설 17.0%로 나타남
- 평균 설치연도가 19.5년인 지역자활센터는 21~30년 이하(60.9%)와 11~20년 이하(31.8%)에 주로 분포하고 5년 이하인 시설도 4.5%임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평균 설치연도가 26.6년으로 가장 오래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11~20년 이하 시설이 45.0%이고 30년 초과 시설 26.7%, 6~10년 이하 시설 13.3% 순이었으며, 세부시설 중에서는 모자가족복지시설의 평균 설치연도가 42.7년으로 가장 오래된 시설로 분류됨

- 평균 설치연도가 16.9년인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 두 번째로 오래된 시설이며 11~20년 이하 시설 53.3%, 21~30년 이하 시설 33.3% 순임
- 평균 설치연도가 13년으로 나타난 가정폭력보호시설은 11~20년 이하 시설이 34.6%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 시설과 21~30년 이하 시설이 각각 26.9%로 나타남
- 설치연도가 가장 짧은 시설은 성폭력피해보호시설로 평균 10.1년이고 11~20년 이하 시설이 42.9%, 5년 이하 시설이 33.3%, 6~10년 이하 시설이 19%를 차지하고 있음

〈표 5-24〉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류 현황

(단위: 개소, 년, %)

구 분		사례 수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0년 초과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904	19.1	670	14.1	1861	39.3	784	16.5	520	11.0	17.2
노인 복지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3	3.8	16	20.3	15	19.0	19	24.1	26	32.9	27.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6	66.7	.	.	3	33.3	.	.	.	.	7.3
	노인여가복지시설	268	45	16.8	45	16.8	121	45.1	54	20.1	3	1.1	14.1
	노인보호전문기관	27	5	18.5	4	14.8	18	66.7	.	.	.	.	13.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8	28	28.6	46	46.9	21	21.4	3	3.1	.	.	8.6
	계	481	87	18.1	111	23.1	178	37.0	76	15.8	29	6.0	15.0
아동 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1	0.6	3	1.8	6	3.5	6	3.5	155	90.6	61.4
	아동일시보호시설	8	3	37.5	1	12.5	2	25.0	.	.	2	25.0	15.4
	아동보호치료시설	11	1	9.1	2	18.2	3	27.3	1	9.1	4	36.4	21.8
	자립지원시설	5	1	20.0	.	.	.	.	2	40.0	2	40.0	24.6
	공동생활가정	142	66	46.5	27	19.0	42	29.6	6	4.2	1	0.7	8.5
	아동상담소	5	1	20.0	.	.	4	80.0	.	.	.	.	11.6
	아동전용시설	6	2	33.3	.	.	4	66.7	.	.	.	.	12.3
	지역아동센터	621	166	26.7	92	14.8	340	54.8	19	3.1	4	0.6	11.3
	아동보호전문기관	24	11	45.8	2	8.3	8	33.3	3	12.5	.	.	10.4
	가정위탁지원센터	2	.	.	1	50.0	1	50.0	.	.	.	.	13.0
	계	995	252	25.3	128	12.9	410	41.2	37	3.7	168	16.9	19.7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17	5.8	22	7.6	126	43.3	41	14.1	85	29.2	26.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10	4.4	22	9.7	118	52.2	38	16.8	38	16.8	19.2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	.	.	.	3	33.3	3	33.3	3	33.3	26.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25	22.7	18	16.4	53	48.2	13	11.8	1	0.9	12.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40	12.9	59	19.1	144	46.6	63	20.4	3	1.0	14.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71	105	13.6	127	16.5	383	49.7	142	18.4	14	1.8	1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1	63	15.3	88	21.4	153	37.2	95	23.1	12	2.9	14.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	.	.	.	.	2	40.0	1	20.0	2	40.0	26.4
	장애인생활용품판매시설	7	1	14.3	1	14.3	3	42.9	2	28.6	.	.	16.3
	계	2,139	261	12.2	337	15.8	985	46.0	398	18.6	158	7.4	16.5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정신요양시설	44	.	.	.	.	4	9.1	4	9.1	36	81.8	36.2
	정신재활생활시설	61	11	18.0	19	31.1	29	47.5	2	3.3	.	.	11.0
	정신재활이용시설	42	4	9.5	6	14.3	22	52.4	10	23.8	.	.	15.2
	계	147	15	10.2	25	17.0	55	37.4	16	10.9	36	24.5	19.7
노숙인시설	노숙인재활시설	24	.	.	3	12.5	12	50.0	9	37.5	.	.	18.6
	노숙인재활시설	21	.	.	3	14.3	3	14.3	4	19.0	11	52.4	35.7
	노숙인요양시설	15	.	.	3	20.0	2	13.3	1	6.7	9	60.0	33.5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	1	11.1	.	.	7	77.8	1	11.1	.	.	14.8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	.	2	50.0	2	50.0	.	.	.	.	12.3

구 분		사례 수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0년 초과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쪽방상담소	4	3	75.0	·	·	1	25.0	·	·	·	·	6.0
	계	77	4	5.2	11	14.3	27	35.1	15	19.5	20	26.0	24.7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	·	1	20.0	1	20.0	2	40.0	1	20.0	27.0
	사회복지관	331	15	4.5	28	8.5	52	15.7	144	43.5	92	27.8	24.2
	계	336	15	4.5	29	8.6	53	15.8	146	43.5	93	27.7	24.2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10	5	4.5	3	2.7	35	31.8	67	60.9	·	·	19.5
	계	110	5	4.5	3	2.7	35	31.8	67	60.9	·	·	19.5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9	228	99.6	1	0.4	·	·	·	·	·	·	2.7
	계	229	228	99.6	1	0.4	·	·	·	·	·	·	2.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본지원시설	3	1	33.3	·	·	1	33.3	1	33.3	·	·	14.7
	청소년지원시설	5	·	·	·	·	1	20.0	4	80.0	·	·	23.2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	·	1	100.0	·	·	·	·	13.0
	자활지원센터	1	·	·	·	·	1	100.0	·	·	·	·	14.0
	성매매피해상담소	5	1	20.0	·	·	4	80.0	·	·	·	·	13.4
	계	15	2	13.3	·	·	8	53.3	5	33.3	·	·	16.9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3	50.0	3	50.0	·	·	·	·	·	·	6.2
	성폭력피해상담소	15	4	26.7	1	6.7	9	60.0	1	6.7	·	·	11.7
	계	21	7	33.3	4	19.0	9	42.9	1	4.8	·	·	10.1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1	5.9	3	17.6	7	41.2	6	35.3	·	·	15.2
	가정폭력상담소	33	13	39.4	2	6.1	10	30.3	8	24.2	·	·	12.0
	긴급전화센터	2	·	·	1	50.0	1	50.0	·	·	·	·	10.5
	계	52	14	26.9	6	11.5	18	34.6	14	26.9	·	·	13.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	·	2	10.5	4	21.1	1	5.3	12	63.2	42.7
	부자가족복지시설	2	·	·	1	50.0	1	50.0	·	·	·	·	12.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2	6.1	5	15.2	21	63.6	1	3.0	4	12.1	19.7
	일시지원복지시설	4	·	·	·	·	·	·	4	100.0	·	·	23.8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1	50.0	·	·	1	50.0	·	·	·	·	8.0
	계	60	3	5.0	8	13.3	27	45.0	6	10.0	16	26.7	26.6
건강가정/다문화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7	11.5	4	6.6	50	82.0	·	·	·	·	12.2
	계	61	7	11.5	4	6.6	50	82.0	·	·	·	·	12.2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3	2	15.4	3	23.1	5	38.5	3	23.1	·	·	13.8
	청소년자립지원관	1	·	·	·	·	1	100.0	·	·	·	·	13.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2	100.0	·	·	·	·	·	·	·	·	3.0
	계	16	4	25.0	3	18.8	6	37.5	3	18.8	·	·	12.4

□ (생활 및 이용시설) 생활시설의 평균 설치연도는 23.6년이었고 이용시설은 13.8년으로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평균 9.8년 더 오래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분포) 생활시설은 주로 11~20년 이하 시설(36.8%)과 30년 초과 시설(24.1%)이 많았고, 이용시설은 주로 11~20년 이하 시설(40.6%)과 5년 이하 시설(23.0%)에 많이 분포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생활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36.2년), 노숙인시설(28.3년), 결핵한센시설(27년)이, 이용시설에서는 사회복지관(24.2년), 지역자활센터(19.5년), 장애인복지시설(14.5년)의 순이었음

- 생활시설 중에서 평균 설치연도가 36.2년으로 가장 오래된 아동복지시설은 30년 초과 시설이 48.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 시설이 21.4%, 11~20년 이하 시설이 15.7%로 나타남
- 이용시설 중에서 평균 설치연도가 24.2년으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의 경우 21~30년 이하 시설이 43.5%를 차지하고 30년 초과 시설 27.8%, 11~20년 이하 시설이 15.7%를 차지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생활시설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27.3년), 성매매피해지원시설(19.2년), 가정폭력보호시설(15.2년)이, 이용시설에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13.5년), 건강가정/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센터(12.2년)의 순이었음

- 생활시설 중에서 평균 설치연도가 27.3년으로 가장 오래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11~20년 이하 시설이 44.8%로 가장 많았고 30년 초과 시설이 27.6%, 6~10년 이하 시설이 13.8%로 나타남
- 이용시설 중에서 평균 설치연도가 13.5년으로 가장 오래된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의 경우 11~20년 이하 시설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6~10년 이하 시설이 16.7%였음

〈표 5-25〉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

(단위: 개소, 년, %)

구 분		사례수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0년 초과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904	19.1	670	14.1	1,861	39.3	784	16.5	520	11.0	17.2
생활		1,633	191	11.7	214	13.1	601	36.8	234	14.3	393	24.1	23.6
이용		3,106	713	23.0	456	14.7	1260	40.6	550	17.7	127	4.1	13.8
노인복지시설	생활	88	9	10.2	16	18.2	18	20.5	19	21.6	26	29.5	25.4
	이용	393	78	19.8	95	24.2	160	40.7	57	14.5	3	0.8	12.7
	계	481	87	18.1	111	23.1	178	37.0	76	15.8	29	6.0	15.0

구 분		사례수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0년 초과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동복지시설	생활	337	72	21.4	33	9.8	53	15.7	15	4.5	164	48.7	36.2
	이용	658	180	27.4	95	14.4	357	54.3	22	3.3	4	0.6	11.3
	계	995	252	25.3	128	12.9	410	41.2	37	3.7	168	16.9	19.7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945	92	9.7	121	12.8	444	47.0	158	16.7	130	13.8	19.0
	이용	1,194	169	14.2	216	18.1	541	45.3	240	20.1	28	2.3	14.5
	계	2,139	261	12.2	337	15.8	985	46.0	398	18.6	158	7.4	16.5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92	7	7.6	17	18.5	26	28.3	6	6.5	36	39.1	23.0
	이용	55	8	14.5	8	14.5	29	52.7	10	18.2	·	·	14.3
	계	147	15	10.2	25	17.0	55	37.4	16	10.9	36	24.5	19.7
노숙인시설	생활	60	·	·	9	15.0	17	28.3	14	23.3	20	33.3	28.3
	이용	17	4	23.5	2	11.8	10	58.8	1	5.9	·	·	12.1
	계	77	4	5.2	11	14.3	27	35.1	15	19.5	20	26.0	24.7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5	·	·	1	20.0	1	20.0	2	40.0	1	20.0	27.0
	이용	331	15	4.5	28	8.5	52	15.7	144	43.5	92	27.8	24.2
	계	336	15	4.5	29	8.6	53	15.8	146	43.5	93	27.7	24.2
지역자활센터	이용	110	5	4.5	3	2.7	35	31.8	67	60.9	·	·	19.5
	계	110	5	4.5	3	2.7	35	31.8	67	60.9	·	·	19.5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229	228	99.6	1	0.4	·	·	·	·	·	·	2.7
	계	229	228	99.6	1	0.4	·	·	·	·	·	·	2.7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생활	9	1	11.1	·	·	3	33.3	5	55.6	·	·	19.2
	이용	6	1	16.7	·	·	5	83.3	·	·	·	·	13.5
	계	15	2	13.3	·	·	8	53.3	5	33.3	·	·	16.9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6	3	50.0	3	50.0	·	·	·	·	·	·	6.2
	이용	15	4	26.7	1	6.7	9	60.0	1	6.7	·	·	11.7
	계	21	7	33.3	4	19.0	9	42.9	1	4.8	·	·	10.1
가정폭력 보호시설	생활	17	1	5.9	3	17.6	7	41.2	6	35.3	·	·	15.2
	이용	35	13	37.1	3	8.6	11	31.4	8	22.9	·	·	11.9
	계	52	14	26.9	6	11.5	18	34.6	14	26.9	·	·	13.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	58	2	3.4	8	13.8	26	44.8	6	10.3	16	27.6	27.3
	이용	2	1	50.0	·	·	1	50.0	·	·	·	·	8.0
	계	60	3	5.0	8	13.3	27	45.0	6	10.0	16	26.7	26.6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61	7	11.5	4	6.6	50	82.0	·	·	·	·	12.2
	계	61	7	11.5	4	6.6	50	82.0	·	·	·	·	12.2
청소년 복지시설	생활	16	4	25.0	3	18.8	6	37.5	3	18.8	·	·	12.4
	계	16	4	25.0	3	18.8	6	37.5	3	18.8	·	·	12.4

□ (재원출처) 국고지원시설의 평균 설치연도는 14.9년이고 지방이양시설은 18.8년으로 지방이양시설이 국고지원시설보다 평균 3.9년 오래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분포) 국고지원시설은 주로 11~20년 이하 시설(41.6%)과 5년 이하 시설(28.0%)에서, 지방이양시설은 주로 11~20년 이하 시설(37.6%)과 21~30년 이하 시설(20.6%)에 분포(〈표 5-26〉)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국고지원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36.2년),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27년), 장애인복지시설(23.0년)의 순이었고 지방이양시설은 아동복지시설(53.5년), 노숙인시설(24.7년),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24.2년) 순임

- 국고지원시설 중 평균 설치연도가 36.2년으로 가장 오래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도 30년 초과 시설이 81.8%에 달했음
- 지방이양시설 중 평균 설치연도가 53.5년으로 가장 오래된 아동복지시설은 30년 초과 시설이 78.4%로 가장 많았음

○ (여성가족부가 소관 시설) 국고지원시설의 설치연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26.6년)이 가장 오래되었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16.9년), 가정폭력보호시설(13.0년), 청소년복지시설(12.4년) 순이고 지방이양시설은 없음

- 국고지원시설 중에서 평균 설치연도가 26.6년으로 가장 오래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11~20년 이하 시설이 45.0%로 가장 많고 30년 초과 시설이 26.7%, 6~10년 이하 시설이 13.3%로 나타남
- 평균 설치연도가 16.9년으로 두 번째 오래된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의 경우 11~20년 이하 시설이 5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1~30년 이하 시설이 33.3%, 5년 이하 시설이 13.3%를 차지하고 있음

〈표 5-26〉 설치연도별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단위: 개소, 년, %)

구분		사례수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0년 초과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39	904	19.1	670	14.1	1,861	39.3	784	16.5	520	11.0	17.2
국고지원		1,969	552	28.0	200	10.2	819	41.6	214	10.9	184	9.3	14.9
지방이양		2,770	352	12.7	470	17.0	1,042	37.6	570	20.6	336	12.1	18.8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6	11	30.6	4	11.1	21	58.3					11.7
	지방이양	445	76	17.1	107	24.0	157	35.3	76	17.1	29	6.5	15.3

구분		사례수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0년 초과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481	87	18.1	111	23.1	178	37.0	76	15.8	29	6.0	15.0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787	243	30.9	121	15.4	390	49.6	28	3.6	5	0.6	10.8
	지방이양	208	9	4.3	7	3.4	20	9.6	9	4.3	163	78.4	53.5
	계	995	252	25.3	128	12.9	410	41.2	37	3.7	168	16.9	19.7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533	28	5.3	45	8.4	250	46.9	84	15.8	126	23.6	23.0
	지방이양	1,606	233	14.5	292	18.2	735	45.8	314	19.6	32	2.0	14.3
	계	2,139	261	12.2	337	15.8	985	46.0	398	18.6	158	7.4	16.5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4	.	.	.	.	4	9.1	4	9.1	36	81.8	36.2
	지방이양	103	15	14.6	25	24.3	51	49.5	12	11.7	.	.	12.7
	계	147	15	10.2	25	17.0	55	37.4	16	10.9	36	24.5	19.7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77	4	5.2	11	14.3	27	35.1	15	19.5	20	26.0	24.7
	계	77	4	5.2	11	14.3	27	35.1	15	19.5	20	26.0	24.7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	.	1	20.0	1	20.0	2	40.0	1	20.0	27.0
	지방이양	331	15	4.5	28	8.5	52	15.7	144	43.5	92	27.8	24.2
	계	336	15	4.5	29	8.6	53	15.8	146	43.5	93	27.7	24.2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10	5	4.5	3	2.7	35	31.8	67	60.9	.	.	19.5
	계	110	5	4.5	3	2.7	35	31.8	67	60.9	.	.	19.5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229	228	99.6	1	0.4	.	.	.	.	.	.	2.7
	계	229	228	99.6	1	0.4	.	.	.	.	.	.	2.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15	2	13.3	.	.	8	53.3	5	33.3	.	.	16.9
	계	15	2	13.3	.	.	8	53.3	5	33.3	.	.	16.9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21	7	33.3	4	19.0	9	42.9	1	4.8	.	.	10.1
	계	21	7	33.3	4	19.0	9	42.9	1	4.8	.	.	10.1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52	14	26.9	6	11.5	18	34.6	14	26.9	.	.	13.0
	계	52	14	26.9	6	11.5	18	34.6	14	26.9	.	.	13.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60	3	5.0	8	13.3	27	45.0	6	10.0	16	26.7	26.6
	계	60	3	5.0	8	13.3	27	45.0	6	10.0	16	26.7	26.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61	7	11.5	4	6.6	50	82.0	.	.	.	.	12.2
	계	61	7	11.5	4	6.6	50	82.0	.	.	.	.	12.2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6	4	25.0	3	18.8	6	37.5	3	18.8	.	.	12.4
	계	16	4	25.0	3	18.8	6	37.5	3	18.8	.	.	12.4

라. 시설 입소자 정원 현황

□ (전체) 전체 1,670개소 생활시설의 입소자 수는 평균 35.3명으로 파악됨

○ (전체 분포) 지역별 평균 입소자 수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51.9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47.3 명), 경상북도(45.6명), 충청북도(44.7명) 등의 순이었음

- 생활시설 입소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광역시(19.6명), 경기도(26.3명)이었음

〈표 5-27〉 분석대상 생활시설의 입소자 정원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례수	10인이하	11~40인 이하	41인 이상	미기입	평균 입소자 수
전체	1,670	29.2	24.0	21.4	25.4	35.3
서울특별시	261	41.0	11.5	20.7	26.8	29.9
부산광역시	86	23.3	24.4	26.7	25.6	40.9
대구광역시	58	17.2	24.1	22.4	36.2	51.9
인천광역시	75	33.3	14.7	24.0	28.0	29.6
광주광역시	55	21.8	30.9	12.7	34.5	30.3
대전광역시	64	29.7	28.1	20.3	21.9	34.3
울산광역시	32	31.3	37.5	12.5	18.8	19.6
세종특별자치시	11	27.3	9.1	27.3	36.4	36.4
경기도	325	37.2	22.2	13.2	27.4	26.3
강원도	72	25.0	23.6	22.2	29.2	30.6
충청북도	107	36.4	21.5	22.4	19.6	44.7
충청남도	79	20.3	32.9	30.4	16.5	47.3
전라북도	80	16.3	40.0	21.3	22.5	42.8
전라남도	107	20.6	24.3	27.1	28.0	37.9
경상북도	110	13.6	35.5	27.3	23.6	45.6
경상남도	107	27.1	27.1	29.0	16.8	37.8
제주특별자치도	41	22.0	31.7	19.5	26.8	36.8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의 입소자 수는 평균 36.2명,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평균 22.0명으로 보건복지부 시설이 약 14.2명 많았음 (〈표 5-28〉)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입소자 규모는 10인 이하(29.8%), 11~40인 이하(22.8%), 41인 이상 시설(22.3%)에 분포해 있었음

- (세부 시설) 노숙인시설(92.7명), 정신건강증진시설(79.4명), 노인복지시설(54.2명), 결핵한센시설(55명)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입소자 규모는 11~40인 이하(41.5%), 10인 이하 시설(20.8%), 41인 이상 시설(8.5%)로 나타남(미기입 29.2%)

- (세부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28.4명), 가정폭력보호시설(14.6명), 성매매피해지원시설(13명), 성폭력피해보호시설(12.8명), 청소년복지시설(9.9)의 순이었음

〈표 5-28〉 입소자정원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처별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례수	10인 이하		11~40인 이하		41인 이상		미기입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670	488	29.2	401	24.0	357	21.4	424	25.4	35.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88	7	8.0	14	15.9	38	43.2	29	33.0	54.2
	아동복지시설	361	128	35.5	24	6.6	115	31.9	94	26.0	33.4
	장애인복지시설	945	290	30.7	289	30.6	140	14.8	226	23.9	27.5
	정신건강증진시설	105	41	39.0	13	12.4	27	25.7	24	22.9	79.4
	노숙인시설	60	·	·	16	26.7	26	43.3	18	30.0	92.7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5	·	·	1	20.0	2	40.0	2	40.0	55.0
	계	1,564	466	29.8	357	22.8	348	22.3	393	25.1	36.2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9	5	55.6	3	33.3	·	·	1	11.1	13.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6	2	33.3	3	50.0	·	·	1	16.7	12.8
	가정폭력보호시설	17	·	·	11	64.7	·	·	6	35.3	1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8	10	17.2	25	43.1	9	15.5	14	24.1	28.4
	청소년복지시설	16	5	31.3	2	12.5	·	·	9	56.3	9.9
	계	106	22	20.8	44	41.5	9	8.5	31	29.2	22.0

□ (세부 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 평균 입소자정원이 높은 시설은 노숙인시설(92.7명)이었고,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중 평균 입소자정원이 많은 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28.4명)이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노숙인시설(92.7명), 정신건강증진시설(79.4명), 노인복지시설(54.2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55명)

- (세부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정신요양시설(216.2명), 노숙인시설 내 노숙인요양시설(154.8명), 노숙인재활시설(134.6명),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양육시설(59.9명),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주거복지시설(58.6명),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영유아거주시설(56.3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내 결핵한센시설(55명)이 입소자 정원이 큰 것으로 파악됨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28.4명), 가정폭력보호시설(14.6명), 성매매피해지원시설(13명), 성폭력피해보호시설(12.8명)이었음

- (세부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부자가족복지시설(60명), 모자가족복지시설(41.8명), 일시지원복지시설(27.8명),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19.8명)이고, 그 외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소관 하는 전체 시설의 평균 입소자정원 22명보다 낮았음

〈표 5-29〉 입소자정원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례수	10인 이하		11~40인 이하		41인 이상		미기입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670	488	29.2	401	24.0	357	21.4	424	25.4	35.3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2	2.5	14	17.7	38	48.1	25	31.6	58.6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5	55.6					4	44.4	5.8
	계	88	7	8.0	14	15.9	38	43.2	29	33.0	54.2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14	8.2	110	64.3	47	27.5	59.9
	아동일시보호시설	8	2	25.0	2	25.0			4	50.0	16.0
	아동보호치료시설	11			4	36.4	4	36.4	3	27.3	48.4
	자립지원시설	5			4	80.0			1	20.0	30.3
	공동생활가정	142	120	84.5					22	15.5	6.8
	아동보호전문기관	24	6	25.0			1	4.2	17	70.8	15.6
	계	361	128	35.5	24	6.6	115	31.9	94	26.0	33.4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6	2.1	135	46.4	74	25.4	76	26.1	44.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2	0.9	102	45.1	64	28.3	58	25.7	46.9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2	22.2	2	22.2	5	55.6	56.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37	33.6	50	45.5			23	20.9	13.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245	79.3					64	20.7	4.1
	계	945	290	30.7	289	30.6	140	14.8	226	23.9	27.5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4					27	61.4	17	38.6	216.2
	정신재활생활시설	61	41	67.2	13	21.3			7	11.5	10.9
	계	105	41	39.0	13	12.4	27	25.7	24	22.9	79.4
노숙인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4			14	58.3	6	25.0	4	16.7	38.6
	노숙인재활시설	21			1	4.8	13	61.9	7	33.3	134.6
	노숙인요양시설	15			1	6.7	7	46.7	7	46.7	154.8
	계	60			16	26.7	26	43.3	18	30.0	92.7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1	20.0	2	40.0	2	40.0	55.0
	계	5			1	20.0	2	40.0	2	40.0	55.0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	2	66.7	1	33.3					9.7
	청소년지원시설	5	3	60.0	2	40.0					15.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100.0	
	계	9	5	55.6	3	33.3			1	11.1	13.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2	33.3	3	50.0			1	16.7	12.8
	계	6	2	33.3	3	50.0			1	16.7	12.8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11	64.7			6	35.3	14.6
	계	17			11	64.7			6	35.3	14.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1	5.3	7	36.8	6	31.6	5	26.3	41.8
	부자가족복지시설	2					1	50.0	1	50.0	6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9	27.3	14	42.4	2	6.1	8	24.2	19.8
	일시지원복지시설	4			4	100.0					27.8
	계	58	10	17.2	25	43.1	9	15.5	14	24.1	28.4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3	3	23.1	2	15.4			8	61.5	10.4
	청소년자립지원관	1	1	100.0							7.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1	50.0					1	50.0	10.0
	계	16	5	31.3	2	12.5			9	56.3	9.9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의 평균 입소자정원은 41.9명이고 지방이양시설의 평균 입소자정원은 28.7명으로 국고지원시설이 지방이양시설보다 평균 입소자정원이 13.2명 더 많았음 (〈표 5-30〉)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국고지원시설에서 입소자정원이 높은 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216.2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55명), 장애인복지시설(45.4명)이었고, 지방이양시설에서 입소자정원이 높은 시설은 노숙인시설(92.7명), 노인복지시설(58.6명), 아동복지시설(57.2명) 순으로 나타남

- (입소자정원 10인 이하 시설) 국고지원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75.9%)이, 지방이양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67.3%)과 정신건강증진시설(67.2%)이 타 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입소자정원 11~40인 이하 시설) 국고지원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45.4%)이고 지방이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21.3%)이었음
- (입소자정원 41인 이상 시설) 국고지원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61.4%)이었고, 지방이양시설은 아동복지시설(58.5%)과 노인복지시설(48.1%), 노숙인시설(43.3%)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국고지원시설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28.4명), 가정폭력보호시설(14.6명), 성매매피해지원시설(13명) 순으로 나타나고, 지방이양시설은 없음

- (입소자정원 10인 이하 시설) 국고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지원시설(55.6%), 성폭력피해보호시설(33.3%), 청소년복지시설(31.3%)의 비율이 타 시설 대비 높게 나타남
- (입소자정원 11~40인 이하 시설) 국고지원시설은 가정폭력보호시설(64.7%), 성폭력피해보호시설(5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43.1%) 순임
- (입소자정원 41인 이상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15.5%였음

〈표 5-30〉 입소자정원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 출처 현황

(단위: 개소, 명, %)

		사례수	10인 이하		11~40인 이하		41인 이상		미기입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670	488	29.2	401	24.0	357	21.4	424	25.4	35.3
국고지원		856	161	18.8	284	33.2	179	20.9	232	27.1	41.9
지방이양		814	327	40.2	117	14.4	178	21.9	192	23.6	28.7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9	5	55.6	.	.	.	.	4	44.4	5.8
	지방이양	79	2	2.5	14	17.7	38	48.1	25	31.6	58.6
	계	88	7	8.0	14	15.9	38	43.2	29	33.0	54.2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166	126	75.9	.	.	1	0.6	39	23.5	7.3
	지방이양	195	2	1.0	24	12.3	114	58.5	55	28.2	57.2
	계	361	128	35.5	24	6.6	115	31.9	94	26.0	33.4
장애인 복지시설	국고지원	526	8	1.5	239	45.4	140	26.6	139	26.4	45.4
	지방이양	419	282	67.3	50	11.9	.	.	87	20.8	6.6
	계	945	290	30.7	289	30.6	140	14.8	226	23.9	27.5
정신건강 증진시설	국고지원	44	.	.	.	.	27	61.4	17	38.6	216.2
	지방이양	61	41	67.2	13	21.3	.	.	7	11.5	10.9
	계	105	41	39.0	13	12.4	27	25.7	24	22.9	79.4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60	.	.	16	26.7	26	43.3	18	30.0	92.7
	계	60	.	.	16	26.7	26	43.3	18	30.0	92.7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	.	1	20.0	2	40.0	2	40.0	55.0
	계	5	.	.	1	20.0	2	40.0	2	40.0	55.0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국고지원	9	5	55.6	3	33.3	.	.	1	11.1	13.0
	계	9	5	55.6	3	33.3	.	.	1	11.1	13.0
성폭력피해보호 시설	국고지원	6	2	33.3	3	50.0	.	.	1	16.7	12.8
	계	6	2	33.3	3	50.0	.	.	1	16.7	12.8
가정폭력 보호시설	국고지원	17	.	.	11	64.7	.	.	6	35.3	14.6
	계	17	.	.	11	64.7	.	.	6	35.3	14.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국고지원	58	10	17.2	25	43.1	9	15.5	14	24.1	28.4
	계	58	10	17.2	25	43.1	9	15.5	14	24.1	28.4
청소년 복지시설	국고지원	16	5	31.3	2	12.5	.	.	9	56.3	9.9
	계	16	5	31.3	2	12.5	.	.	9	56.3	9.9

마. 교대근무제 형태

□ (전체) 분석대상 1,056개 생활시설의 교대제 근무형태 중 2조2교대제가 3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조3교대(7.9%), 격일제(2.8%), 3조2교대(0.4%), 4조3교대(0.1%)의 순이었음

○ (분석대상) 총 1,670개 생활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근무형태 자료를 기입한 1,056개 시설자료만을 분석

○ (분석내용) 근무형태 유형에서 기타 근무형태가 58.0%로 분석된 이유는 근무형태를 기입하였으나 정확한 교대제 분류가 불가능하게 기입한 경우

□ (지역분포) 2조2교대 적용 비율이 평균 30.8%보다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44.2%), 전라북도(40.7%), 경상북도(38.2%) 등이었음

○ (3조3교대제) 세종특별자치시가 2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광역시(14.0%), 제주특별자치도(10.5%), 강원도(9.8%) 등의 순이었음

○ (격일제) 충청남도가 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7.0%), 전라남도(6.5%), 충청북도(6.3%) 등의 순이었음

〈표 5-31〉 교대제 근무형태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단위: 개소, %)

	사례수	2조2교대제	3조2교대제	3조3교대제	4조3교대제	격일제	기타
전체	1,056	30.8	0.4	7.9	0.1	2.8	58.0
서울특별시	155	25.8	0.6	7.1	·	1.9	64.5
부산광역시	62	29.0	·	8.1	·	·	62.9
대구광역시	43	18.6	·	14.0	·	2.3	65.1
인천광역시	48	22.9	·	8.3	·	4.2	64.6
광주광역시	43	44.2	·	4.7	·	7.0	44.2
대전광역시	50	34.0	2.0	6.0	2.0	2.0	54.0
울산광역시	15	26.7	·	6.7	·	·	66.7
세종특별자치시	9	33.3	·	22.2	·	·	44.4
경기도	169	27.2	·	8.9	·	1.8	62.1
강원도	41	29.3	2.4	9.8	·	·	58.5
충청북도	64	32.8	·	7.8	·	6.3	53.1
충청남도	52	26.9	·	9.6	·	7.7	55.8
전라북도	59	40.7	·	6.8	·	·	52.5
전라남도	77	36.4	·	2.6	·	6.5	54.5
경상북도	76	38.2	·	7.9	·	2.6	51.3
경상남도	74	33.8	1.4	8.1	·	2.7	54.1
제주특별자치도	19	31.6	·	10.5	·	·	57.9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의 교대근무제 유형에서는 2조2교대제 형태가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조3교대제가 8.4%로 2위였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2조2교대제가 16.7%였음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2조2교대를 평균 비율인 30.8%보다 높은 시설로는 장애인복지지설이 35.4%, 노인복지시설이 33.3%였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2조2교대를 평균 비율인 16.7%보다 높은 시설로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이 평균 3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시설(27.3%)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시설 중 2조2교대제 채택 시설이 많은 세부시설로는 자립지원시설(50.0%)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49.8%), 정신요양시설(43.2%) 등이 있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2조2교대제 사용률이 높은 세부시설로는 한부보가족복지시설 내 일시지원회복시설(50.0%)과 청소년복지시설 내 청소년쉼터(33.3%)가 높은 편이었음

□ (재원 출처) 국고 지원시설은 교대제 형태로 2조2교대제 채택율이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조3교대제(10.8%), 격일제(2.6%)의 순이었으며, 지방이양시설의 경우에는 2조2교대제 채택율이 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조3교대제(4.2%), 격일제(3.2%)의 순이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2조2교대제 운영 국고지원 시설 중에는 장애인복지시설(45.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43.2%)등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2조2교대제 운영 국고지원 시설 중에는 가정폭력보호시설(30.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청소년복지시설(27.3%)이었음

〈표 5-32〉 교대제 근무형태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2조2교대제		3조2교대제		3조3교대제		4조3교대제		격일제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056	325	30.8	4	0.4	83	7.9	1	0.1	30	2.8	613	58.0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51	17	33.3	.	.	3	5.9	.	.	2	3.9	29	56.9
	아동복지시설	229	63	27.5	1	0.4	15	6.6	.	.	5	2.2	145	63.3
	장애인복지시설	590	209	35.4	1	0.2	62	10.5	1	0.2	23	3.9	294	49.8
	정신건강증진시설	65	17	26.2	.	.	3	4.6	.	.	.	.	45	69.2
	노숙인시설	45	7	15.6	2	4.4	.	.	.	.	.	.	36	80.0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4	.	.	.	.	.	.	.	.	.	.	4	100.0
	계	984	313	31.8	4	0.4	83	8.4	1	0.1	30	3.0	553	56.2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6	.	.	.	.	.	.	.	.	.	.	6	10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4	1	25.0	.	.	.	.	.	.	.	.	3	75.0
	가정폭력보호시설	10	3	30.0	.	.	.	.	.	.	.	.	7	7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1	5	12.2	.	.	.	.	.	.	.	.	36	87.8
	청소년복지시설	11	3	27.3	.	.	.	.	.	.	.	.	8	72.7
	계	72	12	16.7	.	.	.	.	.	.	.	.	60	83.3

〈표 5-33〉 교대제 근무형태와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2조2교대제		3조2교대제		3조3교대제		4조3교대제		격일제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056	325	30.8	4	0.4	83	7.9	1	0.1	30	2.8	613	58.0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50	17	34.0	·	·	3	6.0	·	·	2	4.0	28	56.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	·	·	·	·	·	·	·	·	·	1	100.0
	계	51	17	33.3	·	·	3	5.9	·	·	2	3.9	29	56.9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32	61	46.2	1	0.8	14	10.6	·	·	5	3.8	51	38.6
	아동일시보호시설	5	·	·	·	·	·	·	·	·	·	·	5	100.0
	아동보호치료시설	6	1	16.7	·	·	1	16.7	·	·	·	·	4	66.7
	자립지원시설	2	1	50.0	·	·	·	·	·	·	·	·	1	50.0
	공동생활가정	84	·	·	·	·	·	·	·	·	·	·	84	100.0
	계	229	63	27.5	1	0.4	15	6.6	·	·	5	2.2	145	63.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03	101	49.8	·	·	23	11.3	·	·	5	2.5	74	36.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73	72	41.6	1	0.6	34	19.7	1	0.6	10	5.8	55	31.8
	장애영유아거주시설	8	3	37.5	·	·	3	37.5	·	·	·	·	2	25.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73	29	39.7	·	·	2	2.7	·	·	4	5.5	38	52.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33	4	3.0	·	·	·	·	·	·	4	3.0	125	94.0
	계	590	209	35.4	1	0.2	62	10.5	1	0.2	23	3.9	294	49.8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37	16	43.2	·	·	3	8.1	·	·	·	·	18	48.6
	정신재활생활시설	28	1	3.6	·	·	·	·	·	·	·	·	27	96.4
	계	65	17	26.2	·	·	3	4.6	·	·	·	·	45	69.2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6	4	25.0	·	·	·	·	·	·	·	·	12	75.0
	노숙인재활시설	19	·	·	·	·	·	·	·	·	·	·	19	100.0
	노숙인요양시설	10	3	30.0	2	20.0	·	·	·	·	·	·	5	50.0

구분		사례수	2조2교대제		3조2교대제		3조3교대제		4조3교대제		격일제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45	7	15.6	2	4.4	.	.	.	.	.	.	36	80.0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4	.	.	.	.	.	.	.	.	.	.	4	100.0
	계	4	.	.	.	.	.	.	.	.	.	.	4	100.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	.	.	.	.	.	.	.	.	.	.	1	100.0
	청소년지원시설	4	.	.	.	.	.	.	.	.	.	.	4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	.	.	.	.	.	.	.	1	100.0
	계	6	.	.	.	.	.	.	.	.	.	.	6	10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1	25.0	.	.	.	.	.	.	.	.	3	75.0
	계	4	1	25.0	.	.	.	.	.	.	.	.	3	75.0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3	30.0	.	.	.	.	.	.	.	.	7	70.0
	계	10	3	30.0	.	.	.	.	.	.	.	.	7	7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3	.	.	.	.	.	.	.	.	.	.	13	100.0
	부자가족복지시설	2	.	.	.	.	.	.	.	.	.	.	2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24	4	16.7	.	.	.	.	.	.	.	.	20	83.3
	일시지원복지시설	2	1	50.0	.	.	.	.	.	.	.	.	1	50.0
	계	41	5	12.2	.	.	.	.	.	.	.	.	36	87.8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9	3	33.3	.	.	.	.	.	.	.	.	6	66.7
	청소년자립지원관	1	.	.	.	.	.	.	.	.	.	.	1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	.	.	.	.	.	.	.	.	.	.	1	100.0
	계	11	3	27.3	.	.	.	.	.	.	.	.	8	72.7

〈표 5-34〉 교대제 근무형태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2조2교대제		3조2교대제		3조3교대제		4조3교대제		격일제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056	325	30.8	4	0.4	83	7.9	1	0.1	30	2.8	613	58.0
국고지원		582	204	35.1	1	0.2	63	10.8	1	0.2	15	2.6	298	51.2
지방이양		474	121	25.5	3	0.6	20	4.2	·	·	15	3.2	315	66.5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1	·	·	·	·	·	·	·	·	·	·	1	100.0
	지방이양	50	17	34.0	·	·	3	6.0	·	·	2	4.0	28	56.0
	계	51	17	33.3	·	·	3	5.9	·	·	2	3.9	29	56.9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84	·	·	·	·	·	·	·	·	·	·	84	100.0
	지방이양	145	63	43.4	1	0.7	15	10.3	·	·	5	3.4	61	42.1
	계	229	63	27.5	1	0.4	15	6.6	·	·	5	2.2	145	63.3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84	176	45.8	1	0.3	60	15.6	1	0.3	15	3.9	131	34.1
	지방이양	206	33	16.0	·	·	2	1.0	·	·	8	3.9	163	79.1
	계	590	209	35.4	1	0.2	62	10.5	1	0.2	23	3.9	294	49.8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37	16	43.2	·	·	3	8.1	·	·	·	·	18	48.6
	지방이양	28	1	3.6	·	·	·	·	·	·	·	·	27	96.4
	계	65	17	26.2	·	·	3	4.6	·	·	·	·	45	69.2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45	7	15.6	2	4.4	·	·	·	·	·	·	36	80.0
	계	45	7	15.6	2	4.4	·	·	·	·	·	·	36	80.0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4	·	·	·	·	·	·	·	·	·	·	4	100.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6	·	·	·	·	·	·	·	·	·	·	6	10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4	1	25.0	·	·	·	·	·	·	·	·	3	75.0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10	3	30.0	·	·	·	·	·	·	·	·	7	7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41	5	12.2	·	·	·	·	·	·	·	·	36	87.8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1	3	27.3	·	·	·	·	·	·	·	·	8	72.7

바. 시설 종사자 수

□ (전체 현황) 총 4,739개 사회복지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17.1명이었고, 그중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은 평균 17.3명,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평균 12.9명이었음

○ (총 종사자 규모) 총 4,739개 시설의 전체 종사자 수는 80,932명이었고, 그중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4,514개, 종사자는 78,032명이며,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225개소의 종사자 수는 총 2,900명이었음

□ (지역분포) 경기가 18,0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14,197명), 부산(5,812명), 경북(4,577명), 충북(4,481명)의 순이었으며, 종사자 수가 적은 지역은 세종(418명), 제주(1,408명), 울산(1,554명) 순이었음

○ (평균 종사자 수)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북이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19.5명), 부산(19.2명), 경기(18.8명), 충북(18.3명) 순임

-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가 적은 지역은 경남(13.0명), 광주(13.2명), 대전(14.4명), 세종·경북(14.9명) 순으로 나타남

〈표 5-35〉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종사자 현원 평균	종사자 현원 합계
전체	4,739	17.1	80,932
서울특별시	821	17.3	14,197
부산광역시	303	19.2	5,812
대구광역시	164	17.7	2,908
인천광역시	218	16.1	3,508
광주광역시	151	13.2	1,991
대전광역시	138	14.4	1,986
울산광역시	103	15.1	1,554
세종특별자치시	28	14.9	418
경기도	958	18.8	18,048
강원도	202	16.0	3,237
충청북도	245	18.3	4,481
충청남도	221	19.5	4,319
전라북도	223	19.9	4,430
전라남도	304	15.1	4,577
경상북도	289	14.9	4,306
경상남도	288	13.0	3,752
제주특별자치도	83	17.0	1,408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종사자는 총 78,032명,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17.3명이고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종사자는 총 2,900명, 시설당 평군 종사자 수는 12.9명으로 나타남(〈표 5-37〉)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종사자 수가 많은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35,136명), 노인복지시설(15,638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11,492명), 아동복지시설(9,066명)이고, 종사자 수가 적은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812명), 노숙인시설(1,665명), 지역자활센터(2,019명)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당 평균 종사자가 많은 시설은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34.2명), 노인복지시설(32.5명), 노숙인시설(21.6명) 순이고 평균 종사자가 적은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3.5명), 아동복지시설(9.1명), 정신건강증진시설(15명)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종사자 수가 많은 시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892명), 가정폭력보호시설(333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327명)이고, 적은 시설은 성매매피해지원시설(109명), 청소년복지시설(117명), 성폭력피해보호시설(122명)의 순이었음

- 시설당 평균 종사자가 많은 시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1.0명)이고 나머지 시설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5-36〉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

(단위: 개소, 명)

		사례수	평균	합계
전체		4,739	17.1	80,93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81	32.5	15,638
	아동복지시설	995	9.1	9,066
	장애인복지시설	2,139	16.4	35,136
	정신건강증진시설	147	15.0	2,204
	노숙인시설	77	21.6	1,665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36	34.2	11,492
	지역자활센터	110	18.4	2,019
	다함께돌봄센터	229	3.5	812
	계	4,514	17.3	78,032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5	7.3	109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	5.8	122
	가정폭력보호시설	52	6.4	33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0	5.5	32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31.0	1,892
	청소년복지시설	16	7.3	117
	계	225	12.9	2,900

□ (세부 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의 평균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34.2명), 노인복지시설(32.5명), 노숙인시설(21.6명) 순으로 높았고,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평균 종사자 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1.0명), 청소년복지지설(7.3명), 가정폭력보호시설(20명) 순이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 시설)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여가복지시설(46.7명), 노숙인시설 내 노숙인요양시설(39.1명),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정신요양시설(38.6명) 등에서 평균 종사자 수가 높았음

- (종사자 수가 낮은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2.8명), 아동복지시설 내 지역아동센터(3.4명), 공동생활가정(4.1명), 아동전용시설(4.5명), 다함께 돌봄센터(3.5명) 등에서 낮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여가복지시설(12,515명),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11,535명)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8,332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내 사회복지관(11,414명) 등에서 높고 아동복지시설 내 가정위탁지원센터(21.0명), 자립지원시설(24.0명), 아동전용시설(27.0명), 노숙인시설 내 쪽방상담소(26.0명), 노숙인일시보호시설(27.0명) 등에서 낮게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1.0명), 가정폭력보호시설 내 긴급전화센터(20.0명)에서 높았고, 나머지 시설은 평균 종사자 수보다 낮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892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189명), 가정폭력보호시설 내 가정폭력상담소(166명) 등에서 높았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지립지원공동생활시설(2명), 자활지원센터(7명), 청소년복지시설 내 청소년자립지원관(6명)에서 낮게 나타남

〈표 5-37〉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사례수	평균	합계
전체		4,739	17.1	80,932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13.0	1,02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7.0	63
	노인여가복지시설	268	46.7	12,515
	노인보호전문기관	27	9.6	259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8	18.1	1,774
	계	481	32.5	15,63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31.2	5,335
	아동일시보호시설	8	19.8	158
	아동보호치료시설	11	26.6	293
	자립지원시설	5	4.8	24
	공동생활가정	142	4.1	585
	아동상담소	5	11.0	55

구 분		사례수	평균	합계
	아동전용시설	6	4.5	27
	지역아동센터	621	3.4	2,133
	아동보호전문기관	24	18.1	435
	가정위탁지원센터	2	10.5	21
	계	995	9.1	9,066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28.6	8,332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35.3	7,981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36.4	32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8.9	98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2.8	86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71	15.0	11,5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1	11.8	4,86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	38.0	19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7.6	53
	계	2,139	16.4	35,136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4	38.6	1698
	정신재활생활시설	61	3.6	222
	정신재활이용시설	42	6.8	284
	계	147	15.0	2,204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4	6.9	166
	노숙인재활시설	21	28.6	601
	노숙인요양시설	15	39.1	586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	28.8	259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6.8	27
	쪽방상담소	4	6.5	26
	계	77	21.6	1,665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15.6	78
	사회복지관	331	34.5	11,414
	계	336	34.2	11,492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10	18.4	2,019
	계	110	18.4	2,019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9	3.5	812
	계	229	3.5	81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	6.0	18
	청소년지원시설	5	7.4	37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2.0	2
	자활지원센터	1	7.0	7
	성매매피해상담소	5	9.0	45
	계	15	7.3	109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7.7	46
	성폭력피해상담소	15	5.1	76
	계	21	5.8	122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7.5	127
	가정폭력상담소	33	5.0	166
	긴급전화센터	2	20.0	40
	계	52	6.4	33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4.6	87
	부자가족복지시설	2	8.0	16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5.7	189
	일시지원복지시설	4	6.8	2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4.0	8
	계	60	5.5	32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31.0	1,892
	계	61	31.0	1,892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3	7.8	102
	청소년자립지원관	1	6.0	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4.5	9
	계	16	7.3	117

□ (시설유형) 생활시설의 총 종사자 수는 29,911명, 시설당 평균 종사자는 18.3명이고 이용시설의 총 종사자 수는 51,021명, 시설당 평균 종사자는 16.4명으로 이용시설 종사자 수가 생활시설보다 1.7배 정도 더 많지만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1.9명 이상 더 많았음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생활시설의 경우 전체 종사자 수는 29,245명, 평균 종사자는 19.2명이고 이용시설의 총 종사자 수는 48,787명, 평균 종사자 수는 16.3명으로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 종사자 수는 1.7배 많고,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가 2.8명 더 많음

- (세부 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18,493명), 아동복지시설(6,395명), 정신건강증진시설(1,836명) 순으로 많고, 평균 종사자 수는 노숙인시설(22.6명), 정신건강증진시설(20.0명), 장애인복지시설(19.6명) 순이었음
- (세부 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16,643명), 노인복지시설(14,548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11,414명) 순으로 많고,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노인복지시설(37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34.5명), 노숙인시설(18.4명)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생활시설의 경우 전체 종사자 수는 666명, 평균 종사자는 6.3명이고 이용시설의 총 종사자 수는 2,234명, 평균 종사자 수는 18.8명으로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 종사자 수는 3.4배 많고,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가 12.5명 더 많음

- (세부 생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319명), 가정폭력보호시설(127명), 청소년복지시설(117명)의 순으로 많고,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1명) 외 시설에서는 전체 평균 종사자 수 12.9명보다 낮음

〈표 5-38〉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

(단위: 개소, 명)

		사례수	평균	합계
전체		4,739	17.1	80,932
생활		1,633	18.3	29,911
이용		3,106	16.4	51,021
노인복지시설	생활	88	12.4	1,090
	이용	393	37.0	14,548
	계	481	32.5	15,638
아동복지시설	생활	337	19.0	6,395
	이용	658	4.1	2,671

		사례수	평균	합계
	계	995	9.1	9,066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945	19.6	18,493
	이용	1,194	13.9	16,643
	계	2,139	16.4	35,136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92	20.0	1,836
	이용	55	6.7	368
	계	147	15.0	2,204
노숙인시설	생활	60	22.6	1,353
	이용	17	18.4	312
	계	77	21.6	1,665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5	15.6	78
	이용	331	34.5	11,414
	계	336	34.2	11,492
지역자활센터	이용	110	18.4	2,019
	계	110	18.4	2,019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229	3.5	812
	계	229	3.5	81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	9	6.3	57
	이용	6	8.7	52
	계	15	7.3	109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6	7.7	46
	이용	15	5.1	76
	계	21	5.8	122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	17	7.5	127
	이용	35	5.9	206
	계	52	6.4	33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58	5.5	319
	이용	2	4.0	8
	계	60	5.5	32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61	31.0	1,892
	계	61	31.0	1,892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16	7.3	117
	계	16	7.3	117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총 종사자 수는 27,676명, 시설당 평균 종사자는 14.1명이었고 지방이양시설의 총 종사자 수는 53,256명, 시설당 평균 종사자는 19.2명으로 지방이양시설 종사자가 국고지원시설 보다 1.9배 정도 더 많고 평균 종사자 수는 지방이양시설이 국고지원시설보다 시설당 5.1명 더 많았음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1,744개 국고지원시설 총 종사자 수는 24,776명이고 시설당 평균 종사자는 14.2명, 2,770개 지방이양시설의 총 종사자 수는 53,256명이었고, 시설당 평균 종사자는 19.2명으로 지방이양시설이 국고지원시설 보다 종사자 수가 2.1배 더 많고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지방이양시설이 평균 5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고지원 세부 시설) 종사자 수는 장애인복지시설(16,694명), 아동복지시설(3,153명), 지역자활센터(2,019명) 순으로 많았고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78명), 노인복지시설(322명)에서 적었으며,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정신건강증진시설(38.6명), 장애인복지시설(31.3명), 지역자활센터(18.4명) 순이었음
- (지방이양 세부 시설) 종사자 수는 장애인복지시설(18,442명), 노인복지시설(15,316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11,414명) 순으로 많았고,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34.5명), 노인복지시설(34.4명)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225개 국고지원시설에 총 종사자 수는 2,900명이고 시설당 평균 종사자는 12.9명이며 지방이양시설은 없음

- (국고지원 세부시설) 총 종사자 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892명), 가정폭력보호시설(333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327명), 성폭력피해보호시설(122명)의 순이었으며,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1명) 외 시설에서는 전체 평균 종사자 수 12.9명 보다 낮았음

〈표 5-39〉 종사자 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단위: 개소, 명)

		사례수	평균	합계
전체		4,739	17.1	80,932
국고지원		1,969	14.1	27,676
지방이양		2,770	19.2	53,256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6	8.9	322
	지방이양	445	34.4	15,316
	계	481	32.5	15,638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787	4.0	3,153
	지방이양	208	28.4	5,913
	계	995	9.1	9,066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533	31.3	16,694
	지방이양	1,606	11.5	18,442
	계	2,139	16.4	35,136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4	38.6	1,698
	지방이양	103	4.9	506
	계	147	15.0	2,204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77	21.6	1,665
	계	77	21.6	1,665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15.6	78
	지방이양	331	34.5	11,414
	계	336	34.2	11,492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10	18.4	2,019
	계	110	18.4	2,019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229	3.5	812
	계	229	3.5	81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15	7.3	109
	계	15	7.3	109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21	5.8	122
	계	21	5.8	122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52	6.4	333
	계	52	6.4	33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60	5.5	327
	계	60	5.5	32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61	31.0	1,892
	계	61	31.0	1,892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6	7.3	117
	계	16	7.3	117

사. 시설 종사자 규모

□ (전체 현황) 총 4,739개 시설 중 10인 이하 시설이 전체 시설의 57.1%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5인 이하 시설은 38.4%에 달했음

□ (지역분포)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시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47.7%), 울산(46.6%), 경남(46.5%), 전남(44.4%), 서울(44.1%)의 순이었음

○ (종사자 규모 51인 이상 시설) 경기(7.9%), 전북(7.2%), 충북(6.9%), 서울·대구(6.7%)의 순이었음

〈표 5-40〉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평균
전체	4,739	38.4	18.7	14.4	12.5	6.8	3.4	5.7	17.1
서울특별시	821	44.1	17.9	8.6	10.4	7.7	4.6	6.7	17.3
부산광역시	303	37.0	14.5	14.2	17.5	6.9	3.3	6.6	19.2
대구광역시	164	35.4	8.5	26.2	13.4	6.1	3.7	6.7	17.7
인천광역시	218	36.7	18.8	13.3	12.4	11.5	4.1	3.2	16.1
광주광역시	151	47.7	14.6	14.6	11.9	6.6	1.3	3.3	13.2
대전광역시	138	40.6	18.1	15.9	12.3	6.5	3.6	2.9	14.4
울산광역시	103	46.6	19.4	11.7	9.7	5.8	3.9	2.9	15.1
세종특별자치시	28	21.4	35.7	7.1	21.4	10.7	3.6	.	14.9
경기도	958	33.9	22.1	16.4	10.0	5.8	3.8	7.9	18.8
강원도	202	31.7	23.3	16.3	14.9	5.0	5.0	4.0	16.0
충청북도	245	34.7	21.6	14.7	12.7	6.9	2.4	6.9	18.3
충청남도	221	34.4	22.2	12.2	12.2	10.0	2.7	6.3	19.5
전라북도	223	39.0	14.3	14.3	15.7	6.7	2.7	7.2	19.9
전라남도	304	44.4	15.8	16.4	13.2	3.6	1.6	4.9	15.1
경상북도	289	37.7	17.6	16.3	17.3	6.2	1.4	3.5	14.9
경상남도	288	46.5	16.0	13.5	12.2	6.3	2.4	3.1	13.0
제주특별자치도	83	13.3	32.5	21.7	13.3	12.0	4.8	2.4	17.0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10인 이하 시설은 56.6%(5인 이하 시설 38.5%)였고,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중 10인 이하 시설은 68.4%(5인 이하 시설 36.4%)로 나타남(〈표 5-41〉)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평균 5인 미만 종사자 규모 38.5% 보다 많은 시설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68.2%)과 다함께돌봄센터(93.9%), 정신건강증진시설(43.5%) 등이 존재했음

- (종사자 규모가 10인 이하) 평균 56.6%보다 높은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98.3%), 아동복지시설(78.8%), 정신건강증진시설(65.3%), 장애인복지시설(59.0%) 등이었음
- (종사자 규모가 51명 이상) 평균 6.0%보다 높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17.9%),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15.5%), 노숙인시설(10.4%) 등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평균 5인 미만 종사자 규모 36.4%보다 많은 시설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66.7%), 성폭력피해보호시설(52.4%), 가정폭력보호시설(51.9%) 등이 존재했음

- 종사자 규모 10인 이하인 시설이 68.4%로 대부분 시설이 해당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1~40인 이하 시설이 86.9%를 차지

〈표 5-41〉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평균
전체		4739	38.4	18.7	14.4	12.5	6.8	3.4	5.7	17.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81	4.0	20.0	34.9	15.8	4.0	3.5	17.9	32.5
	아동복지시설	995	68.2	10.6	4.8	7.8	5.3	2.1	1.1	9.1
	장애인복지시설	2139	34.8	24.2	11.0	12.2	8.7	4.3	4.8	16.4
	정신건강증진시설	147	43.5	21.8	4.8	6.1	13.6	7.5	2.7	15.0
	노숙인시설	77	16.9	24.7	23.4	14.3	7.8	2.6	10.4	21.6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36	·	3.0	36.3	35.1	7.4	2.7	15.5	34.2
	자활센터	110	3.6	23.6	56.4	7.3	2.7	1.8	4.5	18.4
	다함께돌봄센터	229	93.9	4.4	1.7	·	·	·	·	3.6
	계	4514	38.5	18.1	14.7	12.4	6.9	3.4	6.0	17.3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5	20.0	73.3	·	6.7	·	·	·	7.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	52.4	42.9	4.8	·	·	·	·	5.8
	가정폭력보호시설	52	51.9	42.3	3.8	1.9	·	·	·	6.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0	66.7	26.7	5.0	1.7	·	·	·	5.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	·	19.7	47.5	19.7	8.2	4.9	31.0
	청소년복지시설	16	6.3	87.5	6.3	·	·	·	·	7.3
	계	225	36.4	32.0	8.4	14.2	5.3	2.2	1.3	12.9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10인 이하 시설 중 평균 대비 높은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98.3%), 아동복지시설(78.8%), 정신건강증진시설(65.3%), 장애인복지시설(59.0%)이었고, 여성가족부 소관 10인 이하 시설 중 평균 대비 높은 시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 대부분 시설이 해당됨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5인 이하 시설이 38.5%로 가장 많고 이어서 6~10인 이하 시설(18.1%), 11~20인 이하 시설(14.7%), 21~30인 이하 시설(12.4%), 31~40인 이하 시설(6.9%), 51인 이상 시설(6.0%), 41~50인 이하 시설(3.4%) 순이었음

- (종사자 10인 이하 시설)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00%), 아동복지시설 내 자립지원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전용시설(100%), 지역아동센터(99.5%),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99.4%), 노숙인시설 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쪽방상담소(100%), 다함께돌봄센터(98.3%)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종사자가 51인 이상 시설)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여가복지시설(32.1%),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의료재활시설(20.0%), 노숙인시설 내 노숙인요양시설(26.7%),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내 사회복지관(15.5%) 등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5인 이하 시설(36.4%)과 6~10인 이하 시설(32.0%)이 대부분이고 이어서 21~30인 이하 시설(14.2%), 11~20인 이하 시설(8.4%), 31~40인 이하 시설(5.3%), 41~50인 이하 시설(2.2%), 51인 이상 시설(1.3%) 순이었음

- (종사자 10인 이하 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자활지원센터(1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100%), 성폭력피해상담소(93.3%), 가정폭력보호시설 내 가정폭력상담소(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100%), 청소년복지시설 내 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100%) 등에서 높음
- (종사자가 51인 이상 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9%)만이 존재

〈표 5-42〉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전체		4739	38.4	18.7	14.4	12.5	6.8	3.4	5.7
노인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12.7	19.0	59.5	7.6	1.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11.1	88.9					
	노인여가복지시설	268	3.0	17.2	19.8	16.0	6.3	5.6	32.1
	노인보호전문기관	27		70.4	29.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8		8.2	61.2	27.6	1.0	2.0	
	계	481	4.0	20.0	34.9	15.8	4.0	3.5	17.9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2.3	14.0	37.4	28.1	11.7	6.4
	아동일시보호시설	8		37.5	25.0	12.5	25.0		

구 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아동보호치료시설	11	.	9.1	9.1	63.6	9.1	9.1	.
	자립지원시설	5	60.0	40.0	.	.	.	.	.
	공동생활가정	142	76.1	23.9	.	.	.	.	.
	아동상담소	5	.	60.0	20.0	20.0	.	.	.
	아동전용시설	6	66.7	33.3	.	.	.	.	.
	지역아동센터	621	90.8	8.7	0.5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24	.	4.2	66.7	20.8	8.3	.	.
	가정위탁지원센터	2	.	50.0	50.0	.	.	.	.
	계	995	68.2	10.6	4.8	7.8	5.3	2.1	1.1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0.3	10.3	22.7	32.3	17.5	9.6	7.2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0.9	1.3	6.6	37.2	30.1	11.5	12.4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	.	.	22.2	44.4	22.2	11.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13.6	59.1	26.4	0.9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91.9	7.4	0.6	.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71	40.9	30.0	7.3	7.5	5.2	3.4	5.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1	30.7	38.9	15.8	5.4	5.1	2.4	1.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	.	.	40.0	.	40.0	.	20.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14.3	85.7	.	.	.	.	.
	계	2139	34.8	24.2	11.0	12.2	8.7	4.3	4.8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4	.	.	4.5	15.9	45.5	25.0	9.1
	정신재활생활시설	61	75.4	19.7	4.9	.	.	.	.
	정신재활이용시설	42	42.9	47.6	4.8	4.8	.	.	.
	계	147	43.5	21.8	4.8	6.1	13.6	7.5	2.7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4	41.7	37.5	20.8	.	.	.	.
	노숙인재활시설	21	.	.	38.1	28.6	19.0	4.8	9.5
	노숙인요양시설	15	6.7	6.7	26.7	13.3	13.3	6.7	26.7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	11.1	22.2	11.1	33.3	.	.	22.2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25.0	75.0	.	.	.	.	.
	쪽방상담소	4	.	100.0	.	.	.	.	.
	계	77	16.9	24.7	23.4	14.3	7.8	2.6	10.4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	20.0	60.0	20.0	.	.	.
	사회복지관	331	.	2.7	36.0	35.3	7.6	2.7	15.7
	계	336	.	3.0	36.3	35.1	7.4	2.7	15.5
지역자활 센터	지역자활센터	110	3.6	23.6	56.4	7.3	2.7	1.8	4.5
	계	110	3.6	23.6	56.4	7.3	2.7	1.8	4.5
다함께돌봄 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9	93.9	4.4	1.7	.	.	.	.
	계	229	93.9	4.4	1.7	.	.	.	.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	.	100.0	.	.	.	.	.
	청소년지원시설	5	.	100.0	.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00.0	.	.	.	.	.	.
	자활지원센터	1	.	100.0	.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5	40.0	40.0	.	20.0	.	.	.
	계	15	20.0	73.3	.	6.7	.	.	.
성폭력피해보호 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	100.0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15	73.3	20.0	6.7	.	.	.	.
	계	21	52.4	42.9	4.8	.	.	.	.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5.9	88.2	5.9	.	.	.	.
	가정폭력상담소	33	78.8	21.2	.	.	.	.	.
	긴급전화센터	2	.	.	50.0	50.0	.	.	.
	계	52	51.9	42.3	3.8	1.9	.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89.5	10.5	.	.	.	.	.
	부자가족복지시설	2	.	100.0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60.6	27.3	9.1	3.0	.	.	.
	일시지원복지시설	4	25.0	75.0	.	.	.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100.0	.	.	.	.	.	.
	계	60	66.7	26.7	5.0	1.7	.	.	.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	.	19.7	47.5	19.7	8.2	4.9
	계	61	.	.	19.7	47.5	19.7	8.2	4.9
청소년복지 시설	청소년쉼터	13	.	92.3	7.7	.	.	.	.
	청소년자립지원관	1	.	100.0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50.0	50.0	.	.	.	.	.
	계	16	6.3	87.5	6.3	.	.	.	.

□ (시설유형) 5인 이하 시설 중 생활시설은 31.8%이고, 이용시설은 41.9%로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 약 10.1%p 높게 나타났고, 종사자 51인 이상인 시설에서는 생활시설이 4.3%인데 반해 이용시설은 6.5%로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 2.1%p 많았음

○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시설) 5인 미만 생활시설 중 전체 평균 31.8%보다 높은 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46.7%)였으며 5인 미만 이용시설 중 전체 평균 41.9%보다 높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86.3%)과 다함께돌봄센터(93.9%)였음

- (종사자 규모 10인 이하) 생활시설에서는 정신건강증신시설(48.9%), 아동복지시설(46.0%), 장애인복지시설(44.8%)에서 많았고, 이용시설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98.3%), 아동복지시설(95.6%), 정신건강증진시설(92.7%)에서 많았음
- (종사자 규모 51인 이상) 생활시설에서는 노인복지시설(21.9%),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15.7%), 노숙인시설(11.8%) 등에서, 이용시설에서는 노숙인복지시설(10.0%)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5인 미만 생활시설 중 전체 평균보다 높은 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65.5%)였고, 5인 미만 이용시설 중 전체 평균보다 높은 시설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0%)이였음

- (종사자 규모 10인 이하) 생활시설에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88.3%), 가정폭력보호시설(94.1%), 청소년복지시설(93.8%), 한부모가족복지시설(93.1%) 등 다수 시설에서 나타났음
- (종사자 규모 51인 이상) 이용시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9%)만이 존재했음

〈표 5-43〉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전체		4,739	38.4	18.7	14.4	12.5	6.8	3.4	5.7
생활		1,633	31.8	15.9	13.2	16.9	12.3	5.5	4.3
이용		3,106	41.9	20.2	15.0	10.2	4.0	2.2	6.5
노인복지시설	생활	88	12.5	26.1	53.4	6.8	1.1	·	·
	이용	393	2.0	18.6	30.8	17.8	4.6	4.3	21.9
	계	481	4.0	20.0	34.9	15.8	4.0	3.5	17.9
아동복지시설	생활	337	32.9	13.1	8.0	21.4	15.1	6.2	3.3
	이용	658	86.3	9.3	3.2	0.9	0.3	·	·
	계	995	68.2	10.6	4.8	7.8	5.3	2.1	1.1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945	32.0	12.8	11.9	19.2	13.0	5.9	5.3
	이용	1,194	37.0	33.2	10.3	6.7	5.3	3.0	4.4

구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계	2,139	34.8	24.2	11.0	12.2	8.7	4.3	4.8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92	46.7	2.2	5.4	7.6	21.7	12.0	4.3
	이용	55	38.2	54.5	3.6	3.6	·	·	·
	계	147	43.5	21.8	4.8	6.1	13.6	7.5	2.7
노숙인시설	생활	60	18.3	16.7	28.3	13.3	10.0	3.3	10.0
	이용	17	11.8	52.9	5.9	17.6	·	·	11.8
	계	77	16.9	24.7	23.4	14.3	7.8	2.6	10.4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5	·	20.0	60.0	20.0	·	·	·
	이용	331	·	2.7	36.0	35.3	7.6	2.7	15.7
	계	336	·	3.0	36.3	35.1	7.4	2.7	15.5
지역자활센터	이용	110	3.6	23.6	56.4	7.3	2.7	1.8	4.5
	계	110	3.6	23.6	56.4	7.3	2.7	1.8	4.5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229	93.9	4.4	1.7	·	·	·	·
	계	229	93.9	4.4	1.7	·	·	·	·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생활	9	11.1	88.9	·	·	·	·	·
	이용	6	33.3	50.0	·	16.7	·	·	·
	계	15	20.0	73.3	·	6.7	·	·	·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생활	6	·	100.0	·	·	·	·	·
	이용	15	73.3	20.0	6.7	·	·	·	·
	계	21	52.4	42.9	4.8	·	·	·	·
가정폭력 보호시설	생활	17	5.9	88.2	5.9	·	·	·	·
	이용	35	74.3	20.0	2.9	2.9	·	·	·
	계	52	51.9	42.3	3.8	1.9	·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	58	65.5	27.6	5.2	1.7	·	·	·
	이용	2	100.0	·	·	·	·	·	·
	계	60	66.7	26.7	5.0	1.7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61	·	·	19.7	47.5	19.7	8.2	4.9
	계	61	·	·	19.7	47.5	19.7	8.2	4.9
청소년복지 시설	생활	16	6.3	87.5	6.3	·	·	·	·
	계	16	6.3	87.5	6.3	·	·	·	·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은 49.7%를, 지방이양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은 30.4%로 국고지원시설이 지방이양시설보다 19.3%p 높았으며, 국고지원시설 중 51인 이상인 시설은 3.1%이고 지방이양시설 중 51인 이상 시설은 3.1%였음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국고지원시설 중 5인 미만 평균 비중인 49.7%보다 높은 시설로는 아동복지시설(85.4%)과 다함께돌봄센터(93.9%)가 있었음

- (종사자 규모 10인 이하) 국고지원시설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98.3%), 아동복지시설(96.7%), 노인복지시설(77.8%) 등이 평균보다 높았고, 지방이양시설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93.2%), 장애인복지시설(75.9%)이 높았음
- (종사자 규모 51인 이상) 국고지원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9.4%), 정신건강증신시설(9.1%), 장애인복지시설(44.8%)에서 많았고, 종사자 수가 51인 이상인 지방이양시설에서는 노인복지시설(19.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15.7%), 노숙인시설(10.4%)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국고지원시설 중 5인 미만 평균 비중보다 높은 시설로는 성폭력피해보호시설(52.4%), 가정폭력보호시설(51.9%), 한부모가족지원시설(66.7%) 등이 있었음

- (종사자 규모 10인 이하) 국고지원시설은 성폭력피해보호시설(95.3%), 가정폭력보호시설(94.2%), 청소년복지시설(93.8%), 성매매피해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93.4%) 등 다수 시설에서 나타났음
- (종사자 수가 51인 이상) 국고지원시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9%)만이 존재하였음

〈표 5-44〉 종사자 규모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전체		4,739	38.4	18.7	14.4	12.5	6.8	3.4	5.7
국고지원		1,969	49.7	13.4	10.1	11.8	8.1	3.8	3.1
지방이양		2,770	30.4	22.5	17.5	13.0	5.9	3.1	7.6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6	2.8	75.0	22.2	·	·	·	·
	지방이양	445	4.0	15.5	36.0	17.1	4.3	3.8	19.3
	계	481	4.0	20.0	34.9	15.8	4.0	3.5	17.9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787	85.4	11.3	2.4	0.6	0.3	·	·
	지방이양	208	3.4	7.7	13.9	35.1	24.5	10.1	5.3
	계	995	68.2	10.6	4.8	7.8	5.3	2.1	1.1
장애인	국고지원	533	0.8	7.3	15.2	33.8	23.1	10.5	9.4

구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복지시설	지방이양	1,606	46.1	29.8	9.6	5.0	3.9	2.2	3.3
	계	2,139	34.8	24.2	11.0	12.2	8.7	4.3	4.8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4	·	·	4.5	15.9	45.5	25.0	9.1
	지방이양	103	62.1	31.1	4.9	1.9	·	·	·
	계	147	43.5	21.8	4.8	6.1	13.6	7.5	2.7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77	16.9	24.7	23.4	14.3	7.8	2.6	10.4
	계	77	16.9	24.7	23.4	14.3	7.8	2.6	10.4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	20.0	60.0	20.0	·	·	·
	지방이양	331	·	2.7	36.0	35.3	7.6	2.7	15.7
	계	336	·	3.0	36.3	35.1	7.4	2.7	15.5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10	3.6	23.6	56.4	7.3	2.7	1.8	4.5
	계	110	3.6	23.6	56.4	7.3	2.7	1.8	4.5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229	93.9	4.4	1.7	·	·	·	·
	계	229	93.9	4.4	1.7	·	·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15	20.0	73.3	·	6.7	·	·	·
	계	15	20.0	73.3	·	6.7	·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21	52.4	42.9	4.8	·	·	·	·
	계	21	52.4	42.9	4.8	·	·	·	·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52	51.9	42.3	3.8	1.9	·	·	·
	계	52	51.9	42.3	3.8	1.9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60	66.7	26.7	5.0	1.7	·	·	·
	계	60	66.7	26.7	5.0	1.7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61	·	·	19.7	47.5	19.7	8.2	4.9
	계	61	·	·	19.7	47.5	19.7	8.2	4.9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6	6.3	87.5	6.3	·	·	·	·
	계	16	6.3	87.5	6.3	·	·	·	·

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성

□ (분석 기준)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분석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인사-급여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함

○ 분석에 사용된 시설과 종사자 수는 4,739개 시설, 총 종사자 80,932명 중 인사-급여정보에 자료가 없는 11.619명을 제외한 총 69,313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 (연령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령대는 50대(17.7%)와 40대(17.4%)가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30대(15.6%), 20대(7.8%) 순이었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다만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40대 종사자가 약 3.2%p 적은 14.3%였음

○ (시설유형) 50대와 40대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동일 연령대 이용시설보다 각각 6.0%p, 11.3%p 많은 반면에, 20대와 30대 연령대에서는 이용시설 종사자가 생활시설 종사자들보다 각각 1.6%p 많았음,

○ (재원 출처) 50대와 40대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들이 지방이양시설보다 각각 7.7%p, 5.4%p 많은 반면에 20대와 30대 연령대에서는 지방이양시설 종사자가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들보다 각각 1.7%p, 0.9% 많았음

○ (종사자 규모) 50대와 40대 종사자들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비율이 21.6%, 24.9%로 종사자 규모가 큰 타 시설보다 그 비중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지역) 17개 광역지자체 중 50대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21.6%), 충청북도 (21.7%), 경상북도(20.3%)인 반면에 20대 종사자가 많은 지역은 대전시(10.2%)와 서울시(11.5%)로 파악됨

○ (세부시설) 50대 종사자 비율이 40%대를 넘는 시설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6.7%)와 결핵한센시설(42.5%)이었으며, 20대 비율이 높은 시설로는 아동전용 시설(20.0%)과 아동보호전문기관(22.0%)이었음

○ (직위별) 50대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위로는 생활시설 기능직(43.9%)과 기타 계약직(45.5%) 이었으며, 20대 비율이 높은 직위는 이용-사회복지사(14.0%)와 이용-의료직 3급(14.2%)과 이용-일반직 4급(17.2%)이었음

〈표 5-4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 특성과 연령대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5,397	7.8	10,813	15.6	12,045	17.4	12,271	17.7	2,328	3.4	26,459	38.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66,875	5,218	7.8	10,482	15.7	11,696	17.5	11,872	17.8	2,256	3.4	25,351	37.9
	여성가족부	2,438	179	7.3	331	13.6	349	14.3	399	16.4	72	3.0	1,108	45.4
시설 유형	생활시설	29,403	2,020	6.9	4,358	14.8	6,128	20.8	7,118	24.2	1,173	4.0	8,606	29.3
	이용시설	39,910	3,377	8.5	6,455	16.2	5,917	14.8	5,153	12.9	1,155	2.9	17,853	44.7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1,733	6.7	3,872	15.0	5,356	20.8	5,804	22.5	994	3.9	7,999	31.1
	지방 이양	43,555	3,664	8.4	6,941	15.9	6,689	15.4	6,467	14.8	1,334	3.1	18,460	42.4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330	6.2	841	15.8	1,150	21.6	1,324	24.9	304	5.7	1,364	25.7
	6~10인	5,929	480	8.1	1,035	17.5	1,207	20.4	1,108	18.7	227	3.8	1,872	31.6
	11~20인 이하	9,441	934	9.9	1,663	17.6	1,672	17.7	1,659	17.6	311	3.3	3,202	33.9
	21~30인 이하	14,183	1,328	9.4	2,563	18.1	2,604	18.4	2,549	18.0	392	2.8	4,747	33.5
	31~40인 이하	10,729	858	8.0	1,683	15.7	1,966	18.3	2,016	18.8	303	2.8	3,903	36.4
	41~50인 이하	6,563	510	7.8	1,022	15.6	1,145	17.4	1,155	17.6	194	3.0	2,537	38.7
	51인 이상	17,155	957	5.6	2,006	11.7	2,301	13.4	2,460	14.3	597	3.5	8,834	51.5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1,213	10.2	2,239	18.8	2,036	17.1	2,099	17.6	402	3.4	3,920	32.9
	부산광역시	4,802	410	8.5	772	16.1	776	16.2	734	15.3	149	3.1	1,961	40.8
	대구광역시	2,711	189	7.0	406	15.0	450	16.6	410	15.1	62	2.3	1,194	44.0
	인천광역시	3,114	268	8.6	544	17.5	486	15.6	555	17.8	127	4.1	1,134	36.4
	광주광역시	1,820	132	7.3	286	15.7	367	20.2	347	19.1	46	2.5	642	35.3
	대전광역시	1,718	197	11.5	341	19.8	356	20.7	314	18.3	68	4.0	442	25.7
	울산광역시	1,321	103	7.8	221	16.7	237	17.9	211	16.0	50	3.8	499	37.8
	세종특별시	409	31	7.6	86	21.0	90	22.0	73	17.8	14	3.4	115	28.1
	경기도	15,203	1,226	8.1	2,386	15.7	2,300	15.1	2,372	15.6	480	3.2	6,439	42.4
	강원도	2,907	179	6.2	369	12.7	512	17.6	629	21.6	114	3.9	1,104	38.0
	충청북도	3,969	228	5.7	564	14.2	753	19.0	862	21.7	155	3.9	1,407	35.4
	충청남도	3,640	210	5.8	488	13.4	641	17.6	669	18.4	160	4.4	1,472	40.4
	전라북도	3,406	191	5.6	428	12.6	716	21.0	662	19.4	123	3.6	1,286	37.8
	전라남도	3,684	219	5.9	390	10.6	646	17.5	640	17.4	117	3.2	1,672	45.4
	경상북도	3,863	298	7.7	576	14.9	799	20.7	785	20.3	123	3.2	1,282	33.2
	경상남도	3,489	228	6.5	528	15.1	636	18.2	652	18.7	93	2.7	1,352	38.8
	제주자치도	1,348	75	5.6	189	14.0	244	18.1	257	19.1	45	3.3	538	39.9

〈표 5-46〉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연령대 분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5,397	7.8	10,813	15.6	12,045	17.4	12,271	17.7	2,328	3.4	26,459	38.2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11	1.1	41	4.0	149	14.7	369	36.3	66	6.5	381	37.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2	4.4	1	2.2	2	4.4	21	46.7	3	6.7	16	35.6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529	6.0	1,027	11.6	980	11.1	1,169	13.2	331	3.7	4,819	54.4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45	17.8	55	21.7	32	12.6	23	9.1	.	.	98	38.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143	8.3	185	10.8	230	13.4	192	11.2	31	1.8	936	54.5
	소계	11,887	730	6.1	1,309	11.0	1,393	11.7	1,774	14.9	431	3.6	6,250	52.6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484	9.2	795	15.1	1,000	19.0	1,211	23.0	144	2.7	1,632	31.0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17	10.6	33	20.5	38	23.6	35	21.7	6	3.7	32	19.9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13	4.4	46	15.5	66	22.3	58	19.6	12	4.1	101	34.1
	자립지원시설	22	.	.	3	13.6	6	27.3	3	13.6	2	9.1	8	36.4
	공동생활가정	558	33	5.9	39	7.0	81	14.5	172	30.8	35	6.3	198	35.5
	아동상담소	37	.	.	7	18.9	5	13.5	4	10.8	1	2.7	20	54.1
	아동전용시설	25	5	20.0	3	12.0	6	24.0	6	24.0	.	.	5	20.0
	지역아동센터	1,779	121	6.8	245	13.8	333	18.7	497	27.9	130	7.3	453	25.5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95	22.0	82	19.0	53	12.3	22	5.1	1	0.2	178	41.3
	가정위탁지원센터	22	2	9.1	6	27.3	3	13.6	.	.	1	4.5	10	45.5
	소계	8,597	770	9.0	1,259	14.6	1,591	18.5	2,008	23.4	332	3.9	2,637	30.7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507	6.2	1,276	15.5	1,786	21.7	1,835	22.3	307	3.7	2,502	30.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549	7.0	1,327	16.8	1,727	21.9	1,896	24.0	326	4.1	2,068	26.2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33	10.2	66	20.4	47	14.6	52	16.1	9	2.8	116	35.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96	10.8	140	15.7	139	15.6	199	22.3	34	3.8	284	31.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16	3.8	42	9.9	82	19.3	129	30.4	33	7.8	122	28.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989	10.0	1,958	19.8	1,641	16.6	1,206	12.2	286	2.9	3,820	38.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266	6.2	786	18.5	763	17.9	524	12.3	115	2.7	1,806	42.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18	10.0	30	16.7	31	17.2	15	8.3	2	1.1	84	46.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	.	9	16.7	8	14.8	9	16.7	2	3.7	26	48.1
	소계	32,139	2,474	7.7	5,634	17.5	6,224	19.4	5,865	18.2	1,114	3.5	10,828	33.7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56	3.3	166	9.8	451	26.7	447	26.5	68	4.0	501	29.7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9	4.3	37	17.5	64	30.3	37	17.5	10	4.7	54	25.6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23	9.2	70	28.1	61	24.5	27	10.8	5	2.0	63	25.3
	소계	2,149	88	4.1	273	12.7	576	26.8	511	23.8	83	3.9	618	28.8
노숙인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5	3.2	12	7.8	33	21.4	55	35.7	10	6.5	39	25.3
	노숙인재활시설	535	23	4.3	99	18.5	151	28.2	166	31.0	22	4.1	74	13.8
	노숙인요양시설	568	34	6.0	79	13.9	132	23.2	223	39.3	40	7.0	60	10.6

구 분		사례 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6	2.5	44	18.3	47	19.6	36	15.0	3	1.3	104	43.3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2	8.7	7	30.4	6	26.1	5	21.7	2	8.7	1	4.3
	쪽방상담소	26	2	7.7	4	15.4	2	7.7	5	19.2	.	.	13	50.0
	소계	1,546	72	4.7	245	15.8	371	24.0	490	31.7	77	5.0	291	18.8
사회 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2	2.7	6	8.2	10	13.7	31	42.5	5	6.8	19	26.0
	사회복지관	8,475	971	11.5	1,487	17.5	1,054	12.4	793	9.4	178	2.1	3,992	47.1
	소계	8,548	973	11.4	1,493	17.5	1,064	12.4	824	9.6	183	2.1	4,011	46.9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67	5.4	196	15.8	270	21.7	200	16.1	18	1.4	492	39.6
	소계	1,243	67	5.4	196	15.8	270	21.7	200	16.1	18	1.4	492	39.6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44	5.7	73	9.5	207	27.0	200	26.1	18	2.3	224	29.2
	소계	766	44	5.7	73	9.5	207	27.0	200	26.1	18	2.3	224	29.2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	.	.	.	2	15.4	8	61.5	2	15.4	1	7.7
	청소년지원시설	38	3	7.9	4	10.5	2	5.3	8	21.1	2	5.3	19	50.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	.	.	.	1	100.0	.	.	.	.
	자활지원센터	7	1	14.3	.	.	2	28.6	1	14.3	.	.	3	42.9
	성매매피해상담소	44	8	18.2	5	11.4	6	13.6	5	11.4	1	2.3	19	43.2
	소계	103	12	11.7	9	8.7	12	11.7	23	22.3	5	4.9	42	40.8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1	2.2	4	8.7	8	17.4	12	26.1	4	8.7	17	37.0
	성폭력피해상담소	60	.	.	5	8.3	11	18.3	22	36.7	3	5.0	19	31.7
	소계	106	1	0.9	9	8.5	19	17.9	34	32.1	7	6.6	36	34.0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5	4.0	7	5.6	17	13.6	34	27.2	6	4.8	56	44.8
	가정폭력상담소	161	5	3.1	24	14.9	29	18.0	39	24.2	13	8.1	51	31.7
	긴급전화센터	39	1	2.6	3	7.7	5	12.8	11	28.2	.	.	19	48.7
	소계	325	11	3.4	34	10.5	51	15.7	84	25.8	19	5.8	126	38.8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7	8.0	11	12.5	23	26.1	28	31.8	8	9.1	11	12.5
	부자가족복지시설	16	.	.	1	6.3	1	6.3	3	18.8	2	12.5	9	56.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7	4.3	14	8.7	35	21.7	34	21.1	8	5.0	63	39.1
	일시지원복지시설	29	1	3.4	3	10.3	11	37.9	9	31.0	3	10.3	2	6.9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1	14.3	1	14.3	4	57.1	1	14.3	.	.	.	.
	소계	301	16	5.3	30	10.0	74	24.6	75	24.9	21	7.0	85	28.2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128	8.6	225	15.1	181	12.2	163	11.0	15	1.0	776	52.2
	소계	1,488	128	8.6	225	15.1	181	12.2	163	11.0	15	1.0	776	52.2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10	10.0	22	22.0	8	8.0	17	17.0	5	5.0	38	38.0
	청소년자립지원관	6	.	.	1	16.7	.	.	.	.	.	.	5	83.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	11.1	1	11.1	4	44.4	3	33.3	.	.	.	.
	소계	115	11	9.6	24	20.9	12	10.4	20	17.4	5	4.3	43	37.4

〈표 5-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령대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5,397	7.8	10,813	15.6	12,045	17.4	12,271	17.7	2,328	3.4	26,459	38.2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718	7.0	1,905	18.5	2,587	25.1	2,127	20.7	194	1.9	2,759	26.8
생활-관리직	629	14	2.2	64	10.2	125	19.9	178	28.3	44	7.0	204	32.4
생활-기능직	2,901	24	0.8	63	2.2	248	8.5	1,273	43.9	321	11.1	972	33.5
생활-기타	173	8	4.6	20	11.6	24	13.9	28	16.2	12	6.9	81	46.8
생활-기타(계약직)	11	.	.	1	9.1	1	9.1	5	45.5	.	.	4	36.4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1	0.3	4	1.3	29	9.2	54	17.1	34	10.8	194	61.4
생활-사무국장	989	3	0.3	55	5.6	379	38.3	309	31.2	35	3.5	208	21.0
생활-생활지도원	11,989	1,241	10.4	2,060	17.2	2,294	19.1	2,499	20.8	221	1.8	3,674	30.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10	1.3	154	20.6	218	29.2	179	24.0	29	3.9	156	20.9
생활-시설장	1,359	1	0.1	32	2.4	223	16.4	466	34.3	283	20.8	354	26.0
이용-과장	1,476	37	2.5	285	19.3	447	30.3	258	17.5	35	2.4	414	28.0
이용-관리직 기타	790	33	4.2	75	9.5	73	9.2	91	11.5	19	2.4	499	63.2
이용-관리직(계약직)	35	.	.	.	.	1	2.9	6	17.1	1	2.9	27	77.1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	7.7	8	61.5	1	7.7	.	.	.	.	3	23.1
이용-관리직1급	281	3	1.1	86	30.6	45	16.0	27	9.6	3	1.1	117	41.6
이용-관리직2급	26	.	.	5	19.2	8	30.8	7	26.9	1	3.8	5	19.2
이용-관리직3급	276	5	1.8	120	43.5	60	21.7	28	10.1	6	2.2	57	20.7
이용-관리직4급	2,473	47	1.9	209	8.5	340	13.7	731	29.6	167	6.8	979	39.6
이용-관장	2,616	9	0.3	95	3.6	537	20.5	989	37.8	398	15.2	588	22.5
이용-기타	5,008	260	5.2	273	5.5	352	7.0	339	6.8	94	1.9	3,690	73.7
이용-기타(계약직)	470	3	0.6	4	0.9	22	4.7	73	15.5	44	9.4	324	68.9
이용-기타(미기입)	886	63	7.1	140	15.8	90	10.2	119	13.4	21	2.4	453	51.1
이용-기타(보육교사)	44	.	.	.	.	.	.	.	.	.	.	44	100.0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208	21	10.1	17	8.2	24	11.5	29	13.9	1	0.5	116	55.8
이용-기타(촉탁의사)	9	.	.	.	.	2	22.2	1	11.1	2	22.2	4	44.4
이용-부장	782	2	0.3	58	7.4	384	49.1	155	19.8	8	1.0	175	22.4
이용-사무국장	375	1	0.3	18	4.8	147	39.2	119	31.7	8	2.1	82	21.9
이용-사무직1급	365	.	.	91	24.9	142	38.9	26	7.1	1	0.3	105	28.8
이용-사무직2급	37	1	2.7	6	16.2	13	35.1	3	8.1	1	2.7	13	35.1
이용-사무직3급	386	17	4.4	138	35.8	73	18.9	22	5.7	2	0.5	134	34.7
이용-사무직4급	1,491	164	11.0	402	27.0	255	17.1	118	7.9	7	0.5	545	36.6
이용-사회복지사	10,396	1,459	14.0	1,104	10.6	778	7.5	936	9.0	240	2.3	5,879	56.6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224	7.3	1,082	35.0	522	16.9	348	11.3	23	0.7	890	28.8
이용-의료직1급	26	2	7.7	5	19.2	2	7.7	4	15.4	.	.	13	50.0
이용-의료직2급	5	.	.	1	20.0	1	20.0	2	40.0	.	.	1	20.0
이용-의료직3급	860	122	14.2	219	25.5	139	16.2	45	5.2	.	.	335	39.0
이용-의료직4급	58	4	6.9	11	19.0	11	19.0	12	20.7	1	1.7	19	32.8
이용-일반직 기타	31	1	3.2	8	25.8	6	19.4	2	6.5	1	3.2	13	41.9
이용-일반직1급	94	1	1.1	10	10.6	28	29.8	33	35.1	2	2.1	20	21.3
이용-일반직2급	3,197	234	7.3	869	27.2	864	27.0	363	11.4	22	0.7	845	26.4
이용-일반직3급	250	6	2.4	82	32.8	63	25.2	23	9.2	1	0.4	75	30.0
이용-일반직4급	3,799	652	17.2	1,026	27.0	481	12.7	240	6.3	45	1.2	1,355	35.7
이용-일반직5급	58	5	8.6	8	13.8	6	10.3	4	6.9	1	1.7	34	58.6

□ (성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69,313명 중 남성은 32.6%, 여성은 67.4%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았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의 경우, 남성은 33.5%, 여성 종사자는 66.5%로 전체 평균과 비슷하였지만,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남성 종사자가 8.1%, 여성 종사자는 91.9%로 여성 종사자 비중이 보건복지부보다 25.4%p 높았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은 남성 종사자 비중이 35.6%, 여성 종사자는 64.5%였고,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생활시설보다 남성은 5.2%p 적은 대신, 여성 종사자는 5.2%p 많은 69.6%를 차지하고 있었음

○ (재원 출처)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남성 종사자는 31.6%, 여성 종사자는 63.4%로, 국고지원시설 대비 남성 종사자는 약 2.6%p 적은 반면, 여성 종사자는 약 2.6%p 많았음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남성 종사자 비중이 23.1%로 타 시설대비 가장 적은 반면에, 여성 종사자 비중은 76.9%로 그 비중이 가장 컸음

○ (지역) 남성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46.9%)와 대전광역시(41.6%)인 반면에 여성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광역시(72.7%)와 부산광역시(72.5%)였음

○ (시설 종류) 남성 종사자 비중이 여성 종사자 대비 높은 세부시설로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85.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7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9.7%) , 부자가족복지시설(56.3%) 등이었음

- 반면에 여성 종사자 비중이 남성 종사자 대비 매우 높은 시설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이 99.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 (96.5%), 성폭력피해보호시설(96.2%), 가정폭력보호시설(96.0%),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92.6%) 등이었음

○ (직위별) 이용시설의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

- 생활시설의 관리직(84.7%), 생활시설의 촉탁의사(86.4%), 이용시설의 관리직(계약직(82.9%), 이용시설의 관리직(장애인(69.2%) 등 관리직과 이용시설의 기타(촉탁의사(77.8%) 등 의료직 관련해서는 남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5-4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 특성과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남		여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22,593	32.6	46,720	67.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22,396	33.5	44,479	66.5
	여성가족부	2,438	197	8.1	2,241	91.9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10,463	35.6	18,940	64.4
	이용시설	39,910	12,130	30.4	27,780	69.6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8,812	34.2	16,946	65.8
	지방 이양	43,555	13,781	31.6	29,774	68.4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1,228	23.1	4,085	76.9
	6~10인	5,929	2,170	36.6	3,759	63.4
	11~20인 이하	9,441	3,334	35.3	6,107	64.7
	21~30인 이하	14,183	5,129	36.2	9,054	63.8
	31~40인 이하	10,729	4,072	38.0	6,657	62.0
	41~50인 이하	6,563	2,160	32.9	4,403	67.1
	51인 이상	17,155	4,500	26.2	12,655	73.8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3,577	30.0	8,332	70.0
	부산광역시	4,802	1,319	27.5	3,483	72.5
	대구광역시	2,711	971	35.8	1,740	64.2
	인천광역시	3,114	954	30.6	2,160	69.4
	광주광역시	1,820	610	33.5	1,210	66.5
	대전광역시	1,718	715	41.6	1,003	58.4
	울산광역시	1,321	360	27.3	961	72.7
	세종특별자치시	409	192	46.9	217	53.1
	경기도	15,203	5,027	33.1	10,176	66.9
	강원도	2,907	982	33.8	1,925	66.2
	충청북도	3,969	1,231	31.0	2,738	69.0
	충청남도	3,640	1,249	34.3	2,391	65.7
	전라북도	3,406	1,090	32.0	2,316	68.0
	전라남도	3,684	1,062	28.8	2,622	71.2
	경상북도	3,863	1,512	39.1	2,351	60.9
	경상남도	3,489	1,214	34.8	2,275	65.2
	제주특별자치도	1,348	528	39.2	820	60.8

〈표 5-49〉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남		여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22,593	32.6	46,720	67.4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185	18.2	832	81.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2	4.4	43	95.6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1,817	20.5	7,038	79.5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88	34.8	165	65.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534	31.1	1,183	68.9
	소계	11,887	2,626	22.1	9,261	77.9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1,065	20.2	4,201	79.8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21	13.0	140	87.0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147	49.7	149	50.3
	자립지원시설	22	12	54.5	10	45.5
	공동생활가정	558	72	12.9	486	87.1
	아동상담소	37	7	18.9	30	81.1
	아동전용시설	25	7	28.0	18	72.0
	지역아동센터	1,779	209	11.7	1,570	88.3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125	29.0	306	71.0
	가정위탁지원센터	22	4	18.2	18	81.8
	소계	8,597	1,669	19.4	6,928	80.6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3,418	41.6	4,795	58.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3,353	42.5	4,540	57.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63	19.5	260	80.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302	33.9	590	66.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109	25.7	315	74.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3,702	37.4	6,198	62.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2,544	59.7	1,716	40.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39	21.7	141	78.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39	72.2	15	27.8
	소계	32,139	13,569	42.2	18,570	57.8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777	46.0	912	54.0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89	42.2	122	57.8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90	36.1	159	63.9
	소계	2,149	956	44.5	1,193	55.5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93	60.4	61	39.6
	노숙인재활시설	535	291	54.4	244	45.6
	노숙인요양시설	568	239	42.1	329	57.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205	85.4	35	14.6

구분		사례 수	남		여	
			빈도	%	빈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15	65.2	8	34.8
	쪽방상담소	26	19	73.1	7	26.9
	소계	1,546	862	55.8	684	44.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27	37.0	46	63.0
	사회복지관	8,475	2,245	26.5	6,230	73.5
	소계	8,548	2,272	26.6	6,276	73.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415	33.4	828	66.6
	소계	1,243	415	33.4	828	66.6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27	3.5	739	96.5
	소계	766	27	3.5	739	96.5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	.	13	100.0
	청소년지원시설	38	.	.	38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1	100.0
	자활지원센터	7	.	.	7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44	1	2.3	43	97.7
	소계	103	1	1.0	102	99.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2	4.3	44	95.7
	성폭력피해상담소	60	2	3.3	58	96.7
	소계	106	4	3.8	102	96.2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2	1.6	123	98.4
	가정폭력상담소	161	8	5.0	153	95.0
	긴급전화센터	39	3	7.7	36	92.3
	소계	325	13	4.0	312	96.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22	25.0	66	75.0
	부자가족복지시설	16	9	56.3	7	43.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9	5.6	152	94.4
	일시지원복지시설	29	1	3.4	28	96.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	.	7	100.0
	소계	301	41	13.6	260	86.4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110	7.4	1,378	92.6
	소계	1,488	110	7.4	1,378	92.6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26	26.0	74	74.0
	청소년자립지원관	6	1	16.7	5	83.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	11.1	8	88.9
	소계	115	28	24.3	87	75.7

〈표 5-5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성별 분포

(단위: 명, %)

	사례 수	남		여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22,593	32.6	46,720	67.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4,139	40.2	6,151	59.8
생활-관리직	629	533	84.7	96	15.3
생활-기능직	2,901	317	10.9	2,584	89.1
생활-기타	173	45	26.0	128	74.0
생활-기타(계약직)	11	3	27.3	8	72.7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273	86.4	43	13.6
생활-사무국장	989	443	44.8	546	55.2
생활-생활지도원	11,989	3,841	32.0	8,148	68.0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282	37.8	464	62.2
생활-시설장	1,359	587	43.2	772	56.8
이용-과장	1,476	292	19.8	1,184	80.2
이용-관리직 기타	790	317	40.1	473	59.9
이용-관리직(계약직)	35	29	82.9	6	17.1
이용-관리직(장애인)	13	9	69.2	4	30.8
이용-관리직1급	281	110	39.1	171	60.9
이용-관리직2급	26	14	53.8	12	46.2
이용-관리직3급	276	115	41.7	161	58.3
이용-관리직4급	2,473	1,194	48.3	1,279	51.7
이용-관장	2,616	1,244	47.6	1,372	52.4
이용-기타	5,008	1,618	32.3	3,390	67.7
이용-기타(계약직)	470	93	19.8	377	80.2
이용-기타(미기입)	886	231	26.1	655	73.9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3	29.5	31	70.5
이용-기타(전담 사회복지사)	208	29	13.9	179	86.1
이용-기타(촉탁의사)	9	7	77.8	2	22.2
이용-부장	782	348	44.5	434	55.5
이용-사무국장	375	198	52.8	177	47.2
이용-사무직1급	365	139	38.1	226	61.9
이용-사무직2급	37	14	37.8	23	62.2
이용-사무직3급	386	135	35.0	251	65.0
이용-사무직4급	1,491	363	24.3	1,128	75.7
이용-사회복지사	10,396	1,591	15.3	8,805	84.7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812	26.3	2,277	73.7
이용-의료직1급	26	1	3.8	25	96.2
이용-의료직2급	5	.	.	5	100.0
이용-의료직3급	860	152	17.7	708	82.3
이용-의료직4급	58	8	13.8	50	86.2
이용-일반직 기타	31	24	77.4	7	22.6
이용-일반직1급	94	32	34.0	62	66.0
이용-일반직2급	3,197	1,401	43.8	1,796	56.2
이용-일반직3급	250	89	35.6	161	64.4
이용-일반직4급	3,799	1,486	39.1	2,313	60.9
이용-일반직5급	58	22	37.9	36	62.1

□ (시설유형) 사회복지 종사자 총 69,313명 중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39,910명(57.6%)으로 생활시설 종사자는 29,403명(42.4%)보다 15.2%p 많은 것으로 파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39,910명 중 38,104명이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1,806명이었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는 전체 25,758명이었고 그중 77.1%인 19,857명이 생활시설에 근무하고 있었고, 반면에 지방이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43,555명 중 78.1%인 34,009명은 이용시설 근무하고 있었음

○ (종사자 규모) 전체 종사자 69,313명 중 7.7%인 5,313명이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중 68.1%인 4,190명은 이용시설 종사자였음

- 한편, 전체종사자 69,313명 중 24.8%인 17,155명은 5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중 72.4%인 12,423명이 이용시설 종사자였음

○ (지역) 생활시설 종사자 비중이 전체 평균 42.4%보다 큰 광역지자체로는 경상북도(61.8%), 대전광역시(59.8%), 제주특별자치도(57.9%), 경상남도 (54.4%) 등이었음

- 반면에 이용시설 종사자 전체 평균 57.6%보다 큰 지역으로는 경기도(67.2%), 부산광역시(65.6%), 서울특별시(63.4%), 인천광역시 (61.0%) 등이었음

○ (세부시설) 전체 종사자 69,313명 중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2,139명으로 46.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중 55.2%인 17,745명이 생활시설 종사자였음

-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11,887명으로 이 중 91.1%인 10,825명은 이용시설에 근무하고 있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 종사자 29,403명 중 생활지도원이 11,939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장/생활복지사가 10,290명(35.0%)으로 2개 직위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75.6%를 차지하고 있었음

- 이용시설 종사자 39,910명 중 가장 많은 직위는 사회복지사로 총 10,396명으로 약 26.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선임사회복지사는 3,089명으로 7.7%에 불과했음
- 생활시설 종사자 29,403명 중 사회복지직 이외에 관리직(629명)과 기능직 (2,901명) 직원은 약 1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용시설 종사자 39,910명 중 관리직(3,894명)과 사무직(2,279명)은 약 15.5%로 생활시설 대비 3.5%p 많았음

〈표 5-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생활		이용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29,403	42.4	39,910	57.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28,771	43.0	38,104	57.0
	여성가족부	2,438	632	25.9	1,806	74.1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29,403	100.0		
	이용시설	39,910			39,910	100.0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19,857	77.1	5,901	22.9
	지방이양	43,555	9,546	21.9	34,009	78.1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1,123	21.1	4,190	78.9
	6~10인	5,929	1,894	31.9	4,035	68.1
	11~20인 이하	9,441	3,368	35.7	6,073	64.3
	21~30인 이하	14,183	7,248	51.1	6,935	48.9
	31~40인 이하	10,729	7,076	66.0	3,653	34.0
	41~50인 이하	6,563	3,962	60.4	2,601	39.6
	51인 이상	17,155	4,732	27.6	12,423	72.4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4,354	36.6	7,555	63.4
	부산광역시	4,802	1,653	34.4	3,149	65.6
	대구광역시	2,711	1,366	50.4	1,345	49.6
	인천광역시	3,114	1,214	39.0	1,900	61.0
	광주광역시	1,820	968	53.2	852	46.8
	대전광역시	1,718	1,027	59.8	691	40.2
	울산광역시	1,321	551	41.7	770	58.3
	세종특별자치시	409	218	53.3	191	46.7
	경기도	15,203	4,994	32.8	10,209	67.2
	강원도	2,907	1,268	43.6	1,639	56.4
	충청북도	3,969	1,814	45.7	2,155	54.3
	충청남도	3,640	1,607	44.1	2,033	55.9
	전라북도	3,406	1,612	47.3	1,794	52.7
	전라남도	3,684	1,689	45.8	1,995	54.2
	경상북도	3,863	2,388	61.8	1,475	38.2
	경상남도	3,489	1,899	54.4	1,590	45.6
	제주특별자치도	1,348	781	57.9	567	42.1

〈표 5-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세부시설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생활		이용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29,403	42.4	39,910	57.6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1,017	100.0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45	100.0	.	.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	.	8,855	100.0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	.	253	10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	.	1,717	100.0
	소계	11,887	1,062	8.9	10,825	91.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5,266	100.0	.	.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161	100.0	.	.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296	100.0	.	.
	자립지원시설	22	22	100.0	.	.
	공동생활가정	558	558	100.0	.	.
	아동상담소	37	.	.	37	100.0
	아동전용시설	25	.	.	25	100.0
	지역아동센터	1,779	.	.	1,779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431	100.0	.	.
	가정위탁지원센터	22	.	.	22	100.0
	소계	8,597	6,734	78.3	1,863	21.7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8,213	100.0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7,893	100.0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323	100.0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892	100.0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424	100.0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	.	9,900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	.	4,260	10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	.	180	100.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	.	54	100.0
	소계	32,139	17,745	55.2	14,394	44.8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1,689	100.0	.	.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211	100.0	.	.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	.	249	100.0
	소계	2,149	1,900	88.4	249	11.6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154	100.0	.	.
	노숙인재활시설	535	535	100.0	.	.
	노숙인요양시설	568	568	100.0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	.	240	100.0

구분		사례 수	생활		이용	
			빈도	%	빈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	.	23	100.0
	쪽방상담소	26	.	.	26	100.0
	소계	1,546	1,257	81.3	289	18.7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73	100.0	.	.
	사회복지관	8,475	.	.	8,475	100.0
	소계	8,548	73	0.9	8,475	99.1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	.	1,243	100.0
	소계	1,243	.	.	1,243	100.0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	.	766	100.0
	소계	766	.	.	766	100.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3	100.0	.	.
	청소년지원시설	38	38	100.0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100.0	.	.
	자활지원센터	7	.	.	7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44	.	.	44	100.0
	소계	103	52	50.5	51	49.5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46	100.0	.	.
	성폭력피해상담소	60	.	.	60	100.0
	소계	106	46	43.4	60	56.6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125	100.0	.	.
	가정폭력상담소	161	.	.	161	100.0
	긴급전화센터	39	.	.	39	100.0
	소계	325	125	38.5	200	6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88	100.0	.	.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6	100.0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161	100.0	.	.
	일시지원복지시설	29	29	100.0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	.	7	100.0
	소계	301	294	97.7	7	2.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	.	1,488	100.0
	소계	1,488	.	.	1,488	100.0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100	100.0	.	.
	청소년자립지원관	6	6	100.0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9	100.0	.	.
	소계	115	115	100.0	.	.

〈표 5-53〉 직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유형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생활		이용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29,403	42.4	39,910	57.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10,290	14.8		
생활-관리직	629	629	0.9		
생활-기능직	2,901	2,901	4.2		
생활-기타	173	173	0.2		
생활-기타(계약직)	11	11	0.0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316	0.5		
생활-사무국장	989	989	1.4		
생활-생활지도원	11,989	11,989	17.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746	1.1		
생활-시설장	1,359	1,359	2.0		
이용-과장	1,476			1,476	2.1
이용-관리직 기타	790			790	1.1
이용-관리직(계약직)	35			35	0.1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3	0.0
이용-관리직1급	281			281	0.4
이용-관리직2급	26			26	0.0
이용-관리직3급	276			276	0.4
이용-관리직4급	2,473			2,473	3.6
이용-관장	2,616			2,616	3.8
이용-기타	5,008			5,008	7.2
이용-기타(계약직)	470			470	0.7
이용-기타(미기입)	886			886	1.3
이용-기타(보육교사)	44			44	0.1
이용-기타(전담인력사회복지사)	208			208	0.3
이용-기타(촉탁의사)	9			9	0.0
이용-부장	782			782	1.1
이용-사무국장	375			375	0.5
이용-사무직1급	365			365	0.5
이용-사무직2급	37			37	0.1
이용-사무직3급	386			386	0.6
이용-사무직4급	1,491			1,491	2.2
이용-사회복지사	10,396			10,396	15.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3,089	4.5
이용-의료직1급	26			26	0.0
이용-의료직2급	5			5	0.0
이용-의료직3급	860			860	1.2
이용-의료직4급	58			58	0.1
이용-일반직 기타	31			31	0.0
이용-일반직1급	94			94	0.1
이용-일반직2급	3,197			3,197	4.6
이용-일반직3급	250			250	0.4
이용-일반직4급	3,799			3,799	5.5
이용-일반직5급	58			58	0.1

□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 전체 69,313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종사자는 40,426명으로 약 58.3%였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66,875명 중 58.6%가,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2,438명 중 50.9%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 29,403명 중 68.0%가, 이용시설 종사자 39,910명 중 51.2%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16.8%p 높았음

○ (재원 출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와 관련하여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는 66.5%,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는 53.5%로 국고지원시설이 약 13%p 높았음

○ (종사자 규모)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5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은 7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10인 이하(66.1%), 11~20인 이하(63.1%) 등이었으며 51인 이상 시설에서는 40.8%로 가장 낮았음

○ (지역)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이 전체 평균 58.3%보다 큰 광역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72.0%), 경상북도(71.9%), 세종특별자치시(64.3%), 대구광역시 (63.9%) 등이었음

- 반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충청남도(49.6%), 충청북도(50.2%), 강원도(54.1%), 경기도(55.2%) 등이었음

○ (세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이 높은 시설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100.0%), 아동복지시설 내 자립지원시설 (95.6%),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내 성폭력피해상담소(86.7%) 등이었음

- 반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이 낮은 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이 39.7%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41.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50.5%)의 순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선임생활지도원의 자격 보유 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고, 이용시설에서는 선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 비율이 8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관리직의 경우 생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이 26.2%에 불과한 반면에 이용시설에서는 직급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최소 14.4%~최고 61.6%까지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5-5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유		무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40,426	58.3	28,887	4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39,186	58.6	27,689	41.4
	여성가족부	2,438	1,240	50.9	1,198	49.1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20,005	68.0	9,398	32.0
	이용시설	39,910	20,421	51.2	19,489	48.8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17,133	66.5	8,625	33.5
	지방이양	43,555	23,293	53.5	20,262	46.5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4,018	75.6	1,295	24.4
	6~10인	5,929	3,929	66.3	2,000	33.7
	11~20인 이하	9,441	5,955	63.1	3,486	36.9
	21~30인 이하	14,183	9,009	63.5	5,174	36.5
	31~40인 이하	10,729	6,478	60.4	4,251	39.6
	41~50인 이하	6,563	4,040	61.6	2,523	38.4
	51인 이상	17,155	6,997	40.8	10,158	59.2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7,005	58.8	4,904	41.2
	부산광역시	4,802	2,881	60.0	1,921	40.0
	대구광역시	2,711	1,732	63.9	979	36.1
	인천광역시	3,114	1,802	57.9	1,312	42.1
	광주광역시	1,820	1,310	72.0	510	28.0
	대전광역시	1,718	1,029	59.9	689	40.1
	울산광역시	1,321	819	62.0	502	38.0
	세종특별자치시	409	263	64.3	146	35.7
	경기도	15,203	8,390	55.2	6,813	44.8
	강원도	2,907	1,574	54.1	1,333	45.9
	충청북도	3,969	1,991	50.2	1,978	49.8
	충청남도	3,640	1,806	49.6	1,834	50.4
	전라북도	3,406	1,942	57.0	1,464	43.0
	전라남도	3,684	2,184	59.3	1,500	40.7
	경상북도	3,863	2,776	71.9	1,087	28.1
	경상남도	3,489	2,137	61.2	1,352	38.8
	제주특별자치도	1,348	785	58.2	563	41.8

〈표 5-55〉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유		무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40,426	58.3	28,887	41.7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406	39.9	611	60.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3	6.7	42	93.3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3,380	38.2	5,475	61.8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87	34.4	166	65.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842	49.0	875	51.0
	소계	11,887	4,718	39.7	7,169	60.3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3,883	73.7	1,383	26.3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121	75.2	40	24.8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194	65.5	102	34.5
	자립지원시설	22	21	95.5	1	4.5
	공동생활가정	558	406	72.8	152	27.2
	아동상담소	37	20	54.1	17	45.9
	아동전용시설	25	17	68.0	8	32.0
	지역아동센터	1,779	1,337	75.2	442	24.8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272	63.1	159	36.9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	45.5	12	54.5
	소계	8,597	6,281	73.1	2,316	26.9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5,697	69.4	2,516	30.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5,623	71.2	2,270	28.8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238	73.7	85	26.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700	78.5	192	2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339	80.0	85	20.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5,641	57.0	4,259	4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1,986	46.6	2,274	53.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12	6.7	168	93.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10	18.5	44	81.5
	소계	32,139	20,246	63.0	11,893	37.0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848	50.2	841	49.8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105	49.8	106	50.2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161	64.7	88	35.3
	소계	2,149	1,114	51.8	1,035	48.2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90	58.4	64	41.6
	노숙인재활시설	535	320	59.8	215	40.2
	노숙인요양시설	568	284	50.0	284	50.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131	54.6	109	45.4

구분		사례 수	유		무	
			빈도	%	빈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14	60.9	9	39.1
	쪽방상담소	26	10	38.5	16	61.5
	소계	1,546	849	54.9	697	45.1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28	38.4	45	61.6
	사회복지관	8,475	4,606	54.3	3,869	45.7
	소계	8,548	4,634	54.2	3,914	45.8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885	71.2	358	28.8
	소계	1,243	885	71.2	358	28.8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459	59.9	307	40.1
	소계	766	459	59.9	307	40.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5	38.5	8	61.5
	청소년지원시설	38	18	47.4	20	52.6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100.0	-	-
	자활지원센터	7	4	57.1	3	42.9
	성매매피해상담소	44	24	54.5	20	45.5
	소계	103	52	50.5	51	49.5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23	50.0	23	50.0
	성폭력피해상담소	60	52	86.7	8	13.3
	소계	106	75	70.8	31	29.2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94	75.2	31	24.8
	가정폭력상담소	161	106	65.8	55	34.2
	긴급전화센터	39	-	-	39	100.0
	소계	325	200	61.5	125	38.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75	85.2	13	14.8
	부자가족복지시설	16	9	56.3	7	43.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119	73.9	42	26.1
	일시지원복지시설	29	23	79.3	6	20.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7	100.0	-	-
	소계	301	233	77.4	68	22.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620	41.7	868	58.3
	소계	1,488	620	41.7	868	58.3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52	52.0	48	48.0
	청소년자립지원관	6	3	50.0	3	5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5	55.6	4	44.4
	소계	115	60	52.2	55	47.8

〈표 5-5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유		무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40,426	58.3	28,887	41.7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7,405	72.0	2,885	28.0
생활-관리직	629	165	26.2	464	73.8
생활-기능직	2,901	192	6.6	2,709	93.4
생활-기타	173	54	31.2	119	68.8
생활-기타(계약직)	11	9	81.8	2	18.2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2	0.6	314	99.4
생활-사무국장	989	831	84.0	158	16.0
생활-생활지도원	11,989	9,499	79.2	2,490	20.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663	88.9	83	11.1
생활-시설장	1,359	1,185	87.2	174	12.8
이용-과장	1,476	848	57.5	628	42.5
이용-관리직 기타	790	141	17.8	649	82.2
이용-관리직(계약직)	35	2	5.7	33	94.3
이용-관리직(장애인)	13	.	.	13	100.0
이용-관리직1급	281	173	61.6	108	38.4
이용-관리직2급	26	15	57.7	11	42.3
이용-관리직3급	276	194	70.3	82	29.7
이용-관리직4급	2,473	355	14.4	2,118	85.6
이용-관장	2,616	2,213	84.6	403	15.4
이용-기타	5,008	753	15.0	4,255	85.0
이용-기타(계약직)	470	7	1.5	463	98.5
이용-기타(미기입)	886	272	30.7	614	69.3
이용-기타(보육교사)	44	.	.	44	100.0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208	129	62.0	79	38.0
이용-기타(촉탁의사)	9	.	.	9	100.0
이용-부장	782	637	81.5	145	18.5
이용-사무국장	375	300	80.0	75	20.0
이용-사무직1급	365	315	86.3	50	13.7
이용-사무직2급	37	23	62.2	14	37.8
이용-사무직3급	386	260	67.4	126	32.6
이용-사무직4급	1,491	738	49.5	753	50.5
이용-사회복지사	10,396	4,779	46.0	5,617	54.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2,608	84.4	481	15.6
이용-의료직1급	26	2	7.7	24	92.3
이용-의료직2급	5	2	40.0	3	60.0
이용-의료직3급	860	97	11.3	763	88.7
이용-의료직4급	58	12	20.7	46	79.3
이용-일반직 기타	31	8	25.8	23	74.2
이용-일반직1급	94	69	73.4	25	26.6
이용-일반직2급	3,197	2,481	77.6	716	22.4
이용-일반직3급	250	178	71.2	72	28.8
이용-일반직4급	3,799	2,784	73.3	1,015	26.7
이용-일반직5급	58	26	44.8	32	55.2

□ (학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력은 전체적으로 대학 졸이 2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12.3%), 대학원(석사)(5.5%) 순으로 파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 종사자 66,875명 중 전문대 졸 종사자가 12.6%인 반면에 여성가족부 소관 종사자 2,438명 중 5.2%만이 전문대 졸이었음

○ (시설유형) 이용시설 종사자는 대학교 졸(24.7%), 전문대 졸(7.0%), 대학원 졸(6.2%) 순으로 많았으며, 생활시설은 대학교 졸(21.3%), 전문대 졸(19.6%), 고 졸(5.2%) 순으로 많았음.

○ (재원 출처) 학력 중 대학교 졸의 경우,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는 21.9%, 지방이양시설 종사자는 24.1%였음

○ (종사자 규모)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종사자의 대학교 졸(31.1%) 및 전문대 졸(13.6%) 비중이 타 시설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대 졸 종사자 비중이 높은 시설은 31~40인 이하 시설(14.5%), 41~50인 이하(13.9%), 21~30인 이하(13.9%), 5인 미만 사업장(13.8%)의 순이었음
- 종사자의 대학교 졸의 비중은 5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31.1%로 타 시설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지역) 대학교 졸 종사자가 많은 지역은 전체 평균 23.3%보다 큰 광역지자체로는 대전광역시(26.9%), 광주광역시(24.4%), 경상북도(26.1%) 등이었음

- 반면에 대학교 졸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15.8%), 충청남도(19.1%), 세종특별자치시(19.1%) 등이었음

○ (세부시설) 대학 졸 종사자가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세부시설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모자가족복지시설(47.7%)과 일시지원복지시설 (48.3%)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57.1%) 등이 있었으며, 노숙인시설 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52.2%)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높았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생활지도원의 경우, 전문대학 졸(23.2%)과 4년제 대학 졸(23.3%) 비중이 거의 동일한 반면,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에서는 전문대학 졸(4.4%) 대비 4년제 대학교 졸(21.3%)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러한 경향은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과 동일 수준의 직위인 이용시설의 선임사회복지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특히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 학력은 전문대 졸이 32.4%로 타 직위 대비 가장 많았음

〈표 5-57〉 시설특성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미기입	
			%	%	%	%	%	%	%	빈도	%
전체		69,313	0.1	0.4	3.5	12.3	23.3	5.5	0.5	37,738	54.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0.1	0.4	3.6	12.6	23.2	5.3	0.5	36,337	54.3
	여성가족부	2,438	-	0.1	1.0	5.2	23.8	10.9	1.5	1,401	57.5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0.2	0.6	5.2	19.6	21.3	4.5	0.4	14,166	48.2
	이용시설	39,910	0.1	0.2	2.3	7.0	24.7	6.2	0.5	23,572	59.1
재원출처	국고지원	25,758	0.2	0.5	4.1	17.6	21.9	5.4	0.5	12,855	49.9
	지방이양	43,555	0.1	0.3	3.2	9.2	24.1	5.5	0.5	24,883	57.1
종사자규모	5인 미만	5,313	-	0.2	1.3	13.8	31.1	10.3	0.9	2,253	42.4
	6~10인	5,929	0.1	0.3	2.9	11.4	28.2	8.0	0.8	2,866	48.3
	11~20인 이하	9,441	0.1	0.3	4.1	11.5	27.3	6.9	0.6	4,654	49.3
	21~30인 이하	14,183	0.2	0.4	3.5	13.9	26.4	5.7	0.6	7,002	49.4
	31~40인 이하	10,729	0.2	0.4	4.0	14.5	21.5	4.4	0.3	5,868	54.7
	41~50인 이하	6,563	0.2	0.6	4.1	13.9	22.0	3.9	0.3	3,605	54.9
	51인 이상	17,155	0.1	0.4	3.6	9.4	15.9	3.3	0.3	11,490	67.0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0.1	0.3	2.8	9.1	25.6	6.8	0.6	6,514	54.7
	부산광역시	4,802	0.0	0.2	3.5	10.1	25.7	5.5	0.7	2,609	54.3
	대구광역시	2,711	0.2	0.1	3.7	19.1	25.5	4.9	0.4	1,248	46.0
	인천광역시	3,114	0.2	0.2	3.9	10.4	24.1	5.7	0.3	1,719	55.2
	광주광역시	1,820	0.1	0.2	2.2	12.3	26.4	5.4	0.9	955	52.5
	대전광역시	1,718	0.1	0.5	4.3	18.6	26.9	7.6	0.5	712	41.4
	울산광역시	1,321	0.2	0.4	3.0	13.4	24.5	4.8	0.2	708	53.6
	세종특별자치시	409	-	1.0	3.4	13.4	19.1	7.8	-	226	55.3
	경기도	15,203	0.1	0.3	3.6	9.5	21.8	5.1	0.5	8,971	59.0
	강원도	2,907	0.3	0.6	5.3	14.6	20.2	5.1	0.2	1,567	53.9
	충청북도	3,969	0.2	0.5	4.7	10.8	20.3	4.6	0.4	2,319	58.4
	충청남도	3,640	0.2	0.6	3.9	12.6	19.1	4.5	0.4	2,137	58.7
	전라북도	3,406	0.3	0.4	3.1	14.1	24.8	5.1	0.4	1,764	51.8
	전라남도	3,684	0.1	0.5	3.1	17.0	21.2	5.2	0.7	1,917	52.0
	경상북도	3,863	0.2	0.6	3.2	20.9	26.1	5.6	0.5	1,660	43.0
	경상남도	3,489	0.1	0.3	4.2	14.5	22.7	5.1	0.4	1,837	52.7
	제주특별자치도	1,348	-	0.1	2.0	13.5	15.8	3.2	0.5	875	64.9

〈표 5-58〉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학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미기입	
			%	%	%	%	%	%	%	빈도	%
전체		69,313	0.1	0.4	3.5	12.3	23.3	5.5	0.5	37,738	54.4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0.2	1.7	12.8	13.4	14.7	4.3	0.7	532	52.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	·	11.1	15.6	11.1	2.2	·	27	60.0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0.2	0.2	3.3	4.9	17.3	4.3	0.4	6,144	69.4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	·	·	0.8	27.7	4.7	1.2	166	65.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	·	2.2	9.1	17.9	3.3	0.4	1,154	67.2
	소계	11,887	0.2	0.3	3.9	6.2	17.4	4.1	0.4	8,023	67.5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0.2	0.4	4.0	21.3	23.9	4.3	0.3	2,408	45.7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0.6	·	5.6	20.5	22.4	5.0	0.6	73	45.3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	0.7	2.7	10.1	26.4	6.1	0.7	158	53.4
	자립지원시설	22	·	·	·	13.6	54.5	9.1	·	5	22.7
	공동생활가정	558	·	·	0.5	14.0	22.4	10.2	1.4	287	51.4
	아동상담소	37	·	·	2.7	·	24.3	24.3	·	18	48.6
	아동전용시설	25	·	·	·	4.0	44.0	12.0	4.0	9	36.0
	지역아동센터	1,779	·	0.2	0.7	13.7	31.1	9.1	0.4	796	44.7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	·	·	1.9	26.0	9.7	0.2	268	62.2
	가정위탁지원센터	22	·	·	·	·	31.8	18.2	·	11	50.0
	소계	8,597	0.1	0.3	2.8	17.7	25.6	6.2	0.4	4,033	46.9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0.2	0.5	4.7	21.3	20.5	3.8	0.4	4,000	48.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0.3	0.7	5.5	22.1	19.1	3.4	0.4	3,823	48.4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0.3	0.3	3.7	27.2	16.1	2.2	·	162	50.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0.1	0.3	2.8	15.5	24.7	5.5	0.9	448	50.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	·	1.2	16.7	22.6	7.8	0.5	217	51.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0.1	0.2	2.5	8.3	29.2	6.6	0.4	5,213	5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0.0	0.3	3.2	9.0	20.1	5.5	0.5	2,616	61.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1.1	2.2	8.3	30.6	32.2	3.3	·	40	22.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	·	1.9	5.6	3.7	3.7	·	46	85.2
	소계	32,139	0.1	0.4	3.9	15.7	22.9	4.9	0.4	16,565	51.5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0.5	1.1	7.8	14.4	18.1	3.2	0.1	927	54.9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	·	1.4	12.3	28.9	13.3	2.4	88	41.7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	·	·	4.0	39.8	17.3	3.2	89	35.7
	소계	2,149	0.4	0.8	6.2	13.0	21.7	5.8	0.7	1,104	51.4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	0.6	7.1	12.3	30.5	13.0	0.6	55	35.7
	노숙인재활시설	535	·	0.7	7.5	15.0	30.7	6.2	0.2	213	39.8
	노숙인요양시설	568	0.9	2.8	15.7	19.4	30.3	3.9	1.1	148	26.1

구분		사례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미기입	
			%	%	%	%	%	%	%	빈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	·	0.8	6.3	27.5	5.4	0.4	143	59.6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	·	4.3	17.4	52.2	4.3	·	5	21.7
	쪽방상담소	26	·	·	·	3.8	26.9	11.5	·	15	57.7
	소계	1,546	0.3	1.4	9.2	14.8	30.3	6.0	0.6	579	37.5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	·	13.7	20.5	21.9	6.8	·	27	37.0
	사회복지관	8,475	0.0	0.1	1.6	4.3	27.6	6.0	0.5	5,081	60.0
	소계	8,548	0.0	0.1	1.7	4.4	27.5	6.0	0.5	5,108	59.8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	0.1	1.7	12.2	32.6	8.2	0.6	555	44.7
	소계	1,243	·	0.1	1.7	12.2	32.6	8.2	0.6	555	44.7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	·	0.8	9.7	28.3	12.1	0.8	370	48.3
	소계	766	·	·	0.8	9.7	28.3	12.1	0.8	370	48.3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	·	·	7.7	30.8	15.4	·	6	46.2
	청소년지원시설	38	·	5.3	2.6	·	18.4	5.3	·	26	68.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	·	100.0	·	·	·	·
	자활지원센터	7	·	·	14.3	14.3	14.3	14.3	·	3	42.9
	성매매피해상담소	44	·	·	·	2.3	27.3	13.6	·	25	56.8
	소계	103	·	1.9	1.9	2.9	24.3	10.7	·	60	58.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	·	·	10.9	21.7	17.4	·	23	50.0
	성폭력피해상담소	60	·	·	·	8.3	16.7	23.3	10.0	25	41.7
	소계	106	·	·	·	9.4	18.9	20.8	5.7	48	45.3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	·	3.2	7.2	17.6	12.8	·	74	59.2
	가정폭력상담소	161	·	·	·	5.0	23.0	32.9	3.1	58	36.0
	긴급전화센터	39	·	·	·	·	·	·	·	39	100.0
	소계	325	·	·	1.2	5.2	18.2	21.2	1.5	171	5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	·	1.1	11.4	47.7	10.2	4.5	22	25.0
	부자가족복지시설	16	·	·	6.3	6.3	6.3	6.3	·	12	75.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	·	2.5	12.4	25.5	11.2	0.6	77	47.8
	일시지원복지시설	29	·	·	6.9	3.4	48.3	31.0	·	3	10.3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	·	·	·	57.1	·	·	3	42.9
	소계	301	·	·	2.7	10.6	33.9	12.3	1.7	117	38.9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88	·	0.1	0.4	4.0	23.1	7.4	1.3	948	63.7
	소계	1,488	·	0.1	0.4	4.0	23.1	7.4	1.3	948	63.7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	·	5.0	4.0	31.0	17.0	1.0	42	42.0
	청소년자립지원관	6	·	·	·	·	·	·	·	6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	·	·	·	·	·	·	9	100.0
	소계	115	·	·	4.3	3.5	27.0	14.8	0.9	57	49.6

〈표 5-5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학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미기입	
		%	%	%	%	%	%	%	빈도	%
전체	69,313	0.1	0.4	3.5	12.3	23.3	5.5	0.5	37,738	54.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0.0	0.1	2.4	21.9	24.5	3.8	0.2	4,830	46.9
생활-관리직	629	0.2	0.8	14.6	13.4	14.0	1.7	·	348	55.3
생활-기능직	2,901	1.8	5.0	25.9	5.3	3.6	0.1	·	1,693	58.4
생활-기타	173	0.6	·	6.9	8.1	9.2	2.9	0.6	124	71.7
생활-기타(계약직)	11	·	·	9.1	27.3	27.3	9.1	·	3	27.3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	·	·	0.3	17.4	6.6	5.1	223	70.6
생활-사무국장	989	·	·	0.4	10.3	27.3	22.6	1.7	372	37.6
생활-생활지도원	11,989	0.0	0.1	3.2	23.2	23.3	2.2	0.1	5,734	47.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	0.1	4.0	32.4	21.6	3.8	·	284	38.1
생활-시설장	1,359	·	·	0.7	7.9	19.3	26.3	4.9	555	40.8
이용-과장	1,476	·	·	0.1	7.9	34.7	14.2	0.9	625	42.3
이용-관리직 기타	790	0.1	0.4	6.6	5.9	8.0	0.6	·	619	78.4
이용-관리직(계약직)	35	·	·	11.4	·	5.7	2.9	·	28	80.0
이용-관리직(장애인)	13	·	·	·	·	·	·	·	13	100.0
이용-관리직1급	281	·	·	1.1	3.9	32.7	6.4	·	157	55.9
이용-관리직2급	26	·	·	·	7.7	15.4	3.8	·	19	73.1
이용-관리직3급	276	·	1.1	3.3	8.0	35.1	10.1	0.4	116	42.0
이용-관리직4급	2,473	0.6	1.6	16.2	8.7	12.1	1.2	·	1,473	59.6
이용-관장	2,616	·	0.2	0.4	7.1	19.6	27.7	5.2	1,043	39.9
이용-기타	5,008	0.0	0.1	1.3	3.3	7.1	0.7	0.0	4,380	87.5
이용-기타(계약직)	470	0.9	1.3	6.8	1.5	1.3	·	·	415	88.3
이용-기타(미기입)	886	0.1	0.5	4.4	6.4	20.9	5.1	0.6	550	62.1
이용-기타(보육교사)	44	·	·	·	·	·	·	·	44	100.0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	·	0.5	8.2	19.7	1.0	·	147	70.7
이용-기타(촉탁의사)	9	·	·	·	·	66.7	·	·	3	33.3
이용-부장	782	·	0.1	0.8	3.7	26.2	32.4	2.3	270	34.5
이용-사무국장	375	·	·	0.5	6.1	23.7	29.9	0.8	146	38.9
이용-사무직1급	365	·	·	0.3	4.7	35.1	18.9	1.1	146	40.0
이용-사무직2급	37	·	·	·	16.2	32.4	2.7	·	18	48.6
이용-사무직3급	386	·	·	1.0	3.9	37.8	7.5	0.3	191	49.5
이용-사무직4급	1,491	·	·	2.1	9.9	29.8	2.6	0.1	827	55.5
이용-사회복지사	10,396	0.1	0.0	1.2	4.4	21.3	2.0	0.1	7,372	70.9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	·	0.6	10.3	43.8	6.0	0.3	1,205	39.0
이용-의료직1급	26	·	·	·	3.8	38.5	15.4	·	11	42.3
이용-의료직2급	5	·	·	·	·	·	80.0	·	1	20.0
이용-의료직3급	860	·	·	0.1	14.8	30.1	5.9	0.2	420	48.8
이용-의료직4급	58	·	·	6.9	19.0	34.5	8.6	·	18	31.0
이용-일반직 기타	31	·	·	9.7	16.1	9.7	6.5	·	18	58.1
이용-일반직1급	94	·	2.1	·	7.4	23.4	29.8	·	35	37.2
이용-일반직2급	3,197	·	·	1.1	13.4	37.8	8.1	0.3	1,259	39.4
이용-일반직3급	250	·	·	1.2	7.2	38.0	2.8	·	127	50.8
이용-일반직4급	3,799	·	0.1	1.5	8.9	37.9	3.0	0.1	1,839	48.4
이용-일반직5급	58	·	·	1.7	8.6	24.1	·	1.7	37	63.8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 (분석기준) 사회복지시설 및 인사-급여정보 기반 통계분석결과와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수요 파악을 위한 웹조사 통계분석 결과를 입직 등 분석 범주에 맞추어 혼합하여 기술

○ (분석대상 수) 분석대상 시설이 총 4,739개인 경우는 시설자료이며, 종사자 총 69,313명인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인사-급여정보 분석자료, 그리고 분석대상이 종사자 4,402명인 경우에는 종사자 대상 웹조사 분석결과임

1. 근로 실태

가. 입직

□ (채용 방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채용 방식은 공개채용 방식이 95.6%로 가장 높았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공개채용률은 95.6%,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96.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공개채용 비중은 96.2%였고, 이용시설의 공개채용 비중은 95.2% 수준으로 두 시설유형 간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공개채용 비중은 95.9%였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공개채용 비중도 95.5%로 동일한 수준으로 파악됨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사업장의 공개채용 비중은 91.5%인 반면 6~10인 이하 (94.4%), 11~20인 이하(95.5%), 21~30인 이하(96.5%) 등 공개채용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 (지역) 공개채용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99.0%), 울산광역시(98.2%) 등이었음

- 반면에 공개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92.9%), 경상북도(93.3%) 등이었음
- 한편, 채용 방법 중 인맥 등 기타 채용 비중이 전체 평균 3.3%보다 높은 지역으로는 전라남도(5.6%), 경상북도(5.2%) 등이었음

○ (세부시설) 공개채용 방식 비율이 가장 높은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시설로는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전용시설(100.0%)과 가정위탁지원센터(100.0%)와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100.0%)였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중 공개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시설로는 가정폭력보호시설 내 긴급전화센터(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일시지원복지시설(100.0%)과 청소년복지시설 내 청소년자립지원관(100.0%)이 있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의 경우 공개채용 방식 비중이 전체 평균 95.6% 대비 낮은 직위는 촉탁의사

(53.2%)와 시설장(75.6%)이었고, 이들은 임명직 등 기타 채용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촉탁의사(66.7%)와 관장(81.0%), 사무국장급인 장애인 이용시설의 1급(88.3%)에서 공개채용 방식의 비중이 낮았음

〈표 5-6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채용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공채		특채		기타 채용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66,270	95.6	771	1.1	2,265	3.3	7	0.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63,928	95.6	732	1.1	2,208	3.3	7	0.0
	여성가족부	2,438	2,342	96.1	39	1.6	57	2.3	.	.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28,275	96.2	321	1.1	806	2.7	1	0.0
	이용시설	39,910	37,995	95.2	450	1.1	1,459	3.7	6	0.0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24,695	95.9	352	1.4	708	2.7	3	0.0
	지방이양	43,555	41,575	95.5	419	1.0	1,557	3.6	4	0.0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4,859	91.5	184	3.5	268	5.0	2	0.0
	6~10인	5,929	5,599	94.4	101	1.7	227	3.8	2	0.0
	11~20인 이하	9,441	9,012	95.5	103	1.1	326	3.5	.	.
	21~30인 이하	14,183	13,692	96.5	131	0.9	359	2.5	1	0.0
	31~40인 이하	10,729	10,248	95.5	116	1.1	365	3.4	.	.
	41~50인 이하	6,563	6,400	97.5	48	0.7	114	1.7	1	0.0
	51인 이상	17,155	16,460	95.9	88	0.5	606	3.5	1	0.0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11,448	96.1	117	1.0	342	2.9	2	0.0
	부산광역시	4,802	4,593	95.6	50	1.0	159	3.3	.	.
	대구광역시	2,711	2,594	95.7	19	0.7	98	3.6	.	.
	인천광역시	3,114	3,019	96.9	21	0.7	74	2.4	.	.
	광주광역시	1,820	1,756	96.5	16	0.9	48	2.6	.	.
	대전광역시	1,718	1,659	96.6	28	1.6	31	1.8	.	.
	울산광역시	1,321	1,297	98.2	6	0.5	18	1.4	.	.
	세종특별자치시	409	405	99.0	1	0.2	3	0.7	.	.
	경기도	15,203	14,599	96.0	163	1.1	438	2.9	3	0.0
	강원도	2,907	2,734	94.0	54	1.9	119	4.1	.	.
	충청북도	3,969	3,751	94.5	46	1.2	172	4.3	.	.
	충청남도	3,640	3,510	96.4	50	1.4	80	2.2	.	.
	전라북도	3,406	3,256	95.6	40	1.2	110	3.2	.	.
	전라남도	3,684	3,423	92.9	55	1.5	206	5.6	.	.
	경상북도	3,863	3,605	93.3	56	1.4	200	5.2	2	0.1
	경상남도	3,489	3,328	95.4	34	1.0	127	3.6	.	.
	제주특별자치도	1,348	1,293	95.9	15	1.1	40	3.0	.	.

〈표 5-61〉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채용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공채		특채		기타 채용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66,270	95.6	771	1.1	2,265	3.3	7	0.0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942	92.6	13	1.3	62	6.1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45	100.0	.	.	.	.	.	.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8,720	98.5	24	0.3	111	1.3	.	.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250	98.8	1	0.4	2	0.8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1,695	98.7	7	0.4	15	0.9	.	.
	소계	11,887	11,652	98.0	45	0.4	190	1.6	.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5,200	98.7	22	0.4	44	0.8	.	.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156	96.9	1	0.6	4	2.5	.	.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290	98.0	4	1.4	2	0.7	.	.
	자립지원시설	22	20	90.9	.	.	2	9.1	.	.
	공동생활가정	558	508	91.0	20	3.6	30	5.4	.	.
	아동상담소	37	35	94.6	.	.	2	5.4	.	.
	아동전용시설	25	25	100.0	.	.	.	.	.	.
	지역아동센터	1,779	1,571	88.3	89	5.0	116	6.5	3	0.2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428	99.3	2	0.5	1	0.2	.	.
	가정위탁지원센터	22	22	100.0	.	.	.	.	.	.
	소계	8,597	8,255	96.0	138	1.6	201	2.3	3	0.0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7,912	96.3	78	0.9	223	2.7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7,600	96.3	95	1.2	198	2.5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303	93.8	4	1.2	16	5.0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843	94.5	17	1.9	32	3.6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384	90.6	15	3.5	24	5.7	1	0.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9,271	93.6	141	1.4	487	4.9	1	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3,744	87.9	92	2.2	423	9.9	1	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179	99.4	.	.	1	0.6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53	98.1	.	.	1	1.9	.	.
	소계	32,139	30,289	94.2	442	1.4	1,405	4.4	3	0.0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1,644	97.3	13	0.8	32	1.9	.	.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188	89.1	8	3.8	15	7.1	.	.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238	95.6	2	0.8	9	3.6	.	.
	소계	2,149	2,070	96.3	23	1.1	56	2.6	.	.
노숙인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146	94.8	3	1.9	5	3.2	.	.
	노숙인재활시설	535	494	92.3	3	0.6	38	7.1	.	.
	노숙인요양시설	568	516	90.8	6	1.1	46	8.1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170	70.8	4	1.7	66	27.5	.	.

구분		사례 수	공채		특채		기타 채용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22	95.7	·	·	1	4.3	·	·
	쪽방상담소	26	22	84.6	1	3.8	3	11.5	·	·
	소계	1,546	1,370	88.6	17	1.1	159	10.3	·	·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64	87.7	1	1.4	8	11.0	·	·
	사회복지관	8,475	8,253	97.4	56	0.7	165	1.9	1	0.0
	소계	8,548	8,317	97.3	57	0.7	173	2.0	1	0.0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1,213	97.6	9	0.7	21	1.7	·	·
	소계	1,243	1,213	97.6	9	0.7	21	1.7	·	·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762	99.5	1	0.1	3	0.4	·	·
	소계	766	762	99.5	1	0.1	3	0.4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	76.9	·	·	3	23.1	·	·
	청소년지원시설	38	34	89.5	3	7.9	1	2.6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	·	1	100.0	·	·
	자활지원센터	7	6	85.7	·	·	1	14.3	·	·
	성매매피해상담소	44	41	93.2	2	4.5	1	2.3	·	·
	소계	103	91	88.3	5	4.9	7	6.8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45	97.8	·	·	1	2.2	·	·
	성폭력피해상담소	60	53	88.3	1	1.7	6	10.0	·	·
	소계	106	98	92.5	1	0.9	7	6.6	·	·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122	97.6	3	2.4	·	·	·	·
	가정폭력상담소	161	149	92.5	6	3.7	6	3.7	·	·
	긴급전화센터	39	39	100.0	·	·	·	·	·	·
	소계	325	310	95.4	9	2.8	6	1.8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81	92.0	3	3.4	4	4.5	·	·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2	75.0	·	·	4	25.0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149	92.5	5	3.1	7	4.3	·	·
	일시지원복지시설	29	29	100.0	·	·	·	·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5	71.4	·	·	2	28.6	·	·
	소계	301	276	91.7	8	2.7	17	5.6	·	·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88	1,457	97.9	14	0.9	17	1.1	·	·
	소계	1,488	1,457	97.9	14	0.9	17	1.1	·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97	97.0	1	1.0	2	2.0	·	·
	청소년자립지원관	6	6	100.0	·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7	77.8	1	11.1	1	11.1	·	·
	소계	115	110	95.7	2	1.7	3	2.6	·	·

〈표 5-6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채용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공채		특채		기타 채용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66,270	95.6	771	1.1	2,265	3.3	7	0.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10,074	97.9	49	0.5	166	1.6	1	0.0
생활-관리직	629	614	97.6	2	0.3	13	2.1	.	.
생활-기능직	2,901	2,822	97.3	15	0.5	64	2.2	.	.
생활-기타	173	158	91.3	1	0.6	14	8.1	.	.
생활-기타(계약직)	11	11	100.0	.	.	.	.	.	.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168	53.2	63	19.9	85	26.9	.	.
생활-사무국장	989	906	91.6	20	2.0	63	6.4	.	.
생활-생활지도원	11,989	11,772	98.2	42	0.4	175	1.5	.	.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722	96.8	7	0.9	17	2.3	.	.
생활-시설장	1,359	1,028	75.6	122	9.0	209	15.4	.	.
이용-과장	1,476	1,444	97.8	8	0.5	24	1.6	.	.
이용-관리직 기타	790	729	92.3	13	1.6	47	5.9	1	0.1
이용-관리직(계약직)	35	34	97.1	.	.	1	2.9	.	.
이용-관리직(장애인)	13	5	38.5	.	.	8	61.5	.	.
이용-관리직1급	281	272	96.8	3	1.1	6	2.1	.	.
이용-관리직2급	26	26	100.0	.	.	.	.	.	.
이용-관리직3급	276	266	96.4	1	0.4	9	3.3	.	.
이용-관리직4급	2,473	2,410	97.5	10	0.4	52	2.1	1	0.0
이용-관장	2,616	2,118	81.0	220	8.4	277	10.6	1	0.0
이용-기타	5,008	4,316	86.2	31	0.6	659	13.2	2	0.0
이용-기타(계약직)	470	449	95.5	4	0.9	17	3.6	.	.
이용-기타(미기입)	886	866	97.7	10	1.1	10	1.1	.	.
이용-기타(보육교사)	44	44	100.0	.	.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208	100.0	.	.	.	.	.	.
이용-기타(촉탁의사)	9	6	66.7	2	22.2	1	11.1	.	.
이용-부장	782	748	95.7	8	1.0	26	3.3	.	.
이용-사무국장	375	348	92.8	13	3.5	14	3.7	.	.
이용-사무직1급	365	353	96.7	5	1.4	7	1.9	.	.
이용-사무직2급	37	33	89.2	.	.	4	10.8	.	.
이용-사무직3급	386	376	97.4	2	0.5	8	2.1	.	.
이용-사무직4급	1,491	1,445	96.9	18	1.2	28	1.9	.	.
이용-사회복지사	10,396	10,334	99.4	12	0.1	50	0.5	.	.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3,024	97.9	25	0.8	39	1.3	1	0.0
이용-의료직1급	26	26	100.0	.	.	.	.	.	.
이용-의료직2급	5	5	100.0	.	.	.	.	.	.
이용-의료직3급	860	845	98.3	2	0.2	13	1.5	.	.
이용-의료직4급	58	58	100.0	.	.	.	.	.	.
이용-일반직 기타	31	29	93.5	.	.	2	6.5	.	.
이용-일반직1급	94	83	88.3	5	5.3	6	6.4	.	.
이용-일반직2급	3,197	3,071	96.1	39	1.2	87	2.7	.	.
이용-일반직3급	250	242	96.8	3	1.2	5	2.0	.	.
이용-일반직4급	3,799	3,725	98.1	15	0.4	59	1.6	.	.
이용-일반직5급	58	57	98.3	1	1.7	.	.	.	.

□ (고용 형태) 총 종사자 69,313명에 대한 고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비율은 7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20.8%, 무기계약직 2.6% 순으로 파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20.9%가,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중 18.1%가 비정규직임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 중 5.2%만이 비정규직이었지만 이용시설의 경우 32.2%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이용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됨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경우, 8.6%만이 비정규직이었으나 지방이양 시설의 경우, 비정규직이 28%로 국고지원시설 대비 약 20%p 정도 높았음

○ (종사자 규모) 비정규직 비율은 51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됨

-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은 10.3%로 31~40인 이하 사업장(10.8%)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51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은 종사자 전체의 43.8%에 달했음

○ (지역)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 20.8%보다 큰 지역은 부산광역시(30.8%), 충청북도 (27.5%), 충청남도(26.5%) 등이었음

- 반면에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지역으로는 대전광역시 (6.0%), 세종특별자치시(8.8%), 제주특별자치도(9.6%) 등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 20.8%보다 매우 높은 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52.6%) 내 노인일자리지원기관(58.6%)과 노인여가복지시설 (58.3%) 등이었음

- 반면에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 20.8%보다 낮은 시설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시설(3.7%) 내 정신재활생활시설(0.9%)이 가장 낮았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중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 20.8%보다 매우 높은 시설로는 가정폭력보호시설 중 긴급전화센터(23.1%)와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23.7%) 등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 관리직과 기능직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각각 89.2%, 92.9%로 전체 평균 7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시설에서는 관리직(계약직) 종사자 중 80.0%, 기타 직종(69.3%) 및 계약직(78.7%), 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특히,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56.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5-6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고용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52,834	76.2	1,810	2.6	14,411	20.8	258	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51,049	76.3	1,612	2.4	13,970	20.9	244	0.4
	여성가족부	2,438	1,785	73.2	198	8.1	441	18.1	14	0.6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27,544	93.7	261	0.9	1,542	5.2	56	0.2
	이용시설	39,910	25,290	63.4	1,549	3.9	12,869	32.2	202	0.5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22,926	89.0	544	2.1	2,222	8.6	66	0.3
	지방이양	43,555	29,908	68.7	1,266	2.9	12,189	28.0	192	0.4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4,611	86.8	133	2.5	546	10.3	23	0.4
	6~10인	5,929	5,305	89.5	99	1.7	521	8.8	4	0.1
	11~20인 이하	9,441	7,466	79.1	247	2.6	1,712	18.1	16	0.2
	21~30인 이하	14,183	11,782	83.1	363	2.6	2,003	14.1	35	0.2
	31~40인 이하	10,729	9,273	86.4	242	2.3	1,154	10.8	60	0.6
	41~50인 이하	6,563	5,430	82.7	116	1.8	964	14.7	53	0.8
	51인 이상	17,155	8,967	52.3	610	3.6	7,511	43.8	67	0.4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9,365	78.6	229	1.9	2,280	19.1	35	0.3
	부산광역시	4,802	3,131	65.2	159	3.3	1,481	30.8	31	0.6
	대구광역시	2,711	2,025	74.7	70	2.6	591	21.8	25	0.9
	인천광역시	3,114	2,416	77.6	66	2.1	627	20.1	5	0.2
	광주광역시	1,820	1,573	86.4	53	2.9	192	10.5	2	0.1
	대전광역시	1,718	1,583	92.1	30	1.7	103	6.0	2	0.1
	울산광역시	1,321	1,005	76.1	86	6.5	229	17.3	1	0.1
	세종특별자치시	409	344	84.1	29	7.1	36	8.8	.	.
	경기도	15,203	10,879	71.6	458	3.0	3,789	24.9	77	0.5
	강원도	2,907	2,172	74.7	152	5.2	579	19.9	4	0.1
	충청북도	3,969	2,784	70.1	66	1.7	1,091	27.5	28	0.7
	충청남도	3,640	2,602	71.5	71	2.0	966	26.5	1	0.0
	전라북도	3,406	2,481	72.8	93	2.7	825	24.2	7	0.2
	전라남도	3,684	2,914	79.1	64	1.7	690	18.7	16	0.4
	경상북도	3,863	3,311	85.7	111	2.9	431	11.2	10	0.3
	경상남도	3,489	3,051	87.4	62	1.8	372	10.7	4	0.1
	제주특별자치도	1,348	1,198	88.9	11	0.8	129	9.6	10	0.7

〈표 5-64〉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고용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정규직	무기 계약직	비 정규직	미기입	
			%	%	%	빈도	%
전체		69,313	76.2	2.6	20.8	258	0.4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시설	1,017	93.2	1.4	5.4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86.7	13.3	·	·	·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39.9	1.8	58.3	5	0.1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88.5	0.8	10.7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38.4	3.0	58.6	·	·
	소계	11,887	45.5	1.9	52.6	5	0.0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91.5	0.7	7.7	5	0.1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88.8	·	11.2	·	·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91.2	1.0	7.8	·	·
	자립지원시설	22	95.5	·	4.5	·	·
	공동생활가정	558	91.6	1.6	6.6	1	0.2
	아동상담소	37	75.7	5.4	18.9	·	·
	아동전용시설	25	64.0	·	32.0	1	4.0
	지역아동센터	1,779	80.0	4.5	14.7	13	0.7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78.2	·	21.8	·	·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소계	8,597	88.3	1.5	9.9	20	0.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95.3	0.7	3.9	10	0.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94.8	0.8	4.1	24	0.3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96.9	1.2	1.2	2	0.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95.3	1.5	3.3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81.1	5.0	13.2	3	0.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78.3	3.7	17.6	34	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84.0	5.4	8.3	97	2.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88.9	1.1	5.6	8	4.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79.6	14.8	5.6	·	·
	소계	32,139	88.2	2.4	8.8	178	0.6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96.4	0.5	3.0	2	0.1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98.6	·	0.9	1	0.5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88.8	·	10.8	1	0.4
	소계	2,149	95.8	0.4	3.7	4	0.2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97.4	0.6	1.9	·	·
	노숙인재활시설	535	93.5	0.7	5.2	3	0.6
	노숙인요양시설	568	95.2	0.2	4.2	2	0.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58.8	0.8	40.4	·	·

구분		사례 수	정규직	무기 계약직	비 정규직	미기입	
			%	%	%	빈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87.0	4.3	8.7	.	.
	쪽방상담소	26	100.0	.	.	.	.
	소계	1,546	89.1	0.6	10.0	5	0.3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90.4	.	9.6	.	.
	사회복지관	8,475	58.4	4.3	36.9	32	0.4
	소계	8,548	58.7	4.2	36.7	32	0.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58.6	6.0	35.5	.	.
	소계	1,243	58.6	6.0	35.5	.	.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68.1	3.8	28.1	.	.
	소계	766	68.1	3.8	28.1	.	.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	.	.	.
	청소년지원시설	38	86.8	13.2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00.0	.	.	.	.
	자활지원센터	7	85.7	.	14.3	.	.
	성매매피해상담소	44	90.9	.	9.1	.	.
	소계	103	90.3	4.9	4.9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82.6	.	13.0	2	4.3
	성폭력피해상담소	60	95.0	5.0	.	.	.
	소계	106	89.6	2.8	5.7	2	1.9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77.6	2.4	20.0	.	.
	가정폭력상담소	161	93.2	1.9	5.0	.	.
	긴급전화센터	39	69.2	7.7	23.1	.	.
	소계	325	84.3	2.8	12.9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97.7	.	2.3	.	.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95.0	0.6	4.3	.	.
	일시지원복지시설	29	96.6	.	.	1	3.4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71.4	14.3	14.3	.	.
	소계	301	95.7	0.7	3.3	1	0.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88	64.0	11.6	23.7	11	0.7
	소계	1,488	64.0	11.6	23.7	11	0.7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72.0	7.0	21.0	.	.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55.6	.	44.4	.	.
	소계	115	72.2	6.1	21.7	.	.

〈표 5-6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고용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52,834	76.2	1,810	2.6	14,411	20.8	258	0.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9,871	95.9	50	0.5	353	3.4	16	0.2
생활-관리직	629	561	89.2	17	2.7	51	8.1	.	.
생활-기능직	2,901	2,694	92.9	25	0.9	177	6.1	5	0.2
생활-기타	173	88	50.9	15	8.7	69	39.9	1	0.6
생활-기타(계약직)	11	11	100.0	.	.	.	.	.	.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121	38.3	49	15.5	127	40.2	19	6.0
생활-사무국장	989	975	98.6	3	0.3	10	1.0	1	0.1
생활-생활지도원	11,989	11,155	93.0	94	0.8	730	6.1	10	0.1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738	98.9	2	0.3	5	0.7	1	0.1
생활-시설장	1,359	1,330	97.9	6	0.4	20	1.5	3	0.2
이용-과장	1,476	1,167	79.1	58	3.9	250	16.9	1	0.1
이용-관리직 기타	790	316	40.0	44	5.6	408	51.6	22	2.8
이용-관리직(계약직)	35	1	2.9	6	17.1	28	80.0	.	.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3	100.0	.	.	.	.	.	.
이용-관리직1급	281	225	80.1	9	3.2	47	16.7	.	.
이용-관리직2급	26	24	92.3	.	.	2	7.7	.	.
이용-관리직3급	276	258	93.5	6	2.2	12	4.3	.	.
이용-관리직4급	2,473	1,759	71.1	158	6.4	545	22.0	11	0.4
이용-관장	2,616	2,484	95.0	26	1.0	94	3.6	12	0.5
이용-기타	5,008	856	17.1	602	12.0	3,469	69.3	81	1.6
이용-기타(계약직)	470	33	7.0	61	13.0	370	78.7	6	1.3
이용-기타(미기입)	886	510	57.6	40	4.5	335	37.8	1	0.1
이용-기타(보육교사)	44	.	.	.	.	44	100.0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15	7.2	7	3.4	185	88.9	1	0.5
이용-기타(촉탁의사)	9	4	44.4	2	22.2	3	33.3	.	.
이용-부장	782	765	97.8	1	0.1	14	1.8	2	0.3
이용-사무국장	375	370	98.7	2	0.5	3	0.8	.	.
이용-사무직1급	365	361	98.9	2	0.5	1	0.3	1	0.3
이용-사무직2급	37	36	97.3	.	.	1	2.7	.	.
이용-사무직3급	386	355	92.0	6	1.6	25	6.5	.	.
이용-사무직4급	1,491	1,231	82.6	47	3.2	166	11.1	47	3.2
이용-사회복지사	10,396	4,207	40.5	270	2.6	5,915	56.9	4	0.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2,821	91.3	68	2.2	198	6.4	2	0.1
이용-의료직1급	26	24	92.3	.	.	2	7.7	.	.
이용-의료직2급	5	5	100.0	.	.	.	.	.	.
이용-의료직3급	860	714	83.0	26	3.0	119	13.8	1	0.1
이용-의료직4급	58	50	86.2	3	5.2	5	8.6	.	.
이용-일반직 기타	31	24	77.4	.	.	7	22.6	.	.
이용-일반직1급	94	93	98.9	.	.	1	1.1	.	.
이용-일반직2급	3,197	3,042	95.2	11	0.3	136	4.3	8	0.3
이용-일반직3급	250	241	96.4	5	2.0	4	1.6	.	.
이용-일반직4급	3,799	3,245	85.4	89	2.3	463	12.2	2	0.1
이용-일반직5급	58	41	70.7	.	.	17	29.3	.	.

□ (고용보험 대상 유무) 총 69,313명 중 고용보험 대상자는 80.4%인 55,714명으로 파악

○ (대상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되나, 시설장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총 66,875명 중 80.6%가,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총 2,438명 중 75.5%인 1,840명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 중 83.7%가, 이용시설은 77.9%가 적용대상자로 파악되어 생활시설 종사자가 이용시설 종사자 대비 5.7%p 높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는 82.2%가, 지방이양시설은 79.3%가 고용보험 대상자로 파악되어 국고지원시설이 2.9%p 높았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보험 대상자 비중도 증가함

-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대상자 비율은 74.6%였지만 다음으로 6~10인 이하(76.0%), 11~20인 이하(78.3%), 21~30인 이하(81.2%) 등으로 증가함

○ (지역) 고용보험 대상 비율이 전체 평균 80.48%보다 큰 지역은 경기도(89.2%), 경상북도(87.2%) 등이었음

- 반면에 고용보험 대상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은 지역으로는 인천광역시(70.0%), 충청남도(71.1%) 등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종사자의 고용보험 대상 비율이 전체 평균 80.4%보다 매우 높은 시설로는 노숙인시설 내(87.8%)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7.5%) 등이었음

- 반면에 고용보험 대상 비율이 전체 평균 80.4%보다 매우 낮은 시설로는 지역자활센터(73.8%)가 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중 종사자의 고용보험 대상 비율이 평균 75.5%보다 매우 높은 시설로는 청소년복지시설(78.3%) 내 청소년자립지원관(83.3%)과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77.3%) 등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의 고용보험 대상자 중 선임생활지도원(92.5%)이 가장 높은 반면에 시설장의 대상 비율은 48.5%로 촉탁의사(7.6%)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음

- 이용시설에서는 관리직(계약직) 종사자의 48.6%가 고용보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장 역시 49.9%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표 5-6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고용보험 대상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고용보험 대상 유		고용보험 대상 무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55,714	80.4	13,599	19.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53,874	80.6	13,001	19.4
	여성가족부	2,438	1,840	75.5	598	24.5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24,607	83.7	4,796	16.3
	이용시설	39,910	31,107	77.9	8,803	22.1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21,179	82.2	4,579	17.8
	지방이양	43,555	34,535	79.3	9,020	20.7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3,962	74.6	1,351	25.4
	6~10인	5,929	4,509	76.0	1,420	24.0
	11~20인 이하	9,441	7,397	78.3	2,044	21.7
	21~30인 이하	14,183	11,523	81.2	2,660	18.8
	31~40인 이하	10,729	8,631	80.4	2,098	19.6
	41~50인 이하	6,563	5,534	84.3	1,029	15.7
	51인 이상	17,155	14,158	82.5	2,997	17.5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9,341	78.4	2,568	21.6
	부산광역시	4,802	3,629	75.6	1,173	24.4
	대구광역시	2,711	2,139	78.9	572	21.1
	인천광역시	3,114	2,179	70.0	935	30.0
	광주광역시	1,820	1,320	72.5	500	27.5
	대전광역시	1,718	1,268	73.8	450	26.2
	울산광역시	1,321	1,010	76.5	311	23.5
	세종특별자치시	409	325	79.5	84	20.5
	경기도	15,203	13,566	89.2	1,637	10.8
	강원도	2,907	2,384	82.0	523	18.0
	충청북도	3,969	3,076	77.5	893	22.5
	충청남도	3,640	2,589	71.1	1,051	28.9
	전라북도	3,406	2,757	80.9	649	19.1
	전라남도	3,684	2,881	78.2	803	21.8
	경상북도	3,863	3,367	87.2	496	12.8
	경상남도	3,489	2,796	80.1	693	19.9
	제주특별자치도	1,348	1,087	80.6	261	19.4

〈표 5-67〉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고용보험 대상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고용보험 대상 유		고용보험 대상 무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55,714	80.4	13,599	19.6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846	83.2	171	16.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32	71.1	13	28.9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6,713	75.8	2,142	24.2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171	67.6	82	32.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1,273	74.1	444	25.9
	소계	11,887	9,035	76.0	2,852	24.0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4,462	84.7	804	15.3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141	87.6	20	12.4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241	81.4	55	18.6
	자립지원시설	22	16	72.7	6	27.3
	공동생활가정	558	416	74.6	142	25.4
	아동상담소	37	28	75.7	9	24.3
	아동전용시설	25	14	56.0	11	44.0
	지역아동센터	1,779	1,319	74.1	460	25.9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372	86.3	59	13.7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6	72.7	6	27.3
	소계	8,597	7,025	81.7	1,572	18.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6,907	84.1	1,306	15.9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6,664	84.4	1,229	15.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288	89.2	35	10.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678	76.0	214	24.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273	64.4	151	35.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8,191	82.7	1,709	17.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3,280	77.0	980	23.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175	97.2	5	2.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40	74.1	14	25.9
	소계	32,139	26,496	82.4	5,643	17.6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1,523	90.2	166	9.8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134	63.5	77	36.5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191	76.7	58	23.3
	소계	2,149	1,848	86.0	301	14.0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113	73.4	41	26.6
	노숙인재활시설	535	447	83.6	88	16.4
	노숙인요양시설	568	519	91.4	49	8.6

구분		사례 수	고용보험 대상 유		고용보험 대상 무	
			빈도	%	빈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234	97.5	6	2.5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22	95.7	1	4.3
	쪽방상담소	26	23	88.5	3	11.5
	소계	1,546	1,358	87.8	188	12.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62	84.9	11	15.1
	사회복지관	8,475	6,505	76.8	1,970	23.2
	소계	8,548	6,567	76.8	1,981	23.2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917	73.8	326	26.2
	소계	1,243	917	73.8	326	26.2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628	82.0	138	18.0
	소계	766	628	82.0	138	18.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	76.9	3	23.1
	청소년지원시설	38	21	55.3	17	44.7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1	100.0
	자활지원센터	7	6	85.7	1	14.3
	성매매피해상담소	44	33	75.0	11	25.0
	소계	103	70	68.0	33	32.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31	67.4	15	32.6
	성폭력피해상담소	60	33	55.0	27	45.0
	소계	106	64	60.4	42	39.6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97	77.6	28	22.4
	가정폭력상담소	161	109	67.7	52	32.3
	긴급전화센터	39	30	76.9	9	23.1
	소계	325	236	72.6	89	27.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72	81.8	16	18.2
	부자가족복지시설	16	6	37.5	10	62.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127	78.9	34	21.1
	일시지원복지시설	29	19	65.5	10	34.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6	85.7	1	14.3
	소계	301	230	76.4	71	23.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88	1,150	77.3	338	22.7
	소계	1,488	1,150	77.3	338	22.7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80	80.0	20	20.0
	청소년자립지원관	6	5	83.3	1	16.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5	55.6	4	44.4
	소계	115	90	78.3	25	21.7

〈표 5-6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고용보험 대상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고용보험 대상 유		고용보험 대상 무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55,714	80.4	13,599	19.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9,006	87.5	1,284	12.5
생활-관리직	629	546	86.8	83	13.2
생활-기능직	2,901	2,461	84.8	440	15.2
생활-기타	173	120	69.4	53	30.6
생활-기타(계약직)	11	10	90.9	1	9.1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24	7.6	292	92.4
생활-사무국장	989	847	85.6	142	14.4
생활-생활지도원	11,989	10,244	85.4	1,745	14.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690	92.5	56	7.5
생활-시설장	1,359	659	48.5	700	51.5
이용-과장	1,476	1,274	86.3	202	13.7
이용-관리직 기타	790	612	77.5	178	22.5
이용-관리직(계약직)	35	17	48.6	18	51.4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3	100.0	.	.
이용-관리직1급	281	211	75.1	70	24.9
이용-관리직2급	26	24	92.3	2	7.7
이용-관리직3급	276	249	90.2	27	9.8
이용-관리직4급	2,473	2,032	82.2	441	17.8
이용-관장	2,616	1,305	49.9	1,311	50.1
이용-기타	5,008	3,397	67.8	1,611	32.2
이용-기타(계약직)	470	303	64.5	167	35.5
이용-기타(미기입)	886	743	83.9	143	16.1
이용-기타(보육교사)	44	44	100.0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136	65.4	72	34.6
이용-기타(촉탁의사)	9	4	44.4	5	55.6
이용-부장	782	687	87.9	95	12.1
이용-사무국장	375	331	88.3	44	11.7
이용-사무직1급	365	316	86.6	49	13.4
이용-사무직2급	37	29	78.4	8	21.6
이용-사무직3급	386	336	87.0	50	13.0
이용-사무직4급	1,491	1,247	83.6	244	16.4
이용-사회복지사	10,396	8,048	77.4	2,348	22.6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2,623	84.9	466	15.1
이용-의료직1급	26	21	80.8	5	19.2
이용-의료직2급	5	5	100.0	.	.
이용-의료직3급	860	768	89.3	92	10.7
이용-의료직4급	58	55	94.8	3	5.2
이용-일반직 기타	31	25	80.6	6	19.4
이용-일반직1급	94	80	85.1	14	14.9
이용-일반직2급	3,197	2,768	86.6	429	13.4
이용-일반직3급	250	229	91.6	21	8.4
이용-일반직4급	3,799	3,119	82.1	680	17.9
이용-일반직5급	58	56	96.6	2	3.4

□ (시설 내 취업규칙 유무) 인터넷 웹조사 결과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94.1%가 시설 내 취업규칙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고, 2.6%는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그리고 3.3%는 모른다고 응답함

○ (시사점) 20대 이하와 실무 직원에서 작성하지 않거나 모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의 작성 비율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은 22%가 모른다고 하였으며,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서 작성률이 낮고, 모른다는 비율이 16.5%로 높게 나타남

〈표 5-69〉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취업규칙 유무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있다	없다	모름
전체		4,402	94.1	2.6	3.3
성별	여자	3,233	93.9	2.8	3.4
	남자	1,169	94.7	2.1	3.2
연령대	20대 이하	500	88.2	2.0	9.8
	30대	1,182	94.9	1.9	3.1
	40대	1,498	94.9	3.0	2.1
	50대	1,147	94.9	2.9	2.3
	60대 이상	75	92.0	4.0	4.0
직위	상급관리자	495	94.1	5.9	.
	중간관리자	1,131	95.9	2.7	1.3
	초급관리자	536	97.0	.4	2.6
	실무직원	2,240	92.5	2.3	5.2
직종	사회복지직	3,128	94.1	2.8	3.2
	관리직	740	94.9	2.3	2.8
	기능직	352	90.9	2.6	6.5
	보건의료직	182	97.8	.5	1.6
고용형태	정규직	3,908	94.7	2.5	2.9
	무기계약직	291	89.3	4.8	5.8
	비정규 기간제	182	90.7	1.6	7.7
	비정규 기타	21	85.7	.	14.3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92.1	3.6	4.3
	6~10인 이하	818	91.4	4.9	3.7
	11~20인 이하	642	95.8	1.4	2.8
	21~30인 이하	457	97.8	0.2	2.0
	31~40인 이하	267	97.8	.	2.2
	41~50인 이하	141	97.9	0.7	1.4
	51인 이상	367	97.5	0.5	1.9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인터넷 웹조사를 통해 실시한 4,402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현 소속 시설 채용시 99.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함

○ (최초 입직 시) 최초 입직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서 성별에서는 별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구분에서 60 대이상(2.7%)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율이 타연령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업규칙 변경 시) 시설 내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는 종사자 4,142명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90.2%가 재작성하였다고 응답함

- 연령대에서는 20~40대 종사자에서, 직위에서는 초급관리자에서, 직종에서는 기능직이나 보건의료직 대비 사회복지직 및 관리직에서 재작성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5-70〉 입직 및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최초 입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취업 규칙 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인원 (명)	작성함	작성안함	인원 (명)	작성함	작성안함
전체		4,402	99.6	0.4	4,142	90.2	9.8
성별	여자	3,233	99.7	0.3	3,035	89.6	10.4
	남자	1,169	99.5	0.5	1,107	91.9	8.1
연령대	20대 이하	500	99.8	0.2	441	89.3	10.7
	30대	1,182	100.0		1,122	89.1	10.9
	40대	1,498	99.4	0.6	1,422	88.7	11.3
	50대	1,147	99.6	0.4	1,088	93.1	6.9
	60대 이상	75	97.3	2.7	69	97.1	2.9
직위	상급관리자	495	99.0	1.0	466	88.6	11.4
	중간관리자	1,131	99.6	0.4	1,085	89.8	10.2
	초급관리자	536	99.6	0.4	520	85.4	14.6
	실무직원	2,240	99.8	0.2	2,071	91.9	8.1
직종	사회복지직	3,128	99.7	0.3	2,942	89.4	10.6
	관리직	740	99.2	0.8	702	89.3	10.7
	기능직	352	99.7	0.3	320	96.9	3.1
	보건의료직	182	98.9	1.1	178	93.8	6.2

□ (필수 채용 요건 자격증) 총 4,402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현 소속 시설 채용시 필수 채용 조건으로 사회복지사 2급(63.5%) 사회복지사 2급(63.5%)을 1순위로 요구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1급(21.0%) 등의 순이었으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5.1%에 불과했음

〈표 5-71〉 보유한 자격증 중 현재 재직 시설에 입사하면서 필수 채용 요건 1순위 자격증(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자격증 없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청소년지도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1~2급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의사
전체		4,402	5.1	21.0	63.5	1.2	0.0	0.3	2.4	1.7	1.7	2.3	1.2	4.9	0.2	0.3	0.1
성별	여자	3,233	5.0	19.6	64.4	0.8	0.0	0.3	2.7	1.2	2.1	2.8	0.9	5.7	0.3	0.3	0.0
	남자	1,169	5.3	24.7	60.9	2.1	·	0.3	1.7	2.9	0.7	1.0	1.9	2.9	0.2	0.2	0.2
연령대	20대 이하	500	5.6	26.0	69.0	0.8	·	0.2	2.6	1.4	0.2	0.2	0.6	0.6	·	0.4	·
	30대	1,182	5.6	28.2	65.7	1.4	·	0.3	2.9	2.3	0.6	0.7	1.2	1.7	0.1	0.5	0.1
	40대	1,498	4.3	21.1	64.2	1.5	·	0.2	1.7	2.1	2.3	2.9	1.5	4.5	0.4	0.1	0.1
	50대	1,147	4.6	11.9	58.8	0.7	0.1	0.4	2.8	0.6	2.8	4.1	1.0	9.9	0.2	0.3	0.1
	60대 이상	75	14.7	10.7	52.0	·	·	·	1.3	·	2.7	2.7	·	16.0	2.7	·	·
직위	상급관리자	495	2.0	30.5	74.5	3.8	0.2	0.2	2.0	3.8	1.6	1.4	0.6	4.8	1.0	0.4	0.2
	중간관리자	1,131	3.0	27.8	66.2	1.5	·	0.4	1.8	2.7	3.3	3.0	1.5	5.7	0.3	0.3	0.1
	초급관리자	536	4.3	21.6	68.8	1.1	·	0.2	1.9	1.7	0.2	1.7	0.9	3.9	0.2	0.6	·
	실무직원	2,240	7.0	15.3	58.4	0.4	·	0.3	2.9	0.7	1.3	2.3	1.2	4.8	0.1	0.2	0.0
직종	사회복지직	3,128	2.0	26.2	75.1	1.5	·	0.3	2.8	1.9	0.3	1.3	0.1	4.7	0.2	0.3	0.0
	관리직	740	14.5	12.8	51.5	0.5	0.1	0.1	2.0	1.6	0.8	1.8	0.8	4.5	0.3	0.4	0.3
	기능직	352	15.3	0.6	10.2	·	·	·	0.6	·	·	0.9	·	6.5	·	·	·
	보건의료직	182	·	3.3	15.4	0.5	·	1.1	·	1.1	33.0	24.2	22.5	7.1	2.2	0.5	·
고용형태	정규직	3,908	4.8	21.7	63.9	1.3	·	0.3	2.1	1.8	1.9	2.3	1.3	5.0	0.3	0.3	0.1
	무기계약직	291	6.5	12.0	59.1	·	0.3	0.3	4.8	0.3	0.7	2.1	0.3	5.5	·	·	·
	비정규 기간제	182	7.1	20.3	63.2	·	·	·	4.4	·	·	2.7	·	2.7	·	1.6	·
	비정규 기타	21	14.3	19.0	47.6	·	·	·	9.5	·	·	·	·	·	·	·	·
근무연수	1년 미만	91	7.7	17.6	71.4	·	·	·	6.6	·	·	1.1	·	2.2	·	1.1	·
	1년~3년 미만	1,273	5.2	19.6	63.3	0.5	·	0.4	2.7	1.3	1.5	1.8	0.5	4.0	·	0.3	0.1
	3년~5년 미만	878	5.1	19.0	64.1	0.8	0.1	0.2	3.8	0.9	0.9	1.6	0.3	4.6	·	0.2	0.1
	5년~10년 미만	1,088	4.8	22.1	63.4	2.0	·	0.2	1.9	2.5	1.7	2.5	1.7	5.1	0.3	0.3	·
	10~20년 미만	897	4.7	24.0	63.9	1.6	·	0.4	1.2	1.9	2.2	2.6	2.0	5.7	0.9	0.3	·
	20년 이상	175	6.3	20.0	56.0	0.6	·	·	·	2.9	5.7	7.4	2.9	10.3	·	·	0.6

〈표 5-72〉 보유한 자격증 중 현재 재직 시설에 입사하면서 필수 채용 요건 2순위 자격증(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영양사	치료사 (심리,언어, 작업 등)	보육교사	상담원 (가정 폭력, 성폭력)	전문 상 담 사 1~2급	통번역사	언어 재활사	사설관리 관련 자격(조리사,기사 등	기타	운전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사무,전산,회계 관련 자격증
전체		4,402	2.6	1.7	7.4	8.0	0.9	1.6	0.4	3.8	2.5	28.9	3.9	1.5
성별	여자	3,233	3.3	1.8	9.4	10.5	1.0	1.9	0.4	1.4	2.7	26.7	4.7	1.9
	남자	1,169	0.9	1.5	2.0	1.1	0.8	0.9	0.3	10.7	1.7	35.1	1.8	0.6
연령대	20대 이하	500	1.6	0.8	3.0	5.6	1.0	2.2	·	0.8	2.2	32.2	0.8	1.8
	30대	1,182	1.6	2.4	4.2	5.7	1.1	1.4	0.5	1.4	1.7	27.5	1.0	2.1
	40대	1,498	3.5	1.8	8.1	7.7	0.5	1.7	0.2	4.1	2.2	27.2	2.8	1.7
	50대	1,147	3.1	1.3	11.5	12.1	1.1	1.7	0.6	6.6	3.6	30.9	9.6	0.7
	60대 이상	75	·	1.3	10.7	5.3	2.7	·	·	14.7	4.0	33.3	6.7	·
직위	상급관리자	495	0.8	0.6	9.3	5.5	1.8	1.6	0.6	2.8	2.4	27.3	1.2	0.2
	중간관리자	1,131	4.2	2.2	6.5	6.3	0.7	1.9	0.4	3.0	2.4	28.8	2.2	1.1
	초급관리자	536	1.9	1.5	5.6	5.4	0.7	3.2	0.2	3.0	2.4	27.8	1.5	1.5
	실무직원	2,240	2.5	1.7	7.9	10.1	0.9	1.2	0.3	4.7	2.5	29.6	6.0	2.1
직종	사회복지직	3,128	0.3	1.0	8.6	10.0	1.0	2.1	0.3	1.4	2.4	29.6	0.7	0.6
	관리직	740	1.1	1.5	5.7	4.9	0.5	0.9	0.3	13.4	2.3	30.5	1.1	5.9
	기능직	352	27.6	0.3	2.3	0.6	·	·	·	7.4	2.6	23.3	40.6	1.4
	보건의료직	182	1.1	17.6	3.3	0.5	2.7	·	3.3	·	3.3	21.4	·	·
고용형태	정규직	3,908	2.7	1.6	6.5	7.3	0.8	1.7	0.3	4.1	2.1	29.3	3.9	1.6
	무기계약직	291	2.4	2.4	12.0	13.7	2.1	1.0	0.7	2.4	5.5	23.0	5.5	0.3
	비정규 기간제	182	2.7	1.6	19.8	13.2	1.6	2.2	0.5	1.1	4.4	31.3	1.6	1.6
	비정규 기타	21	·	4.8	9.5	9.5	·	·	·	4.8	4.8	19.0	4.8	·
근무연수	1년 미만	91	3.3	·	14.3	11.0	1.1	·	·	2.2	1.1	30.8	3.3	5.5
	1년~3년 미만	1,273	1.5	2.3	9.3	9.9	1.1	1.2	0.3	2.7	2.7	31.3	3.9	2.2
	3년~5년 미만	878	1.6	1.5	9.2	9.8	1.1	1.3	·	3.1	2.5	27.9	3.8	1.3
	5년~10년 미만	1,088	3.3	1.4	6.2	8.3	0.6	1.5	0.3	3.7	1.7	28.1	4.1	0.8
	10~20년 미만	897	3.5	1.2	4.1	4.1	0.9	2.7	0.7	5.8	2.8	28.1	3.9	1.0
	20년 이상	175	7.4	4.0	5.7	2.3	0.6	3.4	1.7	8.0	3.4	25.1	4.0	2.9

나. 주 근로 실태

□ (주당 평균 근무일 수) 평균 5일로 주 5일 근무가 94.4%로 가장 많았지만, 주 5일 이상 근무의 경우도 3.2%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주 5일 이상 근무의 경우, 연령대에서는 60대에서(6.7%),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기타(9.6%)에서, 그리고 근무연수에서는 20년 이상 종사자(8.0%)에서 높았음

〈표 5-73〉 2023년 8월 기준 주당 평균 근무 일수(일)(웹조사 기반)

(단위: 명, 일, %)

구분		인원(명)	1~4.5일	5일	5일 이상	평균
전체		4,402	2.2	94.4	3.2	5.0
성별	여자	3,233	2.6	94.2	3.3	5.0
	남자	1,169	1.7	94.9	3.5	5.0
연령대	20대 이하	500	2.4	94.8	2.8	5.0
	30대	1,182	2.2	95.5	2.4	5.0
	40대	1,498	1.7	95.9	2.5	5.0
	50대	1,147	3.6	91.3	5.2	5.0
	60대 이상	75	1.3	92	6.7	5.1
직위	상급관리자	495	1.2	93.7	5	5.0
	중간관리자	1,131	1	96.1	3	5.0
	초급관리자	536	1.3	97.2	1.5	5.0
	실무직원	2,240	3.5	93	3.5	5.0
직종	사회복지직	3,128	2.8	93.9	3.2	5.0
	관리직	740	0.5	95.9	3.5	5.0
	기능직	352	1.4	94.9	3.7	5.0
	보건의료직	182	1.1	96.2	2.7	5.0
고용형태	정규직	3,908	2.2	94.4	3.3	5.0
	무기계약직	291	3	93.8	3	5.0
	비정규 기간제	182	3.3	96.2	0.5	5.0
	비정규 기타	21	9.6	81	9.6	4.8
근무연수	1년 미만	91	3.3	94.5	2.2	4.9
	1년~3년 미만	1,273	4.1	93.2	2.7	5.0
	3년~5년 미만	878	1.9	95.1	2.9	5.0
	5년~10년 미만	1,088	2.1	95.6	2.4	5.0
	10년~20년 미만	897	0.6	94.8	4.6	5.0
	20년 이상	175	1.7	90.3	8.0	5.1

□ (주 소정근로시간)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89.6%가 주 40시간을, 5.6%가 52시간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와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시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됨

○ (주 52시간 근무) 전체 1.6%로 매우 낮았으나 60대 이상(6.7%), 비정규직 기타(4.8%), 근무연수 1년 미만(3.3%)에서 높게 나타남

〈표 5-74〉 근로계약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40시간 미만	40시간	52시간	52시간 이상
전체		4,402	3.2	89.6	5.6	1.6
성별	여자	3,233	4.1	89.0	5.2	1.8
	남자	1,169	0.7	91.2	6.8	1.3
연령대	20대 이하	500	1.0	90.8	6.4	1.8
	30대	1,182	1.3	91.2	6.0	1.5
	40대	1,498	4.1	90.5	4.5	0.9
	50대	1,147	4.5	86.7	6.4	2.4
	60대 이상	75	8.0	80.0	5.3	6.7
직위	상급관리자	495	0.4	93.1	3.8	2.6
	중간관리자	1,131	0.5	92.7	5.7	1.1
	초급관리자	536	1.1	92.7	4.1	2.1
	실무직원	2,240	5.6	86.5	6.3	1.6
직종	사회복지직	3,128	3.2	89.0	5.9	1.9
	관리직	740	1.1	93.5	4.6	0.8
	기능직	352	8.0	83.0	7.1	2.0
	보건의료직	182	1.6	95.6	2.2	0.5
고용형태	정규직	3,908	1.4	91.0	5.9	1.7
	무기계약직	291	13.1	82.1	3.4	1.4
	비정규 기간제	182	18.1	78.0	3.3	0.5
	비정규 기타	21	66.7	23.8	4.8	4.8
근무연수	1년 미만	91	3.3	85.7	7.7	3.3
	1년~3년 미만	1,273	5.6	87.3	5.3	1.9
	3년~5년 미만	878	4.2	88.6	5.8	1.4
	5년~10년 미만	1,088	1.8	91.3	5.1	1.8
	10년~20년 미만	897	0.8	91.9	6.2	1.1
	20년 이상	175	1.1	90.9	6.3	1.7

□ (휴게시간) 총 4,402명의 인터넷 웹조사 응답자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가 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시간 30분(4.9%), 2시간(1.5%)의 순이었음

○ (고용 형태) 30분 이하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는 전체 4.6%에 불과했지만, 고용 형태 중 무기계약직(13.7%), 비정규 기간제(20.3%), 비정규 임시직(52.4%)에서 비중이 높았음

- 비정규 임시직에서 30분 이하의 휴게시간 부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5-75〉 근무 중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 2022년 기준)(웹조사 기반)

(단위:명, 시간, %)

구분		인원(명)	30분 이하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상	평균
전체		4,402	4.6	89.0	4.9	1.5	1.0
성별	여자	3,233	5.5	89.2	4.0	1.4	1.0
	남자	1,169	2.0	88.5	7.4	2.1	1.0
연령대	20대 이하	500	1.6	93.8	3.8	0.8	1.0
	30대	1,182	2.5	91.3	4.9	1.4	1.0
	40대	1,498	5.7	88.4	4.5	1.4	1.0
	50대	1,147	6.1	86.8	5.3	1.7	1.0
	60대 이상	75	12.0	66.7	12.0	9.3	1.1
직위	상급관리자	495	1.8	92.7	4.8	0.6	1.0
	중간관리자	1,131	2.5	92.0	4.4	1.1	1.0
	초급관리자	536	2.6	91.8	3.9	1.7	1.0
	실무직원	2,240	6.7	86.0	5.4	2.0	1.0
직종	사회복지직	3,128	5.1	88.8	4.7	1.5	1.0
	관리직	740	1.6	92.4	5.0	0.9	1.0
	기능직	352	7.4	81.8	6.8	4.0	1.0
	보건의료직	182	2.7	92.9	4.4	·	1.0
고용 형태	정규직	3,908	2.9	90.7	4.9	1.5	1.0
	무기계약직	291	13.7	79.4	4.5	2.4	1.0
	비정규 기간제	182	20.3	74.7	3.3	1.6	0.9
	비정규 기타	21	52.4	33.3	14.3	·	0.8
근무 연수	1년 미만	91	6.6	90.1	2.2	1.1	1.0
	1년~3년 미만	1,273	6.4	86.7	4.7	2.2	1.0
	3년~5년 미만	878	6.6	88.0	4.3	1.0	1.0
	5년~10년 미만	1,088	3.1	90.7	4.9	1.3	1.0
	10년~20년 미만	897	2.5	90.4	5.5	1.7	1.0
	20년 이상	175	·	92.0	7.4	0.6	1.0

다. 월 근로 실태

□ (월 근로일수) 사회복지 종사자 월 근로일수를 8일 미만, 8일~21.75일 미만, 21.75일 초과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결과 월평균 근로일수는 19.7일로 나타남

○ (기준)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 174시간(40시간÷7일×365일÷12월), 이를 월 근로일수로 환산하면 21.75일(174시간 ÷8시간)이 산출 (휴일 배제)

-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월 근로일수 8일 미만으로 분류
- 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 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월 근로일수 8일~21.75일 미만으로 분류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19.7일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평균 18.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단시간 근로자 비중에서 복지부 소관시설 근로자가 17.2%로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8.1%보다 약 9.1%p 높았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8.5일인데 반해 이용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8일로 약 2.3일 더 길었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8.5일인 반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4일로 약 1.9일 길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월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5인 이하 시설 18.6일, 6~10인 이하 시설 18.8일, 11~20인 이하 시설 19.4일, 21~30인 이하 시설 19.8일, 51인 이상 시설 20.4일로 월평균 근무 일수가 증가함

○ (지역) 19.7일의 월평균 근로일수보다 많은 지역은 대구광역시가 21.1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20.7일), 경상남도(20.2일) 등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21.1일) 내 노인여가복지시설(21.4일)이었으며, 다음으로 노숙인시설 (20.0일) 내 노숙인요양시설(20.4일) 등의 순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긴 직위는 시설장으로 월평균 19.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직(19.1일), 사무국장(19.1일)의 순이었음

- 한편, 이용시설에서는 사무직 2급이 월평균 30일로 가장 많았고(입력오류로 추정) , 다음으로 관리직 기타(23.8일), 관리직 계약직(22.9일), 관리직2급(21.7일) 등 관리 직종에서 월평균 근무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7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근로일수

(단위: 명, 일,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5 ~ 7.9일	8 ~ 21.75일	21.75일 초과	평균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79.9	0.2	16.9	3.0	19.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79.5	0.2	17.2	3.1	19.7
	여성가족부	2,438	91.7	0.1	8.1	0.1	18.6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77.0	0.2	20.8	1.9	18.5
	이용시설	39,910	82.1	0.2	13.9	3.7	20.8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79.2	0.2	19.2	1.3	18.5
	지방이양	43,555	80.4	0.2	15.4	4.0	20.4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91.8	0.2	7.6	0.4	18.6
	6~10인	5,929	88.5	0.2	10.5	0.9	18.8
	11~20인 이하	9,441	88.0	0.1	10.4	1.5	19.4
	21~30인 이하	14,183	78.1	0.2	18.0	3.7	19.8
	31~40인 이하	10,729	74.5	0.6	21.1	3.9	19.3
	41~50인 이하	6,563	73.3	0.2	23.5	2.9	19.0
	51인 이상	17,155	76.3	0.1	19.4	4.2	20.4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74.6	0.6	20.6	4.2	19.6
	부산광역시	4,802	82.8	0.6	15.5	1.1	18.5
	대구광역시	2,711	72.4	0.2	20.0	7.5	21.1
	인천광역시	3,114	81.9	0.2	17.8	0.2	18.7
	광주광역시	1,820	78.5	0.2	19.1	2.3	19.7
	대전광역시	1,718	70.7	0.1	28.3	0.8	18.5
	울산광역시	1,321	91.2	0.1	8.3	0.4	19.3
	세종특별자치시	409	76.5	.	23.5	.	16.4
	경기도	15,203	76.1	0.1	19.6	4.1	20.0
	강원도	2,907	91.7	0.0	6.2	2.1	19.9
	충청북도	3,969	78.9	0.1	18.7	2.3	19.8
	충청남도	3,640	87.8	0.1	10.0	2.1	20.1
	전라북도	3,406	81.2	0.1	16.6	2.1	19.5
	전라남도	3,684	87.5	0.1	10.4	2.0	19.5
	경상북도	3,863	86.1	0.1	12.6	1.2	18.6
	경상남도	3,489	79.1	0.1	16.8	4.0	20.2
	제주특별자치도	1,348	91.7	0.1	3.7	4.5	20.7

〈표 5-77〉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근로일수

(단위: 명, 일,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5 ~ 7.9일	8 ~ 21.75일	21.75일 초과	평균
			%	%	%	%	
전체		69,313	79.9	0.2	16.9	3.0	19.7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81.3	0.3	17.4	1.0	18.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77.8	·	15.6	6.7	20.3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74.3	0.1	18.9	6.7	21.4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93.3	·	6.7	·	18.9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94.5	·	4.5	1.0	19.9
	소계	11,887	78.2	0.1	16.4	5.3	21.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78.7	0.2	18.4	2.7	18.7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79.5	·	20.5	·	18.7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68.6	0.7	27.0	3.7	18.2
	자립지원시설	22	86.4	·	13.6	·	18.0
	공동생활가정	558	92.5	0.4	6.5	0.7	15.6
	아동상담소	37	81.1	·	18.9	·	17.7
	아동전용시설	25	84.0	12.0	·	4.0	6.5
	지역아동센터	1,779	95.4	0.1	4.6	·	19.1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90.7	·	9.3	·	19.2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소계	8,597	83.4	0.2	14.6	1.8	18.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75.3	0.3	22.9	1.5	18.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70.9	0.2	26.4	2.4	18.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100.0	·	·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85.1	0.1	13.8	1.0	18.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92.5	·	6.1	1.4	18.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78.6	0.5	17.4	3.5	2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84.6	0.4	10.6	4.5	20.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85.6	·	14.4	·	18.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100.0	·	·	·	·
	소계	32,139	77.3	0.4	19.7	2.7	19.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76.4	0.3	23.3	·	17.8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91.0	·	8.5	0.5	17.5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84.7	·	15.3	·	19.3
	소계	2,149	78.8	0.2	20.9	0.0	17.9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100.0	·	·	·	·
	노숙인재활시설	535	67.9	0.4	22.4	9.3	20.1
	노숙인요양시설	568	85.7	·	9.9	4.4	20.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100.0	·	·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60.9	·	39.1	·	14.3
	쪽방상담소	26	73.1	·	26.9	·	17.4
	소계	1,546	82.6	0.1	12.4	4.9	20.0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69.9	·	30.1	·	17.7
	사회복지관	8,475	83.0	0.1	13.1	3.9	21.2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5 ~ 7.9일	8 ~ 21.75일	21.75일 초과	평균
			%	%	%	%	
	소계	8,548	82.9	0.1	13.2	3.8	21.2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90.6	·	8.4	1.0	20.4
	소계	1,243	90.6	·	8.4	1.0	20.4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88.0	0.1	11.5	0.4	18.9
	소계	766	88.0	0.1	11.5	0.4	18.9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	·	·	·
	청소년지원시설	38	100.0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100.0	·	21.0
	자활지원센터	7	100.0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44	100.0	·	·	·	·
	소계	103	99.0	·	1.0	·	21.0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100.0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60	100.0	·	·	·	·
	소계	106	100.0	·	·	·	·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96.0	·	4.0	·	18.2
	가정폭력상담소	161	84.5	·	15.5	·	19.2
	긴급전화센터	39	100.0	·	·	·	·
	소계	325	90.8	·	9.2	·	19.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80.7	·	19.3	·	17.1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88.8	0.6	10.6	·	17.4
	일시지원복지시설	29	72.4	·	27.6	·	17.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100.0	·	·	·	·
	소계	301	85.7	0.3	14.0	·	17.2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91.9	0.1	7.9	0.1	18.9
	소계	1,488	91.9	0.1	7.9	0.1	18.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93.0	·	7.0	·	19.6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	·	·	·
	소계	115	93.9	·	6.1	·	19.6

〈표 5-7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근로일수

(단위: 명, 일,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5 ~ 7.9일	8 ~ 21.75일	21.75일 초과	평균
		%	%	%	%	
전체	69,313	79.9	0.2	16.9	3.0	19.7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74.7	0.2	23.4	1.7	18.5
생활-관리직	629	78.5	0.3	19.7	1.4	18.6
생활-기능직	2,901	77.0	0.2	20.0	2.8	19.1
생활-기타	173	89.6	·	9.2	1.2	19.1
생활-기타(계약직)	11	54.5	·	45.5	·	15.6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95.3	3.5	1.3	·	7.7
생활-사무국장	989	78.0	0.1	19.8	2.1	19.1
생활-생활지도원	11,989	77.4	0.2	20.3	2.0	18.4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74.8	0.1	23.6	1.5	17.9
생활-시설장	1,359	84.0	0.1	13.8	2.1	19.5
이용-과장	1,476	81.3	0.1	15.2	3.4	20.5
이용-관리직 기타	790	83.2	0.1	9.4	7.3	23.8
이용-관리직(계약직)	35	80.0	·	14.3	5.7	22.9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00.0	·	·	·	·
이용-관리직1급	281	88.6	·	10.3	1.1	20.2
이용-관리직2급	26	61.5	·	23.1	15.4	21.7
이용-관리직3급	276	75.4	·	18.5	6.2	21.1
이용-관리직4급	2,473	77.8	0.7	17.4	4.1	20.4
이용-관장	2,616	87.3	0.2	10.6	1.9	20.1
이용-기타	5,008	89.3	0.1	7.4	3.2	20.7
이용-기타(계약직)	470	83.6	0.2	13.0	3.2	20.6
이용-기타(미기입)	886	66.9	0.6	22.0	10.5	21.9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77.9	0.5	15.9	5.8	21.2
이용-기타(촉탁의사)	9	55.6	11.1	33.3	·	13.8
이용-부장	782	82.5	·	14.2	3.3	20.8
이용-사무국장	375	79.2	·	16.0	4.8	20.9
이용-사무직1급	365	80.8	·	17.5	1.6	20.2
이용-사무직2급	37	97.3	·	·	2.7	30.0
이용-사무직3급	386	73.6	·	17.1	9.3	21.9
이용-사무직4급	1,491	85.0	0.5	11.3	3.2	20.3
이용-사회복지사	10,396	81.8	0.0	14.0	4.1	21.1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84.8	0.0	12.8	2.3	20.6
이용-의료직1급	26	92.3	·	7.7	·	19.0
이용-의료직2급	5	80.0	·	20.0	·	19.0
이용-의료직3급	860	76.9	0.5	18.7	4.0	20.6
이용-의료직4급	58	69.0	·	22.4	8.6	18.7
이용-일반직 기타	31	83.9	·	12.9	3.2	21.1
이용-일반직1급	94	83.0	·	17.0	·	19.9
이용-일반직2급	3,197	82.1	0.2	15.1	2.6	20.3
이용-일반직3급	250	88.8	·	10.0	1.2	19.4
이용-일반직4급	3,799	75.3	0.6	19.9	4.2	20.4
이용-일반직5급	58	70.7	·	15.5	13.8	21.0

□ (월평균 총근로시간) 총 종사자 12,828명의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151.2시간에 월평균 시간외근로 20.5시간을 합친 171.7시간으로 파악됨

○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과 시간외근무시간이 모두 존재하는 종사자 12,828명을 추출하여 분석함

-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월평균 시간외근로시간을 합친 근로시간
- 월평균 시간외근로시간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과 월평균 야간근로시간, 그리고 월평균 휴일근로시간을 합친 값으로 산정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172.1시간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145.3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이 약 26.8시간 더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83.5시간인데 반해 이용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0.9시간으로 생활시설이 약 22.6시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81.1시간인 반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6.0시간으로 약 15.1시간 더 많았음

○ (종사자 규모) 51인 이상을 제외한 종사자 규모에서 시설이 클수록 월평균 총 근로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5인 이하 148.4시간, 6~10인 이하 162.6시간, 11~20인 이하 173.5시간, 21~30인 이하 178.3시간, 31~40인 이하 178.2시간, 41~50인 이하 180.8시간, 등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총 근로시간도 증가하였음

○ (지역) 전체 평균 총 근로시간 171.7시간보다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월평균 총 근로시간이 194.1시간이었고, 다음으로 경상남도(190.1시간), 제주특별자치도(186.1시간)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보호전문기관(219.3시간)이,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 월평균 총 근로시간이 184시간으로 가장 많았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직 중 선임생활지도원이 월 187.6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생활지도원으로 185.7시간이었음

- 이용시설에서는 사무직 2급이 224시간을 근무하는 등 사무직 직원들이 선임사회복지사(173.8시간) 등 사회복지직보다 전반적으로 월평균 총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7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평균 총 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 수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 시간	시간외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야간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전체		12,828	171.7	151.2	20.5	14.4	3.7	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12,625	172.1	151.5	20.7	14.5	3.8	2.4
	여성가족부	203	145.3	137.7	7.6	6.1	0.0	1.5
시설유형	생활시설	6,132	183.5	147.1	36.4	24.1	7.8	4.6
	이용시설	6,696	160.9	155.0	5.8	5.4	0.1	0.3
재원 출처	국고지원	4,862	181.1	145.9	35.2	23.0	7.8	4.4
	지방이양	7,966	166.0	154.5	11.5	9.1	1.3	1.1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418	148.4	137.5	10.9	9.1	0.6	1.2
	6~10인	657	162.6	147.5	15.1	12.4	1.7	1.1
	11~20인 이하	1,076	173.5	153.6	19.9	14.3	3.1	2.4
	21~30인 이하	2,857	178.3	156.9	21.5	15.9	3.1	2.5
	31~40인 이하	2,434	178.2	150.6	27.7	17.8	5.9	4.0
	41~50인 이하	1,679	180.8	154.5	26.4	18.4	5.3	2.7
	51인 이상	3,707	161.9	147.3	14.5	10.0	3.0	1.5
지역	서울특별시	2,788	173.4	158.2	15.2	11.0	2.7	1.5
	부산광역시	752	166.2	144.4	21.8	14.7	4.7	2.4
	대구광역시	554	175.3	149.6	25.7	17.0	7.6	1.1
	인천광역시	501	176.2	152.9	23.3	16.7	2.9	3.7
	광주광역시	364	170.1	150.1	20.0	15.8	2.7	1.5
	대전광역시	461	179.6	149.2	30.4	20.7	6.9	2.8
	울산광역시	114	154.7	147.4	7.3	6.2	1.1	0.0
	세종특별자치시	61	178.7	137.8	41.0	20.3	9.8	10.8
	경기도	3,565	165.6	149.9	15.8	11.1	2.8	1.8
	강원도	152	194.1	152.8	41.3	18.5	17.4	5.4
	충청북도	703	154.7	139.2	15.5	11.5	2.2	1.8
	충청남도	515	185.2	154.6	30.6	21.9	6.8	1.9
	전라북도	639	175.1	151.1	24.1	20.4	1.3	2.4
	전라남도	429	172.2	146.2	26.0	20.0	2.7	3.8
	경상북도	558	176.2	145.1	31.1	21.5	4.7	4.9
	경상남도	601	190.1	158.2	31.9	18.7	6.4	6.8
	제주특별자치도	71	186.1	168.7	17.3	14.0	3.4	0.0

〈표 5-80〉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 수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전체		12,828	171.7	151.2	20.5	14.4	3.7	2.4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223	165.7	132.8	32.9	24.4	5.1	3.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0	176.8	153.6	23.2	10.4	12.8	0.0
	노인여가복지시설	2,142	154.2	151.1	3.2	3.0	0.1	0.1
	노인보호전문기관	17	152.7	151.5	1.1	1.1	0.0	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4	164.2	162.7	1.5	1.5	0.0	0.0
	소계	2,486	155.7	149.9	5.8	4.9	0.6	0.4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982	185.7	149.5	36.2	24.9	5.7	5.6
	아동일시보호시설	33	150.0	149.5	0.5	0.5	0.0	0.0
	아동보호치료시설	69	157.4	129.8	27.7	23.4	4.3	0.0
	자립지원시설	3	164.0	144.0	20.0	0.0	0.0	20.0
	공동생활가정	37	139.5	125.5	14.0	11.7	0.0	2.2
	아동상담소	7	155.4	142.9	12.5	12.5	0.0	0.0
	아동전용시설	4	11.0	10.0	1.0	1.0	0.0	0.0
	지역아동센터	67	150.4	142.7	7.7	6.5	1.0	0.2
	아동보호전문기관	20	219.3	209.0	10.3	10.3	0.0	0.0
	소계	1,222	179.5	147.8	31.8	22.3	4.9	4.6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1,908	188.3	147.8	40.6	26.9	8.9	4.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977	183.9	145.3	38.7	24.1	9.9	4.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20	168.2	138.9	29.4	17.8	10.7	0.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	181.4	160.6	20.9	18.2	0.0	2.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977	168.9	161.1	7.8	7.4	0.1	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60	152.6	141.8	10.7	9.9	0.0	0.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6	152.8	146.1	6.7	3.4	3.1	0.2
	소계	6,698	177.2	150.3	27.0	18.3	5.7	3.0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396	180.5	147.1	33.4	24.2	3.2	6.0
	정신재활생활시설	26	204.2	176.8	27.5	12.8	9.5	5.1
	정신재활이용시설	48	165.8	153.5	12.3	12.3	0.0	0.0
	소계	470	180.3	149.4	30.9	22.3	3.2	5.4
노숙인시설	노숙인재활시설	140	185.0	164.2	20.8	15.7	3.9	1.2
	노숙인요양시설	80	183.0	162.8	20.2	9.8	6.2	4.2
	노숙인일시보호시설	9	133.7	108.7	25.0	14.3	0.0	10.7
	쪽방상담소	7	152.3	139.4	12.9	12.9	0.0	0.0
	소계	236	181.4	160.9	20.5	13.6	4.4	2.5
사회복지관/결	결핵/한센시설	21	169.2	148.3	20.9	20.9	0.0	0.0

구분		사례 수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1,286	170.5	165.5	5.1	4.7	0.0	0.4
	소계	1,307	170.5	165.2	5.3	4.9	0.0	0.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17	164.7	159.1	5.6	4.7	0.0	1.0
	소계	117	164.7	159.1	5.6	4.7	0.0	1.0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89	110.5	110.2	0.3	0.2	0.0	0.2
	소계	89	110.5	110.2	0.3	0.2	0.0	0.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84.0	168.0	16.0	0.0	0.0	16.0
	소계	1	184.0	168.0	16.0	0.0	0.0	16.0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158.4	145.6	12.8	0.0	0.0	12.8
	가정폭력상담소	20	158.7	153.4	5.3	3.7	0.0	1.6
	소계	25	158.6	151.8	6.8	2.9	0.0	3.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7	150.9	134.7	16.2	16.2	0.0	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9	157.5	142.7	14.8	13.9	0.0	0.8
	일시지원복지시설	8	163.8	154.0	9.8	9.8	0.0	0.0
	소계	44	156.1	141.7	14.4	14.1	0.0	0.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26	137.8	132.2	5.5	4.1	0.0	1.4
	소계	126	137.8	132.2	5.5	4.1	0.0	1.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7	159.6	156.6	3.0	3.0	0.0	0.0
	소계	7	159.6	156.6	3.0	3.0	0.0	0.0

〈표 5-8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평균 총 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 수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전체	12,828	171.7	151.2	20.5	14.4	3.7	2.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2,447	184.0	148.0	36.1	23.5	8.5	4.1
생활-관리직	122	165.7	150.0	15.7	14.1	0.5	1.1
생활-기능직	605	185.8	152.6	33.2	27.9	0.2	5.1
생활-기타	24	197.6	167.7	30.0	14.3	13.8	1.8
생활-기타(계약직)	5	135.9	123.9	12.0	9.6	0.0	2.4
생활-기타(촉탁의사)	15	78.5	78.5	0.0	0.0	0.0	0.0
생활-사무국장	201	172.6	152.1	20.5	17.7	0.7	2.1
생활-생활지도원	2,345	185.7	143.9	41.8	25.8	10.4	5.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69	187.6	144.2	43.4	27.1	10.7	5.5
생활-시설장	199	170.9	155.5	15.4	13.9	0.0	1.5
이용-과장	274	161.9	156.4	5.6	5.4	0.0	0.2
이용-관리직 기타	125	160.6	159.5	1.1	1.1	0.0	0.0
이용-관리직(계약직)	8	157.5	157.5	0.0	0.0	0.0	0.0
이용-관리직1급	32	187.6	182.8	4.8	4.8	0.0	0.0
이용-관리직2급	10	174.5	165.3	9.2	9.2	0.0	0.0
이용-관리직3급	62	182.1	173.8	8.3	7.7	0.0	0.6
이용-관리직4급	517	160.9	154.7	6.1	5.8	0.0	0.4
이용-관장	325	167.4	162.3	5.1	4.3	0.2	0.6
이용-기타	502	129.2	127.5	1.7	0.8	0.2	0.6
이용-기타(계약직)	73	130.3	130.3	0.0	0.0	0.0	0.0
이용-기타(미기입)	226	170.2	163.4	6.8	5.9	0.7	0.2
이용-기타(전담 사회복지사)	46	163.8	160.9	2.9	2.8	0.0	0.1
이용-기타(촉탁의사)	3	84.0	84.0	0.0	0.0	0.0	0.0
이용-부장	133	179.7	172.6	7.1	6.6	0.0	0.4
이용-사무국장	71	179.2	166.1	13.1	12.9	0.0	0.2
이용-사무직1급	67	180.0	173.4	6.6	6.0	0.0	0.6
이용-사무직2급	1	224.0	209.0	15.0	15.0	0.0	0.0
이용-사무직3급	97	192.8	185.7	7.1	7.1	0.0	0.0
이용-사무직4급	213	170.5	162.4	8.1	7.7	0.0	0.5
이용-사회복지사	1,781	149.5	146.0	3.5	3.2	0.0	0.3
이용-선임사회복지사	440	173.8	167.5	6.2	5.8	0.0	0.4
이용-의료직1급	2	152.0	152.0	0.0	0.0	0.0	0.0
이용-의료직2급	1	162.0	152.0	10.0	10.0	0.0	0.0
이용-의료직3급	187	171.5	165.4	6.1	5.6	0.4	0.0
이용-의료직4급	18	156.6	151.1	5.5	4.6	0.0	0.9
이용-일반직 기타	4	140.3	136.5	3.8	3.8	0.0	0.0
이용-일반직1급	15	174.0	162.4	11.6	11.6	0.0	0.0
이용-일반직2급	533	172.7	160.6	12.1	11.5	0.0	0.5
이용-일반직3급	26	163.7	153.7	9.9	9.9	0.0	0.0
이용-일반직4급	889	169.2	160.8	8.4	8.0	0.1	0.3
이용-일반직5급	15	166.4	161.5	5.0	5.0	0.0	0.0

□ (월 소정근로시간) 총 근로자 69,313명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 60~174시간 미만, 174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1.2시간이었으며, 60~173시간이 14.2%로 가장 많았고, 175~209시간은 3.7%에 불과했음

○ (기준)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 174시간(40시간÷7일× 365일÷12월) 산출

-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 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월 60시간~174시간 미만으로 분류함
- 월 소정근로시간은 종사자의 일상근무제, 교대제 등 근무형태로 산정된 월 근로시간을 의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151.5시간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137.7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175~209시간을 근무하는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3.9%였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47.1시간인데 반해 이용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5시간으로 이용시설 종사자가 약 8시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45.9시간인 반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약 9시간 더 많았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월 소정근로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5인 이하 137.5시간, 6~10인 이하 147.5시간, 11~20인 이하 153.6시간, 21~30인 이하 156.9시간 등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였음

○ (지역) 전체 평균 소정근로시간 151.2시간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8.2시간이었고, 다음으로 충청남도(154.6시간), 강원도(152.8시간)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사회복지관(165.5시간)과 노숙인시설 (160시간) 내 노숙인재활시설(164.2시간)과 노숙인요양시설(162.8시간)이,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 월평균 168시간으로 가장 많았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선임생활지도원(144.2시간), 생활지도원(143.9시간)은 전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시설의 선임사회복지사는 전체 월평균 151.2시간보다 많은 월평균 167.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8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소정근로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60시간 미만	60 ~ 173시간	174시간	175 ~ 209시간	평균
			%	%	%	%	%	
전체		69,313	81.5	0.5	14.2	0.0	3.7	15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81.1	0.5	14.4	0.0	3.9	151.5
	여성가족부	2,438	91.7	0.2	8.1	-	0.0	137.7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79.1	0.6	17.8	0.0	2.5	147.1
	이용시설	39,910	83.2	0.5	11.6	0.0	4.7	155.0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81.1	0.6	16.5	0.0	1.8	145.9
	지방이양	43,555	81.7	0.5	12.8	0.0	4.9	154.5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92.1	0.5	6.7	-	0.6	137.5
	6~10인	5,929	88.9	0.4	9.6	-	1.1	147.5
	11~20인 이하	9,441	88.6	0.3	8.9	-	2.2	153.6
	21~30인 이하	14,183	79.9	0.6	14.5	0.0	5.0	156.9
	31~40인 이하	10,729	77.3	1.0	16.4	0.0	5.3	150.6
	41~50인 이하	6,563	74.4	0.8	18.7	-	6.0	154.5
	51인 이상	17,155	78.4	0.3	17.7	0.0	3.5	147.3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76.6	0.6	15.9	-	7.0	158.2
	부산광역시	4,802	84.3	1.4	11.6	-	2.7	144.4
	대구광역시	2,711	79.6	1.1	13.8	0.1	5.5	149.6
	인천광역시	3,114	83.9	0.3	13.8	-	2.1	152.9
	광주광역시	1,820	80.0	0.2	17.8	-	2.0	150.1
	대전광역시	1,718	73.2	0.2	23.5	-	3.2	149.2
	울산광역시	1,321	91.4	0.2	7.0	-	1.4	147.4
	세종특별자치시	409	85.1	0.2	14.7	-	-	137.8
	경기도	15,203	76.6	0.8	17.6	0.0	5.0	149.9
	강원도	2,907	94.8	0.1	4.9	-	0.3	152.8
	충청북도	3,969	82.3	0.4	15.9	-	1.5	139.2
	충청남도	3,640	85.9	0.1	12.0	-	2.1	154.6
	전라북도	3,406	81.2	1.1	12.7	0.0	4.8	151.1
	전라남도	3,684	88.4	0.2	10.5	-	1.0	146.2
	경상북도	3,863	85.6	0.1	13.5	-	0.9	145.1
	경상남도	3,489	82.8	0.1	13.6	-	3.5	158.2
	제주특별자치도	1,348	94.7	0.1	1.7	-	3.4	168.7

〈표 5-83〉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60시간 미만	60 ~ 173시간	174시간	175 ~ 209시간	평균
			%	%	%	%	%	
전체		69,313	81.5	0.5	14.2	0.0	3.7	151.2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78.1	2.1	19.7	·	0.2	132.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77.8	·	22.2	·	·	153.6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75.8	0.5	17.0	·	6.7	151.1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93.3	·	6.7	·	·	151.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94.5	·	3.6	·	1.9	162.7
	소계	11,887	79.1	0.6	15.1	·	5.3	149.9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81.4	0.3	15.1	0.0	3.2	149.5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79.5	·	20.5	·	·	149.5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76.7	1.0	21.6	·	0.7	129.8
	자립지원시설	22	86.4	·	13.6	·	·	144.0
	공동생활가정	558	93.4	0.5	5.6	·	0.5	125.5
	아동상담소	37	81.1	·	18.9	·	·	142.9
	아동전용시설	25	84.0	16.0	·	·	·	10.0
	지역아동센터	1,779	96.2	0.2	3.3	·	0.3	142.7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95.4	·	·	·	4.6	209.0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
	소계	8,597	85.8	0.4	11.5	0.0	2.3	147.8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76.8	0.8	19.8	0.0	2.6	147.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75.0	0.6	22.1	·	2.3	145.3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100.0	·	·	·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86.5	0.9	11.5	·	1.0	138.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92.9	·	4.7	·	2.4	160.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80.0	0.6	14.0	·	5.3	16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84.5	0.6	11.2	0.1	3.6	141.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85.6	·	14.4	·	·	146.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100.0	·	·	·	·	·
	소계	32,139	79.2	0.7	16.7	0.0	3.4	150.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76.6	0.4	22.1	·	1.0	147.1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87.7	·	5.2	·	7.1	176.8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80.7	·	19.3	·	·	153.5
	소계	2,149	78.1	0.3	20.1	·	1.5	149.4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100.0	·	·	·	·	·
	노숙인재활시설	535	73.8	0.2	16.6	·	9.3	164.2
	노숙인요양시설	568	85.9	·	9.5	·	4.6	162.8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60시간 미만	60 ~ 173시간	174시간	175 ~ 209시간	평균
			%	%	%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100.0	·	·	·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60.9	·	39.1	·	·	108.7
	쪽방상담소	26	73.1	·	26.9	·	·	139.4
	소계	1,546	84.7	0.1	10.3	·	4.9	160.9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71.2	·	24.7	·	4.1	148.3
	사회복지관	8,475	84.8	0.5	8.2	·	6.5	165.5
	소계	8,548	84.7	0.5	8.4	·	6.4	165.2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90.6	·	8.4	·	1.0	159.1
	소계	1,243	90.6	·	8.4	·	1.0	159.1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88.4	1.3	10.1	·	0.3	110.2
	소계	766	88.4	1.3	10.1	·	0.3	110.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	·	·	·	·
	청소년지원시설	38	100.0	·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100.0	·	·	168.0
	자활지원센터	7	100.0	·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44	100.0	·	·	·	·	·
	소계	103	99.0	·	1.0	·	·	168.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100.0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60	100.0	·	·	·	·	·
	소계	106	100.0	·	·	·	·	·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96.0	·	4.0	·	·	145.6
	가정폭력상담소	161	87.6	·	12.4	·	·	153.4
	긴급전화센터	39	100.0	·	·	·	·	·
	소계	325	92.3	·	7.7	·	·	15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80.7	·	19.3	·	·	134.7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88.2	0.6	10.6	·	0.6	142.7
	일시지원복지시설	29	72.4	·	27.6	·	·	154.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100.0	·	·	·	·	·
	소계	301	85.4	0.3	14.0	·	0.3	141.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91.5	0.3	8.2	·	·	132.2
	소계	1,488	91.5	0.3	8.2	·	·	132.2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93.0	·	7.0	·	·	156.6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	·	·	·	·
	소계	115	93.9	·	6.1	·	·	156.6

〈표 5-8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60시간 미만	60 ~ 173시간	174시간	175 ~ 209시간	평균
		%	%	%	%	%	
전체	69,313	81.5	0.5	14.2	0.0	3.7	151.2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76.2	0.6	20.3	.	2.9	148.0
생활-관리직	629	80.6	0.3	16.4	0.2	2.5	150.0
생활-기능직	2,901	79.1	0.6	17.5	.	2.8	152.6
생활-기타	173	86.1	.	9.2	.	4.6	167.7
생활-기타(계약직)	11	54.5	.	45.5	.	.	123.9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95.3	2.8	1.3	.	0.6	78.5
생활-사무국장	989	79.7	0.6	17.2	.	2.5	152.1
생활-생활지도원	11,989	80.4	0.7	16.8	0.0	2.0	143.9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77.3	0.3	19.8	0.1	2.4	144.2
생활-시설장	1,359	85.4	0.2	12.3	.	2.1	155.5
이용-과장	1,476	81.4	0.7	12.8	.	5.0	156.4
이용-관리직 기타	790	84.2	0.4	9.0	.	6.5	159.5
이용-관리직(계약직)	35	77.1	.	11.4	.	11.4	157.5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00.0	.	.	.	.	.
이용-관리직1급	281	88.6	.	5.7	.	5.7	182.8
이용-관리직2급	26	61.5	.	26.9	.	11.5	165.3
이용-관리직3급	276	77.5	0.4	13.0	.	9.1	173.8
이용-관리직4급	2,473	79.1	1.3	14.1	.	5.5	154.7
이용-관장	2,616	87.6	0.4	8.4	.	3.6	162.3
이용-기타	5,008	90.0	0.4	7.7	0.1	1.8	127.5
이용-기타(계약직)	470	84.5	1.1	11.9	.	2.6	130.3
이용-기타(미기입)	886	74.5	0.5	17.6	.	7.4	163.4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
이용-기타(전담 사회복지사)	208	77.9	1.9	9.6	.	10.6	160.9
이용-기타(촉탁의사)	9	66.7	11.1	22.2	.	.	84.0
이용-부장	782	83.0	0.1	10.4	.	6.5	172.6
이용-사무국장	375	81.1	0.3	12.8	.	5.9	166.1
이용-사무직1급	365	81.6	.	12.3	.	6.0	173.4
이용-사무직2급	37	97.3	.	.	.	2.7	209.0
이용-사무직3급	386	74.9	0.5	7.0	.	17.6	185.7
이용-사무직4급	1,491	85.7	0.9	7.8	.	5.5	162.4
이용-사회복지사	10,396	82.9	0.2	12.8	.	4.2	146.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85.8	0.3	9.2	.	4.7	167.5
이용-의료직1급	26	92.3	.	7.7	.	.	152.0
이용-의료직2급	5	80.0	.	20.0	.	.	152.0
이용-의료직3급	860	78.3	1.0	13.3	.	7.4	165.4
이용-의료직4급	58	69.0	.	19.0	.	12.1	151.1
이용-일반직 기타	31	87.1	.	9.7	.	3.2	136.5
이용-일반직1급	94	84.0	.	14.9	.	1.1	162.4
이용-일반직2급	3,197	83.3	0.4	12.3	.	3.9	160.6
이용-일반직3급	250	89.6	.	9.2	.	1.2	153.7
이용-일반직4급	3,799	76.6	0.8	16.0	.	6.6	160.8
이용-일반직5급	58	74.1	.	13.8	.	12.1	161.5

□ (월 시간외근무시간) 총근로자 69,313명의 월 시간외근무 시간을 월 연장근로 시간과 휴일근로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0시간, 1~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21.7시간이었음

○ (기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52시간(주 12시간×365÷7÷12)까지 가능함

- 사회복지시설의 월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이 생활시설의 경우 최대 40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1~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로 구분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21.9시간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8.3시간을 시간외 근무하고 있었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35.3시간인데 반해 이용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6.1시간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29시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34.7시간인 반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13시간이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월 시간외근무 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5인 이하 시설 10.4시간, 6~10인 이하 16.5시간, 11~20인 이하 19.4시간, 21~30인 이하 23.2시간으로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시간외 근무 시간도 증가함

○ (지역) 전체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 21.7시간보다 매우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37.8시간이었고, 다음으로 경상남도(34.4시간), 제주특별자치도(31.7시간)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에서는 노숙인시설(30.6시간)과 아동복지시설 (29.8시간)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27.3시간)에서 시간외근무 시간이 타 시설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16.2시간)과 성매매피해지원시설(16.0시간)에서 시간외근무 시간이 많았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35.2시간), 선임생활지도원 (40.6시간), 생활지도원 (39.8시간)에서 시간외근무 시간이 타 직위 대비 많았음

- 이용시설에서는 시설 평균 6.1시간보다 많은 직위는 선임사회복지사로 6.4시간이었음

〈표 5-8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시간외근무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	
전체		69,313	73.1	7.0	15.7	1.2	2.9	2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72.5	7.1	16.1	1.3	3.0	21.9
	여성가족부	2,438	89.5	4.3	6.2	·	·	8.3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66.3	3.2	20.7	2.9	6.9	35.3
	이용시설	39,910	78.2	9.8	12.0	0.0	0.0	6.1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71.0	3.7	16.4	2.5	6.3	34.7
	지방이양	43,555	74.3	9.0	15.3	0.5	0.9	13.0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88.3	5.1	6.3	0.1	0.1	10.4
	6~10인	5,929	84.4	3.7	11.2	0.2	0.6	16.5
	11~20인 이하	9,441	83.1	5.3	9.7	0.6	1.3	19.4
	21~30인 이하	14,183	70.4	6.7	19.1	1.0	2.8	23.2
	31~40인 이하	10,729	64.0	6.7	20.8	2.3	6.2	28.1
	41~50인 이하	6,563	66.7	5.8	19.0	2.7	5.7	27.1
	51인 이상	17,155	69.4	10.6	16.2	1.3	2.5	16.5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67.5	9.1	20.1	1.0	2.3	15.9
	부산광역시	4,802	76.7	5.4	14.6	0.6	2.7	22.6
	대구광역시	2,711	58.5	10.4	23.3	0.4	7.3	27.5
	인천광역시	3,114	76.0	5.0	13.6	2.1	3.2	24.8
	광주광역시	1,820	69.1	5.6	21.4	1.5	2.4	21.3
	대전광역시	1,718	67.3	3.4	22.6	2.9	3.7	28.9
	울산광역시	1,321	90.4	3.0	6.4	·	0.3	7.5
	세종특별자치시	409	59.4	2.7	26.9	2.2	8.8	29.2
	경기도	15,203	68.3	9.6	18.8	1.2	2.1	16.6
	강원도	2,907	86.8	2.3	5.6	0.9	4.4	37.8
	충청북도	3,969	76.1	10.7	10.6	1.0	1.6	16.0
	충청남도	3,640	85.2	4.0	6.0	2.0	2.7	30.6
	전라북도	3,406	75.1	6.2	15.9	0.9	1.8	24.2
	전라남도	3,684	81.5	4.8	10.7	1.1	1.9	25.5
	경상북도	3,863	76.3	4.9	11.9	2.5	4.5	30.1
	경상남도	3,489	70.3	5.4	16.5	1.3	6.4	34.4
	제주특별자치도	1,348	85.7	0.7	9.3	1.3	3.0	31.7

〈표 5-86〉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시간외근무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40 시간	41~52 시간	52 시간 초과	평균
			%	%	%	%	%	
전체		69,313	73.1	7.0	15.7	1.2	2.9	21.7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67.6	1.8	25.1	2.2	3.3	31.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77.8	11.1	2.2	·	8.9	23.2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71.7	16.1	12.2	0.0	0.0	3.2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93.3	4.0	2.8	·	·	1.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94.1	4.4	1.5	·	·	2.2
	소계	11,887	75.1	12.9	11.5	0.2	0.3	6.4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69.9	2.7	22.1	1.9	3.5	33.1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67.1	19.9	5.0	·	8.1	18.9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59.1	0.7	36.8	·	3.4	29.8
	자립지원시설	22	86.4	·	13.6	·	·	20.0
	공동생활가정	558	92.3	3.6	3.4	0.2	0.5	12.1
	아동상담소	37	59.5	·	40.5	·	·	12.0
	아동전용시설	25	84.0	8.0	8.0	·	·	1.0
	지역아동센터	1,779	94.1	4.5	1.2	·	0.2	5.9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88.2	3.0	8.8	·	·	8.6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
	소계	8,597	76.9	3.4	16.0	1.2	2.5	29.8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64.0	3.1	20.3	2.9	9.7	39.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61.4	3.5	21.9	4.1	9.1	37.4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82.0	·	6.8	0.3	10.8	55.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78.5	2.8	15.2	0.8	2.7	27.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89.2	4.0	5.7	0.9	0.2	17.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71.6	8.2	20.2	0.0	0.0	7.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79.4	9.0	11.4	0.0	0.1	1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85.0	10.6	3.3	0.6	0.6	6.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85.2	·	13.0	·	1.9	29.2
	소계	32,139	68.8	5.5	18.9	1.8	4.9	27.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62.0	1.7	28.1	4.1	4.1	29.5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79.1	8.1	9.5	1.4	1.9	18.1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78.3	4.4	17.3	·	·	12.3
	소계	2,149	65.6	2.6	25.0	3.4	3.4	27.5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94.2	5.8	·	·	·	0.0
	노숙인재활시설	535	37.9	8.0	34.2	5.8	14.0	32.2
	노숙인요양시설	568	49.1	7.2	27.3	8.1	8.3	30.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100.0	·	·	·	·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40 시간	41~52 시간	52 시간 초과	평균
			%	%	%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60.9	4.3	26.1	8.7	·	25.0
	쪽방상담소	26	73.1	3.8	23.1	·	·	12.9
	소계	1,546	58.2	6.1	22.6	5.1	7.9	30.6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69.9	1.4	28.8	·	·	21.7
	사회복지관	8,475	79.2	9.9	10.9	0.0	·	5.2
	소계	8,548	79.1	9.8	11.1	0.0	·	5.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89.9	4.8	5.2	·	·	5.3
	소계	1,243	89.9	4.8	5.2	·	·	5.3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85.0	12.9	2.1	·	·	0.3
	소계	766	85.0	12.9	2.1	·	·	0.3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	·	·	·	·
	청소년지원시설	38	100.0	·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100.0	·	·	16.0
	자활지원센터	7	100.0	·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44	100.0	·	·	·	·	·
	소계	103	99.0	·	1.0	·	·	16.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100.0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60	100.0	·	·	·	·	·
	소계	106	100.0	·	·	·	·	·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96.0	0.8	3.2	·	·	12.8
	가정폭력상담소	161	84.5	10.6	5.0	·	·	4.2
	긴급전화센터	39	61.5	38.5	·	·	·	0.0
	소계	325	86.2	10.2	3.7	·	·	3.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76.1	·	23.9	·	·	15.4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73.9	5.0	21.1	·	·	17.0
	일시지원복지시설	29	58.6	·	41.4	·	·	14.8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100.0	·	·	·	·	·
	소계	301	75.1	2.7	22.3	·	·	16.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91.3	4.2	4.5	·	·	5.4
	소계	1,488	91.3	4.2	4.5	·	·	5.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93.0	2.0	5.0	·	·	3.0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	·	·	·	·
	소계	115	93.9	1.7	4.3	·	·	3.0

〈표 5-8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시간외근무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	
전체	69,313	73.1	7.0	15.7	1.2	2.9	21.7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63.7	2.8	22.7	3.6	7.2	35.2
생활-관리직	629	67.2	5.1	26.1	0.8	0.8	16.4
생활-기능직	2,901	66.0	2.6	23.6	3.6	4.1	33.7
생활-기타	173	82.1	4.0	10.4	0.6	2.9	27.1
생활-기타(계약직)	11	54.5	9.1	36.4	·	·	12.0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82.0	17.7	·	·	0.3	3.7
생활-사무국장	989	66.7	2.3	30.2	0.4	0.3	20.3
생활-생활지도원	11,989	66.6	3.0	18.6	2.9	8.9	39.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66.2	2.3	19.3	2.9	9.2	40.6
생활-시설장	1,359	76.4	7.0	16.1	0.1	0.4	15.6
이용-과장	1,476	77.6	9.9	12.5	·	·	5.7
이용-관리직 기타	790	77.0	19.4	3.5	·	0.1	2.1
이용-관리직(계약직)	35	65.7	34.3	·	·	·	0.0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00.0	·	·	·	·	·
이용-관리직1급	281	87.2	7.5	5.3	·	·	4.8
이용-관리직2급	26	61.5	7.7	30.8	·	·	9.2
이용-관리직3급	276	70.7	8.0	21.4	·	·	8.0
이용-관리직4급	2,473	73.4	11.9	14.6	·	0.0	6.6
이용-관장	2,616	83.7	10.7	5.5	·	0.1	6.0
이용-기타	5,008	86.9	11.3	1.8	0.0	·	1.5
이용-기타(계약직)	470	81.9	17.2	0.9	·	·	0.2
이용-기타(미기입)	886	63.7	15.9	20.3	·	0.1	5.9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76.4	12.5	11.1	·	·	3.0
이용-기타(촉탁의사)	9	44.4	55.6	·	·	·	0.0
이용-부장	782	78.3	7.2	14.6	·	·	6.9
이용-사무국장	375	72.3	5.1	22.4	·	0.3	13.3
이용-사무직1급	365	77.3	8.5	14.0	0.3	·	6.3
이용-사무직2급	37	94.6	·	5.4	·	·	15.0
이용-사무직3급	386	69.4	8.5	22.0	·	·	6.8
이용-사무직4급	1,491	80.9	6.0	13.0	·	0.1	9.0
이용-사회복지사	10,396	79.3	11.2	9.4	0.0	·	3.6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81.8	6.7	11.5	·	0.0	6.4
이용-의료직1급	26	92.3	7.7	·	·	·	0.0
이용-의료직2급	5	80.0	·	20.0	·	·	10.0
이용-의료직3급	860	73.4	10.2	16.2	0.1	0.1	5.9
이용-의료직4급	58	58.6	19.0	20.7	1.7	·	7.8
이용-일반직 기타	31	83.9	9.7	6.5	·	·	4.3
이용-일반직1급	94	71.3	7.4	21.3	·	·	9.1
이용-일반직2급	3,197	74.1	3.4	22.4	·	0.1	12.7
이용-일반직3급	250	80.4	6.0	13.6	·	·	7.9
이용-일반직4급	3,799	68.1	8.2	23.5	0.1	0.1	8.1
이용-일반직5급	58	70.7	12.1	17.2	·	·	4.4

□ (월 연장근로 시간) 총근로자 69,313명의 월 연장근로 시간을 0시간, 1~52시간, 52시간 초과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15.5시간으로 나타남

○ (기준) 「근로기준법」제53조에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52시간(주 12시간×365÷7÷12)까지 가능함

- 사회복지시설의 월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이 생활시설의 경우 최대 40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1~52시간, 52시간 초과로 구분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15.6시간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7.1시간을 연장근무하고 있었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24.1시간, 이용시설 종사자는 5.7시간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18.4시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23.0시간인 반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10.5시간이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도 증가 경향이 나타남

- 5인 이하 시설 8.9시간, 6~10인 이하 시설 13.8시간, 11~20인 이하 시설 14.9시간, 21~30인 이하 시설 17.0시간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도 증가함

○ (지역) 전체 평균 연장근로 시간 15.5시간보다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24.0시간), 충청남도(22.2시간), 경상북도(21.8시간), 전라남도(21.6시간)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22.4시간)과 노숙인시설 (22.3시간)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20.7시간)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월평균 16.0시간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16.6시간)과 모자가족복지시설 (15.4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이 많았음

○ (직위별)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생활시설의 기능직(월평균 28.6시간)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선임생활지도원(월평균 26.4시간), 생활지도원(월평균 25.7시간) 순으로 많았음

- 이용시설에서는 사무직2급(15.0시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국장 (13.0시간), 일반직2급(12.1시간) 등의 순이었음

〈표 5-8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연장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전체		69,313	73.1	7.7	19.0	0.1	15.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72.5	7.8	19.5	0.1	15.6
	여성가족부	2,438	89.5	5.1	5.5	·	7.1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66.2	4.1	29.4	0.2	24.1
	이용시설	39,910	78.2	10.4	11.4	0.0	5.7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71.0	4.5	24.4	0.1	23.0
	지방이양	43,555	74.3	9.7	15.9	0.1	10.5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88.3	5.8	5.8	0.1	8.9
	6~10인	5,929	84.4	4.3	11.2	0.1	13.8
	11~20인 이하	9,441	83.1	5.9	10.9	0.1	14.9
	21~30인 이하	14,183	70.4	7.3	22.2	0.1	17.0
	31~40인 이하	10,729	64.0	6.9	29.1	0.0	18.7
	41~50인 이하	6,563	66.7	6.5	26.7	·	18.1
	51인 이상	17,155	69.4	11.9	18.5	0.2	12.1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67.5	10.3	22.1	0.0	11.4
	부산광역시	4,802	76.7	5.6	17.7	0.0	17.4
	대구광역시	2,711	58.5	10.5	29.5	1.4	20.5
	인천광역시	3,114	76.0	5.8	18.2	0.0	17.6
	광주광역시	1,820	69.1	7.9	23.0	·	15.9
	대전광역시	1,718	67.3	4.0	28.6	0.1	20.3
	울산광역시	1,321	90.4	3.0	6.7	·	6.4
	세종특별자치시	409	59.4	2.9	36.9	0.7	19.0
	경기도	15,203	68.3	10.4	21.2	0.0	12.1
	강원도	2,907	86.8	2.8	10.1	0.3	18.7
	충청북도	3,969	76.1	11.0	12.9	·	11.9
	충청남도	3,640	85.2	4.1	10.7	·	22.2
	전라북도	3,406	75.1	6.6	18.2	0.0	21.3
	전라남도	3,684	81.4	5.0	13.6	·	21.6
	경상북도	3,863	76.3	5.5	18.0	0.2	21.8
	경상남도	3,489	70.3	7.5	22.2	0.0	17.9
	제주특별자치도	1,348	85.7	0.7	13.5	0.1	24.0

〈표 5-89〉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연장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전체		69,313	73.1	7.7	19.0	0.1	15.5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67.6	3.9	28.4	·	23.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77.8	11.1	11.1	·	10.4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71.7	17.1	11.2	·	3.1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93.3	4.0	2.8	·	1.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94.1	4.4	1.5	·	2.2
	소계	11,887	75.1	13.9	11.1	·	5.4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69.9	3.3	26.6	0.2	24.7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67.1	19.9	13.0	·	10.4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59.1	1.0	39.9	·	25.2
	자립지원시설	22	86.4	13.6	·	·	0.0
	공동생활가정	558	92.3	4.3	2.9	0.5	10.1
	아동상담소	37	59.5	·	40.5	·	12.0
	아동전용시설	25	84.0	8.0	8.0	·	1.0
	지역아동센터	1,779	94.1	4.9	0.8	0.1	4.8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88.2	3.0	8.8	·	8.6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소계	8,597	76.9	3.9	18.9	0.2	22.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64.0	3.8	32.1	0.1	26.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61.4	4.8	33.8	0.0	24.0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82.0	·	18.0	·	23.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78.5	4.0	17.0	0.4	1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89.2	4.0	6.8	·	15.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71.6	8.7	19.8	·	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79.4	9.4	11.1	0.0	11.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85.0	10.6	4.4	·	3.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85.2	13.0	·	1.9	10.0
	소계	32,139	68.8	6.3	24.8	0.1	18.7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62.0	2.1	35.9	·	22.2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79.1	8.5	12.3	·	9.4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78.3	5.6	16.1	·	11.7
	소계	2,149	65.6	3.1	31.3	·	20.7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94.2	5.8	·	·	0.0
	노숙인재활시설	535	37.9	8.0	46.7	7.3	25.4
	노숙인요양시설	568	49.1	9.7	41.2	·	19.9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100.0	·	·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60.9	8.7	30.4	·	14.3
	쪽방상담소	26	73.1	3.8	23.1	·	12.9
	소계	1,546	58.2	7.1	32.1	2.5	22.3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69.9	1.4	28.8	·	21.7
	사회복지관	8,475	79.2	10.5	10.3	·	4.9
	소계	8,548	79.1	10.4	10.5	·	5.1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89.9	5.1	5.0	·	4.4
	소계	1,243	89.9	5.1	5.0	·	4.4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85.0	13.4	1.6	·	0.2
	소계	766	85.0	13.4	1.6	·	0.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	·	·	·
	청소년지원시설	38	100.0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100.0	·	·	0.0
	자활지원센터	7	100.0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44	100.0	·	·	·	·
	소계	103	99.0	1.0	·	·	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100.0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60	100.0	·	·	·	·
	소계	106	100.0	·	·	·	·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96.0	4.0	·	·	0.0
	가정폭력상담소	161	84.5	10.6	5.0	·	2.9
	긴급전화센터	39	61.5	38.5	·	·	0.0
	소계	325	86.2	11.4	2.5	·	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76.1	·	23.9	·	15.4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73.9	5.0	21.1	·	16.6
	일시지원복지시설	29	58.6	·	41.4	·	14.8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100.0	·	·	·	·
	소계	301	75.1	2.7	22.3	·	16.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88	91.3	5.1	3.6	·	4.0
	소계	1,488	91.3	5.1	3.6	·	4.0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93.0	2.0	5.0	·	3.0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	·	·	·
	소계	115	93.9	1.7	4.3	·	3.0

〈표 5-9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연장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전체	69,313	73.1	7.7	19.0	0.1	15.5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63.7	4.0	32.0	0.4	23.4
생활-관리직	629	67.2	5.7	27.0	·	14.1
생활-기능직	2,901	66.0	3.8	29.7	0.5	28.6
생활-기타	173	82.1	4.6	12.7	0.6	15.0
생활-기타(계약직)	11	54.5	9.1	36.4	·	9.6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82.0	18.0	·	·	0.0
생활-사무국장	989	66.7	3.0	30.1	0.1	17.9
생활-생활지도원	11,989	66.6	3.7	29.6	0.1	25.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66.2	2.7	30.8	0.3	26.4
생활-시설장	1,359	76.4	7.6	15.8	0.2	13.9
이용-과장	1,476	77.6	10.0	12.4	·	5.5
이용-관리직 기타	790	77.0	19.7	3.2	0.1	1.7
이용-관리직(계약직)	35	65.7	34.3	·	·	0.0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00.0	·	·	·	·
이용-관리직1급	281	87.2	7.5	5.3	·	4.8
이용-관리직2급	26	61.5	7.7	30.8	·	9.2
이용-관리직3급	276	70.7	8.7	20.7	·	7.5
이용-관리직4급	2,473	73.4	12.5	14.1	·	6.0
이용-관장	2,616	83.7	11.1	5.2	0.0	5.2
이용-기타	5,008	86.9	11.8	1.3	·	0.8
이용-기타(계약직)	470	81.9	17.2	0.9	·	0.2
이용-기타(미기입)	886	63.7	16.5	19.9	·	5.3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76.4	13.0	10.6	·	2.9
이용-기타(촉탁의사)	9	44.4	55.6	·	·	0.0
이용-부장	782	78.3	7.7	14.1	·	6.5
이용-사무국장	375	72.3	5.6	21.9	0.3	13.0
이용-사무직1급	365	77.3	9.0	13.7	·	5.8
이용-사무직2급	37	94.6	·	5.4	·	15.0
이용-사무직3급	386	69.4	8.5	22.0	·	6.8
이용-사무직4급	1,491	80.9	6.2	12.9	·	8.5
이용-사회복지사	10,396	79.3	12.5	8.2	·	3.4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81.8	7.1	11.1	0.0	6.0
이용-의료직1급	26	92.3	7.7	·	·	0.0
이용-의료직2급	5	80.0	·	20.0	·	10.0
이용-의료직3급	860	73.4	10.2	16.4	·	5.5
이용-의료직4급	58	58.6	19.0	22.4	·	7.2
이용-일반직 기타	31	83.9	9.7	6.5	·	4.3
이용-일반직1급	94	71.3	7.4	21.3	·	9.1
이용-일반직2급	3,197	74.1	4.0	21.9	0.0	12.1
이용-일반직3급	250	80.4	6.8	12.8	·	7.1
이용-일반직4급	3,799	68.1	8.5	23.3	·	7.7
이용-일반직5급	58	70.7	12.1	17.2	·	4.4

□ (월 야간근로시간) 총 근로자 69,313명의 월평균 야간근로 시간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3.8시간이었음

○ (기준)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점을 고려하여 0시간, 1~52시간, 52시간 초과로 구분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3.9시간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야간근로시간이 부재하였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7.1시간, 이용시설 종사자는 0.1시간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7시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7.2시간인 반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1.5시간으로 적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월 야간근로 시간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5인 이하 시설 0.5시간, 6~10인 이하 시설1.5시간, 11~20인 이하 시설 2.6시간, 21~30인 이하 시설 3.0시간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야간근로시간도 증가하였음

○ (지역) 전체 평균 야간근로 시간 3.8시간보다 많은 지역은 강원도(14.1시간)였고. 다음으로 충청남도(6.5시간), 경상남도(6.3시간)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노숙인시설이 월평균 6.5시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5.4시간, 아동복지시설이 4.4시간의 순이었음

-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경우, 야간근로 시간은 월평균 22.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12.8시간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선임생활지도원(9.9시간)과 생활지도원(9.8시간), 과장/생활복지사(7.3시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직종 모두 1~52시간 구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음

- 한편 이용시설에서는 직위별 야간근로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9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야간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전체		69,313	73.1	23.0	3.7	0.2	3.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72.5	23.5	3.8	0.2	3.9
	여성가족부	2,438	89.5	10.5	·	·	0.0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66.2	24.7	8.6	0.5	7.1
	이용시설	39,910	78.2	21.7	0.1	0.0	0.1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71.0	20.9	7.7	0.4	7.2
	지방이양	43,555	74.3	24.2	1.3	0.1	1.5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88.3	11.4	0.2	0.1	0.5
	6~10인	5,929	84.4	14.8	0.8	0.1	1.5
	11~20인 이하	9,441	83.1	15.4	1.4	0.2	2.6
	21~30인 이하	14,183	70.4	26.6	2.7	0.2	3.0
	31~40인 이하	10,729	64.0	28.3	7.2	0.4	5.7
	41~50인 이하	6,563	66.7	25.2	7.6	0.5	6.6
	51인 이상	17,155	69.4	26.5	4.1	0.1	3.1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67.5	28.5	3.8	0.2	3.3
	부산광역시	4,802	76.7	20.5	2.6	0.1	3.5
	대구광역시	2,711	58.5	32.4	8.3	0.8	6.1
	인천광역시	3,114	76.0	20.6	3.1	0.3	3.7
	광주광역시	1,820	69.1	27.1	3.7	0.1	3.6
	대전광역시	1,718	67.3	21.7	10.8	0.2	6.1
	울산광역시	1,321	90.4	9.2	0.4	·	1.1
	세종특별자치시	409	59.4	30.3	10.3	·	5.0
	경기도	15,203	68.3	28.1	3.4	0.2	3.0
	강원도	2,907	86.8	8.0	4.5	0.8	14.1
	충청북도	3,969	76.1	20.7	3.2	·	2.3
	충청남도	3,640	85.2	11.3	3.5	0.0	6.5
	전라북도	3,406	75.1	23.9	0.8	0.1	1.0
	전라남도	3,684	81.4	17.7	0.8	0.1	1.7
	경상북도	3,863	76.3	18.6	5.1	·	3.6
	경상남도	3,489	70.3	23.9	5.2	0.6	6.3
	제주특별자치도	1,348	85.7	12.8	1.3	0.2	3.3

〈표 5-92〉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야간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

구 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전체		69,313	73.1	23.0	3.7	0.2	3.8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67.6	27.1	4.7	0.5	5.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77.8	13.3	8.9	·	12.8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71.7	28.3	0.1	·	0.1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93.3	6.7	·	·	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94.1	5.9	·	·	0.0
	소계	11,887	75.1	24.4	0.5	0.0	0.6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69.9	24.2	5.7	0.2	4.8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67.1	24.8	8.1	·	8.5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59.1	37.5	2.4	1.0	4.7
	자립지원시설	22	86.4	13.6	·	·	0.0
	공동생활가정	558	92.3	7.7	·	·	0.0
	아동상담소	37	59.5	40.5	·	·	0.0
	아동전용시설	25	84.0	16.0	·	·	0.0
	지역아동센터	1,779	94.1	5.7	0.2	0.1	0.9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88.2	11.8	·	·	0.0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소계	8,597	76.9	19.1	3.8	0.2	4.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64.0	25.9	9.4	0.7	7.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61.4	24.2	14.1	0.3	9.2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82.0	7.1	9.6	1.2	22.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78.5	16.9	4.0	0.6	7.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89.2	10.6	0.2	·	0.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71.6	28.1	0.3	0.0	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79.4	20.5	0.0	·	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85.0	13.9	0.6	0.6	3.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85.2	14.8	·	·	0.0
	소계	32,139	68.8	24.7	6.2	0.3	5.4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62.0	34.2	3.3	0.5	2.8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79.1	19.0	·	1.9	5.6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78.3	21.7	·	·	0.0
	소계	2,149	65.6	31.3	2.6	0.6	2.7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94.2	5.8	·	·	0.0
	노숙인재활시설	535	37.9	53.5	5.8	2.8	4.5
	노숙인요양시설	568	49.1	33.5	17.4	·	9.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100.0	·	·	·	·

구 분		사례 수	미기입 /입력 오류	0시간	1~52 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60.9	39.1			0.0
	쪽방상담소	26	73.1	26.9			0.0
	소계	1,546	58.2	32.4	8.4	1.0	6.5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69.9	30.1			0.0
	사회복지관	8,475	79.2	20.8			0.0
	소계	8,548	79.1	20.9			0.0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89.9	10.1			0.0
	소계	1,243	89.9	10.1			0.0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85.0	15.0			0.0
	소계	766	85.0	15.0			0.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청소년지원시설	38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00.0			0.0
	자활지원센터	7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44	100.0				
	소계	103	99.0	1.0			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60	100.0				
	소계	106	100.0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96.0	4.0			0.0
	가정폭력상담소	161	84.5	15.5			0.0
	긴급전화센터	39	61.5	38.5			0.0
	소계	325	86.2	13.8			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76.1	23.9			0.0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73.9	26.1			0.0
	일시지원복지시설	29	58.6	41.4			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100.0				
	소계	301	75.1	24.9			0.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91.3	8.7			0.0
	소계	1,488	91.3	8.7			0.0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93.0	7.0			0.0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소계	115	93.9	6.1			0.0

〈표 5-9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야간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52시간	52시간 초과	평균
		%	%	%	%	
전체	69,313	73.1	23.0	3.7	0.2	3.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63.7	26.0	9.7	0.6	7.3
생활-관리직	629	67.2	30.7	1.7	0.3	1.4
생활-기능직	2,901	66.0	33.3	0.6	0.1	0.4
생활-기타	173	82.1	13.9	1.7	2.3	10.7
생활-기타(계약직)	11	54.5	45.5	·	·	0.0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82.0	18.0	·	·	0.0
생활-사무국장	989	66.7	32.7	0.5	0.1	0.4
생활-생활지도원	11,989	66.6	21.3	11.5	0.5	9.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66.2	20.4	12.3	1.1	9.9
생활-시설장	1,359	76.4	23.5	0.1	·	0.1
이용-과장	1,476	77.6	22.4	·	·	0.0
이용-관리직 기타	790	77.0	23.0	·	·	0.0
이용-관리직(계약직)	35	65.7	34.3	·	·	0.0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00.0	·	·	·	·
이용-관리직1급	281	87.2	12.8	·	·	0.0
이용-관리직2급	26	61.5	38.5	·	·	0.0
이용-관리직3급	276	70.7	29.3	·	·	0.0
이용-관리직4급	2,473	73.4	26.3	0.2	·	0.2
이용-관장	2,616	83.7	16.2	0.1	0.0	0.2
이용-기타	5,008	86.9	12.9	0.2	·	0.2
이용-기타(계약직)	470	81.9	18.1	·	·	0.0
이용-기타(미기입)	886	63.7	35.4	0.9	·	0.5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76.4	23.6	·	·	0.0
이용-기타(촉탁의사)	9	44.4	55.6	·	·	0.0
이용-부장	782	78.3	21.7	·	·	0.0
이용-사무국장	375	72.3	27.7	·	·	0.0
이용-사무직1급	365	77.3	22.7	·	·	0.0
이용-사무직2급	37	94.6	5.4	·	·	0.0
이용-사무직3급	386	69.4	30.6	·	·	0.0
이용-사무직4급	1,491	80.9	19.1	·	·	0.0
이용-사회복지사	10,396	79.3	20.7	·	·	0.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81.8	18.2	0.1	·	0.1
이용-의료직1급	26	92.3	7.7	·	·	0.0
이용-의료직2급	5	80.0	20.0	·	·	0.0
이용-의료직3급	860	73.4	26.4	0.1	0.1	0.3
이용-의료직4급	58	58.6	41.4	·	·	0.0
이용-일반직 기타	31	83.9	16.1	·	·	0.0
이용-일반직1급	94	71.3	28.7	·	·	0.0
이용-일반직2급	3,197	74.1	25.7	0.2	·	0.1
이용-일반직3급	250	80.4	19.6	·	·	0.0
이용-일반직4급	3,799	68.1	31.6	0.2	0.0	0.1
이용-일반직5급	58	70.7	29.3	·	·	0.0

□ (월 휴일근로 시간) 총 근로자 69,313명의 월평균 휴일근로 시간을 분석한 결과, 0시간을 제외한 경우, 1~8시간 비율이 가장 높고, 월평균 시간은 2.4시간이었음

○ (기준) 휴일 근로 시간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휴일 근로를 말하고, 0시간부터 32시간 초과(1일 8시간×4일) 시간으로 구분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2.4시간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1.2시간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휴일근로 시간은 4.2시간, 이용시설 종사자는 0.3시간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4시간 정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휴일근로 시간은 4.5시간인데 반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휴일근로 시간은 0.9시간에 불과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31~40인 이하의 정도로 커질 경우까지는 월 휴일근로 시간도 증가 경향이 나타남

- 5인 이하 시설 1.0시간, 6~10인 이하 시설 1.2시간, 11~20인 이하 시설 1.9시간, 21~30인 이하 시설 3.2시간 등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휴일근로 시간도 증가하였음

○ (지역) 전체 평균 휴일근로 시간 2.4시간보다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10.2시간)였고,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5.2시간), 강원도(5.0시간)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내 자립지원시설 (20시간)과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9.2시간),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영유아거주시설(10.5시간)과 노숙인시설 내 노숙인일시보호시설(10.7시간) 등에서 휴일근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6.0시간)과 가정폭력보호시설 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8시간)에서 휴일근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기능직(4.8시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지도원 (4.3시간), 선임생활지도원(4.4시간), 과장 및 생활복지사(4.4시간)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

- 한편 이용시설에서 관장이 0.6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직위에서는 대부분 0.6시간 미만으로 나타나 종사자들의 휴일 근로 시간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됨

〈표 5-9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월 휴일근로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8시간	9~16시간	17~24시간	25~32시간	33시간 이상	평균
			%	%	%		%			
전체		69,313	73.1	23.2	1.5	1.2	0.6	0.2	0.2	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72.5	23.7	1.5	1.2	0.6	0.2	0.2	2.4
	여성가족부	2,438	89.5	8.9	1.0	0.6	·	·	·	1.2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66.2	26.3	2.5	2.6	1.3	0.5	0.5	4.2
	이용시설	39,910	78.2	20.9	0.7	0.1	0.1	0.0	0.0	0.3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71.0	21.4	2.7	2.8	1.4	0.4	0.3	4.5
	지방이양	43,555	74.3	24.2	0.8	0.2	0.1	0.1	0.2	0.9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88.3	10.9	0.3	0.2	0.2	·	0.1	1.0
	6~10인	5,929	84.4	14.5	0.3	0.5	0.3	0.1	0.1	1.2
	11~20인 이하	9,441	83.1	15.0	0.6	0.9	0.3	0.1	0.2	1.9
	21~30인 이하	14,183	70.4	26.3	1.1	1.1	0.6	0.2	0.4	3.2
	31~40인 이하	10,729	64.0	28.4	2.6	2.4	1.9	0.3	0.4	3.7
	41~50인 이하	6,563	66.7	28.2	1.6	2.0	0.6	0.7	0.2	2.4
	51인 이상	17,155	69.4	26.7	2.4	1.0	0.2	0.2	0.1	1.3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67.5	29.8	1.3	0.5	0.2	0.4	0.3	1.2
	부산광역시	4,802	76.7	20.2	1.1	1.5	0.4	·	·	1.8
	대구광역시	2,711	58.5	38.5	1.8	0.8	0.4	0.0	·	0.9
	인천광역시	3,114	76.0	19.8	0.4	1.9	1.2	0.3	0.4	3.5
	광주광역시	1,820	69.1	25.0	4.0	1.2	0.5	0.1	0.1	1.8
	대전광역시	1,718	67.3	26.9	3.0	1.3	1.0	0.2	0.2	2.4
	울산광역시	1,321	90.4	9.6	·	·	·	·	·	0.0
	세종특별자치시	409	59.4	25.7	4.2	6.8	3.2	0.7	·	5.2
	경기도	15,203	68.3	27.8	1.8	1.3	0.5	0.2	0.1	1.5
	강원도	2,907	86.8	8.1	2.3	1.5	0.9	0.2	0.2	5.0
	충청북도	3,969	76.1	21.3	0.7	0.7	0.7	0.4	0.1	1.8
	충청남도	3,640	85.2	12.8	0.9	0.7	0.3	0.1	0.1	1.8
	전라북도	3,406	75.1	21.7	1.2	1.2	0.4	0.2	0.1	1.9
	전라남도	3,684	81.4	15.9	0.8	1.3	0.6	·	0.1	2.4
	경상북도	3,863	76.3	16.8	2.4	2.0	2.0	0.3	0.2	4.6
	경상남도	3,489	70.3	24.7	0.7	1.3	0.8	0.3	1.9	10.2
	제주특별자치도	1,348	85.7	10.1	1.4	1.9	0.5	0.3	0.1	4.3

〈표 5-95〉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월 휴일근로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시간	1~8시간	9~16시간	17~24시간	25~32시간	33시간 이상	평균
			%	%	%	%	%	%	%	
전체		69,313	73.1	23.2	1.5	1.2	0.6	0.2	0.2	2.4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67.6	27.2	0.9	2.9	0.9	0.2	0.2	2.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77.8	22.2	·	·	·	·	·	0.0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71.7	26.5	1.8	·	0.0	·	·	0.1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93.3	6.7	·	·	·	·	·	0.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94.1	5.9	·	·	·	·	·	0.0
	소계	11,887	75.1	23.2	1.4	0.3	0.1	0.0	0.0	0.4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69.9	26.9	1.0	0.4	0.6	0.4	0.9	3.6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67.1	32.9	·	·	·	·	·	0.0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59.1	40.9	·	·	·	·	·	0.0
	자립지원시설	22	86.4	·	·	·	13.6	·	·	20.0
	공동생활가정	558	92.3	7.0	0.2	·	0.4	0.2	·	1.9
	아동상담소	37	59.5	40.5	·	·	·	·	·	0.0
	아동전용시설	25	84.0	16.0	·	·	·	·	·	0.0
	지역아동센터	1,779	94.1	5.6	0.3	·	·	·	·	0.2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88.2	11.8	·	·	·	·	·	0.0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	·	·
	소계	8,597	76.9	20.9	0.7	0.2	0.4	0.3	0.5	3.0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64.0	25.9	3.4	4.1	1.7	0.4	0.5	5.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61.4	28.2	3.3	3.9	2.0	0.7	0.5	4.2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82.0	7.1	2.2	4.6	4.0	·	·	10.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78.5	20.5	0.2	0.8	·	·	·	0.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89.2	10.6	·	·	·	·	0.2	1.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71.6	27.8	0.4	0.1	0.1	0.0	0.0	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79.4	19.8	0.2	0.1	0.1	0.0	0.3	0.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85.0	14.4	0.6	·	·	·	·	0.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85.2	·	·	1.9	13.0	·	·	19.2
	소계	32,139	68.8	25.6	1.9	2.1	1.0	0.3	0.3	3.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62.0	26.5	5.9	2.4	1.8	1.1	0.4	4.5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79.1	16.1	3.3	0.5	·	0.5	0.5	3.0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78.3	20.5	·	1.2	·	·	·	0.6
	소계	2,149	65.6	24.8	4.9	2.1	1.4	0.9	0.3	4.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94.2	5.8	·	·	·	·	·	0.0
	노숙인재활시설	535	37.9	54.8	2.1	1.9	0.6	1.5	1.3	2.3
	노숙인요양시설	568	49.1	48.4	0.4	0.5	0.4	1.2	·	1.1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100.0	·	·	·	·	·	·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오류	0시간	1~8시간	9~16시간	17~24시간	25~32시간	33시간 이상	평균
			%	%	%	%	%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60.9	8.7	8.7	21.7	·	·	·	10.7
	쪽방상담소	26	73.1	26.9	·	·	·	·	·	0.0
	소계	1,546	58.2	37.9	1.0	1.2	0.3	1.0	0.5	1.9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69.9	30.1	·	·	·	·	·	0.0
	사회복지관	8,475	79.2	20.1	0.5	0.1	0.0	0.0	0.1	0.3
	소계	8,548	79.1	20.2	0.5	0.1	0.0	0.0	0.1	0.3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89.9	9.3	·	0.6	·	0.1	·	0.9
	소계	1,243	89.9	9.3	·	0.6	·	0.1	·	0.9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85.0	14.5	0.5	·	·	·	·	0.1
	소계	766	85.0	14.5	0.5	·	·	·	·	0.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	·	·	·	·	·	·
	청소년지원시설	38	100.0	·	·	·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	100.0	·	·	·	16.0
	자활지원센터	7	100.0	·	·	·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44	100.0	·	·	·	·	·	·	·
	소계	103	99.0	·	·	1.0	·	·	·	16.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100.0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60	100.0	·	·	·	·	·	·	·
	소계	106	100.0	·	·	·	·	·	·	·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96.0	0.8	·	3.2	·	·	·	12.8
	가정폭력상담소	161	84.5	13.0	2.5	·	·	·	·	1.3
	긴급전화센터	39	61.5	38.5	·	·	·	·	·	0.0
	소계	325	86.2	11.4	1.2	1.2	·	·	·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76.1	23.9	·	·	·	·	·	0.0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	·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73.9	25.5	·	0.6	·	·	·	0.4
	일시지원복지시설	29	58.6	41.4	·	·	·	·	·	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100.0	·	·	·	·	·	·	·
	소계	301	75.1	24.6	·	0.3	·	·	·	0.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91.3	6.7	1.3	0.6	·	·	·	1.4
	소계	1,488	91.3	6.7	1.3	0.6	·	·	·	1.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93.0	7.0	·	·	·	·	·	0.0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	·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	·	·	·	·	·	·
	소계	115	93.9	6.1	·	·	·	·	·	0.0

〈표 5-9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월 휴일근로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오류	0시간	1~8시간	9~16시간	17~24시간	25~32시간	33시간 이상	평균
		%	%	%	%	%	%	%	
전체	69,313	73.1	23.2	1.5	1.2	0.6	0.2	0.2	2.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63.7	27.8	3.1	3.1	1.2	0.6	0.5	4.4
생활-관리직	629	67.2	30.4	1.1	0.8	0.5	·	·	0.9
생활-기능직	2,901	66.0	25.5	2.1	3.2	2.0	0.7	0.5	4.8
생활-기타	173	82.1	14.5	3.5	·	·	·	·	1.4
생활-기타(계약직)	11	54.5	36.4	·	9.1	·	·	·	2.4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82.0	17.7	·	·	·	·	0.3	3.7
생활-사무국장	989	66.7	29.3	2.5	0.8	0.4	·	0.2	2.0
생활-생활지도원	11,989	66.6	25.7	2.4	2.6	1.5	0.5	0.6	4.4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66.2	24.3	2.9	3.5	1.9	1.1	0.1	4.3
생활-시설장	1,359	76.4	22.1	0.4	0.4	0.4	0.1	0.1	1.6
이용-과장	1,476	77.6	21.9	0.4	0.1	·	·	·	0.2
이용-관리직 기타	790	77.0	22.5	·	·	0.5	·	·	0.4
이용-관리직(계약직)	35	65.7	34.3	·	·	·	·	·	0.0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00.0	·	·	·	·	·	·	·
이용-관리직1급	281	87.2	12.8	·	·	·	·	·	0.0
이용-관리직2급	26	61.5	38.5	·	·	·	·	·	0.0
이용-관리직3급	276	70.7	28.3	0.4	0.4	0.4	·	·	0.4
이용-관리직4급	2,473	73.4	25.8	0.3	0.2	0.1	0.0	0.0	0.4
이용-관장	2,616	83.7	15.8	0.2	0.2	0.1	·	0.1	0.6
이용-기타	5,008	86.9	12.6	0.2	0.3	0.0	0.0	0.0	0.5
이용-기타(계약직)	470	81.9	18.1	·	·	·	·	·	0.0
이용-기타(미기입)	886	63.7	35.3	0.9	0.1	·	·	·	0.1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76.4	22.1	1.4	·	·	·	·	0.1
이용-기타(촉탁의사)	9	44.4	55.6	·	·	·	·	·	0.0
이용-부장	782	78.3	21.1	0.3	0.1	0.1	0.1	·	0.4
이용-사무국장	375	72.3	26.4	1.1	·	0.3	·	·	0.4
이용-사무직1급	365	77.3	21.9	0.3	0.3	·	0.3	·	0.5
이용-사무직2급	37	94.6	5.4	·	·	·	·	·	0.0
이용-사무직3급	386	69.4	30.6	·	·	·	·	·	0.0
이용-사무직4급	1,491	80.9	18.6	0.2	0.1	·	·	0.1	0.5
이용-사회복지사	10,396	79.3	18.7	1.9	0.0	0.0	·	0.0	0.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81.8	17.6	0.3	0.2	·	0.0	0.1	0.4
이용-의료직1급	26	92.3	7.7	·	·	·	·	·	0.0
이용-의료직2급	5	80.0	20.0	·	·	·	·	·	0.0
이용-의료직3급	860	73.4	26.5	0.1	·	·	·	·	0.0
이용-의료직4급	58	58.6	39.7	·	1.7	·	·	·	0.7
이용-일반직 기타	31	83.9	16.1	·	·	·	·	·	0.0
이용-일반직1급	94	71.3	28.7	·	·	·	·	·	0.0
이용-일반직2급	3,197	74.1	25.0	0.5	0.1	0.2	0.0	0.2	0.6
이용-일반직3급	250	80.4	18.8	·	·	0.8	·	·	0.8
이용-일반직4급	3,799	68.1	31.2	0.3	0.1	0.1	·	0.1	0.3
이용-일반직5급	58	70.7	29.3	·	·	·	·	·	0.0

□ (타 산업 분야와 비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총근로일수는 19.7일로 전산업 전체 평균 19.6일과 수준이 비슷하나 초과 근로시간이 많아 총 근로시간이 제조업(180시간) 및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68.8시간) 의 수준으로 파악

○ (전체 근로일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월 19.7일 근무로 농업, 임업 및 어업(19.8일), 금융 및 보험업(19.8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휴일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균 2.4시간으로 전체 산업 2.2시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세부 산업에서는 농업, 임업 및 어업(2.4시간)과 동일한 수준이었음

○ (초과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균 20.5시간으로 전체 산업 평균 7.5시간 대비 약 2.7배 정도 많았으며, 특히 전산업에서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광업(19.4시간)보다도 많았음

○ (소정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51.2시간으로 전체 산업 평균 147.4시간보다 약간 많은 편이었고, 도매 및 소매업(152.4시간)과 운수 및 창고업(152.4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은 171.7시간으로 파악되었으며, 18개 산업 분류 중 총 근로시간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5-97〉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근로기간

(단위: 시간, 일)

구분		총근로일수 (일)	총근로시간 (시간)	소정실근로 시간 (시간)	초과근로 시간 (시간)	휴일근로시간 (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7	171.7	151.2	20.5	2.4
전산업	전체	19.6	154.9	147.4	7.5	2.2
	농업, 임업 및 어업	19.8	153.7	149.2	4.5	2.4
	광업	21.8	180.0	160.6	19.4	8.7
	제조업	20.4	174.1	156.7	17.4	5.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0.3	168.8	160.6	8.1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1	177.0	162.3	14.7	4.6
	건설업	16.1	128.8	125.7	3.2	0.8
	도매 및 소매업	20.1	155.9	152.4	3.5	1.1
	운수 및 창고업	20.3	164.4	152.4	11.9	3.2
	숙박 및 음식점업	18.3	130.1	126.3	3.8	1.2
	정보통신업	19.9	160.7	156.4	4.3	0.7
	금융 및 보험업	19.8	161.1	156.6	4.5	0.4
	부동산업	19.2	166.9	165.2	1.7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9	159.6	155.6	3.9	0.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6	157.6	149.6	8.0	2.9
	교육 서비스업	17.8	128.5	125.8	2.8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4	145.9	141.4	4.5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2	144.5	139.0	5.5	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3	155.2	152.2	3.0	1.0

주: 전산업 자료는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참조

□ (연차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는 16~25일이 9.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5.9일이었음

○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의 줄임 말로 연차발생기준은 1년에 80%이상 근무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근속연수 3년 이상 출근한 자는 1일을 가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부여
- 단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됨
- 연차일이 0인 경우는 1개월 미만 신입사원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인 경우로 추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연 15.9일,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연 15.7일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평균 연차일은 16.3일, 이용시설 종사자는 15.4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1일 정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연차일은 16.1일인데 반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연차일은 15.7일이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연차일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5인 이하 시설 14.7일, 6~10인 이하 시설 15.4일, 11~20인 이하 시설 15.5일, 21~30인 이하 시설 16.0일로 규모가 커질수록 연차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 전체 연차 평균 15.9일보다 많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19.0일), 대구광역시(18.4일) 순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총 연차 일이 평균 12.1일로 가장 적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은 평균 21.0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평균 18.8일인 반면에 아동공동생활가정(11.6일)과 다함께돌봄센터(11.2일)가 가장 적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평균 17.3일로 가장 많은 반면,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자활지원센터가 12.3일로 가장 적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시설장(19.3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임생활지도원 (19.8일), 과장 및 생활복지사(16.7일), 생활지도원(15.8일) 등의 순이었음

- 한편 이용시설에서는 관리직과 사무직의 총 연차 일이 높은 가운데 부장이 19.4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국장(18.8일), 관장(18.6)일, 과장(16.8일), 선임사회복지사(16.4일), 사회복지사(14.1일)의 순이었음

〈표 5-9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연차일

(단위: 명, 일,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오류	0일	1~11일	12~15일	16~25일	26일 이상	평균
			%	%	%	%	%	%	
전체		69,313	80.9	0.6	2.9	5.1	9.8	0.7	15.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80.8	0.6	2.9	5.2	9.8	0.7	15.9
	여성가족부	2,438	84.2	0.0	2.4	4.6	8.3	0.4	15.7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75.7	0.7	3.3	6.0	13.4	0.9	16.3
	이용시설	39,910	84.8	0.5	2.6	4.5	7.1	0.6	15.4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78.1	0.8	3.1	5.3	11.9	0.8	16.1
	지방이양	43,555	82.6	0.5	2.8	5.0	8.5	0.6	15.7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86.2	0.6	2.5	3.9	6.5	0.2	14.7
	6~10인	5,929	82.0	0.5	2.7	5.7	8.8	0.3	15.4
	11~20인 이하	9,441	78.6	0.5	3.8	5.6	10.8	0.7	15.5
	21~30인 이하	14,183	77.1	0.6	3.5	5.8	12.1	0.9	16.0
	31~40인 이하	10,729	78.6	1.1	3.0	5.1	11.8	0.6	15.7
	41~50인 이하	6,563	78.2	1.0	3.6	5.3	11.5	0.4	15.8
	51인 이상	17,155	85.9	0.1	1.7	4.6	6.7	1.1	16.9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84.1	0.3	2.4	4.6	8.3	0.3	15.7
	부산광역시	4,802	81.5	1.1	3.1	4.1	9.5	0.8	15.4
	대구광역시	2,711	72.8	0.4	2.4	5.6	16.3	2.5	18.4
	인천광역시	3,114	84.7	0.2	2.7	3.5	8.1	0.7	16.1
	광주광역시	1,820	82.7	0.4	1.8	6.6	8.4	0.1	15.6
	대전광역시	1,718	80.3	0.6	3.3	3.7	11.8	0.2	15.9
	울산광역시	1,321	79.3	3.3	6.1	4.8	5.8	0.6	12.1
	세종특별자치시	409	81.7	0.2	3.2	2.9	12.0		19.0
	경기도	15,203	82.9	0.4	3.2	4.8	7.7	0.9	15.4
	강원도	2,907	76.1	0.3	3.3	7.4	12.1	0.8	16.1
	충청북도	3,969	78.8	0.2	2.8	7.2	9.9	1.1	16.6
	충청남도	3,640	84.9	0.2	1.8	4.9	7.9	0.4	16.0
	전라북도	3,406	79.7	0.1	2.1	5.4	12.5	0.2	16.7
	전라남도	3,684	76.3	0.2	3.4	5.9	13.4	0.9	16.8
	경상북도	3,863	72.1	2.5	3.5	7.0	14.4	0.5	14.9
	경상남도	3,489	80.7	1.1	2.7	4.3	10.3	0.8	15.8
	제주특별자치도	1,348	84.1	0.1	2.6	5.2	7.8	0.2	15.5

〈표 5-99〉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연차일

(단위: 명, 일,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일	1~11일	12~15일	16~25일	26일 이상	평균
			%	%	%	%	%	%	
전체		69,313	80.9	0.6	2.9	5.1	9.8	0.7	15.9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89.0	0.3	2.7	2.8	5.3	·	14.9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80.0	·	8.9	4.4	6.7	·	13.4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87.5	0.2	2.0	4.4	5.3	0.6	15.5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83.4	1.2	5.9	4.0	4.7	0.8	13.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83.6	0.6	7.0	3.1	5.4	0.3	13.7
	소계	11,887	86.9	0.3	2.9	4.1	5.3	0.5	15.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69.9	0.2	4.6	8.9	15.2	1.2	16.2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99.4	·	·	·	0.6	·	21.0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85.5	·	0.7	1.7	12.2	·	17.4
	자립지원시설	22	63.6	·	4.5	13.6	18.2	·	15.8
	공동생활가정	558	91.4	1.3	2.5	2.3	2.0	0.5	11.6
	아동상담소	37	81.1	·	2.7	2.7	13.5	·	17.1
	아동전용시설	25	100.0	·	·	·	·	·	·
	지역아동센터	1,779	86.7	0.8	2.4	3.5	6.5	0.1	14.4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81.2	·	3.9	6.5	8.4	·	14.4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	·
	소계	8,597	76.6	0.4	3.7	6.8	11.7	0.8	15.8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76.1	0.3	3.0	6.0	13.7	0.9	16.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74.9	1.3	3.2	5.3	13.9	1.4	16.3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77.1	0.3	2.8	6.2	13.6	·	16.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70.1	1.3	7.1	9.0	12.1	0.4	13.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91.7	0.2	0.9	3.8	3.3	·	14.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88.5	0.1	1.5	3.4	6.2	0.3	1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85.2	1.5	1.6	3.4	8.0	0.3	14.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86.1	·	3.3	·	8.3	2.2	18.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81.5	·	·	3.7	11.1	3.7	18.8
	소계	32,139	80.9	0.7	2.5	4.7	10.5	0.7	16.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79.2	2.1	1.5	3.5	13.5	0.2	16.1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81.5	·	3.8	5.2	8.5	0.9	16.2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83.9	·	1.6	4.0	8.4	2.0	18.2
	소계	2,149	79.9	1.7	1.7	3.7	12.4	0.5	16.3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92.9	·	1.3	3.2	2.6	·	15.1
	노숙인재활시설	535	58.7	0.2	2.1	7.3	30.8	0.9	18.2
	노숙인요양시설	568	66.0	·	1.9	10.7	21.3	·	17.3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89.2	·	1.3	1.3	7.9	0.4	18.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39.1	·	·	21.7	39.1	·	17.5
	쪽방상담소	26	73.1	·	11.5	3.8	11.5	·	13.8
	소계	1,546	69.5	0.1	1.9	7.4	20.8	0.4	17.7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75.3	·	1.4	5.5	17.8	·	17.4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일	1~11일	12~15일	16~25일	26일 이상	평균
			%	%	%	%	%	%	
	사회복지관	8,475	79.0	0.8	3.4	6.3	9.3	1.1	15.5
	소계	8,548	79.0	0.8	3.4	6.3	9.4	1.1	15.6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75.5	0.4	3.2	6.8	13.9	0.2	15.6
	소계	1,243	75.5	0.4	3.2	6.8	13.9	0.2	15.6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81.9	0.5	8.2	7.7	1.3	0.4	11.2
	소계	766	81.9	0.5	8.2	7.7	1.3	0.4	11.2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	.	.	.	.	.
	청소년지원시설	38	100.0	.	.	.	.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00.0	.	.	.	.	.	.
	자활지원센터	7	71.4	.	14.3	14.3	.	.	12.3
	성매매피해상담소	44	81.8	.	2.3	9.1	6.8	.	15.8
	소계	103	90.3	.	1.9	4.9	2.9	.	15.1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69.6	.	4.3	10.9	15.2	.	14.5
	성폭력피해상담소	60	91.7	.	1.7	1.7	5.0	.	16.2
	소계	106	82.1	.	2.8	5.7	9.4	.	14.9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87.2	.	2.4	4.0	5.6	0.8	16.0
	가정폭력상담소	161	78.9	.	0.6	8.7	11.8	.	16.5
	긴급전화센터	39	100.0	.	.	.	.	.	.
	소계	325	84.6	.	1.2	5.8	8.0	0.3	16.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85.2	.	.	4.5	10.2	.	18.8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87.0	.	1.2	.	11.8	.	17.3
	일시지원복지시설	29	72.4	.	3.4	3.4	20.7	.	16.3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42.9	.	14.3	28.6	14.3	.	13.0
	소계	301	84.7	.	1.3	2.3	11.6	.	17.2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84.3	0.1	2.6	4.4	8.1	0.5	15.6
	소계	1,488	84.3	0.1	2.6	4.4	8.1	0.5	15.6
청소년복지 시설	청소년쉼터	100	75.0	.	7.0	10.0	8.0	.	13.3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	.	.	.	.	.
	소계	115	78.3	.	6.1	8.7	7.0	.	13.3

〈표 5-1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차일

(단위: 명, 일,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일	1~11일	12~15일	16~25일	26일 이상	평균
		%	%	%	%	%	%	
전체	69,313	80.9	0.6	2.9	5.1	9.8	0.7	15.9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74.9	0.5	3.2	5.6	15.2	0.6	16.7
생활-관리직	629	77.4	0.2	1.4	4.6	15.7	0.6	17.4
생활-기능직	2,901	75.8	0.7	4.1	7.0	11.8	0.6	15.2
생활-기타	173	89.6	0.6	6.4	1.7	1.7	·	8.2
생활-기타(계약직)	11	90.9	·	·	·	9.1	·	20.0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78.8	10.8	0.9	1.6	7.9	·	8.1
생활-사무국장	989	76.5	0.5	1.3	2.9	17.0	1.7	19.1
생활-생활지도원	11,989	75.5	0.6	3.8	7.4	11.6	1.1	15.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74.8	0.4	0.5	1.1	20.9	2.3	19.8
생활-시설장	1,359	79.8	0.4	1.3	2.8	14.3	1.4	19.3
이용-과장	1,476	82.8	0.3	2.2	3.6	10.6	0.5	16.8
이용-관리직 기타	790	92.4	2.4	1.3	1.5	2.2	0.3	10.4
이용-관리직(계약직)	35	94.3	·	·	2.9	2.9	·	15.5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00.0	·	·	·	·	·	·
이용-관리직1급	281	89.7	0.4	0.7	2.1	7.1	·	16.1
이용-관리직2급	26	92.3	·	·	3.8	3.8	·	15.8
이용-관리직3급	276	82.6	·	1.1	1.1	12.7	2.5	19.3
이용-관리직4급	2,473	85.6	0.4	2.7	4.3	6.6	0.3	14.6
이용-관장	2,616	82.6	0.3	1.0	2.6	12.9	0.6	18.6
이용-기타	5,008	88.4	1.0	4.6	2.5	3.3	0.2	12.3
이용-기타(계약직)	470	90.0	1.1	2.3	3.6	3.0	·	12.4
이용-기타(미기입)	886	83.9	0.3	2.6	10.0	2.7	0.5	14.5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77.4	1.0	9.1	8.2	4.3	·	12.5
이용-기타(촉탁의사)	9	100.0	·	·	·	·	·	·
이용-부장	782	79.2	0.1	0.5	4.0	15.5	0.8	19.4
이용-사무국장	375	85.3	·	1.1	2.4	10.9	0.3	18.8
이용-사무직1급	365	79.5	·	0.8	1.6	16.7	1.4	20.3
이용-사무직2급	37	78.4	·	·	2.7	16.2	2.7	19.5
이용-사무직3급	386	82.9	·	0.8	2.1	14.2	·	17.5
이용-사무직4급	1,491	85.8	0.7	2.5	4.0	6.4	0.5	14.5
이용-사회복지사	10,396	85.1	0.5	3.4	6.5	3.7	0.9	14.1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77.4	0.3	1.7	5.3	14.8	0.6	16.4
이용-의료직1급	26	80.8	·	·	3.8	15.4	·	17.8
이용-의료직2급	5	100.0	·	·	·	·	·	·
이용-의료직3급	860	86.9	0.6	2.0	2.1	7.7	0.8	16.1
이용-의료직4급	58	89.7	·	·	·	10.3	·	18.3
이용-일반직 기타	31	93.5	3.2	·	·	3.2	·	9.0
이용-일반직1급	94	79.8	·	·	3.2	17.0	·	19.2
이용-일반직2급	3,197	84.1	0.4	1.6	3.8	9.9	0.3	16.6
이용-일반직3급	250	85.6	·	·	1.2	12.8	0.4	18.3
이용-일반직4급	3,799	86.1	0.2	2.1	5.0	6.2	0.4	15.3
이용-일반직5급	58	94.8	·	·	5.2	·	·	14.5

□ (연차 사용일 수) 종사자 중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0이라고 기입한 비율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차 사용일수는 5.6일로 나타남

○ (분석기준)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0이라고 기입한 비율이 34.1%에 달하고, 이로인해 평균 연차 사용일수가 5.6일로 적은 것은 시설에서 연차 사용일에 대한 기록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누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사자 대상 웹조사에서 연차 사용일에 대한 현황을 재조사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5.5일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6.5일을 평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평균 사용 연차 일은 6.3일을, 이용시설 종사자는 4.8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1.5일 정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평균 사용 연차 일은 6.0일이었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사용 연차는 5.3일이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연차 사용량이 증가함

- 5인 이하 시설 4.9일, 6~10인 이하 시설 5.1일, 11~20인 이하 시설 5.9일, 21~30인 이하 시설 5.9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 전체 평균 사용 연차 5.6일보다 많은 지역은 울산광역시(8.2일), 대구광역시(7.3일), 제주특별자치도(7.2일) 순이었으며, 반면 사용 연차일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특별시(4.4일), 경기도(4.2일)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연차 사용일이 가장 많은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12.6일이고,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내 가정위탁지원센터(11.5일) 등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성매매피해상담소가 13.1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시설 내 청소년쉼터가 10.4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선임생활지도원이 7.5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국장(6.7일), 과장 및 생활복지사(6.6일), 생활지도원(6.2일)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은 약 7일 정도의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이용시설에서 선임사회복지사는 평균 7.1일, 사회복지사는 평균 4.0일로 생활시설 대비 낮은 편이었음

〈표 5-1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사용 연차일

(단위: 명, 일,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일	1~11일	12~15일	16~25일	26일 이상	평균
			%	%	%	%	%	%	
전체		69,313	39.5	34.1	10.0	6.9	9.4	0.2	5.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38.9	34.6	10.0	6.9	9.4	0.2	5.5
	여성가족부	2,438	55.7	19.7	10.1	7.1	7.1	0.2	6.5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27.6	38.3	11.7	8.4	13.7	0.2	6.3
	이용시설	39,910	48.2	31.0	8.8	5.8	6.1	0.1	4.8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32.8	36.5	11.0	7.6	11.8	0.2	6.0
	지방이양	43,555	43.4	32.6	9.4	6.5	7.9	0.2	5.3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50.7	24.7	14.0	5.6	5.0	0.0	4.9
	6~10인	5,929	46.4	28.0	13.2	6.2	6.1	0.0	5.1
	11~20인 이하	9,441	40.0	30.1	13.0	7.8	8.8	0.3	5.9
	21~30인 이하	14,183	31.6	36.6	11.7	8.2	11.6	0.3	5.9
	31~40인 이하	10,729	31.5	40.8	8.4	7.4	11.8	0.2	5.6
	41~50인 이하	6,563	33.1	38.7	9.4	6.9	11.8	0.1	5.7
	51인 이상	17,155	47.2	33.2	5.9	5.8	7.8	0.2	5.2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43.4	36.2	8.2	5.0	7.1	0.1	4.4
	부산광역시	4,802	43.6	30.4	9.5	7.2	9.3	0.2	5.9
	대구광역시	2,711	22.3	36.8	14.5	8.9	16.5	1.0	7.3
	인천광역시	3,114	47.3	30.5	7.1	6.2	8.7	0.3	5.8
	광주광역시	1,820	26.8	42.4	11.6	9.9	9.2	·	5.1
	대전광역시	1,718	31.3	38.5	14.6	7.2	8.4	·	4.9
	울산광역시	1,321	55.6	17.3	9.1	6.6	11.3	0.1	8.2
	세종특별자치시	409	44.7	24.7	18.6	3.2	8.8	·	5.5
	경기도	15,203	43.0	38.0	7.2	5.0	6.7	0.1	4.2
	강원도	2,907	35.3	32.9	11.6	8.2	12.0	·	6.2
	충청북도	3,969	33.0	34.0	13.7	9.8	9.2	0.2	6.0
	충청남도	3,640	43.8	25.8	12.1	8.0	10.1	0.1	6.8
	전라북도	3,406	39.9	24.0	11.9	9.7	14.4	0.1	8.0
	전라남도	3,684	33.2	36.6	11.3	8.3	10.4	0.1	5.8
	경상북도	3,863	32.8	33.4	11.1	8.5	14.1	0.1	6.8
	경상남도	3,489	33.6	38.0	11.5	7.3	8.7	0.9	5.4
	제주특별자치도	1,348	43.5	24.8	11.9	8.3	11.5	·	7.2

〈표 5-102〉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사용 연차일

(단위: 명, 일,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일	1~11일	12~15일	16~25일	26일 이상	평균
			%	%	%	%	%	%	
전체		69,313	39.5	34.1	10.0	6.9	9.4	0.2	5.6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39.3	33.3	14.2	5.5	7.7	·	4.9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55.6	24.4	15.6	·	4.4	·	4.0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53.7	30.3	6.6	4.6	4.8	0.1	4.2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62.8	25.3	4.7	2.4	4.7	·	4.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55.9	25.9	10.7	4.8	2.7	0.1	4.6
	소계	11,887	53.0	29.8	7.8	4.6	4.7	0.1	4.3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23.1	32.9	16.6	11.5	15.4	0.5	7.3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34.8	54.0	6.2	3.7	1.2	·	1.7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18.9	37.2	10.5	13.9	19.6	·	7.8
	자립지원시설	22	4.5	50.0	9.1	13.6	22.7	·	7.3
	공동생활가정	558	61.8	23.5	9.9	2.3	2.5	·	3.5
	아동상담소	37	45.9	40.5	13.5	·	·	·	0.4
	아동전용시설	25	36.0	32.0	8.0	12.0	12.0	·	7.4
	지역아동센터	1,779	50.1	21.9	17.6	5.5	4.9	·	5.1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58.2	17.9	9.7	7.4	6.7	·	6.7
	가정위탁지원센터	22	50.0	·	22.7	9.1	18.2	·	11.5
	소계	8,597	33.2	29.8	15.6	9.3	11.8	0.3	6.7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23.0	39.2	10.7	9.6	17.4	0.3	7.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26.0	45.3	8.8	6.9	12.7	0.2	5.4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34.1	28.5	13.9	10.5	13.0	·	7.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24.9	37.4	22.8	8.5	6.4	·	4.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62.3	21.9	7.5	4.7	3.5	·	4.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47.0	37.0	6.0	4.7	5.2	0.1	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43.8	34.5	9.6	5.5	6.6	0.0	4.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35.6	17.2	16.1	12.8	17.2	1.1	9.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55.6	5.6	9.3	9.3	20.4	·	12.6
	소계	32,139	34.7	38.8	9.0	6.8	10.5	0.2	5.4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30.6	48.4	8.8	4.4	7.9	0.1	3.8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40.3	30.8	11.8	7.1	10.0	·	5.8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45.0	24.1	7.2	9.6	13.7	0.4	8.0
	소계	2,149	33.2	43.8	8.9	5.3	8.7	0.1	4.4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44.2	33.8	3.9	9.1	9.1	·	5.5
	노숙인재활시설	535	15.0	33.3	9.3	12.0	29.9	0.6	9.6
	노숙인요양시설	568	25.2	28.3	16.9	8.5	21.0	0.2	8.3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63.8	15.8	4.6	4.2	11.7	·	8.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4.3	34.8	34.8	13.0	13.0	·	5.3
	쪽방상담소	26	42.3	·	34.6	11.5	11.5	·	9.9
	소계	1,546	29.5	28.3	11.6	9.2	21.2	0.3	8.6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73	43.8	20.5	17.8	5.5	12.3	·	7.0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일	1~11일	12~15일	16~25일	26일 이상	평균
			%	%	%	%	%	%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8,475	43.6	31.0	9.2	7.4	8.5	0.2	5.7
	소계	8,548	43.6	31.0	9.3	7.4	8.5	0.2	5.7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35.9	25.9	17.9	12.5	7.8	.	6.7
	소계	1,243	35.9	25.9	17.9	12.5	7.8	.	6.7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46.7	27.4	19.3	5.5	1.0	.	3.6
	소계	766	46.7	27.4	19.3	5.5	1.0	.	3.6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69.2	30.8	.	.	.	.	0.0
	청소년지원시설	38	63.2	15.8	13.2	5.3	2.6	.	5.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100.0	.	.	.	.	0.0
	자활지원센터	7	.	14.3	57.1	28.6	.	.	9.5
	성매매피해상담소	44	81.8	.	11.4	2.3	4.5	.	13.1
	소계	103	67.0	11.7	13.6	4.9	2.9	.	7.1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39.1	17.4	15.2	21.7	6.5	.	8.7
	성폭력피해상담소	60	71.7	15.0	8.3	1.7	3.3	.	4.4
	소계	106	57.5	16.0	11.3	10.4	4.7	.	7.1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55.2	24.0	11.2	4.8	4.8	.	4.5
	가정폭력상담소	161	36.6	21.7	12.4	17.4	11.8	.	8.7
	긴급전화센터	39	59.0	41.0	.	.	.	.	0.0
	소계	325	46.5	24.9	10.5	10.5	7.7	.	6.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40.9	26.1	13.6	9.1	10.2	.	6.2
	부자가족복지시설	16	100.0	.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36.0	39.8	14.3	3.1	6.8	.	4.0
	일시지원복지시설	29	48.3	41.4	6.9	3.4	.	.	0.9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	100.0	.	.	.	.	0.0
	소계	301	41.2	35.2	12.3	4.7	6.6	.	4.2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59.3	17.5	8.7	6.5	7.7	0.4	6.9
	소계	1,488	59.3	17.5	8.7	6.5	7.7	0.4	6.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59.0	2.0	21.0	12.0	6.0	.	10.4
	청소년자립지원관	6	66.7	33.3	.	.	.	.	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	.	.	.	.	.
	소계	115	62.6	3.5	18.3	10.4	5.2	.	9.9

〈표 5-10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작위별 사용 연차일

(단위: 명, 일,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0일	1~11일	12~15일	16~25일	26일 이상	평균
		%	%	%	%	%	%	
전체	69,313	39.5	34.1	10.0	6.9	9.4	0.2	5.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25.6	38.9	11.0	8.4	15.8	0.2	6.6
생활-관리직	629	35.0	34.5	7.9	7.8	14.8	.	6.7
생활-기능직	2,901	27.3	39.9	12.2	8.4	11.9	0.2	5.7
생활-기타	173	60.7	27.7	9.2	1.7	0.6	.	2.2
생활-기타(계약직)	11	36.4	45.5	.	.	18.2	.	6.3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32.6	66.8	0.6	.	.	.	0.1
생활-사무국장	989	25.8	37.7	13.4	5.7	17.0	0.4	6.7
생활-생활지도원	11,989	28.2	37.0	12.6	9.6	12.3	0.3	6.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22.5	40.9	7.9	4.0	24.0	0.7	7.5
생활-시설장	1,359	33.8	36.4	13.0	5.3	11.3	0.1	5.6
이용-과장	1,476	45.3	29.3	9.1	5.8	10.4	0.1	5.9
이용-관리직 기타	790	50.3	37.5	7.0	2.9	2.3	0.1	2.5
이용-관리직(계약직)	35	62.9	28.6	.	5.7	2.9	.	3.6
이용-관리직(장애인)	13	.	7.7	84.6	7.7	.	.	3.9
이용-관리직1급	281	54.4	22.4	6.8	3.9	12.5	.	6.8
이용-관리직2급	26	23.1	50.0	7.7	7.7	11.5	.	5.4
이용-관리직3급	276	40.6	29.3	7.6	4.7	17.8	.	7.3
이용-관리직4급	2,473	44.4	34.0	9.5	5.9	6.0	0.2	4.5
이용-관장	2,616	43.7	28.9	12.5	5.8	9.0	0.2	5.8
이용-기타	5,008	60.4	27.2	6.3	3.0	3.0	0.1	3.7
이용-기타(계약직)	470	64.9	24.0	5.3	4.0	1.7	.	3.3
이용-기타(미기입)	886	41.3	44.6	9.7	2.8	1.6	.	2.2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48.1	26.9	13.5	8.7	2.9	.	5.6
이용-기타(촉탁의사)	9	33.3	66.7	.	.	.	.	0.0
이용-부장	782	40.2	27.6	9.3	7.2	15.5	0.3	7.9
이용-사무국장	375	40.0	38.1	7.2	4.0	10.7	.	5.2
이용-사무직1급	365	43.3	19.7	6.8	6.6	22.5	1.1	10.8
이용-사무직2급	37	56.8	27.0	2.7	2.7	10.8	.	5.3
이용-사무직3급	386	44.8	28.8	6.0	8.0	12.4	.	6.7
이용-사무직4급	1,491	52.6	27.2	8.7	5.7	5.7	0.1	5.0
이용-사회복지사	10,396	52.7	29.4	8.9	6.3	2.6	0.0	4.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39.1	26.4	12.6	9.4	12.3	0.2	7.1
이용-의료직1급	26	69.2	11.5	3.8	3.8	11.5	.	10.0
이용-의료직2급	5	40.0	40.0	.	20.0	.	.	4.7
이용-의료직3급	860	44.3	33.4	6.7	6.5	8.7	0.3	5.4
이용-의료직4급	58	48.3	24.1	10.3	8.6	8.6	.	6.9
이용-일반직 기타	31	48.4	25.8	6.5	9.7	9.7	.	6.2
이용-일반직1급	94	33.0	48.9	5.3	3.2	9.6	.	4.0
이용-일반직2급	3,197	41.5	35.2	8.6	6.1	8.5	0.1	5.1
이용-일반직3급	250	49.2	32.8	4.8	1.6	11.6	.	4.9
이용-일반직4급	3,799	40.5	40.2	7.7	6.4	5.1	0.1	3.9
이용-일반직5급	58	62.1	37.9	.	.	.	.	0.0

□ (생리휴가 사용 여부) 여성 종사자 총 46,720명의 생리휴가 미사용률은 25.4%로 파악됨

○ (데이터 미기입) 종사자 47,620명 중 약 73.8%인 34,499명의 자료가 미기입인 것으로 파악되어 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나, 본조사의 취지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지금까지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제시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생리휴가 미사용률은 26.2%인데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미사용률은 9.1%로 보건복지부 소관 종사자의 미사용률이 17.1%p 높았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미사용률은 32.0%, 이용시설 종사자의 미사용률은 20.8%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11.2%p 정도 높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미사용률은 25.9%이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미사용률은 25.1%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일정 정도 커질수록 생리휴가 미사용율도 증가하는 현상이 파악됨

- 5인 이하 시설의 미사용률은 10.3%, 6~10인 이하 시설 13.6%, 11~20인 이하 시설 16.6%, 21~30인 이하 시설 28.4%, 31~40인 이하 시설 35.7%로 증가함을 보였음

○ (지역) 전체 평균 미사용률이 25.4%보다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4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35.5%), 광주광역시(32.1%)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생리휴가 미사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노숙인시설로 세부시설로는 노숙인재활시설(60.2%), 노숙인일시보호시설 (50.0%), 노숙인요양시설(42.6%) 등이 있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높았는데 세부시설로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이 4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24.3%), 모자가족복지시설(22.7%) 등의 순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직 중에서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의 미사용률이 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국장(34.4%), 선임생활지도원(33.6%), 생활지도원(30.5%)의 순이었음

- 한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종사자는 일반직 1급이 3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직 5급(33.3%), 일반직 4급(32.9%) 등의 순이었음

〈표 5-104〉 사회복지시설 여성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생리휴가 사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사용 유		사용 무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6,720	375	0.8	11,846	25.4	34,499	73.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44,479	345	0.8	11,641	26.2	32,493	73.1
	여성가족부	2,241	30	1.3	205	9.1	2,006	89.5
시설유형	생활시설	18,940	200	1.1	6,061	32.0	12,679	66.9
	이용시설	27,780	175	0.6	5,785	20.8	21,820	78.5
재원 출처	국고지원	16,946	202	1.2	4,382	25.9	12,362	72.9
	지방이양	29,774	173	0.6	7,464	25.1	22,137	74.4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4,085	50	1.2	419	10.3	3,616	88.5
	6~10인	3,759	28	0.7	511	13.6	3,220	85.7
	11~20인 이하	6,107	49	0.8	1,015	16.6	5,043	82.6
	21~30인 이하	9,054	61	0.7	2,573	28.4	6,420	70.9
	31~40인 이하	6,657	61	0.9	2,375	35.7	4,221	63.4
	41~50인 이하	4,403	18	0.4	1,404	31.9	2,981	67.7
	51인 이상	12,655	108	0.9	3,549	28.0	8,998	71.1
지역	서울특별시	8,332	54	0.6	2,602	31.2	5,676	68.1
	부산광역시	3,483	3	0.1	773	22.2	2,707	77.7
	대구광역시	1,740	19	1.1	752	43.2	969	55.7
	인천광역시	2,160	4	0.2	498	23.1	1,658	76.8
	광주광역시	1,210	9	0.7	389	32.1	812	67.1
	대전광역시	1,003	.	.	310	30.9	693	69.1
	울산광역시	961	16	1.7	88	9.2	857	89.2
	세종특별자치시	217	1	0.5	77	35.5	139	64.1
	경기도	10,176	133	1.3	3,064	30.1	6,979	68.6
	강원도	1,925	4	0.2	224	11.6	1,697	88.2
	충청북도	2,738	19	0.7	646	23.6	2,073	75.7
	충청남도	2,391	.	.	307	12.8	2,084	87.2
	전라북도	2,316	14	0.6	514	22.2	1,788	77.2
	전라남도	2,622	6	0.2	440	16.8	2,176	83.0
	경상북도	2,351	81	3.4	448	19.1	1,822	77.5
	경상남도	2,275	12	0.5	608	26.7	1,655	72.7
	제주특별자치도	820	.	.	106	12.9	714	87.1

〈표 5-105〉 사회복지 세부시설 여성 종사자의 생리휴가 사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사용 유		사용 무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6,720	375	0.8	11,846	25.4	34,499	73.8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832	.	.	269	32.3	563	67.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3	.	.	9	20.9	34	79.1
	노인여가복지시설	7,038	59	0.8	1,930	27.4	5,049	71.7
	노인보호전문기관	165	.	.	11	6.7	154	93.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183	.	.	68	5.7	1,115	94.3
	소계	9,261	59	0.6	2,287	24.7	6,915	74.7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4,201	36	0.9	1,232	29.3	2,933	69.8
	아동일시보호시설	140	.	.	44	31.4	96	68.6
	아동보호치료시설	149	.	.	65	43.6	84	56.4
	자립지원시설	10	.	.	1	10.0	9	90.0
	공동생활가정	486	10	2.1	29	6.0	447	92.0
	아동상담소	30	4	13.3	7	23.3	19	63.3
	아동전용시설	18	.	.	3	16.7	15	83.3
	지역아동센터	1,570	3	0.2	87	5.5	1,480	94.3
	아동보호전문기관	306	8	2.6	23	7.5	275	89.9
	가정위탁지원센터	18	.	.	.	.	18	100.0
	소계	6,928	61	0.9	1,491	21.5	5,376	77.6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4,795	48	1.0	1,687	35.2	3,060	63.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540	80	1.8	1,719	37.9	2,741	60.4
	장애영유아거주시설	260	.	.	43	16.5	217	83.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590	9	1.5	119	20.2	462	78.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15	3	1.0	34	10.8	278	88.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198	24	0.4	1,765	28.5	4,409	7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16	13	0.8	334	19.5	1,369	79.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41	.	.	19	13.5	122	86.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5	.	.	3	20.0	12	80.0
	소계	18,570	177	1.0	5,723	30.8	12,670	68.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912	.	.	384	42.1	528	57.9
	정신재활생활시설	122	2	1.6	26	21.3	94	77.0
	정신재활이용시설	159	2	1.3	28	17.6	129	81.1
	소계	1,193	4	0.3	438	36.7	751	63.0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61	.	.	7	11.5	54	88.5
	노숙인재활시설	244	1	0.4	147	60.2	96	39.3
	노숙인요양시설	329	.	.	140	42.6	189	57.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5	.	.	.	.	35	100.0

구분		사례 수	사용 유		사용 무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8	.	.	4	50.0	4	50.0
	쪽방상담소	7	.	.	2	28.6	5	71.4
	소계	684	1	0.1	300	43.9	383	56.0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46	.	.	12	26.1	34	73.9
	사회복지관	6,230	20	0.3	1,220	19.6	4,990	80.1
	소계	6,276	20	0.3	1,232	19.6	5,024	80.1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828	.	.	83	10.0	745	90.0
	소계	828	.	.	83	10.0	745	90.0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39	23	3.1	87	11.8	629	85.1
	소계	739	23	3.1	87	11.8	629	85.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	.	.	.	13	100.0
	청소년지원시설	38	.	.	.	.	38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	100.0	.	.	.	.
	자활지원센터	7	.	.	.	.	7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43	.	.	.	.	43	100.0
	소계	102	1	1.0	.	.	101	99.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4	.	.	.	.	44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58	.	.	.	.	58	100.0
	소계	102	.	.	.	.	102	100.0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3	.	.	5	4.1	118	95.9
	가정폭력상담소	153	2	1.3	22	14.4	129	84.3
	긴급전화센터	36	15	41.7	.	.	21	58.3
	소계	312	17	5.4	27	8.7	268	85.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66	.	.	15	22.7	51	77.3
	부자가족복지시설	7	.	.	.	.	7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52	2	1.3	37	24.3	113	74.3
	일시지원복지시설	28	.	.	12	42.9	16	57.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	.	.	.	7	100.0
	소계	260	2	0.8	64	24.6	194	74.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378	10	0.7	112	8.1	1,256	91.1
	소계	1,378	10	0.7	112	8.1	1,256	91.1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74	.	.	2	2.7	72	97.3
	청소년자립지원관	5	.	.	.	.	5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	.	.	.	.	8	100.0
	소계	87	.	.	2	2.3	85	97.7

〈표 5-106〉 사회복지시설 여성 종사자의 직위별 생리휴가 사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사용 유		사용 무		미기입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6,720	375	0.8	11,846	25.4	34,499	73.8
생활-과장/생활복지사	6,151	54	0.9	2,156	35.1	3,941	64.1
생활-관리직	96	.	.	23	24.0	73	76.0
생활-기능직	2,584	21	0.8	858	33.2	1,705	66.0
생활-기타	128	1	0.8	22	17.2	105	82.0
생활-기타(계약직)	8	.	.	3	37.5	5	62.5
생활-기타(촉탁의사)	43	1	2.3	3	7.0	39	90.7
생활-사무국장	546	1	0.2	188	34.4	357	65.4
생활-생활지도원	8,148	108	1.3	2,483	30.5	5,557	68.2
생활-선임생활지도원	464	3	0.6	156	33.6	305	65.7
생활-시설장	772	11	1.4	169	21.9	592	76.7
이용-과장	1,184	16	1.4	245	20.7	923	78.0
이용-관리직 기타	473	1	0.2	123	26.0	349	73.8
이용-관리직(계약직)	6	.	.	3	50.0	3	50.0
이용-관리직(장애인)	4	.	.	.	.	4	100.0
이용-관리직1급	171	.	.	22	12.9	149	87.1
이용-관리직2급	12	.	.	3	25.0	9	75.0
이용-관리직3급	161	3	1.9	46	28.6	112	69.6
이용-관리직4급	1,279	17	1.3	282	22.0	980	76.6
이용-관장	1,372	3	0.2	179	13.0	1,190	86.7
이용-기타	3,390	4	0.1	430	12.7	2,956	87.2
이용-기타(계약직)	377	1	0.3	74	19.6	302	80.1
이용-기타(미기입)	655	12	1.8	216	33.0	427	65.2
이용-기타(보육교사)	31	.	.	.	.	31	100.0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179	.	.	46	25.7	133	74.3
이용-기타(촉탁의사)	2	.	.	1	50.0	1	50.0
이용-부장	434	2	0.5	88	20.3	344	79.3
이용-사무국장	177	1	0.6	52	29.4	124	70.1
이용-사무직1급	226	1	0.4	50	22.1	175	77.4
이용-사무직2급	23	.	.	1	4.3	22	95.7
이용-사무직3급	251	1	0.4	80	31.9	170	67.7
이용-사무직4급	1,128	10	0.9	215	19.1	903	80.1
이용-사회복지사	8,805	71	0.8	1,750	19.9	6,984	79.3
이용-선임사회복지사	2,277	12	0.5	374	16.4	1,891	83.0
이용-의료직1급	25	.	.	2	8.0	23	92.0
이용-의료직2급	5	.	.	1	20.0	4	80.0
이용-의료직3급	708	3	0.4	188	26.6	517	73.0
이용-의료직4급	50	.	.	21	42.0	29	58.0
이용-일반직 기타	7	.	.	1	14.3	6	85.7
이용-일반직1급	62	.	.	22	35.5	40	64.5
이용-일반직2급	1,796	7	0.4	469	26.1	1,320	73.5
이용-일반직3급	161	2	1.2	28	17.4	131	81.4
이용-일반직4급	2,313	8	0.3	761	32.9	1,544	66.8
이용-일반직5급	36	.	.	12	33.3	24	66.7

□ (대체휴가제 운영) 총 4,739개 시설 중에서 대체휴가제 운용 시설은 278개소, 5.9%에 불과하며,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5.8%,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6.7%로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이 0.8%p 높았음

○ (전체) 대체휴가제를 사용하고 있는 278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263개소,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15개소

○ (지역분포) 전체 278개 운영시설 중 대체휴가제도 운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8.1%), 대전광역시·경상북도(8.0%), 대구광역시·경상남도(7.3%)의 순이었음

- 운영률이 가장 낮은 시설은 울산광역시(2.9%), 강원도(3.5%). 제주특별자치도(3.6%)의 순이었음

〈표 5-107〉 대체휴가제 운영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전체	4,739	278	5.9%	4,461	94.1%
서울특별시	821	45	5.5%	776	94.5%
부산광역시	303	12	4.0%	291	96.0%
대구광역시	164	12	7.3%	152	92.7%
인천광역시	218	11	5.0%	207	95.0%
광주광역시	151	6	4.0%	145	96.0%
대전광역시	138	11	8.0%	127	92.0%
울산광역시	103	3	2.9%	100	97.1%
세종특별자치시	28	2	7.1%	26	92.9%
경기도	958	54	5.6%	904	94.4%
강원도	202	7	3.5%	195	96.5%
충청북도	245	15	6.1%	230	93.9%
충청남도	221	16	7.2%	205	92.8%
전라북도	223	18	8.1%	205	91.9%
전라남도	304	19	6.3%	285	93.8%
경상북도	289	23	8.0%	266	92.0%
경상남도	288	21	7.3%	267	92.7%
제주특별자치도	83	3	3.6%	80	96.4%

○ (소관부처) 총 4,461개 대체휴가 미운영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4,251개로 94.2%를, 여성가족부 소관 대상은 210개로 93.3%를 차지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대체휴가제 미실시 시설 중 지역자활센터가 9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94.7%)·노인복지시설(94.6%), 다함께돌봄센터(93.4%)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98.3%), 가족폭력보호시설(94.2%), 청소년복지시설(93.8%)의 순이었음

〈표 5-108〉 대체휴가제 운영 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전체		4,739	278	5.9	4,461	94.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81	26	5.4	455	94.6
	아동복지시설	995	65	6.5	930	93.5
	장애인복지시설	2,139	114	5.3	2,025	94.7
	정신건강증진시설	147	13	8.8	134	91.2
	노숙인시설	77	6	7.8	71	92.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36	19	5.7	317	94.3
	지역자활센터	110	5	4.5	105	95.5
	다함께돌봄센터	229	15	6.6	214	93.4
	계	4,514	263	5.8	4,251	94.2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5	·	·	15	10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	3	14.3	18	85.7
	가정폭력보호시설	52	3	5.8	49	94.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0	1	1.7	59	98.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7	11.5	54	88.5
	청소년복지시설	16	1	6.3	15	93.8
	계	225	15	6.7	210	93.3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의 경우 대체휴가제도 미운영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지원센터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이며, 미운영율이 100%였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과 긴급전화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일시지원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내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미운영률이 100%였음

〈표 5-109〉 대체휴가제 운영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전체		4,739	278	5.9	4,461	94.1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1	1.3	78	98.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3	33.3	6	66.7
	노인여가복지시설	268	17	6.3	251	93.7
	노인보호전문기관	27	1	3.7	26	96.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8	4	4.1	94	95.9
	계	481	26	5.4	455	94.6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27	15.8	144	84.2
	아동일시보호시설	8	1	12.5	7	87.5
	아동보호치료시설	11	·	·	11	100.0
	자립지원시설	5	·	·	5	100.0
	공동생활가정	142	9	6.3	133	93.7
	아동상담소	5	·	·	5	100.0
	아동전용시설	6	·	·	6	100.0
	지역아동센터	621	26	4.2	595	95.8
	아동보호전문기관	24	2	8.3	22	91.7
	가정위탁지원센터	2	·	·	2	100.0
	계	995	65	6.5	930	93.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23	7.9	268	92.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26	11.5	200	88.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1	11.1	8	88.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12	10.9	98	89.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7	2.3	302	97.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71	19	2.5	752	97.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1	25	6.1	386	93.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	1	20.0	4	80.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	·	7	100.0
	계	2139	114	5.3	2025	94.7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4	4	9.1	40	90.9
	정신재활생활시설	61	6	9.8	55	90.2
	정신재활이용시설	42	3	7.1	39	92.9
	계	147	13	8.8	134	91.2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4	1	4.2	23	95.8
	노숙인재활시설	21	3	14.3	18	85.7
	노숙인요양시설	15	·	·	15	100.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	2	22.2	7	77.8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	·	4	100.0
	쪽방상담소	4	·	·	4	100.0
	계	77	6	7.8	71	92.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1	20.0	4	80.0
	사회복지관	331	18	5.4	313	94.6
	계	336	19	5.7	317	94.3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10	5	4.5	105	95.5
	계	110	5	4.5	105	95.5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9	15	6.6	214	93.4
	계	229	15	6.6	214	93.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	·	·	3	100.0
	청소년지원시설	5	·	·	5	100.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1	100.0
	자활지원센터	1	·	·	1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5	·	·	5	100.0
	계	15	·	·	15	10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2	33.3	4	66.7
	성폭력피해상담소	15	1	6.7	14	93.3
	계	21	3	14.3	18	85.7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1	5.9	16	94.1
	가정폭력상담소	33	2	6.1	31	93.9
	긴급전화센터	2	·	·	2	100.0
	계	52	3	5.8	49	94.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	·	19	100.0
	부자가족복지시설	2	·	·	2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1	3.0	32	97.0
	일시지원복지시설	4	·	·	4	100.0
	한부모복지상담소	2	·	·	2	100.0
	계	60	1	1.7	59	98.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61	7	11.5	54	88.5
	계	61	7	11.5	54	88.5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3	1	7.7	12	92.3
	청소년자립지원관	1	·	·	1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	·	2	100.0
	계	16	1	6.3	15	93.8

○ (시설 유형) 생활시설의 대체휴가제도 미운영율은 92.1%이고 이용시설의 미운영률은 95.2%로 이용시설의 미운영율이 3.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대체휴가제도 미운영률이 가장 높은 시설로는 지역자활센터가 9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94.7%), 노인복지시설(94.6%).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94.3%)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대체휴가제도 미운영율이 가장 높은 시설로는 성매매피해지원시설(100.0%)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0%)이었고, 이용시설 중에서도 동일하였음

〈표 5-110〉 대체휴가제 운영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전체		4,739	278	5.9	4,461	94.1
생활		1,633	129	7.9	1,504	92.1
이용		3,106	149	4.8	2,957	95.2
노인복지시설	생활	88	4	4.5	84	95.5
	이용	393	22	5.6	371	94.4
	계	481	26	5.4	455	94.6
아동복지시설	생활	337	37	11.0	300	89.0
	이용	658	28	4.3	630	95.7
	계	995	65	6.5	930	93.5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945	69	7.3	876	92.7
	이용	1,194	45	3.8	1,149	96.2
	계	2,139	114	5.3	2,025	94.7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92	9	9.8	83	90.2
	이용	55	4	7.3	51	92.7
	계	147	13	8.8	134	91.2
노숙인시설	생활	60	4	6.7	56	93.3
	이용	17	2	11.8	15	88.2
	계	77	6	7.8	71	92.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5	1	20.0	4	80.0
	이용	331	18	5.4	313	94.6
	계	336	19	5.7	317	94.3
지역자활센터	이용	110	5	4.5	105	95.5
	계	110	5	4.5	105	95.5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229	15	6.6	214	93.4
	계	229	15	6.6	214	93.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	9	·	·	9	100.0
	이용	6	·	·	6	100.0
	계	15	·	·	15	10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6	2	33.3	4	66.7
	이용	15	1	6.7	14	93.3
	계	21	3	14.3	18	85.7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	17	1	5.9	16	94.1
	이용	35	2	5.7	33	94.3
	계	52	3	5.8	49	94.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58	1	1.7	57	98.3
	이용	2	·	·	2	100.0
	계	60	1	1.7	59	98.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61	7	11.5	54	88.5
	계	61	7	11.5	54	88.5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16	1	6.3	15	93.8
	계	16	1	6.3	15	93.8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의 대체휴가제도 미운영율은 93.3%로, 지방이양시설의 94.7%보다 약 1.4%p 낮았음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국고지원시설 중 대체휴가제도 미운영율이 높은 시설은 지역자활센터(95.5%), 아동복지시설(95.3%), 다함께돌봄센터(93.4%)이었으며, 지방이양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96.0%), 노인복지시설(95.1%), 사회복지관(94.6%)의 순으로 미운영율이 높게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국고지원시설 중 성매매피해지원시설(100.0%)과 한부모가족지원시설(98.3%)의 미운영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11〉 대체휴가제 운영여부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 출처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전체		4,739	278	5.9	4,461	94.1
국고지원		1,969	131	6.7	1,838	93.3
지방이양		2,770	147	5.3	2,623	94.7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6	4	11.1	32	88.9
	지방이양	445	22	4.9	423	95.1
	계	481	26	5.4	455	94.6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787	37	4.7	750	95.3
	지방이양	208	28	13.5	180	86.5
	계	995	65	6.5	930	93.5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533	50	9.4	483	90.6
	지방이양	1,606	64	4.0	1,542	96.0
	계	2,139	114	5.3	2,025	94.7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4	4	9.1	40	90.9
	지방이양	103	9	8.7	94	91.3
	계	147	13	8.8	134	91.2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77	6	7.8	71	92.2
	계	77	6	7.8	71	92.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1	20.0	4	80.0
	지방이양	331	18	5.4	313	94.6
	계	336	19	5.7	317	94.3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10	5	4.5	105	95.5
	계	110	5	4.5	105	95.5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229	15	6.6	214	93.4
	계	229	15	6.6	214	93.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15	.	.	15	100.0
	계	15	.	.	15	100.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21	3	14.3	18	85.7
	계	21	3	14.3	18	85.7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52	3	5.8	49	94.2
	계	52	3	5.8	49	94.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60	1	1.7	59	98.3
	계	60	1	1.7	59	98.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61	7	11.5	54	88.5
	계	61	7	11.5	54	88.5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6	1	6.3	15	93.8
	계	16	1	6.3	15	93.8

마. 승진

□ (전체 시설 수 기준) 총 3,435개 시설에서 3년 동안 승진한 총인원은 22,576명으로, 평균 시설당 6.6명으로 나타남

○ (분석기준) 총 4,739개 시설 중 최근 3년간 승진현황 미기입 시설 1,304개는 제외하고 분석

○ (시설 규모) 최근 3년간 승진한 종사자가 소속된 시설의 규모는 5인 이하 시설이 6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인 이하 시설 19.0%, 11~20인 이하 시설 12.5%, 21~30인 이하 시설 3.8% 순이었음

○ (지역분포)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267명, 평균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3,965명, 평균 6.7명), 부산(1,409명, 평균 6.3명) 순이었으며, 세종(103명, 평균 4.3명), 울산(304명, 평균 4.3명), 대전(496명, 평균 4.6명) 등은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동안에 승진자가 속한 시설의 98.1%가 30인 이하 규모의 시설이었고, 대전·울산·세종(100%), 충남(99.4%), 전남·경남(98.9%) 순으로 높음
- 승진자가 속한 시설 중 종사자 10인 이하 규모가 81.8%를 차지하고, 울산(91.5%), 대전(89.8%), 전남(89.7%), 경북(87.0%) 순임

〈표 5-112〉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평균	합계
전체	3,435	62.9	19.0	12.5	3.8	1.0	0.4	0.5	6.6	22,576
서울특별시	590	59.8	20.7	13.4	4.1	1.4	0.2	0.5	6.7	3,965
부산광역시	223	67.7	17.5	9.9	3.1	0.4	0.4	0.9	6.3	1,409
대구광역시	112	62.5	17.0	14.3	2.7	0.9	0.9	1.8	7.6	851
인천광역시	176	62.5	17.6	13.6	2.8	2.8	·	0.6	6.7	1,180
광주광역시	101	70.3	11.9	6.9	7.9	3.0	·	·	6.6	663
대전광역시	108	75.9	13.9	8.3	1.9	·	·	·	4.6	496
울산광역시	71	74.6	16.9	8.5	·	·	·	·	4.3	304
세종자치시	24	83.3	·	16.7	·	·	·	·	4.3	103
경기도	727	58.6	19.0	15.4	5.2	1.1	0.4	0.3	7.2	5,267
강원도	149	58.4	24.8	11.4	3.4	·	1.3	0.7	6.7	996
충청북도	188	61.2	21.8	11.2	3.2	·	1.6	1.1	6.8	1,287
충청남도	162	59.3	18.5	19.8	1.9	0.6	·	·	6.2	1,011
전라북도	156	61.5	20.5	12.2	3.2	0.6	1.3	0.6	7.0	1,094
전라남도	184	68.5	21.2	8.2	1.1	·	0.5	0.5	5.4	1,001
경상북도	207	69.6	17.4	6.8	4.3	1.4	·	0.5	6.0	1,247
경상남도	184	70.7	13.0	10.3	4.9	0.5	·	0.5	5.7	1,051
제주자치도	73	39.7	32.9	16.4	6.8	4.1	·	·	8.9	651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평균 6.6명 대비 3년간 승진 인원이 적었던 시설은 아동복지시설(4.7명), 다함께돌봄센터(3.2명)이었으며, 승진 인원이 평균보다 많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8.1명), 정신건강증진시설(7.3명), 노숙인시설(8.9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8.8명), 지역자활센터(7.5명)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평균 6.1명 대비 승진 인원이 적은 시설은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9.5명)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었음
-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62.7%,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66.5%였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시설 중 3년간 평균 승진 인원이 가장 적은 시설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2.0명), 노숙인자활시설(2.4명), 아동복지시설 내 공동생활가정(2.6명)과 지역아동센터(2.6명)였으며, 승진 인원이 가장 많은 세부시설은 노숙인재활시설(13.6명), 정신요양시설(12.2명) 등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3년간 평균 승진 인원이 적은 시설은 일반지원시설(1명), 청소년지원시설(2.0명), 청소년자립지원관(2.0명)과 성폭력피해상담소(2.5명) 등이었으며, 평균 승진 인원이 많은 시설은 긴급전화센터(16.5명), 자활지원센터(12명), 성매매피해상담소(10.5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5명) 등이었음

○ (시설유형)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중 3년간 평균 승진 인원이 적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3.7명), 장애인복지시설(6.6명)이었으며, 이용시설 중 3년간 평균 승진 인원이 적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3.2명), 정신건강증진시설(3.5명)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생활시설 중 3년간 평균 승진 인원이 적은 시설은 성폭력피해보호시설(2.5명)과 가정폭력보호시설(3.09)이었음

○ (재원 출처)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 지원시설 중 3년간 평균 승진 인원 6.6명보다 적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3.0명),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3.0명), 다함께돌봄센터(3.2명)이었고, 지방이양시설 중 3년간 평균 승진 인원보다 낮은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5.8명), 정신건강증진시설(3.7명)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국고지원시설 중 3년간 평균 승진 인원 6.1명보다 적은 시설은 성매매피해지원시설(4.8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3.2명) 성폭력피해보호시설(3.5명)과 가정폭력보호시설(5.2명), 청소년복지시설(4.7)명이었음

〈표 5-113〉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평균	합계
전체		3,435	62.9	19.0	12.5	3.8	1.0	0.4	0.5	6.6	2,257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12	52.7	19.9	19.4	6.1	1.5	·	0.5	8.1	3,349
	아동복지시설	572	77.8	12.6	6.1	2.3	0.5	0.3	0.3	4.7	2,665
	장애인복지시설	1590	63.7	18.2	12.3	3.4	1.4	0.4	0.6	6.5	10,325
	정신건강증진시설	96	63.5	15.6	11.5	6.3	1.0	1.0	1.0	7.3	705
	노숙인시설	60	61.7	13.3	13.3	8.3	1.7	·	1.7	8.9	53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27	41.6	32.4	18.0	6.4	0.3	0.9	0.3	8.8	2,867
	지역자활센터	100	49.0	30.0	16.0	5.0	·	·	·	7.5	753
	다함께돌봄센터	108	81.5	13.9	4.6	·	·	·	·	3.2	347
	계	3265	62.7	18.9	12.5	4.0	1.0	0.4	0.5	6.6	21,543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9	66.7	11.1	22.2	·	·	·	·	4.8	4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16	75.0	18.8	6.3	·	·	·	·	3.5	56
	가정폭력보호시설	37	81.1	10.8	·	5.4	·	2.7	·	5.2	19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4	79.4	17.6	2.9	·	·	·	·	3.2	10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	45.8	27.1	23.7	·	1.7	·	1.7	9.5	563
	청소년복지시설	15	73.3	20.0	6.7	·	·	·	·	4.7	70
	계	170	66.5	19.4	11.2	1.2	0.6	0.6	0.6	6.1	1,033

〈표 5-114〉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평균	합계
전체		3,435	62.9	19.0	12.5	3.8	1.0	0.4	0.5	6.6	22,576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45	82.2	13.3	4.4	·	·	·	·	3.6	16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5	80.0	20.0	·	·	·	·	·	4.0	20
	노인여가복지시설	250	49.2	22.0	20.0	6.8	1.6	·	0.4	8.5	2,135
	노인보호전문기관	24	62.5	16.7	16.7	·	4.2	·	·	6.8	16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88	43.2	18.2	27.3	9.1	1.1	·	1.1	9.8	866
	계	412	52.7	19.9	19.4	6.1	1.5	·	0.5	8.1	3,349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42	48.6	23.9	16.9	6.3	2.1	1.4	0.7	8.8	1,253
	아동일시보호시설	6	66.7	33.3	·	·	·	·	·	4.8	29
	아동보호치료시설	10	30.0	40.0	20.0	10.0	·	·	·	10.1	101
	자립지원시설	3	66.7	33.3	·	·	·	·	·	5.7	17
	공동생활가정	69	88.4	10.1	1.4	·	·	·	·	2.6	180
	아동상담소	4	50.0	50.0	·	·	·	·	·	4.8	19
	아동전용시설	4	50.0	50.0	·	·	·	·	·	5.5	22
	지역아동센터	311	93.2	5.5	1.0	0.3	·	·	·	2.5	793
	아동보호전문기관	21	52.4	14.3	19.0	9.5	·	·	4.8	11.2	236
	가정위탁지원센터	2	50.0	·	50.0	·	·	·	·	7.5	15
	계	572	77.8	12.6	6.1	2.3	0.5	0.3	0.3	4.7	2,66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51	57.0	22.7	13.5	3.6	2.4	·	0.8	7.5	1,872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07	45.9	26.1	18.8	5.3	1.4	1.0	1.4	9.0	1,862
	장애영유아거주시설	7	57.1	14.3	28.6	·	·	·	·	6.0	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7	63.2	23.0	12.6	1.1	·	·	·	5.1	4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8	98.3	0.8	·	0.8	·	·	·	2.0	23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17	61.4	17.7	13.5	4.4	1.8	0.6	0.6	7.2	4,4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93	73.7	15.4	8.5	1.4	0.7	0.3	·	4.6	1,35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4	50.0	25.0	·	25.0	·	·	·	10.0	4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6	50.0	33.3	16.7	·	·	·	·	5.8	35
	계	1,590	63.7	18.2	12.3	3.4	1.4	0.4	0.6	6.5	10,325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1	39.0	17.1	24.4	12.2	2.4	2.4	2.4	12.2	502
	정신재활생활시설	24	83.3	8.3	4.2	4.2	·	·	·	4.3	103
	정신재활이용시설	31	80.6	19.4	·	·	·	·	·	3.2	100
	계	96	63.5	15.6	11.5	6.3	1.0	1.0	1.0	7.3	705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6	100.0	·	·	·	·	·	·	2.4	39
	노숙인재활시설	17	41.2	23.5	17.6	11.8	·	·	5.9	13.6	231
	노숙인요양시설	14	50.0	7.1	28.6	7.1	7.1	·	·	10.3	144

구 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평균	합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7	42.9	14.3	14.3	28.6				13.0	9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3	66.7	33.3						4.3	13
	쪽방상담소	3	66.7	33.3						4.7	14
	계	60	61.7	13.3	13.3	8.3	1.7		1.7	8.9	53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3	100.0							3.0	9
	사회복지관	324	41.0	32.7	18.2	6.5	0.3	0.9	0.3	8.8	2,858
	계	327	41.6	32.4	18.0	6.4	0.3	0.9	0.3	8.8	2,867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00	49.0	30.0	16.0	5.0				7.5	753
	계	100	49.0	30.0	16.0	5.0				7.5	753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08	81.5	13.9	4.6					3.2	347
	계	108	81.5	13.9	4.6					3.2	34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2	100.0							1.0	2
	청소년지원시설	4	100.0							2.0	8
	자활지원센터	1			100.0					12.0	12
	성매매피해상담소	2		50.0	50.0					10.5	21
	계	9	66.7	11.1	22.2					4.8	4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40.0	60.0						5.6	28
	성폭력피해상담소	11	90.9		9.1					2.5	28
	계	16	75.0	18.8	6.3					3.5	56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5	73.3	13.3		6.7		6.7		7.1	106
	가정폭력상담소	20	95.0	5.0						2.7	53
	긴급전화센터	2		50.0		50.0				16.5	33
	계	37	81.1	10.8		5.4		2.7		5.2	19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2	91.7		8.3					3.1	3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7	76.5	23.5						3.1	52
	일시지원복지시설	3	100.0							2.3	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100.0						6.5	13
	계	34	79.4	17.6	2.9					3.2	10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9	45.8	27.1	23.7		1.7		1.7	9.5	563
	계	59	45.8	27.1	23.7		1.7		1.7	9.5	563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2	66.7	25.0	8.3					5.3	63
	청소년자립지원관	1	100.0							3.0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100.0							2.0	4
	계	15	73.3	20.0	6.7					4.7	70

〈표 5-115〉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평균	합계
전체		3,435	62.9	19.0	12.5	3.8	1.0	0.4	0.5	6.6	22,576
생활		1,128	63.0	18.9	11.9	3.7	1.2	0.5	0.7	6.7	7,507
이용		2,307	62.8	19.0	12.7	3.9	0.9	0.3	0.4	6.5	15,069
노인복지시설	생활	50	82.0	14.0	4.0	·	·	·	·	3.7	184
	이용	362	48.6	20.7	21.5	6.9	1.7	·	0.6	8.7	3,165
	계	412	52.7	19.9	19.4	6.1	1.5	·	0.5	8.1	3,349
아동복지시설	생활	230	60.4	20.9	11.7	4.3	1.3	0.9	0.4	6.9	1,580
	이용	342	89.5	7.0	2.3	0.9	·	·	0.3	3.2	1,085
	계	572	77.8	12.6	6.1	2.3	0.5	0.3	0.3	4.7	2,665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670	61.6	19.9	12.8	3.3	1.3	0.3	0.7	6.6	4,450
	이용	920	65.2	17.1	11.8	3.5	1.4	0.5	0.4	6.4	5,875
	계	1,590	63.7	18.2	12.3	3.4	1.4	0.4	0.6	6.5	10,325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55	50.9	14.5	18.2	10.9	1.8	1.8	1.8	10.2	560
	이용	41	80.5	17.1	2.4	·	·	·	·	3.5	145
	계	96	63.5	15.6	11.5	6.3	1.0	1.0	1.0	7.3	705
노숙인시설	생활	47	63.8	10.6	14.9	6.4	2.1	·	2.1	8.8	414
	이용	13	53.8	23.1	7.7	15.4	·	·	·	9.1	118
	계	60	61.7	13.3	13.3	8.3	1.7	·	1.7	8.9	53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3	100.0	·	·	·	·	·	·	3.0	9
	이용	324	41.0	32.7	18.2	6.5	0.3	0.9	0.3	8.8	2,858
	계	327	41.6	32.4	18.0	6.4	0.3	0.9	0.3	8.8	2,867
지역자활센터	이용	100	49.0	30.0	16.0	5.0	·	·	·	7.5	753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108	81.5	13.9	4.6	·	·	·	·	3.2	34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	6	100.0	·	·	·	·	·	·	1.7	10
	이용	3	·	33.3	66.7	·	·	·	·	11.0	33
	계	9	66.7	11.1	22.2	·	·	·	·	4.8	4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5	40.0	60.0	·	·	·	·	·	5.6	28
	이용	11	90.9	·	9.1	·	·	·	·	2.5	20
	계	16	75.0	18.8	6.3	·	·	·	·	3.5	56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생활	15	73.3	13.3	·	6.7	·	6.7	·	7.1	106
	이용	22	86.4	9.1	·	4.5	·	·	·	3.9	86
	계	37	81.1	10.8	·	5.4	·	2.7	·	5.2	19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32	84.4	12.5	3.1	·	·	·	·	3.0	96
	이용	2	·	100.0	·	·	·	·	·	6.5	13
	계	34	79.4	17.6	2.9	·	·	·	·	3.2	109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59	45.8	27.1	23.7	·	1.7	·	1.7	9.5	563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15	73.3	20.0	6.7	·	·	·	·	4.7	70

〈표 5-116〉 종사자 승진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출처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례수	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30인 이하	31~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평균	합계
전체		3,435	62.9	19.0	12.5	3.8	1.0	0.4	0.5	6.6	22,576
국고지원		1,323	67.6	17.5	10.4	2.6	0.9	0.3	0.6	5.9	7,848
지방이양		2,112	59.8	19.9	13.7	4.5	1.1	0.5	0.4	7.0	14,728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29	65.5	17.2	13.8	·	3.4	·	·	6.3	184
	지방이양	383	51.7	20.1	19.8	6.5	1.3	·	0.5	8.3	3,165
	계	412	52.7	19.9	19.4	6.1	1.5	·	0.5	8.1	3,349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401	90.3	6.7	2.0	0.7	·	·	0.2	3.0	1,209
	지방이양	171	48.5	26.3	15.8	5.8	1.8	1.2	0.6	8.5	1,456
	계	572	77.8	12.6	6.1	2.3	0.5	0.3	0.3	4.7	2,665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471	52.0	24.2	16.1	4.2	1.9	0.4	1.1	8.1	3,811
	지방이양	1,119	68.6	15.7	10.6	3.0	1.2	0.4	0.4	5.8	6,514
	계	1,590	63.7	18.2	12.3	3.4	1.4	0.4	0.6	6.5	10,325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1	39.0	17.1	24.4	12.2	2.4	2.4	2.4	12.2	502
	지방이양	55	81.8	14.5	1.8	1.8	·	·	·	3.7	203
	계	96	63.5	15.6	11.5	6.3	1.0	1.0	1.0	7.3	705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60	61.7	13.3	13.3	8.3	1.7	·	1.7	8.9	532
	계	60	61.7	13.3	13.3	8.3	1.7	·	1.7	8.9	532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3	100.0	·	·	·	·	·	·	3.0	9
	지방이양	324	41.0	32.7	18.2	6.5	0.3	0.9	0.3	8.8	2,858
	계	327	41.6	32.4	18.0	6.4	0.3	0.9	0.3	8.8	2,867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00	49.0	30.0	16.0	5.0	·	·	·	7.5	753
	계	100	49.0	30.0	16.0	5.0	·	·	·	7.5	753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108	81.5	13.9	4.6	·	·	·	·	3.2	347
	계	108	81.5	13.9	4.6	·	·	·	·	3.2	34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9	66.7	11.1	22.2	·	·	·	·	4.8	43
	계	9	66.7	11.1	22.2	·	·	·	·	4.8	4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16	75.0	18.8	6.3	·	·	·	·	3.5	56
	계	16	75.0	18.8	6.3	·	·	·	·	3.5	56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37	81.1	10.8	·	5.4	·	2.7	·	5.2	192
	계	37	81.1	10.8	·	5.4	·	2.7	·	5.2	19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34	79.4	17.6	2.9	·	·	·	·	3.2	109
	계	34	79.4	17.6	2.9	·	·	·	·	3.2	10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59	45.8	27.1	23.7	·	1.7	·	1.7	9.5	563
	계	59	45.8	27.1	23.7	·	1.7	·	1.7	9.5	563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5	73.3	20.0	6.7	·	·	·	·	4.7	70
	계	15	73.3	20.0	6.7	·	·	·	·	4.7	70

□ (전체 종사자 수 기준) 총 4,237개 시설 종사자 69,313명에 대해 최근 3년간 승진 여부를 분석한 결과 17.4%만이 승진하였고, 82.6%는 승진 경력이 없었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중 승진경험자는 17.2%,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중 승진경험자는 21.5%로 여성가족부 종사자가 약 4.3%p 높았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 중 승진경험자는 14.8%, 이용시설 종사자 중 승진경험자는 19.3%로 이용시설 종사자가 약 4.5%p 정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승진 경험률은 16.3%이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승진 경험률은 18.0%였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승진 경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6~10인 이하 시설 23.7%, 11~20인 이하 시설 21.9%, 21~30인 이하 시설 18.0%. 31~40인 이하 시설 16.0%, 51인 이상 시설 12.0%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지역) 전체 승진 경험률 17.4%보다 적은 지역은 울산광역시가 12.6%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13.7%), 충청남도(14.8%) 등의 순이었으며, 반면에, 승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25.7%), 인천광역시(20.5%), 강원도(19.3%)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질병관리청 소속이나 바교분석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로 분류된 결핵한센시설의 승진 경험률이 6.8%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장애영유아거주시설(8.4%), 노인주거복지시설(9.0%) 등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100.0%)과 부자가족복지시설(100.0%)에서 승진 경험률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일반지원시설(15.4%)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16.1%)이 낮은 편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는 기능직이 9.5%로 승진 경험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고, 사회복지직의 경우에서는 생활지도원이 13.6%, 과장 및 생활복지사가 15.3%로 47.9%의 승진 경험률을 기록한 선임생활지도원보다 매우 낮았음

- 한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승진 경험률은 12.2%로 이용시설-과장(24.4%)과 이용시설-선임사회복지사(37.1%)보다도 낮은 편이었음

〈표 5-1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최근 3년간 승진 현황(인사급여정보 有 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승진 유		승진 무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12,037	17.4	57,276	8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11,512	17.2	55,363	82.8
	여성가족부	2,438	525	21.5	1,913	78.5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4,349	14.8	25,054	85.2
	이용시설	39,910	7,688	19.3	32,222	80.7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4,187	16.3	21,571	83.7
	지방이양	43,555	7,850	18.0	35,705	82.0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1,074	20.2	4,239	79.8
	6~10인	5,929	1,408	23.7	4,521	76.3
	11~20인 이하	9,441	2,064	21.9	7,377	78.1
	21~30인 이하	14,183	2,560	18.0	11,623	82.0
	31~40인 이하	10,729	1,720	16.0	9,009	84.0
	41~50인 이하	6,563	1,094	16.7	5,469	83.3
	51인 이상	17,155	2,117	12.3	15,038	87.7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2,067	17.4	9,842	82.6
	부산광역시	4,802	731	15.2	4,071	84.8
	대구광역시	2,711	439	16.2	2,272	83.8
	인천광역시	3,114	637	20.5	2,477	79.5
	광주광역시	1,820	345	19.0	1,475	81.0
	대전광역시	1,718	276	16.1	1,442	83.9
	울산광역시	1,321	167	12.6	1,154	87.4
	세종특별자치시	409	62	15.2	347	84.8
	경기도	15,203	2,693	17.7	12,510	82.3
	강원도	2,907	560	19.3	2,347	80.7
	충청북도	3,969	718	18.1	3,251	81.9
	충청남도	3,640	540	14.8	3,100	85.2
	전라북도	3,406	639	18.8	2,767	81.2
	전라남도	3,684	506	13.7	3,178	86.3
	경상북도	3,863	714	18.5	3,149	81.5
	경상남도	3,489	597	17.1	2,892	82.9
	제주특별자치도	1,348	346	25.7	1,002	74.3

〈표 5-118〉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최근 3년간 승진 현황(인사급여정보 有 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승진 유		승진 무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12,037	17.4	57,276	82.6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92	9.0	925	91.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8	17.8	37	82.2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1,136	12.8	7,719	87.2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85	33.6	168	66.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376	21.9	1,341	78.1
	소계	11,887	1,697	14.3	10,190	85.7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721	13.7	4,545	86.3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28	17.4	133	82.6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73	24.7	223	75.3
	자립지원시설	22	7	31.8	15	68.2
	공동생활가정	558	97	17.4	461	82.6
	아동상담소	37	9	24.3	28	75.7
	아동전용시설	25	8	32.0	17	68.0
	지역아동센터	1,779	289	16.2	1,490	83.8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108	25.1	323	74.9
	가정위탁지원센터	22	5	22.7	17	77.3
	소계	8,597	1,345	15.6	7,252	84.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1,074	13.1	7,139	86.9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1,103	14.0	6,790	86.0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27	8.4	296	91.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187	21.0	705	79.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70	16.5	354	83.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2,410	24.3	7,490	7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739	17.3	3,521	82.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26	14.4	154	85.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17	31.5	37	68.5
	소계	32,139	5,653	17.6	26,486	82.4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317	18.8	1,372	81.2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50	23.7	161	76.3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46	18.5	203	81.5
	소계	2,149	413	19.2	1,736	80.8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26	16.9	128	83.1
	노숙인재활시설	535	120	22.4	415	77.6
	노숙인요양시설	568	83	14.6	485	85.4

구분		사례 수	승진 유		승진 무	
			빈도	%	빈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40	16.7	200	83.3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6	26.1	17	73.9
	쪽방상담소	26	4	15.4	22	84.6
	소계	1,546	279	18.0	1,267	82.0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5	6.8	68	93.2
	사회복지관	8,475	1,588	18.7	6,887	81.3
	소계	8,548	1,593	18.6	6,955	81.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387	31.1	856	68.9
	소계	1,243	387	31.1	856	68.9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145	18.9	621	81.1
	소계	766	145	18.9	621	81.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2	15.4	11	84.6
	청소년지원시설	38	7	18.4	31	81.6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1	100.0
	자활지원센터	7	6	85.7	1	14.3
	성매매피해상담소	44	10	22.7	34	77.3
	소계	103	25	24.3	78	75.7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11	23.9	35	76.1
	성폭력피해상담소	60	14	23.3	46	76.7
	소계	106	25	23.6	81	76.4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43	34.4	82	65.6
	가정폭력상담소	161	31	19.3	130	80.7
	긴급전화센터	39	18	46.2	21	53.8
	소계	325	92	28.3	233	7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20	22.7	68	77.3
	부자가족복지시설	16	.	.	16	10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26	16.1	135	83.9
	일시지원복지시설	29	6	20.7	23	79.3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4	57.1	3	42.9
	소계	301	56	18.6	245	81.4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289	19.4	1,199	80.6
	소계	1,488	289	19.4	1,199	80.6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33	33.0	67	67.0
	청소년자립지원관	6	2	33.3	4	66.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3	33.3	6	66.7
	소계	115	38	33.0	77	67.0

〈표 5-1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최근 3년간 승진 현황(인사급여정보 有 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승진 유		승진 무	
		빈도	%	빈도	%
전체	69,313	12,037	17.4	57,276	82.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1,572	15.3	8,718	84.7
생활-관리직	629	117	18.6	512	81.4
생활-기능직	2,901	276	9.5	2,625	90.5
생활-기타	173	28	16.2	145	83.8
생활-기타(계약직)	11	.	.	11	100.0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18	5.7	298	94.3
생활-사무국장	989	187	18.9	802	81.1
생활-생활지도원	11,989	1,628	13.6	10,361	86.4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357	47.9	389	52.1
생활-시설장	1,359	166	12.2	1,193	87.8
이용-과장	1,476	360	24.4	1,116	75.6
이용-관리직 기타	790	77	9.7	713	90.3
이용-관리직(계약직)	35	4	11.4	31	88.6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	7.7	12	92.3
이용-관리직1급	281	102	36.3	179	63.7
이용-관리직2급	26	12	46.2	14	53.8
이용-관리직3급	276	136	49.3	140	50.7
이용-관리직4급	2,473	428	17.3	2,045	82.7
이용-관장	2,616	336	12.8	2,280	87.2
이용-기타	5,008	385	7.7	4,623	92.3
이용-기타(계약직)	470	33	7.0	437	93.0
이용-기타(미기입)	886	150	16.9	736	83.1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	2.3	43	97.7
이용-기타(전담 사회복지사)	208	19	9.1	189	90.9
이용-기타(촉탁의사)	9	2	22.2	7	77.8
이용-부장	782	200	25.6	582	74.4
이용-사무국장	375	93	24.8	282	75.2
이용-사무직1급	365	123	33.7	242	66.3
이용-사무직2급	37	20	54.1	17	45.9
이용-사무직3급	386	183	47.4	203	52.6
이용-사무직4급	1,491	342	22.9	1,149	77.1
이용-사회복지사	10,396	1,272	12.2	9,124	87.8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1,145	37.1	1,944	62.9
이용-의료직1급	26	4	15.4	22	84.6
이용-의료직2급	5	1	20.0	4	80.0
이용-의료직3급	860	166	19.3	694	80.7
이용-의료직4급	58	7	12.1	51	87.9
이용-일반직 기타	31	5	16.1	26	83.9
이용-일반직1급	94	42	44.7	52	55.3
이용-일반직2급	3,197	980	30.7	2,217	69.3
이용-일반직3급	250	151	60.4	99	39.6
이용-일반직4급	3,799	899	23.7	2,900	76.3
이용-일반직5급	58	9	15.5	49	84.5

바. 교육·훈련

□ (교육훈련 횟수: 전체 시설 수 기준) 총 4,739개 시설 중 최근 2년간 교육훈련을 1회 이상 시행한 시설은 49.9%, 2,365개 시설이고, 전체 평균 16.8회로 파악됨

○ (분석 기준) 최근 2년간 교육 횟수에서 0회로 파악된 시설은 교육 미실시보다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교육 현황을 미기입한 것으로 보임

○ (지역분포) 전체 평균 교육횟수는 16.8회였고,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13.1회), 전라남도(13.2회), 경상남도(13.6회) 등이었음

- (교육 횟수가 17회 이상) 전체 시설 중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광역시(30.5%), 부산광역시(28.4%), 전라북도(24.7%) 등이 포함됨

〈표 5-120〉 교육훈련과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회, %)

구분	사례수	0회	1~11회	12회	13~14회	15~16회	17회 이상	평균
전체	4,739	50.1	27.3	0.8	1.6	1.3	18.9	16.8
서울특별시	821	59.3	26.8	0.5	1.0	0.7	11.7	15.2
부산광역시	303	38.9	29.0	1.7	1.7	0.3	28.4	18.2
대구광역시	164	37.8	26.8	·	1.2	3.7	30.5	18.4
인천광역시	218	56.9	18.8	·	·	1.4	22.9	21.1
광주광역시	151	34.4	36.4	1.3	4.0	1.3	22.5	15.2
대전광역시	138	42.8	31.2	0.7	2.9	1.4	21.0	16.6
울산광역시	103	35.9	40.8	1.0	2.9	1.9	17.5	13.1
세종특별자치시	28	57.1	25.0	·	·	·	17.9	16.3
경기도	958	55.5	23.7	0.8	1.3	1.0	17.6	18.8
강원도	202	50.0	24.3	1.0	2.5	2.5	19.8	16.6
충청북도	245	47.8	25.7	2.0	2.0	1.2	21.2	19.1
충청남도	221	44.3	32.1	0.9	1.8	1.8	19.0	16.6
전라북도	223	36.8	31.4	1.8	3.1	2.2	24.7	16.0
전라남도	304	45.7	33.9	0.7	2.0	1.3	16.4	13.2
경상북도	289	49.1	28.0	0.3	1.4	2.1	19.0	15.8
경상남도	288	58.0	25.7	0.7	1.7	0.7	13.2	13.6
제주특별자치도	83	49.4	16.9	·	1.2	·	32.5	24.5

○ (소관부처) 총 4,739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평균 17.1회,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평균 10.2회로 복지부 소관시설이 약 6.9회 정도 교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2년간 교육 횟수에서 노인복지시설이 27.0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숙인시설(23.6회)·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22.5회)의 순이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3.8회로 가장 적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총 28.2회로 가장 많은 반면 청소년복지시설(9회) 등 기타 시설은 그 횟수가 평균 이하였음

〈표 5-121〉 교육훈련 횟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회, %)

구분		사례수	0회	1~11회	12회	13~14회	15~16회	17회 이상	평균
전체		4,739	50.1	27.3	0.8	1.6	1.3	18.9	16.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481	51.1	11.9	1.0	3.5	2.3	30.1	27.0
	아동복지시설	995	48.3	38.9	0.4	0.4	0.5	11.5	10.9
	장애인복지시설	2,139	50.7	27.4	1.0	1.5	0.8	18.6	17.2
	정신건강증진시설	147	15.6	52.4	2.0	1.4	1.4	27.2	16.3
	노숙인시설	77	27.3	31.2	1.3	·	3.9	36.4	23.6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336	31.8	9.2	1.2	5.4	6.3	46.1	22.5
	지역자활센터	110	87.3	8.2	·	0.9	0.9	2.7	8.7
	다함께돌봄센터	229	77.3	21.8	·	0.9	·	·	3.8
	계	4,514	49.5	27.1	0.9	1.7	1.3	19.5	17.1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5	66.7	33.3	·	·	·	·	4.8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1	90.5	9.5	·	·	·	·	5.5
	가정폭력보호시설	52	65.4	34.6	·	·	·	·	5.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0	28.3	68.3	·	1.7	·	1.7	6.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72.1	4.9	·	·	1.6	21.3	28.2
	청소년복지시설	16	93.8	6.3	·	·	·	·	9.0
	계	225	61.8	31.1	·	0.4	0.4	6.2	10.2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교육 및 훈련 횟수가 가장 낮은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1.6회),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회) 그리고 아동복지지설 내 지역아동센터(2.5회) 등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내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1회)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3회), 그리고 가정폭력보호시설 내 가정폭력상담소(4.7회) 등으로 파악됨

〈표 5-122〉 교육훈련 횟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 세부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회, %)

구분		사례수	0회	1~11회	12회	13~14회	15~16회	17회 이상	평균
전체		4,739	50.1	27.3	0.8	1.6	1.3	18.9	16.8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79	49.4	20.3	·	8.9	2.5	19.0	13.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	88.9	11.1	·	·	·	·	2.0
	노인여가복지시설	268	32.1	13.8	1.9	3.4	3.0	45.9	30.4
	노인보호전문기관	27	88.9	3.7	·	3.7	3.7	·	12.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8	90.8	2.0	·	·	·	7.1	26.1
	계	481	51.1	11.9	1.0	3.5	2.3	30.1	27.0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171	25.7	8.8	1.8	1.8	1.8	60.2	32.5
	아동일시보호시설	8	62.5	12.5	12.5	·	·	12.5	12.0
	아동보호치료시설	11	9.1	18.2	·	·	·	72.7	25.7
	자립지원시설	5	20.0	80.0	·	·	·	·	5.3
	공동생활가정	142	44.4	55.6	·	·	·	·	4.5
	아동상담소	5	80.0	20.0	·	·	·	·	7.0
	아동전용시설	6	100.0	·	·	·	·	·	·
	지역아동센터	621	54.3	45.7	·	·	·	·	2.5
	아동보호전문기관	24	75.0	4.2	·	4.2	8.3	8.3	15.0
	가정위탁지원센터	2	100.0	·	·	·	·	·	·
	계	995	48.3	38.9	0.4	0.4	0.5	11.5	10.9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291	35.4	13.1	0.7	4.1	1.7	45.0	26.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26	32.7	11.5	1.3	0.4	1.3	52.7	31.2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11.1	11.1	·	·	·	77.8	31.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0	32.7	50.0	3.6	8.2	2.7	2.7	9.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9	53.1	46.9	·	·	·	·	1.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71	63.4	19.3	0.4	0.5	0.3	16.1	2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1	50.1	41.8	2.4	1.5	1.0	3.2	7.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	100.0	·	·	·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7	85.7	14.3	·	·	·	·	8.0
	계	2,139	50.7	27.4	1.0	1.5	0.8	18.6	17.2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44	9.1	6.8	·	·	·	84.1	38.7
	정신재활생활시설	61	19.7	73.8	1.6	1.6	1.6	1.6	3.9
	정신재활이용시설	42	16.7	69.0	4.8	2.4	2.4	4.8	8.1
	계	147	15.6	52.4	2.0	1.4	1.4	27.2	16.3
노숙인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24	25.0	66.7	·	·	4.2	4.2	6.6
	노숙인재활시설	21	19.0	4.8	·	·	4.8	71.4	30.4
	노숙인요양시설	15	26.7	·	·	·	6.7	66.7	49.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9	55.6	11.1	11.1	·	·	22.2	22.3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25.0	75.0	·	·	·	·	6.3
	쪽방상담소	4	25.0	75.0	·	·	·	·	9.3
	계	77	27.3	31.2	1.3	·	3.9	36.4	23.6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5	80.0	·	·	20.0	·	·	13.0
	사회복지관	331	31.1	9.4	1.2	5.1	6.3	46.8	22.5
	계	336	31.8	9.2	1.2	5.4	6.3	46.1	22.5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10	87.3	8.2	·	0.9	0.9	2.7	8.7
	계	110	87.3	8.2	·	0.9	0.9	2.7	8.7
다함께 돌봄 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9	77.3	21.8	·	0.9	·	·	3.8
	계	229	77.3	21.8	·	0.9	·	·	3.8

구분		사례수	0회	1~11회	12회	13~14회	15~16회	17회 이상	평균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3	100.0						
	청소년지원시설	5	60.0	40.0					6.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00.0					1.0
	자활지원센터	1		100.0					6.0
	성매매피해상담소	5	80.0	20.0					5.0
	계	15	66.7	33.3					4.8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83.3	16.7					6.0
	성폭력피해상담소	15	93.3	6.7					5.0
	계	21	90.5	9.5					5.5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64.7	35.3					7.0
	가정폭력상담소	33	63.6	36.4					4.7
	긴급전화센터	2	100.0						
	계	52	65.4	34.6					5.4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19	31.6	68.4					5.4
	부자가족복지시설	2	50.0	50.0					8.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3	24.2	69.7		3.0		3.0	6.0
	일시지원복지시설	4	25.0	75.0					8.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	50.0	50.0					3.0
	계	60	28.3	68.3		1.7		1.7	6.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61	72.1	4.9			1.6	21.3	28.2
	계	61	72.1	4.9			1.6	21.3	28.2
청소년 복지 시설	청소년쉼터	13	92.3	7.7					9.0
	청소년자립지원관	1	10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100.0						
	계	16	93.8	6.3					9.0

○ (시설유형) 전체 생활시설의 2년간 교육 횟수는 19.2회이고 이용시설의 평균 교육횟수는 15.0회로 생활시설의 교육 횟수가 약 4.2회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2년간 교육 횟수가 평균보다 적은 생활시설은 결핵한센시설(13.0회)과 노인복지시설(12.9회)로 파악되며, 이용시설은 아동복지시설(2.8회), 다함께돌봄센터(3.8회), 정신건강증진시설(8회)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2년간 교육 횟수가 평균보다 적은 생활시설은 성매매피해지원시설(4.3회)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6회), 성폭력피해보호시설(6회)이었고, 이용시설 중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3회), 성폭력피해보호시설(5회) 등이었음

〈표 5-123〉 교육훈련 횟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회, %)

구분		사례수	0회	1~11회	12회	13~14회	15~16회	17회 이상	평균
전체		4,739	50.1	27.3	0.8	1.6	1.3	18.9	16.8
생활		1,633	38.2	30.0	0.9	2.1	1.2	27.7	19.2
이용		3,106	56.4	25.8	0.8	1.4	1.4	14.3	15.0
노인복지시설	생활	88	53.4	19.3	·	8.0	2.3	17.0	12.9
	이용	393	50.6	10.2	1.3	2.5	2.3	33.1	29.9
	계	481	51.1	11.9	1.0	3.5	2.3	30.1	27.0
아동복지시설	생활	337	33.8	30.0	1.2	0.9	0.9	33.2	21.5
	이용	658	55.8	43.5	·	0.2	0.3	0.3	2.8
	계	995	48.3	38.9	0.4	0.4	0.5	11.5	10.9
장애인복지시설	생활	945	40.0	28.0	1.0	2.3	1.2	27.5	19.3
	이용	1194	59.1	27.0	1.1	0.8	0.5	11.5	14.8
	계	2139	50.7	27.4	1.0	1.5	0.8	18.6	17.2
정신건강증진시설	생활	92	14.1	42.4	1.1	1.1	·	41.3	21.0
	이용	55	18.2	69.1	3.6	1.8	3.6	3.6	8.0
	계	147	15.6	52.4	2.0	1.4	1.4	27.2	16.3
노숙인시설	생활	60	23.3	28.3	·	·	5.0	43.3	25.7
	이용	17	41.2	41.2	5.9	·	·	11.8	13.6
	계	77	27.3	31.2	1.3	·	3.9	36.4	23.6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생활	5	80.0	·	·	20.0	·	·	13.0
	이용	331	31.1	9.4	1.2	5.1	6.3	46.8	22.5
	계	336	31.8	9.2	1.2	5.4	6.3	46.1	22.5
지역자활센터	이용	110	87.3	8.2	·	0.9	0.9	2.7	8.7
	계	110	87.3	8.2	·	0.9	0.9	2.7	8.7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229	77.3	21.8	·	0.9	·	·	3.8
	계	229	77.3	21.8	·	0.9	·	·	3.8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	9	66.7	33.3	·	·	·	·	4.3
	이용	6	66.7	33.3	·	·	·	·	5.5
	계	15	66.7	33.3	·	·	·	·	4.8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6	83.3	16.7	·	·	·	·	6.0
	이용	15	93.3	6.7	·	·	·	·	5.0
	계	21	90.5	9.5	·	·	·	·	5.5
가정폭력보호시설	생활	17	64.7	35.3	·	·	·	·	7.0
	이용	35	65.7	34.3	·	·	·	·	4.7
	계	52	65.4	34.6	·	·	·	·	5.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58	27.6	69.0	·	1.7	·	1.7	6.0
	이용	2	50.0	50.0	·	·	·	·	3.0
	계	60	28.3	68.3	·	1.7	·	1.7	6.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61	72.1	4.9	·	·	1.6	21.3	28.2
	계	61	72.1	4.9	·	·	1.6	21.3	28.2
청소년복지시설	생활	16	93.8	6.3	·	·	·	·	9.0
	계	16	93.8	6.3	·	·	·	·	9.0

○ (재원 출처) 전체 국고지원시설의 2년간 교육 평균 횟수는 15.3회인 반면 지방이양시설의 평균 교육횟수는 17.8회로 지방이양시설이 2.5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국고지원시설 중 2년간 평균 교육횟수가 평균보다 아주 적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3.2회), 다함께돌봄센터(3.8회)이었으며, 지방이양시설 중 2년간 교육횟수가 평균보자 매우 낮은 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5.6회), 장애인복지시설(11.5회)이였음

〈표 5-124〉 교육훈련 횟수와 분석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재원 출처 현황(시설 수 기준)

(단위: 개소, 회, %)

구분		사례수	0회	1~11회	12회	13~14회	15~16회	17회 이상	평균
전체		4,739	50.1	27.3	0.8	1.6	1.3	18.9	16.8
국고지원		1,969	53.5	28.6	0.3	1.0	0.7	15.9	15.3
지방이양		2,770	47.7	26.3	1.2	2.1	1.7	21.0	17.8
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36	88.9	5.6	·	2.8	2.8	·	9.8
	지방이양	445	48.1	12.4	1.1	3.6	2.2	32.6	27.3
	계	481	51.1	11.9	1.0	3.5	2.3	30.1	27.0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787	53.1	46.3	·	0.1	0.3	0.3	3.2
	지방이양	208	30.3	11.1	1.9	1.4	1.4	53.8	30.7
	계	995	48.3	38.9	0.4	0.4	0.5	11.5	10.9
장애인복지시설	국고지원	533	34.5	12.4	0.9	2.4	1.5	48.2	28.7
	지방이양	1,606	56.0	32.4	1.1	1.2	0.6	8.7	11.5
	계	2,139	50.7	27.4	1.0	1.5	0.8	18.6	17.2
정신건강증진시설	국고지원	44	9.1	6.8	·	·	·	84.1	38.7
	지방이양	103	18.4	71.8	2.9	1.9	1.9	2.9	5.6
	계	147	15.6	52.4	2.0	1.4	1.4	27.2	16.3
노숙인시설	지방이양	77	27.3	31.2	1.3	·	3.9	36.4	23.6
	계	77	27.3	31.2	1.3	·	3.9	36.4	23.6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국고지원	5	80.0	·	·	20.0	·	·	13.0
	지방이양	331	31.1	9.4	1.2	5.1	6.3	46.8	22.5
	계	336	31.8	9.2	1.2	5.4	6.3	46.1	22.5
지역자활센터	국고지원	110	87.3	8.2	·	0.9	0.9	2.7	8.7
	계	110	87.3	8.2	·	0.9	0.9	2.7	8.7
다함께돌봄센터	국고지원	229	77.3	21.8	·	0.9	·	·	3.8
	계	229	77.3	21.8	·	0.9	·	·	3.8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국고지원	15	66.7	33.3	·	·	·	·	4.8
	계	15	66.7	33.3	·	·	·	·	4.8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국고지원	21	90.5	9.5	·	·	·	·	5.5
	계	21	90.5	9.5	·	·	·	·	5.5
가정폭력보호시설	국고지원	52	65.4	34.6	·	·	·	·	5.4
	계	52	65.4	34.6	·	·	·	·	5.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지원	60	28.3	68.3	·	1.7	·	1.7	6.0
	계	60	28.3	68.3	·	1.7	·	1.7	6.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고지원	61	72.1	4.9	·	·	1.6	21.3	28.2
	계	61	72.1	4.9	·	·	1.6	21.3	28.2
청소년복지시설	국고지원	16	93.8	6.3	·	·	·	·	9.0
	계	16	93.8	6.3	·	·	·	·	9.0

□ (종사자 기준 연 교육 횟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간 교육 횟수는 13회 이상이 1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회(13.8%), 7~12회(10.7회) 순이었으며, 평균은 11.9회였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평균 교육 횟수는 11.9회,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평균 교육 횟수도 11.8회로 차이가 거의 없었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연간 교육 횟수는 12.4회, 이용시설 종사자의 평균 교육 횟수는 11.4회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1회 정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연간 교육 횟수는 12.1회,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연간 교육 횟수도 11.8회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음

○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와 상관없이 연간 교육 횟수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5인 이하 시설의 교육 횟수는 11.1회로, 6~11인 이하(11.2회), 11~20인 이하(12.5회), 21~30인 이하(11.7회). 31~40인 이하(12.3회) 등에서 큰 차이가 없었음

○ (지역) 전체 연평균 교육 횟수인 11.9회 보다 적은 지역은 울산광역시가 연간 9.5회로 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10.4회), 대전광역시(10.5회) 등의 순이었으며, 반면에 교육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도(13.3회), 충청북도(13.0회), 대구광역시(13.0회)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연간 교육 횟수가 가장 적은 시설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로 연간 2회였으며 다음으로 아동상담소(3.0회), 노인보호전문기관 (3.4회) 등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한부모가족상담소가 연간 1.0 회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1.2회), 성매매피해상담소(4.5회), 청소년쉼터 (5.0회) 등이 적은 편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에서 촉탁의사(3.8회)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직에 한정할 경우, 생활지도원은 12.4회, 과장 및 생활복지사는 12.3회, 선임생활지도원은 12.1회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한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에서는 사무국장(14.6회)과 부장(14.5회)이 많은 편이었고, 다음으로 선임사회복지사(12.4회), 생활지도원(11.1회) 등의 순이었음

〈표 5-1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연 교육 횟수(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회,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1~5회	6회	7~12회	13회 이상	평균
전체		69,313	54.9	13.8	1.7	10.7	19.0	1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54.2	14.1	1.7	10.8	19.2	11.9
	여성가족부	2,438	74.3	6.8	1.2	6.5	11.2	11.8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44.2	15.9	1.7	13.6	24.6	12.4
	이용시설	39,910	62.7	12.3	1.6	8.5	14.8	11.4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54.7	14.1	1.4	9.9	19.9	12.1
	지방이양	43,555	55.0	13.7	1.8	11.1	18.4	11.8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67.9	10.6	1.0	8.3	12.2	11.1
	6~10인	5,929	64.7	11.9	1.7	8.0	13.6	11.2
	11~20인 이하	9,441	55.9	13.0	1.7	10.6	18.8	12.5
	21~30인 이하	14,183	48.4	16.8	1.6	12.2	21.1	11.7
	31~40인 이하	10,729	47.8	16.0	2.4	10.8	23.0	12.3
	41~50인 이하	6,563	45.9	15.7	1.5	13.9	23.1	11.7
	51인 이상	17,155	60.1	11.4	1.5	9.8	17.1	12.0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66.5	8.8	1.5	9.9	13.4	11.5
	부산광역시	4,802	46.4	19.9	2.1	10.6	21.0	11.7
	대구광역시	2,711	47.7	17.7	1.3	11.2	22.2	13.0
	인천광역시	3,114	49.2	11.6	1.3	15.8	22.1	12.5
	광주광역시	1,820	34.7	13.4	1.3	9.5	41.1	17.0
	대전광역시	1,718	39.5	24.3	2.1	11.4	22.7	10.5
	울산광역시	1,321	53.2	20.8	1.6	7.7	16.7	9.5
	세종특별자치시	409	59.7	11.5	0.7	9.5	18.6	11.7
	경기도	15,203	59.1	12.5	1.6	9.2	17.6	11.4
	강원도	2,907	54.2	13.6	1.8	12.6	17.8	11.1
	충청북도	3,969	51.9	13.1	1.2	11.8	22.0	13.0
	충청남도	3,640	57.1	10.3	2.4	11.0	19.3	13.3
	전라북도	3,406	46.4	20.4	3.2	9.6	20.4	11.8
	전라남도	3,684	51.0	18.1	1.6	11.8	17.5	10.4
	경상북도	3,863	53.1	15.0	1.3	9.5	21.0	11.6
	경상남도	3,489	59.9	12.1	1.3	10.6	16.2	11.5
	제주특별자치도	1,348	38.4	15.5	1.5	19.5	25.1	12.9

〈표 5-126〉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연 교육 횟수(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회,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1~5회	6회	7~12회	13회 이상	평균
			%	%	%	%	%	
전체		69,313	54.9	13.8	1.7	10.7	19.0	11.9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56.6	14.6	1.8	13.0	14.1	10.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97.8	2.2	·	·	·	2.0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58.3	10.1	1.9	9.2	20.5	13.1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90.1	8.3	0.8	0.8	·	3.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91.1	3.1	0.1	3.3	2.5	9.2
	소계	11,887	63.7	9.4	1.6	8.5	16.9	12.7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34.9	18.2	2.2	17.4	27.2	11.5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78.9	14.9	·	·	6.2	5.6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28.7	33.1	1.4	18.2	18.6	10.0
	자립지원시설	22	9.1	59.1	9.1	22.7	·	4.0
	공동생활가정	558	56.1	8.1	1.1	10.9	23.8	16.1
	아동상담소	37	81.1	16.2	·	2.7	·	3.0
	아동전용시설	25	100.0	·	·	·	·	·
	지역아동센터	1,779	67.6	15.2	0.8	7.6	8.7	8.3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84.5	8.4	0.7	6.3	0.2	5.6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
	소계	8,597	46.6	16.9	1.7	14.0	20.8	11.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47.5	19.2	1.5	11.0	20.8	11.2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49.5	12.9	1.4	11.7	24.5	13.0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34.4	23.5	0.6	12.4	29.1	12.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40.8	12.3	1.2	12.6	33.1	14.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61.8	6.8	0.7	7.3	23.3	16.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55.1	14.9	1.9	9.9	18.3	1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71.6	11.4	1.2	7.2	8.5	9.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100.0	·	·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85.2	·	·	1.9	13.0	13.5
	소계	32,139	53.8	14.8	1.5	10.2	19.7	11.9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19.6	19.2	3.6	13.6	44.0	14.2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27.0	8.1	1.4	20.9	42.7	15.8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16.1	16.5	6.0	19.7	41.8	14.8
	소계	2,149	19.9	17.8	3.7	15.0	43.6	14.4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35.7	7.8	3.2	31.2	22.1	10.9
	노숙인재활시설	535	17.6	14.0	1.3	27.9	39.3	14.2
	노숙인요양시설	568	19.9	7.0	1.6	46.7	24.8	14.5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65.8	25.4	·	4.2	4.6	4.4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1~5회	6회	7~12회	13회 이상	평균
			%	%	%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17.4	21.7	·	39.1	21.7	9.3
	쪽방상담소	26	30.8	30.8	·	11.5	26.9	9.2
	소계	1,546	27.9	13.0	1.4	31.3	26.4	13.1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84.9	8.2	5.5	1.4	·	3.8
	사회복지관	8,475	55.2	16.6	2.2	10.2	15.8	10.8
	소계	8,548	55.4	16.5	2.2	10.2	15.7	10.8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92.6	4.3	0.6	1.8	0.7	6.0
	소계	1,243	92.6	4.3	0.6	1.8	0.7	6.0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79.8	5.2	1.0	5.2	8.7	10.7
	소계	766	79.8	5.2	1.0	5.2	8.7	10.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	·	·	·	·
	청소년지원시설	38	73.7	10.5	2.6	10.5	2.6	6.7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	100.0	·	9.0
	자활지원센터	7	14.3	·	·	·	85.7	19.7
	성매매피해상담소	44	90.9	6.8	2.3	·	·	4.5
	소계	103	79.6	6.8	1.9	4.9	6.8	10.1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87.0	13.0	·	·	·	1.2
	성폭력피해상담소	60	93.3	·	·	1.7	5.0	13.0
	소계	106	90.6	5.7	·	0.9	2.8	5.9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72.8	8.0	1.6	11.2	6.4	9.4
	가정폭력상담소	161	70.2	8.7	0.6	9.3	11.2	11.0
	긴급전화센터	39	100.0	·	·	·	·	·
	소계	325	74.8	7.4	0.9	8.9	8.0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36.4	13.6	2.3	21.6	26.1	11.6
	부자가족복지시설	16	50.0	·	·	·	50.0	16.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31.7	16.8	4.3	15.5	31.7	14.9
	일시지원복지시설	29	37.9	·	3.4	31.0	27.6	15.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71.4	28.6	·	·	·	1.0
	소계	301	35.5	13.6	3.3	17.6	29.9	13.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88	79.1	5.4	0.9	4.7	9.9	11.5
	소계	1,488	79.1	5.4	0.9	4.7	9.9	11.5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92.0	8.0	·	·	·	5.0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	·	·	·	·
	소계	115	93.0	7.0	·	·	·	5.0

〈표 5-1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 교육 횟수(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회,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오류	1~5회	6회	7~12회	13회 이상	평균
		%	%	%	%	%	
전체	69,313	54.9	13.8	1.7	10.7	19.0	11.9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43.4	15.8	1.7	13.8	25.4	12.3
생활-관리직	629	47.5	12.9	2.2	14.8	22.6	12.1
생활-기능직	2,901	45.7	15.6	1.8	16.1	20.8	11.6
생활-기타	173	59.5	12.7	2.3	13.9	11.6	9.3
생활-기타(계약직)	11	36.4	·	9.1	27.3	27.3	13.0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87.0	10.8	·	0.9	1.3	3.8
생활-사무국장	989	34.0	18.2	2.6	12.1	33.1	14.3
생활-생활지도원	11,989	43.9	16.2	1.7	13.4	24.8	12.4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41.0	18.6	1.3	13.7	25.3	12.1
생활-시설장	1,359	45.7	15.1	1.4	12.7	25.1	13.5
이용-과장	1,476	55.6	13.3	1.4	9.0	20.7	12.2
이용-관리직 기타	790	74.3	12.2	1.1	3.4	9.0	8.4
이용-관리직(계약직)	35	60.0	22.9	·	14.3	2.9	6.1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00.0	·	·	·	·	·
이용-관리직1급	281	56.6	14.6	2.5	11.7	14.6	11.2
이용-관리직2급	26	38.5	11.5	3.8	3.8	42.3	19.8
이용-관리직3급	276	50.0	11.2	1.1	13.8	23.9	13.5
이용-관리직4급	2,473	61.0	14.6	1.2	9.7	13.4	9.9
이용-관장	2,616	61.4	13.5	1.3	8.7	15.2	11.7
이용-기타	5,008	83.8	6.3	0.6	4.4	4.8	9.8
이용-기타(계약직)	470	83.4	7.0	0.4	5.3	3.8	8.0
이용-기타(미기입)	886	67.8	8.0	1.9	7.0	15.2	11.5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208	46.2	13.5	4.3	10.6	25.5	13.0
이용-기타(촉탁의사)	9	100.0	·	·	·	·	·
이용-부장	782	50.3	12.4	1.5	10.7	25.1	14.5
이용-사무국장	375	52.3	11.2	1.6	12.3	22.7	14.6
이용-사무직1급	365	35.6	11.0	3.6	18.9	31.0	14.7
이용-사무직2급	37	64.9	10.8	5.4	5.4	13.5	11.2
이용-사무직3급	386	58.0	13.0	2.6	10.4	16.1	11.7
이용-사무직4급	1,491	60.8	12.6	2.0	9.1	15.6	11.2
이용-사회복지사	10,396	67.6	10.9	1.7	7.1	12.7	11.1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50.9	14.1	2.3	11.4	21.3	12.4
이용-의료직1급	26	92.3	3.8	·	·	3.8	9.0
이용-의료직2급	5	80.0	20.0	·	·	·	4.0
이용-의료직3급	860	47.3	20.2	1.4	9.3	21.7	10.4
이용-의료직4급	58	58.6	13.8	1.7	10.3	15.5	12.2
이용-일반직 기타	31	51.6	3.2	·	22.6	22.6	12.1
이용-일반직1급	94	56.4	4.3	2.1	11.7	25.5	14.5
이용-일반직2급	3,197	57.5	14.0	2.0	9.7	16.7	11.4
이용-일반직3급	250	44.8	20.4	2.0	14.0	18.8	10.2
이용-일반직4급	3,799	48.9	18.0	2.4	11.3	19.4	11.2
이용-일반직5급	58	27.6	22.4	·	8.6	41.4	14.7

□ (종사자 기준 연 교육 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간 교육 시간은 41~179시간이 1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9~40시간(17.1%), 8시간 이하(6.0%)였으며, 평균 시간은 91.6시간이었음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연간 교육 시간은 92.2시간인 반면에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평균 교육 시간은 64.9시간으로 약 27시간 적었음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연 교육 시간은 76.1시간인 반면에 이용시설 종사자의 평균 교육 시간은 108.9시간으로 이용시설 종사자가 약 33시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연간 교육 시간은 64.9시간인 반면에 지방 이양시설 종사자의 연간 교육 시간은 107.6시간으로 약 43시간 많았음

○ (종사자 규모) 51인 이상 시설과 기타 시설 간의 교육 시간이 차별적으로 나타남

- 51인 이상 시설에서의 연간 교육 시간은 연간 146시간인데 반해 5인 이하 시설은 74.3시간, 6~11인 이하 시설은 69.8시간, 11~20인 이하 시설은 85.2시간, 그라고 41~50인 이하 시설은 75시간으로 파악됨

○ (지역) 전체 연평균 교육 시간인 91.6시간보다 적은 지역은 대전광역시가 연 48.7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57.6시간), 경상남도 (58.2시간) 등의 순이었으며, 반면에, 교육 시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187시간), 대구광역시(144.2시간), 경기도(118.7시간) 등의 순이었음

○ (세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연간 교육 시간이 가장 적은 시설은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연간 13.4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립지원시설 (15.5시간), 결핵한센시설(20.2시간) 등의 순이었음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연 5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8시간), 청소년쉼터(12시간) 등이 적은 편이었음

○ (직위별)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직인 과장 및 생활복지사(71.9시간)와 선임 생활지도원 (68.5시간), 그리고 생활지도원(78.9시간)은 전체 평균 교육 시간 91.6시간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이용시설 사회복지직인 과장(90.3시간)과 선임사회복지사 (95.5시간), 생활지도원 (94시간) 등의 교육 시간은 전체 평균 시간 대비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특성별 연 교육 시간(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회,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8시간 이하	9~40시간	41~179시간	180~239시간	평균
전체		69,313	58.0	6.0	17.1	17.8	1.1	9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6,875	57.3	6.2	17.3	18.0	1.1	92.2
	여성가족부	2,438	75.4	1.6	10.3	12.1	0.6	64.9
시설유형	생활시설	29,403	47.4	8.2	24.1	19.3	0.9	76.1
	이용시설	39,910	65.7	4.4	11.9	16.7	1.3	108.9
재원 출처	국고지원	25,758	56.7	7.1	20.0	15.4	0.7	64.9
	지방이양	43,555	58.7	5.4	15.3	19.2	1.4	107.6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5,313	69.9	4.8	12.9	12.0	0.5	74.3
	6~10인	5,929	67.3	4.7	13.6	13.2	1.1	69.8
	11~20인 이하	9,441	58.3	5.3	14.8	20.4	1.2	85.2
	21~30인 이하	14,183	51.5	7.5	19.9	19.5	1.6	74.4
	31~40인 이하	10,729	51.1	7.2	20.2	20.4	1.1	76.8
	41~50인 이하	6,563	48.6	7.1	23.7	19.8	0.8	75.0
	51인 이상	17,155	64.1	4.9	14.0	16.0	1.0	146.0
지역	서울특별시	11,909	68.6	4.3	15.0	11.5	0.6	84.9
	부산광역시	4,802	49.5	5.8	21.3	20.5	2.9	76.2
	대구광역시	2,711	54.8	6.5	17.5	20.2	1.0	144.2
	인천광역시	3,114	56.0	5.1	19.0	18.4	1.5	106.7
	광주광역시	1,820	41.5	7.5	19.7	29.8	1.5	111.2
	대전광역시	1,718	40.2	10.5	24.1	24.2	0.9	48.7
	울산광역시	1,321	59.7	7.2	11.6	20.1	1.4	187.0
	세종특별자치시	409	60.9	4.9	22.0	10.5	1.7	57.6
	경기도	15,203	62.1	4.6	14.8	17.6	0.9	118.7
	강원도	2,907	57.1	6.7	18.9	15.1	2.2	82.1
	충청북도	3,969	54.7	8.2	18.3	17.6	1.1	93.3
	충청남도	3,640	58.1	4.2	16.7	20.2	0.8	66.1
	전라북도	3,406	49.9	8.5	18.3	21.9	1.4	77.0
	전라남도	3,684	54.3	11.4	17.5	15.6	1.2	69.8
	경상북도	3,863	54.9	6.5	17.6	20.6	0.4	61.8
	경상남도	3,489	61.3	5.6	17.7	14.7	0.6	58.2
	제주특별자치도	1,348	42.1	6.9	17.1	32.3	1.6	74.4

〈표 5-129〉 사회복지 세부시설 종사자의 연 교육 시간(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시간, %)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8시간 이하	9~40시간	41~179시간	180~239시간	평균
			%	%	%	%	%	
전체		69,313	58.0	6.0	17.1	17.8	1.1	91.6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1,017	59.1	7.1	20.7	11.2	1.9	46.6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5	97.8	·	·	2.2	·	86.0
	노인여가복지시설	8,855	61.9	4.4	10.6	21.1	2.0	111.0
	노인보호전문기관	253	90.1	2.0	4.0	4.0	·	42.8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17	92.7	1.0	5.2	1.0	0.1	85.7
	소계	11,887	66.9	4.1	10.5	16.9	1.6	103.3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5,266	39.4	9.3	27.7	23.0	0.7	70.9
	아동일시보호시설	161	78.9	14.9	5.0	1.2	·	13.4
	아동보호치료시설	296	30.4	18.6	20.9	29.7	0.3	46.3
	자립지원시설	22	9.1	13.6	77.3	·	·	15.5
	공동생활가정	558	61.8	3.4	10.8	22.6	1.4	170.4
	아동상담소	37	81.1	5.4	8.1	2.7	2.7	48.7
	아동전용시설	25	100.0	·	·	·	·	·
	지역아동센터	1,779	68.6	6.7	14.9	9.3	0.4	42.3
	아동보호전문기관	431	84.7	1.9	5.1	7.9	0.5	68.4
	가정위탁지원센터	22	100.0	·	·	·	·	·
	소계	8,597	50.0	8.4	22.0	18.9	0.6	70.7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8,213	48.1	9.9	24.5	16.7	0.8	39.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893	52.5	7.2	22.3	17.1	0.8	78.7
	장애영유아거주시설	323	35.9	13.0	28.2	17.3	5.6	55.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892	43.3	6.8	19.7	29.0	1.1	67.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4	66.3	3.1	11.8	18.2	0.7	109.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900	59.6	4.4	13.5	20.9	1.6	14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60	73.3	5.4	12.1	8.9	0.4	99.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80	100.0	·	·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4	88.9	·	11.1	·	·	88.5
	소계	32,139	56.4	6.7	18.5	17.3	1.1	87.0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689	27.4	10.5	34.2	27.4	0.5	93.0
	정신재활생활시설	211	37.0	3.3	22.7	36.5	0.5	139.2
	정신재활이용시설	249	24.1	4.8	27.7	41.0	2.4	92.6
	소계	2,149	28.0	9.1	32.3	29.8	0.7	97.1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154	35.7	4.5	34.4	23.4	1.9	44.4
	노숙인재활시설	535	26.0	3.2	30.1	39.6	1.1	117.1
	노숙인요양시설	568	39.3	1.4	39.1	16.5	3.7	343.2

구분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8시간 이하	9~40 시간	41~179 시간	180~239시간	평균
			%	%	%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0	65.8	9.2	19.6	5.4	·	23.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3	30.4	·	34.8	34.8	·	229.8
	쪽방상담소	26	30.8	19.2	23.1	26.9	·	37.4
	소계	1,546	38.2	3.8	32.1	23.9	1.9	196.7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73	84.9	4.1	9.6	1.4	·	20.2
	사회복지관	8,475	58.0	5.7	14.2	20.5	1.5	93.6
	소계	8,548	58.3	5.7	14.2	20.4	1.5	93.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243	93.6	0.8	2.1	3.3	0.2	122.9
	소계	1,243	93.6	0.8	2.1	3.3	0.2	122.9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66	81.2	2.9	7.8	8.1	·	59.4
	소계	766	81.2	2.9	7.8	8.1	·	59.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13	100.0	·	·	·	·	·
	청소년지원시설	38	76.3	10.5	7.9	5.3	·	24.8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	·	100.0	·	·	35.0
	자활지원센터	7	42.9	·	28.6	14.3	14.3	165.0
	성매매피해상담소	44	90.9	·	9.1	·	·	18.8
	소계	103	82.5	3.9	9.7	2.9	1.0	66.2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6	95.7	4.3	·	·	·	5.0
	성폭력피해상담소	60	93.3	·	·	6.7	·	129.8
	소계	106	94.3	1.9	·	3.8	·	88.2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5	72.8	5.6	12.0	8.0	1.6	48.0
	가정폭력상담소	161	70.8	3.7	8.1	17.4	·	57.5
	긴급전화센터	39	100.0	·	·	·	·	·
	소계	325	75.1	4.0	8.6	11.7	0.6	53.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88	40.9	6.8	26.1	25.0	1.1	65.3
	부자가족복지시설	16	50.0	·	25.0	25.0	·	56.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1	36.6	6.2	26.1	28.6	2.5	80.0
	일시지원복지시설	29	41.4	·	3.4	51.7	3.4	113.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7	71.4	28.6	·	·	·	8.0
	소계	301	39.9	6.0	23.3	28.9	2.0	77.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488	79.4	0.1	9.1	11.0	0.3	61.0
	소계	1,488	79.4	0.1	9.1	11.0	0.3	61.0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100	92.0	·	8.0	·	·	12.0
	청소년자립지원관	6	100.0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100.0	·	·	·	·	·
	소계	115	93.0	·	7.0	·	·	12.0

〈표 5-1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 교육 시간(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시간, %)

	사례 수	미기입/입력 오류	8시간 이하	9~40시간	41~179시간	180~239시간	평균
		%	%	%	%	%	
전체	69,313	58.0	6.0	17.1	17.8	1.1	91.6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290	46.4	8.2	26.0	18.5	0.9	71.9
생활-관리직	629	50.2	7.8	23.1	17.3	1.6	94.4
생활-기능직	2,901	48.9	10.6	26.2	13.2	1.1	71.5
생활-기타	173	63.0	8.1	23.1	5.8	.	121.2
생활-기타(계약직)	11	36.4	9.1	45.5	9.1	.	28.4
생활-기타(촉탁의사)	316	87.7	9.8	1.3	0.9	0.3	16.3
생활-사무국장	989	38.4	7.1	25.1	27.9	1.5	81.7
생활-생활지도원	11,989	47.3	7.9	23.0	20.9	0.8	78.9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6	44.6	7.9	24.8	21.6	1.1	68.5
생활-시설장	1,359	48.9	6.6	19.9	23.2	1.5	85.4
이용-과장	1,476	59.2	5.1	14.0	20.1	1.6	90.3
이용-관리직 기타	790	77.8	5.1	7.6	9.1	0.4	200.7
이용-관리직(계약직)	35	60.0	8.6	31.4	.	.	17.1
이용-관리직(장애인)	13	100.0	.	.	.	.	.
이용-관리직1급	281	63.7	6.4	10.7	18.1	1.1	340.8
이용-관리직2급	26	50.0	3.8	11.5	34.6	.	138.3
이용-관리직3급	276	52.9	2.5	16.3	26.1	2.2	82.5
이용-관리직4급	2,473	63.2	6.7	15.2	13.4	1.5	78.0
이용-관장	2,616	64.4	4.7	14.2	15.6	1.0	87.0
이용-기타	5,008	85.1	2.9	6.3	5.3	0.3	74.5
이용-기타(계약직)	470	84.5	5.1	7.7	2.6	0.2	36.1
이용-기타(미기입)	886	76.5	2.0	10.2	10.7	0.6	505.0
이용-기타(보육교사)	44	100.0	.	.	.	.	.
이용-기타(전담사회복지사)	208	53.4	4.3	12.5	27.4	2.4	109.2
이용-기타(촉탁의사)	9	100.0	.	.	.	.	.
이용-부장	782	54.3	3.8	14.5	24.3	3.1	115.3
이용-사무국장	375	58.9	3.5	12.0	23.2	2.4	131.8
이용-사무직1급	365	40.5	2.5	15.1	40.0	1.9	108.8
이용-사무직2급	37	73.0	.	10.8	16.2	.	379.8
이용-사무직3급	386	62.7	3.4	13.7	18.9	1.3	192.7
이용-사무직4급	1,491	63.2	4.2	13.8	17.8	0.9	95.1
이용-사회복지사	10,396	69.9	4.4	8.8	15.6	1.2	94.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89	53.7	3.9	15.8	24.9	1.7	95.5
이용-의료직1급	26	92.3	.	7.7	.	.	34.0
이용-의료직2급	5	80.0	.	20.0	.	.	20.0
이용-의료직3급	860	51.4	5.2	18.7	23.1	1.5	95.2
이용-의료직4급	58	62.1	8.6	12.1	15.5	1.7	143.1
이용-일반직 기타	31	67.7	.	22.6	9.7	.	1,065.0
이용-일반직1급	94	60.6	4.3	8.5	23.4	3.2	117.1
이용-일반직2급	3,197	60.7	5.1	13.9	19.0	1.4	83.9
이용-일반직3급	250	47.2	5.6	18.4	26.4	2.4	96.9
이용-일반직4급	3,799	53.0	5.0	15.9	24.1	1.9	121.1
이용-일반직5급	58	32.8	3.4	19.0	44.8	.	58.8

2.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근로환경 변화

□ (근로기준법 개정)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39]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조항[40]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제외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됨

○ (분석내용)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전인 2016년과 개정 후의 2022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변화를 비교·검토함.

가. 월 평균 근로시간 및 일 평균 휴게시간 비교

□ (월 평균 근로시간 비교)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7시간이며, 근로기준법 개정 전인 2016년 월평균 근로시간 185.2시간보다 약 13.5시간이 감소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후 근로시간의 단축이 있음을 시사함.[41]

□ (일 평균 휴게시간 비교) 2022년 실태조사 결과 1시간으로 나타나 2017년 대비 2.0시간에서 1시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지므로 근로기준법 개정 후 근로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휴게시간도 감소함.

□ (분석기준) 2018년「근로기준법」개정항목 중,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업종이 제외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법정근로시간 정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

39)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됨. 개정항목중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 특례조항에서 제외됨.

40)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조)

41) 2017년 근로시간 실태조사는 주 평균 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23년은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조사하여 이를 비교하기 위해 2017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월 평균 근로시간(주 평균근로시간×4.34주)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참조).

○ (휴게시간 정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총 172.1시간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월평균 총 145.3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2016년 대비 보건복지부는 12.8시간을, 여성가족부는 40.9시간의 근로시간이 감소함.

○ (일 평균 휴게시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모두 1시간으로 2016년 대비 보건복지부 소관시설(2.0시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1.8시간)보다 감소함.

□ (시설유형) 2022년 생활시설은 183.5시간을, 이용시설은 160.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생활시설은 5.3시간을, 이용시설은 16.6시간이 감소함.

□ (지역) 2016년 203.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많았던 울산광역시는 2022년 154.7시간으로 약 48.4시간이 감소했으며, 2016년 177.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적었던 전라남도는 2022년 172.2시간으로 약 5.3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시설) 2016년 총 근로시간이 199.2시간으로 가장 많았던 아동복지시설은 2022년 179.5시간으로 2016년 대비 19.7시간이 감소한 반면, 2016년 근무시간이 177시간으로 적은 편에 속했던 노인복지시설은 2022년 월평균 총 근로시간이 155.7시간으로 약 21.3시간 감소함

〈표 5-131〉 시설특성별 월평균 총 근로시간 및 일 평균 휴게시간 비교(2016년 대비 2022년)

(단위: 시간)

구분		월 평균총 근로시간					일 평균 휴게시간	
		2022			2016	2016년 – 2022년	2022	2016
		총 근로	소정근로	시간외근로				
전체		171.7	151.2	20.5	185.2	13.5	1.0	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172.1	151.5	20.7	184.9	12.8	1.0	2.0
	여성가족부	145.3	137.7	7.6	186.2	40.9	1.0	1.8
시설유형	생활시설	183.5	147.1	36.4	188.8	5.3	1,0	2.1
	이용시설	160.9	155.0	5.8	177.5	16.6	1.0	1.8
지역	서울특별시	173.4	158.2	15.2	185.3	11.9	1.0	2.0
	부산광역시	166.2	144.4	21.8	185.8	19.6	1.0	1.8
	대구광역시	175.3	149.6	25.7	185.8	10.5	1.0	1.8
	인천광역시	176.2	152.9	23.3	183.1	6.9	1.0	2.2
	광주광역시	170.1	150.1	20.0	187.5	17.4	1.0	1.9
	대전광역시	179.6	149.2	30.4	184.9	5.3	1.0	1.6
	울산광역시	154.7	147.4	7.3	203.1	48.4	1.0	1.7
	세종특별자치시	178.7	137.8	41.0	182.3	3.6	1.0	2.2

구분		월 평균총 근로시간					일 평균 휴게시간	
		2022			2016	2016년 – 2022년	2022	2016
		총 근로	소정근로	시간외근로				
	경기도	165.6	149.9	15.8	182.3	16.7	1.0	2.2
	강원도	194.1	152.8	41.3	178.9	-15.2	1.0	2.0
	충청북도	154.7	139.2	15.5	190.1	35.4	1.0	2.1
	충청남도	185.2	154.6	30.6	181.4	-3.8	1.0	2.3
	전라북도	175.1	151.1	24.1	181.8	6.7	1.0	1.7
	전라남도	172.2	146.2	26.0	177.5	5.3	1.0	2.0
	경상북도	176.2	145.1	31.1	186.2	10.0	1.0	1.9
	경상남도	190.1	158.2	31.9	191.0	0.9	1.0	1.9
	제주특별자치도	186.1	168.7	17.3	185.8	-0.3	1.0	2.0
세부시설	노인복지시설	155.7	149.9	5.8	177.0	21.3	1.0	2.1
	아동복지시설	179.5	147.8	31.8	199.2	19.7	1.0	2.4
	장애인복지시설	177.2	150.3	27.0	193.6	16.4	1.0	1.7
	정신건강증진시설	180.3	149.4	30.9	189.2	8.9	1.0	1.7
	노숙인시설	181.4	160.9	20.5	196.2	14.8	1.0	1.7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170.5	165.2	5.3	184.0	13.5	1.0	1.7
	지역자활센터	164.7	159.1	5.6	185.8	21.1	1.0	1.8
	다함께돌봄센터	110.5	110.2	0.3		-110.5	1.0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184.0	168.0	16.0	197.0	13.0	1.0	1.7
	가정폭력보호시설	158.6	151.8	6.8	187.9	29.3	1.0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56.1	141.7	14.4	191.0	34.9	1.0	1.4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37.8	132.2	5.5	181.4	43.6	1.0	1.7
	청소년복지시설	159.6	156.6	3.0	189.7	30.1	1.0	1.9

주 :평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비교에서 재원 출처 및 종사자 규모별 시설 자료는 2017년에 조사되지 않아 비교 불가

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비교

□ (월 연장근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연장근로는 월평균 14.4시간으로 2016년 18.4시간 대비 약 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준) 「근로기준법」제53조에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한하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52시간(주 12시간×365÷7÷12)까지 가능함.

- 사회복지시설의 월 연장근로 인정시간은 생활시설의 경우 최대 40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사에서 나타나는 평균 연장근로(14.5시간)와 최대 연장근로(24시간)의 포섭이 가능함.

□ (소관부처)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월평균 14.5시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월평균 6.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7년 대비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3.9시간, 여성가족부는 11.3시간이 감소함.

□ (시설유형) 2022년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연장근로는 24.1시간, 이용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연장근로는 5.4시간이었으며, 2016년 대비 생활시설은 3.8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용시설은 오히려 10.3시간 감소함.

□ (세부 시설)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22.3시간)과 정신건강증진시설(22.3시간)에서 연장근로가 많으며, 2017년 대비 각 3.3시간, 5.4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여성가족부 시설의 연장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32〉 시설특성별 월 연장근로시간 비교(2016년 대비 2022년)

(단위: 시간)

구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2022년	2016년
전체		14.4	18.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14.5	18.4
	여성가족부	6.1	17.4
시설유형	생활시설	24.1	20.3
	이용시설	5.4	16.0
세부시설	노인복지시설	4.9	18.0
	아동복지시설	22.3	19.1
	장애인복지시설	18.3	19.2
	정신건강증진시설	22.3	16.9
	노숙인시설	13.6	19.5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4.9	11.9
	지역자활센터	4.7	17.9
	다함께돌봄센터	0.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0.0	15.0
	가정폭력보호시설	2.9	2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6.2	16.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1	12.2
	청소년복지시설	3.0	19.1

주: 재원출처, 종사자규모, 지역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2017년도에는 조사된 바 없어 비교 불가함.

다. 월평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비교

□ (월평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2022년 전체 월평균 야간근로는 3.7시간으로 2016년 대비 13.8시간이 감소하였고, 전체 월평균 휴일근로는 2.4시간으로 2016년 대비 14.8시간이 감소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준) 「근로기준법」제 56조에 의하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1주 12시간, 월 52시간 내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월평균 3.8시간,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는 야간근로가 0시간으로, 2016년 대비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13.3시간, 여성가족부는 21.8시간이 감소함.

○ (월평균 휴일근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2.4시간으로 15.7시간이,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1.5시간으로 15.0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 생활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야간근로는 7.8시간으로 2016년 대비 11.5시간이, 이용시설은 0.1시간으로 2017년 대비 19.6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휴일근로) 2022년 생활시설은 4.6시간으로 2017년 대비 12.3시간이 감소하였고, 이용시설은 0.3시간으로 2017년 대비 20.9시간이 감소함.

□ (세부 시설)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이(22.4시간) 월평균 야간근로가 가장 많지만, 2016년 대비 17.5시간이 감소하였고, 휴일근로는 노숙인시설이 22.8시간으로 가장 많지만, 법 개정 이후 20.9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2016년 성매매피해지원시설(48시간)과 청소년복지시설(25시간), 그리고 가정폭력보호시설(22.6시간) 휴일근로가 2022년 모든 시설에서 대폭 감소함

〈표 5-133〉 시설특성별 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2016년 대비 2022년)

(단위: 시간)

구분		월평균 야간근로시간		월평균 휴일근로시간	
		2022년	2016년	2022년	2016년
전체		3.7	17.5	2.4	17.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3.8	17.1	2.4	18.1
	여성가족부	0.0	21.8	1.5	16.5
시설유형	생활시설	7.8	19.3	4.6	16.9
	이용시설	0.1	19.7	0.3	20.9
세부시설	노인복지시설	0.6	19.4	0.4	18.5
	아동복지시설	4.9	22.4	4.6	14.9
	장애인복지시설	5.7	13.9	3.0	16.9
	정신건강증진시설	3.2	6.0	5.4	10.7
	노숙인시설	4.4	20.0	1.9	22.8
	사회복지관/결핵한센시설	0.0	10.3	0.4	8.7
	지역자활센터	0.0	12.0	1.0	15.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0.0	0.0	16.0	48.0
	가정폭력보호시설	0.0	17.0	3.8	2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0	20.0	0.4	2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0	6.7	1.4	10.8
	청소년복지시설	0.0	39.5	0.0	25.0

주: 재원출처, 종사자규모, 지역에 따른 시설 유형은 2017년도에 조사된 바 없어 비교 불가능함.

3. 인권 및 권익보호

□ (인권 보장) 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 4,402명의 종사자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보장받는 편이다'라고 응답함

○ (시사점) 성별, 연령대, 직위, 직종과 상관없이 최소 3.8점으로 이상 나타나 현 직장에서의 종사자 인권 문제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5-134〉 현 재직 시설에서의 종사자 인권 보장 정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 (명)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보장받는 편이다	충분히 보장받는 편이다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1.5	6.5	25.6	40.0	26.4	3.8
성별	여자	3,233	1.3	7.1	26.2	41.1	24.3	3.8
	남자	1,169	1.8	5.0	24.0	37.1	32.2	3.9
연령대	20대 이하	500	1.8	7.2	23.0	36.0	32.0	3.9
	30대	1,182	1.2	7.0	27.2	37.5	27.1	3.8
	40대	1,498	1.6	6.1	24.0	42.9	25.4	3.8
	50대	1,147	1.4	6.5	27.3	40.4	24.4	3.8
	60대 이상	75	1.3	2.7	22.7	45.3	28.0	4.0
직위	상급관리자	495	1.2	3.6	16.4	45.5	33.3	4.1
	중간관리자	1,131	1.1	6.0	25.6	41.6	25.7	3.8
	초급관리자	536	2.1	6.7	26.5	43.5	21.3	3.8
	실무직원	2,240	1.5	7.4	27.5	37.2	26.4	3.8
직종	사회복지직	3,128	1.7	7.1	25.8	40.2	25.2	3.8
	관리직	740	1.1	4.3	23.1	38.6	32.8	4.0
	기능직	352	1.1	5.4	28.7	37.8	27.0	3.8
	보건의료직	182	·	7.7	25.8	46.7	19.8	3.8
고용 형태	정규직	3,908	1.5	6.6	25.6	40.2	26.1	3.8
	무기계약직	291	1.4	6.5	27.1	39.5	25.4	3.8
	비정규 기간제	182	1.1	4.4	23.6	38.5	32.4	4.0
	비정규 기타	21	·	4.8	23.8	28.6	42.9	4.1
근무 연수	1년 미만	91	1.1	5.5	25.3	34.1	34.1	3.9
	1~3년 미만	1,273	2.0	6.7	25.3	36.9	29.1	3.8
	3~5년 미만	878	1.4	5.8	26.3	40.8	25.7	3.8
	5~10년 미만	1,088	1.3	6.8	26.4	40.1	25.5	3.8
	10~20년 미만	897	1.0	6.9	24.7	43.8	23.5	3.8
	20년 이상	175	1.1	5.7	24.0	42.3	26.9	3.9

□ (인권 보장을 받지 못한 이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351명의 응답자에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위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56.7%)였으며, 다음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39.6%), 합리적인 노동시간(38.2%),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36.5%), 휴식권(36.2%), 자유 및 신체의 안전(27.6%), 사생활 존중(25.9%), 적정보수(23.9%),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4%) 등의 순이었음

○ (직위) 상급관리자(37.5%) 보다는 하위 직위로 내려갈수록, 사회복지직 이외의 직위일수록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낮았음

〈표 5-135〉 현 직장에서 보장받지 못한 인권 분야(중복응답)(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받지 않아야 할 권리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기타
전체		351	36.2	38.2	56.7	39.6	36.5	23.9	14.0	25.9	27.6	9.1	8.8
성별	여자	272	35.7	40.4	59.6	40.1	37.5	22.1	13.6	27.2	26.5	8.5	8.8
	남자	79	38.0	30.4	46.8	38.0	32.9	30.4	15.2	21.5	31.6	11.4	8.9
연령대	20대 이하	45	40.0	35.6	51.1	40.0	28.9	24.4	17.8	24.4	31.1	4.4	15.6
	30대	97	35.1	38.1	59.8	37.1	30.9	25.8	15.5	21.6	30.9	5.2	8.2
	40대	115	34.8	35.7	56.5	34.8	43.5	20.9	13.9	27.8	27.8	15.7	10.4
	50대	91	36.3	44.0	58.2	48.4	38.5	26.4	11.0	29.7	22.0	7.7	4.4
	60대 이상	3	66.7	·	·	33.3	·	·	·	·	33.3	·	·
직위	상급관리자	24	62.5	41.7	37.5	37.5	25.0	29.2	20.8	25.0	25.0	8.3	·
	중간관리자	81	35.8	28.4	54.3	37.0	30.9	21.0	16.0	35.8	30.9	7.4	4.9
	초급관리자	47	21.3	42.6	59.6	44.7	51.1	23.4	8.5	14.9	31.9	10.6	8.5

구분		인원 (명)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받지 않아야 할 권리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기타
	실무직원	199	36.7	40.7	59.3	39.7	36.7	24.6	13.6	24.6	25.6	9.5	11.6
직종	사회복지직	274	39.1	40.1	59.5	38.0	38.0	24.5	13.9	27.7	26.6	9.9	9.1
	관리직	40	27.5	37.5	60.0	52.5	37.5	27.5	17.5	20.0	37.5	10.0	5.0
	기능직	23	17.4	26.1	26.1	47.8	21.7	17.4	13.0	17.4	21.7	.	8.7
	보건의료직	14	35.7	21.4	42.9	21.4	28.6	14.3	7.1	21.4	28.6	7.1	14.3
고용 형태	정규직	317	35.3	38.8	56.2	37.9	34.7	21.8	14.2	25.9	28.1	9.5	8.5
	무기계약직	23	43.5	34.8	52.2	56.5	52.2	43.5	8.7	26.1	26.1	8.7	17.4
	비정규 기간제	10	40.0	20.0	80.0	50.0	50.0	40.0	10.0	20.0	10.0	.	.
	비정규 기타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근무 연수	1년 미만	6	33.3	50.0	50.0	33.3	33.3	.	.	16.7	33.3	.	.
	1년~3년 미만	111	32.4	41.4	65.8	36.0	36.0	25.2	16.2	32.4	22.5	5.4	12.6
	3년~5년 미만	63	42.9	41.3	42.9	39.7	34.9	19.0	11.1	15.9	28.6	9.5	11.1
	5년~10년 미만	88	36.4	45.5	65.9	45.5	39.8	22.7	12.5	20.5	26.1	10.2	6.8
	10년~20년 미만	71	39.4	23.9	46.5	38.0	35.2	31.0	16.9	32.4	32.4	11.3	5.6
	20년 이상	12	16.7	16.7	41.7	41.7	33.3	16.7	8.3	25.0	50.0	25.0	.

□ (위험 경험률(폭력포함))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폭력을 포함한 위험을 경험한 종사자는 19.2%로 파악됨

○ (시사점) 경험 정도가 5점 만점에 평균도 2.2점으로, 관리직(2.0점)과 기능직(2.0점)보다는 사회복지직(2.3점)에서 높았으며, 위험경험 종사자가 전체의 19.2%로 상당히 위험 요인이 큰 근무 환경임을 방증함.

〈표 5-136〉 지난 1년간(2022년)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위험(폭력 포함) 경험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 (명)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다	경험하지 못한 편이다	보통이다	경험한 편이다	자주 경험하였다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37.5	25.0	18.3	15.8	3.4	2.2
성별	여자	3,233	35.8	26.2	18.3	16.2	3.5	2.3
	남자	1,169	42.3	21.6	18.5	14.5	3.1	2.1
연령대	20대 이하	500	43.4	21.8	17.0	14.6	3.2	2.1
	30대	1,182	37.0	23.9	20.2	15.7	3.3	2.2
	40대	1,498	37.1	26.2	16.6	16.6	3.5	2.2
	50대	1,147	35.5	25.9	19.4	15.6	3.6	2.3
	60대 이상	75	45.3	25.3	16.0	12.0	1.3	2.0
직위	상급관리자	495	38.4	24.2	16.8	16.4	4.2	2.2
	중간관리자	1,131	33.2	24.8	18.4	20.1	3.6	2.4
	초급관리자	536	33.2	28.7	19.2	15.5	3.4	2.3
	실무직원	2,240	40.5	24.4	18.4	13.6	3.1	2.1
직종	사회복지직	3,128	35.7	24.2	19.1	17.1	3.9	2.3
	관리직	740	43.6	24.9	17.8	12.0	1.6	2.0
	기능직	352	44.6	28.7	13.4	10.8	2.6	2.0
	보건의료직	182	29.7	31.3	17.6	17.6	3.8	2.3
고용형태	정규직	3,908	36.8	24.9	18.7	16.2	3.4	2.2
	무기계약직	291	37.8	25.8	15.8	16.2	4.5	2.2
	비정규 기간제	182	49.5	26.9	13.7	8.8	1.1	1.9
	비정규 기타	21	61.9	14.3	23.8	·	·	1.6
근무연수	1년 미만	91	62.6	19.8	12.1	5.5	·	1.6
	1~3년 미만	1,273	43.3	23.6	17.2	13.2	2.7	2.1
	3~5년 미만	878	35.0	25.4	20.3	15.9	3.4	2.3
	5~10년 미만	1,088	34.6	25.1	18.8	17.6	4.0	2.3
	10~20년 미만	897	33.2	26.8	18.7	17.6	3.7	2.3
	20년 이상	175	35.4	25.7	15.4	18.9	4.6	2.3

□ (위험 경험 유형) 현 시설에서 위험을 경험한 844명의 응답자 중 경험한 위험 유형으로는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신적 직업병(41.9%), 상급자의 부당한 대우(29.3%), 신체적 직업병(18.2%)의 순이었음

○ (직종) 이용자와 대면접촉이 많은 사회복지직(71.5%)과 보건의료직(82.1%)이 관리직(60.4%)과 기능직(59.6%)보다 이용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정신적 직업병) 연령대에서는 20대 이하(50.6%)와 직위에서는 상급관리자(47.1%)가 타 종사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37〉 경험한 위험(폭력 포함) 유형(중복응답)(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 (명)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동료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하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이용자(이용자의 가족포함)로부터 부당한 대우	직업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문제	직업적 특성에 따른 정신적 건강문제	기타
전체		844	29.3	9.1	7.5	70.0	18.2	41.9	5.0
성별	여자	638	31.2	11.0	8.5	66.8	18.3	44.7	5.6
	남자	206	23.3	3.4	4.4	80.1	18.0	33.5	2.9
연령대	20대 이하	89	27.0	9.0	2.2	74.2	21.3	50.6	4.5
	30대	224	24.1	4.9	5.8	80.4	18.8	42.9	4.5
	40대	301	31.6	10.6	8.0	67.1	14.3	41.2	5.6
	50대	220	33.2	11.4	10.0	61.8	22.3	38.6	5.0
	60대 이상	10	10.0	10.0	20.0	70.0	10.0	40.0	-
직위	상급관리자	102	20.6	3.9	14.7	80.4	16.7	47.1	2.0
	중간관리자	268	24.3	5.6	11.9	76.9	14.9	42.5	4.9
	초급관리자	101	25.7	13.9	5.0	71.3	11.9	42.6	3.0
	실무직원	373	36.2	11.8	2.9	61.9	22.8	39.9	6.4
직종	사회복지직	657	29.5	8.2	7.8	71.5	16.6	43.5	4.6
	관리직	101	32.7	15.8	5.9	60.4	19.8	39.6	8.9
	기능직	47	19.1	6.4	8.5	59.6	34.0	25.5	4.3
	보건의료직	39	28.2	10.3	5.1	82.1	23.1	41.0	2.6
고용형태	정규직	766	28.7	9.1	7.4	71.1	17.4	41.4	4.7
	무기계약직	60	28.3	11.7	6.7	66.7	30.0	48.3	8.3
	비정규 기간제	18	55.6	-	11.1	33.3	16.7	44.4	5.6
근무연수	1년 미만	5	20.0	20.0	20.0	40.0	-	20.0	20.0
	1년~3년 미만	202	31.2	9.4	4.0	64.4	14.4	39.1	5.9
	3년~5년 미만	170	23.5	10.6	6.5	72.9	21.8	45.9	5.3
	5년~10년 미만	235	32.3	10.2	7.7	68.9	20.9	43.0	4.3
	10~20년 미만	191	28.3	6.8	10.5	73.3	15.2	41.4	3.1
	20년 이상	41	31.7	4.9	12.2	80.5	24.4	39.0	9.8

□ (신체적 건강 문제) 총 154명의 응답자 중 61%가 근골격계 질환이었으며, 다음으로 소화기질환(16.9%), 신경 및 순환계 질환(11.7%)의 순이었음

○ (시사점) 근골격계질환, 소화기 질환은 여성에서, 신경 및 순환계 질환은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138〉 경험한 신체적 건강 문제(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근골격계 질환(손목, 팔, 어깨, 허리통증 등)	호흡기질환(기관지염, 천식 등)	소화기질환(소화불량, 위염 등)	신경 및 순환계 질환	전염성질환	기타
전체		154	61.0	0.6	16.9	11.7	3.2	6.5
성별	여자	117	61.5	·	17.9	9.4	4.3	6.8
	남자	37	59.5	2.7	13.5	18.9	·	5.4
연령대	20대 이하	19	68.4	·	26.3	·	·	5.3
	30대	42	59.5	·	23.8	4.8	4.8	7.1
	40대	43	51.2	·	16.3	16.3	4.7	11.6
	50대	49	69.4	·	8.2	18.4	2.0	2.0
	60대 이상	1	·	100.0	·	·	·	·
직위	상급관리자	17	58.8	5.9	11.8	11.8	5.9	5.9
	중간관리자	40	45.0	·	25.0	17.5	5.0	7.5
	초급관리자	12	58.3	·	8.3	16.7	8.3	8.3
	실무직원	85	69.4	·	15.3	8.2	1.2	5.9
직종	사회복지직	109	55.0	0.9	19.3	15.6	1.8	7.3
	관리직	20	60.0	·	25.0	5.0	·	10.0
	기능직	16	100.0	·	·	·	·	·
	보건의료직	9	66.7	·	·	·	33.3	·
고용형태	정규직	133	63.2	0.8	14.3	11.3	3.8	6.8
	무기계약직	18	38.9	·	38.9	16.7	·	5.6
	비정규 기간제	3	100.0	·	·	·	·	·
근무연수	1년~3년 미만	29	65.5	·	10.3	13.8	·	10.3
	3년~5년 미만	37	59.5	·	16.2	18.9	·	5.4
	5년~10년 미만	49	55.1	2.0	28.6	8.2	4.1	2.0
	10~20년 미만	29	58.6	·	10.3	10.3	6.9	13.8
	20년 이상	10	90.0	·	·	·	10.0	·

□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 경험) 총 154명의 응답자 중 81.8%가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8.2%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병원 치료 경험이 높은 종사자) 진단 및 치료는 여성(83.8%)에서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관리직(95.0%)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39〉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은 경험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 있음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 없음
전체		154	81.8	18.2
성별	여자	117	83.8	16.2
	남자	37	75.7	24.3
연령대	20대 이하	19	68.4	31.6
	30대	42	76.2	23.8
	40대	43	83.7	16.3
	50대	49	89.8	10.2
	60대 이상	1	100.0	
직위	상급관리자	17	88.2	11.8
	중간관리자	40	77.5	22.5
	초급관리자	12	75.0	25.0
	실무직원	85	83.5	16.5
직종	사회복지직	109	79.8	20.2
	관리직	20	95.0	5.0
	기능직	16	81.3	18.8
	보건의료직	9	77.8	22.2
고용형태	정규직	133	80.5	19.5
	무기계약직	18	94.4	5.6
	비정규 기간제	3	66.7	33.3
근무연수	1년~3년 미만	29	89.7	10.3
	3년~5년 미만	37	78.4	21.6
	5년~10년 미만	49	83.7	16.3
	10년~20년 미만	29	79.3	20.7
	20년 이상	10	70.0	30.0

□ (병원 치료 시 비용처리)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은 126명의 응답자 중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94.4%로 대부분이었고, 다음으로 2.4%가 상해보험, 1.6%가 산업재해, 0.8%가 시설 부담 순이었음

○ (근속기간) 2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타 종사자 대비 상대적으로 상해보험과 산업재해로 병원 비용을 처리하는 비율이 높았음

○ (시사점) 업무상 질병의 경우 치료 비용을 시설에서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나 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개인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5-140〉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시, 관련 비용처리 방법(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산업재해	상해보험	개인 비용 처리(개인보험 포함)	시설에서 부담	기타
전체		126	1.6	2.4	94.4	0.8	0.8
성별	여자	98	1.0	2.0	94.9	1.0	1.0
	남자	28	3.6	3.6	92.9	·	·
연령대	20대 이하	13	·	·	100.0	·	·
	30대	32	·	·	100.0	·	·
	40대	36	2.8	5.6	86.1	2.8	2.8
	50대	44	2.3	2.3	95.5	·	·
	60대 이상	1	·	·	100.0	·	·
직위	상급관리자	15	6.7	13.3	80.0	·	·
	중간관리자	31	·	·	96.8	3.2	·
	초급관리자	9	·	·	100.0	·	·
	실무직원	71	1.4	1.4	95.8	·	1.4
직종	사회복지직	87	2.3	1.1	94.3	1.1	1.1
	관리직	19	·	10.5	89.5	·	·
	기능직	13	·	·	100.0	·	·
	보건의료직	7	·	·	100.0	·	·
고용형태	정규직	107	1.9	2.8	94.4	·	0.9
	무기계약직	17	·	·	94.1	5.9	·
	비정규 기간제	2	·	·	100.0	·	·
근무연수	1년~3년 미만	26	·	·	96.2	·	3.8
	3년~5년 미만	29	3.4	3.4	93.1	·	·
	5년~10년 미만	41	·	·	97.6	2.4	·
	10~20년 미만	23	·	·	100.0	·	·
	20년 이상	7	14.3	28.6	57.1	·	·

□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하지 않은 이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종사자 28명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참고 견딜만해서가 6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의 가중 때문(14.3%), 근무 시간 중 병원 이용이 어려워서(10.7%)의 순이었음

〈표 5-141〉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지 않은 이유(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참고 견딜 만해서	근무시간에는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업무가 많아 병원 진료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서	기타
전체		28	64.3	10.7	14.3	10.7
성별	여자	19	52.6	15.8	15.8	15.8
	남자	9	88.9	·	11.1	·
연령대	20대 이하	6	33.3	16.7	33.3	16.7
	30대	10	60.0	10.0	20.0	10.0
	40대	7	85.7	14.3	·	·
	50대	5	80.0	·	·	20.0
직위	상급관리자	2	·	·	50.0	50.0
	중간관리자	9	77.8	11.1	11.1	·
	초급관리자	3	100.0	·	·	·
	실무직원	14	57.1	14.3	14.3	14.3
직종	사회복지직	22	63.6	9.1	18.2	9.1
	관리직	1	·	·	·	100.0
	기능직	3	100.0	·	·	·
	보건의료직	2	50.0	50.0	·	·
고용형태	정규직	26	65.4	11.5	15.4	7.7
	무기계약직	1	100.0	·	·	·
	비정규 기간제	1	·	·	·	100.0
근무연수	1년~3년 미만	3	33.3	33.3	·	33.3
	3년~5년 미만	8	50.0	12.5	25.0	12.5
	5년~10년 미만	8	87.5	·	12.5	·
	10~20년 미만	6	50.0	16.7	16.7	16.7
	20년 이상	3	100.0	·	·	·

□ (정신적 건강 문제 경험)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총 354명에 대해 그 유형을 질문한 결과, 스트레스가 50.4%로 1위였고, 다음으로 소진(24.3%), 불안증세(6.5%), 우울증(4%), 무기력증 및 불면증(3.1%), 강박증(1.1%)의 순이었음

○ (스트레스) 직위에서는 상급관리자(60.4%)에서, 직종은 기능직(75.0%)에서, 고용 형태에서는 정규직(51.4%)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 경험이 타 종사자 대비 높았음

〈표 5-142〉 경험한 정신적 건강 문제(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스트레스	소진	강박증	무기력증	우울증	불안증세	불면증	기타
전체		354	50.3	24.3	1.1	3.1	4.0	6.5	3.1	7.6
성별	여자	285	50.2	25.3	1.1	2.8	3.5	7.0	2.5	7.7
	남자	69	50.7	20.3	1.4	4.3	5.8	4.3	5.8	7.2
연령대	20대 이하	45	48.9	24.4	·	4.4	2.2	6.7	6.7	6.7
	30대	96	46.9	22.9	1.0	3.1	5.2	7.3	·	13.5
	40대	124	43.5	28.2	1.6	3.2	5.6	6.5	4.0	7.3
	50대	85	63.5	20.0	1.2	2.4	1.2	5.9	3.5	2.4
	60대 이상	4	75.0	25.0	·	·	·	·	·	·
직위	상급관리자	48	60.4	25.0	·	6.3	6.3	·	·	2.1
	중간관리자	114	44.7	27.2	3.5	3.5	6.1	8.8	0.9	5.3
	초급관리자	43	46.5	25.6	·	2.3	2.3	4.7	2.3	16.3
	실무직원	149	52.3	21.5	·	2.0	2.0	7.4	6.0	8.7
직종	사회복지직	286	49.0	24.1	0.7	3.8	4.2	5.9	3.5	8.7
	관리직	40	52.5	30.0	5.0	·	·	5.0	2.5	5.0
	기능직	12	75.0	8.3	·	·	·	16.7	·	·
	보건의료직	16	50.0	25.0	·	·	12.5	12.5	·	·
고용형태	정규직	317	51.4	24.3	1.3	3.2	4.1	5.7	2.8	7.3
	무기계약직	29	41.4	20.7	·	3.4	3.4	13.8	6.9	10.3
	비정규 기간제	8	37.5	37.5	·	·	·	12.5	·	12.5
근무연수	1년 미만	1	100.0	·	·	·	·	·	·	·
	1년~3년 미만	79	54.4	27.8	·	1.3	2.5	6.3	1.3	6.3
	3년~5년 미만	78	51.3	17.9	2.6	7.7	2.6	3.8	7.7	6.4
	5~10년 미만	101	42.6	25.7	·	2.0	5.9	9.9	1.0	12.9
	10~20년 미만	79	50.6	26.6	1.3	2.5	5.1	5.1	3.8	5.1
	20년 이상	16	68.8	18.8	6.3	·	·	6.3	·	·

□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 진료 경험) 총 354명의 응답자에게 정신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경험이 있냐고 질문한 결과 79.9%가 진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시사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위가 상급관리자일수록, 정규직이 진료받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년 이상 근속자들은 진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타 종사자 대비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추정됨.

〈표 5-143〉 정신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은 경험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진단 및 상담을 받은 적 있음	진단 및 상담을 받은 적 없음
전체		354	20.1	79.9
성별	여자	285	19.6	80.4
	남자	69	21.7	78.3
연령대	20대 이하	45	31.1	68.9
	30대	96	22.9	77.1
	40대	124	18.5	81.5
	50대	85	14.1	85.9
	60대 이상	4	-	100.0
직위	상급관리자	48	16.7	83.3
	중간관리자	114	19.3	80.7
	초급관리자	43	11.6	88.4
	실무직원	149	24.2	75.8
직종	사회복지직	286	21.7	78.3
	관리직	40	7.5	92.5
	기능직	12	33.3	66.7
	보건의료직	16	12.5	87.5
고용형태	정규직	317	18.6	81.4
	무기계약직	29	31.0	69.0
	비정규 기간제	8	37.5	62.5
근무연수	1년 미만	1	-	100.0
	1년~3년 미만	79	16.5	83.5
	3년~5년 미만	78	23.1	76.9
	5년~10년 미만	101	24.8	75.2
	10년~20년 미만	79	17.7	82.3
	20년 이상	16	6.3	93.8

□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병원 진료 비용처리) 총 71명의 응답자 중 84.5%가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함

○ (시사점) 정신적 직업병에 따른 병원 진료는 상해보험, 산업재해 등이 전무하고 거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점에서 종사자 처우관점에서 대응정책이 요구됨

〈표 5-144〉 정신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시, 관련 비용처리 방법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개인 비용 처리(개인보험 포함)	시설에서 부담	기타
전체		71	84.5	4.2	11.3
성별	여자	56	83.9	3.6	12.5
	남자	15	86.7	6.7	6.7
연령대	20대 이하	14	78.6	7.1	14.3
	30대	22	86.4	·	13.6
	40대	23	87.0	8.7	4.3
	50대	12	83.3	·	16.7
직위	상급관리자	8	87.5	·	12.5
	중간관리자	22	90.9	4.5	4.5
	초급관리자	5	60.0	·	40.0
	실무직원	36	83.3	5.6	11.1
직종	사회복지직	62	83.9	3.2	12.9
	관리직	3	66.7	33.3	·
	기능직	4	100.0	·	·
	보건의료직	2	100.0	·	·
고용형태	정규직	59	84.7	3.4	11.9
	무기계약직	9	77.8	11.1	11.1
	비정규 기간제	3	100.0	·	·
근무연수	1년~3년 미만	13	84.6	·	15.4
	3년~5년 미만	18	88.9	11.1	·
	5년~10년 미만	25	76.0	4.0	20.0
	10년~20년 미만	14	92.9	·	7.1
	20년 이상	1	100.0	·	·

□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 총 283명의 응답자 중 42.0%가 참고 견딜만해서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근무 시간 중이라서(16.6%), 업무 가중 때문에(13.8%), 병원 진료의 두려움(10.6%), 타인에 대한 노출(6.7%)의 순이었음

○ (참고 견딜만해서 비중이 높은 종사자)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중 참고 견딜만 해서와 관련해서 보건의료직, 비정규직(기간제), 20년 이상 근속자에서 타 종사자 대비 높았음

〈표 5-145〉 정신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인원 (명)	참고 견딜 만해서	근무시간 에는 병원(상담 기관 포함) 이용이 어려워서	업무가 많아 병원 진료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서	병원 진료 등이 두려워서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	기타
전체		283	42.0	16.6	13.8	10.6	6.7	10.2
성별	여자	229	43.2	17.9	14.0	10.0	5.7	9.2
	남자	54	37.0	11.1	13.0	13.0	11.1	14.8
연령대	20대 이하	31	32.3	25.8	16.1	3.2	9.7	12.9
	30대	74	40.5	17.6	14.9	10.8	5.4	10.8
	40대	101	41.6	14.9	15.8	13.9	5.0	8.9
	50대	73	45.2	15.1	9.6	9.6	9.6	11.0
	60대 이상	4	100.0	·	·	·	·	·
직위	상급관리자	40	47.5	10.0	20.0	5.0	7.5	10.0
	중간관리자	92	43.5	15.2	15.2	10.9	2.2	13.0
	초급관리자	38	34.2	7.9	13.2	23.7	13.2	7.9
	실무직원	113	41.6	23.0	10.6	8.0	8.0	8.8
직종	사회복지직	224	42.4	16.1	13.4	9.8	7.1	11.2
	관리직	37	37.8	18.9	16.2	8.1	8.1	10.8
	기능직	8	37.5	25.0	·	37.5	·	·
	보건의료직	14	50.0	14.3	21.4	14.3	·	·
고용형태	정규직	258	42.6	16.7	13.2	11.2	6.6	9.7
	무기계약직	20	30.0	10.0	25.0	5.0	10.0	20.0
	비정규 기간제	5	60.0	40.0	·	·	·	·
근무연수	1년 미만	1	·	·	·	·	·	100.0
	1년~3년 미만	66	39.4	21.2	16.7	7.6	6.1	9.1
	3년~5년 미만	60	45.0	15.0	8.3	11.7	6.7	13.3
	5~10년 미만	76	40.8	15.8	13.2	11.8	7.9	10.5
	10~20년 미만	65	41.5	15.4	18.5	10.8	6.2	7.7
	20년 이상	15	53.3	13.3	6.7	13.3	6.7	6.7

제3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요

1. 시간외 근무

□ (전체) 전체응답자 중 75.2%인 3,309명이 시간외 근무를 주 평균 17.4시간 하고 있으나 보상 인정 시간에서 30~39시간이 3.4%로 적고, 보상 방법도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40.0%로 낮고, 대체휴가도 1.5배 가산되지 못한 경우가 53.7%에 달함

□ (월평균 시간외근무 여부) 전체 응답자 4,402명 중 75.2%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었음

○ (시사점) 시간외근무는 남성, 30대, 중간관리자, 보건의료직, 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업무의 숙련도가 높은 종사자일수록 시간외근무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146〉 한달 소정근로시간(174시간: 주당 40시간) 이외에 월평균 시간외근무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시간외근무 (연장근로시간): 1달	시간외근무(연장근로시간)를 하지 않는다
전체		4,402	75.2	24.8
성별	여자	3,233	72.0	28.0
	남자	1,169	83.8	16.2
연령대	20대 이하	500	75.8	24.2
	30대	1,182	80.0	20.0
	40대	1,498	76.0	24.0
	50대	1,147	70.4	29.6
	60대 이상	75	50.7	49.3
직위	상급관리자	495	76.6	23.4
	중간관리자	1,131	83.5	16.5
	초급관리자	536	76.7	23.3
	실무직원	2,240	70.3	29.7
직종	사회복지직	3,128	74.2	25.8
	관리직	740	76.5	23.5
	기능직	352	77.3	22.7
	보건의료직	182	82.4	17.6
고용형태	정규직	3,908	78.4	21.6
	무기계약직	291	53.3	46.7
	비정규 기간제	182	47.8	52.2
	비정규 기타	21	19.0	81.0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62.6	37.4
	6~10인 이하	818	76.5	23.5
	11~20인 이하	642	84.9	15.1
	21~30인 이하	457	87.5	12.5
	31~40인 이하	267	87.6	12.4
	41~50인 이하	141	92.9	7.1
	51인 이상	367	82.6	17.4

□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 3,309명의 응답자 중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17.4시간이었고, 10~19시간(33.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29시간(27.7%), 1~9시간(22.1%), 40시간(10.3%), 30~39시간(6.1%)의 순이었음

○ (직종) 기능직이 평균 22.3시간으로 사회복지직(17.2시간) 등 기타 직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고용 형태) 정규직이 평균 17.7시간으로 비정규직 기간제(15.0시간)나 비정규 기타 임시직(9.5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47〉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시간, %)

구분		인원(명)	1~9시간	10~19시간	20~29시간	30~39시간	40시간 이상	평균
전체		3,309	22.1	33.8	27.7	6.1	10.3	17.4
성별	여자	2,329	24.4	33.3	25.8	6.1	10.4	17.1
	남자	980	16.6	35.1	32.1	5.9	10.2	18.2
연령대	20대 이하	379	23.2	41.7	24.3	4.5	6.3	15.5
	30대	946	24.5	39.1	23.9	5.2	7.3	15.7
	40대	1,138	22.2	32.2	30.3	6.2	9.1	17.3
	50대	808	18.8	26.9	30.0	7.4	17.0	20.3
	60대 이상	38	15.8	21.1	28.9	10.5	23.7	22.9
직위	상급관리자	379	17.9	33.0	36.1	4.7	8.2	17.8
	중간관리자	944	18.6	33.3	32.0	7.2	8.9	18.0
	초급관리자	411	24.3	42.1	21.9	3.9	7.8	15.4
	실무직원	1,575	24.6	32.2	24.6	6.3	12.4	17.5
직종	사회복지직	2,321	23.3	35.6	24.4	5.8	10.9	17.2
	관리직	566	22.1	33.4	33.4	6.0	5.1	16.1
	기능직	272	13.6	23.2	31.6	9.2	22.4	22.3
	보건의료직	150	18.7	27.3	49.3	4.7	·	16.2
고용 형태	정규직	3,063	21.2	33.6	28.2	6.3	10.7	17.7
	무기계약직	155	36.8	35.5	20.0	4.5	3.2	13.1
	비정규기간제	87	28.7	37.9	23.0	1.1	9.2	15.0
	비정규 기타	4	25.0	75.0	·	·	·	9.5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070	26.3	35.3	21.1	6.3	11.0	17.0
	6~10인 이하	626	21.9	33.5	25.9	5.8	12.9	18.2
	11~20인 이하	545	19.8	37.8	27.7	4.4	10.3	16.9
	21~30인 이하	400	19.8	30.3	33.0	7.3	9.8	17.7
	31~40인 이하	234	12.0	21.8	49.1	9.8	7.3	19.5
	41~50인 이하	131	13.7	28.2	41.2	5.3	11.5	19.6
	51인 이상	303	26.4	38.3	25.1	5.0	5.3	15.1

□ (시간외근무 수당 인정) 시간외근무 시간 중 평균적으로 17.5시간을 수당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시간 구간 별로는 10시간~19시간이 38.8%, 20~29시간이 28.9%로 높았음

○ (시간별 구간) 시간외근무 수당 인정은 10~29시간 이하가 67.7%에 달하는 한편, 30~39시간은 3.4%에 불과하였음

○ (수당 미인정)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7%로 나타남

〈표 5-148〉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인정시간(한달기준)(웹조사 기반)

(단위: 명, 시간, %)

구분		인원(명)	0시간	1~9시간	10~19시간	20~29시간	30~39시간	40시간 이상	평균
전체		3,064	7.0	9.6	38.8	28.9	3.4	12.4	17.5
성별	여자	2,155	8.7	10.8	38.5	26.1	3.2	12.6	17.0
	남자	909	3.2	6.7	39.5	35.2	3.9	11.5	18.7
연령대	20대 이하	349	5.2	10.9	51	21.7	2.6	8.6	15.8
	30대	875	6.2	11.2	44.1	26.8	2.6	9.1	16.3
	40대	1,061	6.9	9.2	36.8	32.2	3.3	11.6	17.6
	50대	743	8.6	7.3	30.7	29.6	5	18.8	19.7
	60대 이상	36	19.4	13.9	16.7	33.4	5.6	11.1	15.8
직위	상급관리자	364	9.1	10.7	34.1	36.6	3.3	6.3	16.1
	중간관리자	883	5.7	9.3	37.1	33.5	3.6	10.7	17.8
	초급관리자	379	6.1	11.3	46.2	23.5	1.8	11.1	16.2
	실무직원	1,438	7.6	9	39.1	25.4	3.7	15.1	18.0
직종	사회복지직	2,144	8.5	10.8	40.5	24.8	3.2	12.1	16.8
	관리직	530	5.7	8.3	38.9	35.5	3.4	8.3	17.2
	기능직	252	0.8	4.8	27	33.8	5.6	28.2	24.0
	보건의료직	138	0.7	3.6	33.4	56.6	2.9	2.9	18.3
고용형태	정규직	2,840	6.5	9	38.9	29.7	3.5	12.4	17.8
	무기계약직	139	15.1	15.1	33.1	18.7	3.6	14.4	15.6
	비정규 기간제	82	13.4	17.1	44	18.3	1.2	6.1	12.2
	비정규 기타	3	-	33.3	66.6	0	0	0	8.7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971	14.1	11.5	40.1	19.8	4.3	10.1	15.3
	6~10인 이하	583	7.7	8.6	38.2	28.5	2.4	14.6	18.0
	11~20인 이하	510	3.9	7.8	41.8	32.5	1	13	17.9
	21~30인 이하	367	-	10.9	34.9	35.7	4.6	13.9	19.1
	31~40인 이하	221	1.8	5	23.5	51.6	7.2	10.9	20.8
	41~50인 이하	125	3.2	3.2	35.2	39.2	1.6	17.6	21.0
	51인 이상	287	2.1	12.5	48.8	22.3	3.1	11.1	17.0

□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법) 시간외근무를 하는 총 3,309명의 응답자 중 수당 지급 방법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받는 경우가 40%였으며, 다음으로 기본급의 1.5배 가산(28.8%), 기본급 기준(12.7%), 지자체의 임의적 시간외수당(9.3%)의 순이었음

○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규정) 「근로기준법」은 시간외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간외근로수당 부재) 전체 응답자 중 4.9%가 시간외수당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무기계약직 직원(8.4%), 60대 이상 종사자(18.4%)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5-149〉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법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다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다	기본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다	시간외근무수당 없음	대체휴무로 지급	기타
전체		3,309	9.3	40.0	12.7	28.8	4.9	3.0	1.4
성별	여자	2,329	9.2	40.4	12.2	27.2	5.8	3.8	1.3
	남자	980	9.5	38.9	14.0	32.6	2.6	1.0	1.5
연령대	20대 이하	379	9.0	37.5	10.6	34.0	4.0	2.4	2.6
	30대	946	8.8	42.4	11.0	30.3	3.6	2.7	1.2
	40대	1,138	8.1	41.3	12.4	28.6	4.6	3.7	1.4
	50대	808	12.0	36.8	15.8	25.0	6.6	2.7	1.1
	60대 이상	38	5.3	31.6	21.1	23.7	18.4	·	·
직위	상급관리자	379	8.2	42.7	7.4	30.9	7.4	2.9	0.5
	중간관리자	944	8.2	41.5	13.9	29.6	4.0	2.3	0.5
	초급관리자	411	10.2	39.9	13.4	28.2	3.6	3.2	1.5
	실무직원	1,575	10.0	38.3	13.1	27.9	5.1	3.4	2.1
직종	사회복지직	2,321	10.1	38.9	12.5	27.3	5.9	3.7	1.6
	관리직	566	6.4	45.6	9.7	31.1	4.1	1.9	1.2
	기능직	272	9.6	36.8	16.2	36.4	0.7	·	0.4
	보건의료직	150	8.0	40.7	20.7	29.3	·	0.7	0.7
고용형태	정규직	3,063	9.4	40.3	12.9	28.8	4.7	2.6	1.4
	무기계약직	155	9.7	32.3	11.0	30.3	8.4	8.4	·
	비정규 기간제	87	5.7	39.1	10.3	27.6	5.7	6.9	4.6
	비정규 기타	4	25.0	75.0	·	·	·	·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070	13.5	35.4	12.6	21.9	9.6	5.2	1.8
	6~10인 이하	626	10.1	40.1	12.9	25.4	5.1	4.2	2.2
	11~20인 이하	545	6.8	43.9	10.5	33.9	3.3	0.9	0.7
	21~30인 이하	400	4.5	46.3	15.3	32.8	·	0.5	0.8
	31~40인 이하	234	6.4	40.2	12.8	38.9	·	1.7	·
	41~50인 이하	131	3.8	35.9	18.3	38.9	2.3	0.8	·
	51인 이상	303	8.6	41.9	10.9	33.3	1.7	1.7	2.0

□ (금전 보상 외 시간외근무 보상방법)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총 3,309명의 응답자 중 53.7%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간 만큼 대체 휴가를 받는다고 응답

○ (보상휴가 기준) 시간외근무는 금전 보상이 원칙이지만 금전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 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를 줄 수 있음.

- 다만, 보상 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시간외근무에 갈음하여 줄 수 있음

○ 종사자 응답결과 근전보상외 시산외 근무방법으로 1.5배 가산된 대체휴가가 아닌 해당시간만큼의 대체휴가를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이 53.7%에 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50〉 수당으로 지급 못 받은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보상 없음	해당 시간만큼의 대체 휴가	해당 시간보다 많은 대체 휴가
전체		3,309	36.7	53.7	9.6
성별	여자	2,329	37.3	53.3	9.4
	남자	980	35.2	54.6	10.2
연령대	20대 이하	379	32.2	55.7	12.1
	30대	946	34.4	54.0	11.6
	40대	1,138	36.3	53.9	9.8
	50대	808	41.8	51.9	6.3
	60대 이상	38	39.5	60.5	-
직위	상급관리자	379	38.8	47.8	13.5
	중간관리자	944	37.2	53.4	9.4
	초급관리자	411	37.2	51.3	11.4
	실무직원	1,575	35.7	55.9	8.4
직종	사회복지직	2,321	37.4	53.0	9.6
	관리직	566	34.6	53.9	11.5
	기능직	272	34.6	58.8	6.6
	보건의료직	150	36.0	55.3	8.7
고용형태	정규직	3,063	37.1	53.1	9.9
	무기계약직	155	28.4	63.2	8.4
	비정규 기간제	87	35.6	59.8	4.6
	비정규 기타	4	50.0	50.0	-
근무연수	1년 미만	60	30.0	55.0	15.0
	1년~3년 미만	892	36.7	53.9	9.4
	3년~5년 미만	628	36.0	53.8	10.2
	5년~10년 미만	859	36.9	53.6	9.5
	10년~20년 미만	719	37.3	54.0	8.8
	20년 이상	151	37.7	51.0	11.3

2. 연차 등 휴가

□ (연차사용 전체) 총 종사자 4,402명의 평균 연차일수는 14.5일, 이중 미사용 연차는 약 10%로 파악되며, 미사용 이유로는 가중한 업무량과 대체인력 부채가 전체 83.7%를 차지하고 있었음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4,402명의 응답자 중 평균 14.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중 미사용 연차휴가는 평균 1.5일로 나타남

○ (미사용 연차) 타 연령대, 직위 대비 미사용 연차 일수가 많은 종사자는 60대 이상 종사자와 상급관리자, 그리고 근속연수에서 10년 이상 근속자인 것으로 파악

- 근속연수가 많아 연차휴가 발생 일수는 많은데, 비해 업무량 때문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표 5-151〉 2022년 기준 사용 가능한 연차(월차)휴가 일수 및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웹조사 기반)

(단위: 명, 일)

구분		인원(명)	사용 가능한 연차(월차) 일수 - 평균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평균
전체		4,402	14.5	1.5
성별	여자	3,233	14.3	1.5
	남자	1,169	15.2	1.4
연령대	20대 이하	500	11.3	1.0
	30대	1,182	14.4	1.1
	40대	1,498	15.3	1.5
	50대	1,147	15.1	1.9
	60대 이상	75	14.0	2.7
직위	상급관리자	495	17.3	3.3
	중간관리자	1,131	16.8	1.7
	초급관리자	536	14.9	1.2
	실무직원	2,240	12.7	1.0
직종	사회복지직	3,128	14.3	1.5
	관리직	740	15.0	1.7
	기능직	352	14.7	1.0
	보건의료직	182	16.5	0.8
고용형태	정규직	3,908	15.0	1.5
	무기계약직	291	13.8	1.3
	비정규 기간제	182	6.7	0.8
	비정규 기타	21	5.0	1.0
근무연수	1년 미만	91	3.1	0.5
	1년~3년 미만	1,273	9.9	0.9
	3년~5년 미만	878	14.3	1.1
	5년~10년 미만	1,088	16.0	1.3
	10년~20년 미만	897	19.1	2.5
	20년 이상	175	22.4	3.4

□ (연차휴가 미사용 이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1,020명의 응답자 중 연차휴가 미사용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량 가중이 52.5%로 가장 많았고, 대체인력 부재 31.2%, 눈치가 보여서 13.4%, 시설의 인력배치 문제10.4%, 5인 미만 사업장 9.6% 등의 순이었음.

○ (시사점) 연차휴가 미사용 이유로 전체의 83.7%가 업무량이 많고, 대체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 등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의 문제는 대체로 업무량과 인력 대체의 부재 문제인 것으로 판단

〈표 5-152〉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다중응답)(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내가 맡은 업무의 업무량이 많아서	대체인력(나를 대신하여 일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연차(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의 인력배치 때문에	기관 · 상사 ·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눈치가 보여서	급여삭감 · 실적 하향 등 불이익이 될까 봐	기관에서 휴가 사용 거부 또는 축소시행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아 휴가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에	연차(월차) 유급휴가제도에 대해 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가 사용 계획임	개인 사유로 인해	딱히 쓸 일이 없었음	기타
전체		1,020	52.5	31.2	10.4	13.4	0.3	1.4	3.0	1.1	9.6	6.4	3.2	2.5	5.4
성별	여자	760	52.5	31.3	10.4	13.4	0.1	1.6	3.2	1.3	10.1	6.1	3.2	1.7	4.5
	남자	260	52.7	30.8	10.4	13.5	0.8	0.8	2.7	0.4	8.1	7.3	3.5	5.0	8.1
연령대	20대 이하	95	50.5	20.0	13.7	20.0	·	4.2	9.5	4.2	6.3	8.4	5.3	1.1	5.3
	30대	223	58.3	32.3	9.9	17.5	0.9	2.2	2.7	·	7.6	7.2	2.7	4.0	4.9
	40대	353	55.0	30.6	6.8	12.7	0.3	0.6	3.7	0.3	8.8	5.1	1.7	2.5	5.7
	50대	321	48.6	34.6	12.8	10.6	·	0.9	0.9	1.6	12.5	6.2	4.7	1.9	5.3
	60대 이상	28	28.6	28.6	21.4	·	·	·	·	3.6	14.3	10.7	3.6	3.6	7.1
직위	상급관리자	201	67.2	33.8	13.9	8.5	·	1.0	·	1.5	13.4	2.5	4.0	0.5	3.5
	중간관리자	300	63.0	29.0	7.7	11.7	0.3	2.0	0.7	0.7	7.0	6.7	2.3	4.0	3.7

구분		인원(명)	내가 맡은 업무의 업무량이 많아서	대체인력(나를 대신하여 일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연차(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의 인력배치 때문에	기관 · 상사 ·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눈치가 보여서	급여삭감 · 실적 하향 등 불이익이 될까 봐	기관에서 휴가 사용 거부 또는 축소시행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아 휴가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에	연차(월차) 유급휴가제도에 대해 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가 사용 계획임	개인 사유로 인해	딱히 쓸 일이 없었음	기타
	초급관리자	111	54.1	22.5	7.2	14.4		1.8	2.7	0.9	8.1	8.1	1.8	0.9	8.1
	실무직원	408	37.3	33.8	11.5	16.9	0.5	1.0	6.4	1.2	10.0	7.6	3.9	2.9	6.9
직종	사회복지직	769	54.6	29.9	11.2	15.0	0.4	1.6	2.9	0.8	10.9	5.9	3.5	2.5	5.1
	관리직	181	51.4	32.0	9.4	9.4		0.6	3.9	2.2	7.7	7.7	2.2	2.8	5.5
	기능직	50	34.0	42.0	2.0	10.0		2.0		2.0		8.0	4.0	4.0	8.0
	보건의료직	20	30.0	45.0	10.0				10.0			10.0			10.0
고용형태	정규직	914	54.0	31.7	10.5	12.9	0.3	1.0	2.8	1.0	9.6	5.8	3.3	2.6	5.0
	무기계약직	68	42.6	29.4	10.3	14.7		4.4	2.9	1.5	8.8	8.8	2.9	1.5	8.8
	비정규 기간제	34	35.3	20.6	5.9	23.5		5.9	8.8	2.9	8.8	14.7	2.9	2.9	5.9
	비정규 기타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근무연수	1년 미만	13		7.7	7.7	15.4		7.7	46.2				7.7	7.7	15.4
	1년~3년 미만	232	40.1	27.2	10.3	18.5	0.9	2.2	10.8	1.7	11.2	8.2	2.2	3.4	5.6
	3년~5년 미만	166	52.4	33.7	9.6	12.7		0.6		0.6	10.2	6.0	4.8	1.8	6.6
	5년~10년 미만	240	56.7	34.2	9.6	12.5	0.4	1.3		1.3	8.3	4.6	3.3	2.1	5.8
	10년~20년 미만	305	58.7	31.8	11.1	11.1		1.3		1.0	9.5	6.6	3.6	2.6	3.6
	20년 이상	64	64.1	29.7	12.5	10.9					9.4	7.8		1.6	6.3

□ (관공서 공휴일 사용현황 전체) 총 4,402명의 종사자의 2022년기준 미사용 관공서 공휴일은 약 2일 미만이었으나, 미사용 종사자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응답이 약 152명 정도로 파악됨

□ (관공서 공휴일 미사용일 수) 2022년 기준 총 67일의 관공서 공휴일 중 종사자들은 평균 1.94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 부분 종사자들은 공휴일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관공서 공휴일)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2년 1월 1일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음

○ (미사용 종사자) 종사자 중 50~60대 이상, 상급관리자, 사회복지직, 정규직, 1년에서 3년 미만, 20년 이상이 미사용 일수가 높게 나타남. 이는 직무수행 경력자들로 업무량이 많은 반면 대체인력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5-153〉 2022년 기준, 총 67일의 관공서 공휴일 중 사용하지 못한 공휴일 휴가 일수(웹조사 기반)

(단위: 명, 일)

구분		인원(명)	평균
전체		4,402	1.94
성별	여자	3,233	2.16
	남자	1,169	1.35
연령대	20대 이하	500	1.70
	30대	1,182	1.10
	40대	1,498	1.91
	50대	1,147	2.89
	60대 이상	75	3.13
직위	상급관리자	495	2.66
	중간관리자	1,131	1.75
	초급관리자	536	1.52
	실무직원	2,240	1.99
직종	사회복지직	3,128	2.27
	관리직	740	1.01
	기능직	352	1.75
	보건의료직	182	.52
고용형태	정규직	3,908	2.02
	무기계약직	291	1.63
	비정규 기간제	182	1.02
	비정규 기타	21	0.00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5
	1년~3년 미만	1,273	2.00
	3년~5년 미만	878	1.85
	5년~10년 미만	1,088	1.98
	10년~20년 미만	897	1.98
	20년 이상	175	2.03

□ (미사용 관공서 공휴일 보상 현황) 431명의 응답자 중 '보상금이나 대체 휴가 모두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3%로 높게 나타남

○ (규정) 관공서 공휴일 미사용에 대해서도 보상금이나 대체 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함(「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보상방법) 대체 휴가로 보상받았다는 의견이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상금 지급이 17.4%, 일부 보상 및 대체휴가가 9.7%로 파악.

〈표 5-154〉 사용하지 못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보상방법(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보상금(휴일 ·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다	대체 휴가로 보상받았다	일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체 휴가로 보상받았다	보상금이나 대체 휴가 모두 없었다	교대 근무 등 특수한 근무형태로 해당 안됨	잘 모름
전체		431	17.4	32.9	9.7	35.3	3.9	0.7
성별	여자	341	16.7	31.4	10.6	36.1	4.4	0.9
	남자	90	20.0	38.9	6.7	32.2	2.2	-
연령대	20대 이하	36	19.4	33.3	2.8	36.1	8.3	-
	30대	83	26.5	31.3	14.5	24.1	3.6	-
	40대	135	19.3	38.5	8.1	30.4	3.0	0.7
	50대	164	11.0	30.5	11.0	42.1	4.3	1.2
	60대 이상	13	15.4	15.4	-	69.2	-	-
직위	상급관리자	62	19.4	32.3	9.7	37.1	-	1.6
	중간관리자	101	14.9	38.6	12.9	28.7	4.0	1.0
	초급관리자	41	26.8	17.1	7.3	39.0	9.8	-
	실무직원	227	16.3	33.5	8.8	37.0	4.0	0.4

구분		인원(명)	보상금(휴일·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다	대체 휴가로 보상받았다	일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체 휴가로 보상받았다	보상금이나 대체 휴가 모두 없었다	교대 근무 등 특수한 근무형태로 해당 안됨	잘 모름
직종	사회복지직	341	15.0	34.0	9.7	35.8	4.7	0.9
	관리직	55	27.3	30.9	7.3	32.7	1.8	·
	기능직	28	25.0	25.0	14.3	35.7	·	·
	보건의료직	7	28.6	28.6	14.3	28.6	·	·
고용형태	정규직	387	17.6	31.8	10.6	35.7	3.6	0.8
	무기계약직	35	20.0	40.0	2.9	28.6	8.6	·
	비정규 기간제	9	·	55.6	·	44.4	·	·
근무연수	1년 미만	4	·	50.0	·	25.0	·	25.0
	1년~3년 미만	122	16.4	32.0	4.9	41.0	5.7	·
	3년~5년 미만	86	15.1	30.2	15.1	34.9	3.5	1.2
	5년~10년 미만	106	15.1	34.9	11.3	33.0	5.7	·
	10년~20년 미만	90	21.1	37.8	10.0	28.9	1.1	1.1
	20년 이상	23	30.4	17.4	8.7	43.5	·	·

□ (대체인력 지원사업 전체) 대체인력 지원사업 인지율은 84%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용률은 21.9%로 낮은 편이는데 그 이유는 었으며, 직무 적합 대체인력 부재(30.6%)와 일자나 시간에 맞는 대체인력이 부재(21.1%)하기 때문이었음

○ (대체인력 지원사업 저 이용 집단)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은 22.8%로 가장 높은 반면, 무기계약직은 20.8%, 비정규직 기간제 종사자는 18.3%로 고용의 안정성이 낮아질수록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정책 개선) 전반적으로 사업 인지도는 높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이용률이 낮은 것은 직무 적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대체인력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표 5-155〉 대체인력 지원사업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사유 및 도움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인지 여부		인원(명)	이용 여부		인원(명)	이용 사유						인원(명)	도움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다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기타		예	아니오
전체		4,402	84.0	16.0	3,697	21.9	78.1	811	50.6	4.3	4.7	14.4	18.2	7.8	811	88.5	11.5
성별	여자	3,233	84.4	15.6	2,728	22.4	77.6	612	49.5	5.1	4.2	14.5	18.6	8.0	612	90.5	9.5
	남자	1,169	82.9	17.1	969	20.5	79.5	199	53.8	2.0	6.0	14.1	17.1	7.0	199	82.4	17.6
연령대	20대 이하	500	70.2	29.8	351	16.2	83.8	57	59.6	1.8	5.3	7.0	17.5	8.8	57	94.7	5.3
	30대	1,182	85.6	14.4	1,012	22.3	77.7	226	40.3	3.5	6.2	14.6	27.9	7.5	226	91.2	8.8
	40대	1,498	86.1	13.9	1,290	21.9	78.1	283	53.7	3.5	1.4	11.7	20.5	9.2	283	86.6	13.4
	50대	1,147	85.5	14.5	981	23.5	76.5	231	54.1	6.9	6.5	19.5	6.9	6.1	231	86.6	13.4
	60대 이상	75	84.0	16.0	63	22.2	77.8	14	57.1	-	14.3	14.3	7.1	7.1	14	92.9	7.1
직위	상급관리자	495	96.8	3.2	479	22.1	77.9	106	50.9	5.7	2.8	17.0	15.1	8.5	106	82.1	17.9
	중간관리자	1,131	90.5	9.5	1,024	23.4	76.6	240	44.2	3.3	5.0	11.7	27.5	8.3	240	87.1	12.9

구분		인원(명)	인지 여부		인원(명)	이용 여부		인원(명)	이용 사유						인원(명)	도움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다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기타		예	아니오
	초급관리자	536	82.3	17.7	441	21.1	78.9	93	47.3	4.3	6.5	9.7	22.6	9.7	93	91.4	8.6
	실무직원	2,240	78.3	21.7	1,753	21.2	78.8	372	55.4	4.6	4.6	16.7	12.1	6.7	372	90.6	9.4
직종	사회복지직	3,128	84.4	15.6	2,639	21.5	78.5	568	50.4	5.3	4.6	13.4	18.1	8.3	568	88.0	12.0
	관리직	740	85.4	14.6	632	20.9	79.1	132	53.8	3.0	1.5	13.6	19.7	8.3	132	87.1	12.9
	기능직	352	79.3	20.7	279	30.8	69.2	86	51.2		11.6	20.9	11.6	4.7	86	91.9	8.1
	보건의료직	182	80.8	19.2	147	17.0	83.0	25	36.0	4.0		20.0	36.0	4.0	25	96.0	4.0
고용형태	정규직	3,908	85.4	14.6	3,338	22.2	77.8	741	49.7	4.3	4.6	15.1	18.2	8.1	741	87.9	12.1
	무기계약직	291	77.7	22.3	226	20.8	79.2	47	57.4	4.3	6.4	8.5	17.0	6.4	47	95.7	4.3
	비정규 기간제	182	65.9	34.1	120	18.3	81.7	22	63.6	4.5	4.5	4.5	22.7		22	95.5	4.5
	비정규 기타	21	61.9	38.1	13	7.7	92.3	1	100.0						1	100.0	
근무연수	1년 미만	91	65.9	34.1	60	15.0	85.0	9	44.4	11.1	11.1	22.2	11.1		9	100.0	
	1년~3년 미만	1,273	77.8	22.2	991	17.5	82.5	173	63.6	5.8	5.8	9.2	8.1	7.5	173	92.5	7.5
	3년~5년 미만	878	82.3	17.7	723	21.4	78.6	155	56.8	6.5	1.9	16.8	9.7	8.4	155	90.3	9.7
	5년~10년 미만	1,088	87.2	12.8	949	23.5	76.5	223	43.0	4.0	6.3	15.2	23.8	7.6	223	86.5	13.5
	10년~20년 미만	897	90.6	9.4	813	25.3	74.7	206	45.6	1.5	3.4	15.0	26.7	7.8	206	86.4	13.6
	20년 이상	175	92.0	8.0	161	28.0	72.0	45	40.0	4.4	6.7	17.8	22.2	8.9	45	84.4	15.6

□ (대체인력 지원 미이용 이유) 대체인력 사업 미이용 종사자 2,979명에 대해 미이용 이유를 파악한 결과 1위는 직무 적합 대체인력 부재(30.6%)였고 다음으로, 일자나 시간에 맞는 대체인력 부재(21.1%), 대체인력 불필요 시설(19.6%), 신청 절차나 방법의 모름(10.7%), 대체인력 지원 대상 제외시설(6.9%), 시설 또는 시설장의 이용 기피(3.3%), 기존인력으로 대체가능(1.8%)의 순이었음

○ (시사점) 30~40대, 60대 이상, 상급 관리자, 정규직,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서 미사용 이유로 대체인력의 직무 적합성이 낮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5-156〉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이용하지 않은 이유(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사업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시설이나 시설장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직무에 적합한 양질의 대체인력이 없어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적합한 대체인력을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음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	기타
전체		2,979	10.7	6.9	3.8	30.6	21.1	19.6	1.8	5.3
성별	여자	2,174	10.6	7.9	4.5	30.0	19.3	20.1	2.1	5.6
	남자	805	10.9	4.3	2.1	32.3	26.1	18.4	1.2	4.6
연령대	20대 이하	297	20.9	5.1	2.4	18.2	15.8	31.3	1.0	5.4
	30대	806	14.9	5.2	4.7	31.6	18.4	19.7	1.6	3.8
	40대	1,045	7.7	6.9	3.8	34.4	23.2	16.1	1.2	6.7
	50대	781	7.0	9.7	3.7	27.9	23.2	19.7	3.3	5.4
	60대 이상	50	4.0	4.0	·	50.0	22.0	20.0	·	·
직위	상급관리자	392	5.4	4.8	2.6	41.8	28.3	10.7	1.0	5.4
	중간관리자	815	7.5	6.4	3.6	37.3	23.6	13.7	1.7	6.3
	초급관리자	356	11.8	5.6	7.3	30.3	19.7	20.5	0.8	3.9

구분		인원(명)	사업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시설이나 시설장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직무에 적합한 양질의 대체인력이 없어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적합한 대체인력을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음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	기타
	실무직원	1,416	13.8	8.2	3.5	23.7	18.1	25.2	2.4	5.2
직종	사회복지직	2,139	12.2	6.9	4.5	29.7	21.2	18.8	1.9	4.8
	관리직	517	7.2	7.0	1.9	34.6	20.9	20.5	1.5	6.4
	기능직	200	7.0	6.5	2.0	26.5	25.5	22.5	3.5	6.5
	보건의료직	123	4.9	8.9	2.4	35.8	13.8	25.2	·	8.9
고용형태	정규직	2,687	10.5	6.9	3.9	31.6	21.3	18.7	1.9	5.2
	무기계약직	181	8.3	7.7	3.9	24.9	22.1	24.3	2.2	6.6
	비정규 기간제	99	21.2	4.0	2.0	17.2	16.2	32.3	1.0	6.1
	비정규 기타	12	16.7	33.3	·	8.3	·	41.7	·	·
근무연수	1년 미만	51	13.7	9.8	3.9	19.6	15.7	27.5	2.0	7.8
	1년~3년 미만	831	15.3	8.1	4.3	23.0	18.1	23.7	2.5	5.1
	3년~5년 미만	583	9.4	9.3	3.9	26.4	21.1	23.0	2.4	4.5
	5년~10년 미만	756	10.7	5.7	4.4	33.7	20.5	19.0	1.1	4.9
	10년~20년 미만	635	6.9	4.7	3.0	39.2	26.3	12.1	1.4	6.3
	20년 이상	123	4.1	6.5	0.8	43.1	21.1	14.6	1.6	8.1

3. 보수 수준 및 처우

□ (보수 수준 및 처우 전체) 총 4,402명의 종사자들은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호봉제(7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2,883명 중 종사자들은 보수 향상 수준을 사회복지직 임금수준으로(68.6%)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재 적용 임금체계) 응답자의 90.5%가 현재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60대 이상 종사자나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에서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호봉제 적용 종사자) 남성, 20대~40대, 상급관리자, 관리직·의료보건직, 정규직,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종사자 6인 이상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남

○ (호봉제 비적용 종사자) 60대 이상이나 고용불안정 계층인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연봉제 적용이 높게 나타남

〈표 5-157〉 현재 적용받고 있는 임금체계(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최저임금제	기타	잘 모름
전체		4,402	90.5	5.0	0.9	0.7	0.5	2.4
성별	여자	3,233	89.2	5.3	1.1	0.9	0.6	3.0
	남자	1,169	94.3	4.2	0.3	0.1	0.3	0.8
연령대	20대 이하	500	90.4	5.2	0.6	0.8	0.2	2.8
	30대	1,182	93.3	4.1	0.8	0.3	0.4	1.1
	40대	1,498	92.1	3.7	0.7	0.5	0.7	2.3
	50대	1,147	87.2	6.5	1.0	1.3	0.7	3.3
	60대 이상	75	68.0	20.0	5.3	·	·	6.7
직위	상급관리자	495	93.3	4.0	1.6	0.2	0.2	0.6
	중간관리자	1,131	93.4	4.3	0.3	0.2	0.6	1.2
	초급관리자	536	92.5	4.9	0.6	0.4	0.4	1.3
	실무직원	2,240	88.0	5.5	1.1	1.1	0.6	3.6
직종	사회복지직	3,128	89.9	5.1	0.9	0.5	0.7	2.8
	관리직	740	93.4	3.5	0.8	1.1	0.3	0.9
	기능직	352	88.6	6.5	1.1	0.6	0.3	2.8
	보건의료직	182	93.4	4.9	·	1.1	·	0.5
고용형태	정규직	3,908	93.2	4.0	0.6	0.3	0.3	1.6
	무기계약직	291	72.2	12.7	3.1	3.8	1.7	6.5
	비정규 기간제	182	68.1	11.5	3.3	2.2	3.3	11.5
	비정규 기타	21	42.9	19.0	9.5	9.5	·	19.0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83.8	7.5	2.0	1.3	0.9	4.4
	6~10인 이하	818	93.3	4.4	0.1	0.6	0.1	1.5
	11~20인 이하	642	93.6	4.0	·	·	1.1	1.2
	21~30인 이하	457	96.5	1.8	·	0.2	0.2	1.3
	31~40인 이하	267	97.0	2.2	·	·	·	0.7
	41~50인 이하	141	94.3	4.3	1.4	·	·	·
	51인 이상	367	97.0	2.2	0.3	·	·	0.5

□ (보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임금체계) 4,402명의 응답자 중 호봉제가 7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무급제(7.9%), 직능급제(7.3%), 연봉제(5.3%)로 나타나 호봉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호봉제 선호 종사자) 연령이 높고, 상급관리자, 사회복지직에서 상대적으로 호봉제 적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에 오래 근무한 종사자층에서 호봉제 적용을 선호하고 있음

〈표 5-158〉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임금체계(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호봉제	연봉제	직무급제	직능급제	기타
전체		4,402	78.3	5.3	7.9	7.3	1.2
성별	여자	3,233	79.4	5.1	7.3	6.8	1.3
	남자	1,169	75.3	5.6	9.5	8.6	1.0
연령대	20대 이하	500	75.4	5.8	8.8	8.4	1.6
	30대	1,182	75.6	5.0	8.1	10.2	1.1
	40대	1,498	78.8	5.3	8.4	6.7	0.7
	50대	1,147	81.5	5.1	6.8	4.8	1.8
	60대 이상	75	80.0	8.0	5.3	4.0	2.7
직위	상급관리자	495	82.8	3.4	8.5	4.4	0.8
	중간관리자	1,131	78.4	4.3	8.9	7.1	1.2
	초급관리자	536	75.9	6.0	8.0	9.7	0.4
	실무직원	2,240	77.8	6.0	7.2	7.4	1.6
직종	사회복지직	3,128	78.9	5.3	7.3	7.4	1.2
	관리직	740	77.6	4.9	8.9	7.2	1.5
	기능직	352	77.0	6.3	9.4	6.3	1.1
	보건의료직	182	74.2	4.4	12.1	7.1	2.2
고용형태	정규직	3,908	78.6	5.0	8.1	7.1	1.2
	무기계약직	291	77.3	6.9	5.2	9.6	1.0
	비정규 기간제	182	74.7	8.8	8.2	6.0	2.2
	비정규 기타	21	71.4	9.5		9.5	9.5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81.2	6.1	5.4	5.7	1.7
	6~10인 이하	818	78.9	3.5	8.9	7.7	1.0
	11~20인 이하	642	75.5	5.9	8.9	9.0	0.6
	21~30인 이하	457	77.9	5.0	9.4	7.0	0.7
	31~40인 이하	267	76.8	4.1	10.1	7.5	1.5
	41~50인 이하	141	74.5	3.5	13.5	8.5	
	51인 이상	367	71.7	6.0	10.1	10.4	1.9

□ (수행 직무 대비 보수 수준 적정성) 총 응답자 중 65.5%(2,883명)가 보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응답한 종사자가 원하는 보수 수준으로서 1순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금(68.6%),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18.9%),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4.1%)의 순이었음

○ (보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종사자) 20대(68.6%), 초급관리자(71.8%), 무기계약직(69.8%), 3~5년 미만(70%)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

○ (원하는 보수 수준) 보수 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20대(30.4%), 초급관리자(22.8%), 무기계약직(20.7%)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에 대한 선호도가 타 종사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59〉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나 업무강도 대비 보수수준의 적당 여부와 적당하지 않을 시, 원하는 보수 수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보수 수준의 적당 여부		인원(명)	원하는 보수 수준					
			예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금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수당 별도 지급	기타	잘 모름
전체		4,402	34.5	65.5	2,883	18.9	68.6	4.1	0.8	6.8	0.8
성별	여자	3,233	33.6	66.4	2,148	18.9	68.2	4.7	0.9	6.4	1.0
	남자	1,169	37.1	62.9	735	18.8	69.8	2.6	0.7	7.9	0.3
연령대	20대 이하	500	32.2	67.8	339	30.4	52.5	3.2	0.3	11.5	2.1
	30대	1,182	31.4	68.6	811	21.5	62.8	4.6	1.1	9.1	1.0
	40대	1,498	35.7	64.3	963	14.2	75.6	3.6	0.9	5.5	0.1
	50대	1,147	35.8	64.2	736	17.3	72.6	4.6	0.7	3.9	1.0
	60대 이상	75	54.7	45.3	34	11.8	82.4	5.9	-	-	-
직위	상급관리자	495	42.0	58.0	287	12.9	77.0	5.9	1.0	2.4	0.7
	중간관리자	1,131	36.5	63.5	718	12.7	74.4	4.2	0.8	7.2	0.7

구분		인원(명)	보수 수준의 적당 여부		인원(명)	원하는 보수 수준					
			예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금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수당 별도 지급	기타	잘 모름
	초급관리자	536	28.2	71.8	385	22.3	67.0	3.4	1.8	4.9	0.5
	실무직원	2,240	33.3	66.7	1,493	22.2	64.6	4.0	0.5	7.8	0.9
직종	사회복지직	3,128	33.1	66.9	2,093	19.3	68.6	3.9	0.8	6.6	1.0
	관리직	740	35.7	64.3	476	16.8	70.0	4.6	1.5	7.1	-
	기능직	352	43.8	56.3	198	19.7	71.2	3.5	0.5	4.5	0.5
	보건의료직	182	36.3	63.7	116	19.8	58.6	7.8	-	12.1	1.7
고용 형태	정규직	3,908	34.7	65.3	2,550	18.4	68.7	4.2	0.8	7.0	0.9
	무기계약직	291	30.2	69.8	203	20.7	70.0	3.9	1.5	3.9	-
	비정규 기간제	182	33.0	67.0	122	23.8	63.9	4.1	0.8	7.4	-
	비정규 기타	21	61.9	38.1	8	50.0	50.0	-	-	-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32.6	67.4	1,153	19.4	67.0	5.3	1.0	6.5	0.8
	6~10인 이하	818	37.9	62.1	508	17.9	70.9	2.8	1.4	6.3	0.8
	11~20인 이하	642	34.7	65.3	419	19.8	70.2	2.1	0.7	6.7	0.5
	21~30인 이하	457	37.9	62.1	284	20.8	68.0	4.9	0.4	4.6	1.4
	31~40인 이하	267	39.7	60.3	161	18.0	67.7	5.0	0.6	8.1	0.6
	41~50인 이하	141	33.3	66.7	94	17.0	63.8	6.4	-	11.7	1.1
	51인 이상	367	28.1	71.9	264	16.3	71.2	2.7	0.4	8.7	0.8

4. 승진

□ (승진현황 전체) 내부 승진 규정을 알고있는 응답자 2,351명 중 입사 후 승진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45.7%에 불과했으며, 승진자 1,075명의 경우 평균 승진기간이 약 6.9년이 소요되었고, 승진의 핵심요인 중 가장 중요 요인을 승진정원이라고 응답함

□ (승진 관련 규정) 응답자 중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 승진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53.4%였으나, 입사 후 승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4.3%에 달했으며, 승진한 종사자 중 승진한 횟수는 1회가 64.2%로 가장 많았음.

○ (종합 평가) 승진에 대한 내부규정은 있는 반면, 54.3%가 승진이 없다고 한 점이나 입사 후 승진은 평균 64.2%가 1회로 나타난 것은 승진에 구조적 한계가 있고, 승진적체가 상존하고 있음을 나타냄

○ (승진 경험) 30~40대, 관리자들, 사회복지직, 관리직, 정규직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남

○ (승진 비 경험자) 20대 이하(78.5%), 실무직원(92.1%), 기능직(80.9%)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60〉 재직 중인 시설의 승진에 대한 내부규정(인사 규정) 여부와 입사 후 승진 여부 및 승진 횟수(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승진에 대한 내부규정(인사규정)			인원(명)	입사 후 승진여부		인원(명)	입사 후 승진 횟수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있다	없다		1	2	3	4
전체		4,402	53.4	22.8	23.8	2,351	45.7	54.3	1,075	64.2	29.6	5.5	0.7
성별	여자	3,233	50.5	25.9	23.7	1,632	43.9	56.1	716	66.3	28.1	5.0	0.6
	남자	1,169	61.5	14.3	24.2	719	49.9	50.1	359	59.9	32.6	6.4	1.1
연령대	20대 이하	500	45.6	13.8	40.6	228	21.5	78.5	49	89.8	8.2	2.0	-
	30대	1,182	56.3	15.1	28.7	665	51.0	49.0	339	66.1	31.9	1.8	0.3

구분		인원(명)	승진에 대한 내부규정(인사규정)			인원(명)	입사 후 승진여부		인원(명)	입사 후 승진 횟수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있다	없다		1	2	3	4
	40대	1,498	58.7	22.2	19.2	879	51.4	48.6	452	58.6	32.3	7.7	1.3
	50대	1,147	47.8	34.0	18.2	548	40.5	59.5	222	66.2	26.1	7.2	0.5
	60대 이상	75	41.3	45.3	13.3	31	41.9	58.1	13	76.9	15.4	7.7	-
직위	상급관리자	495	67.7	28.1	4.2	335	64.2	35.8	215	45.6	34.4	17.7	2.3
	중간관리자	1,131	68.3	17.2	14.5	772	74.5	25.5	575	59.1	36.9	3.5	0.5
	초급관리자	536	61.2	13.6	25.2	328	64.9	35.1	213	89.2	10.3	0.5	-
	실무직원	2,240	40.9	26.6	32.5	916	7.9	92.1	72	86.1	13.9	-	-
직종	사회복지직	3,128	52.0	24.4	23.6	1,628	49.9	50.1	813	63.3	30.8	5.2	0.7
	관리직	740	60.0	20.8	19.2	444	42.8	57.2	190	62.1	29.5	7.9	0.5
	기능직	352	50.6	18.2	31.3	178	19.1	80.9	34	79.4	20.6	-	-
	보건의료직	182	55.5	12.6	31.9	101	37.6	62.4	38	78.9	13.2	5.3	2.6
고용형태	정규직	3,908	55.9	21.2	23.0	2,183	47.4	52.6	1,034	63.7	29.9	5.6	0.8
	무기계약직	291	35.1	39.5	25.4	102	36.3	63.7	37	73.0	24.3	2.7	-
	비정규 기간제	182	33.5	27.5	39.0	61	6.6	93.4	4	100.0	-	-	-
	비정규 기타	21	23.8	47.6	28.6	5	-	100.0	-	-	-	-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40.6	34.5	24.9	695	40.7	59.3	283	70.7	26.1	3.2	-
	6~10인 이하	818	52.8	24.3	22.9	432	42.4	57.6	183	61.7	31.7	4.9	1.6
	11~20인 이하	642	62.9	13.1	24.0	404	48.0	52.0	194	66.0	30.4	3.6	-
	21~30인 이하	457	66.1	10.5	23.4	302	54.6	45.4	165	63.0	32.1	4.2	0.6
	31~40인 이하	267	61.8	15.7	22.5	165	42.4	57.6	70	72.9	21.4	5.7	-
	41~50인 이하	141	68.8	7.8	23.4	97	47.4	52.6	46	39.1	45.7	15.2	-
	51인 이상	367	69.8	7.9	22.3	256	52.3	47.7	134	56.7	28.4	11.9	3.0

□ (현 직급의 승진 소요기간) 1,075명의 응답자의 평균 승진에 걸린 기간은 6년~10년 미만이 3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년 이하(28.4%), 4~5년 미만(22.3%), 11년 이상(17.7%) 이었으며 평균 6.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종) 사회복지직은 평균 승진 기간이 6.61년이었으나 관리직은 8.08년으로 더 긴 것으로 파악됨

〈표 5-161〉 현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입사 후 걸린 기간(년)(웹조사 기반)

(단위: 명, 년, %)

구분		인원(명)	3년 이하	4~5년	6~10년	11년 이상	평균
전체		1,075	28.4	22.3	31.6	17.7	6.90
성별	여자	716	29.2	21.5	31.4	17.9	6.88
	남자	359	26.7	24.0	32.0	17.3	6.95
연령대	20대 이하	49	63.3	26.5	10.2	-	3.49
	30대	339	30.7	25.7	34.5	9.1	5.69
	40대	452	25.2	18.8	31.4	24.6	7.73
	50대	222	24.8	23.4	32.9	18.9	7.64
	60대 이상	13	7.7	23.1	23.1	46.2	9.77
직위	상급관리자	215	16.3	20.5	27.9	35.3	9.24
	중간관리자	575	25.4	21.6	36.5	16.5	6.95
	초급관리자	213	41.8	25.8	26.3	6.1	5.18
	실무직원	72	48.6	23.6	19.4	8.3	4.64
직종	사회복지직	813	30.3	22.5	31.0	16.2	6.61
	관리직	190	20.0	23.2	32.1	24.7	8.08
	기능직	34	23.5	17.6	47.1	11.8	6.82
	보건의료직	38	34.2	18.4	28.9	18.4	7.32
고용형태	정규직	1,034	27.9	22.1	31.9	18.1	6.98
	무기계약직	37	35.1	29.7	27.0	8.1	5.38
	비정규 기간제	4	100.0	-	-	-	1.00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283	32.9	25.1	27.2	14.8	6.42
	6~10인 이하	183	33.9	16.4	36.1	13.7	6.50
	11~20인 이하	194	28.9	27.3	27.8	16.0	6.43
	21~30인 이하	165	24.8	25.5	33.3	16.4	6.85
	31~40인 이하	70	27.1	17.1	40.0	15.7	7.07
	41~50인 이하	46	15.2	15.2	34.8	34.8	9.41
	51인 이상	134	20.1	18.7	32.8	28.4	8.25

□ (승진의 핵심 요인) 응답자 중 승진 정원(TO)이 40.9%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했고, 다음으로 인사평가(35.2%), 인건비 예산(15.4%), 자격증(2.1%)의 순이었음.

○ (승진 TO) 사회복지직의 승진 TO의 중요성을 지적한 경우가 42.3%로 관리직 (38.4%) 등 타 직종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인사평가) 기능직이 58.8%로 사회복지직(35.3%), 관리직(2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62〉 승진하는 데 가장 중요 요인(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인건비 예산	승진 정원 (티오)	자격증	인사평가	기타
전체		1,075	15.4	40.9	2.1	35.2	6.3
성별	여자	716	16.1	41.9	2.0	34.1	6.0
	남자	359	14.2	39.0	2.5	37.3	7.0
연령대	20대 이하	49	4.1	36.7	4.1	49.0	6.1
	30대	339	15.6	42.5	2.1	32.2	7.7
	40대	452	14.6	45.1	2.0	33.8	4.4
	50대	222	18.9	31.1	2.3	39.6	8.1
	60대 이상	13	23.1	38.5	-	30.8	7.7
직위	상급관리자	215	19.5	42.8	1.9	34.4	1.4
	중간관리자	575	13.6	43.5	1.7	35.0	6.3
	초급관리자	213	15.5	35.2	3.3	36.6	9.4
	실무직원	72	18.1	31.9	2.8	34.7	12.5
직종	사회복지직	813	14.8	42.3	2.1	35.3	5.5
	관리직	190	22.6	38.4	2.6	29.5	6.8
	기능직	34	2.9	23.5	-	58.8	14.7
	보건의료직	38	5.3	39.5	2.6	39.5	13.2
고용 형태	정규직	1,034	15.7	41.1	2.1	35.3	5.8
	무기계약직	37	8.1	32.4	2.7	35.1	21.6
	비정규 기간제	4	25.0	75.0	-	-	-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283	15.2	37.1	2.8	38.2	6.7
	6~10인 이하	183	23.0	38.3	3.8	30.1	4.9
	11~20인 이하	194	12.4	43.8	1.0	34.5	8.2
	21~30인 이하	165	18.2	44.8	1.2	32.1	3.6
	31~40인 이하	70	10.0	45.7	2.9	35.7	5.7
	41~50인 이하	46	13.0	41.3	-	37.0	8.7
	51인 이상	134	10.4	41.0	1.5	39.6	7.5

5. 업무량, 정년 등 기타 근무환경

□ (기타 근무 환경 전체) 인력부족 이유를 인력배치기준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년측면에서 모든 직원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1%에 불과

□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 및 이유)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업무량 대비 근무 직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3.3%였고, 부족한 이유로 63.5%가 법령이나 지침의 직원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 때문으로 응답함

○ (종합 평가) 비정규직(기간제)은 60.4%, 근속연수 1년 미만은 59.3%가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과반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다른 고용 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급관리자로 갈수록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주어진 업무량에서 차이가 있음이 추정됨

〈표 5-163〉 현 재직 시설의 업무량 대비 근무 직원 수 부족 여부 및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근무 직원 수 부족 여부		인원(명)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예	아니오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령이나 사업지침의 직원 정원에 관한 배치기준이 잘못되어서	배정된 직원 수는 적당한데 단기적으로 결원 인력이 있어서	결원된 인력이 장기적으로 충원이 안 돼서	인력대비 과도한 업무량	규정에 맞게 인원 배치가 되지 않음	교대, 야간근무를 위한 필수인력 필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타
전체		4,402	63.3	36.7	2,786	63.5	9.6	9.7	9.1	1.4	1.1	1.1	4.6
성별	여자	3,233	60.3	39.7	1,950	61.2	10.4	9.5	10.4	1.3	1.4	0.9	5.0
	남자	1,169	71.5	28.5	836	68.9	7.8	9.9	6.1	1.6	0.6	1.6	3.6
연령대	20대 이하	500	59.2	40.8	296	57.4	9.8	13.9	12.5	0.7	0.3	0.3	5.1
	30대	1,182	66.8	33.2	790	64.3	8.6	8.7	10.0	1.8	0.8	1.1	4.7
	40대	1,498	67.5	32.5	1,011	65.7	9.4	9.6	7.4	1.6	1.2	1.4	3.8
	50대	1,147	56.3	43.7	646	61.5	10.8	9.0	9.3	0.8	2.0	0.9	5.7

구분		인원(명)	근무 직원 수 부족 여부		인원(명)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예	아니오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령이나 사업지침의 직원 정원에 관한 배치기준이 잘못되어서	배정된 직원 수는 적당한데 단기적으로 결원 인력이 있어서	결원된 인력이 장기적으로 충원이 안 돼서	인력대비 과도한 업무량	규정에 맞게 인원 배치가 되지 않음	교대, 야간근무를 위한 필수인력 필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타
	60대 이상	75	57.3	42.7	43	69.8	11.6	9.3	4.7	2.3	·	·	2.3
직위	상급관리자	495	77.8	22.2	385	69.4	5.7	8.3	7.0	2.1	1.6	2.1	3.9
	중간관리자	1,131	70.4	29.6	796	66.0	9.3	9.2	8.4	1.3	0.9	1.4	3.6
	초급관리자	536	65.3	34.7	350	62.9	7.7	13.7	10.0	1.4	0.9	0.6	2.9
	실무직원	2,240	56.0	44.0	1,255	60.3	11.5	9.2	9.9	1.2	1.3	0.7	5.9
직종	사회복지직	3,128	63.9	36.1	1,998	63.4	8.9	9.1	9.7	1.6	1.4	1.2	4.8
	관리직	740	63.5	36.5	470	64.3	11.1	9.8	8.5	0.9	0.9	1.3	3.4
	기능직	352	58.2	41.8	205	63.9	13.2	12.2	5.4	0.5	·	·	4.9
	보건의료직	182	62.1	37.9	113	61.1	9.7	14.2	8.0	0.9	0.9	·	5.3
고용형태	정규직	3,908	64.8	35.2	2,533	64.0	9.4	9.7	8.7	1.5	1.1	1.1	4.5
	무기계약직	291	58.4	41.6	170	55.3	10.0	10.0	14.1	·	1.8	1.8	7.1
	비정규 기간제	182	39.6	60.4	72	65.3	12.5	8.3	9.7	1.4	1.4	·	1.4
	비정규 기타	21	52.4	47.6	11	72.7	18.2	·	9.1	·	·	·	·
근무연수	1년 미만	91	40.7	59.3	37	56.8	27.0	2.7	5.4	2.7	·	·	5.4
	1년~3년 미만	1,273	55.9	44.1	711	58.4	10.3	10.5	11.8	1.1	1.3	1.1	5.5
	3년~5년 미만	878	61.8	38.2	543	63.7	9.2	8.7	10.5	1.1	1.1	0.7	5.0
	5~10년 미만	1,088	65.4	34.6	712	62.6	9.4	10.1	8.7	1.7	1.5	0.8	5.1
	10~20년 미만	897	73.1	26.9	656	68.6	8.8	9.9	6.4	1.2	0.8	1.5	2.7
	20년 이상	175	72.6	27.4	127	71.7	7.1	7.1	4.7	2.4	0.8	1.6	4.7

□ (60세 정년 보장) 4,402명의 응답자 중 정규직에만 정년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52.1%인 반면, 모든 직원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1%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 (종합 평가) 정년 보장은 정규직 이외의 무기계약직(31.6%), 비정규직(36.8 ~38.1%)의 고용 형태에서 낮은 보장률을 보이고, 1년 미만 근속연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정규직 이외 고용 형태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방증함

〈표 5-164〉 재직 중인 시설의 60세 법정 정년 보장 현황(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모든 직원의 60세 법정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규직에만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직 · 일용직 등 모든 직원의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전체		4,402	5.7	52.1	42.1
성별	여자	3,233	5.9	52.2	41.8
	남자	1,169	5.2	51.8	42.9
연령대	20대 이하	500	5.4	42.0	52.6
	30대	1,182	6.4	46.4	47.2
	40대	1,498	4.9	53.2	41.9
	50대	1,147	6.3	60.3	33.4
	60대 이상	75	5.3	62.7	32.0
직위	상급관리자	495	5.3	54.1	40.6
	중간관리자	1,131	4.7	51.9	43.4
	초급관리자	536	5.0	51.3	43.7
	실무직원	2,240	6.6	52.0	41.5
직종	사회복지직	3,128	6.1	52.1	41.8
	관리직	740	4.7	50.5	44.7
	기능직	352	4.8	54.0	41.2
	보건의료직	182	5.5	54.4	40.1
고용 형태	정규직	3,908	4.9	54.4	40.7
	무기계약직	291	11.3	31.6	57.0
	비정규 기간제	182	12.1	36.8	51.1
	비정규 기타	21	28.6	38.1	33.3
근무 연수	1년 미만	91	9.9	47.3	42.9
	1년~3년 미만	1,273	7.7	51.3	41.0
	3년~5년 미만	878	5.2	53.8	41.0
	5년~10년 미만	1,088	4.4	51.4	44.2
	10년~20년 미만	897	4.5	52.2	43.4
	20년 이상	175	6.9	56.6	36.6

6. 복리후생 제도

□ (전체) 현재 총 23개 복리후생 제도가 종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 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희망하는 복리후생 제도로는 자녀학자금(21.4%), 안식휴가제(14.3%)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적용받는 복리후생 제도) 연차휴가가 8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육아휴직(56.2%), 상해보험가입지원(54.3%), 출산전후휴가(48.3%), 직원포상제도(34.1%), 경조사비(32.1%), 교육훈련비(29.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직원휴게시설(28.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24.6%), 유산/사산휴가(21.4%), 유급보건휴가(14%), 진료휴가(12.1%) 순으로 나타남.

○ (종합 평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성인력이 많은 관계로 출산정책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 타 복리후생 대비 많이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정규직 이외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임시직)은 모든 복리후생에서 그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5-165〉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서 받는 복리후생 사항 1(중복응답)(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자녀 학자금	본인 학자금	근로자 대출	경조사비	체력 단련비	교육 훈련비	휴양시설	직원휴게 시설	동호회 지원	연차 휴가	유급보건 휴가	출산전후 휴가
전체		4,402	5.1	2.3	3.7	32.1	3.0	29.8	2.5	28.1	6.1	86.7	14.0	48.3
성별	여자	3,233	4.2	1.8	2.8	31.6	2.4	28.8	2.0	26.1	4.9	87.7	13.0	47.7
	남자	1,169	7.5	3.6	6.0	33.7	4.4	32.6	3.9	33.4	9.5	84.2	16.7	49.9
연령대	20대 이하	500	3.4	2.0	4.0	38.6	2.2	27.4	2.8	28.8	5.2	87.2	17.8	48.0
	30대	1,182	4.7	3.4	4.2	37.6	3.0	31.0	2.8	28.8	7.6	88.2	15.1	58.7
	40대	1,498	6.1	2.3	3.9	30.6	2.3	30.4	2.5	30.4	7.3	87.0	13.2	52.2
	50대	1,147	5.0	1.3	2.5	26.1	4.1	29.3	2.0	24.5	3.8	85.4	12.8	34.4
	60대 이상	75	4.0		5.3	25.3	4.0	22.7	4.0	20.0		74.7	6.7	20.0

구분		인원(명)	자녀 학자금	본인 학자금	근로자 대출	경조사비	체력 단련비	교육 훈련비	휴양시설	직원휴게 시설	동호회 지원	연차 휴가	유급보건 휴가	출산전후 휴가
직위	상급관리자	495	5.3	2.0	3.6	31.3	4.0	32.5	1.8	33.3	5.9	87.3	15.2	58.8
	중간관리자	1,131	4.9	2.4	3.3	33.1	2.5	32.2	3.1	33.8	8.1	89.5	14.1	59.0
	초급관리자	536	5.6	2.1	5.0	34.0	2.6	27.1	2.2	25.9	8.2	85.3	14.4	52.4
	실무직원	2,240	5.1	2.3	3.6	31.4	3.0	28.7	2.4	24.6	4.6	85.6	13.6	39.6
직종	사회복지직	3,128	4.6	2.2	3.5	30.6	2.6	30.0	2.6	24.4	5.8	86.3	13.5	46.5
	관리직	740	6.5	2.8	3.6	34.5	4.3	30.9	1.8	34.6	7.4	87.7	13.8	54.5
	기능직	352	6.8	2.3	5.4	38.1	3.1	21.9	4.3	38.9	6.0	85.5	16.5	45.2
	보건의료직	182	4.4	1.1	2.7	38.5	3.8	37.4	1.1	43.4	6.6	92.3	18.1	60.4
고용 형태	정규직	3,908	5.2	2.2	3.8	33.8	3.0	30.7	2.5	29.5	6.6	87.2	14.3	50.5
	무기계약직	291	2.7	2.1	2.4	19.2	3.1	23.0	1.0	18.9	1.7	85.2	14.1	32.6
	비정규 기간제	182	5.5	3.8	3.3	20.3	2.2	22.5	3.3	13.7	2.7	83.0	9.3	29.7
	비정규 기타	21	9.5	4.8	9.5	9.5	4.8	14.3	9.5	9.5	-	57.1	4.8	4.8
근무 연수	1년 미만	91	1.1	1.1	-	33.0	3.3	23.1	1.1	20.9	1.1	85.7	8.8	29.7
	1년~3년 미만	1,273	4.5	2.1	4.2	32.4	2.4	29.6	2.0	23.9	4.0	86.4	13.9	38.2
	3년~5년 미만	878	4.4	2.5	2.6	31.3	3.1	28.0	2.4	25.5	6.3	86.3	15.4	43.7
	5~10년 미만	1,088	5.7	2.5	4.2	32.6	3.1	31.0	3.8	28.8	6.0	85.6	13.5	51.5
	10~20년 미만	897	5.2	2.2	3.5	31.1	3.2	30.3	1.6	33.3	8.7	88.6	13.5	60.8
	20년 이상	175	10.9	1.7	4.6	36.6	3.4	33.7	4.0	44.0	10.9	89.1	16.0	70.3

〈표 5-166〉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서 받는 복리후생 사항 2(중복응답)(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안식휴가제	진료휴가(본인 및 가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포상제도	상해보험 가입지원	복지포인트	수당 및 상여금	건강검진	없음	기타
전체		4,402	21.4	56.2	7.2	12.1	28.1	24.6	34.1	54.3	1.1	0.9	0.6	1.2	2.7
성별	여자	3,233	21.2	54.9	7.4	11.0	29.1	24.4	31.0	55.1	1.2	1.1	0.7	1.3	2.7
	남자	1,169	22.0	59.7	6.7	15.1	25.2	25.1	42.9	52.4	1.0	0.5	0.3	0.9	2.7
연령대	20대 이하	500	19.4	63.0	6.6	10.4	31.0	24.8	26.2	41.6	1.8	1.6	0.2	0.8	3.2
	30대	1,182	28.2	67.7	9.2	13.0	37.2	31.3	35.5	56.0	1.4	0.6	0.4	0.6	2.0
	40대	1,498	23.8	59.0	7.5	13.0	29.2	26.4	38.9	58.3	1.1	0.6	0.8	0.9	3.1
	50대	1,147	13.2	39.8	5.1	10.9	17.3	16.1	30.7	53.3	0.8	1.4	0.9	2.3	2.5
	60대 이상	75	8.0	25.3	2.7	10.7	6.7	8.0	22.7	50.7				5.3	2.7
직위	상급관리자	495	32.9	63.2	8.7	12.3	33.9	31.3	50.9	74.1	1.8	1.2	0.6	1.0	4.2
	중간관리자	1,131	28.2	62.7	8.2	12.1	34.7	30.4	43.1	61.9	1.1	1.0	0.8	0.4	2.0
	초급관리자	536	22.0	60.4	9.9	9.5	31.0	25.7	33.8	52.6	1.1	0.6	0.4	1.1	1.9
	실무직원	2,240	15.3	50.4	5.7	12.7	22.8	19.8	26.0	46.6	1.0	0.9	0.6	1.7	2.9
직종	사회복지직	3,128	20.2	54.4	7.5	11.0	26.7	23.6	31.4	53.3	1.3	1.0	0.6	1.2	2.6
	관리직	740	25.9	62.7	7.4	14.1	32.0	28.2	42.0	63.9	0.7	0.9	1.1	1.2	3.4
	기능직	352	18.2	50.9	4.0	13.4	23.6	20.7	35.5	45.7	0.3	0.3	0.3	1.7	2.6
	보건의료직	182	29.7	70.9	7.1	20.3	45.1	33.0	46.2	50.5	1.6			0.5	1.1
고용형태	정규직	3,908	22.6	58.2	7.7	12.2	29.3	25.4	36.4	56.2	1.2	0.9	0.7	1.0	2.6
	무기계약직	291	15.8	44.3	4.8	12.4	23.0	22.0	18.6	48.5	00.3	0.7	0.3	2.7	3.4
	비정규 기간제	182	7.1	37.9	1.6	10.4	13.7	13.2	12.6	26.9	1.1	1.6	0.5	2.7	2.7
	비정규 기타	21		9.5		9.5	4.8	4.8	9.5	23.8				9.5	
근무연수	1년 미만	91	8.8	39.6	2.2	11.0	14.3	14.3	14.3	25.3		6.6		2.2	3.3
	1년~3년 미만	1,273	14.8	48.9	4.5	12.6	22.1	19.4	24.2	43.7	1.4	1.1	0.7	1.7	3.2
	3년~5년 미만	878	17.5	55.1	7.6	11.3	25.2	22.1	30.9	50.6	1.1	0.9	0.7	0.6	2.6
	5~10년 미만	1,088	23.5	57.5	7.8	12.5	31.0	27.8	38.5	59.8	1.2	0.5	0.7	1.3	2.1
	10~20년 미만	897	30.3	65.2	10.1	11.8	36.0	29.8	44.8	66.8	0.9	0.7	0.4	1.1	2.2
	20년 이상	175	36.6	69.1	8.0	12.0	35.4	32.6	51.4	68.0	0.6	0.6	0.6	0.6	4.6

□ (희망하는 복리후생) 자녀학자금이 2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식휴가제(14.3%), 나머지는 10%대 미만의 순이었음

○ (시사점) 자녀학자금은 30~40대에서, 경조사비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종사자들의 연령에 따른 필요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유산/사산휴가를 비롯하여 출산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낮은 것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안식휴가, 진료 휴가, 직원포상제도 등 법률 이외 규정에 의해 부여가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높았음

〈표 5-167〉 희망하는 복리후생 사항 1순위(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자녀 학자금	본인 학자금	근로자 대출	경조사비	체력 단련비	교육 훈련비	휴양시설	직원 휴게시설	동호회 지원	연차 휴가	유급보건 휴가
전체		4,402	21.4	4.8	6.7	5.6	9.0	4.3	3.0	4.4	0.7	2.0	5.5
성별	여자	3,233	18.0	5.0	5.9	6.1	9.5	4.5	3.2	4.8	0.4	1.9	6.6
	남자	1,169	30.6	4.1	9.0	4.4	7.5	3.7	2.7	3.3	1.5	2.4	2.3
연령대	20대 이하	500	8.0	9.6	6.6	6.0	7.0	4.2	2.2	8.0	0.4	2.0	7.6
	30대	1,182	20.1	4.6	7.8	4.2	7.2	4.1	3.0	3.6	0.8	1.4	4.8
	40대	1,498	30.3	4.5	6.0	4.4	6.8	3.5	2.3	4.1	0.9	2.2	5.3
	50대	1,147	17.6	3.4	6.9	7.6	13.8	5.7	4.4	4.1	0.4	2.3	5.1
	60대 이상	75	9.3	4.0	4.0	20.0	18.7	4.0	2.7	1.3	1.3	2.7	9.3
직위	상급관리자	495	23.0	5.7	7.1	7.3	11.7	4.2	2.4	1.6	0.6	2.2	3.4
	중간관리자	1,131	26.2	4.3	7.2	4.1	7.8	4.0	2.8	2.9	1.1	1.1	4.8
	초급관리자	536	20.5	4.9	7.1	5.0	8.0	4.5	3.0	3.7	0.4	2.2	4.9
	실무직원	2,240	18.8	4.8	6.4	6.2	9.2	4.5	3.3	5.8	0.6	2.3	6.4
직종	사회복지직	3,128	20.2	5.3	6.3	5.6	8.5	4.6	2.9	4.5	0.7	2.3	5.3
	관리직	740	24.5	3.5	8.1	5.7	9.9	3.8	3.1	4.3	0.8	1.6	4.7

구분		인원(명)	자녀 학자금	본인 학자금	근로자 대출	경조사비	체력 단련비	교육 훈련비	휴양시설	직원 휴게시설	동호회 지원	연차 휴가	유급보건 휴가
	기능직	352	21.6	3.1	7.4	8.0	10.8	3.4	4.0	4.3	0.6	0.9	7.4
	보건의료직	182	28.0	3.8	8.2	2.2	8.8	3.3	2.7	2.2	0.5	0.5	6.6
고용 형태	정규직	3,908	22.0	4.9	7.1	5.3	8.9	4.1	2.9	4.1	0.7	1.8	5.2
	무기계약직	291	16.8	3.8	5.5	7.6	7.6	6.2	4.8	5.8	-	4.8	9.3
	비정규 기간제	182	15.9	3.8	2.7	7.7	12.1	4.4	3.8	7.7	-	2.7	6.0
	비정규 기타	21	9.5	14.3	-	19.0	14.3	9.5	-	4.8	4.8	-	-
근무 연수	1년 미만	91	13.2	9.9	3.3	5.5	9.9	3.3	2.2	3.3	-	2.2	3.3
	1년~3년 미만	1,273	19.5	6.0	5.7	5.4	10.2	4.6	3.2	6.4	0.2	2.0	5.2
	3년~5년 미만	878	18.3	4.6	8.2	7.2	8.0	5.2	2.5	3.1	1.0	2.6	6.5
	5년~10년 미만	1,088	22.2	5.0	6.4	5.5	8.5	4.1	2.7	4.2	0.6	1.7	6.0
	10~20년 미만	897	26.1	2.7	7.2	5.2	7.9	3.9	3.8	3.0	1.3	1.7	4.8
	20년 이상	175	25.1	4.0	8.6	2.3	12.6	1.1	3.4	4.6	-	1.7	3.4

〈표 5-168〉 희망하는 복리후생 사항 2순위(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안식휴가제	진료휴가(본인 및 가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포상제도	상해보험가입 지원	기타
전체		4,402	0.5	0.0	1.3	14.3	7.7	0.7	1.4	5.0	0.6	1.2
성별	여자	3,233	0.4	0.0	1.0	15.1	8.7	0.9	1.5	4.9	0.6	1.1
	남자	1,169	0.7	·	2.1	12.1	4.8	0.3	1.2	5.3	0.4	1.5
연령대	20대 이하	500	2.0	0.2	2.8	10.6	6.6	1.8	0.6	12.0	0.4	1.4
	30대	1,182	0.8	·	2.4	16.4	6.5	1.6	3.6	5.3	0.3	1.4
	40대	1,498	0.1	·	0.7	15.3	7.3	0.2	1.0	3.5	0.4	1.2
	50대	1,147	·	·	0.3	12.9	9.7	0.1	0.1	3.6	1.1	1.0
	60대 이상	75	·	·	·	6.7	10.7	·	·	4.0	1.3	·
직위	상급관리자	495	0.2	·	0.2	17.2	5.7	0.4	1.2	4.2	·	1.6
	중간관리자	1,131	0.4	·	1.2	19.2	7.3	0.5	1.1	2.8	0.4	1.0
	초급관리자	536	1.1	·	2.1	16.2	6.0	0.9	1.9	6.0	0.4	1.3
	실무직원	2,240	0.5	0.0	1.3	10.7	8.8	0.8	1.5	6.0	0.8	1.2
직종	사회복지직	3,128	0.7	0.0	1.4	14.8	7.1	1.0	1.6	5.3	0.5	1.3
	관리직	740	0.1	·	1.1	12.0	8.9	0.1	1.2	4.9	0.4	1.2
	기능직	352	·	·	1.1	12.2	8.5	·	0.9	3.7	1.4	0.9
	보건의료직	182	·	·	·	19.2	10.4	0.5	0.5	2.2	·	·
고용형태	정규직	3,908	0.5	0.0	1.2	14.8	7.8	0.8	1.5	4.8	0.5	1.2
	무기계약직	291	0.3	·	1.4	11.0	5.8	·	0.7	5.8	0.7	2.1
	비정규 기간제	182	·	·	2.7	8.2	9.3	1.1	1.6	7.1	1.6	1.1
	비정규 기타	21	·	·	·	9.5	·	·	·	9.5	4.8	·
근무연수	1년 미만	91	2.2	·	4.4	5.5	12.1	2.2	2.2	8.8	2.2	4.4
	1년~3년 미만	1,273	0.5	·	1.5	10.2	8.4	0.7	1.3	6.7	0.8	1.3
	3년~5년 미만	878	0.9	0.1	1.5	14.0	8.1	1.1	0.9	4.9	0.3	0.9
	5~10년 미만	1,088	0.5	·	1.0	14.8	8.0	0.8	1.9	4.5	0.4	1.2
	10~20년 미만	897	·	·	1.0	19.0	5.8	0.2	1.4	3.2	0.6	1.1
	20년 이상	175	·	·	·	22.9	5.7	·	0.6	2.9	0.6	0.6

7. 일 가정 양립

□ (전체) 일 가정 양립 제도 중 임신 및 출산 1년 미만의 여성의 시간외근무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정 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육아휴직제도 등 전반적인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정규직 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비정규직 기타 등에서 차별적으로 낮게 적용됨

□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 여성 응답자 3,283명 중 78.8%가 시설에서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무를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응답.

○ (시사점) 21.2%는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침 준수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5-169〉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무를 시설규정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현황(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예	아니오	남성 종사자인 경우 해당없음
전체		4,402	57.9	15.5	26.6
성별	여자	3,233	78.8	21.2	
	남자	1,169			100.0
연령대	20대 이하	500	59.0	16.6	24.4
	30대	1,182	52.5	12.2	35.3
	40대	1,498	57.4	13.4	29.2
	50대	1,147	63.9	20.7	15.3
	60대 이상	75	53.3	24.0	22.7
직위	상급관리자	495	56.4	11.7	31.9
	중간관리자	1,131	56.3	11.7	32.0
	초급관리자	536	57.6	13.6	28.7
	실무직원	2,240	59.1	18.8	22.1
직종	사회복지직	3,128	57.5	16.7	25.8
	관리직	740	52.2	10.4	37.4
	기능직	352	65.1	18.8	16.2
	보건의료직	182	73.6	11.0	15.4
고용형태	정규직	3,908	57.6	14.3	28.1
	무기계약직	291	58.4	25.8	15.8
	비정규 기간제	182	62.6	23.6	13.7
	비정규 기타	21	66.7	28.6	4.8
근무연수	1년 미만	91	59.3	17.6	23.1
	1년~3년 미만	1,273	58.8	18.5	22.8
	3년~5년 미만	878	58.5	17.7	23.8
	5년~10년 미만	1,088	56.3	14.6	29.0
	10년~20년 미만	897	57.3	10.7	32.0
	20년 이상	175	60.6	13.1	26.3

□ (임신 여성의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 미시행 이유) 684명의 응답자 중 37.6%가 잘 모르거나 35.1%는 임신 사례 없음, 그리고 10.5%는 규정이 없다고 응답함

○ (시사점) 잘 모른다는 의견에는 비정규직(시간제/임시직)이 83.3%로 가장 많았고, 임신 사례가 없었다는 35.1%는 규정 또는 제한과 무관한 응답으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표 5-170〉 임신 여성의 시간외근무를 시설 규정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은 이유(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잘 모름	종사자 임신사례 없음	관련 규정 없음	제한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무	시간외근무 없음	기타
전체		684	37.6	35.1	10.5	5.7	4.2	6.9
성별	여자	684	37.6	35.1	10.5	5.7	4.2	6.9
연령대	20대 이하	83	62.7	8.4	7.2	13.3	3.6	4.8
	30대	144	53.5	18.8	12.5	6.3	2.8	6.3
	40대	201	30.3	36.3	13.9	6.5	5.0	8.0
	50대	238	26.5	50.4	8.0	2.5	5.0	7.6
	60대 이상	18	22.2	72.2	5.6	.	.	.
직위	상급관리자	58	10.3	48.3	12.1	5.2	10.3	13.8
	중간관리자	132	32.6	36.4	12.1	4.5	0.8	13.6
	초급관리자	73	35.6	37.0	6.8	8.2	4.1	8.2
	실무직원	421	43.2	32.5	10.5	5.7	4.5	3.6
직종	사회복지직	521	38.6	35.7	10.0	5.6	3.3	6.9
	관리직	77	26.0	39.0	16.9	5.2	9.1	3.9
	기능직	66	45.5	25.8	7.6	6.1	7.6	7.6
	보건의료직	20	30.0	35.0	10.0	10.0	.	15.0
고용형태	정규직	560	37.0	34.6	10.5	6.1	4.5	7.3
	무기계약직	75	29.3	44.0	13.3	4.0	2.7	6.7
	비정규 기간제	43	53.5	27.9	7.0	4.7	4.7	2.3
	비정규 기타	6	83.3	16.7	.	.	.	.
근무연수	1년 미만	16	43.8	18.8	6.3	18.8	6.3	6.3
	1년~3년 미만	235	51.5	30.2	5.1	6.0	3.8	3.4
	3년~5년 미만	155	32.9	35.5	15.5	5.2	5.8	5.2
	5년~10년 미만	159	32.1	42.8	11.9	3.8	3.1	6.3
	10년~20년 미만	96	21.9	37.5	14.6	7.3	3.1	15.6
	20년 이상	23	26.1	30.4	8.7	4.3	8.7	21.7

□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여성 56.3%가 현 직장에서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응답함

○ (시사점)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인지율에서 사회복지직(55.7%)이나 관리직(51.1%)보다 기능직(67.3%)이나 보건의료직(6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용 형태에서도 비정규직(기간제)에서 63.7%로 높게 나타남.

〈표 5-171〉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예	아니오	남성 종사자인 경우 해당없음
전체		4,402	56.3	17.2	26.6
성별	여자	3,233	76.6	23.4	
	남자	1,169			100.0
연령대	20대 이하	500	57.4	18.2	24.4
	30대	1,182	50.3	14.5	35.3
	40대	1,498	55.4	15.4	29.2
	50대	1,147	63.6	21.1	15.3
	60대 이상	75	50.7	26.7	22.7
직위	상급관리자	495	54.1	13.9	31.9
	중간관리자	1,131	54.5	13.5	32.0
	초급관리자	536	54.5	16.8	28.7
	실무직원	2,240	58.1	19.8	22.1
직종	사회복지직	3,128	55.7	18.5	25.8
	관리직	740	51.1	11.5	37.4
	기능직	352	67.3	16.5	16.2
	보건의료직	182	66.5	18.1	15.4
고용형태	정규직	3,908	55.9	16.1	28.1
	무기계약직	291	57.4	26.8	15.8
	비정규 기간제	182	63.7	22.5	13.7
	비정규 기타	21	57.1	38.1	4.8
근무연수	1년 미만	91	58.2	18.7	23.1
	1년~3년 미만	1,273	58.1	19.1	22.8
	3년~5년 미만	878	57.9	18.3	23.8
	5년~10년 미만	1,088	53.5	17.5	29.0
	10년~20년 미만	897	54.5	13.5	32.0
	20년 이상	175	60.6	13.1	26.3

□ (임신 여성의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 미수행 이유) 755명의 응답자 중 잘 모름이 40.8%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임신 사례 없음 31.7%, 그리고 관련 규정 없음(8.2%)의 순이었음.

○ (시사점) 잘 모름은 연령이 낮을수록, 하급 직원일수록, 모든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임시직)과 근속기간이 낮을수록 높았음

〈표 5-172〉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무 금지 또는 제한 미수행 이유(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잘 모름	종사자 임신사례 없음	관련 규정 없음	제한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무	업무 과다 및 인력 부족	기타
전체		755	40.8	31.7	8.2	8.9	3.0	7.4
성별	여자	755	40.8	31.7	8.2	8.9	3.0	7.4
연령대	20대 이하	91	63.7	7.7	7.7	14.3	1.1	5.5
	30대	171	51.5	15.2	8.2	10.5	4.7	9.9
	40대	231	34.6	31.6	11.3	10.4	4.3	7.8
	50대	242	31.8	49.6	5.8	5.0	1.7	6.2
	60대 이상	20	25.0	65.0	5.0	·	·	5.0
직위	상급관리자	69	23.2	40.6	13.0	10.1	5.8	7.2
	중간관리자	153	39.9	31.4	7.2	7.2	3.9	10.5
	초급관리자	90	37.8	30.0	6.7	12.2	5.6	7.8
	실무직원	443	44.5	30.7	8.1	8.6	1.8	6.3
직종	사회복지직	579	41.6	32.1	7.9	7.6	3.5	7.3
	관리직	85	30.6	34.1	11.8	11.8	2.4	9.4
	기능직	58	48.3	29.3	6.9	12.1	·	3.4
	보건의료직	33	39.4	21.2	6.1	18.2	3.0	12.1
고용형태	정규직	628	40.0	30.7	8.3	10.2	3.3	7.5
	무기계약직	78	29.5	42.3	12.8	2.6	2.6	10.3
	비정규 기간제	41	65.9	29.3	·	2.4	·	2.4
	비정규 기타	8	87.5	12.5	·	·	·	·
근무연수	1년 미만	17	52.9	17.6	5.9	11.8	·	11.8
	1년~3년 미만	243	53.1	29.2	3.3	7.0	1.2	6.2
	3년~5년 미만	161	35.4	34.2	13.7	8.7	1.9	6.2
	5년~10년 미만	190	34.2	35.3	10.0	9.5	3.2	7.9
	10~20년 미만	121	33.9	29.8	9.1	12.4	7.4	7.4
	20년 이상	23	30.4	30.4	4.3	4.3	8.7	21.7

□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실시) 총 5개의 일·가정양립제도 중 육아휴직 제도의 실시율이 8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일자녀 육아휴직(5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6.7%) , 가족돌봄휴가·휴직(56.5%)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리고 미시행률도 14.9%로 높았음

○ (고용 형태) 정규직(13.6%) 대비 비정규직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모두 미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용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173〉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제도 실시 현황(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육아휴직(급여) 제도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총 2년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 제도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기타	모두 실시하지 않음
전체		4,402	80.6	56.8	56.7	48.9	56.5	0.7	14.9
성별	여자	3,233	78.1	53.6	54.5	47.3	54.0	0.7	16.9
	남자	1,169	87.4	65.5	62.7	53.4	63.3	0.7	9.3
연령대	20대 이하	500	86.2	62.8	65.6	57.2	62.6	0.6	10.4
	30대	1,182	87.2	59.1	62.7	51.2	62.9	0.6	9.4
	40대	1,498	80.6	57.5	54.3	45.3	56.9	0.9	15.6
	50대	1,147	73.0	52.1	51.3	48.1	48.3	0.6	20.1
	60대 이상	75	52.0	37.3	34.7	41.3	29.3	·	36.0
직위	상급관리자	495	80.6	57.2	55.2	48.7	57.4	0.6	14.3
	중간관리자	1,131	84.1	57.7	59.1	49.0	59.2	1.2	11.9
	초급관리자	536	84.5	56.5	61.4	50.6	57.8	0.4	11.9
	실무직원	2,240	77.8	56.3	54.7	48.5	54.5	0.5	17.1
직종	사회복지직	3,128	78.3	54.0	54.9	47.5	54.4	0.6	16.9
	관리직	740	84.6	61.2	59.1	50.0	60.5	1.2	11.5
	기능직	352	86.4	66.8	63.9	56.3	63.4	0.6	9.1
	보건의료직	182	92.3	67.0	64.8	53.3	61.5	·	4.9
고용형태	정규직	3,908	81.9	57.7	57.2	49.0	57.0	0.6	13.6
	무기계약직	291	73.2	48.5	53.6	47.1	53.6	1.7	22.3
	비정규 기간제	182	67.6	51.6	53.3	48.4	50.5	·	27.5
	비정규 기타	21	52.4	38.1	42.9	57.1	42.9	·	38.1
종사자규모	5인 이하	1,710	69.0	45.4	45.4	44.1	45.1	0.8	24.0
	6~10인 이하	818	76.4	58.7	56.0	48.8	54.9	0.5	17.8
	11~20인 이하	642	88.8	61.7	61.5	53.7	60.7	0.3	8.4
	21~30인 이하	457	91.7	62.8	63.9	49.2	63.5	0.4	5.3
	31~40인 이하	267	95.1	69.7	73.0	56.6	73.4	1.1	4.5
	41~50인 이하	141	97.2	70.2	69.5	54.6	70.2	·	2.8
	51인 이상	367	98.4	74.9	76.8	54.8	79.0	1.4	.8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률)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41.9%가 육아휴직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27.1%), 유연근무제도(26.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24.1%), 동일자녀 육아휴직(22.6%)의 순이었음

○ (시사점) 모든 일·가정양립 제도 사용률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타 연령대보다는 30-40대에서 높은 반면에,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임시직)과 근속연수가 낮을수록 사용률이 낮게 나타남

〈표 5-174〉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육아휴직(급여)제도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총 2년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 휴직제도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		4,402	41.9	38.6	19.4	22.6	34.2	43.2	24.1	32.6	43.3	26.4	22.4	51.1	27.1	29.3	43.5
성별	여자	3,233	40.3	37.7	21.9	20.6	33.0	46.4	22.5	32.0	45.5	25.1	22.2	52.7	25.1	28.9	46.0
	남자	1,169	46.4	41.1	12.6	28.1	37.5	34.5	28.5	34.2	37.3	30.2	23.2	46.6	32.8	30.5	36.7
연령대	20대 이하	500	35.0	51.2	13.8	21.8	41.0	37.2	24.0	41.6	34.4	25.4	31.8	42.8	23.2	39.4	37.4
	30대	1,182	45.5	41.7	12.8	21.2	37.8	40.9	25.6	37.1	37.3	26.6	24.5	48.8	29.0	33.9	37.1
	40대	1,498	43.6	37.0	19.4	23.2	34.3	42.5	23.2	31.1	45.7	25.2	20.1	54.7	29.8	27.0	43.1
	50대	1,147	39.8	33.2	27.0	23.8	28.3	47.9	24.1	27.2	48.7	28.0	20.1	51.9	24.1	24.1	51.7
	60대 이상	75	32.0	20.0	48.0	17.3	20.0	62.7	18.7	16.0	65.3	32.0	9.3	58.7	14.7	14.7	70.7
직위	상급관리자	495	47.5	33.1	19.4	22.6	34.5	42.8	25.3	29.9	44.8	29.1	19.6	51.3	30.9	26.5	42.6
	중간관리자	1,131	47.7	36.3	15.9	24.3	33.4	42.3	26.6	32.4	40.9	27.9	21.0	51.0	30.6	28.6	40.8
	초급관리자	536	41.4	43.1	15.5	19.2	37.3	43.5	23.7	37.7	38.6	24.4	26.1	49.4	24.3	33.6	42.2

구분		인원(명)	육아휴직(급여)제도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총 2년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 휴직제도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실무직원	2,240	37.9	39.9	22.2	22.5	33.8	43.8	22.6	32.1	45.3	25.6	22.9	51.5	25.2	29.3	45.5
직종	사회복지직	3,128	40.8	37.5	21.7	21.1	32.9	46.0	23.0	31.9	45.1	25.7	21.8	52.5	25.8	28.6	45.6
	관리직	740	43.2	41.4	15.4	23.2	38.0	38.8	24.9	34.2	40.9	26.6	23.4	50.0	29.7	30.8	39.5
	기능직	352	46.0	40.3	13.6	29.8	36.9	33.2	29.0	34.9	36.1	30.1	26.1	43.8	32.4	31.0	36.6
	보건의료직	182	48.9	43.4	7.7	31.3	35.7	33.0	30.8	34.1	35.2	30.8	22.5	46.7	29.1	32.4	38.5
고용 형태	정규직	3,908	43.3	38.5	18.1	23.1	34.6	42.3	24.4	32.8	42.8	26.6	22.4	51.0	27.7	29.3	43.0
	무기계약직	291	36.1	37.1	26.8	19.6	28.9	51.5	23.0	30.6	46.4	27.1	19.9	52.9	25.4	28.2	46.4
	비정규 기간제	182	23.1	44.5	32.4	15.4	36.3	48.4	19.2	34.1	46.7	20.3	28.0	51.6	17.6	33.0	49.5
	비정규 기타	21	28.6	23.8	47.6	19.0	19.0	61.9	23.8	19.0	57.1	33.3	23.8	42.9	23.8	19.0	57.1
근무 연수	1년 미만	91	22.0	45.1	33.0	14.3	36.3	49.5	16.5	37.4	46.2	19.8	29.7	50.5	15.4	39.6	45.1
	1년~3년 미만	1,273	32.3	44.8	22.9	19.4	36.9	43.7	21.1	34.7	44.2	25.6	24.2	50.2	23.6	30.3	46.0
	3년~5년 미만	878	38.6	40.7	20.7	21.2	35.1	43.7	22.1	33.4	44.5	27.1	23.1	49.8	24.0	31.2	44.8
	5년~10년 미만	1,088	46.7	35.3	18.0	25.1	32.5	42.4	27.0	31.7	41.3	27.4	22.8	49.8	29.5	28.6	41.9
	10년~20년 미만	897	51.6	32.4	15.9	24.1	31.9	44.0	26.5	29.8	43.7	25.8	19.6	54.6	32.6	25.9	41.6
	20년 이상	175	60.0	32.6	7.4	33.1	31.4	35.4	29.1	31.4	39.4	30.3	14.9	54.9	31.4	29.7	38.9

8. 교대제 근무

□ (전체) 일상근무제 형식이 64.5%를 차지하는 가운데 생활시설에서 운영 중인 교대근무제 도입 비중은 전체 26.4%로 낮으며, 이중 월 법정 근무시간내 근무가 가능한 4조3교대 근무도입 비중은 총 응답자 564명 중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근무 형태)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9시에서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일상 근무제 비중이 6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상+당직 근무제(22.7%), 교대근무제(12.8%)의 순이었음

○ (시사점) 생활시설에서의 일상+당직근무제의 비중이 36.9%로 높아 교대근무제 도입 비중(26.4%)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75〉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근무 형태(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일상 근무제 (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	일상 근무제 (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당직근무제	교대 근무제
전체		4,402	64.5	22.7	1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3,546	66.2	20.1	13.7
	여성가족부	856	57.1	33.8	9.1
시설유형	생활시설	1,868	36.6	36.9	26.4
	이용시설	2,534	85.0	12.2	2.8
재원출처	국고지원	1,416	62.1	17.4	20.5
	지방이양	2,130	69.0	21.8	9.2
직위	상급관리자	495	68.7	20.2	11.1
	중간관리자	1,131	64.3	24.5	11.2
	초급관리자	536	67.7	22.2	10.1
	실무직원	2,240	62.9	22.5	14.6
직종	사회복지직	3,128	62.9	22.5	14.5
	관리직	740	69.6	23.1	7.3
	기능직	352	67.9	19.9	12.2
	보건의료직	182	63.2	30.2	6.6
고용형태	정규직	3,908	63.6	23.7	12.7
	무기계약직	291	70.4	14.4	15.1
	비정규 기간제	182	72.5	15.4	12.1
	비정규 기타	21	81.0	14.3	4.8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65.1	21.6	13.3
	6~10인 이하	818	60.4	23.2	16.4
	11~20인 이하	642	68.7	23.2	8.1
	21~30인 이하	457	69.6	19.0	11.4
	31~40인 이하	267	59.2	27.7	13.1
	41~50인 이하	141	54.6	24.1	21.3
	51인 이상	367	64.3	26.4	9.3

□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 일상+당직 근무제 시설 종사자 1,000명 중 84.2%는 직원이 순번제로 당직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별도 당직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는 6.5%에 불과

○ (시사점) 직원의 순번제 당직은 「근로기준법」 상 결국 야간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표 5-176〉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자 현황(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별도 당직 인력을 고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순번제로 당직을 한다	당직 인력 고용 및 직원 순번제 혼용	일부 직원들만 당직실시	기타
전체		1,000	6.5	84.2	4.3	2.4	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711	4.5	87.9	2.5	2.8	2.3
	여성가족부	289	11.4	75.1	8.7	1.4	3.5
시설유형	생활시설	690	7.7	81.7	5.4	2.9	2.3
	이용시설	310	3.9	89.7	1.9	1.3	3.2
재원출처	국고지원	246	2.0	90.2	.4	3.7	3.7
	지방이양	465	5.8	86.7	3.7	2.4	1.5
직위	상급관리자	100	8.0	84.0	3.0	3.0	2.0
	중간관리자	277	4.3	87.0	4.3	2.5	1.8
	초급관리자	119	9.2	80.7	5.9	2.5	1.7
	실무직원	504	6.7	83.5	4.2	2.2	3.4
직종	사회복지직	704	7.0	84.1	4.7	1.8	2.4
	관리직	171	6.4	84.2	2.3	3.5	3.5
	기능직	70	5.7	82.9	5.7	2.9	2.9
	보건의료직	55	1.8	87.3	3.6	5.5	1.8
고용형태	정규직	927	6.7	84.1	4.2	2.5	2.5
	무기계약직	42	4.8	88.1	4.8	.	2.4
	비정규 기간제	28	3.6	82.1	7.1	3.6	3.6
	비정규 기타	3	.	66.7	.	.	33.3
종사자규모	5인 이하	369	7.9	77.5	7.0	3.5	4.1
	6~10인 이하	190	7.9	84.2	4.2	1.6	2.1
	11~20인 이하	149	7.4	88.6	.7	2.7	.7
	21~30인 이하	87	4.6	86.2	4.6	.	4.6
	31~40인 이하	74	.	97.3	1.4	1.4	.
	41~50인 이하	34	.	85.3	5.9	5.9	2.9
	51인 이상	97	6.2	90.7	1.0	1.0	1.0

□ (당직 보상유형) 935명의 응답자 중 45.3%가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대체휴일 부여(20.1%), 당직비(19%), 시간외근무 수당 또는 대체휴일 중 선택(6.6%), 야간 및 휴일 당직 보상(6.3%)의 순으로 나타남.

○ (시사점) 야간당직은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상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상은 시간외근무 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은 휴일 근로 수당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대체휴일 또한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요구됨.

〈표 5-177〉 야간 및 주말 당직 보상방법(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체휴일로 부여한다	당직비(당직 수당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야간 및 휴일 당직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시간외근무 수당 및 대체휴일 선택	기타
전체		935	45.8	20.1	19.0	6.3	6.6	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679	48.0	17.8	20.3	6.8	5.0	2.1
	여성가족부	256	39.8	26.2	15.6	5.1	10.9	2.3
시설유형	생활시설	637	49.9	21.8	13.8	5.8	7.1	1.6
	이용시설	298	36.9	16.4	30.2	7.4	5.7	3.4
재원출처	국고지원	241	38.2	13.3	31.1	11.6	2.5	3.3
	지방이양	438	53.4	20.3	14.4	4.1	6.4	1.4
직위	상급관리자	92	48.9	21.7	10.9	4.3	10.9	3.3
	중간관리자	265	51.3	20.0	18.1	4.2	4.9	1.5
	초급관리자	108	35.2	22.2	31.5	3.7	5.6	1.9
	실무직원	470	44.5	19.4	18.3	8.5	7.0	2.3
직종	사회복지직	655	44.0	18.5	21.4	7.3	6.9	2.0
	관리직	160	50.6	23.1	14.4	4.4	6.9	.6
	기능직	66	50.0	22.7	10.6	6.1	4.5	6.1
	보건의료직	54	48.1	27.8	14.8	.	5.6	3.7
고용형태	정규직	865	46.8	19.5	18.7	6.4	6.6	2.0
	무기계약직	40	35.0	35.0	15.0	7.5	5.0	2.5
	비정규 기간제	27	29.6	18.5	33.3	3.7	11.1	3.7
	비정규 기타	3	33.3	.	33.3	.	.	33.3
종사자규모	5인 이하	340	39.1	22.9	17.6	10.0	7.4	2.9
	6~10인 이하	175	45.1	19.4	20.6	5.7	6.3	2.9
	11~20인 이하	138	51.4	14.5	18.8	8.0	5.8	1.4
	21~30인 이하	83	45.8	22.9	25.3	.	6.0	.
	31~40인 이하	74	58.1	21.6	9.5	1.4	9.5	.
	41~50인 이하	34	55.9	17.6	17.6	.	5.9	2.9
	51인 이상	91	49.5	16.5	24.2	3.3	4.4	2.2

□ (교대 근무 형태) 564명의 응답자 중 3조 3교대제가 2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조 2교대제(19.7%), 3조 2교대제(18.1%), 4조 3교대제(11.3%), 2조 격일제(7.4%)의 순이었음

○ (시사점) 교대제는 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근로 형태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4조 3교대제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3조 3교대제나 3조 2교대제도 휴게시간의 조정을 통해 법정 시간 내 교대제 운영은 가능함

〈표 5-178〉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교대근무제 형태(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정해진 패턴 없음	기타
전체		564	7.4	19.7	18.1	24.1	11.3	3.0	16.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486	7.4	19.5	20.6	22.0	12.1	2.7	15.6
	여성가족부	78	7.7	20.5	2.6	37.2	6.4	5.1	20.5
시설 유형	생활시설	494	8.3	19.6	20.4	23.5	12.8	3.0	12.3
	이용시설	70	1.4	20.0	1.4	28.6	1.4	2.9	44.3
재원 출처	국고지원	290	7.9	17.9	17.9	22.8	12.1	2.4	19.0
	지방이양	196	6.6	21.9	24.5	20.9	12.2	3.1	10.7
직위	상급관리자	55	9.1	23.6	27.3	18.2	10.9	5.5	5.5
	중간관리자	127	3.9	15.7	22.0	31.5	11.8	2.4	12.6
	초급관리자	54	9.3	20.4	9.3	27.8	9.3	1.9	22.2
	실무직원	328	8.2	20.4	16.5	21.6	11.6	3.0	18.6
직종	사회복지직	455	7.9	18.0	16.9	24.4	11.2	3.5	18.0
	관리직	54	5.6	16.7	35.2	18.5	11.1	1.9	11.1
	기능직	43	7.0	39.5	11.6	18.6	14.0	·	9.3
	보건의료직	12	·	25.0	8.3	58.3	8.3	·	·
고용 형태	정규직	497	8.0	20.5	19.3	23.9	10.9	3.0	14.3
	무기계약직	44	2.3	13.6	11.4	27.3	13.6	4.5	27.3
	비정규 기간제	22	4.5	13.6	4.5	22.7	18.2	·	36.4
	비정규 기타	1	·	·	·	·	·	·	100.0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227	11.5	26.0	7.5	20.3	5.7	4.0	25.1
	6~10인 이하	134	9.7	20.1	22.4	21.6	10.4	1.5	14.2
	11~20인 이하	52	1.9	7.7	21.2	32.7	19.2	9.6	7.7
	21~30인 이하	52	·	17.3	36.5	19.2	25.0	·	1.9
	31~40인 이하	35	·	8.6	34.3	28.6	8.6	2.9	17.1
	41~50인 이하	30	3.3	10.0	23.3	36.7	16.7	·	10.0
	51인 이상	34	2.9	17.6	17.6	38.2	17.6	·	5.9

9. 종사자 역량개발

□ (전체) 2022년 기준, 법정의무 교육 및 직무교육, 자격관련교육 등 종사자들의 교육 경험율은 총 응답자 중 96.3%로 매우 높지만 시설내 종사자 역량개발 및 직무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27.9%로 나타났고, 교육 이수 실적이 인사고과에 전혀 방영되디 않는다는 견이 39.2%였음

□ (자기 계발 및 직무 관련 교육 규정 또는 지침)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72.1%가 현 재직 시설에는 자기 계발 및 직무 관련 교육 규정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시사점) 자기 계발 및 직무 관련 교육 규정이 없다는 응답이 27.9%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종사자 규모 20인이하 시설(31.2%), 11~20인시설(31.2%) 등 규모가 적은 시설에서 높음

〈표 5-179〉 직원의 자기 계발 및 직무 관련 교육을 위한 규정 또는 지침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예	아니오
전체		4,402	72.1	27.9
성별	여자	3,233	71.1	28.9
	남자	1,169	74.9	25.1
연령대	20대 이하	500	69.4	30.6
	30대	1,182	69.7	30.3
	40대	1,498	72.3	27.7
	50대	1,147	75.3	24.7
	60대 이상	75	76.0	24.0
직위	상급관리자	495	76.4	23.6
	중간관리자	1,131	73.3	26.7
	초급관리자	536	67.7	32.3
	실무직원	2,240	71.7	28.3
직종	사회복지직	3,128	71.5	28.5
	관리직	740	73.0	27.0
	기능직	352	73.3	26.7
	보건의료직	182	78.0	22.0
고용형태	정규직	3,908	72.2	27.8
	무기계약직	291	69.4	30.6
	비정규 기간제	182	74.2	25.8
	비정규 기타	21	71.4	28.6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69.9	30.1
	6~10인 이하	818	72.1	27.9
	11~20인 이하	642	68.8	31.2
	21~30인 이하	457	73.3	26.7
	31~40인 이하	267	77.9	22.1
	41~50인 이하	141	83.0	17.0
	51인 이상	367	78.5	21.5

□ (2022년 기준 교육 경험률)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96.3%가 교육(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자격 관련 보수교육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시사점)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임시직)의 경우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대비 상대적으로 교육 경험률이 낮게 나타남.

〈표 5-180〉 2022년도 교육(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자격 관련 보수교육 등) 경험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예	아니오
전체		4,402	96.3	3.7
성별	여자	3,233	96.4	3.6
	남자	1,169	95.8	4.2
연령대	20대 이하	500	90.6	9.4
	30대	1,182	96.4	3.6
	40대	1,498	97.1	2.9
	50대	1,147	97.5	2.5
	60대 이상	75	96.0	4.0
직위	상급관리자	495	99.2	0.8
	중간관리자	1,131	99.1	0.9
	초급관리자	536	97.4	2.6
	실무직원	2,240	93.9	6.1
직종	사회복지직	3,128	96.6	3.4
	관리직	740	96.5	3.5
	기능직	352	91.2	8.8
	보건의료직	182	98.9	1.1
고용형태	정규직	3,908	97.1	2.9
	무기계약직	291	96.9	3.1
	비정규 기간제	182	79.1	20.9
	비정규 기타	21	81.0	19.0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95.7	4.3
	6~10인 이하	818	94.5	5.5
	11~20인 이하	642	98.1	1.9
	21~30인 이하	457	96.9	3.1
	31~40인 이하	267	97.0	3.0
	41~50인 이하	141	98.6	1.4
	51인 이상	367	97.5	2.5

□ (법정 교육) 총 4,238명의 교육경험자 중 99.7%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교육 횟수는 평균 6.73회였으며, 교육비 부담 방법으로는 기관 부담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복무 처리는 주로 출장 사용(44.1%)이었음

○ (시사점) 법정 교육은 사용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교육비 부담에서 본인 부담(2.1%), 본인+기관 부담(4.5%)으로 나타났고, 복무 처리 또한 개인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견이 미비하게 나타남

〈표 5-181〉 법정의무교육 관련 현황(웹조사 기반)

(단위: 명,회, %)

구분		인원(명)	교육 여부		인원(명)	교육 횟수				평균	인원(명)	교육비 부담 방법					인원(명)	복무 처리					
			예	아니오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본인 부담	기관 부담	본인+기관 부담	무료 교육	기타		출장 사용	공가 사용	연가 사용	기타	근무 시간에 교육	온라인 교육
전체		4,238	99.7	0.3	4,226	22.3	22.4	40.1	15.2	6.73	4,226	2.1	52.8	4.5	39.2	1.3	4,226	44.1	23.3	2.4	10.1	11.9	8.2
성별	여자	3,118	99.7	0.3	3,108	20.4	21.7	41.9	16.1	6.97	3,108	1.9	50.1	4.6	42.0	1.4	3,108	42.7	21.8	2.8	11.0	13.4	8.3
	남자	1,120	99.8	0.2	1,118	27.6	24.5	35.3	12.5	6.05	1,118	2.8	60.5	4.1	31.5	1.2	1,118	48.1	27.5	1.3	7.5	7.6	8.0
연령대	20대 이하	453	100.0		453	23.6	24.3	37.7	14.3	6.47	453	1.5	51.2	3.3	43.3	0.7	453	41.5	22.1	1.8	11.9	16.3	6.4
	30대	1,140	99.6	0.4	1,135	23.0	22.0	42.6	12.3	6.52	1,135	1.6	56.7	3.4	37.2	1.1	1,135	42.0	23.3	1.3	9.3	16.4	7.8
	40대	1,455	99.7	0.3	1,451	22.3	22.8	40.0	14.9	6.70	1,451	2.3	53.1	4.1	38.9	1.5	1,451	46.1	22.9	1.2	9.3	10.5	9.9
	50대	1,118	99.8	0.2	1,116	20.9	21.5	38.8	18.8	7.07	1,116	2.3	49.6	6.3	40.4	1.4	1,116	44.4	24.6	4.7	11.5	7.8	7.1
	60대 이상	72	98.6	1.4	71	23.9	22.5	39.4	14.1	6.82	71	7.0	46.5	8.5	33.8	4.2	71	49.3	22.5	11.3	4.2	2.8	9.9
직위	상급관리자	491	99.8	0.2	490	18.4	20.4	43.9	17.3	7.37	490	2.0	58.4	6.1	32.0	1.4	490	55.1	23.9	1.2	5.9	5.9	8.0
	중간관리자	1,121	99.7	0.3	1,118	20.5	19.8	42.6	17.2	7.04	1,118	2.1	57.2	5.0	34.3	1.3	1,118	45.1	26.0	1.3	8.1	10.8	8.6
	초급관리자	522	100.0		522	24.7	25.9	36.8	12.6	6.19	522	2.7	54.2	2.9	38.1	2.1	522	45.6	23.4	1.3	7.7	15.1	6.9

구분		인원(명)	교육 여부		인원(명)	교육 횟수				평균	인원(명)	교육비 부담 방법					인원(명)	복무 처리					
			예	아니오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본인 부담	기관 부담	본인+기관 부담	무료 교육	기타		출장 사용	공가 사용	연가 사용	기타	근무 시간에 교육	온라인 교육
	실무 직원	2,104	99.6	0.4	2,096	23.6	23.4	38.8	14.2	6.54	2,096	2.0	48.9	4.2	43.8	1.1	2,096	40.6	21.8	3.5	12.6	13.0	8.4
직종	사회복지직	3,023	99.8	0.2	3,016	20.9	23.1	41.1	14.9	6.80	3,016	2.4	51.6	4.4	40.2	1.3	3,016	44.8	23.2	2.6	9.9	12.1	7.4
	관리직	714	99.6	0.4	711	24.9	20.7	38.5	15.9	6.57	711	1.4	54.3	4.2	39.0	1.1	711	46.8	22.8	1.1	8.9	11.3	9.1
	기능직	321	99.4	0.6	319	32.3	20.7	32.3	14.7	6.12	319	0.9	59.2	3.1	34.5	2.2	319	37.3	21.9	4.1	15.4	10.0	11.3
	보건의료직	180	100.0		180	18.3	20.0	43.9	17.8	7.26	180	2.2	55.6	8.9	32.8	0.6	180	34.4	30.0	1.7	7.2	13.3	13.3
고용 형태	정규직	3,795	99.8	0.2	3,788	21.7	22.3	40.5	15.5	6.80	3,788	2.3	54.0	4.5	37.9	1.4	3,788	45.0	23.8	2.3	9.3	11.4	8.2
	무기계약직	282	100.0		282	25.5	21.3	41.1	12.1	6.42	282	0.7	44.3	5.7	48.6	0.7	282	37.6	21.3	3.2	13.5	16.3	8.2
	비정규 기간제	144	96.5	3.5	139	30.2	28.8	29.5	11.5	5.46	139	0.7	41.7	2.2	54.7	0.7	139	33.8	16.5	2.2	22.3	15.8	9.4
	비정규 기타	17	100.0		17	35.3	17.6	35.3	11.8	5.35	17	5.9	23.5	5.9	64.7		17	29.4	17.6	17.6	17.6	11.8	5.9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636	99.7	0.3	1,631	20.6	25.9	41.0	12.5	6.54	1,631	2.1	44.3	5.3	47.1	1.2	1,631	43.5	21.6	3.6	11.0	12.0	8.3
	6~10인 이하	773	99.7	0.3	771	23.5	20.2	40.5	15.8	6.81	771	3.0	53.3	4.0	38.7	1.0	771	42.5	26.7	2.9	8.7	10.9	8.3
	11~20인 이하	630	99.4	0.6	626	30.0	22.0	33.7	14.2	6.11	626	2.6	59.4	3.0	33.4	1.6	626	44.7	24.1	1.3	9.7	11.8	8.3
	21~30인 이하	443	99.8	0.2	442	20.1	21.7	42.1	16.1	6.97	442	1.8	55.2	4.3	37.1	1.6	442	45.5	22.4	.9	10.6	12.2	8.4
	31~40인 이하	259	100.0		259	18.9	17.8	42.5	20.8	7.46	259	0.8	65.3	5.0	27.8	1.2	259	40.9	24.3	.8	10.4	14.3	9.3
	41~50인 이하	139	100.0		139	20.9	18.0	43.2	18.0	7.08	139	1.4	62.6	4.3	30.2	1.4	139	50.4	25.9	1.4	7.9	7.2	7.2
	51인 이상	358	100.0		358	19.6	17.6	41.6	21.2	7.51	358	1.1	63.4	4.5	29.1	2.0	358	47.5	21.8	1.7	9.2	13.1	6.7

□ (직무교육) 응답자 중 95.6%가 직무교육을 22년도에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횟수는 평균 3.7회였으며, 교육비 부담 방법은 기관 부담이 62.2%로 가장 높았으며, 복무 처리는 주로 출장 사용(55.9%)으로 나타남.

○ (법정 교육 대비) 법정 교육(6.19회)과 달리 직무교육의 교육 횟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평균 3.7회로 적었으나, 기관의 비용 부담률은 62.2%로 법정 교육(52.8%)보다 높았음

〈표 5-182〉 직무교육 관련 현황(웹조사 기반)

(단위: 명, 회, %)

구분		인원(명)	교육 여부		인원(명)	교육 횟수				평균	인원(명)	교육비 부담 방법					인원(명)	복무 처리					
			예	아니오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본인 부담	기관 부담	본인+기관 부담	무료 교육	기타		출장 사용	공가 사용	연가 사용	기타	근무시간에 교육	온라인 교육
전체		4,238	95.6	4.4	4,050	31.2	20.9	19.0	28.9	3.70	4,050	3.0	62.2	4.2	29.2	1.3	4,050	55.9	23.3	1.7	7.4	7.1	4.5
성별	여자	3,118	95.8	4.2	2,988	30.7	19.9	19.4	30.0	3.76	2,988	3.0	59.0	4.3	32.1	1.5	2,988	54.6	22.2	2.1	8.4	8.1	4.8
	남자	1,120	94.8	5.2	1,062	32.8	23.5	17.9	25.8	3.50	1,062	2.8	71.3	4.1	20.9	0.8	1,062	59.8	26.4	0.8	4.8	4.3	4.0
연령대	20대 이하	453	94.0	6.0	426	35.2	19.2	17.6	27.9	3.61	426	2.6	61.5	1.6	31.9	2.3	426	51.2	22.1	1.4	9.6	12.4	3.3
	30대	1,140	95.1	4.9	1,084	32.1	20.1	20.4	27.4	3.49	1,084	2.3	66.9	3.7	26.3	0.8	1,084	58.8	21.5	0.6	6.0	8.4	4.7
	40대	1,455	96.1	3.9	1,398	31.4	22.5	19.3	26.8	3.58	1,398	3.1	63.1	4.1	28.2	1.5	1,398	58.9	22.7	1.3	6.4	6.4	4.4
	50대	1,118	96.2	3.8	1,075	28.5	20.7	17.7	33.2	4.04	1,075	3.4	56.7	6.0	32.7	1.3	1,075	51.2	25.9	3.6	9.6	4.7	5.0
	60대 이상	72	93.1	6.9	67	31.3	11.9	22.4	34.3	4.49	67	6.0	64.2	6.0	23.9		67	55.2	29.9		3.0	6.0	6.0
직위	상급관리자	491	97.4	2.6	478	24.1	21.5	19.0	35.4	4.01	478	2.9	68.8	4.4	22.8	1.0	478	67.8	20.1	0.2	4.2	4.2	3.6
	중간관리자	1,121	97.2	2.8	1,090	31.7	20.0	19.8	28.4	3.69	1,090	3.0	67.4	4.9	24.0	0.6	1,090	60.8	24.1	0.6	5.2	5.1	4.1
	초급관리자	522	94.6	5.4	494	31.8	20.2	18.8	29.1	3.53	494	3.2	66.6	4.3	23.5	2.4	494	60.9	21.9	1.4	4.5	7.9	3.4
	실무직원	2,104	94.5	5.5	1,988	32.5	21.3	18.7	27.5	3.66	1,988	2.9	56.7	3.9	35.0	1.5	1,988	49.1	23.9	2.8	10.2	8.7	5.3

구분		인원 (명)	교육 여부		인원 (명)	교육 횟수				평균	인원 (명)	교육비 부담 방법					인원 (명)	복무 처리					
			예	아니오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본인 부담	기관 부담	본인+기관 부담	무료 교육	기타		출장 사용	공가 사용	연가 사용	기타	근무시간에 교육	온라인 교육
직종	사회복지직	3,023	96.8	3.2	2,927	30.4	20.0	20.3	29.3	3.73	2,927	3.1	60.5	4.7	30.2	1.4	2,927	57.3	22.3	1.9	7.5	7.2	3.8
	관리직	714	92.4	7.6	660	30.5	24.1	17.3	28.2	3.57	660	2.3	67.3	3.2	26.5	0.8	660	60.8	22.6	0.9	4.5	5.5	5.8
	기능직	321	91.3	8.7	293	32.1	27.3	14.7	25.9	3.67	293	2.4	66.2	1.0	28.7	1.7	293	36.5	29.4	2.4	14.0	8.9	8.9
	보건의료직	180	94.4	5.6	170	45.9	12.9	11.8	29.4	3.64	170	4.1	65.9	6.5	22.4	1.2	170	47.1	32.4		5.9	8.8	5.9
고용 형태	정규직	3,795	95.6	4.4	3,627	31.2	21.2	18.6	29.0	3.69	3,627	2.9	64.1	4.4	27.4	1.3	3,627	57.0	23.4	1.6	6.9	6.6	4.4
	무기계약직	282	95.7	4.3	270	28.1	16.7	23.7	31.5	4.04	270	2.2	47.8	4.1	43.7	2.2	270	49.3	24.1	2.2	10.0	9.6	4.8
	비정규 기간제	144	94.4	5.6	136	39.0	18.4	20.6	22.1	3.28	136	5.9	47.1	1.5	44.9	0.7	136	42.6	19.9	2.9	13.2	14.0	7.4
	비정규 기타	17	100.0		17	29.4	29.4	17.6	23.5	3.00	17	5.9	23.5	5.9	64.7		17	35.3	17.6	11.8	23.5	11.8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636	95.4	4.6	1,560	31.4	21.7	19.2	27.6	3.60	1,560	3.3	52.9	4.7	37.6	1.4	1,560	54.0	22.6	2.9	8.4	7.2	4.9
	6~10인 이하	773	95.7	4.3	740	34.2	18.1	16.6	31.1	3.76	740	3.5	62.8	3.9	29.1	0.7	740	51.8	25.9	1.6	8.6	7.6	4.5
	11~20인 이하	630	96.3	3.7	607	32.9	18.5	20.9	27.7	3.65	607	2.8	68.4	4.1	22.9	1.8	607	60.0	22.7	0.3	5.3	6.9	4.8
	21~30인 이하	443	96.2	3.8	426	26.1	26.1	20.4	27.5	3.66	426	2.1	70.2	3.3	23.0	1.4	426	62.2	22.5	0.7	5.2	5.9	3.5
	31~40인 이하	259	93.4	6.6	242	24.8	16.5	24.0	34.7	4.19	242	2.9	69.4	4.5	21.5	1.7	242	55.0	24.4	0.8	7.4	7.0	5.4
	41~50인 이하	139	93.5	6.5	130	34.6	26.2	15.4	23.8	3.25	130	3.1	71.5	5.4	19.2	0.8	130	60.8	23.8	0.8	5.4	5.4	3.8
	51인 이상	358	96.4	3.6	345	30.4	21.7	16.2	31.6	3.92	345	2.0	73.9	3.5	19.1	1.4	345	57.4	21.4	1.4	7.8	8.4	3.5

□ (자격 관련 보수교육) 총 4,238명의 응답자 중 87.0%가 자격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 횟수는 평균 1.58회였으며, 교육비용에서는 기관 부담률이 58.6%로 가장 높았고, 복무 처리는 출장 사용이 48.9%로 가장 높았음

○ (이수율이 낮은 종사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69.4~76.5%)에서, 사회복지직(91.4%) 대비 기능직(72.1%)과 관리직(72.3%)에서 자격 관련 보수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비 분담) 본인 부담률이 15.9%로 법정 교육(2.1%), 직무교육(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83〉 자격 관련 보수교육 현황

(단위: 명, 회, %)

구분		인원(명)	교육 여부		인원(명)	교육 횟수		평균	인원(명)	교육비 부담 방법					인원(명)	복무 처리					
			예	아니오		1회	2회 이상			본인 부담	기관 부담	본인+기관 부담	무료 교육	기타		출장 사용	공가 사용	연가 사용	기타	근무시간에 교육	온라인 교육
전체		4,238	87.0	13.0	3,686	79.1	20.9	1.58	3,686	15.9	58.6	4.8	13.9	6.7	3,686	48.9	35.3	3.9	4.8	4.1	3.1
성별	여자	3,118	86.5	13.5	2,697	79.0	21.0	1.60	2,697	15.5	56.7	4.7	15.9	7.2	2,697	47.9	33.6	4.6	5.6	4.9	3.5
	남자	1,120	88.3	11.7	989	79.6	20.4	1.55	989	17.1	63.8	5.0	8.7	5.5	989	51.8	39.8	1.9	2.6	1.9	1.9
연령대	20대 이하	453	85.2	14.8	386	76.4	23.6	1.67	386	12.2	61.4	4.7	13.5	8.3	386	45.3	35.8	2.6	7.0	6.7	2.6
	30대	1,140	88.5	11.5	1,009	81.7	18.3	1.44	1,009	14.9	62.8	3.9	11.5	6.9	1,009	51.0	35.1	2.0	4.6	4.7	2.7
	40대	1,455	88.2	11.8	1,284	81.1	18.9	1.52	1,284	18.2	56.9	5.0	12.2	7.7	1,284	49.1	36.6	3.8	3.9	3.3	3.2
	50대	1,118	84.8	15.2	948	75.7	24.3	1.76	948	15.6	55.2	5.5	19.0	4.7	948	47.0	33.9	6.4	5.6	3.5	3.6
	60대 이상	72	81.9	18.1	59	66.1	33.9	1.85	59	13.6	61.0	6.8	15.3	3.4	59	61.0	30.5	3.4	1.7	1.7	1.7
직위	상급관리자	491	95.7	4.3	470	83.4	16.6	1.33	470	19.1	57.7	5.3	9.1	8.7	470	56.4	35.3	1.9	2.3	1.9	2.1
	중간관리자	1,121	93.0	7.0	1,043	82.8	17.2	1.53	1,043	17.7	59.2	5.6	8.9	8.6	1,043	52.3	36.1	3.1	3.2	2.6	2.7

구분		인원(명)	교육 여부		인원(명)	교육 횟수		평균	인원(명)	교육비 부담 방법					인원(명)	복무 처리					
			예	아니오		1회	2회 이상			본인 부담	기관 부담	본인+기관 부담	무료 교육	기타		출장 사용	공가 사용	연가 사용	기타	근무시간에 교육	온라인 교육
	초급관리자	522	87.4	12.6	456	78.7	21.3	1.59	456	15.6	61.4	3.5	12.5	7.0	456	50.9	36.6	2.0	4.2	4.2	2.2
	실무직원	2,104	81.6	18.4	1,717	75.8	24.2	1.68	1,717	14.0	57.8	4.5	18.7	5.0	1,717	44.3	34.4	5.4	6.6	5.5	3.8
직종	사회복지직	3,023	91.4	8.6	2,764	80.3	19.7	1.51	2,764	15.7	57.5	4.3	14.5	7.9	2,764	49.8	35.3	3.9	4.5	4.1	2.4
	관리직	714	72.1	27.9	515	79.2	20.8	1.69	515	14.8	59.2	5.8	15.0	5.2	515	56.5	32.8	2.3	3.5	2.7	2.1
	기능직	321	72.3	27.7	232	63.4	36.6	2.06	232	10.8	72.4	1.3	14.7	0.9	232	34.1	34.9	4.3	8.6	7.3	10.8
	보건의료직	180	97.2	2.8	175	81.1	18.9	1.76	175	29.1	55.4	13.7	1.1	0.6	175	32.0	42.3	6.9	8.6	3.4	6.9
고용형태	정규직	3,795	88.2	11.8	3,346	79.5	20.5	1.56	3,346	16.1	59.3	5.0	12.6	7.0	3,346	49.4	36.0	3.8	4.3	3.6	2.9
	무기계약직	282	80.5	19.5	227	76.2	23.8	1.75	227	16.3	48.0	4.0	26.9	4.8	227	46.3	29.5	4.4	8.4	8.4	3.1
	비정규 기간제	144	69.4	30.6	100	75.0	25.0	1.81	100	8.0	62.0	1.0	25.0	4.0	100	43.0	24.0	3.0	14.0	8.0	8.0
	비정규 기타	17	76.5	23.5	13	61.5	38.5	1.69	13	23.1	30.8	7.7	38.5		13	23.1	38.5	23.1		15.4	
근무연수	1년 미만	52	69.2	30.8	36	72.2	27.8	2.03	36	11.1	44.4	8.3	27.8	8.3	36	33.3	27.8	2.8	16.7	8.3	11.1
	1~3년 미만	1,178	81.6	18.4	961	76.9	23.1	1.62	961	14.7	56.2	5.3	19.1	4.7	961	44.0	34.1	4.5	7.0	6.1	4.3
	3~5년 미만	870	84.3	15.7	733	78.0	22.0	1.61	733	14.3	60.3	3.5	16.8	5.0	733	46.4	38.7	3.4	4.1	5.2	2.2
	5~10년 미만	1,076	90.8	9.2	977	79.1	20.9	1.57	977	14.5	61.3	4.0	11.7	8.5	977	49.3	35.5	4.9	4.5	2.8	3.0
	10~20년 미만	890	91.8	8.2	817	82.5	17.5	1.48	817	20.0	56.7	5.8	9.1	8.6	817	56.3	33.7	2.3	2.8	2.3	2.6
	20년 이상	172	94.2	5.8	162	82.1	17.9	1.75	162	19.8	61.7	6.8	5.6	6.2	162	53.1	35.2	3.7	4.3	2.5	1.2

□ (교육의 인사고과 반영) 총 4,238명 응답자 중 인사고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9.2%로 가장 높은 반면 일부 반영된다는 9.7%, 매우 반영된다는 3.1%로 매우 낮았음

○ (직종) 비정규직(시간제, 임시직)이 매우 반영된다가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직 전환 등에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

○ (효용성) 현 시설 교육이 인사고과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판단

〈표 5-184〉 입사 후 이수 교육실적이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일부 반영된다	매우 많이 반영된다	5점척도 평균
전체		4,238	39.2	20.6	27.4	9.7	3.1	2.2
성별	여자	3,118	42.7	21.5	24.2	8.8	2.9	2.1
	남자	1,120	29.7	18.0	36.3	12.1	3.8	2.4
연령대	20대 이하	453	35.8	15.7	36.9	7.3	4.4	2.3
	30대	1,140	34.2	20.4	32.7	9.9	2.7	2.3
	40대	1,455	39.8	19.9	26.5	10.3	3.6	2.2
	50대	1,118	45.0	23.3	19.9	9.5	2.3	2.0
	60대 이상	72	40.3	23.6	20.8	11.1	4.2	2.2
직위	상급관리자	491	38.1	22.8	20.2	14.7	4.3	2.2
	중간관리자	1,121	33.2	22.7	28.4	12.8	2.9	2.3
	초급관리자	522	31.2	23.2	30.1	11.7	3.8	2.3
	실무직원	2,104	44.7	18.2	27.9	6.4	2.8	2.0
직종	사회복지직	3,023	38.7	21.2	27.6	9.3	3.2	2.2
	관리직	714	40.6	16.0	27.7	12.5	3.2	2.2
	기능직	321	41.1	23.7	26.5	6.5	2.2	2.0
	보건의료직	180	38.9	22.8	25.0	11.1	2.2	2.2
고용형태	정규직	3,795	38.4	20.7	27.9	10.1	2.8	2.2
	무기계약직	282	48.6	22.3	18.1	5.7	5.3	2.0
	비정규 기간제	144	44.4	14.6	30.6	5.6	4.9	2.1
	비정규 기타	17	23.5	17.6	41.2	5.9	11.8	2.6
근무연수	1년 미만	52	36.5	13.5	36.5	5.8	7.7	2.3
	1년~3년 미만	1,178	37.6	17.3	32.9	8.8	3.3	2.2
	3년~5년 미만	870	40.9	19.8	27.1	8.6	3.6	2.1
	5~10년 미만	1,076	39.7	20.3	27.9	9.4	2.8	2.2
	10~20년 미만	890	40.7	24.3	20.2	12.2	2.6	2.1
	20년 이상	172	32.6	31.4	22.7	10.5	2.9	2.2

□ (교육 미이수 이유) 164명의 응답자 중 신규 입사자가 7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체인력 부재(5.5%), 교육 내용의 부적절성(4.3%), 교육정보 부족 및 업무과다(3.7%), 원거리 교육 장소(3.0%), 교육비용의 부담(1.2% 순)이었음.

○ (신규입사자) 실무 직원(78.7%), 사회복지직(82.9%), 비정규직(기간제)(92.1%), 1년 미만의 근속자의 신규입사자(89.7%)의 비율이 타 종사자 대비 높은 점은 신규입사자가 시설 적응 때문에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추정

〈표 5-185〉 2022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1순위)(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업무과다로 인해 교육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설의 대체인력이 없어서	교육내용이 적절한 것이 없어서(직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나 없어서)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교육장소가 멀고 불편해서	교육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입사자 여서	기타
전체		164	3.7	5.5	4.3	1.2	3.0	3.7	71.3	7.3
성별	여자	115	4.3	2.6	3.5	0.9	2.6	2.6	73.9	9.6
	남자	49	2.0	12.2	6.1	2.0	4.1	6.1	65.3	2.0
연령대	20대 이하	47	2.1	6.4	2.1	2.1	4.3	2.1	78.7	2.1
	30대	42	2.4	-	2.4	2.4	-	2.4	76.2	14.3
	40대	43	4.7	4.7	7.0	-	7.0	2.3	67.4	7.0
	50대	29	6.9	13.8	6.9	-	-	10.3	58.6	3.4
	60대 이상	3	-	-	-	-	-	-	66.7	33.3
직위	상급관리자	4	50.0	-	-	-	-	-	25.0	25.0
	중간관리자	10	-	-	20.0	-	10.0	10.0	50.0	10.0
	초급관리자	14	7.1	14.3	-	7.1	14.3	-	28.6	28.6

구분		인원 (명)	업무과다로 인해 교육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설의 대체인력이 없어서	교육내용이 적절한 것이 없어서(직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나 없어서)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교육장소가 멀고 불편해서	교육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입사자 여서	기타
	실무직원	136	2.2	5.1	3.7	0.7	1.5	3.7	78.7	4.4
직종	사회복지직	105	2.9	1.9	1.9	1.9	1.9	·	82.9	6.7
	관리직	26	3.8	15.4	7.7	·	7.7	7.7	53.8	3.8
	기능직	31	6.5	9.7	9.7	·	3.2	9.7	48.4	12.9
	보건의료직	2	·	·	·	·	·	50.0	50.0	·
고용형태	정규직	113	5.3	6.2	5.3	1.8	3.5	3.5	67.3	7.1
	무기계약직	9	·	11.1	11.1	·	11.1	11.1	33.3	22.2
	비정규 기간제	38	·	2.6	·	·	·	·	92.1	5.3
	비정규 기타	4	·	·	·	·	·	25.0	75.0	·
근무연수	1년 미만	39	2.6	2.6	·	2.6	·	·	89.7	2.6
	1년~3년 미만	95	2.1	3.2	3.2	1.1	3.2	4.2	81.1	2.1
	3년~5년 미만	8	·	25.0	25.0	·	12.5	12.5	·	25.0
	5년~10년 미만	12	16.7	8.3	8.3	·	·	·	16.7	50.0
	10년~20년 미만	7	14.3	28.6	14.3	·	·	14.3	14.3	14.3
	20년 이상	3	·	·	·	·	33.3	·	66.7	·

□ (시설의 5개 경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여부)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42.4%만이 현 재직 시설에서 5개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1개라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인지율) 주력 종사자인 30대(45.1%)와 40대(44.5%), 상급관리자(52.1%), 사회복지직(44.2%), 정규직(43.3%)에서 타 종사자 대비 높게 나타남

〈표 5-186〉 5개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4,402	42.4	34.9	22.7
성별	여자	3,233	41.3	37.4	21.3
	남자	1,169	45.5	27.9	26.6
연령대	20대 이하	500	39.4	25.2	35.4
	30대	1,182	45.1	32.1	22.8
	40대	1,498	44.5	35.3	20.2
	50대	1,147	39.4	40.3	20.3
	60대 이상	75	26.7	52.0	21.3
직위	상급관리자	495	52.1	41.6	6.3
	중간관리자	1,131	48.7	33.2	18.0
	초급관리자	536	44.2	31.7	24.1
	실무직원	2,240	36.7	35.0	28.3
직종	사회복지직	3,128	44.2	34.1	21.7
	관리직	740	40.0	38.5	21.5
	기능직	352	33.5	33.2	33.2
	보건의료직	182	39.0	36.3	24.7
고용 형태	정규직	3,908	43.3	35.0	21.8
	무기계약직	291	38.5	35.7	25.8
	비정규 기간제	182	33.5	31.3	35.2
	비정규 기타	21	19.0	33.3	47.6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1,710	39.5	39.1	21.5
	6~10인 이하	818	38.4	36.6	25.1
	11~20인 이하	642	48.6	28.2	23.2
	21~30인 이하	457	38.7	36.1	25.2
	31~40인 이하	267	41.9	34.8	23.2
	41~50인 이하	141	50.4	31.9	17.7
	51인 이상	367	56.4	22.9	20.7

□ (프로그램 운영률)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인지하고 있는 1,863명의 응답자 중 교육훈련에 대한 경험률이 8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슈퍼비전 (76.7%), 경력계획 및 상담(37.3%), 직무순환(32.3%), 승진·보직관리(24.3%)의 순이었음.

○ (종합 평가) 승진·보직관리와 직무순환 부서 이동의 운영률이 낮은 이유는 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때문으로 추정됨

〈표 5-187〉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중복응답)(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경력계획 및 상담(멘토링 포함)	승진·보직 관리	직무순환·부서 이동	교육훈련	슈퍼비전	기타
전체		1,868	37.3	24.3	32.3	88.8	76.7	0.4
성별	여자	1,336	36.8	21.3	30.1	88.6	75.0	0.4
	남자	532	38.3	31.8	37.8	89.3	81.0	0.4
연령대	20대 이하	197	35.5	18.8	32.0	81.7	82.7	-
	30대	533	34.9	27.0	37.0	89.1	80.3	-
	40대	666	37.7	26.0	33.3	91.3	76.3	0.6
	50대	452	40.0	20.4	25.4	88.3	70.1	0.9
	60대 이상	20	40.0	35.0	30.0	80.0	85.0	-
직위	상급관리자	258	40.3	33.7	32.2	91.5	75.2	0.8
	중간관리자	551	38.5	31.8	36.3	90.4	79.9	0.7
	초급관리자	237	36.3	28.7	34.2	89.0	78.5	0.8
	실무직원	822	35.8	15.0	29.1	86.9	74.6	-
직종	사회복지직	1,383	36.5	23.5	34.1	88.7	78.5	0.4
	관리직	296	38.5	26.7	29.1	90.9	73.3	1.0
	기능직	118	40.7	23.7	21.2	84.7	69.5	-
	보건의료직	71	40.8	29.6	28.2	88.7	69.0	-
고용형태	정규직	1,691	37.4	24.8	32.8	89.1	76.8	0.3
	무기계약직	112	35.7	18.8	32.1	88.4	75.9	1.8
	비정규 기간제	61	36.1	18.0	16.4	82.0	75.4	1.6
	비정규 기타	4	50.0	25.0	50.0	100.0	100.0	-
근무연수	1년 미만	22	22.7	13.6	18.2	100.0	72.7	-
	1년~3년 미만	493	39.8	19.3	27.4	86.4	75.5	0.6
	3년~5년 미만	377	37.7	23.1	33.4	86.7	78.8	-
	5년~10년 미만	480	37.1	25.4	37.5	89.4	77.5	0.4
	10년~20년 미만	409	34.7	28.1	32.3	92.2	76.0	0.7
	20년 이상	87	37.9	35.6	29.9	89.7	74.7	-

10. 일자리 만족도

□ (전체) 현 일자리와 관련하여 총 21개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보수 수준이었고(2.7점) 다음으로 승진 기회(2.9점)와 부대 시설(2.9점) 등의 순이었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향상(51.3%)이었음

□ (고충 처리 방법)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시설장 상담을 통해 개인적으로 고충 처리하는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식적인 절차(23.1%), 동료 상담(19.7%) 등의 순이었음.

○ (고용 형태) 비정규직(시간제/임시직)의 경우 시설장을 통한 상담 비율이 높은 반면, 공식적인 절차 이용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한적인 고용조건 때문으로 추정됨

〈표 5-188〉 재직 중인 시설의 고충 또는 어려움 처리 방법(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시설의 공식 절차(운영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	시설장(중간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	동료상담을 통해서 해결	외부기관(민원제도,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고충(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음	기타
전체		4,402	23.1	42.9	19.7	0.7	11.6	2.1
성별	여자	3,233	20.3	44.3	21.0	0.8	11.4	2.3
	남자	1,169	30.6	39.1	16.0	0.4	12.3	1.5
연령대	20대 이하	500	15.6	41.8	28.6	0.8	11.6	1.6
	30대	1,182	22.9	43.1	20.1	0.5	11.3	2.0
	40대	1,498	26.2	42.9	17.6	0.8	10.8	1.7
	50대	1,147	21.7	43.7	18.3	0.7	12.9	2.7
	60대 이상	75	32.0	37.3	16.0	-	12.0	2.7
직위	상급관리자	495	28.9	50.5	10.9	0.8	7.1	1.8
	중간관리자	1,131	30.9	42.8	13.4	0.6	10.4	1.9
	초급관리자	536	19.2	39.7	24.1	0.7	14.2	2.1
	실무직원	2,240	18.8	42.1	23.7	0.7	12.6	2.2
직종	사회복지직	3,128	20.0	44.5	20.7	0.6	12.1	2.1
	관리직	740	29.7	40.0	16.2	1.2	10.9	1.9
	기능직	352	26.7	37.5	22.7	0.6	10.2	2.3
	보건의료직	182	40.7	38.5	9.9	-	9.3	1.6
고용형태	정규직	3,908	24.3	42.8	18.8	0.6	11.5	2.1
	무기계약직	291	14.4	46.4	23.7	1.4	13.1	1.0
	비정규기간제	182	12.6	39.0	32.4	0.5	12.1	3.3
	비정규 기타	21	9.5	52.4	19.0	-	14.3	4.8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6.5	34.1	29.7	1.1	16.5	2.2
	1~3년 미만	1,273	17.8	44.7	22.9	0.5	11.7	2.4
	3~5년 미만	878	19.4	47.0	20.7	0.3	10.9	1.6
	5~10년 미만	1,088	25.8	40.0	18.8	1.2	11.9	2.3
	10~20년 미만	897	28.5	42.0	15.4	0.7	11.6	1.8
	20년 이상	175	37.7	36.6	13.1	0.6	10.3	1.7

□ (일자리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현재 일자리와 관련하여 총 21개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동료(3.9점) 및 하급자(3.8점)와의 관계와 고용 안정성(3.8점)인 것으로 파악됨

○ (만족도가 낮은 항목) 보통 수준인 평균 3.0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항목들은 보수 수준 (2.6점)과 승진 기회(2.9점)로 나타남

〈표 5-18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자리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명)	5점척도 평균
1) 일 (담당업무 내용, 업무량 포함)	4,402	3.3
2) 보수 (수당 및 보너스 포함)	4,402	2.6
3) 상급자와의 관계	4,353	3.6
4) 동료와의 관계	4,353	3.9
5) 하급자와의 관계	4,353	3.8
6)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4,353	3.5
7) 종사자 간 의사소통	4,353	3.7
8) 고용안정 (정규직, 정년보장, 장기근속 등)	4,402	3.8
9) 승진 기회	4,402	2,9
10)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기회	4,402	3.5
11) 원하는 부서에 근무 여부	4,402	3.5
12) 부대시설 (쉼터, 휴게실, 도서실 등)	4,402	2.9
13) 중요한 결정에 발휘하는 영향력	4,402	3.3
14) 맡은 업무에 대한 소신성 및 책임성	4,402	3.8
15) 후생복지	4,402	3.0
16) 담당하는 일에 대한 보람	4,402	3.7
17) 여가나 가족생활을 할 시간적 여유	4,402	3.2
18)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것	4,402	3.0
19) 주 평균 근로시간	4,402	3.5
20) 종사자 인권 보호 등 안전한 근로환경	4,402	3.4
21) 경력개발을 통한 개인의 발전가능성	4,402	3.2

□ (담당업무 및 업무량 만족도) 총 4,402명의 응답자는 자신의 담당업무 및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 5점 만점에 보통 정도인 3.3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3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는 작위상 초급관리자로 5점 만점에 3.2점으로 파악됨

〈표 5-190〉 업무(담당업무 및 업무량)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3.3	13.4	38.8	35.2	9.3	3.3
성별	여자	3,233	3.2	13.3	40.2	35.1	8.2	3.3
	남자	1,169	3.5	13.8	34.9	35.5	12.3	3.4
연령대	20대 이하	500	2.8	16.4	44.8	28.4	7.6	3.2
	30대	1,182	3.4	16.8	37.4	32.4	10.0	3.3
	40대	1,498	3.5	13.7	39.1	35.7	7.9	3.3
	50대	1,147	3.2	8.6	38.1	39.6	10.5	3.5
	60대 이상	75	1.3	6.7	25.3	49.3	17.3	3.7
직위	상급관리자	495	3.4	11.3	28.5	43.4	13.3	3.5
	중간관리자	1,131	3.4	13.4	37.7	37.7	7.9	3.3
	초급관리자	536	3.4	15.9	41.8	32.5	6.5	3.2
	실무직원	2,240	3.2	13.3	40.9	32.9	9.7	3.3
직종	사회복지직	3,128	3.3	14.7	38.9	34.1	9.1	3.3
	관리직	740	3.6	12.4	36.9	37.0	10.0	3.4
	기능직	352	2.8	7.1	42.6	37.8	9.7	3.4
	보건의료직	182	2.7	7.7	37.9	42.9	8.8	3.5
고용형태	정규직	3,908	3.2	13.7	39.2	34.7	9.1	3.3
	무기계약직	291	3.4	11.0	36.4	40.2	8.9	3.4
	비정규 기간제	182	3.8	9.9	34.6	40.1	11.5	3.5
	비정규 기타	21	4.8	14.3	33.3	23.8	23.8	3.5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	6.6	44.0	30.8	17.6	3.6
	1년~3년 미만	1,273	3.1	12.8	39.9	33.7	10.4	3.4
	3년~5년 미만	878	3.6	12.3	42.4	34.1	7.6	3.3
	5년~10년 미만	1,088	3.4	16.5	38.0	33.2	9.0	3.3
	10년~20년 미만	897	3.3	12.7	35.2	39.8	8.9	3.4
	20년 이상	175	2.9	11.4	33.7	44.0	8.0	3.4

□ (보수에 대한 만족도) 총 4,402명의 응답자는 수당 및 보너스를 포함한 현재의 보수 수준에 대해 5점 만점에 보통 이하인 2.6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2.6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20대와 30대 종사자(2.5점), 실무직원 및 초급관리자(2.5점), 무기계약직(2.5점), 근무연수 3~5년 미만이었음

〈표 5-191〉 보수 수준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15.5	30.2	35.8	14.9	3.6	2.6
성별	여자	3,233	14.4	31.1	36.5	15.2	2.9	2.6
	남자	1,169	18.6	27.8	34.0	14.0	5.6	2.6
연령대	20대 이하	500	18.2	34.6	32.2	11.6	3.4	2.5
	30대	1,182	19.5	29.6	33.9	12.9	4.1	2.5
	40대	1,498	13.8	30.4	36.4	16.1	3.3	2.6
	50대	1,147	12.6	29.0	38.4	16.5	3.6	2.7
	60대 이상	75	14.7	24.0	37.3	20.0	4.0	2.7
직위	상급관리자	495	12.1	24.0	36.2	21.6	6.1	2.9
	중간관리자	1,131	12.8	28.2	39.2	16.3	3.5	2.7
	초급관리자	536	16.6	33.0	34.7	14.4	1.3	2.5
	실무직원	2,240	17.4	31.9	34.3	12.8	3.7	2.5
직종	사회복지직	3,128	16.0	30.3	35.3	14.8	3.6	2.6
	관리직	740	15.3	31.4	35.5	14.2	3.6	2.6
	기능직	352	13.4	25.9	42.6	14.2	4.0	2.7
	보건의료직	182	12.6	31.3	33.0	19.8	3.3	2.7
고용형태	정규직	3,908	15.3	30.4	35.5	15.3	3.5	2.6
	무기계약직	291	20.3	27.8	39.5	8.9	3.4	2.5
	비정규 기간제	182	14.8	30.2	34.1	15.4	5.5	2.7
	비정규 기타	21	4.8	19.0	57.1	9.5	9.5	3.0
근무연수	1년 미만	91	9.9	24.2	40.7	17.6	7.7	2.9
	1~3년 미만	1,273	15.1	31.1	35.3	13.7	4.9	2.6
	3~5년 미만	878	18.8	30.6	34.4	13.9	2.3	2.5
	5~10년 미만	1,088	16.1	32.2	35.4	13.0	3.4	2.6
	10~20년 미만	897	13.7	28.0	37.6	18.1	2.7	2.7
	20년 이상	175	10.9	23.4	37.7	22.9	5.1	2.9

□ (상급자와의 관계 만족도) 1인 시설 재직자를 제외한 총 4,353명의 응답자는 상급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보통 이상인 3.6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6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40대(3.5점)와 비정규직 시간제(3.5점), 그리고 10~20년 미만(3.5점)과 20년 이상 근속자(3.5점)였음

〈표 5-192〉 상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353	2.7	7.3	33.5	39.9	16.6	3.6
성별	여자	3,191	2.9	7.6	34.2	40.7	14.7	3.6
	남자	1,162	2.3	6.5	31.7	37.6	21.9	3.7
연령대	20대 이하	497	2.0	5.0	29.0	40.8	23.1	3.8
	30대	1,175	2.4	8.0	32.9	36.9	19.8	3.6
	40대	1,486	3.4	8.1	34.5	40.8	13.3	3.5
	50대	1,124	2.8	6.9	35.3	40.5	14.5	3.6
	60대 이상	71		1.4	25.4	52.1	21.1	3.9
직위	상급관리자	486	2.7	6.4	26.7	43.8	20.4	3.7
	중간관리자	1,123	2.7	8.3	34.4	40.0	14.7	3.6
	초급관리자	534	2.4	6.9	34.6	41.8	14.2	3.6
	실무직원	2,210	2.9	7.1	34.3	38.5	17.3	3.6
직종	사회복지직	3,087	2.9	8.2	33.1	38.9	16.9	3.6
	관리직	735	2.7	5.7	35.8	39.0	16.7	3.6
	기능직	350	1.1	4.3	31.7	46.3	16.6	3.7
	보건의료직	181	3.3	5.0	34.8	46.4	10.5	3.6
고용형태	정규직	3,863	2.6	7.2	33.7	40.3	16.2	3.6
	무기계약직	289	2.4	8.7	31.1	38.1	19.7	3.6
	비정규 기간제	180	6.1	6.7	32.8	35.6	18.9	3.5
	비정규 기타	21		9.5	33.3	23.8	33.3	3.8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	4.4	31.9	33.0	29.7	3.9
	1~3년 미만	1,264	3.6	6.4	33.5	38.2	18.3	3.6
	3~5년 미만	873	1.9	6.1	32.0	44.3	15.7	3.7
	5~10년 미만	1,068	2.4	8.5	34.4	37.5	17.1	3.6
	10~20년 미만	884	2.8	8.4	34.0	40.5	14.3	3.5
	20년 이상	173	2.9	8.7	33.5	43.9	11.0	3.5

□ (동료와의 만족도) 1인 시설 재직자를 제외한 총 4,353명의 응답자는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만족하는 편인 3.9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9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는 보건의료직(3.7점)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40대와 50대 종사자(3.8점), 그리고 10~20년 미만(3.5점)과 20년 이상 근속자(3.5점)였음

〈표 5-193〉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9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353	0.7	2.0	28.0	48.1	21.2	3.9
성별	여자	3,191	0.6	2.0	28.3	49.3	19.8	3.9
	남자	1,162	0.9	1.9	27.4	44.8	25.0	3.9
연령대	20대 이하	497	0.6	1.2	19.1	45.1	34.0	4.1
	30대	1,175	0.4	1.5	26.2	46.7	25.1	3.9
	40대	1,486	1.0	2.4	30.8	49.6	16.3	3.8
	50대	1,124	0.6	2.5	30.8	48.0	18.1	3.8
	60대 이상	71	·	·	21.1	59.2	19.7	4.0
직위	상급관리자	486	·	1.6	23.3	53.3	21.8	4.0
	중간관리자	1,123	0.4	2.2	29.5	50.7	17.2	3.8
	초급관리자	534	1.3	1.5	28.1	50.4	18.7	3.8
	실무직원	2,210	0.8	2.1	28.4	45.0	23.7	3.9
직종	사회복지직	3,087	0.6	2.1	28.4	46.7	22.1	3.9
	관리직	735	0.3	1.9	28.3	49.1	20.4	3.9
	기능직	350	1.7	1.7	22.9	54.0	19.7	3.9
	보건의료직	181	1.7	1.1	30.4	54.7	12.2	3.7
고용형태	정규직	3,863	0.7	1.9	28.1	48.8	20.6	3.9
	무기계약직	289	0.7	4.2	27.7	43.6	23.9	3.9
	비정규 기간제	180	0.6	1.7	27.2	42.8	27.8	4.0
	비정규 기타	21	·	·	33.3	23.8	42.9	4.1
근무연수	1년 미만	91	·	2.2	31.9	34.1	31.9	4.0
	1~3년 미만	1,264	0.6	1.9	28.0	45.3	24.2	3.9
	3~5년 미만	873	1.1	1.7	26.0	49.8	21.3	3.9
	5~10년 미만	1,068	0.6	2.2	27.4	47.8	22.0	3.9
	10~20년 미만	884	0.7	2.3	30.3	50.7	16.1	3.8
	20년 이상	173	0.6	1.2	28.9	54.9	14.5	3.8

□ (하급자와의 만족도) 1인 시설 재직자를 제외한 총 4,353명의 응답자는 하급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만족하는 편인 3.8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8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40대와 50대(3.7점) 종사자, 중간 및 초급관리자(3.7점), 보건의료직(3.7점), 그리고 10~20년 미만(3.7점)과 20년 이상 근속자(3.7점)였음

〈표 5-194〉 하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353	0.8	3.0	34.1	44.2	17.9	3.8
성별	여자	3,191	0.8	2.8	35.1	45.0	16.5	3.7
	남자	1,162	0.9	3.7	31.3	42.3	21.8	3.8
연령대	20대 이하	497	0.4	2.2	28.2	39.8	29.4	4.0
	30대	1,175	0.9	2.6	33.2	41.7	21.5	3.8
	40대	1,486	1.0	4.2	35.5	46.0	13.2	3.7
	50대	1,124	0.6	2.1	36.1	45.9	15.2	3.7
	60대 이상	71	·	2.8	26.8	53.5	16.9	3.8
직위	상급관리자	486	0.6	4.9	25.7	50.4	18.3	3.8
	중간관리자	1,123	0.7	5.2	32.3	47.6	14.2	3.7
	초급관리자	534	1.9	3.6	32.8	46.3	15.5	3.7
	실무직원	2,210	0.6	1.4	37.1	40.7	20.2	3.8
직종	사회복지직	3,087	0.8	3.2	34.3	43.1	18.6	3.8
	관리직	735	0.3	2.7	33.9	46.0	17.1	3.8
	기능직	350	1.7	2.0	31.7	48.0	16.6	3.8
	보건의료직	181	0.6	2.8	35.4	50.3	11.0	3.7
고용형태	정규직	3,863	0.8	3.2	33.8	44.8	17.4	3.7
	무기계약직	289	1.0	2.8	36.0	39.8	20.4	3.8
	비정규 기간제	180	1.1	0.6	35.0	41.7	21.7	3.8
	비정규 기타	21	·	·	42.9	19.0	38.1	4.0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	·	39.6	29.7	29.7	3.9
	1~3년 미만	1,264	0.7	2.5	35.2	41.2	20.3	3.8
	3~5년 미만	873	1.0	2.6	32.6	45.0	18.7	3.8
	5~10년 미만	1,068	0.8	2.8	34.1	43.5	18.7	3.8
	10~20년 미만	884	0.8	4.5	33.4	48.2	13.1	3.7
	20년 이상	173	·	3.5	33.5	54.3	8.7	3.7

□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1인 시설 재직자를 제외한 총 4,353명의 응답자는 상급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만족하는 편인 3.5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5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는 40대(3.4점)와 초급관리자(3.4점)였음

〈표 5-195〉 상급자 대상 의사소통 세부항목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353	3.1	9.8	34.4	37.9	14.8	3.5
성별	여자	3,191	3.1	10.4	35.0	38.6	12.9	3.5
	남자	1,162	3.3	8.1	32.8	35.9	20.0	3.6
연령대	20대 이하	497	3.2	8.2	32.0	37.0	19.5	3.6
	30대	1,175	3.0	12.8	31.8	34.4	18.0	3.5
	40대	1,486	3.7	10.3	35.3	39.3	11.4	3.4
	50대	1,124	2.4	7.4	37.9	38.9	13.4	3.5
	60대 이상	71	4.2	·	19.7	56.3	19.7	3.9
직위	상급관리자	486	1.6	4.5	27.0	46.1	20.8	3.8
	중간관리자	1,123	2.9	9.1	35.9	39.5	12.6	3.5
	초급관리자	534	3.2	12.0	35.8	39.0	10.1	3.4
	실무직원	2,210	3.5	10.8	35.0	35.0	15.7	3.5
직종	사회복지직	3,087	3.3	10.4	34.2	37.1	15.0	3.5
	관리직	735	2.9	9.3	33.3	40.5	14.0	3.5
	기능직	350	2.0	6.9	35.1	39.1	16.9	3.6
	보건의료직	181	2.8	7.7	40.9	38.1	10.5	3.5
고용형태	정규직	3,863	3.1	9.8	34.6	38.1	14.4	3.5
	무기계약직	289	2.4	10.7	32.2	39.8	14.9	3.5
	비정규 기간제	180	5.6	9.4	32.2	33.9	18.9	3.5
	비정규 기타	21	·	4.8	42.9	14.3	38.1	3.9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	7.7	35.2	31.9	24.2	3.7
	1~3년 미만	1,264	4.0	9.8	33.1	36.2	16.9	3.5
	3~5년 미만	873	2.6	10.2	34.9	38.3	14.0	3.5
	5~10년 미만	1,068	3.2	9.6	35.3	37.3	14.6	3.5
	10~20년 미만	884	2.7	9.8	34.4	40.5	12.6	3.5
	20년 이상	173	1.7	9.8	35.8	42.2	10.4	3.5

□ (종사자 간 의사소통) 1인 시설 재직자를 제외한 총 4,353명의 응답자는 종사자 간 의사소통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만족하는 편인 3.7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7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는 보건의료직(3.6점)이었으며, 기타 종사자들은 모두 3.7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96〉 종사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353	0.6	3.8	34.4	44.7	16.5	3.7
성별	여자	3,191	0.6	4.1	34.6	45.4	15.2	3.7
	남자	1,162	0.3	2.9	33.6	42.9	20.1	3.8
연령대	20대 이하	497	0.2	4.6	25.2	45.5	24.5	3.9
	30대	1,175	0.6	4.8	31.8	42.9	19.9	3.8
	40대	1,486	0.7	3.9	37.4	45.4	12.6	3.7
	50대	1,124	0.5	2.6	37.7	44.5	14.7	3.7
	60대 이상	71	·	·	23.9	59.2	16.9	3.9
직위	상급관리자	486	0.2	2.9	30.9	49.4	16.7	3.8
	중간관리자	1,123	0.5	4.6	35.5	46.7	12.6	3.7
	초급관리자	534	1.5	3.2	36.7	45.9	12.7	3.7
	실무직원	2,210	0.4	3.8	34.0	42.4	19.4	3.8
직종	사회복지직	3,087	0.6	4.0	33.6	44.5	17.2	3.7
	관리직	735	0.1	4.1	34.7	45.4	15.6	3.7
	기능직	350	0.6	2.6	34.9	46.0	16.0	3.7
	보건의료직	181	0.6	1.7	45.3	43.1	9.4	3.6
고용형태	정규직	3,863	0.5	3.6	34.9	44.9	16.1	3.7
	무기계약직	289	1.4	5.5	32.9	43.6	16.6	3.7
	비정규 기간제	180	0.6	5.6	26.1	45.0	22.8	3.8
	비정규 기타	21	·	·	33.3	23.8	42.9	4.1
근무연수	1년 미만	91	·	3.3	34.1	34.1	28.6	3.9
	1~3년 미만	1,264	0.8	3.9	31.7	43.2	20.4	3.8
	3~5년 미만	873	0.8	3.3	34.4	45.1	16.4	3.7
	5~10년 미만	1,068	0.5	4.0	34.6	44.8	16.2	3.7
	10~20년 미만	884	0.2	4.0	38.0	46.2	11.7	3.7
	20년 이상	173	·	4.0	34.1	52.0	9.8	3.7

□ (고용 안정; 정규직, 정년 보장, 장기근속 등) 총 4,402명의 응답자는 현 직장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만족하는 편인 3.8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8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정규직(3.8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3.2점), 비정규기간제(3.1점), 비정규직 기타(3.2점)이였음

〈표 5-197〉 고용 안정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2.2	5.0	26.9	46.2	19.7	3.8
성별	여자	3,233	2.5	5.4	26.9	47.7	17.5	3.7
	남자	1,169	1.1	4.0	26.9	42.1	25.9	3.9
연령대	20대 이하	500	1.2	6.0	24.4	43.6	24.8	3.8
	30대	1,182	2.2	5.1	27.7	40.5	24.5	3.8
	40대	1,498	2.5	4.7	27.5	48.5	16.8	3.7
	50대	1,147	2.2	5.2	26.8	48.9	16.9	3.7
	60대 이상	75		2.7	18.7	65.3	13.3	3.9
직위	상급관리자	495	2.2	3.0	22.2	52.5	20.0	3.9
	중간관리자	1,131	1.7	4.5	24.6	48.4	20.9	3.8
	초급관리자	536	2.1	5.8	27.1	48.3	16.8	3.7
	실무직원	2,240	2.4	5.6	29.0	43.2	19.8	3.7
직종	사회복지직	3,128	2.7	5.8	27.7	44.8	19.0	3.7
	관리직	740	1.2	3.2	25.0	49.6	20.9	3.9
	기능직	352	0.6	3.1	26.4	46.6	23.3	3.9
	보건의료직	182		2.7	20.3	56.0	20.9	4.0
고용형태	정규직	3,908	1.4	3.7	25.8	48.2	20.9	3.8
	무기계약직	291	7.6	15.8	32.3	34.4	10.0	3.2
	비정규 기간제	182	8.8	14.8	41.2	26.4	8.8	3.1
	비정규 기타	21	9.5	23.8	23.8	19.0	23.8	3.2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	4.4	37.4	34.1	23.1	3.7
	1~3년 미만	1,273	2.9	6.5	29.1	42.8	18.6	3.7
	3~5년 미만	878	2.3	4.6	28.0	47.7	17.4	3.7
	5~10년 미만	1,088	2.0	4.6	26.3	44.1	23.0	3.8
	10~20년 미만	897	1.4	4.7	24.4	50.5	19.0	3.8
	20년 이상	175	1.1	1.7	15.4	60.6	21.1	4.0

□ (승진 기회) 총 4,402명의 응답자는 현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보통 정도인 2.9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2.9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는 직위에서 실무직원(2.8점)과 직종에서 기능직(2.8점)이였음

〈표 5-198〉 승진 기회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10.0	16.4	49.0	19.1	5.5	2.9
성별	여자	3,233	10.0	16.7	50.0	19.1	4.2	2.9
	남자	1,169	10.1	15.7	46.3	18.8	9.2	3.0
연령대	20대 이하	500	7.4	14.2	52.8	18.8	6.8	3.0
	30대	1,182	10.7	17.2	46.3	19.0	6.9	2.9
	40대	1,498	10.9	16.4	48.4	19.4	4.9	2.9
	50대	1,147	9.2	17.1	51.1	18.5	4.1	2.9
	60대 이상	75	9.3	9.3	49.3	24.0	8.0	3.1
직위	상급관리자	495	6.5	10.7	45.9	28.3	8.7	3.2
	중간관리자	1,131	6.9	17.2	45.3	25.5	5.2	3.0
	초급관리자	536	12.1	13.8	51.1	19.4	3.5	2.9
	실무직원	2,240	11.8	17.9	51.2	13.7	5.4	2.8
직종	사회복지직	3,128	9.4	16.8	48.9	19.4	5.5	2.9
	관리직	740	11.2	15.4	46.2	21.4	5.8	3.0
	기능직	352	13.1	14.2	54.3	12.8	5.7	2.8
	보건의료직	182	9.9	17.0	53.3	15.9	3.8	2.9
고용형태	정규직	3,908	9.8	16.2	48.8	19.5	5.6	2.9
	무기계약직	291	12.4	19.9	48.5	16.2	3.1	2.8
	비정규 기간제	182	12.1	14.3	52.2	14.8	6.6	2.9
	비정규 기타	21		14.3	66.7	4.8	14.3	3.2
근무연수	1년 미만	91	3.3	12.1	53.8	17.6	13.2	3.3
	1~3년 미만	1,273	8.5	15.3	53.3	16.9	6.0	3.0
	3~5년 미만	878	9.7	16.3	49.9	19.7	4.4	2.9
	5~10년 미만	1,088	11.8	16.0	47.8	18.7	5.8	2.9
	10~20년 미만	897	11.3	18.3	44.9	20.5	5.0	2.9
	20년 이상	175	8.6	20.0	40.6	27.4	3.4	3.0

□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기회) 총 4,402명의 응답자는 현 직장의 업무 관련 교육· 훈련 기회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만족하는 편인 3.5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5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직종에서 기능직(3.4점)과 보건의료직(3.4점), 그리고 고용형태에서는 무기계약직(3.4점)이였음

〈표 5-199〉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2.3	7.1	39.0	38.8	12.9	3.5
성별	여자	3,233	2.3	7.9	38.9	39.1	11.8	3.5
	남자	1,169	2.4	4.6	39.3	37.7	16.0	3.6
연령대	20대 이하	500	1.4	6.2	33.8	39.8	18.8	3.7
	30대	1,182	2.5	7.5	38.4	35.4	16.2	3.6
	40대	1,498	2.7	7.1	38.6	41.1	10.5	3.5
	50대	1,147	2.1	7.1	42.4	38.4	10.0	3.5
	60대 이상	75	2.7	4.0	38.7	44.0	10.7	3.6
직위	상급관리자	495	2.0	5.7	30.5	46.1	15.8	3.7
	중간관리자	1,131	1.5	5.9	37.7	42.7	12.2	3.6
	초급관리자	536	2.2	6.0	39.2	41.4	11.2	3.5
	실무직원	2,240	2.8	8.2	41.5	34.5	13.0	3.5
직종	사회복지직	3,128	2.0	7.2	37.9	39.2	13.7	3.6
	관리직	740	2.8	6.2	39.2	40.4	11.4	3.5
	기능직	352	3.4	7.4	46.3	31.5	11.4	3.4
	보건의료직	182	2.7	8.2	42.3	38.5	8.2	3.4
고용형태	정규직	3,908	2.2	6.8	38.7	39.4	12.8	3.5
	무기계약직	291	3.8	8.9	41.9	34.0	11.3	3.4
	비정규 기간제	182	2.2	9.9	38.5	34.1	15.4	3.5
	비정규 기타	21		4.8	47.6	19.0	28.6	3.7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	4.4	40.7	29.7	24.2	3.7
	1~3년 미만	1,273	2.3	7.7	40.2	35.6	14.2	3.5
	3~5년 미만	878	3.0	6.4	39.7	39.1	11.8	3.5
	5~10년 미만	1,088	2.4	7.8	38.7	38.5	12.6	3.5
	10~20년 미만	897	1.9	6.6	38.5	41.6	11.5	3.5
	20년 이상	175	1.7	5.1	29.7	52.0	11.4	3.7

□ (현 근무 부서) 총 4,402명의 응답자는 근무하는 현 근무 부서에 대한 만족도에 5점 만점에 만족하는 편인 3.5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5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는 직위에서 초급관리자(3.4점)와 연령에서 40대 종사자(3.4점)들이었음

〈표 5-200〉 근무하는 현 부서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2.4	6.1	42.2	37.1	12.2	3.5
성별	여자	3,233	2.3	6.0	42.9	38.0	10.8	3.5
	남자	1,169	2.7	6.2	40.4	34.6	16.1	3.6
연령대	20대 이하	500	1.4	6.4	38.6	36.4	17.2	3.6
	30대	1,182	2.5	7.5	42.9	32.2	14.9	3.5
	40대	1,498	3.1	6.1	44.0	37.0	9.8	3.4
	50대	1,147	2.1	4.6	41.7	41.4	10.2	3.5
	60대 이상	75	·	1.3	29.3	56.0	13.3	3.8
직위	상급관리자	495	2.0	5.5	33.7	45.5	13.3	3.6
	중간관리자	1,131	2.7	6.7	42.2	37.7	10.7	3.5
	초급관리자	536	3.2	6.7	45.0	35.6	9.5	3.4
	실무직원	2,240	2.1	5.7	43.5	35.4	13.3	3.5
직종	사회복지직	3,128	2.5	6.7	44.1	35.0	11.7	3.5
	관리직	740	2.7	5.8	38.5	40.1	12.8	3.5
	기능직	352	1.4	2.8	38.1	43.8	13.9	3.7
	보건의료직	182	1.6	2.7	33.0	48.4	14.3	3.7
고용형태	정규직	3,908	2.4	6.2	42.6	37.1	11.8	3.5
	무기계약직	291	2.7	4.8	39.5	39.5	13.4	3.6
	비정규 기간제	182	2.7	6.0	39.6	35.2	16.5	3.6
	비정규 기타	21	·	4.8	28.6	33.3	33.3	4.0
근무연수	1년 미만	91	·	4.4	42.9	29.7	23.1	3.7
	1~3년 미만	1,273	1.8	5.2	42.8	36.0	14.2	3.6
	3~5년 미만	878	2.6	6.8	42.5	37.9	10.1	3.5
	5~10년 미만	1,088	2.6	6.3	43.3	35.3	12.5	3.5
	10~20년 미만	897	3.2	6.5	40.8	39.1	10.4	3.5
	20년 이상	175	1.7	5.7	37.1	46.3	9.1	3.6

□ (부대 시설: 쉼터, 휴게실, 도서실 등) 총 4,402명의 응답자는 쉼터, 휴게실, 도서실 등 현 직장의 부대 시설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2.9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2.9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30대 종사자(2.8점), 실무직원(2.8점), 사회복지직(2.8점), 그리고 무기계약직(2.8점)이었음

〈표 5-201〉 부대 시설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11.8	22.6	38.9	20.5	6.1	2.9
성별	여자	3,233	11.9	24.0	39.3	19.9	4.9	2.8
	남자	1,169	11.5	18.9	37.8	22.3	9.5	3.0
연령대	20대 이하	500	12.0	22.8	36.0	20.2	9.0	2.9
	30대	1,182	12.6	23.5	37.2	20.0	6.7	2.8
	40대	1,498	11.0	22.2	39.9	21.7	5.2	2.9
	50대	1,147	12.4	22.9	40.0	19.2	5.5	2.8
	60대 이상	75	4.0	13.3	49.3	28.0	5.3	3.2
직위	상급관리자	495	8.9	17.8	40.0	25.7	7.7	3.1
	중간관리자	1,131	10.1	22.7	40.3	22.1	4.8	2.9
	초급관리자	536	11.2	25.7	35.1	21.3	6.7	2.9
	실무직원	2,240	13.4	22.9	38.9	18.4	6.3	2.8
직종	사회복지직	3,128	12.7	24.0	37.9	19.3	6.0	2.8
	관리직	740	9.9	18.6	42.0	23.6	5.8	3.0
	기능직	352	9.9	19.6	38.1	25.3	7.1	3.0
	보건의료직	182	7.1	20.9	45.6	19.2	7.1	3.0
고용형태	정규직	3,908	11.7	22.6	39.2	20.6	5.9	2.9
	무기계약직	291	13.4	24.4	36.1	18.6	7.6	2.8
	비정규 기간제	182	11.5	22.0	38.5	22.0	6.0	2.9
	비정규 기타	21	9.5	19.0	33.3	14.3	23.8	3.2
근무연수	1년 미만	91	7.7	20.9	38.5	17.6	15.4	3.1
	1년~3년 미만	1,273	12.0	22.5	38.4	20.2	6.9	2.9
	3년~5년 미만	878	12.9	24.5	37.4	20.2	5.1	2.8
	5년~10년 미만	1,088	12.6	23.4	38.6	19.0	6.3	2.8
	10년~20년 미만	897	10.8	21.5	39.8	23.4	4.5	2.9
	20년 이상	175	6.9	16.6	48.6	20.6	7.4	3.1

□ (의사결정의 영향력) 총 4,402명의 응답자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 정도에 대해서 5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3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3점 대비 만족도가 높은 종사자들은 60대 이상 종사자(3.6점), 상급관리자(3.7점), 비정규 임시직 등 기타(3.7점), 근속기간 1년 미만(3.6점) 종사자들이었음

〈표 5-202〉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3.0	9.4	46.6	33.2	7.7	3.3
성별	여자	3,233	2.9	9.7	47.7	33.3	6.4	3.3
	남자	1,169	3.3	8.5	43.7	33.0	11.5	3.4
연령대	20대 이하	500	3.6	7.2	47.4	32.0	9.8	3.4
	30대	1,182	3.1	9.2	47.5	30.4	9.7	3.3
	40대	1,498	3.4	10.7	44.2	34.9	6.7	3.3
	50대	1,147	2.3	9.3	49.2	33.2	6.0	3.3
	60대 이상	75	2.7	1.3	36.0	50.7	9.3	3.6
직위	상급관리자	495	1.0	6.1	31.1	48.9	12.9	3.7
	중간관리자	1,131	2.7	9.5	44.0	37.4	6.4	3.4
	초급관리자	536	2.8	8.4	51.1	32.1	5.6	3.3
	실무직원	2,240	3.8	10.3	50.3	27.9	7.8	3.3
직종	사회복지직	3,128	3.1	9.8	46.3	32.7	8.2	3.3
	관리직	740	3.0	8.8	47.2	34.1	7.0	3.3
	기능직	352	2.8	8.2	48.6	33.8	6.5	3.3
	보건의료직	182	3.3	8.2	46.2	37.4	4.9	3.3
고용형태	정규직	3,908	3.0	9.5	46.4	33.5	7.6	3.3
	무기계약직	291	3.8	8.9	49.8	30.2	7.2	3.3
	비정규 기간제	182	3.3	9.3	46.2	31.9	9.3	3.3
	비정규 기타	21	4.8		47.6	19.0	28.6	3.7
근무연수	1년 미만	91		7.7	46.2	26.4	19.8	3.6
	1년~3년 미만	1,273	3.5	8.6	49.1	30.2	8.6	3.3
	3년~5년 미만	878	3.4	8.3	49.1	33.0	6.2	3.3
	5년~10년 미만	1,088	3.1	10.1	46.0	32.6	8.1	3.3
	10년~20년 미만	897	2.5	11.3	42.0	37.5	6.8	3.3
	20년 이상	175	1.7	7.4	43.4	41.1	6.3	3.4

□ (업무에 대한 소신 및 책임성) 총 4,402명의 응답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소신 및 책임감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만족하는 수준인 3.8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8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30~40대 종사자(3.7점), 상급관리자를 제외한 전 직위(3.7점), 무기계약직(3.7점) 종사자들이었음

〈표 5-203〉 자신의 업무에 대한 소신 및 책임성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 척도 평균
전체		4,402	1.3	3.0	30.1	50.4	15.2	3.8
성별	여자	3,233	1.3	2.8	30.1	51.7	13.9	3.7
	남자	1,169	1.3	3.3	30.1	46.7	18.6	3.8
연령대	20대 이하	500	1.0	2.8	32.4	46.4	17.4	3.8
	30대	1,182	1.4	2.5	33.8	44.8	17.4	3.7
	40대	1,498	1.6	3.5	29.6	53.2	12.1	3.7
	50대	1,147	1.1	2.9	26.8	54.2	15.0	3.8
	60대 이상	75	·	1.3	18.7	50.7	29.3	4.1
직위	상급관리자	495	1.0	3.2	18.6	57.8	19.4	3.9
	중간관리자	1,131	1.1	3.7	29.9	52.4	12.9	3.7
	초급관리자	536	1.9	2.4	33.8	48.9	13.1	3.7
	실무직원	2,240	1.4	2.7	31.9	48.1	15.9	3.7
직종	사회복지직	3,128	1.3	3.3	31.3	49.3	14.7	3.7
	관리직	740	1.6	2.7	29.5	51.6	14.6	3.7
	기능직	352	1.1	1.4	25.3	53.7	18.5	3.9
	보건의료직	182	0.5	1.1	22.0	57.7	18.7	3.9
고용형태	정규직	3,908	1.3	2.9	29.9	51.2	14.7	3.8
	무기계약직	291	2.1	3.1	31.3	47.1	16.5	3.7
	비정규 기간제	182	0.5	4.9	32.4	41.8	20.3	3.8
	비정규 기타	21	·	·	38.1	23.8	38.1	4.0
근무연수	1년 미만	91	·	3.3	33.0	41.8	22.0	3.8
	1년~3년 미만	1,273	1.3	2.7	33.0	46.0	17.0	3.7
	3년~5년 미만	878	1.7	2.2	29.8	54.0	12.3	3.7
	5~10년 미만	1,088	1.3	3.8	31.3	48.6	15.1	3.7
	10~20년 미만	897	1.1	3.5	26.1	53.6	15.7	3.8
	20년 이상	175	1.7	1.1	22.9	63.4	10.9	3.8

□ (후생 복지) 총 4,402명의 응답자는 현재 재직 시설의 후생 복지 제도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0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0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5~60대 이상(2.9점), 무기계약직(2.9점) 종사자들이었음

〈표 5-204〉 현 재직 시설의 후생 복지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6.6	20.1	46.0	21.8	5.4	3.0
성별	여자	3,233	6.6	20.9	45.8	22.5	4.2	3.0
	남자	1,169	6.8	18.0	46.7	20.0	8.5	3.1
연령대	20대 이하	500	5.6	17.6	44.6	24.4	7.8	3.1
	30대	1,182	7.4	18.3	45.7	21.7	6.9	3.0
	40대	1,498	6.3	20.0	47.5	22.3	3.9	3.0
	50대	1,147	6.7	23.3	45.3	20.0	4.7	2.9
	60대 이상	75	8.0	21.3	42.7	25.3	2.7	2.9
직위	상급관리자	495	6.1	21.0	41.4	25.3	6.3	3.0
	중간관리자	1,131	6.2	19.8	46.1	23.2	4.8	3.0
	초급관리자	536	6.3	20.3	45.9	22.9	4.5	3.0
	실무직원	2,240	7.1	20.1	47.1	20.1	5.7	3.0
직종	사회복지직	3,128	7.1	20.8	45.5	21.1	5.5	3.0
	관리직	740	5.7	18.4	47.7	23.1	5.1	3.0
	기능직	352	5.4	17.3	47.7	23.9	5.7	3.1
	보건의료직	182	5.5	21.4	44.5	25.3	3.3	3.0
고용형태	정규직	3,908	6.5	19.9	46.3	22.0	5.3	3.0
	무기계약직	291	8.6	23.7	43.6	20.3	3.8	2.9
	비정규 기간제	182	6.6	20.3	44.0	20.9	8.2	3.0
	비정규 기타	21		23.8	42.9	14.3	19.0	3.3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	17.6	45.1	23.1	13.2	3.3
	1~3년 미만	1,273	6.9	18.0	45.2	22.9	7.0	3.1
	3~5년 미만	878	7.5	20.5	46.0	22.4	3.5	2.9
	5~10년 미만	1,088	6.4	21.7	46.9	19.9	5.1	3.0
	10~20년 미만	897	6.7	21.7	46.3	21.0	4.3	2.9
	20년 이상	175	4.0	17.7	46.3	26.3	5.7	3.1

□ (담당하는 일에 대한 보람) 총 4,402명의 응답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한 보람 정도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만족하는 수준인 3.7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7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2~30대 종사자(3.6점), 초급관리자(3.6점)들이었음

〈표 5-205〉 담당하는 일의 보람에 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1.4	4.5	31.1	46.8	16.1	3.7
성별	여자	3,233	1.2	4.0	30.8	48.5	15.5	3.7
	남자	1,169	2.0	5.7	32.0	42.3	18.0	3.7
연령대	20대 이하	500	2.4	7.0	34.8	39.2	16.6	3.6
	30대	1,182	1.5	6.2	35.3	40.9	16.2	3.6
	40대	1,498	1.3	4.3	31.0	49.1	14.4	3.7
	50대	1,147	1.0	2.2	26.2	52.6	18.0	3.8
	60대 이상	75	1.3		18.7	60.0	20.0	4.0
직위	상급관리자	495	2.0	2.6	21.6	53.1	20.6	3.9
	중간관리자	1,131	1.4	4.2	31.9	47.9	14.5	3.7
	초급관리자	536	1.1	5.4	36.9	44.0	12.5	3.6
	실무직원	2,240	1.3	4.8	31.5	45.6	16.8	3.7
직종	사회복지직	3,128	1.5	5.2	32.3	45.5	15.5	3.7
	관리직	740	1.8	3.5	33.0	47.6	14.2	3.7
	기능직	352	0.3	1.4	24.1	51.4	22.7	3.9
	보건의료직	182	0.5	2.2	17.0	58.2	22.0	4.0
고용형태	정규직	3,908	1.4	4.4	31.7	47.1	15.4	3.7
	무기계약직	291	1.4	4.8	28.2	45.4	20.3	3.8
	비정규 기간제	182	1.6	5.5	24.2	45.1	23.6	3.8
	비정규 기타	21		4.8	33.3	28.6	33.3	3.9
근무연수	1년 미만	91	2.2	3.3	39.6	33.0	22.0	3.7
	1~3년 미만	1,273	1.4	4.9	32.7	43.8	17.3	3.7
	3~5년 미만	878	1.7	3.6	30.9	49.9	13.9	3.7
	5~10년 미만	1,088	1.2	5.4	31.1	45.5	16.8	3.7
	10~20년 미만	897	1.4	3.9	30.3	49.1	15.3	3.7
	20년 이상	175	0.6	3.4	21.7	58.3	16.0	3.9

□ (일·가정의 양립) 총 4,402명의 응답자는 현 재직 시설이 여가나 가족생활을 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2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2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사급 및 중간관리자(3.1점), 사회복지직(3.1점) 종사자들이었음.

〈표 5-206〉 여가나 가족생활을 할 시간적 여유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6.7	15.3	39.8	30.6	7.6	3.2
성별	여자	3,233	6.7	16.8	40.3	29.9	6.3	3.1
	남자	1,169	6.6	11.3	38.5	32.4	11.2	3.3
연령대	20대 이하	500	6.4	18.4	37.6	27.6	10.0	3.2
	30대	1,182	8.3	15.7	36.0	30.7	9.4	3.2
	40대	1,498	6.7	14.6	41.5	31.3	6.0	3.2
	50대	1,147	5.5	14.6	42.5	30.3	7.1	3.2
	60대 이상	75		17.3	41.3	37.3	4.0	3.3
직위	상급관리자	495	8.9	14.1	41.4	28.1	7.5	3.1
	중간관리자	1,131	7.8	16.7	38.6	30.7	6.2	3.1
	초급관리자	536	7.8	14.0	39.2	32.6	6.3	3.2
	실무직원	2,240	5.3	15.2	40.2	30.6	8.7	3.2
직종	사회복지직	3,128	7.5	16.9	40.1	28.6	6.9	3.1
	관리직	740	4.6	11.9	40.1	35.0	8.4	3.3
	기능직	352	5.7	10.5	35.8	35.8	12.2	3.4
	보건의료직	182	1.6	11.0	41.8	36.8	8.8	3.4
고용형태	정규직	3,908	6.8	15.2	39.9	31.1	7.0	3.2
	무기계약직	291	5.8	16.8	39.2	27.1	11.0	3.2
	비정규 기간제	182	5.5	15.9	39.6	25.8	13.2	3.3
	비정규 기타	21		14.3	33.3	23.8	28.6	3.7
근무연수	1년 미만	91	5.5	18.7	38.5	19.8	17.6	3.3
	1년~3년 미만	1,273	5.4	15.4	41.2	28.9	9.0	3.2
	3년~5년 미만	878	7.4	15.0	39.0	32.2	6.4	3.2
	5~10년 미만	1,088	7.8	15.9	39.9	28.8	7.6	3.1
	10~20년 미만	897	6.8	15.4	38.7	32.9	6.2	3.2
	20년 이상	175	4.6	10.9	39.4	39.4	5.7	3.3

□ (휴일 근무실시) 총 4,402명의 응답자는 현 재직 시설의 휴일 근무실시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0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0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40대 여성 사회복지직 종사자(2.9점)로 근무연수가 10~20년 미만(2.9점) 종사자들이었음

〈표 5-207〉 휴일 근무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9.8	19.4	42.6	20.1	8.1	3.0
성별	여자	3,233	10.3	20.8	42.7	19.3	7.0	2.9
	남자	1,169	8.5	15.6	42.4	22.3	11.2	3.1
연령대	20대 이하	500	9.4	19.2	43.8	19.8	7.8	3.0
	30대	1,182	10.5	17.9	41.0	20.5	10.1	3.0
	40대	1,498	9.9	19.6	43.9	19.8	6.8	2.9
	50대	1,147	9.2	21.0	41.4	20.3	8.0	3.0
	60대 이상	75	6.7	16.0	52.0	20.0	5.3	3.0
직위	상급관리자	495	8.7	16.2	43.8	22.0	9.3	3.1
	중간관리자	1,131	9.7	20.0	42.8	20.1	7.4	3.0
	초급관리자	536	9.7	19.6	40.9	21.3	8.6	3.0
	실무직원	2,240	10.1	19.8	42.7	19.4	8.0	3.0
직종	사회복지직	3,128	10.3	20.6	42.4	19.3	7.4	2.9
	관리직	740	8.2	15.9	44.2	22.0	9.6	3.1
	기능직	352	9.9	16.8	39.8	22.7	10.8	3.1
	보건의료직	182	6.6	18.1	45.1	20.9	9.3	3.1
고용형태	정규직	3,908	10.0	19.1	43.1	20.2	7.7	3.0
	무기계약직	291	10.0	20.6	41.2	19.6	8.6	3.0
	비정규 기간제	182	6.6	25.3	34.1	19.2	14.8	3.1
	비정규 기타	21	4.8	9.5	52.4	14.3	19.0	3.3
근무연수	1년 미만	91	6.6	20.9	38.5	22.0	12.1	3.1
	1~3년 미만	1,273	8.9	19.2	44.1	18.2	9.6	3.0
	3~5년 미만	878	11.0	18.5	41.1	22.9	6.5	3.0
	5~10년 미만	1,088	10.6	19.8	42.2	18.8	8.7	3.0
	10~20년 미만	897	10.0	20.1	41.9	21.4	6.6	2.9
	20년 이상	175	5.7	19.4	47.4	20.6	6.9	3.0

□ (주 평균 근로시간) 총 4,402명의 응답자는 현 재직 시설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만족하는 수준인 3.5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높은 종사자) 평균 3.5점 대비 만족도가 높은 종사자들은 60대 이상 종사자(3.6점), 사회복지직(3.5점)을 제외한 관리직(3.6점), 기능직(3.6점), 보건의료직 (3.6점), 그리고 근속기간 1년 미만(3.7점) 종사자들이었음

〈표 5-208〉 주 평균 근무 시간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 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2.8	8.3	36.9	40.2	11.8	3.5
성별	여자	3,233	2.9	9.0	37.9	40.3	9.9	3.5
	남자	1,169	2.5	6.4	34.1	40.1	16.9	3.6
연령대	20대 이하	500	3.6	7.8	36.4	36.8	15.4	3.5
	30대	1,182	2.2	8.5	38.1	38.0	13.3	3.5
	40대	1,498	2.9	8.8	37.6	41.3	9.4	3.5
	50대	1,147	3.1	8.1	34.8	42.2	11.8	3.5
	60대 이상	75	·	4.0	38.7	46.7	10.7	3.6
직위	상급관리자	495	3.8	8.1	31.5	42.8	13.7	3.5
	중간관리자	1,131	2.3	8.5	37.7	41.4	10.2	3.5
	초급관리자	536	2.2	8.8	37.1	41.0	10.8	3.5
	실무직원	2,240	2.9	8.2	37.6	38.9	12.4	3.5
직종	사회복지직	3,128	3.1	9.4	37.4	39.0	11.0	3.5
	관리직	740	2.0	5.4	35.9	42.4	14.2	3.6
	기능직	352	2.6	6.5	33.2	42.6	15.1	3.6
	보건의료직	182	0.5	5.5	38.5	47.3	8.2	3.6
고용형태	정규직	3,908	2.8	8.3	37.0	40.5	11.4	3.5
	무기계약직	291	3.8	8.2	36.1	38.1	13.7	3.5
	비정규 기간제	182	2.2	11.0	31.9	40.1	14.8	3.5
	비정규 기타	21	·	·	61.9	19.0	19.0	3.6
근무연수	1년 미만	91	·	5.5	41.8	29.7	23.1	3.7
	1~3년 미만	1,273	3.1	8.7	37.4	37.8	13.0	3.5
	3~5년 미만	878	2.5	8.0	37.7	41.9	9.9	3.5
	5~10년 미만	1,088	2.8	9.0	38.3	38.0	11.9	3.5
	10~20년 미만	897	2.9	7.9	34.6	44.0	10.6	3.5
	20년 이상	175	2.9	6.9	29.1	49.7	11.4	3.6

□ (종사자 인권 보호 등 안전한 근로환경) 총 4,402명의 응답자는 종사자 인권 보호 등 안전한 근로환경에 현 재직 시설이 부합하는 정도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4점으로 평가

○ (만족도가 높은 종사자) 평균 3.4점 대비 만족도가 높은 종사자들은 60대 이상 종사자(3.6점), 비정규 임시직 등 기타(3.8점), 그리고 근속기간 1년 미만(3.7점) 종사자들이었음

〈표 5-209〉 근무 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3.9	10.4	37.2	37.1	11.4	3.4
성별	여자	3,233	3.9	11.2	37.9	37.3	9.7	3.4
	남자	1,169	3.9	8.3	35.2	36.5	16.0	3.5
연령대	20대 이하	500	4.2	9.0	33.2	39.0	14.6	3.5
	30대	1,182	4.4	10.8	37.8	34.3	12.6	3.4
	40대	1,498	4.0	10.1	37.4	39.2	9.3	3.4
	50대	1,147	3.3	11.3	38.2	35.7	11.4	3.4
	60대 이상	75		8.0	33.3	48.0	10.7	3.6
직위	상급관리자	495	2.8	7.9	28.7	43.2	17.4	3.6
	중간관리자	1,131	3.6	11.1	37.0	38.5	9.6	3.4
	초급관리자	536	4.3	9.7	37.7	39.7	8.6	3.4
	실무직원	2,240	4.2	10.8	39.0	34.4	11.6	3.4
직종	사회복지직	3,128	4.4	11.0	37.6	35.7	11.2	3.4
	관리직	740	2.6	7.4	36.4	41.4	12.3	3.5
	기능직	352	2.8	10.5	36.6	38.4	11.6	3.5
	보건의료직	182	1.6	13.2	34.6	41.2	9.3	3.4
고용형태	정규직	3,908	3.8	10.7	37.2	37.1	11.1	3.4
	무기계약직	291	4.8	10.7	38.1	34.7	11.7	3.4
	비정규 기간제	182	3.8	4.4	35.2	42.3	14.3	3.6
	비정규 기타	21		4.8	38.1	33.3	23.8	3.8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	1.1	38.5	42.9	16.5	3.7
	1~3년 미만	1,273	4.3	9.6	37.6	35.9	12.6	3.4
	3~5년 미만	878	3.8	10.9	37.5	37.1	10.7	3.4
	5~10년 미만	1,088	4.0	11.8	38.2	34.1	11.9	3.4
	10~20년 미만	897	3.7	10.8	35.9	40.5	9.1	3.4
	20년 이상	175	3.4	9.1	32.0	44.6	10.9	3.5

□ (경력개발을 통한 개인의 발전 가능성) 총 4,402명의 응답자는 현 직장의 경력개발 지원 정도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2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2점 대비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들은 60대 이상 종사자(3.1점)들이었음

〈표 5-210〉 경력개발에 대한 세부항목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3.8	13.8	46.5	28.9	7.1	3.2
성별	여자	3,233	3.6	14.7	47.2	28.4	6.1	3.2
	남자	1,169	4.3	11.4	44.3	30.2	9.8	3.3
연령대	20대 이하	500	3.4	11.6	41.6	32.0	11.4	3.4
	30대	1,182	4.2	13.7	44.8	27.8	9.5	3.2
	40대	1,498	3.9	14.2	46.5	30.1	5.3	3.2
	50대	1,147	3.4	14.7	49.3	27.2	5.3	3.2
	60대 이상	75	5.3	8.0	60.0	24.0	2.7	3.1
직위	상급관리자	495	2.6	10.5	44.2	33.7	8.9	3.4
	중간관리자	1,131	3.4	13.4	46.4	30.9	5.7	3.2
	초급관리자	536	5.0	13.1	48.1	27.4	6.3	3.2
	실무직원	2,240	4.0	14.9	46.6	27.1	7.5	3.2
직종	사회복지직	3,128	4.0	14.5	45.6	28.5	7.4	3.2
	관리직	740	2.7	12.8	47.4	30.0	7.0	3.3
	기능직	352	5.1	10.2	50.0	29.0	5.7	3.2
	보건의료직	182	2.7	13.2	50.0	30.2	3.8	3.2
고용형태	정규직	3,908	3.9	13.7	46.8	28.9	6.8	3.2
	무기계약직	291	3.8	15.5	45.4	29.2	6.2	3.2
	비정규 기간제	182	3.3	14.8	40.1	29.1	12.6	3.3
	비정규 기타	21		4.8	57.1	19.0	19.0	3.5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1	7.7	42.9	29.7	18.7	3.6
	1~3년 미만	1,273	3.5	13.3	45.9	28.3	9.1	3.3
	3~5년 미만	878	4.3	14.1	45.2	31.2	5.1	3.2
	5~10년 미만	1,088	4.5	14.6	47.3	26.4	7.2	3.2
	10~20년 미만	897	3.6	14.5	47.0	29.4	5.5	3.2
	20년 이상	175	2.3	10.3	50.3	33.1	4.0	3.3

□ (일자리 전반의 만족도) 총 4,402명의 응답자는 현 일자리 관련 모든 항목을 포괄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만족하는 편인 3.5점으로 평가함

○ (만족도가 낮은 종사자) 평균 3.5점 대비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종사자들은 2~40대 종사자(3.4점), 초급관리자 및 실무직원(3.4점), 사회복지직(3.4점) 그리고 무기계약직(3.4점) 종사자들이었음

〈표 5-211〉 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웹조사 기반)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척도 평균
전체		4,402	1.5	9.4	39.6	41.4	8.1	3.5
성별	여자	3,233	1.5	8.9	40.2	41.7	7.7	3.5
	남자	1,169	1.8	10.6	37.8	40.5	9.3	3.4
연령대	20대 이하	500	2.2	10.4	44.6	35.2	7.6	3.4
	30대	1,182	1.7	11.6	41.0	37.0	8.7	3.4
	40대	1,498	1.5	10.1	38.9	43.1	6.3	3.4
	50대	1,147	1.2	6.2	37.3	45.8	9.5	3.6
	60대 이상	75		1.3	30.7	52.0	16.0	3.8
직위	상급관리자	495	1.4	6.1	25.5	56.0	11.1	3.7
	중간관리자	1,131	1.6	7.3	40.3	43.2	7.5	3.5
	초급관리자	536	1.1	9.9	42.7	39.7	6.5	3.4
	실무직원	2,240	1.7	11.0	41.6	37.6	8.1	3.4
직종	사회복지직	3,128	1.5	10.3	40.2	40.1	8.0	3.4
	관리직	740	1.8	9.2	37.7	43.1	8.2	3.5
	기능직	352	1.1	5.1	39.5	44.3	9.9	3.6
	보건의료직	182	1.6	3.3	36.8	51.6	6.6	3.6
고용형태	정규직	3,908	1.5	9.2	39.8	41.6	7.9	3.5
	무기계약직	291	3.1	10.3	36.8	42.3	7.6	3.4
	비정규 기간제	182	1.1	12.1	37.9	37.4	11.5	3.5
	비정규 기타	21		4.8	47.6	23.8	23.8	3.7
근무연수	1년 미만	91		12.1	39.6	29.7	18.7	3.5
	1~3년 미만	1,273	2.1	10.5	40.7	37.1	9.6	3.4
	3~5년 미만	878	1.5	9.3	40.2	43.5	5.5	3.4
	5~10년 미만	1,088	1.6	10.4	41.2	39.0	7.9	3.4
	10~20년 미만	897	1.2	7.4	37.2	46.4	7.8	3.5
	20년 이상	175		4.0	30.3	57.7	8.0	3.7

□ (처우개선 사항)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1위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향상(51.3%) 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임금체계 개선(11.7%)과 단일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11.6%), 법정수당의 보조금 집행(4.9%), 보조금의 중앙정부 전환(4.2%), 법인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3.9%) 등, 보수 수준과 관련된 내용이 상위 6위까지 차지하고 있었음

○ (기타) 이외에 승진제도 마련(1.9%), 경력인정 통일성 및 적정 대체인력 지원(1.7%), 현장 종사자 협의 시스템 마련(1.4%), 직책과 직급 구분 자격 기준 강화(0.9%) 등 인사 관련 개선 사항이 뒤를 이었음

〈표 5-2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

(단위: 명, 점, %)

구분		인원(명)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지역 간 종사자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 의무화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각종 필요 수당의 신설	법정수당의 보조금 집행 인정(미사용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별로 상이한 경력인정 지침의 통일성 확보	시설별 최소 승진 연한 기준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직책과 직급을 구분하고, 직급의 자격 기준 강화	적정한 시기와 직무에 맞는 대체인력 지원	기타
전체		4,402	51.3	11.6	11.7	4.2	3.9	1.4	3.7	4.9	1.7	1.9	0.9	1.7	1.1
성별	여자	3,233	50.5	12.2	12.0	3.4	4.1	1.0	3.9	5.4	1.9	1.9	0.8	1.9	1.1
	남자	1,169	53.6	10.2	10.9	6.3	3.5	2.4	3.4	3.5	1.2	1.8	0.9	1.1	1.2
연령대	20대 이하	500	55.8	4.6	16.8	1.6	4.4	1.0	4.0	6.4	0.4	0.8	0.6	2.2	1.4
	30대	1,182	53.7	9.1	12.2	3.1	3.6	1.3	4.7	5.2	1.8	2.0	1.2	0.8	1.3
	40대	1,498	50.7	13.5	9.9	5.5	4.5	1.4	3.2	3.9	1.9	2.3	0.9	1.3	1.1
	50대	1,147	47.7	14.8	11.7	4.5	3.2	1.7	3.5	5.1	2.0	1.7	0.5	2.8	0.9
	60대 이상	75	50.7	12.0	6.7	6.7	4.0	.	2.7	8.0	2.7	1.3	2.7	2.7	.

구분		인원 (명)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지역 간 종사자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 의무화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각종 필요 수당의 신설	법정수당의 보조금 집행 인정(미사용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별로 상이한 경력인정 지침의 통일성 확보	시설별 최소 승진 연한 기준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직책과 직급을 구분하고, 직급의 자격 기준 강화	적정한 시기와 직무에 맞는 대체인력 지원	기타
직위	상급관리자	495	52.5	16.2	4.8	9.3	1.6	1.0	3.0	5.3	2.0	1.8	1.4	0.6	0.4
	중간관리자	1,131	51.5	12.9	7.7	5.5	4.2	1.1	4.5	5.6	1.9	2.1	0.6	1.3	1.2
	초급관리자	536	52.8	8.6	12.5	3.5	4.7	2.1	4.1	5.0	1.3	2.4	0.4	1.3	1.3
	실무직원	2,240	50.6	10.7	15.1	2.6	4.1	1.4	3.4	4.4	1.7	1.6	1.0	2.2	1.1
직종	사회복지직	3,128	52.2	11.3	10.9	4.0	4.1	1.3	3.9	5.5	1.7	1.7	0.8	1.5	1.0
	관리직	740	51.2	11.9	11.4	5.3	3.5	1.6	3.2	4.3	2.0	2.2	0.9	0.9	1.5
	기능직	352	42.3	15.1	18.2	4.3	2.8	2.0	3.4	1.7	2.0	2.3	0.9	5.1	-
	보건의료직	182	53.8	8.8	14.3	3.3	3.8	0.5	3.3	2.7	0.5	3.3	1.1	1.6	2.7
고용형태	정규직	3,908	51.6	11.6	11.5	4.4	3.7	1.4	3.6	5.1	1.5	2.0	0.9	1.7	1.0
	무기계약직	291	49.5	12.7	12.0	3.1	6.2	1.0	4.5	4.1	3.4	0.7	1.0	1.0	0.7
	비정규 기간제	182	50.5	9.9	16.5	1.6	4.4	0.5	5.5	2.7	2.2	0.5	0.5	1.6	3.3
	비정규 기타	21	38.1	9.5	14.3	-	4.8	4.8	-	-	9.5	-	-	14.3	4.8
근무연수	1년 미만	91	51.6	4.4	13.2	2.2	3.3	1.1	6.6	4.4	6.6	1.1	-	1.1	4.4
	1~3년 미만	1,273	50.8	10.4	15.6	3.1	4.0	1.8	3.2	4.1	2.3	0.9	0.9	1.8	1.1
	3~5년 미만	878	51.7	11.7	12.3	1.9	3.9	1.4	3.9	5.1	2.1	1.8	1.0	2.2	1.0
	5~10년미만	1,088	54.5	11.7	9.8	4.0	3.3	1.1	4.1	5.1	1.4	1.7	1.1	1.2	0.9
	10~20년 미만	897	49.4	13.4	8.2	7.4	4.3	1.0	3.7	5.2	0.9	3.0	0.6	1.8	1.1
	20년 이상	175	42.9	14.3	9.7	9.7	5.1	1.7	3.4	6.3	-	4.6	0.6	1.1	0.6

11. 이직 의사

□ (전체) 2~30대의 젊은 종사자들에서 이직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낮은 보수 수준 때문이었음

□ (이직 의사) 총 4,402명의 응답자 중 현재 재직하는 시설에서 이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종사자는 31.6%로 높은 편이었음

○ (시사점) 이직 의사는 20대 이하(44.0%)와 30대(37.3%) 등 연령이 낮을수록, 초급관리자(36.6%) 및 실무직원(34.2%) 등 직위가 낮을수록, 사회복지직과 관리직, 무기계약직(38.1%)과 비정규직 기간제(39.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213〉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이직할 의사 여부(웹조사 기반)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그렇다	아니다
전체		4,402	31.6	68.4
성별	여자	3,233	31.7	68.3
	남자	1,169	31.3	68.7
연령대	20대 이하	500	44.0	56.0
	30대	1,182	37.3	62.7
	40대	1,498	32.6	67.4
	50대	1,147	20.6	79.4
	60대 이상	75	8.0	92.0
직위	상급관리자	495	19.2	80.8
	중간관리자	1,131	29.5	70.5
	초급관리자	536	36.6	63.4
	실무직원	2,240	34.2	65.8
직종	사회복지직	3,128	33.4	66.6
	관리직	740	31.5	68.5
	기능직	352	21.0	79.0
	보건의료직	182	21.4	78.6
고용형태	정규직	3,908	30.8	69.2
	무기계약직	291	38.1	61.9
	비정규 기간제	182	39.6	60.4
	비정규 기타	21	33.3	66.7
근무연수	1년 미만	91	29.7	70.3
	1년~3년 미만	1,273	36.9	63.1
	3년~5년 미만	878	32.8	67.2
	5년~10년 미만	1,088	33.9	66.1
	10년~20년 미만	897	22.9	77.1
	20년 이상	175	18.9	81.1

□ (이직 사유) 이직 의사가 있는 응답자 1,392명에 대하여 이직 사유를 질문한 결과, 보수가 낮아서가 26.7%로 1위였고,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아서(25.4%), 조직 상하 간 의사소통이 안돼서(12.3%)의 순이었음

○ (보수가 낮은 경우) 남성, 30대, 하급 직위에서, 관리직·기능직·보건의료직에서, 무기계약직·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임시직), 3~5년 미만의 근속자에게서 상대적으로 이직 의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보수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직군이나 승진의 적체로 더 이상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계층으로 추정됨.

○ (많은 업무량 때문) 여성, 40대 이상에서, 상급관리자일수록, 기능직,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임시직), 5년 이상 근속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력이 높아질수록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이를 보완할 대안이 없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 수 있음.

〈표 5-214〉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이직할 의향이 있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인원(명)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근로시간이 길어서	보수가 낮아서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조직 상하 간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상·하급자나 동료로부터 위험을 느껴서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위험을 느껴서	학업·결혼·임신·출산·질병 등 개인 사유로	기타
전체		1,392	7.0	25.4	2.9	26.7	9.7	12.3	2.4	1.9	5.0	6.7
성별	여자	1,026	6.1	26.2	3.0	24.8	9.1	13.4	2.8	1.9	5.6	7.2
	남자	366	9.3	23.2	2.5	32.2	11.5	9.3	1.4	1.9	3.6	5.2
연령대	20대 이하	220	11.8	20.5	3.6	24.1	5.9	6.8	3.6	0.9	9.5	13.2
	30대	441	7.0	20.9	2.3	30.2	9.5	13.4	2.3	1.4	5.9	7.3
	40대	489	6.7	30.3	2.0	24.7	10.6	13.3	2.7	2.2	3.1	4.3
	50대	236	2.5	28.4	5.1	27.1	11.4	13.6	1.3	3.0	3.4	4.2
	60대 이상	6	16.7	33.3	·	16.7	16.7	·	·	·	·	16.7
직위	상급관리자	95	9.5	36.8	2.1	15.8	9.5	9.5	3.2	3.2	3.2	7.4
	중간관리자	334	6.3	32.0	1.2	19.5	11.1	15.0	2.4	3.0	4.5	5.1

구분		인원(명)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근로시간이 길어서	보수가 낮아서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조직 상하 간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상·하급자나 동료로부터 위험을 느껴서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위험을 느껴서	학업·결혼·임신·출산·질병 등 개인 사유로	기타
	초급관리자	196	7.1	33.7	4.1	23.0	8.7	9.2	2.0	0.5	5.6	6.1
	실무직원	767	6.9	19.0	3.4	32.2	9.4	12.3	2.5	1.6	5.3	7.4
직종	사회복지직	1,046	7.1	25.4	3.2	23.5	9.6	13.7	2.7	2.1	5.8	7.0
	관리직	233	8.2	24.5	1.7	33.9	12.0	8.6	2.1	1.3	1.7	6.0
	기능직	74	5.4	29.7	4.1	36.5	6.8	8.1	1.4		2.7	5.4
	보건의료직	39		23.1		51.3	5.1	5.1		2.6	7.7	5.1
고용형태	정규직	1,202	6.7	27.0	2.7	25.5	9.8	12.8	2.4	2.1	5.2	6.0
	무기계약직	111	7.2	18.0	3.6	36.0	9.9	9.0	2.7	0.9	2.7	9.9
	비정규 기간제	72	12.5	11.1	5.6	31.9	8.3	9.7	2.8		5.6	12.5
	비정규 기타	7		28.6		42.9					14.3	14.3
근무연수	1년 미만	27	22.2	14.8	3.7	29.6		3.7	7.4		3.7	14.8
	1년~3년 미만	470	9.4	22.1	5.3	27.0	6.0	12.8	1.5	1.7	5.1	9.1
	3년~5년 미만	288	5.9	21.2	2.1	31.9	12.2	9.4	3.1	2.8	6.9	4.5
	5년~10년 미만	369	5.1	30.6	1.6	24.9	10.6	13.8	2.4	1.4	4.1	5.4
	10년~20년 미만	205	5.4	27.8	1.0	22.9	12.7	14.6	2.9	2.0	4.4	6.3
	20년 이상	33		45.5		18.2	21.2	6.1	3.0	3.0	3.0	

제6장

조사결과 및 향후과제

제1절 조사결과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제 6 장 조사결과 및 향후과제

제1절 조사결과

□ (전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8가지 차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

□ (법/제도) 중앙정부는 법 개정 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 지자체는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조례 제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 1차 개정 시,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설 및 회원 자격을 규정하고, 2차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종사자 보수수준 차이 감소를 위해 인건비 실태조사를 도입, 3차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지침의 단일기준 제시와 기준설정을 위해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4차 개정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보호 관련 법률 등을 추진

○ (기초지자체) 2023년 9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5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지방 조례를 제정(제정률 96.6%)

〈표 6-1〉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동향

구분		내용
중앙정부	법 제정 (2011.3.30.)	-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 - 2012. 1. 1., 시행
	1차 개정 (2012.5.23.)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설 및 회원 자격 등을 규정, 법 4조에 규정 - 법률 제11442호, 2012. 11. 24., 시행
	2차 개정 (2018.12.1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실태 조사 및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법 제3조 제3항 등에서 규정 - 법률 제15886호, 2019. 12. 12., 시행
	3차 개정 (2021.12.21)	-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및 역할 등을 법 제3조의2에 신설 - 법률 제18617호, 2022. 6. 22., 시행
	4차 개정 (2023.3.28.)	-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의 보호 관련 내용을 법률 제3조제1항에 포함 - 법률 제19296호, 2023. 3. 28., 일부개정, 및 같은날 시행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 17개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률 100%
기초지자체	7개 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울산 등 6개 시 지자체 조례 제정률 100% · 인천 조례 제정률 90%, 세종은 기초지자체 부재
	10개 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조례 제정률 100% · 제주는 기초지자체 부재

□ (지자체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시도 및 일부 시군구 지자체에서 실시 중

○ (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소재 시설 및 종자사에 대하여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어온 설문조사 방식의 실태조사 방법을 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 방법은 기존 조사 및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기초지자체 실태조사 방법과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해 온 보수수준 등 근로여건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외 단일임금체계 등 미실현 정책수단에 대한 사례 인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음

〈표 6-2〉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수준 등에 관한 17개 광역지자체 실태조사 동향

구분	연구명	연구방법	연구내용
1	2022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연구	1.문헌연구 2.설문조사(종사자 1,053명) 3.FGI(민간/연령대별 8명,공공 4명)	1.근로여건 실태조사/연구 현황 2.근로실태/인식분석 3.연령별 근로환경인식
2	2020년 부산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1.부산시 사회복지시설과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메일 및 온라인 서베이(사회복지사)	1.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679개소/857개소) 2.사회복지사 인식조사(2,473명/4,648명)
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2.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설문조사 3.전문가 서면조사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처우실태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인식(근로환경,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 정신건강 등)
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1.문헌연구 2.종사자근로현황및실태분석(행정자료, 실태조사,476개소, 2,277명) 3.현장 전문가 자문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념 및 범위를 도출 2.사회복지시설 대상 실태조사(근로계약, 시간외 근무, 승진, 휴가, 교대제 등) 및 분석
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마련 연구	1.문헌연구 2.실태조사(203개 시설/1702명) 3.간담회 및 자문회의	1.임금체계 공무원 보수체계 비교, 단일임금 사례(서울, 제주, 부산, 인천, 비교) 2.종사자 보수분포(시설유형, 재원 종류, 서비스 대상 영역별)
6	대전광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조사	1.문헌연구(행정자료 수집과 분석) 2.설문조사(312개 시설/1,352명) 3.면접조사(FGI, 전문가 자문)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사례분석 2.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및 임금분석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안과 소요예산 추계
7	2023년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욕구조사	1.문헌연구 2.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315개소/2,577명) 3.종사자 욕구조사(1,000명) 4.종사자 심층면접	1.중앙정부 및 타시도 처우개선 관련 자료수집 2.실태분석(보수 수준, 근로조건 등) 3.욕구조사(처우전반, 보수 수준, 근로조건 등) 4.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8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행정자료 분석 2.실태조사(기관 114개소/이용자 1,148명) 3.자료포락분석(DEA), 이용의향분석	1.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역특성 파악 2.시설 및 이용현황 조사결과 분석 3.사회복지시설 효율성, 성과, 품질, 만족도 분석

구분	연구명	연구방법	연구내용
		4.품질과 만족도 분석	4.세종시 특수성에 기반한 정책 제언
9	제3차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1.문헌연구 2.설문조사(시설284개소/종사자1023명) 3.FGI 4.전문가자문	1.임금실태조사(2,234개소/14,043명) 2.종사자 설문조사(웹설문조사 4,621명) 3.문헌연구 4.초점집단인터뷰(FGI)
10	202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임금실태조사(2,234개소/14,043명) 2.종사자 설문조사(웹설문조사 4,621명) 3.문헌연구 4.초점집단인터뷰(FGI)	1.보수 수준 개선(근속기간, 경력, 실질임금 등) 2.지위향상(고충처리,이직의도 등) 3.근무환경 개선(휴가/초과근무/연차 등 보호) 4.개선방안 도출
11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마련 연구	1.문헌연구 2.종사자 임금실태조사(550개소/4245명) 3.간담회 및 자문	1.종사자 단일임금제 연구동향 및 사례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임금체계 분석 3.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및 단일임금체계 4.충북 단일임금(안) 소요예산 추계
12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1.문헌연구, 행정자료분석 2.실태조사(546개소4,267명) 3.전문가자문회의 4.심층면접조사(FIG)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선행연구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분석 3.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결과 분석 4.종사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3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선행연구 2.행정통계분석 3.급여실태(회계담당자)/복리후생(*종사자)설문조사(383개소/2639개소)	1.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현황과 쟁점 2.사회복지종사자 급여실태 분석(지역/유형/직급) 3.종사자 인식조사 분석(근무조건, 복리후생) 4.인건비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안 도출
14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근로여건 실태조사	1.문헌조사(관련법령, 행정자료, 연구보고서) 2.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설문조사 (사회복지시설 270부/종사자 736부) 3.FGI	1.전남 사회복지시설현황, 처우개선 정책동향 2.시설 근로여건 분석(시설현황, 보수지급현황) 3.종사자 근로여건 분석(근로환경, 일가정양립 등) 4.초점집단인터뷰 결과 분석
15	경상북도 사회복지거주시설 근로환경 개선방안	1.문헌조사 2.시설/종사자 실태조사(172개소/1,673명) 3.전문가 FGI	1.종사자 처우 관련 정책, 경북 시설 현황 파악 2.사회복지시설 실태 분석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식 분석 4.현장전문가 FGI 결과 분석
16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1.선행연구검토 2.전문가집단인터뷰(1차11명/ 2차17명) 3.사업 타당성 검토	1.경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파악 2.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 요구 분석 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분석 4.급여체계 개선 방안, 단일화 방안 도축
1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연구:지방이양시설을 중심으로	1.문헌연구(사례연구, 현장조사) 2.현장조사 및 심층 설문인터뷰(지방이양시설 84개소, 기관규모별 5명 이내 400명) 3.전문가회의	1.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분석 2.제주지역 근로실태조사(유형별주요업무, 투입시간, 지속기간, 투입인원) 3.직무분석(재무회계관리, 인사관리, 역량강화, 자원관리, 기관홍보, 사업기획)

□ (지자체의 정책 현황)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에 주력하는 지자체와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지자체, 그리고 가이드라인 미적용되거나 임금이 낮은 국고지원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체 호봉표를 도입하려는 지자체 등 크게 3가지 움직임이 확인

○ (조사 방법) 2023년 8월~9월, 2개월간 17개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세부 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 현황을 문서로 사전 행정조사 후, 방문 인터뷰를 통해 행정조사 내용을 확인

○ (목적)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도 추진에 따른 17개 광역지자체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

○ (주요 특징)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고지원시설 중 가이드라인이 미적용되거나 임금이 낮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낮게 적용(예: 시설장을 과장급으로 적용 등)한 지자체 호봉표 도입

- (개별계획 수립) 서울시, 세종시 등은 국고지원시설 중 가이드라인 미적용되는 시설에 한해 별도 처우개선 수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

〈표 6-3〉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정책 동향

구분	주 적용 인건비 기준
서울	‣ 서울형 단일임금체계(31 호봉제, 1~5급·관리직·기능직)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 수립·추진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지급
부산	‣ 다수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시비 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 (국비 지원시설) 호봉제 적용 ‣ 자체 사업 인건비를 준용하되 지방비로 차액을 보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쉼터
대구	‣ (시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2024년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목표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 100% 적용 목표 ‣ 급여수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96% 수준인 시설은 지방비로 차액 보전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여성·가족·청소년복지시설
인천	‣ (국비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권익시설은 인천시 호봉표 적용 - 차액은 시비로 보전하여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他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광주	‣ (시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목표율 설정 2021년 95%, 2022년 97%, 2023년 100%로 설정 ‣ 100% 준수 시 특별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폐지, 복지포인트 지급
대전	‣ 예산 부족 등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합임금체계' 방식을 검토 중

구분	주 적용 인건비 기준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대전시는 처우가 낮은 시설에 대해 별도 법정수당체계 마련
울산	‣ (시비시설) 호봉제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他 시설은 자체 사업 인건비 기준 준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세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계획 수립
경기	‣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2023년 호봉제 도입)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에 대해 도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통해 일부 보전
강원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자체사업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쉼터 - 인건비 수준이 낮은 국비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임금격차 최소화 노력
충북	‣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10호봉 상한제로 운영 - 근무기간에 따라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근무 기간 3년 미만이면 월 14만 원, 3년 이상 7년 미만은 월 15만 원, 7년 이상은 월 16만 원 지급
충남	‣ (시비시설) 호봉제 적용,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국비시설) 호봉제 도입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지자체 호봉표)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된 여성권익시설은 충남도 호봉제(18호봉)를 적용하여 월정액으로 지급
전북	‣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지자체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과장급) 및 생활복지사(사회복지급) 모두 10호봉 상한으로 적용
전남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된 여성권익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여성권익시설) 자체사업 호봉표 적용
경북	‣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지자체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모두 20호봉 상한의 호봉제 적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목표율 설정(2023년 90%, 2024년 95%, 2025년 100%)
경남	‣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 (자체사업 호봉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가족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지자체 호봉표) 여성권익시설
제주	‣ 제주형 단일임금체계 적용(연봉제) -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이양시설 108개소, 국비지원시설 110개소 ‣ 2015년에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 모두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단일화 - (급여체계) 연봉+2개 수당(가족수당, 시간외수당) - (직급체계) 9개 직급(시설장, 사무국장, 1급~7급)의 단일 직급체계 - (정원책정) 시설별·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인건비 지원

2. 보수 수준

□ (전체)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 보수액은 3,598.6만 원으로 파악되나 시설에 도입된 기타수당 금액을 적용한 실질 연 보수액은 3,789.4만 원으로 추정됨

○ (분석 대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정보에 수록된 4,739개 시설 소속 종사자 69,313명의 종사자 중 주 15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와 일용직 등 분석에 부적합한 2,259명을 제외한 67,054명의 2022년 9월 급여지급 정보를 이용해 산출

□ (수당 도입 현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지급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본급과 퇴직금 외 공식적으로 지급된 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67.0%로 가장 많았음

○ (공식 수당)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3가지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이 높은 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시설(67.7%), 생활시설(90.7%), 국고지원 시설(77.0%), 종사자 규모 31~40인 시설(80.8%) 등이었음
- 이외 지자체와 시설 자체적으로 종사자에게 지급한 기타수당의 지급률은 전체 64.8%로 명절휴가비 지급률 50.7%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보수 수준) 인건비가이드라인 상의 기본급과 공식 수당 3가지, 그리고 기타수당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은 3,805.8만 원(세전)으로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 3,340.2만 원(세전)보다 약 465.6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 실질 연 보수액에서 생활시설 종사자는 4,318.7만 원인 반면, 이용시설 종사자는 3,385.9만 원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약 932.8만 원 정도 많았음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은 4,094.2만 원이었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은 3,604.1만 원으로 국고지원시설이 약 490.1만 원 많았음

○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실질 연 보수액은 약 3,593.4만 원인 반면에 51인 이상 사업장은 연 3,146.5만 원으로 약 446.9만 원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직위) 생활시설 사회복지직 중 종사자가 가장 많은 생활지도원의 연 보수액은 약 4,021.8만 원인 데 반해, 동일 직급인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실질 연 보수액은 2,442.4만 원이었고,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4급 종사자는 3,673.1만 원이었음

〈표 6-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급여지급 항목 적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종사자 규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5인 미만	51인 이상
사례수	67,054	64,683	2,371	29,002	38,052	25,345	41,709	5,218	16,416
기본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간외근무수당	67.0	67.7	46.7	90.7	48.8	77.0	60.8	39.8	58.2
명절휴가비	50.7	50.6	51.5	53.3	48.7	50.8	50.6	32.2	49.2
가족수당	46.4	47.0	29.1	56.3	38.9	50.6	43.8	35.8	34.8
기타수당	64.8	64.6	71.7	67.0	63.2	66.8	63.6	62.6	54.5

주: 분석결과의 요약을 위해 종사자 규모 중 5~50인 시설현황 결과는 요약표에서 제외하고 표기

〈표 6-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연 보수 수준(세전 기준)

(단위: 명, 만 원)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종사자 규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5인 미만	51인 이상
사례수		67,054	64,683	2,371	29,002	38,052	25,345	41,709	5,218	16,416
가이드라인 기준	기본급	2,968.5	2,977.0	2,737.8	3,202.7	2790.1	3,067.4	2,908.5	2,975.6	2,534.9
	시간외근무수당	363.9	372.6	126.0	671.6	129.4	563.3	242.8	155.9	269.5
	명절휴가비	150.5	150.9	137.8	168.3	136.8	155.4	147.5	98.9	126.4
	가족수당	115.7	118.4	41.2	74.2	147.3	76.4	139.5	133.9	80.8
	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	3,598.6	36,18.9	3,042.9	4,116.9	3,203.5	3,862.4	3,486.2	3,364.3	3,011.5
기타 수당(퇴직금 제외)		190.8	186.9	297.3	201.9	182.4	231.7	165.9	229.1	135.0
실질 연 보수액		3,789.4	3,805.8	3,340.2	4,318.7	3,385.9	4,094.2	3,604.1	3,593.4	3,146.5

주: 분석결과의 요약을 위해 종사자 규모 중 5~50인 시설현황 결과는 요약표에서 제외하고 표기

〈표 6-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연평균 보수 수준(평균, 세전)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 수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연 보수액					기타 수당	실질 연 보수액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소계		
전체	67,054	2,968.5	363.9	150.5	115.7	3,598.6	190.8	3,789.4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176	3,330.6	713.7	184.0	85.4	4,313.6	218.2	4,531.9
생활-관리직	624	2,929.8	331.4	146.4	67.7	3,475.3	166.9	3,642.3
생활-기능직	2,863	2,602.7	609.4	137.1	62.6	3,411.8	181.5	3,593.4
생활-기타	156	2,424.9	289.6	106.5	23.8	2,844.9	101.3	2,946.2
생활-기타(계약직)	11	4,192.9	538.0	309.2	54.5	5,094.7	367.3	5,462.0
생활-기타(촉탁의사)	314	3,132.3	0.0	0.0	0.0	3,132.3	0.2	3,132.5
생활-사무국장	978	4,620.7	631.2	230.5	104.2	5,586.6	273.8	5,860.4
생활-생활지도원	11,818	2,925.9	706.7	154.7	61.5	3,848.8	173.0	4,021.8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44	3,671.0	929.0	197.7	116.8	4,914.5	230.4	5,144.9
생활-시설장	1,318	4,913.2	419.4	231.6	108.2	5,672.4	384.3	6,056.7
이용-과장	1,450	3,347.2	128.6	194.8	143.1	3,813.6	203.3	4,016.8
이용-관리직 기타	683	2,050.7	72.4	67.7	28.0	2,218.8	113.2	2,332.1
이용-관리직(계약직)	34	2,300.4	41.6	42.2	11.3	2,395.4	23.0	2,418.4
이용-관리직(장애인)	1	1,099.2	0.0	0.0	0.0	1,099.2	0.0	1,099.2
이용-관리직1급	275	3,315.0	146.0	218.0	199.1	3,878.0	223.9	4,101.9
이용-관리직2급	26	4,013.0	216.3	236.2	72.9	4,538.4	136.9	4,675.3
이용-관리직3급	275	3,417.0	203.2	225.2	212.3	4,057.7	252.6	4,310.3
이용-관리직4급	2,422	2,584.8	118.7	129.3	174.1	3,006.9	148.6	3,155.5
이용-관장	2,533	4,590.5	130.3	232.8	258.5	5,212.1	434.9	5,647.0
이용-기타	3,888	1,812.4	29.8	30.3	25.5	1,898.0	97.9	1,995.9
이용-기타(계약직)	356	1,693.5	34.1	20.3	24.4	1,772.3	41.1	1,813.4
이용-기타(미기입)	863	2,506.5	105.0	151.5	59.3	2,822.4	186.9	3,009.3
이용-기타(보육교사)	44	855.4	0.0	0.0	0.0	855.4	0.0	855.4
이용-기타(전담인력 사회복지사)	207	2,536.0	97.9	61.0	13.1	2,707.9	172.4	2,880.3
이용-기타(촉탁의사)	6	2,799.7	0.0	0.0	0.0	2,799.7	0.0	2,799.7
이용-부장	781	4,648.2	224.0	292.9	332.7	5,497.9	298.4	5,796.3
이용-사무국장	373	4,857.0	465.5	265.1	346.2	5,933.8	322.8	6,256.7
이용-사무직1급	363	4,162.0	203.0	281.4	377.7	5,024.1	256.5	5,280.6
이용-사무직2급	37	3,872.8	229.9	237.1	445.2	4,785.0	294.6	5,079.7
이용-사무직3급	384	3,478.0	162.6	219.1	206.6	4,066.3	243.2	4,309.5
이용-사무직4급	1,430	2,714.7	180.9	149.7	126.4	3,171.6	191.2	3,362.9
이용-사회복지사	10,308	2,107.9	64.8	88.3	58.6	2,319.5	122.8	2,442.4
이용-선임사회복지사	3,057	3,015.2	122.9	164.4	184.9	3,487.4	213.5	3,700.9
이용-의료직1급	26	2,534.3	66.7	168.3	78.2	2,847.4	217.5	3,064.9
이용-의료직2급	5	2,538.2	59.4	97.0	28.8	2,723.5	779.4	3,502.9
이용-의료직3급	843	3,019.7	121.6	166.0	198.2	3,505.6	162.6	3,668.1
이용-의료직4급	58	3,048.0	122.4	168.5	109.0	3,447.9	120.5	3,568.5
이용-일반직 기타	31	2,928.5	263.2	135.0	40.3	3,366.9	217.5	3,584.4
이용-일반직1급	94	4,270.8	233.1	202.3	453.8	5,160.1	278.7	5,438.8
이용-일반직2급	3,169	3,504.5	333.5	187.6	263.1	4,288.8	239.2	4,528.0
이용-일반직3급	250	3,560.1	156.6	159.4	554.1	4,430.2	210.7	4,640.9
이용-일반직4급	3,722	2,925.5	185.2	164.8	228.7	3,504.2	168.9	3,673.1
이용-일반직5급	58	2,792.3	68.7	49.3	147.0	3,057.3	147.9	3,205.2

□ (기존 실태조사 대비 보수수준 비교) 2022년 기준 전체 종사자의 실질 연 보수액은 3,789.4만 원으로, 이는 2019년 실태조사 종사자 연 보수액인 3,592.9만 원 대비 약 5.5% 상승한 금액임

○ (보수 수준 비교) 본고에서는 2020년 실태조사 때의 조사방법과 다르게 행정자료 분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시설장 설문조사 응답 내용으로 분석된 보수 수준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 연 보수액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

- (기존 실태조사) 시설장 대상 설문에서 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연 보수액과 연 기본급액, 그리고 내역이 없는 연 수당액과 연 성과급액을 세전금액으로 응답받음
- (2023년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 9월 기준 월 금액(기본급이외 기타수당 내역 합산)을 실질 연 보수액으로 환산

○ (기본급 총액) 67,054명의 연평균 기본급은 2,968.5만 원으로 2019년 종사자 9,392명의 연평균 기본급 2,863.3만 원 대비 3.7% 상승

○ (수당+성과급 총액) 기본급 외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한 총액에서는 2022년 820.9만 원으로 2019년(729.6만 원) 대비 12.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은 2019년 대비 연 보수액에서 4.2% 상승한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8.7% 상승해 약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7〉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별 급여수준 변화 분석(세전)

(단위: 만원, %)

구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금액	2013 실태조사 대비 상승분	금액	2016 실태조사 대비 상승분	금액	2019 실태조사 대비 상승분
전체		연 보수액	2,859.3	3,339.2	16.8	3,592.9	7.6	3,789.4	5.5
		연 기본급액	2,040.1	2,538.0	24.4	2,863.3	12.8	2,968.5	3.7
		연 수당+성과급액	840.1	801.2	-4.6	729.6	-8.9	820.9	1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 보수액	2,913.4	3,394.1	16.5	3,653.1	7.6	3,805.8	4.2
		연 기본급액	2,068.6	2,566.8	24.1	2,897.1	12.9	2,977.0	2.8
		연 수당+성과급액	865.2	827.3	-4.4	756.0	-8.6	828.8	9.6
	여성가족부	연 보수액	2,176.9	2,526.1	16.0	3,072.0	21.6	3,340.2	8.7
		연 기본급액	1,685.8	2,111.5	25.3	2,570.1	21.7	2,737.8	6.5
		연 수당+성과급액	503.8	414.6	-17.7	501.9	21.1	602.4	20.0
재정원천	국고지원시설	연 보수액				3,526.0		4,094.2	16.1
		연 기본급액				2,759.2		3,067.4	11.2
		연 수당+성과급액				766.8		1,026.8	33.9
	지방이양시설	연 보수액				3,654.2		3,604.2	-1.4
		연 기본급액				2,958.7		2,908.5	-1.7
		연 수당+성과급액				695.6		695.7	0.0

주: 1.2022년 연보수액은 실질 연보수액을 의미

□ (전산업 대비 월 보수액 비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임금총액은 315.8만 원으로 전산업 평균 352.6만 원 대비 약 10.4% 낮은 수준이며, 그 이유는 기본급인 정액 급여가 전체 평균보다 낮기 때문

○ (분석 기준) 월 임금총액=월 급여액+연간 특별급여, 월 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 정액급여=월 기본급, 초과급여=월 시간외수당+ 월 기타수당, 연간 특별급여=월 명절휴가비

○ (연간 특별급여) 성과급 경향의 연간특별급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균 12.5만 원으로 전체 평균 35.5만 원 대비 절반 이하 수준

○ (정액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급은 247.4만 원으로 전산업 평균 299.2만 원보다 약 17% 낮은 편으로 세부 산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초과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각종 수당액이 평균 55.9만 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 18만 원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월 급여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월평균 303.3만 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 급여액 317.2만 원보다 약 5% 정도 낮은 수준이었음

○ (월 임금총액) 하지만 명절휴가비 등 낮은 연간 특별급여액으로 인해 월 임금총액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약 9%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6-8〉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임금 비교(세전)

(단위: 천 원)

구분		월 임금 총액	월급여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158	3,033	2,474	559	125
전산업	전체	3,526	3,172	2,992	180	355
	농업, 임업 및 어업	3,113	2,748	2,667	81	364
	광업	4,298	3,917	3,487	430	381
	제조업	4,114	3,550	3,136	414	56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268	4,932	4,604	328	1,33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937	3,621	3,286	335	317
	건설업	3,094	2,977	2,889	89	116
	도매 및 소매업	3,425	3,163	3,086	76	262
	운수 및 창고업	3,583	3,228	2,934	294	356
	숙박 및 음식점업	1,707	1,681	1,615	67	26
	정보통신업	4,624	4,204	4,077	126	421
	금융 및 보험업	6,415	4,769	4,624	145	1,646
	부동산업	2,741	2,585	2,532	53	1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809	4,187	4,084	103	62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58	2,825	2,656	169	233
	교육 서비스업	3,143	2,957	2,909	48	18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23	2,611	2,501	110	1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47	2,418	2,297	121	1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67	2,501	2,434	66	167

주: 전산업 자료는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참조

3. 지급 실태

□ (지급실태) 임금형태는 총 종사자 69,313명 중 84.2%가 월급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퇴직급여에서는 30.9%가 퇴직연금을 적용 받고 있었음. 또한 급여기준으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총 4,739개 시설 중 38.9%인 1,845개소였음

○ (임금형태) 월급직 적용 비율은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종사자 84.8%, 여성가족부 소관 종사자들은 80.8%로 약 4.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원 출처) 국고지원시설의 월급직 적용비율은 88.3%인 반면에 지방이양시설의 월급직 적용비율은 81.8%로 약 6.6%p의 격차가 존재하였음

○ (급여기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비중이 높은 시설로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40.9%였지만 여성가족부의 경우 인건비가이드라인 보다는 인건비 단가지원이 39.1%로 가장 많았음

- (시설 유형) 생활시설의 경우 사업자체 호봉체계를 따른다는 시설 비율이 69.1%로 많은 반면 이용시설에서는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는 비율이 51.0%였음

○ (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 경우 소관부처나 시설유형, 그리고 재원출처에서 그 차이가 미미한 반면 퇴직연금에서는 시설구분에 따라 약 2.5p~8%p간의 격차가 존재하였음

- (한계점) 총 종사자 69313명 중 퇴직급여 형태에 대해 미기입된 경우가 약 46.0%에 달했으나 급여형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기입자들을 포함해 분석을 시도함

〈표 6-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지급실태 현황(시설 4,739개, 종사자 69,313명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명/개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임금형태	사례수	69,313	100.0	66,875	2,438	29,403	39,910	25,758	43,555
	시급직	2,287	3.3	3.2	6.0	1.5	4.6	2.1	4.0
	일급직	137	0.2	0.2	0.5	0.1	0.3	0.1	0.3
	월급직	58,386	84.2	84.4	80.8	88.0	81.5	88.3	81.8
	연봉직	8,503	12.3	12.3	12.7	10.5	13.6	9.5	13.9
급여기준	사례수	4,739	100.0	4,514	225	1,633	3,106	1,969	2,770
	사업 자체 호봉체계	1,734	36.3	36.8	33.3	69.1	19.5	38.4	35.3
	인건비가이드라인	1,845	38.9	40.9		16.0	51.0	3.6	64.1
	인건비 단가지원	88	1.9		39.1	5.3	0.1	4.5	
	지자체 호봉표	1,056	22.3	22.0	27.6	9.1	29.2	53.5	0.1
	별도기준 없음	16	0.3	0.4		0.6	0.2		0.6
퇴직급여	사례수	69,313	100.0	66,875	2,438	29,403	39,910	25,758	43,555
	퇴직연금	21,449	30.9	31.1	27.4	35.5	27.6	34.8	28.6
	퇴직적립금	15,979	23.1	23.0	24.0	22.4	23.6	23.0	23.1
	미기입	31,885	46.0	45.9	48.6	42.1	48.9	42.2	48.2

4.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전체) 인건비 교부금 신청 기준, 총 종사자 70,649명 중 기존 행정조사에서 적용된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 준수율 측정 방법을 시스템 자료로 대체하여 총 4,813명의 준수율을 측정한 결과, 101.9%였음

○ (분석 대상)) 준수율 측정 방법의 표준화 차원에서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의 준수율 측정 방법이 미적용되었던 국고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준수율을 측정

□ (유형별 준수율) 보건복지부 시설(101.4%)보다, 여성가족부 시설(107.4%)에서, 생활시설(100.9%)보다는 이용시설(103.3%)에서, 국고지원시설(96.7%)보다는 지방이양시설(107.1%)에서 준수율이 높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의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등 임금이 낮은 이용시설의 관장 및 시설장 준수율이 71.6%로 낮았기 때문

〈표 6-10〉 사회복지시설 시설특성별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813	2,631,145	2,643,057	101.9	0.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4,438	2,634,521	2,633,003	101.4	0.21
	여성가족부	375	2,591,195	2,762,037	107.4	0.23
시설 유형	생활시설	2,866	2,612,935	2,611,139	100.9	0.19
	이용시설	1,947	2,657,951	2,690,040	103.3	0.25
재원 출처	국고지원	2,413	2,685,675	2,562,198	96.7	0.20
	지방이양	2,400	2,576,320	2,724,354	107.1	0.22
지역	서울특별시	726	2,563,201	2,777,539	110.3	0.28
	부산광역시	294	2,535,030	2,596,572	104.0	0.23
	대구광역시	247	2,664,551	2,554,647	96.9	0.16
	인천광역시	220	2,548,675	2,552,898	101.3	0.17
	광주광역시	182	2,680,707	2,629,974	99.3	0.18
	대전광역시	178	2,739,712	2,605,841	96.6	0.16
	울산광역시	113	2,642,807	2,579,717	98.6	0.12
	세종특별자치시	31	2,696,613	3,098,317	115.4	0.26
	경기도	930	2,639,378	2,687,180	103.5	0.25
	강원도	228	2,721,143	2,642,723	98.5	0.16
	충청북도	231	2,688,223	2,616,220	98.5	0.18
	충청남도	241	2,642,679	2,584,758	99.4	0.21
	전라북도	240	2,685,984	2,557,093	96.1	0.15
	전라남도	241	2,593,310	2,603,899	101.3	0.16
	경상북도	331	2,583,978	2,530,636	99.0	0.18
	경상남도	286	2,693,301	2,595,339	97.4	0.15
	제주특별자치도	94	2,689,000	2,855,525	107.7	0.26

주: 국고지원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일부 여성권익시설의 시설장 기본급을 인건비가이드라인 상의 과장급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측정

〈표 6-11〉 소관부처별 종사자 중 특정 직위 및 호봉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결과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가이드라인 기본급	교부금 신청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	표준편차
보건복지부	전체	4,438	2,634,521	2,633,003	101.4	0.21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81	4,512,962	4,202,409	92.9	0.13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93	3,967,186	3,652,033	91.7	0.15
	생활-사무국장 15호봉	59	3,879,000	3,746,550	96.6	0.12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558	3,083,600	2,814,414	91.3	0.17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69	2,808,100	2,764,362	98.4	0.13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36	2,513,500	2,594,768	103.2	0.24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747	2,332,500	2,424,688	104.0	0.18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901	2,183,800	2,296,070	105.1	0.19
	생활-관리직 10호봉	17	2,440,400	2,521,529	103.3	0.08
	생활-기능직 10호봉	147	2,362,800	2,395,194	101.4	0.15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49	3,638,273	2,633,110	71.6	0.15
	이용-부장 15호봉	59	3,867,571	3,728,942	96.4	0.11
	이용-과장 10호봉	87	2,985,433	2,865,152	95.9	0.22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87	2,513,500	2,488,646	99.0	0.21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407	2,183,800	2,456,081	112.5	0.24
	이용-일반직 관장 15호동	63	4,274,700	4,055,254	94.9	0.11
	이용-일반직 사무국장 15호봉	29	4,020,800	3,849,367	95.7	0.13
	이용-일반직 1급 10호봉	5	3,375,900	2,937,194	87.0	0.13
	이용-일반직 2급 7호봉	309	2,738,500	2,658,185	97.1	0.13
	이용-일반직 3급 7호봉	13	2,513,500	2,736,981	108.9	0.17
	이용-일반직 4급 5호봉	319	2,183,800	2,614,240	119.7	0.31
	이용-일반직 5급 5호봉	3	2,151,800	2,151,800	100.0	0.00
여성가족부	전체	375	2,591,195	2,762,037	107.4	0.23
	생활-원장 센터장 20호봉	7	3,849,500	4,022,067	104.5	0.23
	생활-원장 센터장 15호봉	18	3,605,722	3,642,282	101.1	0.24
	생활-사무국장 15호봉	7	3,204,700	3,710,104	115.8	0.20
	생활-과장/생활복지사 10호봉	28	2,886,814	2,909,104	100.8	0.16
	생활-선임생활지도원 10호봉	3	2,808,100	3,362,122	119.7	0.45
	생활-선임생활지도원 7호봉	11	2,513,500	2,659,399	105.8	0.37
	생활-생활지도원 7호봉	36	2,332,500	2,541,373	109.0	0.17
	생활-생활지도원 5호봉	41	2,183,800	2,463,684	112.8	0.20
	생활-관리직 10호봉	5	2,440,400	3,036,091	124.4	0.46
	생활-기능직 10호봉	2	2,362,800	2,362,800	100.0	0.00
	이용-관장 시설장 15호봉	18	3,731,156	3,588,014	96.3	0.19
	이용-부장 15호봉	1	3,204,700	2,000,000	62.4	
	이용-과장 10호봉	46	3,047,665	3,137,261	102.7	0.20
	이용-선임사회복지사 7호봉	23	2,513,500	2,508,807	99.8	0.19
	이용-사회복지사 5호봉	129	2,183,800	2,436,246	111.6	0.25

주: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일부 여성권익시설의 시설장 기본급을 인건비가이드라인 상의 과장급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측정

□ (행정조사와 시스템 기반 준수율 비교) 행정조사 대비 국고지원시설의 시스템 기반 준수율은 약 2.6%p, 지방이양시설은 7.0%p 높은 것으로 파악

○ (국고지원시설 측정) 2023년 국고지원시설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정조사 결과의 전체 준수율은 94.1%이고 지방이양시설 측정에서 설정된 대표 직위 및 호봉 대상자만을 적용한 시스템기반 조사의 준수율은 96.7%로 나타남

- (준수율 차이 원인) 2023년 행정조사에서는 각 직위별 대표 10호봉 또는 인건비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지만, 시스템 기반 조사에서는 각 직위별 특정 호봉 기본급 금액을 측정

○ (지방이양시설 측정) 보건복지부가 2022년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한 행정조사 결과의 전체 준수율은 100.1%였지만 시스템 기반에서는 2023년 측정치로 107.1%로 나타남

- (준수율 차이 원인) 시스템기반 준수율 측정 시설 중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아동전용시설(114.1%), 노숙인종합지원센터(115.9%), 쪽방상담소(111.2%)에서 높게 나타남

〈표 6-12〉 국고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단위: %)

구 분	2023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조사	
		전체 종사자	특정직위 및 호봉 종사자
전 체	94.1	96.6	96.7
장애인거주시설	96.1	94.8	96.1
정신요양시설	92.9	99.5	99.4
지역자활센터	93.6	101.6	100.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00.0	99.3	100.0
노인보호전문기관	93.4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91.1	-	-
아동보호전문기관	95.0	101.6	104.1
학대피해아동쉼터	91.2	-	-
요보호아동그룹홈	93.2	104.5	99.3

주 1. 2023년 시스템 기반 조사의 분석 대상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은 행복e음 인건비 교부금 자료가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요보호아동그룸홈은 시스템 내 별도 구분코드가 없어 아동공동생활 자료를 이용하여 대체

〈표 6-13〉 지방이양시설에 대한 행정조사 대비 시스템 기반 준수율 측정 결과 비교

(단위: %)

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복지관)			
				사회·노인		장애인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 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2022년 행정조사	2023년 시스템기반: 특정 직위 및 호봉기반
100.1	107.1	99.1	105.8	100.6	110.1	100.5	108.4

주 2023년 시스템기반 조사의 전체 준수율 값인 101.9%는 복지관 중심 이용시설 이외의 기타 이용시설들도 포함한 산출값임

5. 시설 일반현황

□ (전체) 법인 운영률, 설립 기간 등 시설의 투명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시설 중 5인 미만 종사자 규모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대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정보에 수록된 4,739개 시설의 행정자료를 분석

○ (법인 운영률) 총 4,739개 시설 중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법인이 운영하는 비중은 86.9%였으며, 특히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법인 운영률이 92.4%로 높았음

- (설치기간) 평균 17.2년으로 설립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중 생활시설(23.6년)과 지방이양시설(18.8년)의 설치기간이 긴 것으로 파악됨

○ (종사자 수) 시설당 평균 17.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고지원시설(14.1명)보다 지방이양시설(19.2명)이 시설당 종사자 수가 약 5명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

- (특성) 여성 종사자 비중이 전체 67.4%에 달하며, 연령대에서는 20대 비중(7.8%)보다는 50대 비중(17.7%)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 종사자 비중은 23.3%였음

〈표 6-1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시설현황 분석 결과(시설 4,739개, 종사자 69,313명 기준)

(단위: 연, 명, %)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법인 운영율(%)			86.9	86.8	88.0	89.3	85.6	79.2	92.4
설치기간(연)			17.2	17.2	16.4	23.6	13.8	14.9	18.8
입소자 정원(명)			35.3	36.2	22.0	35.3		41.9	28.7
종사자 수(명)			17.1	17.3	12.9	18.3	16.4	14.1	19.2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시설(%)		38.4	38.5	36.4	31.8	41.9	49.7	30.4
	51인 이상 시설(%)		5.7	6.0	1.3	5.5	2.2	3.1	7.6
종사자 특성	연령	50대(%)	17.7	17.8	16.4	24.2	12.9	22.5	14.8
		20대(%)	7.8	7.8	7.3	6.9	8.5	6.7	8.4
	여성 종사자 비중(%)		67.4	66.5	91.9	64.4	69.6	65.8	68.4
	소속 비중(%)	생활시설	42.4	43.0	25.9	100.0		77.1	22.9
		이용시설	57.6	57.0	74.1		100.0	22.9	78.1
	대졸 종사자 비중(%)		23.3	23.2	23.8	21.3	24.7	21.9	24.1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율(%)			58.3	58.6	50.9	68.0	51.2	66.5	53.5

6. 종사자 근로 실태

□ (전체) 월 근로 현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로조건에서 고용보험 비대상자 등 비정규직 비중과 낮은 승진자 비율 등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 대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정보에 수록된 4,739개 시설, 소속 종사자 69,313명의 행정자료를 분석

○ (채용 과정) 공개채용 방식의 종사자 채용 방법을 경험한 종사자 비중이 95.6%로 나타남

○ (근로조건) 종사자 지위 상 비정규직이 전체의 20.8%, 고용보험 비대상자가 약 20%를 차지

○ (근로 현황)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 상 월평균 22.434일보다 낮은 19.7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월 시간외근무 시간은 20.5시간으로 많은편

○ (승진) 총 종사자 69,313명 중 최근 3년간 승진한 종사자는 17.4%(12,061명)로 연간인원 환산 시 4,020명이며, 이는 전체 종사자 중 5.7%만이 1년 안에 승진한다는 것을 의미

○ (교육) 종사자 기준 연 교육횟수는 11.9회, 교육시간은 연 91.6시간으로 파악됨

〈표 6-1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반 종사자 근로여건 분석 결과(종사자 69,313명 기준)

(단위: 시간, 일, 명, 회, %)

구분			전체	소관부처		시설유형		재원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생활	이용	국고지원	지방이양
근로조건	공개채용 비중(%)		95.6	95.6	96.1	96.2	95.2	95.9	95.5
	종사자 지위	정규직 비중(%)	76.2	76.3	73.2	93.7	63.4	89.0	68.7
		무기계약직(%)	2.6	2.4	8.1	0.9	3.9	2.1	2.9
		비정규직(%)	20.8	20.9	18.1	5.2	32.2	8.6	28.0
	고용보험대상자 비중(%)		80.4	80.6	75.5	83.7	77.9	82.2	79.3
근로현황	월 근로일수(일)		19.7	19.7	18.6	18.5	20.8	18.5	20.4
	월 총 근로시간		171.7	172.1	145.3	183.5	160.9	181.1	166.0
	월 소정 근로시간(시간)		151.2	151.5	137.7	147.1	155.0	145.9	154.5
	월 시간외근무시간(시간)		20.5	20.7	7.6	36.4	5.8	35.2	11.5
	월 연장근로시간(시간)		14.4	14.5	6.1	24.1	5.4	23.0	9.1
	월 야간근로시간(시간)		3.7	3.8	0.0	7.8	0.1	7.8	0.1
	월 휴일근로시간(시간)		2.4	2.4	1.5	4.6	0.3	4.4	1.1
휴가	총연차일(일)		15.9	15.6	15.7	16.3	15.4	16.1	15.7
	여성 생리휴가 비사용율(%)		25.4	26.2	9.1	32.0	20.8	25.9	25.1
	대체휴가제 운용 시설율(%)		5.9	5.8	6.7	7.9	4.8	6.7	5.3
승진	종사자기준 최근 3년간 승진경험자(%)		17.4	17.2	21.5	14.8	19.3	16.3	18.0
	시설기준 최근 3년간 승진 종사자 수(명)		6.6	6.6	6.1	6.7	6.5	5.9	7.0
교육	시설기준 최근 2년간 교육 훈련 횟수(회)		16.8	17.1	10.2	19.2	15.0	15.3	17.8
	종사자 기준 연 교육횟수(회)		11.9	11.9	11.8	12.4	11.4	12.1	11.8
	종사자 기준 연 교육시간(시간)		91.6	92.2	64.9	76.1	108.9	64.9	107.6

□ (월 총 근로시간에 대한 타 산업 비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총 근로일수는 19.7일로 전산업 전체 평균 19.6일과 수준이 비슷하나 초과 근로시간이 타 산업 대비 많아 총 근로시간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177.0시간), 제조업(174.1시간)과 비슷한 수준

○ (초과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균 20.5시간으로 전산업에서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광업(19.4시간)보다도 많은 수준

〈표 6-16〉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산업별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위: 시간, 일)

구분		총근로일수 (일)	총근로시간 (시간)	소정실근로 시간 (시간)	초과근로 시간 (시간)	휴일근로시 간 (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7	171.7	151.2	20.5	2.4
전산업	전체	19.6	154.9	147.4	7.5	2.2
	농업, 임업 및 어업	19.8	153.7	149.2	4.5	2.4
	광업	21.8	180.0	160.6	19.4	8.7
	제조업	20.4	174.1	156.7	17.4	5.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0.3	168.8	160.6	8.1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1	177.0	162.3	14.7	4.6
	건설업	16.1	128.8	125.7	3.2	0.8
	도매 및 소매업	20.1	155.9	152.4	3.5	1.1
	운수 및 창고업	20.3	164.4	152.4	11.9	3.2
	금융 및 보험업	19.8	161.1	156.6	4.5	0.4
	교육 서비스업	17.8	128.5	125.8	2.8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4	145.9	141.4	4.5	1.1

주: 전산업 자료는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참조

□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근로환경) 2022년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7시간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전인 2016년 월평균 근로시간 185.2시간보다 약 13.5시간이 감소해 개정 후 근로시간의 단축이 있음을 시사

○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제외되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용

〈표 6-17〉 2016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22년					2016년					총근로 시간 차이
		총 근로	소정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총 근로	소정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전체		171.7	151.2	14.4	3.7	2.4	185.2	132.1	18.4	17.5	17.2	-13.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172.1	151.5	14.5	3.7	2.4	184.9	131.3	18.4	17.1	18.1	-12.8
	여성가족부	145.3	137.7	6.1	0.0	1.5	186.2	130.5	17.4	21.8	16.5	-40.9
시설 유형	생활시설	183.5	147.1	24.1	7.8	4.6	188.8	132.3	20.3	19.3	16.9	-5.3
	이용시설	160.9	155.0	5.4	0.1	0.3	177.5	120.9	16.0	19.7	20.9	-16.6

주: 2016년 조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미측정하여 본고에서는 총 근로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산식으로 산출

7. 인권 및 권익보호

□ (전체) 종사자의 인권의 보장정도는 전체 5점 만점에 3.8점으로 양호한 편이나 이용자 등 폭력 경험자가 전체의 19.2%에 달하며, 신체적 건강문제 발생자(3.6%)보다는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자(8.0%)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폭력 등 위험경험 정도) 전체 5점 만점에 2.2점으로 남성 종사자(2.1점)보다는 여성 종사자(2.3점)에서 폭력 등 위험정도를 더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 (폭력 등 위험 경험자) 낮은 위험경험 정도 대비 폭력 등 위험경험자는 전체 응답자 4,402명 중 19.2%였으며, 특히 보건의료직(21.4%)과 사회복지직(21.0%)에서 위험경험자 비중이 높았음
- (위험 경험 유형) 위험경험자 844명의 경험 위험유형으로는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신적 직업병(41.9%), 상급자의 부당한 대우(29.3%), 신체적 직업병(18.2%)의 순이었음

○ (건강 문제) 근무 중 발생한 건강 문제에서는 신체적 문제 발생자(3.6%)보다는 정신적 건강문제 발생자가 전체 종사자 중 8,0%로 많았음

- (병원 치료) 신체적 건강 문제 발생자가 2.9%인 반면 정신적건강 문제 발생자는 1.6%로 약 1.3%p 낮았음

○ (진료비용) 신체적 건강문제로 진료를 받은 총 126명의 종사자 중 94.4%가, 정신적 건강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총 71명 중 84.5%가 개인 비용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

〈표 6-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건강문제 분석 결과(종사자 4,402명 기준)

(단위: 명, 점, %)

구분		전체	고용형태		직종				종사자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보건의료직	남	여
사례수		4,402	3,908	182	3,128	740	352	128	1,169	3,233
인권보장	인권보장정도(점)	3.8	3.8	4.0	3.8	4.0	3.8	3.8	3.9	3.8
	폭력 등 위험경험 정도(점)	2.2	2.2	1.9	2.3	2.0	2.0	2.3	2.1	2.3
	폭력 등 위험 경험자(%)	19.2	19.6	9.9	21.0	13.6	13.4	21.4	17.6	19.7
치료	신체적 건강 문제 발생자(%)	3.6	3.4	1.6	3.5	2.7	4.5	4.9	3.2	3.6
	- 병원 치료자(%)	2.9	2.7	1.1	2.8	2.6	3.7	3.8	2.4	3.0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자(%)	8.0	8.1	4.4	9.1	5.4	3.4	8.8	5.9	8.8
	- 병원 치료자(%)	1.6	1.5	1.6	2.0	0.4	1.1	1.1	1.3	1.7

8. 종사자 처우개선 대한 수요 파악

□ (근로환경) 고용형태와 직종, 종사자규모에 따라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고용형태) 대체인력 지원사업 이용률, 입사 후 승진율, 호봉제 적용률, 법정교육 참여율 등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기간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종) 기능직의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22.3시간), 입사 후 승진율(19.1%) 등에서 타 직종 대비 차이가 존재

○ (종사자규모) 「근로기준법」 미적용 시설인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미실시율, 호봉제 적용율, 입사 후 승진율과 기간 등에서 대규모 사업장 대비 격차 존재

□ (일자리 만족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현 일자리에 대해 보통 이상 만족(3.5점)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직 의사가 31.6%에 달함

○ (세부만족도) 보수 수준(2.6점)과 승진기회(2.9점), 휴게실 등 부대시설(2.9점)이 가장 낮았음

○ (시급 과제) 보수 수준과 관련된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향상(51.3%), 임금체계 개선(11.7%), 단일임금체계 구축(11.6%) 등 보수 수준에 관한 내용이 약 75%임

〈표 6-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에 대한 수요조사 주요 분석 결과(종사자 4,402명 기준)

(단위: 시간, 일, 점, %, %p)

구분		전체	고용형태		직종				종사자 규모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보건의료직	5인 미만	51인 이상
사례수		4,402	3,908	182	3,128	740	352	128	1,170	367
시간외 근로	시간외근로 실시율(%)	75.2	78.4	47.8	74.2	76.5	77.3	82.4	62.6	82.6
	월평균 시간(시간)	17.4	17.7	15.0	17.2	16.1	22.3	16.2	17.0	15.1
	인정시간(시간)	17.5	17.8	12.2	16.8	17.2	24.0	18.3	15.3	17.0
	통상임금 1.5배 수당 지급율(%)	40.0	40.3	39.1	38.9	45.6	36.8	40.7	35.4	41.9
휴가	연차 발생일(일)	14.5	15.0	6.7	14.3	15.0	14.7	16.5	13.1	16.9
	연차 미사용일(일)	1.5	1.5	0.8	1.5	1.7	1.0	0.8	1.7	1.6
	관공서 공휴일 미사용(일)	1.9	2.0	1.0	2.3	1.0	1.8	0.5	2.9	0.9
	대체인력 지원사업 인지율(%)	84.0	85.4	65.9	84.4	85.4	79.3	80.8	83.2	86.9.
	대체인력 지원사업 이용율(%)	21.9	22.2	18.3	21.5	20.9	30.8	17.0	20.1	22.6
	미이용사유: 직무 부적합(%)	30.6	31.6	17.2	29.7	34.6	26.5	35.8	28.4	31.4
	일가정양립제도 미실시율(%)	14.9	13.6	27.5	16.9	11.5	9.1	4.9	24.0	0.8
보수 수준 및 처우	현재 호봉제 적용율(%)	90.5	93.2	68.1	89.9	93.4	88.6	93.4	83.8	97.0
	보수 수준 향상시 호봉제 선호율(%)	78.3	78.6	74.7	78.9	77.6	77.0	74.2	81.2	71.7
	현재 대비 호봉제 감소율(%p)	-12.2	-14.6	16.6	-11.0	-15.8	-11.6	-19.2	-2.6	-25.3
	보수 수준의 미적정율(%)	65.5	65.3	67.0	66.9	64.3	56.3	63.7	67.4	71.9
	사회복지직공무원 임금수준 선호율(%)	68.6	68.7	63.9	68.6	70.0	71.2	58.6	67.0	71.2
승진	내부규정 존재율(%)	53.4	55.9	33.5	52.0	60.0	50.6	55.5	40.6	69.8
	입사후 승진율(%)	45.7	47.4	6.6	49.9	42.8	19.1	37.6	40.7	52.3
	입사후 승진기간(년)	6.9	6.98	1.0	6.61	8.08	6.82	7.32	6.42	8.25
	승진요소 TO 비중(%)	40.9	41.1	75.0	42.3	38.4	23.5	39.5	37.1	41.0

구분		전체	고용형태		직종				종사자 규모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보건의료직	5인 미만	51인 이상
업무량	인력 부족율(%)	63.3	64.8	39.6	63.9	63.5	58.2	62.1	57.7	70.6
	인력배치기준 부적합(%)	63.5	64.0	65.3	63.4	64.3	63.9	61.1	62.1	97.6
일가정양립	임신여성의 시간외금지율(%)	57.9	57.6	62.6	57.5	52.2	65.1	73.6	59.1	57.2
	육아휴직제도실시율(%)	80.6	81.9	67.6	78.3	84.6	86.4	92.3	69.0	98.4
	동일자녀 육아휴직 2년사용(%)	56.8	57.7	51.6	54.0	61.2	66.8	67.0	45.4	74.9
	육아근로시간단축 실시율(%)	56.7	57.2	53.3	54.9	59.1	63.9	64.8	45.4	76.8
	유연근무제도 실시율(%)	48.9	49.0	48.4	47.5	50.0	56.3	53.3	44.1	54.8
	가족돌봄 휴가,휴직 실시율(%)	56.5	57.0	50.5	54.4	60.5	63.4	61.5	45.1	79.0
교대제 근무	당직제 참여율(%)	22.7	23.7	15.4	22.5	23.1	19.9	30.2	21.6	26.4
	별도 당직인력 고용율(%)	6.5	6.7	3.6	7.0	6.4	5.7	1.8	7.9	6.2
	4조3교대제 운영률(%)	11.3	10.9	18.2	11.2	11.1	14.0	8.3	5.7	17.6
역량개발	직무관련 규정 유치율(%)	72.1	72.2	74.2	71.5	73.0	73.3	78.0	69.9	78.5
	교육 참여율(%)	96.3	97.1	79.1	96.6	96.5	91.2	98.9	95.7	97.5
	법정교육 횟수(회)	6.73	6.80	5.46	6.80	6.57	6.12	7.26	6.54	7.51
	직무교육횟수(회)	3.70	3.69	3.28	3.73	3.57	3.67	3.64	3.60	3.92
	자격관련보수교육횟수(회)	1.58	1.56	1.81	1.51	1.69	2.06	1.76	1.62	1.57
	경력개발프로그램 설치율(%)	42.4	43.3	33.5	44.2	40.0	33.5	39.0	39.5	56.4
일자리만족도(5점 만점)	전반적 만족도(점)	3.5	3.5	3.5	3.4	3.5	3.6	3.6	3.5	3.5
	담당업무 및 업무량(점)	3.3	3.3	3.5	3.3	3.4	3.4	3.5	3.3	3.4
	보수(점)	2.6	2.6	2.7	2.6	2.6	2.7	2.7	2.6	2.6
	상급자와의 관계(점)	3.6	3.6	3.5	3.6	3.6	3.7	3.6	3.6	3.7
	동료와의 관계(점)	3.9	3.9	4.0	3.9	3.9	3.9	3.9	3.9	3.9
	하급자와의 관계(점)	3.8	3.7	3.8	3.8	3.8	3.8	3.7	3.8	3.8
	사설장/중간관리자와 의사소통(점)	3.5	3.5	3.5	3.5	3.5	3.6	3.5	3.6	3.5
	종사자 간 의사소통(점)	3.7	3.7	3.8	3.7	3.7	3.7	3.6	3.8	3.7
	고용안정(점)	3.8	3.8	3.1	3.7	3.9	3.9	4.0	3.6	4.0
	승진 기회(점)	2,9	2.9	2.9	2.9	3.0	2.8	2.9	2.9	3.0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점)	3.5	3.5	3.5	3.6	3.5	3.4	3.4	3.5	3.6
	원하는 부서에 근무 여부(점)	3.5	3.5	3.6	3.5	3.5	3.7	3.7	3.5	3.5
	부대시설(점)	2.9	2.9	2.9	2.8	3.0	3.0	3.0	2.8	3.0
	중요한 결정 영향력(점)	3.3	3.3	3.3	3.3	3.3	3.3	3.3	3.4	3.3
	업무에 대한 책임성(점)	3.8	3.8	3.8	3.7	3.7	3.9	3.9	3.8	3.8
	후생복지(점)	3.0	3.0	3.0	3.0	3.0	3.1	3.0	2.9	3.1
	담당하는 일에 대한 보람(점)	3.7	3.7	3.8	3.7	3.7	3.9	4.0	3.7	3.8
	여가 등 시간적 여유(점)	3.2	3.2	3.3	3.1	3.3	3.4	3.4	3.1	3.3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것(점)	3.0	3.0	3.1	2.9	3.1	3.1	3.1	2.9	3.1
	주 평균 근로시간(점)	3.5	3.5	3.5	3.5	3.6	3.6	3.6	3.5	3.6
	안전한 근로환경(점)	3.4	3.4	3.6	3.4	3.5	3.5	3.4	3.4	3.4
	경력개발등 개인 발전가능성(점)	3.2	3.2	3.3	3.2	3.3	3.2	3.2	3.2	3.2
시급과제	가이드라인 수준상향(%)	51.3	51.6	50.5	52.2	51.2	42.3	53.8	51.1	55.0
	임금체계 개선(%)	11.7	11.5	16.5	10.9	11.4	18.2	14.3	11.7	13.1
	단일급여체계 구축(%)	11.6	11.6	9.9	11.3	11.9	15.1	8.8	12.1	11.4
이직	이직의사 종사자(%)	31.6	30.8	39.6	33.4	31.5	21.0	21.4	67.9	71.4
	- 이직이유(낮은 보수)(%)	26.7	25.5	31.9	23.5	33.9	36.5	51.3	28.2	26.7
	- 이직이유(업무량)(%)	25.4	27.0	11.1	25.4	24.5	29.7	23.1	21.9	26.7

제2절 연구의 향후과제와 한계점

□ (개관) 행정자료 분석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 과정 및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정책 방향과 수단과 연구과정 상의 한계점 및 보완 등 2가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 추진이 요구됨

1. 향후 정책방향과 수단

□ (정책방향 : 근로여건 격차 해소) 보수 수준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근로조건의 격차 해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보수 수준 정책)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 유지와 공무원 임금인상률 반영 후, 시설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을 지속해 온 결과, 지방이양시설은 2022년 100.1%, 국고지원시설은 2023년 94.1% 수준

○ (광역지자체 보수 수준 정책)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이양시설 대비 국고지원시설에 대한 낮은 임금 보완을 위해 지자체 재원으로 보전 등 보수 수준의 시설유형간 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세부시설간 격차)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일부 아동시설과 여성권익시설 등 국고지원시설들에 대해서도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호봉표 도입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에 주력

○ (국고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대비 인건비 수준이 낮은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상당 부분 5인 미만의 종사자 규모가 작은 시설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에 포함되어 기타 시설유형과의 격차 해소가 단순히 보수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임

- (행정자료 분석결과) 분석 대상시설 4,739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38.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사자는 전체 69,313명 중 약 7.7%를 담당

○ (근로여건 격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근로여건은 고용보험대상자 비중 (74.6%), 생리휴가 비사용율(10.3%), 연 교육시간(74.3%), 경력개발프로그램 참여율(39.5%), 호봉제 적용률(83.8%), 입사 후 승진율(40.7%), 인력 부족률 (57.7%) 등 다양한 근로 여건에서 기타 규모 시설 대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정책 대안) 종사자 규모 차이에 따른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격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여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업지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 (정책수단 1: 임금수준 비교 대상 조정 검토)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의 기준 대상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서 일반 근로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종사자 보수 수준 욕구) 이번 실태조사에서 4,402명의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종사자들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보수 수준이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가이드라인의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51.3%에 달함

○ (보수 수준 비교대상) 2009년 도입된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었으며, 이후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에서 종사자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왔음

○ (공무원 임금상승률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상승률은 일반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아닌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을 매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도입 초창기에는 임금수준이 대폭 상승했으나, 이후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적용받아 임금상승 폭이 낮음

○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정보에 있는 총 39,80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에서 실제 지급받는 기본급 대비 교부금 기본급 비중은 69.3%로 시설에서 인건비가이드라인과는 별도의 기본급 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비교 대상의 검토 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비교 대상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전체 산업 평균 근로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 (정책수단 2: 인건비가이드라인 내용 수정)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수 수준 중심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권고안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 및 기타 근로여건과 관련하여 개선할 과제가 존재

○ (기본급 구성 내용 삭제) 보건복지부는 2009년 임금가이드라인에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하였다고 명시

- (기본급 구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기본급에는 어떠한 수당도 포함될 수 없음
- (가이드라인 수정) 임금가이드라인의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42]에 대한 기본급으로 "2009년 임

42)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이며, 1주일 5일근무라면 8*5=40시간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며, 1일의 주휴 유급휴가로 일주일 평균근무시간(40시간/5일 = 8시간) 1일치를 더해 1주일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됨.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에 365일을 12개월로 나눈후 7일(1주일)을 나누면 월당 평균 주수(4.345

금가이드라인에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함"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급액 명시)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산정 방법만 명시하였을 뿐 지급금액과 기준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간·시설유형간·직군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균적인 시간외근무를 명시하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구속력 한계) 현행 인건비가이드라인 조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시설의 특정 직위 호봉 근무자에 대한 기본급 지급률을 조사하고 있어, 전체 종사자에 대한 준수율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조사 형태로 변경하거나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승진 한계) 인력배치라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 인원이 결정된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시설간·지역간 승진 적체는 보수 수준의 격차 및 지역 및 시설간 인력이동의 어려움을 유발함으로 전체 시설에 대해 직급과 직위를 구분한 당연승진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

- (승진제도 부재) 가이드라인 내 시설유형별 기본급 기준에서 생활시설의 관리직과 기능직은 이용시설의 의료직과 사무직, 관리직, 기타 직종과 달리 직위 구성이 부재하여 승진제도가 미적용됨으로써 보수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인력이동의 한계) 승진을 위한 경력산정은 동일 시설(법인) 내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하므로 사회복지시설간·지역간 경력 활용이 불가하여 경직적인 인력 이동시스템의 원인으로 작용해 특정 시설이나 지역 편중 현상이 발생
- (당연승진제도 도입) 직급과 직위를 구분하고, 직군별로 일정 소요 연수에 이르면 정원과 무관하게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당연승진제도를 도입하되, 직위는 당해 직급 내에서 리더십을 갖춘 인력에게 보직을 할당하여 직무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수단 3:인력배치기준 검토) 현 시설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지출 비율 상승과 당직제 및 교대제 운영, 그리고 대체휴가제 형태를 고려 시, 현 인력배치기준의 수정 여부 및 대체인력지원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기본급 대비 시간외근무 수당 비중) 급여정보에 수록된 종사자 기본급 대비 시간외근무수당 비중은 전체 종사자 67,054명 기준, 12.3%이고, 생활시설은 20.9%(월 기본급 3,202.7천 원. 시간외근무수당 671.6천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종사자 4,042명에게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기준 1.5배가 아닌 기본급이나 지자체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주= 365일(1년) ÷ 12개월(월수) ÷ 7일(주수))로 월당 평균 주수와 1주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도출됨(1월= 48시간 X 4.345주 = 208.56 시간≒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급여의 가장 기본이 되며 모든 통상임금의 기초 자료로써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됨.

는 의견을 고려한다면 향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

○ (대체휴가제 운영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시설정보에서 대체휴가제 운영시설은 총 4,739개 시설 중 5.9%이며, 생활시설은 전체평균보다 조금 높은 7.9%(129개소)로 파악됨

○ (당직제 참여근로자 비중) 총 4,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사자 근로환경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전체 종사자 중 22.7%가 일상 근무 후 당직 근무제에 참여한다고 응답했으며,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36.9%였음

- 당직근무제 운영 방법으로는 직원들이 순번제로 당직을 한다는 비중이 84.2%였고 별도 당직인력을 고용해 운영한다는 의견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당직근무 보상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의견이 45.8%였고,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의견은 20.1%였음

○ (교대근무제 근로자 비중) 또한 총 4,042명의 종사자 중 12.8%, 생활시설의 경우 26.4%가 교대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기준에 적합한 4조 3교대 운영 형태는 교대근무자 564명 중 11.3%에 불과

○ (인력 부족) 총 4,042명의 종사자 중 63.3%가 현재 근무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부족 이유 중의 1순위는 사업복지시설 관련 법령이나 사업 지침의 직원 정원에 관한 배치기준이 잘못되어서가 63.5%였음

○ (정책 방향) 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 상승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상승시킨다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종사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는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생활시설은 인력배치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그리고 이용시설은 대체인력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책수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타제도 활용) 4일 이상 치료가 동반되는 신체적 재해 발생 시, 중복되는 의료비 지원만 배제하고 단체상해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두를 적용하되, 심리적 치료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사업 지침화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제도 적용) 정신적 치료 및 보상 등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 단가 등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보장 담보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정신적 재해) 4일 이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지원 등 정신적 치료·보상이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제도로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 의무를 사업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단 5: 휴가 미사용 대안 마련) 연차휴가, 관공서공휴일 등 법정휴가·휴일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원칙이며, 미사용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하지만, 연차 휴가 1.45일, 관공서공휴일 1.95일을 미사용하고 있어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 (휴가 미사용 현황) 연차휴가 및 관공서공휴일 미사용은 60대 이상, 상급관리자, 근속기간에서 10년 이상 근속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미사용 이유는 업무량 때문으로 파악(83.7%). 미사용 휴가는 대체휴가나 보상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대체휴가나 그 어떤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35.3%를 차지

○ (대체인력제도 활용 강화) 휴가의 미사용은 전체의 83.7%가 업무량이 많고, 대체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고 응답.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 휴가·휴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 (정책수단 6: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방법 수정) 현재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간의 측정방식을 이번 실태조사 측정방법으로 통일화하는 한편, 측정대상 호봉은 변경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 측정방식) 국고지원시설 중, 호봉제 미 보유시설은 가이드라인 직위별 평균 호봉과 기본급과 확보예산간의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음

- (국고지원시설 중 호봉제 보유시설) 각 직위별 10호봉을 대표 호봉으로 선정해 비교
- (지방이양시설)은 특정시설의 측정 직위의 호봉에 대한 기본급에 대해 교부금 지급률을 지자제에 의뢰하여 행정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옴

○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내, 개인별 교부금 정보와 인건비가이드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체 사회복지시설과 소속된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준수율 측정이 진행되어 범위와 측정방식의 통일성을 확보함

- (측정대상) 준수율 측정대상 총 70,649명 중 현재 지방이양시설 측정대상 방식을 적용한 준수율 측정대상은 6.8%인 4,813명에 불과했음

2. 연구의 한계점과 보완과제

□ (배경)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12.11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4항에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 노력 및 인건비 준수율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설문지 조사방법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시스템 자료 분석 의의) 기존 설문조사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개인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과 국고지원 및 지방이양시설간 준수율 측정 방법의 통일화, 그리고 행정조사 기반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부담감 감소 차원 등에서 추진

□ (한계점) 이 과정에서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 문제와 측정변수 값들의 비표준화 문제, 그리고 행정자료의 적합성 부족과 주요 비교변수들의 측정방식 불일치성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

□ (분석자료의 모집단 대표성 확보) 본 조사에서는 보수수준의 경우, 총 4,739개 시설의 67,045명의 종사자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인 14,131개 시설 종사자의 전체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조사의견이 제기되어 차후 분석 시 다음 확인 과정이 요청됨

○ (급여 데이터의 대표성 검증) 급여분석에 사용된 총 67,045명의 급여 데이터가 2022년 9월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총 101,179명의 급여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지와 2020년 급여 결과와의 비교분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급여 데이터를 분석

○ (데이터 처리결과) 2022년 9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내 수가제외 시설 종사자 68,482명의 98.0%인 67,054명이 급여분석 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

- (보수 수준) 수가제외 시설 68,482명의 월 평균 보수액은 315.7만 원으로 급여분석 시설 종사자 월 평균 보수액인 315.8만 원과 약 1천 원 정도의 차이가 존재
- (2020년 대비) 2023년 전체 종사자의 연평균 보수액은 3,46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이중 급여분석 수가시설은 5.5% 상승해 상승격차가 1.2%p로 파악됨

〈표 6-2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정보 데이터 검증 처리결과와 월 보수수준

(단위: 명, 원)

구분	종사자수	기본급	일용 잡급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기타수당	월 보수액
전체	98,908	2,293,327	11	262,588	67,945	548,752	168,480	2,883,809
수가 제외 시설	68,482	2,474,312	15	301,332	95,661	750,015	160,914	3,157,236
수가시설	30,426	1,885,971	3	175,384	5,563	95,754	185,508	2,268,389
급여분석 시설	67,054	2,476,974	0	302,979	96,451	753,666	158,994	3,157,791

주: 전체 종사자수 101,179명에서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와 일용직 2,271명을 제외하고 분석

〈표 6-21〉 2020년 대비 2023년 전체 조사 대상의 보수 수준

(단위: 명, 원)

구분	'23년 조사		'20년 조사	
	월 평균보수액(만원)	연평균보수액(만원)	연평균보수액(만원)	증가율(%)
전체 시설	288.3	3,460	3,243	6.7[43]
급여분석시설(수가제외시설)	315.7	3,789	3,593	5.5

□ (측정변수들의 비표준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종사자 보수수준 측정을 위한 항목들과 근로여건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직위 정보들이 시설에서 임의적으로 기입하는 등(예: 간병원) 전체 시설 종사자의 직위가 비표준화되어 있어 분석 기준 측정변수 설정에 많은 노력이 요구

□ (행정자료의 적합성 부족) 종사자 인건비 준수율 측정에 행복e음시스템의 인건비 교부금 지급 자료가 아닌 신청자료 사용으로 인해 준수율 결과에 대한 타당성에 한계가 존재

○ (급여정보 활용가능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 급여정보에서 종사자 기본급 등 지급정보가 존재하지만, 지급된 종사자 기본급에는 인건비 교부금 이외, 자체 조달 재원 등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준수율 측정시 과다계상되는 결과가 추출

□ (주요 비교변수들의 미통일화) 보수수준, 월 총근로시간 등 주요 정책관리 변수에 대해 기존 설문조사방식에서 측정한 변수와 행정자료 상의 변수가 동일하지 않아 기존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조사결과 간의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

○ (보수수준)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보수수준에서 연 총 수당지급액만을 조사했지만, 이번조사에서는 총 수당항목을 기본 3종과 기타수당으로 구분함

○ (근로여건)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총 월 근로시간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측정하였지만 이번 행정자료 조사에서는 월 소정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자료만이 존재해 비교 시, 별도 측정변수를 포함해 비교를 시도

□ (보완과제: 정책제언) 향후, 행정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입력정보 값에 대한 제도적 표준화가 필요

○ (활용 극대화) 기존 시설장 및 시설에 속한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로 진행되어온 기본실태조사와 달리 이번 실태조사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료로 대체한 이유는 행정자료의 풍부성과 개인별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

43) (유의사항) '20년 조사의 모집단 구성과 '23년 조사의 모집단 구성 차이로 인해 1%p.의 보수금액 증가 발생 (수가제외시설 비중 '20년 66% → '23년 69%). 이를 제외한 전체시설의 보수수준 실제 증가율은 5.7%로 계산됨

○ (인건비 항목 값의 표준화) 시설별로 기본급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월급, 기본급, 봉급 등과 같이 비표준화된 항목으로 다수 활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시급함

- (표준화 분야) 범주화 항목 중에서 기본급 이외 다양한 수당 항목들도 표준화가 필요

○ (직위 항목 값의 표준화) 종사자 직위 항목들에서도 특정 종사자의 경우 직위가 2개 이상(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로 기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해 이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

참고문헌

강창현(2006), 지역 주거복지전달체계의 통합, 조정, 네트워크, 한국행정논집, 561-584,

권용신·최권호·김제선·이상우(2021),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 경북행복재단.

권혜영·이선정·이웅·긴은경·김동순(202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김기훈(1996), 「복지정보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센터.

김선미·이정랑·정덕진·최인덕(2020),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김유경 외(2020),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실태 조사.

김응철(1997), 「사회복지정보화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희·오종님(2020),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마련 연구, 광주복지재단.

김학만·권정만(2020),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 체계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4호, pp.63-86.

류주연·권소일·정희수·김기수(202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박영란·유태균(1996), 사회복지기관의 정보화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 겨울호: 93-101.

박형존 외(2020),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사회서비스 공통 업무 안내.

보건복지부(2023),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 결과 내부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서동명·윤재영·이방미·김민재 외(2023), 2022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성규탁(1993), “복지행정론”, 법문사,

손지현·김선희 외(2021), 2020년 부산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신복기·이명현·강대선(2009), “노인복지시설의 컴플라이언스 활성화를 통한 조직 신뢰 증진방안”, 사회복지정책, 36(2), 391-417,

신원식·권현수·백종규(2019),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오민수·조해진(2019),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복지재단.

오민수·박예온(2020),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경기복지재단.

오민수·김주연(2021),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경기복지재단.

오민수·김주연·장다흰(2022),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경기복지재단.

오민수·김주연·장다흰(2022), 202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23년~'25년) 수립 연

구, 경기복지재단.
오민수·장다흰(2023),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 보수지급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연구, 경기복지재단.
오윤정·박정훈 외(201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지방이양시설을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용태희·김용민(2017),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근로여건 실태조사, 전남복지재단.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202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라운드테이블」 자료집,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13-24pp.
이도희·조우연(2006), 지역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조정, 네트워크, 한국행정논집, 561-584,
이종우 외(2022),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 한국재정분석연구원.
이중섭·조경옥·송용호(2022),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이진숙·조성숙·엄태영·최권호·박순만·이승희(202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이철선 외(2021),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방식 개선 연구.
장중탁(1998),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의 성공모형개발」,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해봉(2009),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만족도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현수·조아라·이상우(2022),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강원도
정기억·이동만(1995),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경영정보학연구,2(2),259-288.
정윤수(2005), 지식정보사회의복지, 의료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남연구원(2016), 서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서천군.
충북연구원(2020),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
최은영·성은수·유호선·이선형(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미래가족의 복지 기능 변화 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2018),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은희·박규범·전연진·전영호(20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철희(20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정도가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홍재은·방혜선·윤혜미(2019),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보고서, 청주복지재단.

부록.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에 관한 종사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수준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본 조사는 조사 대상시설로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시설장이 추천한 사회복지직, 관리직, 기능직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고, 개인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본 조사에 참여하시는 종사자들께서는 중요성을 고려하시어 바쁘시더라도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네오데이터월드
문의처 : 네오데이터월드: 02-578-7370 yeon7702@hanmail.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4-287-8334 jsjeong1992@kihasa.re.kr

□ 조사대상 시설 일반사항

시설명	성명	직종	연락처(전화번호)
		① 사회복지직 ② 기능직 ③ 관리직	메일주소: 연락처:

*** 조사 대상시설에서 설문에 참여하시기로 결정된 종사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근로조건 및 보수 처우

【Ⅰ-1. 근로조건: 고용】

1. 귀하의 고용 형태는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 1) 정규직 ☐ 2) 무기계약직 ☐ 3)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 4) 비정규직-일용직 ☐ 5) 비정규직-기타

☞ **고용 형태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근로하는 근로자),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이 2년 이상 되어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비정규직(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2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직, 또는 시간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제, 일정 기간 임시로 근로를 제공하는 임시직 및 1일 단위 계약의 일용직 등을 말함) 등이 있습니다.**

2. 귀하는 입사 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1) 작성하였다 ☐ 2) 작성하지 않았다

3.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취업규칙이 있습니까?

☐ 1) 있다(→문 3-1번) ☐ 2) 없다(→ 문 4번) ☐ 3) 모름(→ 문 4번)

☞ **취업규칙이란, 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예: 사규, 인사 규정, 복무규정)을 정한 시설의 규정을 말합니다.**

3-1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변경서)를 작성하십니까?

☐ 1) 작성한다 ☐ 2) 작성하지 않는다

4. 귀하께서 보유한 자격증 중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 입사하면서 필수 채용요건이었던 자격증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표기하여 주십시오.

☐ 1) 자격증 없음 ☐ 2) 사회복지사 1급
☐ 3) 사회복지사 2급 ☐ 4)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2급
☐ 5) 의료사회복지사 ☐ 6) 학교사회복지사
☐ 7) 특수교사 ☐ 8) 청소년 지도사
☐ 9) 장애인 재활상담사(직업재활사) ☐ 10) 간호사
☐ 11) 간호조무사 ☐ 12) 물리치료사
☐ 13) 요양보호사 1~2급 ☐ 14) 정신보건간호사
☐ 15)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16) 의사
☐ 17) 영양사 ☐ 18) 치료사(심리, 언어, 작업 등)
☐ 19) 보육교사 ☐ 20) 상담원(가정폭력, 성폭력)
☐ 21) 전문상담사 1~2급 ☐ 22) 통번역사
☐ 23) 언어재활사 ☐ 24) 시설관리 관련자격(방화관리자, 조리사, 전기, 운전기사 등)
☐ 25) 기타 (적을 것: _____)

【 I -2. 근로조건: 근로시간】

5. 귀하께서는 23년 8월 기준, 현재 1주일(7일) 중에 평균 며칠을 근무하십니까?

☐ 1) 6일 ☐ 2) 5일 ☐ 3) 4일 ☐ 4) 3일 ☐ 5) 2일 ☐ 6) 1일 ☐ 7) 기타( )

6. 귀하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귀하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1) 40시간 미만( ) ☐ 2) 40시간 ☐ 3) 52시간 ☐ 4) 52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을 말함으로,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주 40시간) 및 제2항(1일 8시간)을 말합니다.**

7. 귀하께서는 1달 소정근로시간(174시간) 이외에 월평균 시간외근무를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 1) 시간외근무(연장근로시간): 1달_____시간(→문 7-1로)
☐ 2) 시간외근무(연장근로시간)는 하지 않는다. (→ 문 8로)

☞ **시간외근무(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를 말함으로,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주 40시간) 및 제2항(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7-1.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는 1달간의 시간외근무 시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몇 시간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까?

☐ 1) 10시간 ☐ 2) 15시간 ☐ 3) 20시간 ☐ 4) 40시간 ☐ 5) 기타( )
☐ 6) 시간외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받는다.

7-2.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받고 있습니까?

☐ 1)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다
☐ 2)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다
☐ 3)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다
☐ 4) 기본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다
☐ 5) 기타 (　　)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7-3. 수당으로 지급을 못 받은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 1) 보상 없음
☐ 2) 해당 시간만큼의 대체 휴가
☐ 3) 해당 시간보다 많은 대체 휴가

【Ⅰ-3. 근로조건: 휴게·휴가·휴일】

8. 귀하께서는 1일 근무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점심시간 포함, 2022년 기준)

1일 평균 _____시간_____분 휴식

☞**휴게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제도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근로 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9. 귀하의 지난해(2022년)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 일수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각각 며칠이었습니까?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문 9-1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총 _____ 일	총 _____ 일

9-1. 귀하께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내가 맡은 업무의 업무량이 많아서
☐ 2) 대체인력(나를 대신하여 일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 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의 인력배치 때문에
☐ 4) 기관 · 상사 ·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눈치가 보여서
☐ 5) 급여삭감 · 실적 하향 등 불이익이 될까 봐
☐ 6) 기관에서 휴가 사용 거부 또는 축소시행 때문에
☐ 7) 근속기간이 짧아 휴가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에
☐ 8) 연차유급 휴가제도에 대해 몰라서
☐ 9)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 10) 기타 (적을 것: _____)

10. 지난해(2022년) 총 67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총 67일의 관공서 공휴일 중 며칠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까?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만 문 10-1로)

관공서 공휴일	사용 못한 관공서 공휴일 휴가 일수
총 67일{(관공서 공휴일 17일+일요일 52일)-(일요일 중복 4개)+(대체휴일 2일)}	총 _____ 일

☞ **관공서 공휴일이란, 일요일, 국경일(3 ·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3.9),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10-1. 귀하께서 사용하지 못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 1) 보상금(휴일·휴가 미사용 수당)을 보상받았다.
☐ 2) 대체 휴가로 보상받았다.
☐ 3) 일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체 휴가로 보상받았다.
☐ 4) 보상금이나 대체 휴가 모두 없었다.
☐ 5) 기타(　　)

11. 귀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예(→문 12로)　　☐2) 아니오(→문 14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국가·지자체 부담으로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귀하는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 공백 시, 해당 시설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예(→문 12-1로) ☐ 2) 아니오(→문13으로)

12-1. 당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이용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1) 휴가 ☐ 2) 교육 ☐ 3) 경조사 ☐ 4) 병가 ☐ 5) 출산 ☐ 6) 기타( )

12-2.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귀하의 휴가, 교육, 병가 등의 자유로운 사용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1) 예(→문 14로) ☐ 2) 아니오(→문 13으로)

13.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이용조차 하지 않거나, 이용하였으나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사업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 2)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 3) 시설이나 시설장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 4) 직무에 적합한 양질의 대체인력이 없어서
☐ 5) 주말 및 야간, 단시간 공백 등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적합한 대체인력을 지원받기가 어려워서(대체인력 인력풀이 부족해서)
☐ 6) 기타 (적을 것:)

【Ⅰ-4. 보수 처우 및 욕구】

14.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까?

☐ 1) 호봉제 ☐ 2) 연봉제 ☐ 3) 기타( ) ☐ 4) 잘 모름

15. 귀하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음 임금체계 중 어떤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호봉제 ☐ 2) 연봉제 ☐ 3) 직무급제 ☐ 4) 직능급제 ☐ 5) 기타( )

☞호봉제란, 직계나 연공 등을 기초로 정해지는 급여 체계를 말함으로, 연공 서열을 기반으로 매년 일정 금액이 인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임금제도입니다.

☞연봉제란, 연 단위로 직무성과를 평가해서 1년 임금을 확정하는 임금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스포츠 선수, 게임 및 상품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임금제도로서 직무성과에 따라 매년 임금의 변동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급제란, 개개인이 맡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마련된 직무 등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능급제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직능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직무수행 능력의 종류와 정도(등급)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여 그 직무수행 능력의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16. 귀하께서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나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문 17로) ☐ 2) 아니오 (→ 문 16-1로)

16-1. (불만족한 경우) 귀하는 어느 정도의 보수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 2)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금 ☐ 3) 기타( )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이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사회적 개념. 즉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는 자치단체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II. 근무환경 및 근무실태

【II-1. 근무환경 및 욕구】

17.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승진에 대한 내부규정(인사 규정)이 있습니까?
☐ 1) 있다 (→문 17-1로) ☐ 2) 없다(→문 18로) ☐ 3) 잘 모르겠다. (→문 18로)

17-1. 귀하는 입사 후 승진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문 17-2로) ☐ 2) 없다(→문 18로)

17-2. 총 몇 회 승진하셨습니까? 총 ( )회 (→1회 이상 문 17-3으로)

17-3. 귀하께서 현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입사 후 총 몇 년 걸렸나요? (총 년) (→문 17-4로)

17-4. 귀하께서 승진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인건비 예산 ☐ 2) 승진정원(티오)
☐ 3) 자격증 ☐ 4) 인사평가
☐ 5) 기타 (적을 것:)

18. 귀하께서는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량 대비 실제 근무하는 직원 수(예: 생활시설의 생활 인원 50명당 조리원 1명 등)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문 18-1로) ☐ 2) 아니오 (→문 19로)

18-1. 실제 근무하는 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 1)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이나 사업지침의 직원 정원에 관한 배치 기준이 잘못되어서
☐ 2) 배정된 직원 수는 적당한데 단기적으로 결원 인력이 있어서
☐ 3) 결원된 인력이 장기적으로 충원이 안 돼서
☐ 4) 기타 (적을 것:)

19.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60세 법정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1) 모든 직원의 60세 법정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 2) 정규직에만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 3) 계약직·일용직 등 모든 직원의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20.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려되는 복지후생 제도입니다. 다음 중 귀하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서 받는 복리후생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자녀 학자금	☐ 2) 본인 학자금	☐ 3) 근로자 대출
☐ 4) 경조사비	☐ 5) 체력단련비	☐ 6) 교육훈련비
☐ 7) 휴양시설	☐ 8) 직원휴게시설	☐ 9) 동호회 지원
☐ 10) 연차 휴가	☐ 11) 유급보건휴가	☐ 12) 출산전후휴가
☐ 13) 유산·사산휴가	☐ 14) 육아휴직	☐ 15) 안식휴가제
☐ 16) 진료휴가(본인 및 가족)	☐ 1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9) 직원포상제도	☐ 20) 상해보험가입지원	
☐ 21) 기타 (적어 주십시오)		

21. 현재 받고 있지는 않지만, 희망하는 복리후생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서 3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 1순위 ( ) 2) 2순위( ) 3) 3순위( )

☐ 1) 자녀 학자금	☐ 2) 본인 학자금	☐ 3) 근로자 대출
☐ 4) 경조사비	☐ 5) 체력단련비	☐ 6) 교육훈련비
☐ 7) 휴양시설	☐ 8) 직원휴게시설	☐ 9) 동호회 지원
☐ 10) 연차 휴가	☐ 11) 유급보건휴가	☐ 12) 출산전후휴가
☐ 13) 유산·사산휴가	☐ 14) 육아휴직	☐ 15) 안식휴가제
☐ 16) 진료휴가(본인 및 가족)	☐ 1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9) 직원포상제도	☐ 20) 상해보험가입지원	
☐ 21) 기타 (적을 것: _____)		

【II-2. 일·가정 양립】

22. (응답자가 여성 종사자인 경우만)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시간외근무를 시설 규정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23. (응답자가 여성 종사자인 경우만)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의 시간외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까?
(※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못함),

☐ 1) 예 ☐ 2) 아니오(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24. (남성 및 여성 종사자 모두) 귀하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래 각 사항의 시행 여부와 사용 경험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귀 시설에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 경험 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제도 시행 여부	사용 경험 여부
1) 육아휴직(급여)제도	☐ 1) 실시 ☐ 2) 미실시	☐ 1) 있음 ☐ 2) 없음 ☐ 3) 해당 없음
2)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총 2년 사용	☐ 1) 실시 ☐ 2) 미실시	☐ 1) 있음 ☐ 2) 없음 ☐ 3) 해당 없음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1) 실시 ☐ 2) 미실시	☐ 1) 있음 ☐ 2) 없음 ☐ 3) 해당 없음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1) 실시 ☐ 2) 미실시	☐ 1) 있음 ☐ 2) 없음 ☐ 3) 해당 없음
5) 유연근무제도	☐ 1) 실시 ☐ 2) 미실시	☐ 1) 있음 ☐ 2) 없음 ☐ 3) 해당 없음
6)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 1) 실시 ☐ 2) 미실시	☐ 1) 있음 ☐ 2) 없음 ☐ 3) 해당 없음
7) 기타 (적을 것:_____)	☐ 1) 실시 ☐ 2) 미실시	☐ 1) 있음 ☐ 2) 없음 ☐ 3) 해당 없음

※ 다음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육아휴직(급여)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30일 이상 최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임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총 2년 사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당 부모가 각각 1년(총 2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아빠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같은 자녀

보너스제	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제도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임.
유연근무제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있음.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는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임.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연간 최장 10일) 또는 휴직(연간 최장 90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II-3. 교대제 근무】

25.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근무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 1) 일상 근무제 (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 (→문 26으로)
☐ 1) 일상 근무제 (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당직 근무제 (→문 25-1로)
☐ 2) 교대 근무제 (→문 25-3으로)

☞ **당직 근무제란, 소정근로시간(일상근무제) 이외 야간에 비상 상황이나 휴일 근무 등을 대처하기 위해 숙직 또는 일직의 형태로 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25-1.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를 주로 누가 담당하나요?

☐ 1) 별도 당직 인력을 고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문 26으로)
☐ 2) 직원들이 순번제로 당직을 한다 (→ 문 25-2로)

25-2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야간 및 휴일 당직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한다.
☐ 2) 대체휴일로 부여한다.
☐ 3) 당직비(당직 수당)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 4) 야간 및 휴일 당직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25-3.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교대 근무제는 어떤 형태입니까?

☐ 1) 2조 격일제(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24시간 휴무)
☐ 2) 2조 2교대(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 후반기로 나누어 12시간씩 근무)
☐ 3) 3조 2교대(3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 후반기로 나누어 12시간씩 근무하고 1조는 휴무)
☐ 4) 3조 3교대(3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8시간씩 근무)
☐ 5) 4조 3교대(4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1조는 휴무)
☐ 6) 기타 (적을 것: _____)

Ⅲ. 종사자 역량개발

【III-1. 교육·훈련】

26.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직원의 자기 계발 및 직무 관련 교육을 위한 규정 또는 지침(의무교육 제외)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27. 귀하께서는 2022년 교육(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자격 관련 보수교육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

까?

☐ 1) 예 (→ 문 27-1로)　　☐ 2) 아니오 (→ 문 27-3으로)

27-1.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 2022년에 받은 교육 현황을 아래 표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작성 후 → 문 27-2로)

구분	2022년			
	교육 여부	교육받은 횟수	교육비 부담	복무 처리
법정의무 교육	☐ 1) 예 (→ 교육 횟수로 갈 것) ☐ 2) 아니오 (→ 다음 질문으로 갈 것)	총_____회	☐ 1) 본인 부담 ☐ 2) 기관 부담 ☐ 3) 본인+기관 부담 ☐ 4) 무료 교육 ☐ 5) 기타(_____)	☐ 1) 출장 사용 ☐ 2) 공가 사용 ☐ 3) 연가 사용 ☐ 4) 기타(_____)
직무 필수 교육	☐ 1) 예 (→ 교육 횟수로 갈 것) ☐ 2) 아니오 (→ 다음 질문으로 갈 것)	총_____회	☐ 1) 본인 부담 ☐ 2) 기관 부담 ☐ 3) 본인+기관 부담 ☐ 4) 무료 교육 ☐ 5) 기타(_____)	☐ 1) 출장 사용 ☐ 2) 공가 사용 ☐ 3) 연가 사용 ☐ 4) 기타(_____)
자격관련 보수교육	☐ 1) 예 (→ 교육 횟수로 갈 것) ☐ 2) 아니오 (→ 다음 질문으로 갈 것)	총_____회	☐ 1) 본인 부담 ☐ 2) 기관 부담 ☐ 3) 본인+기관 부담 ☐ 4) 무료 교육 ☐ 5) 기타(_____)	☐ 1) 출장 사용 ☐ 2) 공가 사용 ☐ 3) 연가 사용 ☐ 4) 기타(_____)

〈참고〉 교육현 황 안내

구분	정의	예시
법정의무 교육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을 말함.	•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 시설별 부과되는 의무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직무필수 교육	• 종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안내 등에서 필수(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는 교육을 말함.	• 팀장직무교육, 업무인수교육, 응급처치 안전교육, 인권보호교육, 행정실무, 기획실무, 예산실무 등
자격관련 보수교육	• 자격증 취득자에게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보충하는 교육으로 주기적/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간호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보수교육 등

27-2.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 입사 이후 지금까지 이수한 교육실적이 승진 등의 인사고과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 1)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2)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일부 반영된다.

☐ 5) 매우 많이 반영된다.　　☐ 6) 해당 없음(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음)

☐ 7) 모르겠다.

27-3.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귀하께서 2022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1) 업무 과다로 인해 교육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 2) 시설의 대체인력이 없어서
☐ 3) 교육내용이 적절한 것이 없어서(직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나 없어서)
☐ 4)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5) 교육 장소가 멀고 불편해서
☐ 6) 교육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 7) 기타(적을 것: _____)

【Ⅲ-2. 경력개발】

☞ **경력개발은 종사자의 적성, 희망, 능력 등을 바탕으로 조직과 종사자에게 바람직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CDP)은 ① 경력계획 및 상담(경력계획 수립과 실시를 위한 상담, 워크숍, 멘토링, 정보제공 등), ② 승진·보직 관리(경력계획에 따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승진 및 보직 경로), ③ 경력개발을 위한 직무순환·부서 이동, ④ 경력목표와 경력단계에 맞는 교육훈련, ⑤ 경력목표와 경력단계에 맞는 슈퍼비전 등을 포함합니다.**

28.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경력계획 및 상담, 승진·보직 관리, 직무순환·부서 이동, 교육훈련, 슈퍼비전 등 5개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1개라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있다 (→ 문 28-1로) ☐ 2) 없다 (→ 문 29로) ☐ 3) 모르겠다 (→ 문 29로)

28-1.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2022년) 아래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있다	없다
1) 경력계획 및 상담(멘토링 포함)	①	②
2) 승진·보직 관리	①	②
3) 직무순환·부서 이동	①	②
4) 교육훈련	①	②
5) 슈퍼비전	①	②
6) 기타 (적을 것: _____)	①	②

Ⅳ. 종사자 인권 및 위험

【Ⅳ-1. 종사자 인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권에는 ①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②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③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④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⑥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⑦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⑧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받지 않아야 할 권리, ⑨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⑩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받지 않아야 할 권리, ⑪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29. 귀하께서는 귀 시설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문 29-1로)
☐ 2)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문 29-1로)
☐ 3) 보통이다(→문 30으로)
☐ 4) 보장받는 편이다(→문 30으로)
☐ 5) 충분히 보장받는 편이다(→문 30으로)

29-1.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귀 시설에 근무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 2)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권리
☐ 3)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 4)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 5)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 6)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 7)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8)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받지 않아야 할 권리
☐ 9)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 10)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받지 않아야 할 권리
☐ 11)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 12) 해당 사항 없음
☐ 13) 기타 (기재할 것: _____)

【Ⅳ-2. 종사자 위험】

☞ 위험요인이란 ①동료(상급자, 하급자 포함)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폭력, 무리한 업무요청, 반말, 의견묵살, 욕설 등 인격모독 행위 포함), ② 이용자(이용자의 가족 포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폭력, 무리한 업무요청, 반말, 의견묵살, 욕설 등 인격모독 행위 포함), ③ 직업적 특성에 따른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등을 의미합니다.

30.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위험(폭력 포함)을 지난 1년간(2022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 1)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다(→문 31로)
☐ 2) 경험하지 못한 편이다(→ 문 31로)
☐ 3) 보통이다(→문 31로)
☐ 4) 경험한 편이다(→문 30-1로)
☐ 5) 자주 경험하였다(→ 문 30-1로).

30-1. (경험 한 경우) 귀하께서는 어떤 위험(폭력 포함)을 경험하였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문 31로)
☐ 2) 동료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문 31로)
☐ 3) 하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문 31로)
☐ 4) 이용자(이용자의 가족 포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문 31로)
☐ 5) 직업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 문제(→문 30-1-1로)
☐ 6) 직업적 특성에 따른 정신적 건강 문제(→문 30-2-1로)
☐ 7) 기타(적을 것: _____)

30-1-1.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귀하께서 경험하신 신체적 건강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1) 근골격계질환(손목, 팔, 어깨, 허리통증 등)
☐ 2) 호흡기질환(기관지염, 천식 등)
☐ 3) 소화기질환(소화불량, 위염 등)
☐ 4) 신경 및 순환계 질환
☐ 5) 전염성질환
☐ 6) 기타(적을 것: _____)

30-1-2.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 있음(→문 30-1-3으로)
☐ 2)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 없음(→문 30-1-4로)

30-1-3.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시,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 31로)

☐ 1) 산업재해 ☐ 2) 상해보험
☐ 3) 개인 비용 처리(개인보험 포함) ☐ 4) 시설에서 부담
☐ 5) 기타(적을 것: _____)

30-1-4.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참고 견딜 만해서
☐ 2) 근무시간에는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 3) 업무가 많아 병원 진료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서
☐ 4) 누군가가 알게 될까 봐
☐ 5) 기타(적을 것: _____)

30-2-1.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귀하께서 경험하신 정신 건강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작성 후 문 30-2-2로)

☐ 1) 스트레스
☐ 2) 소진
☐ 3) 강박증
☐ 4) 무기력증
☐ 5) 우울증
☐ 6) 불안증세
☐ 7) 불면증
☐ 8) 기타(적을 것: _____)

30-2-2.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진단 및 상담을 받은 적 있음(→문 30-2-3으로)
☐ 2) 진단 및 상담을 받은 적 없음(→문 30-2-4로)

30-2-3.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시,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작성 후 문 31로)

☐ 1) 산업재해 ☐ 2) 상해보험
☐ 3) 개인 비용 처리(개인보험 포함) ☐ 4) 시설에서 부담
☐ 5) 기타(적을 것: _____)

30-2-4.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성 후 문 31로)

☐ 1) 참고 견딜 만해서
☐ 2) 근무시간에는 병원(상담 기관 포함) 이용이 어려워서
☐ 3) 업무가 많아 병원 진료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서
☐ 4) 병원 진료 등이 두려워서
☐ 5) 누군가가 알게 될까 봐
☐ 6) 기타(적을 것: _____)

Ⅴ. 종사자 만족도 및 이직 의사

31.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은 고충 또는 어려움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표시해 주십시오.

☐ 1) 시설에 마련된 공식적인 절차(운영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
☐ 2) 시설장(중간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
☐ 3) 동료 상담을 통해서 해결
☐ 4) 외부기관(민원제도,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 5) 고충(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음
☐ 6) 기타 (적어 주십시오: _____)

32. 다음은 귀하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 1인 시설의 경우 3)~7)은 표시하지 마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일 (담당업무 내용, 업무량 포함)	①	②	③	④	⑤
2) 보수 (수당 및 보너스 포함)	①	②	③	④	⑤
3) 상급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하급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7) 종사자 간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8) 고용안정 (정규직, 정년보장, 장기근속 등)	①	②	③	④	⑤
9) 승진 기회	①	②	③	④	⑤
10)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기회	①	②	③	④	⑤
11) 원하는 부서에 근무 여부	①	②	③	④	⑤
12) 부대시설 (쉼터, 휴게실, 도서실 등)	①	②	③	④	⑤
13) 중요한 결정에 발휘하는 영향력	①	②	③	④	⑤
14) 맡은 업무에 대한 소신성 및 책임성	①	②	③	④	⑤
15) 후생복지	①	②	③	④	⑤
16) 담당하는 일에 대한 보람	①	②	③	④	⑤
17) 여가나 가족생활을 할 시간적 여유	①	②	③	④	⑤
18)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9) 주 평균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20) 종사자 인권 보호 등 안전한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21) 경력개발을 통한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께서는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불만족한다. ☐ 2) 불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34. 귀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 1)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 2)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 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지역 간 종사자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
☐ 3)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 4)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
☐ 5)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 의무화
☐ 6)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7) 각종 필요 수당의 신설
☐ 8) 법정수당의 보조금 집행 인정(미사용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
☐ 9) 사회복지 분야별로 상이한 경력인정 지침의 통일성 확보
☐ 10) 시설별 최소 승진 연한 기준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 11) 직책과 직급을 구분하고, 직급의 자격 기준 강화
☐ 12) 적정한 시기와 직무에 맞는 대체인력 지원
☐ 13) 기타 (적을 것:_____)

35. 귀하께서는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이직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그렇다 (→ 문 35-1로) ☐ 2) 아니다 (→ 문 36으로)

35-1. 현재 이직 의사가 있다면 그 사유를 우선순위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1)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2) 업무량이 많아서
☐ 3) 근로시간이 길어서
☐ 4) 보수가 낮아서
☐ 5)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 6) 조직 상하 간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 7) 상·하급자나 동료로부터 위험을 느껴서
☐ 8)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위험을 느껴서
☐ 9) 학업·결혼·임신·출산·질병 등 개인 사유로
☐ 10) 기타 (적을 것: _____)

Ⅵ. 일반사항

36.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출생 년 월 _____년 _____월)

3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여자 ☐ 2) 남자

38. 귀하께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입사 후 몇 년을 근무하고 계신지요?

입사한 지 ( ) 년 근무

39.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1) 사회복지직(생활지도원 포함) ☐ 2) 관리직(사무원, 시설관리직 등)
☐ 3) 기능직(조리원, 영양사 등) ☐ 4) 보건 의료직(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 5) 기타 (적어 주십시오: _____)

40.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1) 최고관리자(원장, 관장, 센터장, 소장 등) ☐ 2) 상급관리자(사무국장, 부장, 실장 등)
☐ 3)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 4) 초급관리자(선임, 대리 등)
☐ 5) 실무직원(직위가 없는 모든 직원) ☐ 6) 기타 (적을 것: _____)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